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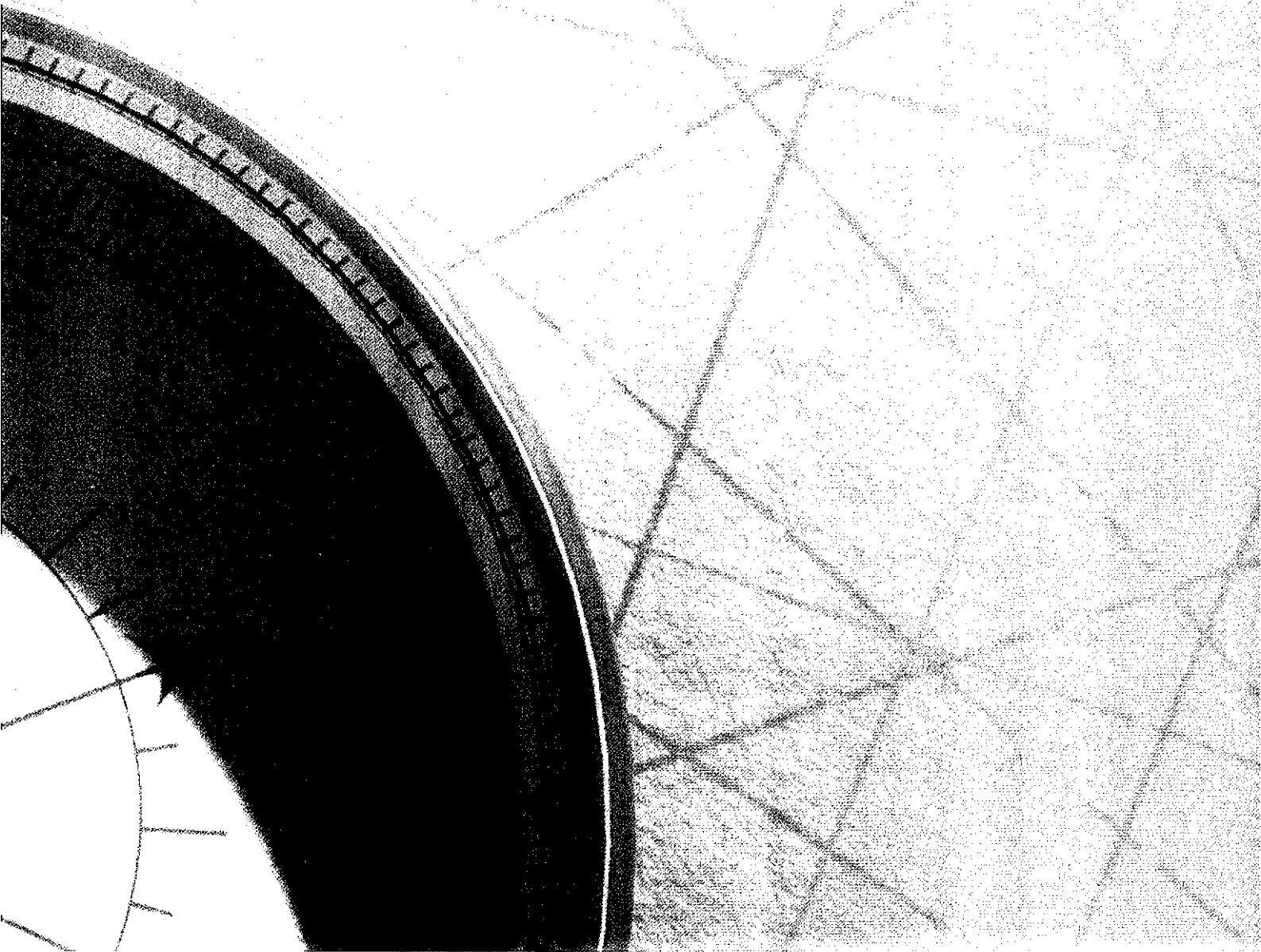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20년사

1976~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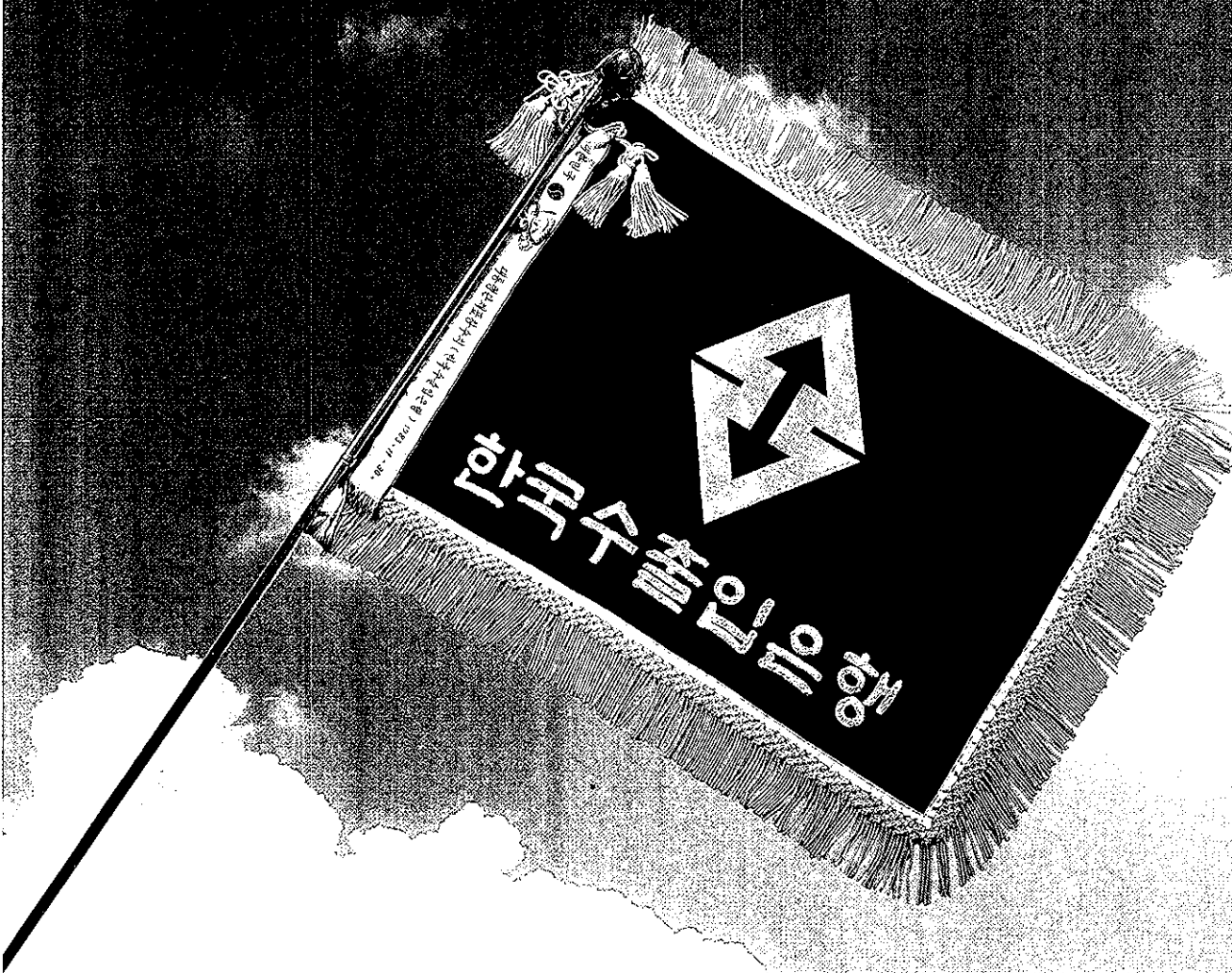


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 공적지원 전담기관으로서

21세기 선진경제와 통일한국의 창조를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訓 團 結
氣 象 發
行 和 取
人 進 自



한국수출입은행 행가

이병창 작사
이홍렬 작곡

힘차게



동 해 에 떠 오 르 는 태 양 을 보 라
백 두 산 맑 은 정 기 이 어 온 겨 레



화 - 망 찬 우 리 강 토 아 침 - 이 온 다
새 - 롭 게 도 약 한 다 솟 아 - 오 른 다



한 마 음 한 뜻 으 로 일 하 는 우 리
뜨 거 운 가 습 마 다 샘 솟 는 기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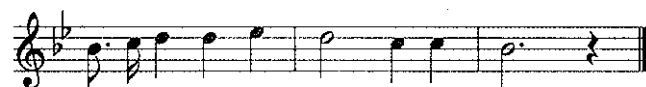


겨 레 의 푸 른 꿈 을 이 루 - 어 간 다
동 서 로 남 북 으 로 펼 쳐 - 나 간 다



(후렴)

빛 나 는 조 국 의 영 원 한 등 불 세 - 계 로



펼 어 가 는 수 출 입 은 행

발 간 사

올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重化學工業 育成이라는 국민경제적 여망에 부응하여 창립된 지 어언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은행이 걸어온 20년은 우리나라가 숏한 역경을 딛고 세계 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전해 온 발자취와 그 軌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1970년대 말 이후의 제2차 석유파동 및 국제 고금리와 금융·외채위기, 그리고 1990년대 WTO 체제의 출범과 선진국의 개방압력 등 수많은 대외적 장애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GNP 규모는 약 7배, 수출규모는 약 40배로 늘어났고, 조만간 OECD에 가입하여 21세기에 들어서기 전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것이 확실합니다.

수출입은행은 1970년대 중반 우리 경제가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 당시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중화학공업 위주로 成長政策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 촉진을 통해 안정적 수요기반을 창출함으로써 성공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은 새로운 업무의 도입에 따르는 시행착오, 금융지원 해외사업의 실패, 자본재 수출 부진에 따른 금융수요의 감소, 선진국 公的輸出信用機關의 견제 등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대외경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설립목적에 따라 정부의 산업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창립 첫해인 1977년에 960억원이었던 우리은행의 자금공급 규모가 1995년에는 4조 500억원으로 약 42배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다투는 造船大國의 위치를 차지하고, 중화학공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플랜트 산업 부문에서 세계 유수의 선진기업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되기까지 수출입은행이 지대한 기여를 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국제수지의 흑자 전환을 계기로 해외투자과 주요 자원의 수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국제화를 진전시키고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음을 자부합니다.

이외에도 1987년에는 정부로부터 對外經濟協力基金 업무를, 그리고 4년 후인 1991년에는 南北協力基金의 관리업무를 각각 수탁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대외거래 관련 정책자금의 운용·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개도국과의 경제 협력 증대 및 민족교류를 통한 남북협력 증진에도 적극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 경제의 발전과 우리 기업의 성장 속에서 노력한 보람을 찾을 수 있음은 우리 수출입은행의 큰 기쁨과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와 자부심은 강력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들과의 직접적인 경쟁과 국내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이룩된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 비하면 20년은 成年에 이르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년사는 우리은행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성장의 기록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수출입은행 2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은 과거 성장의 기록에서 반성할 점과 배울 점을 찾아 다가오는 21세기의 挑戰的 環境에 대한 應戰의 智慧와 勇氣를 얻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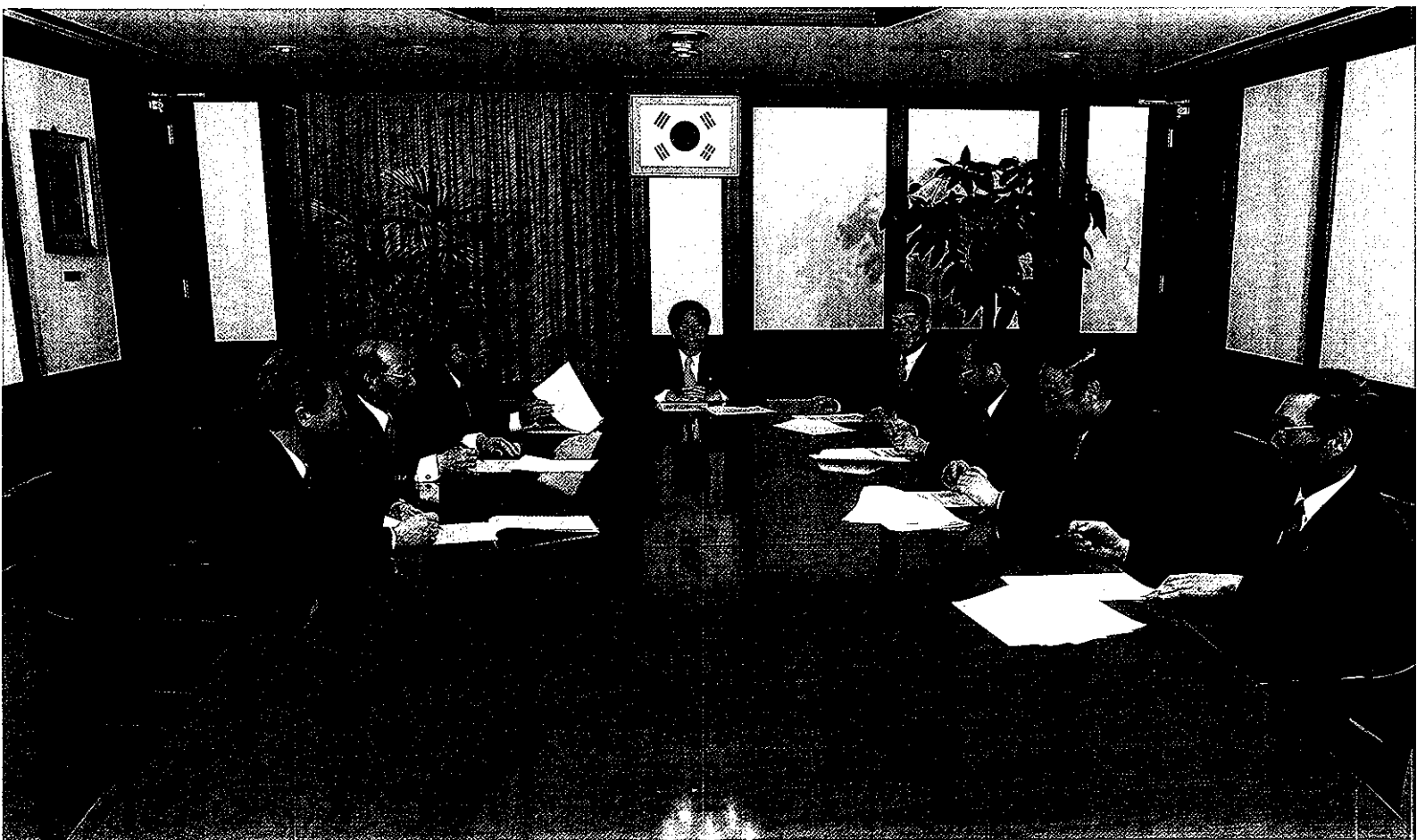
끝으로 우리은행의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이 미진한 기록이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책자의 발간에 헌신한 관계직원들에게 큰 보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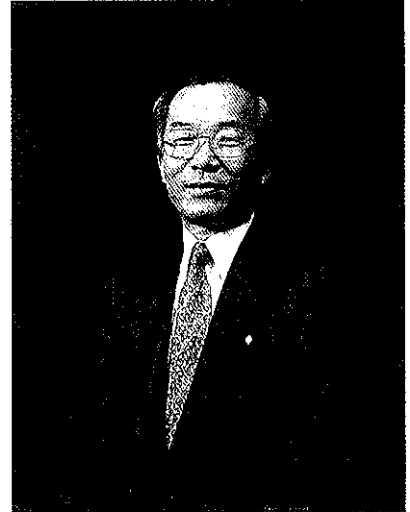
1996년 7월 1일

은행장

북한상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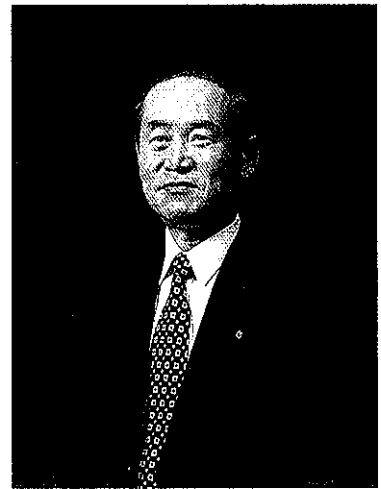




문헌상 은행장



이선희 전무이사



박창래 감사

임원진





채홍식 이사



김성용 이사



최성룡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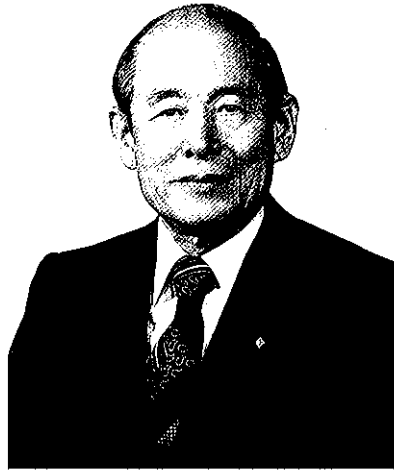


강말이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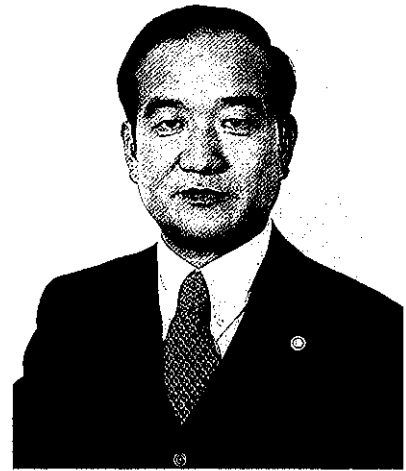


정문모 이사

역대은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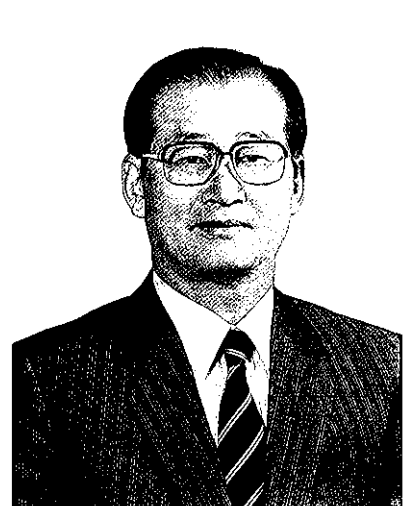
송인상 초대은행장



양운세 제2대은행장



이태호 제3대은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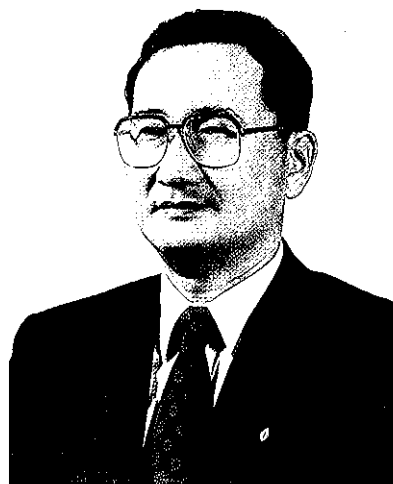
박성상 제4대은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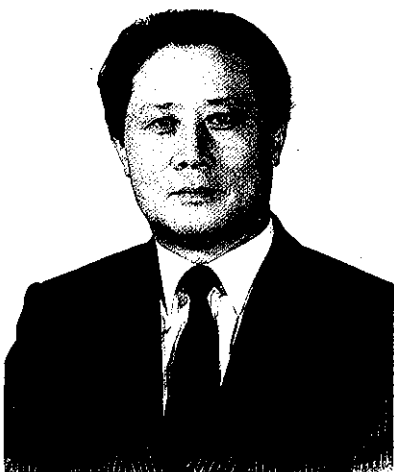
류 돈 우 제5대 은행장



황 창 기 제6대 은행장



홍 재 형 제7대 은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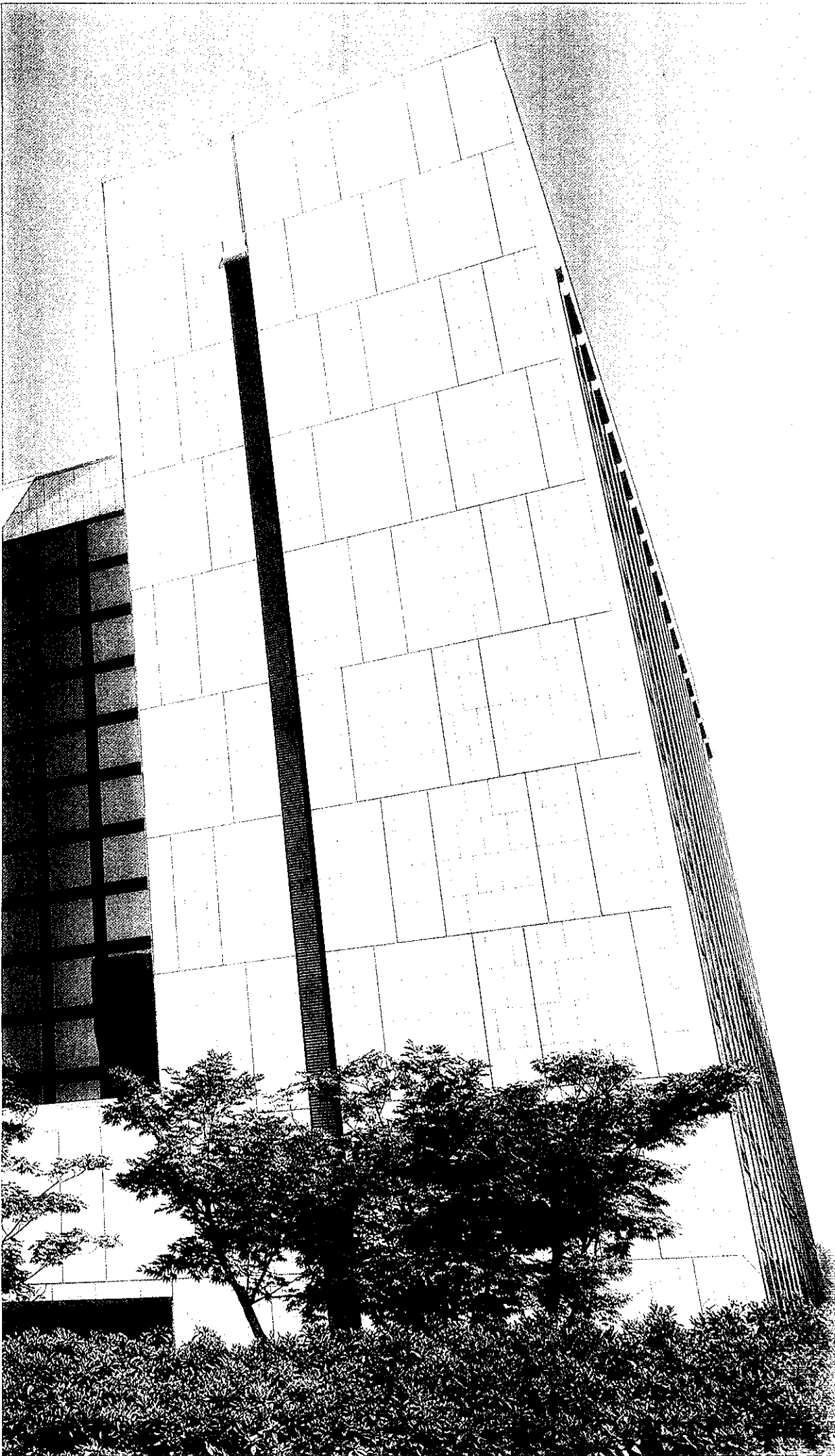


이 광 수 제8대 은행장



김 영 빈 제9대 은행장





일러두기

내용구성

1. 한국수출입은행 20년사는 화보와 본문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본문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창립, 우리나라 경제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업무의 발전,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직과 경영, 21세기를 맞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부록은 법규편, 자료편, 통계편으로 구성되었다.
4. 화보는 연혁 및 현황화보로 구성되었다.

표기방법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의미의 전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하였다.
2. 은행 명칭은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우리은행' 등으로 표기하였다.
3. 업무실적에 관한 통계는 1995년 말 현재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숫자의 경우 만, 억, 조 등의 보조단위를 사용하였으며, 도표의 경우에는 천, 백만 등의 보조단위도 사용하였다.
5. 외국어 및 외래어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우리말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차례

第1章 韓國輸出入銀行의 創立

第1節 概觀	52
第2節 設立前史	54
1. 韓國輸出入銀行法の 제정	54
가. 제정 배경	
나. 제정 경위	
다. 수은 업무의 개시	
2. 重化學工業의 육성과 延拂輸出時代의序幕	59
가. 중화학공업화의 진전과 해외진출의 확대	
나. 연불수출시대의 서막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	66
1. 設立 背景	66
가.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 진전	
나.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와 연불수출금융	
2. 設立 經緯	68
3. 新生 輸銀의 역할과 과제	69
4. 設立 當時의 經營理念	72
第4節 韓國輸出入銀行의 機能	76
1. 輸銀法上의 機能	76
가. 자본재 수출의 진흥	
나. 해외투자의 촉진	
다.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	
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	
2. 政府代行 및 受託業務의 수행	81
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나. 남북협력기금 업무	
다. 수출보험 업무	

第2章 우리나라 經濟의 發展과 韓國輸出入銀行

第1節 概觀	86
--------	----

第2節 經濟開發計劃의 추진과 輸出支援體制의 기반 구축(1962~1972)	90
1. 輸出指向的 經濟開發의 착수(1962~1966)	90
2. 高度 成長軌道에의 진입(1967~1972)	93
3. 輸出支援體制의 기반 구축	95
第3節 重化學工業의 육성과 輸銀 業務基盤의 확립(1973~1985)	98
1. 重化學工業 육성(1973~1979)	99
가. 중화학공업 육성 요구의 증대	
나. 중화학공업 육성시책 실시	
다.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2. 안정적 成長基盤의 정착(1980~1985)	105
가. 안정우선 정책하의 중화학공업화 추진	
나. 경제안정 기반의 정착과 중화학공업 부문의 내실화	
3. 輸銀 業務基盤의 확립	110
가. 본격적인 연불수출시대의 개막	
나. 해외투자의 활성화 기반 구축	
다. 수은 업무기반의 확립	
第4節 國際收支 黑字 전환과 輸銀 支援機能의 다양화(1986~1989)	118
1. 國際收支 黑字 전환과 經濟構造 調整 추진	118
가. 국제수지 흑자 전환	
나. 경제구조 조정 추진	
다. 개방화 추진과 대개도국 경제협력 기반 구축	
2. 輸銀 支援機能의 다양화	127
가. 제3차 수은법 개정	
나. 수출금융의 부진	
다. 해외투자 지원체제의 확충	
라. 수입금융제도의 시행	
마.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의 개시	
第5節 經濟의 國際化 진전과 輸銀의 對外去來 專門 支援體制 구축(1990~현재)	136
1. 經濟의 國際化 진전	137
가. 경제의 자유화 추진과 안정적 성장 지속	
나. 능동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추진	

2. 輸銀의 對外去來 專門 支援體制 구축	146
가. 수은 자금의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나. 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	
다.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	
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수은의 역할 증대	

第3章 韓國輸出入銀行 業務의 發展

第1節 概觀	156
1. 金融支援機能의 확충	156
2. 資金調達 및 國際金融 業務의 다양화	159
3. 政府代行 및 受託業務의 발전	161
4. 調査 및 法規 業務의 발전	163
第2節 金融支援機能의 확충	166
1. 支援制度의 개요	166
가. 수출지원자금	
나. 해외투자지원자금	
다. 수입자금	
라. 주요자원개발자금	
2. 支援制度의 발전과 지원실적	172
가. 수출자금대출	
나. 기술제공자금대출	
다. 직접대출	
라. 전대자금	
마. 해외투자자금대출	
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사. 수입자금대출	
아. 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	
자. 보증 및 외국환 업무	
第3節 資金調達 및 國際金融 業務의 다양화	238
1. 資金調達 業務의 변천	238
가. 개요	
나. 조달형태의 변천	
2. 國內 資金調達	243
가. 자본금 및 적립금	
나. 국민투자기금 차입	

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	
라.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마.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	
3. 海外資金調達 비중의 증대	249
가. 은행차관 도입	
나. 연불어음 매각	
다. 전대차관 도입	
라.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4. 國際金融 業務의 다양화	270
가. 해외 현지법인의 활동	
나. 역외금융의 취급	
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수탁·운용	
第4節 政府代行 및 受託業務의 발전	278
1. 對外經濟協力基金 業務	278
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립	
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제도의 개요 및 변천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발전	
2. 南北協力基金 業務	294
가. 남북협력기금의 설립	
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체제의 개요	
다.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운용 및 지원 실적	
3. 輸出保險 業務의 발전과 독립	303
가.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나. 수출보험법의 제정 및 개정	
다. 수출보험 운영체제의 변천	
라. 수출보험 지원제도의 확충	
마. 수출보험의 운영실적	
바. 수출보험 업무의 국제화	
第5節 調査 및 法規 業務의 발전	316
1. 調査業務의 발전	316
가. 국별신용도 평가업무의 개선과 발전	
나. 해외투자관련조사의 강화	
다. 경제조사·분석업무의 강화	
라. 주요 조사자료의 발간 및 도서자료의 관리	
2. 法規業務의 발전	332
가. 국제계약서의 법적검토	
나. 계약서 법적검토 업무의 확대 발전	

第4章 韓國輸出入銀行의 組織과 經營

第1節 概觀	366
1. 組織의 확대 · 발전	366
2. 經營管理의 합리화	367
가. 經營계획	
나. 재무관리	
다. 인사 · 연수	
라. 전산정보 시스템	
마. 자산관리	
바. 보수 및 복지후생	
第2節 韓國輸出入銀行의 組織	370
1. 政策決定機構	370
가. 운영위원회	
나. 이사회	
다. 주요 자문위원회	
2. 本店	374
가. 여신부문	
나. 기획 · 자금 · 조사부문	
다. 일반관리부문	
라. 정부대행 및 수탁업무 부문	
3. 支店 · 國外事務所 · 現地法人	382
가. 국내지점	
나. 국외사무소	
다. 해외 현지법인	
4. 任職員 및 職制	393
가. 임직원	
나. 직제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의 經營	396
1. 經營計劃	396
가. 개관	
나. 중장기 經營계획의 변모	
다. 종합운영계획 및 업무계획	
2. 財務管理	403
가. 자산 · 부채의 변동 추이	
나. 이익의 발생과 처분	

다. ALM제도의 도입	
3. 人事·研修	411
가. 인사관리	
나. 연수	
4. 電算情報 시스템	419
가. 개관	
나. 전산조직 및 기초환경의 확충	
다. 수은정보시스템의 개발	
라. 사무자동화 및 정보통신망 구축	
5. 資産管理	424
가. 개관	
나. 본점 건물의 신축	
다. 연수원 구입 및 증축	
6. 報酬 및 福祉厚生	428
가. 보수	
나. 복지후생	
7. 勞動組合	435
가. 수은 노조의 설립 및 연혁	
나. 조합 현황	
다. 노동조합의 활동	

第5章 21世紀를 맞는 韓國輸出入銀行

第1節 概觀	440
第2節 發展方向	441
第3節 앞으로의 課題	443
第4節 未來의 모습	444

附 錄

法規	449
資料	495
統計	567

사진으로 보는

수출입은행 20년

1976~1996



出資 海外投資 - 懇談會



Signing of Cooperation Agreement
Tahova Telecom. Modernization Project
EXPORT BANK

ТЕЛЕСИСТЕМА ЭКСПОРТНО-ИМПОРТНОГО
В МОСКВЕ 22 АПРЕЛЯ
입은행 모스크바시
1991. 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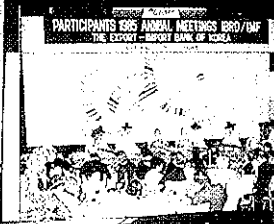
1992년도 임원·부사장 합숙 연찬회



국수출입은행 아천옹자상당소



95년도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



PARTICIPANTS 1995 ANNUAL MEETING BRD/IB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1969

1976

- ❶ 한국외환은행의 수은 업무 대행
시업식 (1969. 10. 29)
- ❷ 수은 업무 대행 전담부서였던
중장기신용부
- ❸ 중장기신용부가 소재했던
한국외환은행 서소문지점
- ❹ 수은설립위원회의 회의 장면
- ❺ 한국외환은행과의 수은 업무
인수 · 인계식



❶



❷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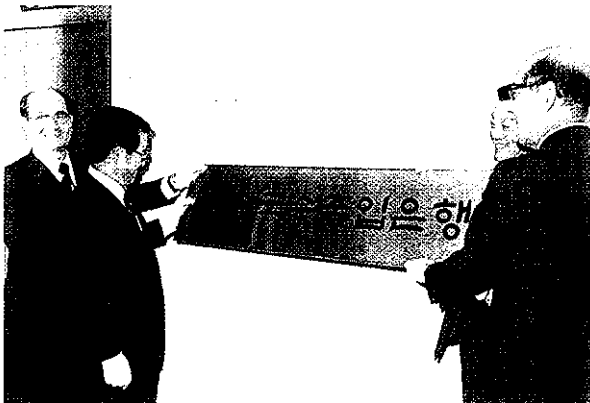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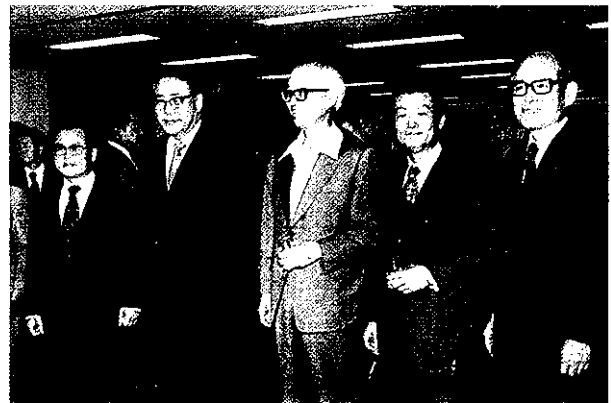
❺



①



②



③

- ① 역사적인 수은 개업식
(1976. 7. 1)
- ② 수은 현판식
- ③ 창립기념 리셉션 개최 장면
- ④ 본점 행사 신축 전까지 수은이
소재했던 대우센터빌딩 전경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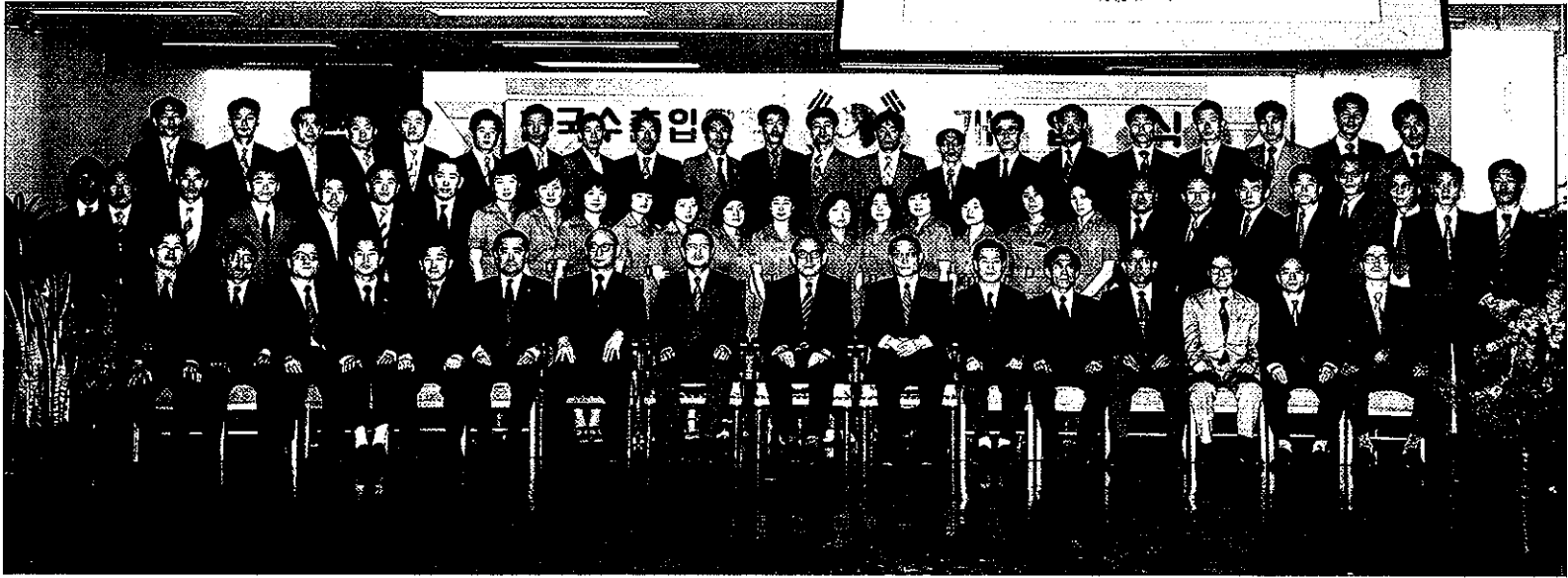
1976

1985

2

重化學輸出振興

韓國科學振興會紀念
一九八五年七月一日
大韓領 朴正熙 贈



1

- ① 한지리에 모인 창립 주역들
- ② 박정희 대통령이 수은 창립을 기념하여 하사한 친필 휘호
- ③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1976. 7. 2)
- ④ 은행장과 함께 한 첫 산업시찰 (1976. 11)
- ⑤ 공채1기 직원 사령장 수여식 (1976. 12. 27)
- ⑥ 첫 전표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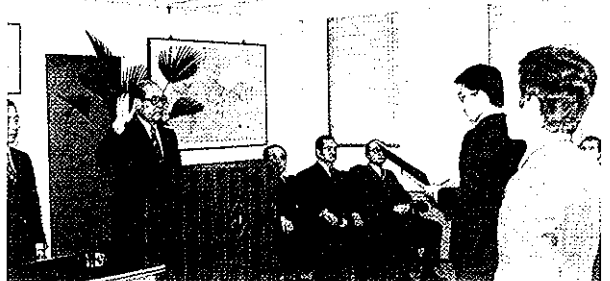


6



4

5



- ① 수은이 15년간 대행했던 수출보험
업무 인수식 (1976. 12. 31)
- ② 첫 해외 자금조달인 1억 5,800만달러의
연불어음 매각 (1977. 6. 15)
- ③ 일본수출입은행의 澄田智 총재 초청 강연
(1977. 7. 18)
- ④ 제1회 연불수출 간담회 개최 모습
(1977. 11)
- ⑤ 수은법 2차 개정으로
신설된 이사회 회의 모습
(1977. 12)
- ⑥ 해외투자자금과 기술제공자금으로
지원한 가봉의 유산백화점 개점식
(1977. 12)



①



③



④



⑥

北歐金融市場 진출
 스웨덴인 노船上行事... 마치고... 宋仁相... 金融界...

約東어음好條件매각
 延勢全宗 現金化... 資金회전... 提高...

우리發展相 소개 交易 확대에 寄與

②



⑤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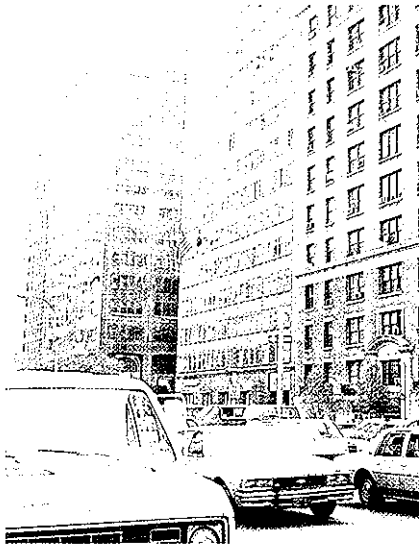
1985



①



②



③



① 주간수은뉴스 창간
(1978. 1. 7)

② 미국수출입은행의 H.Kearns 총재
초청강연

③ 최초의 국외사무소인 뉴욕(왼쪽) 및
런던사무소(오른쪽) 개소
(1978. 6. 1)

④ 홍콩사무소 개소 (1978. 9. 1)

⑤ 최초로 도입한 은행차관 계약
서명식 (1978. 12. 7)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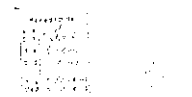
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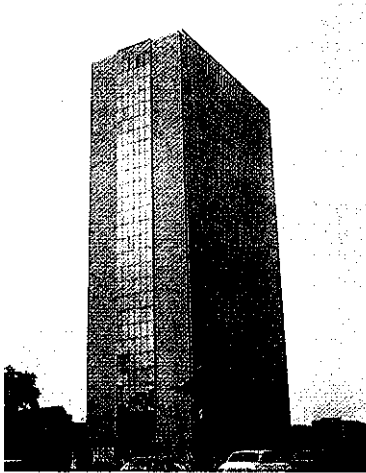
#10

長期經營計劃



◆ 特別輸出八張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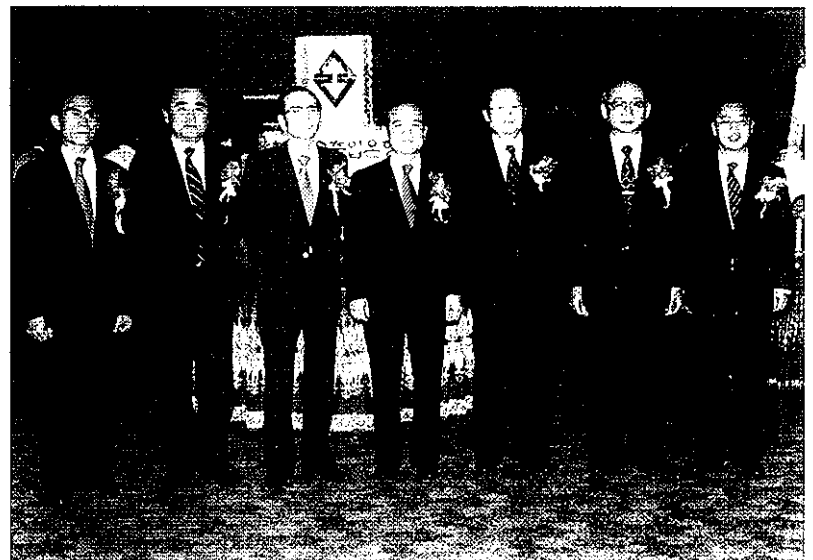
②



④



③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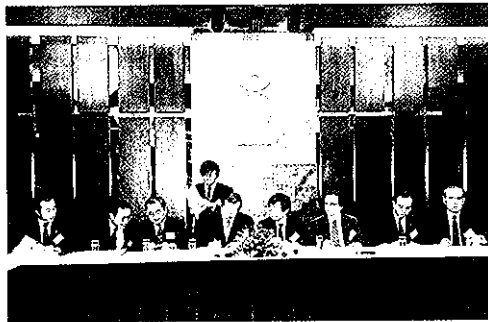
- ① 칠레의 Banco Israelita de Chile와
최초의 전대자금 공여계약 체결
(1979. 2. 6)
- ② 최초의 장기경영계획 수립 (1979. 2)
- ③ 동경사무소 개소 (1979. 6. 19)
- ④ 아비잔사무소 개소 (1979. 6. 20)
- ⑤ 창립 3주년 기념 리셉션 (1979. 7. 1)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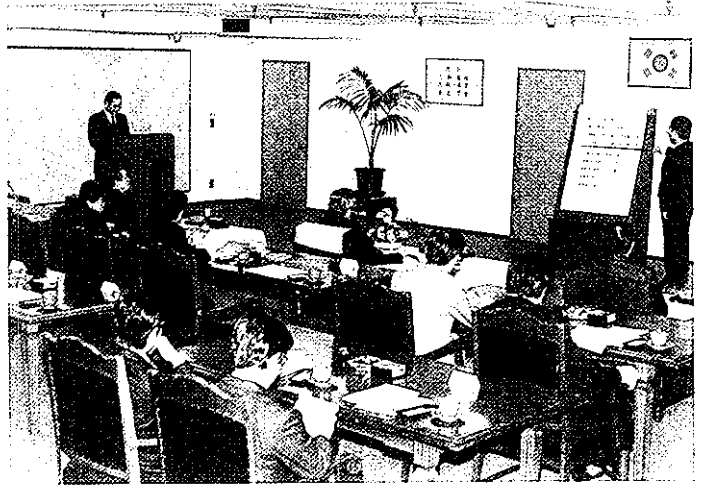
1985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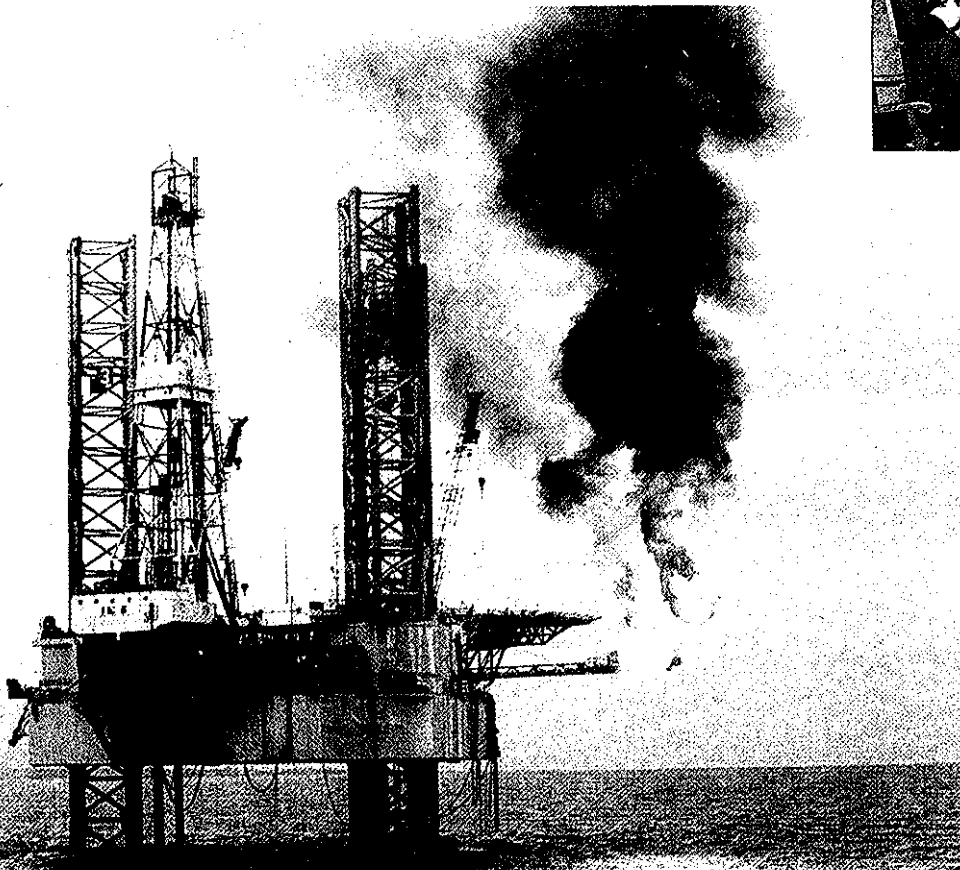


1

- ① 1980년도 재무부장관 연두 순시
- ② 아이티 앞 버스 수출 지원을 위한
직접대출 용자협정 체결 (1980. 2. 9)
- ③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유전 개발을 위한
주요자원개발자금 승인 (1981. 5. 26)
- ④ 3억달러의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 (1982. 3. 12)
- ⑤ 프랑스 Soci t  G n rale로부터의
전대차관 도입계약 서명식 (1982. 3. 18)



5



3

- ①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협조융자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1982. 5. 7)
- ② 수은조사원보 창간 (1982. 11)
- ③ 본점 신축 행사 기공식
(1982. 12. 17)
- ④ 노동조합 결성 (1982. 12. 23)



①

輸銀調査月報
第19号(昭和57年11月)
発行所 日本貿易振興会
〒100 東京都千代田区千代田1-1-1
電話 03-3568-1111

◆特別輸出入券付

②



③



④

1976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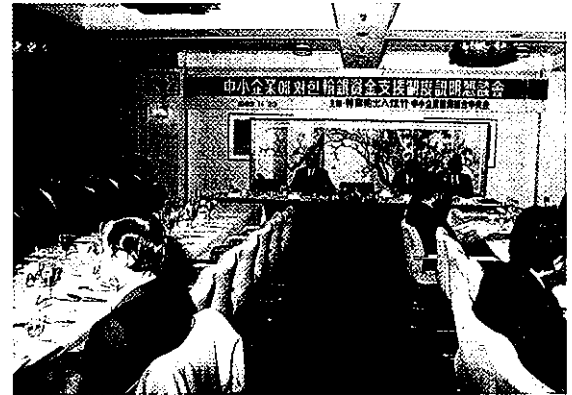
- ① 인도 ONGC와의
직접대충 융자협정 체결
(1983. 1. 25)
- ② 수출보험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1983. 7)
- ③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1983. 11. 23)
- ④ 3억달러 은행차관 도입계약 서명식
(1984. 7. 23)
- ⑤ 컴퓨터 가동식 (1984. 10. 24)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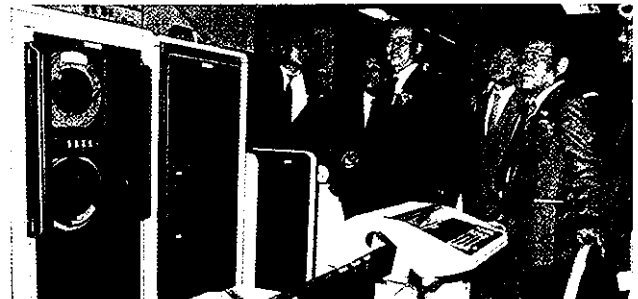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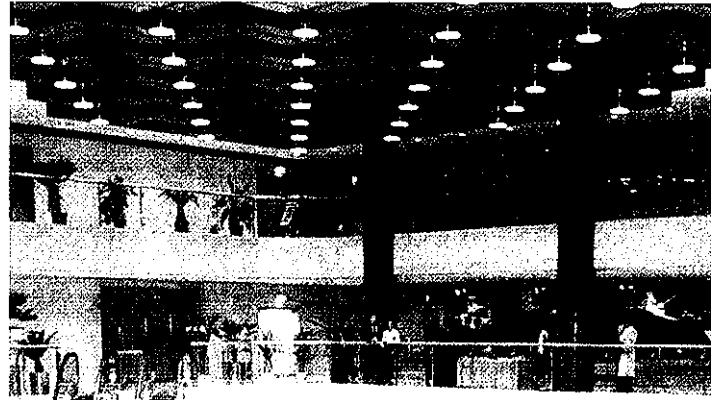
⑤

- ① 본점 신축 행사 준공식 (1985. 8. 31)
- ② 본점 신축 행사 이전 기념을 겸한
제40차 IMF/IBRD 연차총회 리셉션 개최
(1985. 10)
- ③ 본점 신축 행사 전경



①

②



③

1986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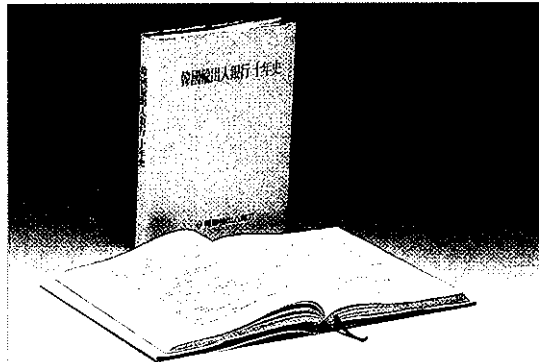
- ① 1억DM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1986. 3. 20)
- ② 한국수출입은행 10년사 발간 (1986. 7. 20)
- ③ 1986년의 1집 발간에 이은 국별투자환경 2집 발간 (1987. 7)
- ④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1987. 5. 20)



①



③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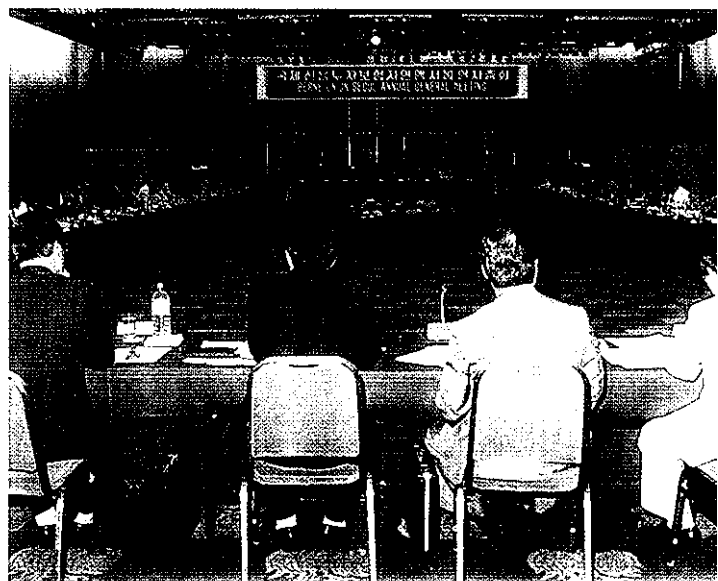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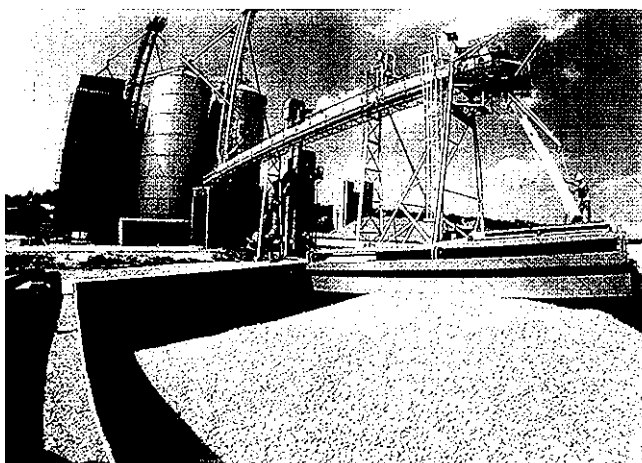


①

- ①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수탁 (1987. 6. 1)
- ②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 서울 연차총회 개최 (1987. 6. 8~13)
- ③ 수입금융 업무 개시 (1988. 3)



②



③

1986

1989

- ① 해외투자상담실 개설 (1988. 4. 10)
- ② 수은소식 창간
- ③ 첫 자회사인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개점 (1988. 8. 1)
- ④ 신가종 컴퓨터 도입 (1988. 10. 5)



④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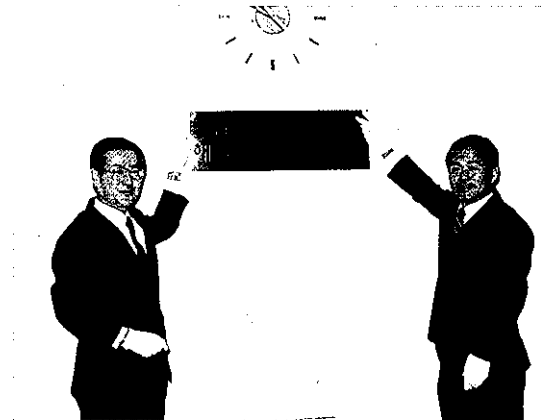
②



③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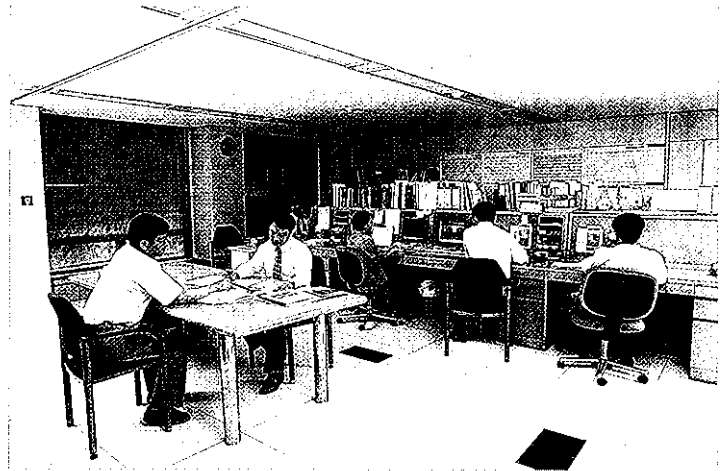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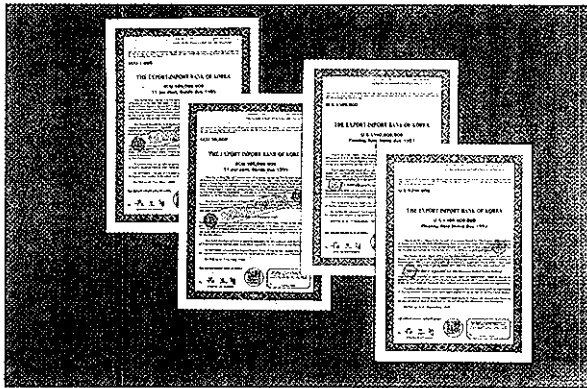
- ① 인도네시아 파당시 도로건설 사업 경험기금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정 체결 (1988. 11)
- ② 해외투자연구소 설립 (1988. 11. 15)
- ③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한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
(1989. 5. 29)
- ④ 파리사무소 개소 (1989. 12. 1)

1990

연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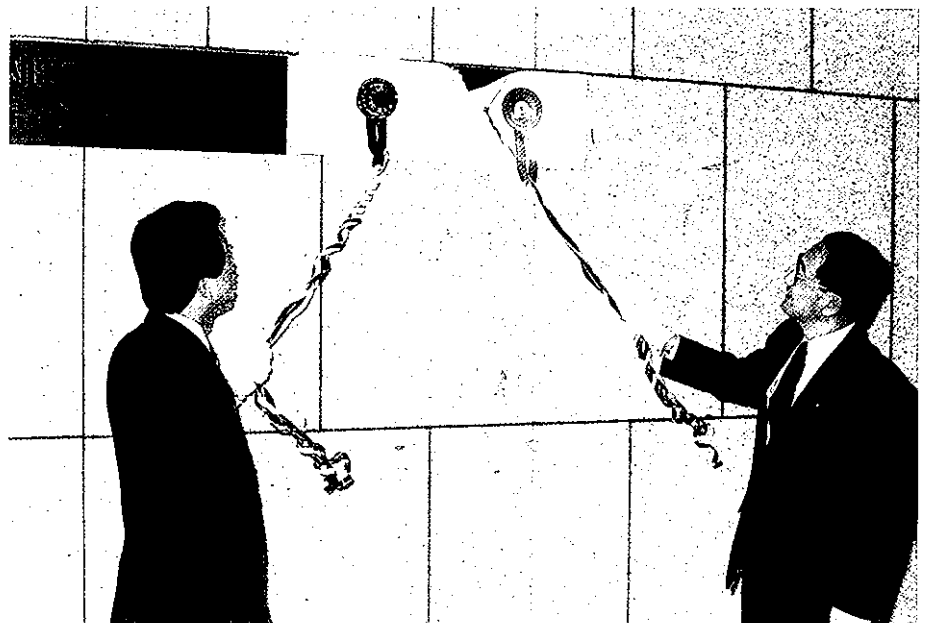


2



3

- ❶ 외국환평형기금 수탁, 운용
(1990. 8)
- ❷ 1억 500만 ECU의 ECU채권
(1990. 5) 및 1억달러
FRN(1990. 9) 발행
- ❸ 250억엔 엔화채권 발행
(1990. 12)
- ❹ 남북협력기금 업무 수탁
(1991. 3. 22)



4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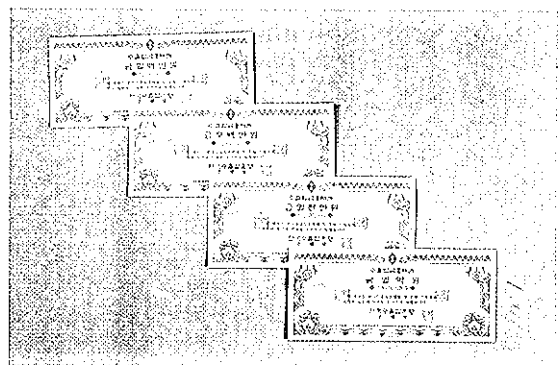


①

- ① 남북협력기금의 첫 지원사업인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코리아팀 (1991. 3)
- ② 구소련에 대한 8억달러의 소비재차관
공여계약 체결 (1991. 4. 16)
- ③ 사회주의권 최초의 사무소인
모스크바사무소 개소 (1991. 4. 22)
- ④ 처음으로 발행된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1991. 11)



③



④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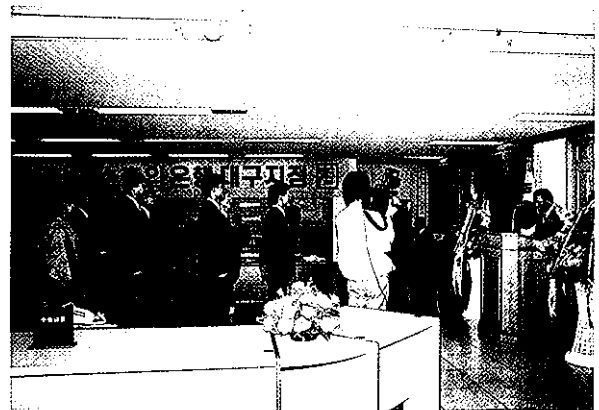
현 재



①



②



③



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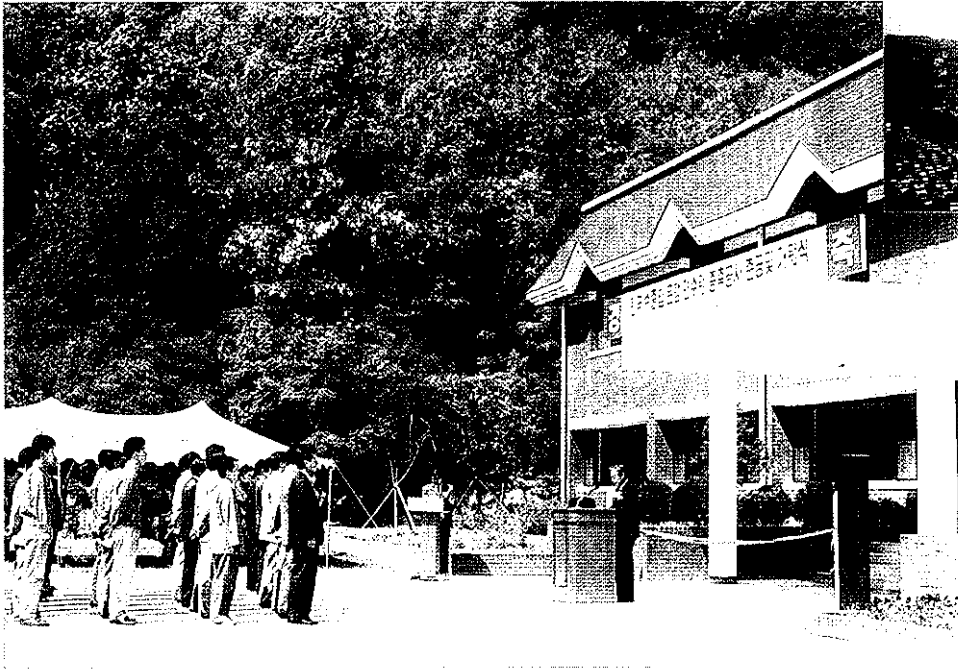
① 일본 수출입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
(1992. 5. 4)

② 지카르타 현지법인 개정 (1992.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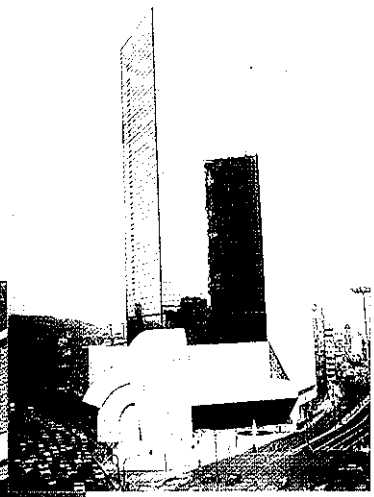
③ 대구지점 개점 (1992. 6. 30)

④ 수출보험공사 독립 (1992. 7. 7)

⑤ 런던 현지법인 개정 (1992. 7. 15)



⑤



①



④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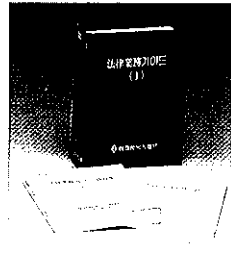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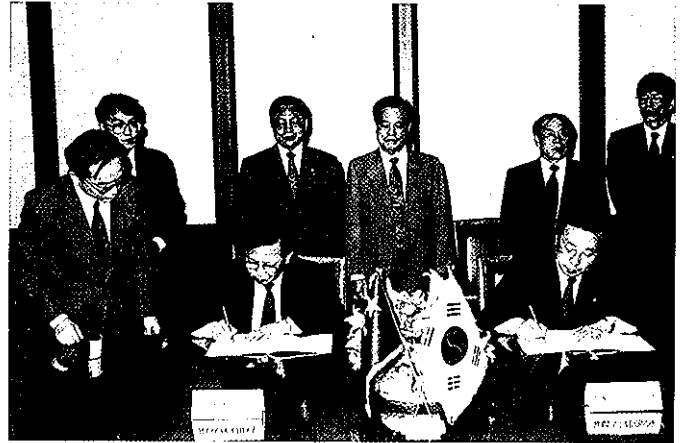
- ① 멕시코시티사무소 개소 (1992. 8)
- ② 북경사무소 개소 (1993. 2. 1)
- ③ 유럽부흥은행과 협조융자 기본협정 체결 (1993. 4. 26)
- ④ 파키스탄에 대한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 (1993. 5. 25)
- ⑤ 연수원 증축공사 준공 및 개원식 (1993. 6. 10)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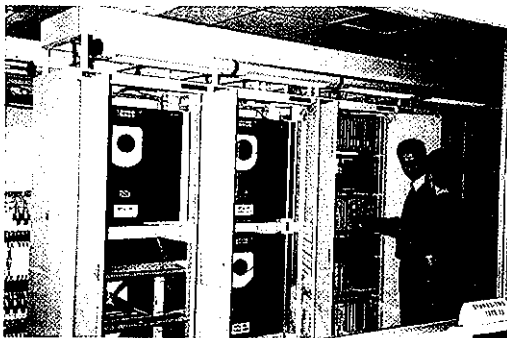
한재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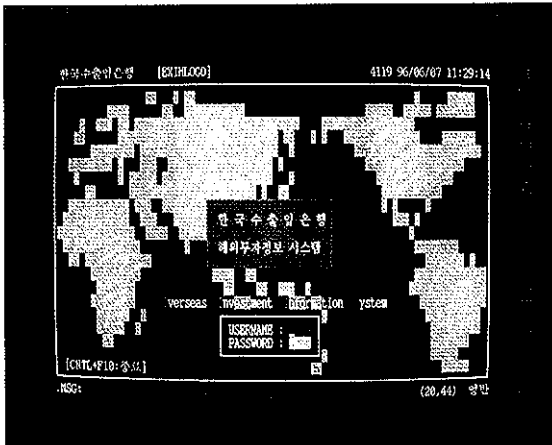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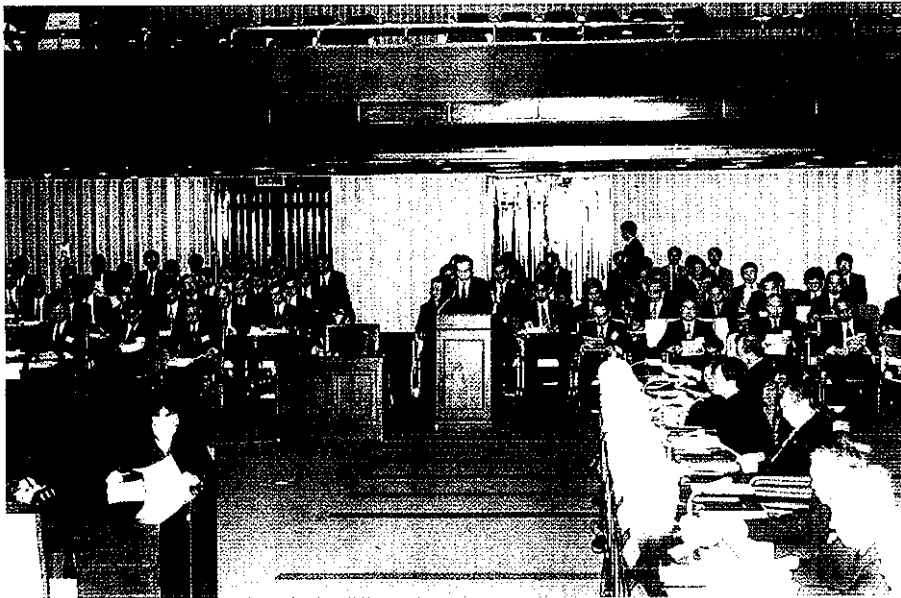
⑤

- ① 법률업무가이드 100호 발간 (1993. 7)
- ② 중국은행과의 직접대출
융자협정 체결 (1993. 12. 4)
- ③ 루마니아 통신망 현대화 사업 경험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정 체결 (1993. 12. 7)
- ④ 플랜트업계 대표 초청
간담회 (1994. 1. 21)
- ⑤ 워싱턴사무소 개소 (1994. 2. 1)

①



②



남북경제협력 실무 안내

남북경제협력 실무 안내

1994. 12

한국수출입은행

④



⑤

- ① 수은 해외투자정보시스템 (OIIS)
서비스 개시 (1994. 7. 1)
- ② 뉴델리사무소 개소 (1994. 9. 1)
- ③ 1994년도 국정감사 수감 (1994. 10)
- ④ 남북경제협력 실무안내 발간 (1994. 12)
- ⑤ 인도네시아 재무성과의 직접대중
유자협정 체결 (1995. 4. 12)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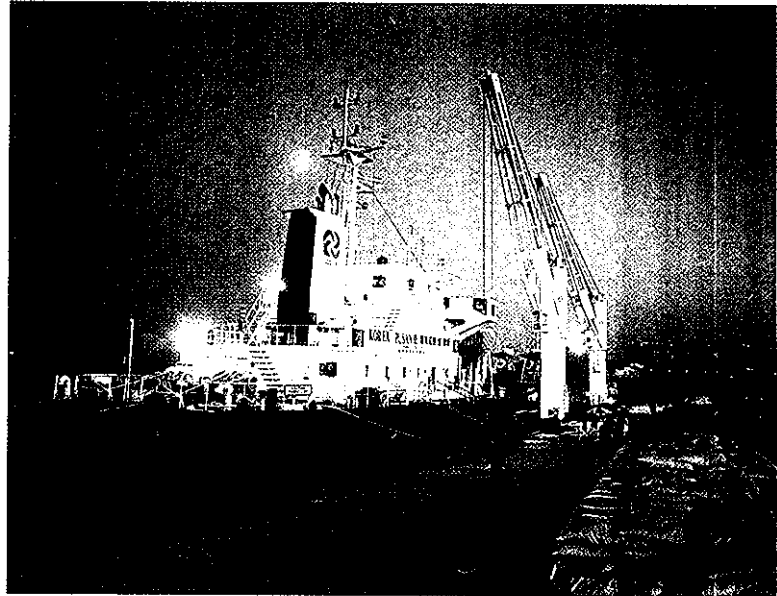
현 재



①



②



④



③

- ①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된
광주지점(위)과 창원지점(아래)(1995. 6. 23)
- ② 중국에 대한 제1차 경험차관
공여협정 체결 (1995. 7. 26)
- ③ 싱가포르 현지법인 개점식 (1995. 9. 14)
- ④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으로 북한에 제공된
쌀 선적 장면 (1995. 10. 7)

-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1995. 10. 20)
- ②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지원
1,000억원 돌파 기념 (1995. 11)
- ③ 글로벌본드 발행 (1996. 2)
- ④ 1996년도 제1차 자문위원회의 개최
(1996. 4)



①



③



②



④

제 1 장

韓國輸出入銀行의 創立

第1節 概觀

第2節 設立前史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

第4節 韓國輸出入銀行의 機能

第1節

概 觀

韓國輸出入銀行(이하 '수은' 이라 함)은 1976년 7월 1일에 설립되었으나, 설립의 근거가 된 韓國輸出入銀行法(이하 '수은법' 이라 함)이 제정된 것은 그보다 7년 전인 1969년 7월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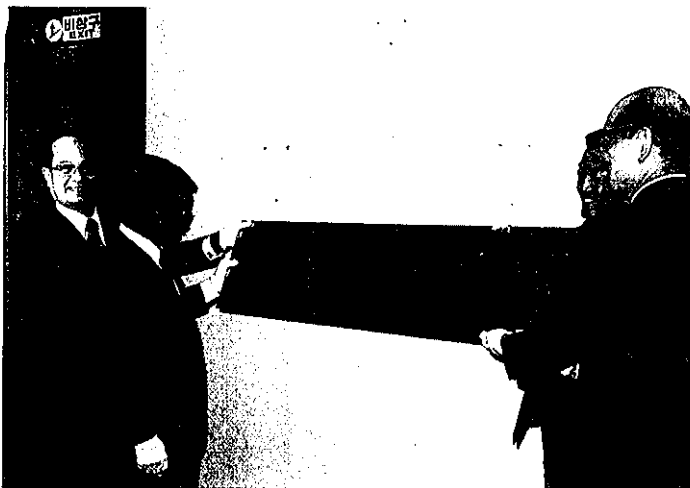
수은법이 제정된 1960년대 말 우리나라 경제는 경공업 위주의 輸出指向的 工業化 戰略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重化學工業化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는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상 처음부터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당시의 세계 자본재 시장은 1950년대 후반 이후 구매자시장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선진 각국의 公的輸出信用機關들을 중심으로 연불수출신용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추진된 수은법의 제정은 1968년의 제1차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의 연불수출을 적극 지원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를 계기로 급진전되었다. 정부는 재무부가 작성한 '中長期輸出 支援金融制度 確立方案'을 토대로 '한국수출입은행법안'을 마련하여 1969년 초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그 해 7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69년 7월 28일 법률 제2122호로 공포되었으며, 뒤이어 10월 6일에는 輸銀法 施行令이 대통령령 제4009호로 공포되었다.

수은 업무는 당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이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관계로 한국외환은행의 대행체제로 출발하여, 1971년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 개발을 위

한국수출입은행 현판식 (1976. 7. 1)



한 해외투자자금의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첫 지원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대항기간 중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1975년 후반 이후로서, 조선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가 진전되고 1974년 제1차 수은법 개정으로 수은의 지원기능과 자금조달 기반이 확충되면서부터였다.

1973년의 '重化學工業化 宣言'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은 본격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특히 1973~1975년의 대형 조선소 건설은 조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진전시켜 선박의 연불수출거래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으로 자원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주요 자원의 확보와 수출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외경제협력의 적극적인 전개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국민경제적 요구에 따라 1974년에는 제1차 수은법 개정이 이루어져, 주요 자원개발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이 신설되고 수입자금과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지원기능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자본금의 증액과 함께 출자자 및 차입선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자금조달 기반도 확충되었다. 또한 수은의 설립목적도 '외국과의 경제교류 촉진'에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촉진'으로 보다 폭넓게 규정됨으로써 수은법은 현재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수은법의 개정과 정부의 重化學工業 育成政策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1969~1974년 중 54억원에 불과하였던 수은 자금의 지원실적은 1975~1976년 상반기 중 43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중화학공업 제품의 연불수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1976년 4월 수은의 설립방침을 확정하고 곧이어 輸銀設立委員會를 발족시켰다.

그 후 3개월에 걸친 설립준비 과정을 거쳐 수은은 1976년 7월 1일 정식으로 발족되어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개도국으로서의 최초의 延排輸出金融 專營機關으로서 그 역사적인 출범을 알리게 되었다. 수은의 설립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일방적인 자본도입국의 위치에서 탈피하여 자본재 수출과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설립 초기 수은은 '重化學輸出 振興'의 경영이념하에 進取의 氣象과 人和團結, 自己啓發의 자세로 新生 輸銀에 부여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매진하였으며, 이러한 창업기의 경영이념과 사명감은 그 후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한 수은의 역할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은의 발전을 일관해온 밑거름이 되어 왔다.

수은 설립동기 신문공고 (서울신문, 1976. 6. 22)

設立登記公告

1. 登記日字 및 番號: 1976年 6 月 21 日
 第 15 號

2. 目 的
 申設機關의 資本 金과 外資의 出資에 對한 延排輸出 金融 業務의 專營을 爲한 機關으로서 設立된바 營業 範圍에 對한 延排輸出 金融 業務의 專營을 爲한 機關이다.

3. 名 稱: 韓國輸出銀行

4. 本店所在地: 서울特別市中國路286番地

5. 資本金: 金 1,500億圓

6. 納入資本金總額: 金 500億圓

7. 公告의 方法: 官報 및 서울新聞에 掲載한다.

8. 任員의 姓名

總行長 宋 仁 相

副 行長 李 泰 浩

理 事 元 裕 敏

監 事 朴 器 在

· 設法 장이 公告한
 1976年 6 月 日

韓國輸出銀行

銀行長 宋 仁 相

第2節

設立前史

1. 韓國輸出入銀行法の 제정

가. 제정 배경

우리나라 경제는 1962년 이후 ‘自立的工業化’와 ‘輸出振興’의 일관된 정책기조 위에서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960년대 후반에는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광공업과 수출부문의 급신장에 힘입은 것으로,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광공업의 비중은 1962년의 19.1%에서 1971년에는 29.9%로 증가하여 산업구조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수출규모 또한 같은 기간 중 5,670만달러에서 135억달러로 급증하였다.

한국의천은행의 수은 업무 대행 시업식
(1969. 10. 29)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는 공업구조의 급속한 개선을 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1967년에는 ‘機械工業振興法’과 ‘造船工業振興法’이 제정되었고 1969년에는 ‘電子工業振興法’, ‘石油化學工業育成法’ 및 ‘鐵鋼工業育成法’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위주의 공업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 생산액의 비중은 1961년의 26.3%에서 1966년 34.1%, 1971년에는 39.3%로

높아졌지만, 총수출에서 점하는 경공업 제품의 비중은 1966년의 48.6%에서 1971년에는 67.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렇듯 중화학공업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추진된 경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은 1960년대 후반 들어 국제수지 악화와 외채 증가, 기업의 부실화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업화 전략의 전환, 즉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수출산업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는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상 처음부터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당시 세계 자본재 시장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供給者市場(seller's market)에서 購買者市場(buyer's market)으로 전환되면서 수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출대금이 장기에 걸쳐 상환되는 연불조건이 일반화되었으며, 자국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연불조건을 제시하는 수출신용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신용경쟁은 선진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선진 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의 자본재 수출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전담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다. 즉 1919년에 영국이 輸出信用保證局(ECGD)을 설립한 이후 1934년에는 미국이 輸出入銀行을, 1945년에는 프랑스가 貿易銀行(BFCE)을, 1948년에는 서독이 復興金融金庫(KfW)와 輸出金融會社(AKA)를, 1950년에는 일본이 輸出入銀行을, 1952년에는 이탈리아가 中期信用中央金庫(Mediocredito Centrale)를 잇달아 설립하여 자본재 수출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었다.

1969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제정으로 연불수출금융 전담기관의 설립근거가 마련된 것은 당시 수출신용경쟁이 격화되고 있던 세계 자본재 수출시장의 여건하에서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수출산업화라는 절실한 과제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은법이 제정된 1969년을 전후한 시기는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체제가 구축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한국외환은행, 한국신탁은행, 한국주택은행 등의 특수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이 설립되었고, 미국 체이스맨해튼 은행의 국내지점 설치인가 이후 외국은행들의 국내진출도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관련법이 개정되어 자본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나. 제정 경위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의 연불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도입은 1964년에 정부가 '수출진흥 종합시책'을 수립했을 때 간단히 검토된 적이 있었으나, 연불수출금융 전담기관의 설립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에 상공부가 연불수출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면서부터였다.

이 해에 열린 제1차 輸出振興擴大會議에서 상공부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7개국에 선박, 버스, 기계류, 직물 플랜트 등 1,900만달러 상당의 연불수출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연불수출을 통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증대에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계기로 재무부는 '中長期輸出 支援金融制度 確立方案'을 수립하였고, 상공부는 '中長期 延拂輸出 振興方案'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장기 연불수출 지원을 위한 전담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수은의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재무부가 제시한 '중장기수출 지원금융제도 확립방안'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장기 연불수출 지원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을 설립하되, 당시의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수준으로는 당분간 업무량이 많지 않을 것이고 재정형편상 정부출자의 조속한 실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의 설립을 일단 보류하고 당분간 한국외환은행이 수은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비해 상공부의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방안'의 내용은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법을 제정하여 재정자금과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하되,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은행 또는 한국외환은행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독립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정부는 대부분의 자본재 수출국들이 자본재 수출지원을 위한 전담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불수출금융 업무의 내용이 특수하고 전문적인 점을 감안하여, 전담기관으로서 수은을 설립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재무부가 제시한 방안을 근간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韓國輸出入銀行法案의 주요 내용

1. 목적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담당함으로써 외국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을 통한 대외경제교류를 촉진함.

2. 성격

전액 정부출자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하며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자본금

300억원으로 함.

4. 임원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5인 이내, 감사 1인으로 구성함.

5. 업무

- (1) 국내업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 및 기타 제품 수출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2) 국내업자에 대한 기술제공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3)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수입자금, 기술도입자금의 대출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에 필요한 중요물자수입자금의 국내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5) 국내업자에 대한 해외사업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의 대출
- (6) 前 (1), (2), (4), (5)의 대출에 관련된 업무의 보증
- (7) 기타 부대업무
- (8) 자금의 조달
 - ①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 ② 정부,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③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상공부의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방안

목적	선박, 자동차, 기계류 등 자본재와 일반상품을 중장기 연불수출방식에 의하여 수출케 함으로써 거래방식의 다양화를 기하여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데 목적이 있음
결제조건	① 수출가액의 20%는 선적 전에 계약착수금으로 사전결제 ② 잔액은 6개월 이상 8년 이내, 연이자 7.5% 이상, 분할결제 ③ 잔액의 지불은 일류은행의 지급보증에 있어야 함
수출허가의 조건	① 정상결제방식으로는 그 거래가 성립되기 곤란한 특수사유가 있을 것 ② 상대방국가의 정치·경제정세가 안정하다고 인정될 것 ③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건전하다고 인정될 것 ④ 대상품목이 정상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⑤ 과당경쟁이 아니라고 인정될 것
자금지원	① 자본재 수출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 및 제조자금 지원 ② 선적 후 수출대전 수취까지의 자금 지원
기금설치	한국은행 또는 한국외환은행

6. 업무의 제한

- (1) 은행, 기타 국내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 (2) 대출, 할인 및 보증은 그 상환, 지급, 이행기한이 6개월 이상 5년 이내인 것에 한함.
다만 선박,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연장 가능
- (3) 차입 및 외채발행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로 함.

7. 손익금의 처리

- (1) 순이익의 100분의 50은 적립하고 잔여이익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입함.
- (2) 순손실은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함.

8. 경과조치

- (1)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한국외환은행이 이 업무를 담당하되 이를 한국외환은행의 본업무와 분리된 독립회계로 함.
- (2)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히금을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로 대체함.

이 법안은 1969년 초에 國事議 第343號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해 6월 국회재무위원회 심의시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7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7월 28일 법률 제2122호로 공포되었다. 뒤이어 10월 6일에는 수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4009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처럼 수은의 설립이 논의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수은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강력한 공업화 의지와 왕성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법 제정 이후 수은이 설립되기까지 6년여의 業務代行期를 거쳤다는 점에서도, 당시의 수은법 제정은 중화학공업 제품의 연불수출이 본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출진흥시책의 다양화를 통한 수출 신장, 나아가서는 공업화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의지를 반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수은 업무의 개시

수은법 및 그 시행령이 제정·공포된 후 수은 업무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수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韓國外換銀行이 대행하게 되었다. 이미 1969년 5월 中長期信用部를 신설하여 업무대행을 준비해 온 한국외환은행은 정부로부터 1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받아 같은 해 10월 29일부터 수은 업무를 개시하였다.

수은 자금의 지원은 업무대행 3년째인 1971년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3억 8,800만원의 해외투자자금을 승인함으로써 첫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1973년의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1974~1975년의 대형 조선소 건설로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1975년 후반부터였다.

중장기신용부

EXPORT CREDIT DEPT.

수은 업무 대행 전담부서였던 한국외환은행의 중장기신용부

2. 重化學工業의 육성과 延拂輸出時代의 序幕

가. 중화학공업화의 진전과 해외진출의 확대

(1) 중화학공업화의 진전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년)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두고, 1972년 12월 '工業構造改竄論'이라는 중화학공업 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는 한편, 상공부 주관하에 조선공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의 업종별 육성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어 1973년 1월 공포된 '重化學工業化 宣旨'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국가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는 중합제철, 대단위 조선소, 석유화학 콤비나트, 비철금속 제련단지, 일반기계, 자동차, 전자 등의 기간산업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 부문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22%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여 1976년에는 중화학공업화율이 48.6%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도 급신장하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1년의 15.6%에서 1976년에는 29.3%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같은 수출 증가

중화학공업화 선언 (매일경제, 1973. 1. 13)



는 전기·전자기기와 철강재, 운수장비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 중 운수장비의 수출실적은 선박·철도차량·자동차의 수출 호조로 1973년의 2,400만달러에서 1976년에는 3억 4,000만달러로 확대되어 가장 높은 수출신장률을 기록하였고, 전체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3.1%에서 15.1%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2) 조선산업의 수출산업화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선산업의 역할이다. 조선산업은 기계, 금속, 전기, 건축, 경화학 등 50여종에 달하는 연관산업으로부터 각종 자재와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조립하는 종합기계공업이며, 기술집약적인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처럼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인해 조선산업은 철강공업과 함께 중화학공업화의 선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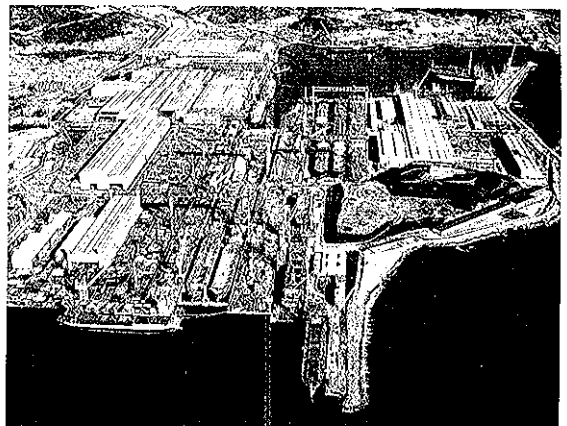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연혁은 1926년 설립된 方魚津鐵口所와 1937년에 설립된 朝鮮重工業(現 韓進重工業)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이한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부터였다.

1962년 당시 국내 조선소의 연간 생산능력은 木船과 銅船을 합쳐 新造 5만 973톤, 修理 64만 5,980톤의 보잘것없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실제 가동률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1900년대의 부산항 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정부는 조선불황을 타개하고 조선공업육성을 위해 1962년 大韓造船公社의 재건축을 포함한 '造船工業獎勵策'을 추진하였고, 1967년에는 조선산업에 대한 재정융자 조건의 개선과 수혜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造船工業振興法'을 제정하였으나 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제1·2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진한 수 차례의 조선산업 육성시책은 내수 중심의 소형 선박의 船腹量을 확대하는 데 그쳤으며, 시설의 근대화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선박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도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의 주요 부문으로 조선산업을 거듭 지정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가 울산에서, 대한조선공사가 옥포에서 대단위 조선소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현대의 울산조선소 건설은 당시 세계적으로 진행된 선박대형화 추세와 정부의 '長期造船工業振興計劃'에 따른 지원 확대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울산조선소는 1차 확장사업이 완료된 1975년 5월에는 연간 건조능력 376만DWT, 최대 건조능력 100만DWT의 초대형 조선소로 태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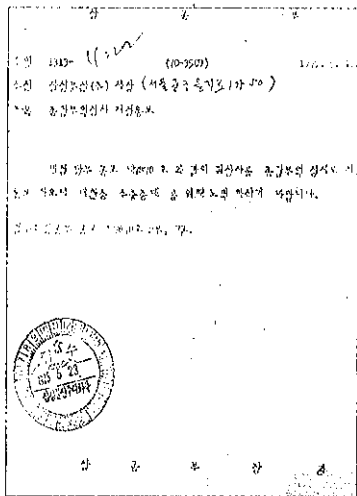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67년 대한조선공사와 대선조선(주)가 浮船 30척을 베트남에 첫 수출한 이후 어선과 화물선 등 중소형 선박의 수출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울산조선소의 건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출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제1차 석유파동과 해외진출 기반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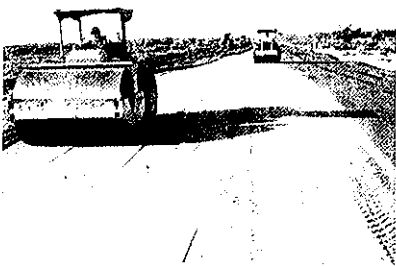
한편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선진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게 되면서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와 배타적인 경제블럭화 현상이 확대되었으며,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資源民族主義가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천연자원 등의 기초 원자재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중화학공업의 특성으로 인해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원자재 등 중요 물자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아울러 자원 확보와 악화된 교역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그동안 외자도입에 주안점을 두었던 수동적인 대외 경제정책은 자원의 확보와 해외시장의 개척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



종합무역상사 제1호 지정 공한



중동 지역 건설진출 제1호인 사우디아라비아
고속도로 건설현장

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건설 진출도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68년 인도네시아의 산림개발을 위한 투자를 효시로 하여 1970년에는 운수업과 무역업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졌고 1973년에 이르러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시작되었으나, 1975년까지는 연평균 600만달러 수준의 미미한 투자 실적을 보였다. 1975년에 정부가 '海外投資 許可 및 事後管理 要領'을 제정하고 종합무역상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1976년 이후 정착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편 해외건설 진출은 월남전 특수에 따른 군납건설 및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기계화시공 기술을 기반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건설로 동남아 진출의 문을 연 후 괌과 알래스카에 진출하였고, 1970년에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사이판 등 5개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이듬해인 1971년에는 네팔,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크메르 등지로 시장을 계속 확대해 1973년 이후에는 중동 및 동남아 지역의 건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중동 지역에 대한 건설수출이 활발해지면서 1976년에는 용역수출에 의한 순외화수입이 5억달러에 달했는데, 그 중 약 90%는 해외 건설수출에 의한 것이었다.

나. 연불수출시대의 서막

(1) 제1차 수은법 개정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인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대두된 대외경제정책의 전환 필요성은 수은 기능의 확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정 당시의 수은법으로는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수은의 자금사정 역시 유일한 국내재원이었던 정부의 재정형편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수은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되어, 제정 5년여만인 1974년 12월 26일과 1975년 2월 28일 각각 법률 제2736호와 대통령령 제7561호로 개정·공포되었다. 제1차 개정으로 수은법은 자본재의

연불수출과 해외투자 및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정책을 폭넓게 뒷받침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수은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은의 지원기능은 크게 확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수은의 설립목적도 폭넓게 규정되었으며 자금조달 기반도 크게 확충되었다.

우선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主要資源開發資金이 신설되고 수입자금과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대외경제협력자금과 외국 정부에 대한 對韓決濟資金이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입자금의 경우 연불수출에 필요한 원재료 등으로 국한되었던 지원대상 범위가 해외 수출입시장의 확보 및 개척에 필요한 重要物資로 확대되었고, 지원 가능한 중요 물자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지정되었다.

해외투자자금의 지원대상도 종전의 수출용 원자재 및 필수적인 기초 기자재의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에 더하여,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거나 해외 교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및 해외 수출입시장의 확보와 개척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해외에 제공되는 技術의 범위에 해외 건설공사를 포함시킴으로써 해외 건설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또한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포함한 수은 자금의 상환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에서 6개월 이상 10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신설된 주요자원개발자금과 대외경제협력자금의 대출기간은 20년으로 정하여졌다.

이러한 지원기능의 확충을 반영하여 수은의 설립목적도 '외국과의 경제교류 촉진'에서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과 對外經濟協力の 촉진'으로 확대됨으로써, 수은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화학공업화와 국제화를 뒷받침하는 막중한 임무를 새로이 부여받게 되었다.

한편 수은의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法定資本金은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정부로 국한되었던 出資者의 범위는 정부 외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수출업자의 단체 및 국제금융기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소요자금의 國內借入先도 출자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확대되고, 해외차입의 경우 외국의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외에 외국 정부로부터의 차입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개정 당시 1,500억원의 법정자본금은 국내 금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에 다

음가는 규모였다.

한편 수은 업무의 대행기에는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리한 조건의 연불수출 거래가 적지 않게 추진되었고, 이들 거래에 대한 지원여부는 개별거래의 채산성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재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한국의환은행 및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運營委員會를 두어 수은 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게 하였다. 한편 한국의환은행의 수은 업무 대행기에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2) 수은 업무 대행기의 지원상황

수은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은의 지원기능과 자금조달 기반이 크게 확충되고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은 자금의 지원실적도 급신장하였다. 1969~1974년 중 54억원에 불과하였던 지원실적은 1975년에 271억원, 1976년 상반기 중에는 16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대행기간 중 지원실적은 총 485억원을 기록하였다.

대행기간 중 지원된 수은 자금의 종류는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두 가지였다. 수출자금은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플랜트 수출로 알려진 승리기계제작소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織機 155대의 연불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3억 3,500만원이 대출된 이래 선박, 섬유기계, 목재기계, 철도차량 및 화차와 전화교환 시설 등에 지원되었는데, 선박수출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행기간 중 수은 자금으로 지원된 수출선박은 유조선 2척, 화물선 28척, 어선 15척 등 총 45척이었다.

해외투자자금은 1971년에 첫 대출이 이루어진 후 규모는 작지만 꾸준한 지원실적을 보였다. 대행기간 중 지원한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산림개발 투자와 200헥타르 경제수역 선포에 관련된 모로코와의 원양어업 합작투자, 대한조선공사의 노르웨이에 대한 船舶修繕 사업 등이다.

한편 197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연불수출거래는 취약한 경쟁력과 해외시장 개척 초기의 필요로 인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원대상 거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지원을 요청해 오는 사

우리나라 최초의 연불수출

우리나라 최초의 연불수출거래는 1971년 4월 승리기계가 아프가니스탄의 Kabul Textile사로부터 수주한 織機 155대 수출로서, 계약금액은 당시로서는 큰 105만 1,000달러. 연불조건은 선수금률 10%, 연불기간 7년, 연 1회 분할상환, 아프가니스탄은행의 지급보증 등 불리한 것이었지만, 연불수출 초기의 시장개척을 위해 1972년 1월 19일 경제장관담회에서 지원방침을 결정하였다.

대구에서 거행된 출하식은 첫 연불수출 거래의 감격만큼 인상적인 것이었는데, 앞뒤에 백차까지 동원되어 대구 시내를 한바퀴 도는 대대적인 카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단위 : 백만원)

	수출자금	선발	해외투자자금	계
1971			388	388
1972	1,158	793		1,158
1973	1,563	1,563		1,563
1974	1,568	1,312	752	2,320
1975	27,057	21,500	32	27,089
1976. 1~6	13,593	9,955	2,394	15,987
합 계	44,939	35,123	3,566	48,505

이처럼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자연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별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76년 3월에는 경제장관간담회의 결정으로 '1976년도 연불수출지원금융기준'이 수립되어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은 선박, 철도차량, 플랜트, 산업 기계로 한정되었고, 보다 유리한 연불조건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금률, 연불금리, 연불기간, 외자재의존율 등 지원대상 거래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수출계약 체결 30일 전까지 수은에 용자신청을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한편 업무대행 기간 중의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워서 매 대출승인시마다 자금조달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지원실적이 활발하지 않았던 1974년까지 수은 자금의 주요 재원은 정부의 지원자금이었으나, 1975년부터 지원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國民投資基金을 차입하기 시작하였고, 1975년 6월에는 한국은행이 한국외환은행에 출자한 500억원 중의 일부도 수은 대행업무의 재원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해외 수출입시장의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대외경제협력 증진의 차원에서 수은의 연불수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활용



1975년 뉴질랜드로부터 수주한 천도화차

76年度 延拂輸出金融支援基準制定實施

現在 韓國政府 環境省의 成立하고 있는 時 韓國政府 效率의 提高 計劃의 一環 として 이의 成立 建議을 提出한 것이고, 實지 爲하에 이의 成立 計劃을 全盤 整理해서 1993 年 爲하로 成立하고 있는 時 成立 計劃에 包含되어 있다.

1. 标题 标题是文章内容的集中概括, 是文章的眼睛, 也是文章的重要组成部分。
2. 导语 导语是文章开头的几句话, 它的作用是引出下文, 使读者对文章有一个初步的了解。
3. 正文 正文是文章的主要部分, 它包括文章的主体和结尾。正文的内容要充实, 条理要清晰, 语言要生动。
4. 结尾 结尾是文章的最后一部分, 它的作用是总结全文, 使文章有一个圆满的收场。
5. 附录 附录是文章的附加部分, 它包括一些与文章相关的资料, 如参考文献、注释等。
6. 参考文献 参考文献是作者在文章中引用的文献, 它包括书籍、期刊、报纸、网络资源等。

韓國外換銀行 銀行長 金 泰 殷

1976년도 연분수출지원금융기준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

1. 設立 背景

가.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 진전

정부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조선소의 준공을 계기로 조선산업의 수출산업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박을 비롯한 철도차량 등 운수장비의 수출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또한 제1차 석유파동과 수에즈 운하의 재개통을 계기로 불어닥친 세계 조선시장의 불황으로 연불조건의 선박수출이 일반화됨

에 따라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중화학공업 제품의 연불수출이 본격화되자, 한국외환은행의 대항체제로는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불수출금융 전담기관인 수은을 별도로 독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는 1976년 수은의 설립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설립준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한국수출입은행 개업식



나.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와 연불수출금융

수은의 설립배경을 살펴봄에 있어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갖는 특성과 연불수출금융의 의의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는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을 극복하고 이들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육성 초기단계부터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은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갖는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인해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첫째, 경공업 제품은 수요와 공급의 양면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선진 각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따라 수출시장의 유지와 확대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데 비하여,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수입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설비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입국의 지향이 탈해 시장개척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둘째, 중화학공업은 관련산업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와 노동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생산재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셋째, 플랜트나 기계류 등의 수출시에는 건설, 시공, 엔지니어링, 노하우 등 기술 영역이 함께 수출되어 외화기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원료, 부품 등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부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경공업 제품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었다.

첫째,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그 대부분이 자본재 내지 내구성 소비재로 구성되어 통상 수출거래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외환사정이 비교적 어려운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대규모 연불수출금융의 지원이 요구되었다.

둘째,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가격 외의 경쟁요인, 특히 금융조건이 국제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조건은 수출가격과 같이 계량비교가 가능한 직접적인 경쟁력 요인인 관계로, 당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연불수출금융의 공여는 다른 분야의 경쟁열위를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셋째,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주문생산인 경우가 많고 제작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수출가격 見積時와 引渡時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수반되는 관계로 수출자는

상당한 자금부담을 안게 되어, 연불수출금융의 지원 없이 연불수출을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에 있어 연불수출금융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선진 각국은 이를 전담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선진 제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를 달성해야 했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은의 설립은 긴요하고도 불가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設立 經緯



수은설립위원회 회의 장면

수은의 設立方針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976년 4월 8일이었지만 설립을 위한 준비는 1975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제1차 수은법 개정으로 신설된 임시운영위원회는 1975년 2월 20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대행준칙'을 제정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수은의 설립에 대비한 제반 준비업무를 취급하여 수은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후 정부는 1975년 7월 한국외환은행의 중장기신용부를 기획부와 업무부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수은의 설립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976년 4월 10일에는 수은설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수은설립위원 명단

위촉연월일	구 분	성 명	직 위
1976. 4. 10	위원장	남상진	재무부차관
1976. 5. 14	"	조충훈	재무부차관
1976. 4. 10	부위원장	허영기	한국은행 부총재
"	위 원	고병우	재무부 재정차관보
"	"	박필수	상공부 상역차관보
"	"	허동선	재무부 이재국장
"	"	정인용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	"	홍원모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1976. 5. 14	"	송인상	한국수출입은행장
"	"	이태호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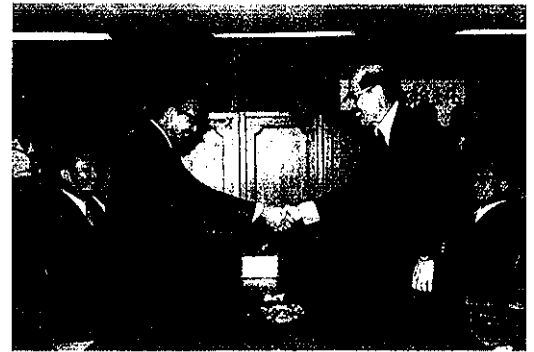
수은설립위원회는 1976년 4월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설립사무국장을 임명하고 한국외환은행 직원 12명을 4개 반으로 편성한 설립위원회 사무국을 발족시켜 수은

설립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어 1976년 6월 1일의 제2차 회의에서는 수은 설립 예산안과 수은의 정관을 의결하고, 6월 10일자로 이 예산안 및 정관안에 대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수은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286번지(대우센터 빌딩 16층)으로 하는 것도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정부는 1976년 5월 12일자로 수은의 초대 은행장에 송인상씨를 임명하고, 6월 1일에는 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각각 임명함으로써 수은의 초대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1976년 6월 17일에는 수은의 자본금이 최초로 납입되었는데, 한국은행이 200억원을 출자하고 한국외환은행이 대출금 300억원을 수은의 자본금으로 전환시켰다. 정부도 한국외환은행의 수은 계정에 올라있던 재정자금 대출금 53억원을 6월 21일자로 수은의 자본금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같이 수은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이 마무리되자, 수은설립위원회는 1976년 6월 21일자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수은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6월 22일에 그 내용을 서울신문에 공고하였다. 수은설립위원회는 수은법 부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1976년 6월 23일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수은 설립에 관한 사무일체를 인계하였으며, 7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 수은 설립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확정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은설립위원회는 그 임무를 종료하였다.

재무부장관이 수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은의 업무개시일을 1976년 7월 1일로 지정함에 따라 수은은 이날 정식 발족되어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의 업무인수식 (1976. 7. 1)

3. 新生 輸銀의 역할과 과제

수은은 3부 1실의 작은 조직과 전체 임직원 80명의 소수 인원으로 출범하였으나, 그 설립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최초로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전담하는 수은이 설립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일방적인 자본도입국의 위치에서 탈피하여 자본재 수출과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수은이 설립되기 직전인 1976년 6월에 발표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1981년의 수출목표 130억달러 중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을 60억달러로 정하고, 계획기간 중의 연불수출액을 27억 6,000만달러로 계상함으로써 신생 수은에 부여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실감케 하였다.

또한 국내 주요 일간지 등 언론에서도 사설과 특집 기사를 통해 수은의 탄생을 시의 적절한 것이라 평하고, 이를 계기로 輸出立國의 기반이 한층 공고해질 수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명실상부한 대형화와 국제화의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확대되는 자금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본금의 증액 등 자금조달 노력을 강화하고, 거액의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수은의 주요 의사결정이 국가전략적 차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牽引車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은의 개업식에서 金龍煥 재무부장관이 행한 치사는 당시 신생 수은에 거는 기대와 과제를 잘 말해주고 있다.

수은 설립에 관한 국내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특집기사



"석유파동을 계기로 나타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과거의 단순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에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중화학공업 특히 기계, 선박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앞으로 예상되는 후발 개도국의 왕성한 자본재 수입수요에 부응하여 중장기 연불거래를 통한 자본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원정세에 대처하여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중동 등 자원보유 개도국의 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원자재의 장기 안정적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중장기신용에 의한 수출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수은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민경제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수은이 그 부여된 사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가속적인 자금수요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자체조달을 강화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출자와 국내에서의 자금조달만으로는 어렵고 아직도 우리는 개발을 위한 자본수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어음할인이나 기채를 통하여 중장기 해외자본의 도입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은은 후발 개도국에 대한 신용공여나 투자를 통하여 수출시장의 개척을 도모하는 한편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신용과 국제금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 도입에 일익을 담당하는 금융국제화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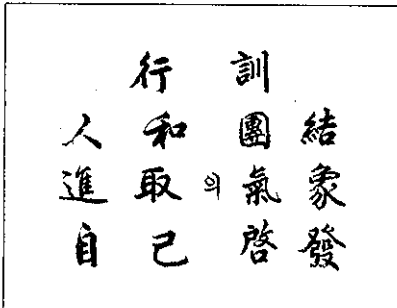
둘째, 중장기신용 기술의 개발에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금의 회전기간이 길고 단위당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험부담 또한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수출산업의 장기적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장기 기업재무분석 및 신용조사 기술의 개발은 물론 안정적인 여신의 사후관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경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산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새로운 전략수립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데에도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무부장관의 개업식 치사

4. 設立 當時의 經營理念



설립 초기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행훈

수은은 설립 이튿날인 1976년 7월 2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소집, 운영위원회규정, 직원임용규정, 직제분과규정, 회계규정 등 24개 규정을 제정하여 경영의 기본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설립 초기에 行歌, 行訓, 行旗, 徽章, 캐치프레이즈 등을 정하여 신생 수은의 경영이념 체계를 마련하였다.

당시 수은의 경영이념은 '重化學輸出 振興'이라는 은행 캐치프레이즈로 집약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념으로서 '進取의 氣象, 人和團結, 自己啓發'을 행훈으로 정하고 휘장도 '수출입'의 '수'자를 형상화한 도형으로 결정하였다. 행기는 설립 당시 수은 임직원이 느꼈던 사명감과 긍지를 생생히 담아내고 있다.

1. 거래의 힘과 열로 뭉쳐진 조국

근대화 물결 타고 앞장서 간다.

새 역사 창조하는 오늘의 역군

중화학공업으로 터전을 닦자.

2. 세계의 열강 속에 어깨를 걸고

조국은 끊임없이 번영해간다.

자랑스런 우리 공업 우리 기술로

지구 위 어디든지 주름을 잡자.

(후렴) 뭉쳐서 개발하라 뻗어나가라. 앞서가는 새 일꾼 수출입은행

한편 宋仁相 초대 은행장은 개업식 식사를 통해 '투자재원의 극대화, 산업구조의 중화학공업화 촉진, 금융국제화를 선도할 인재의 양성, 세계경제에 대한 정보활동 강화'를 4대 경영방침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개업식 식사 중 일부이다.

행가의 작사·작곡자

수은 행가의 작곡가는 故 李興烈씨이며, 최초의 작사자는 嚴基元씨.

당시 한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의 '洞歌'를 작사·작곡하였던 인연으로 수은 행가를 만들게 되었다.

'바위고개', '어머님의 마음', '고향 그리워' 등 주옥같은 가곡을 남긴 이흥렬씨의 곡이 대부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인데 비해 수은의 행가는 힘차고 진취적인 느낌이 잘 나타나있다.

작사자인 엄가원씨는 훗날 '수은소식'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은의 이미지 창안에 무척 고심하였다"고 술회.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입국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요청을 잘 표현하였던 행가 가사는 1994년 2월, 세계화 시대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담아내기 위해 새롭게 바뀌었다. 행내공모를 통해 새옷을 입은 행가 가사의 작사자는 이병창 대리.

“오늘은 중장기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새로 출범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두고 빈곤과 후진의 명예를 둘러싼 아시아 전통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와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세대로 불리우는 1960년대에 들면서부터 정부 당국의 적절한 시책과 국민의 강인한 개발의지가 잘 조화되어 이제 마침내 중진국 대열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간수출 65억달러, 1인당 GNP 600여달러, 그리고 산업구조상의 제조업 비중 26.6%로 마크되는 오늘의 한국 경제의 좌표, 이것은 얼핏 당연한 일같이 생각되기 쉽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개발계획이 처음으로 시작된 1960년대 초만 해도 하나의 먼 꿈이요 미래상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풍요와 번영이 약속된 대망의 1980년대를 겨냥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한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서둘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장하고도 벅찬 시대적 임무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한국수출입은행은 바로 이러한 한국경제사적 좌표 위에 그 설립의 배경과 의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은 앞으로의 연불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해외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적 측면에서는 중화학공업화를 촉진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명 題字

우리은행의 현판과 각종 발간물 등에 새겨진 은행명 題字는 1976년 5월 20일 서예가 김충현씨에게 위촉하여 받은 휘호이다.

이 제자의 서체는 古體로서 訓民正音과 龍飛御天歌 원본의 서체를 본뜬 것이며, 작가는 당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수운의 특성에 착안하여 古體가 주는 중후한 이미지를 살렸다고 한다.

은행 徽章

상하 대칭의 화살표 형상인 휘장은 수출입의 신장과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휘장 결정과정에서 輸出入의 '出' 자를 취한 나무 '木' 과 유사한 모양(단순화되고 정돈된 형상으로 서비스업의 특성 표현)과 중후한 느낌의 金庫모양(고객에게 가장 안전한 금고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이 후보로 거론되었다.

남철

小職の任に就いて、今も光榮の
 位に在り、此の位に在るは、當行に
 對する 使命を盡し、國家の
 発展に對する 誠意の表示、人々の
 心を 安んじ、進取の勇氣、奉仕の
 精神、當行の 発展、人心を 鼓舞
 する 爲め、國家の 発展に 寄與し
 たい、此の 爲め、努力を 怠らな
 い、

西一九七九年 九月 二二日

代表
 朴正熙 全石

개업식 직원선서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은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경제를 세계경제의 대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당행의 설립은 공업국으로 발돋움하여 이제 남에게 도움을 주게되는 새로운 한국상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발족하는 우리은행의 앞날에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확보 문제를 비롯하여 금융의 국제화를 명실공히 이룩하기 위한 인력개발 문제, 그리고 급변하는 해외 경제정보를 신속,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문제 등이 우선 당면문제로 떠오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당행이 그 부하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몇 가지 경영방침에 대하여 소신의 일단을 피력코자 합니다.

첫째, 본인은 앞으로 당행의 투자재원을 극대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급증할 연불수출 수요와 해외자원의 개발자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할 뿐더러 해외투자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당행이 이러한 대출재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에 바로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원확보의 길은 국내적으로는 정부출자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자 또는 차입 그리고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최대한의 자금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당행의 재원확보의 상당한 부분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당행의 여신정책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중화학공업화를 촉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는 3차에 걸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를 이룩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경공업이 주종을 점하고 있어 불안정한 해외시장의 기반 위에서 낮은 외화가득률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의 우리나라 대외경제 여건을 살펴볼 때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보호주의와 경제불확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주로 경공업 분야에서 심한 도전을 받을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수출전략은 국민경제의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고 외화가득률이 높으며 산업간의 파급효과가 큰 중화학공업 제품의 개발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당행의 여신정책의 방향은 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의 국제화에 역군이 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길러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무릇 어느 기관이나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인 만큼 그 기관의 성패는 오직 그 기관을 움직이는 사람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행은 대외 연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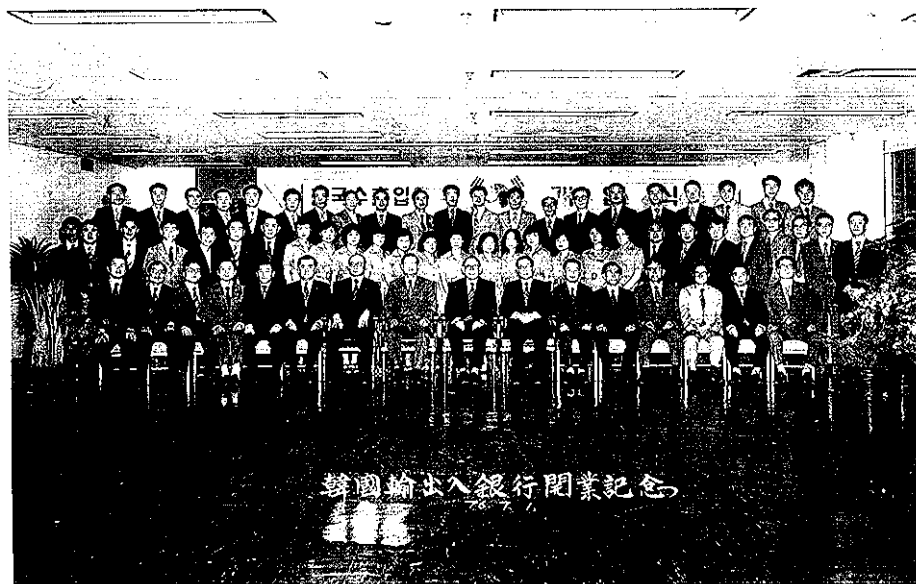
출과 해외자원의 장기적 확보 및 대외경제협력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만큼 금융의 국제화는 명실공히 국제수준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국제화를 위한 금융기술 개선과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오늘날과 같이 격동하는 세계경제 사정 아래서 당행의 설립목적과 국가이익을 최
대한으로 추구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외 경제동향을 신속·정확히 파악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해외경제의 변동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만큼 본인은 앞으로 이
방면의 정보수집·분석 및 종합적 판단에 힘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관계당국에서도 이 점
에 관하여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이상 본인은 당면한 경영방침의 줄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한국경제 발전의
한 이정표로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록 임직원수는 적지만 우리들
은 한 가족처럼 서로서로 도와서 각자의 기술과 지식능력을 부단히 개발하고 창의를 진작
하면서 생산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하고 또한 급변하는 국제
금융환경 속에서 낙후됨이 없이 항시 자기계발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설립 당시의 經營理念과 임직원의 使命感은 그 후 대내외 환경에 부응한 수은 역할
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은의 발전을 일관하는 밑거름이 되
어 왔다.

한자리에 모인 수은 창립 주역 (1976. 7. 1)



第4節

韓國輸出入銀行의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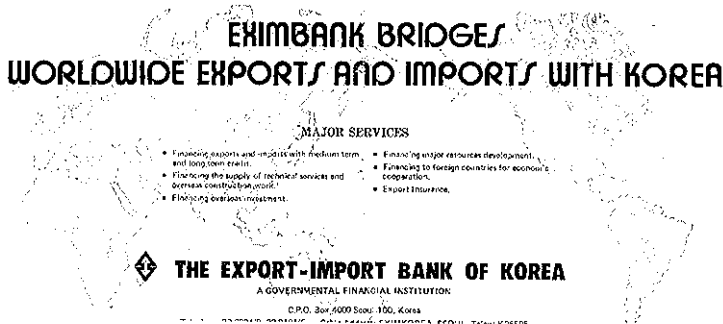
1. 輸銀法上的 機能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은의 역할과 기능은 수은법 제1조의 설립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하는 데 있다. 資本財 輸出의 진흥과 海外投資의 촉진, 資源의 안정적 확보와 對外經濟協力の 증진으로 요약될 수 있는 수은의 역할과 기능은 1969년의 수은법 제정 이후 1974년과 1977년, 그리고 1986년 세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국민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

수은이 資本財 輸出의 진흥이라는 기능 외에 해외투자의 촉진과 주요 자원의 확보,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이라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이들 기능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다소비형인 중화학공업 제품의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자재 등 주요 자원의 안정적

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해외투자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시장의 개척 및 수출기업의 장기적인 국제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산업구조 조정방안으로서의 의의도 갖는다. 또한 상호 의존성이 날로 커지는 세계경제의 추세 속에서 개도국을 포함한

설립 초기의 홍보광고



주요 상대국과의 호혜적인 협력기반의 구축은 수출 및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립 이후 지난 20년간 수은이 담당해 온 국민경제적 역할과 기능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국제화되어 온 발자취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수은의 기능이 갖는 국민경제적 의의와 지원자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본재 수출의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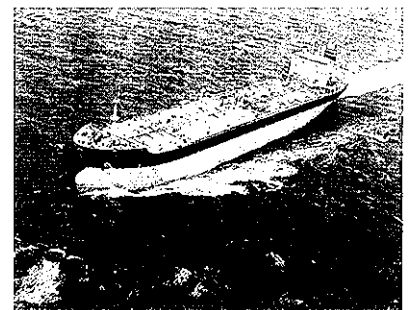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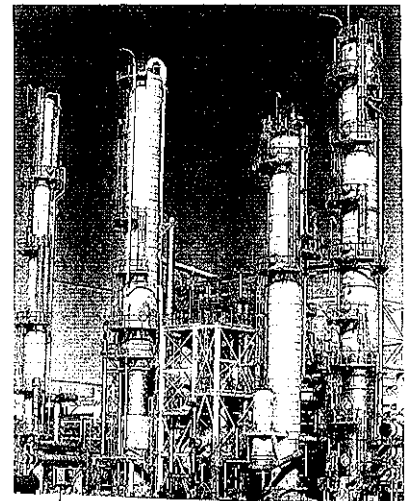
선박, 플랜트, 기계류 등 자본재의 수출은 기술개발과 고용창출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국민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자본재 수출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반상품의 경우보다 수출시장의 개척이 용이하고 외화가득률이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본재의 수출가격은 거액인 데 비해 주요 자본재 수입국인 개도국들의 경우 현금결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수출대금의 결제에는 일람불거래 방식보다 연불거래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재 수출의 대외경쟁력은 가격과 기술수준 외에 금융조건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며, 특히 경쟁이 치열할수록 금융조건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수은은 그동안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한 선진국 수출신용기관과의 어려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자본재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유리한 조건의 수출금융을 공여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왔다.

수은은 자본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供給者信用(supplier credit)과 購買者信用(buyer credit)의 두 가지 방식의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공급자신용이란 자본재의 제작자 또는 수출자에게 수은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구매자신용이란 외국의 수입자가 수은 대출의 차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공급자신용에는 자본재의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작자에게 대출하는 製作金融과 연불수출대금을 수출자에게 대출하는 延拂金融의 두 가지가 있는데, 수은은 주로 연불수출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람불거래의 경우에도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제작금융을 공여하고 있다. 한편 구매자신용에도 두 가지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直接貸出(direct loan)은 외국의 수입자에게 연불대금을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이며, 轉貸資金貸出(re-lending facility)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외국 구매자에게 수입 결제자금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소 규모의 자본재 수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 해외투자의 촉진



최근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주의 경향도 동시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해외투자가 갖는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투자 초기의 자원개발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투자대상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산업구조의 조정을 원활히하고 국제수지의 탄력적인 관리를 꾀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海外投資는 자본, 기술, 경영의 집합체인 기업 자체가 해외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상품수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해외투자기업은 언어와 사회관습 등 사업 환경이 판이한 외국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게 되고 투자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특성으로 인해 사업수행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의 금융지원과 함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수은은 설립 이래 정부의 해외투자정책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및 정보를 지원하여 왔다. 수은의 해외투자금융은 크게 海外投資資金貸出과 海外事業資金貸出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해외투자자금대출은 해외에서 法人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해외사업자금대출은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국내 기업이 직접 또는 지사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투자자금대출은 주로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법인에 대한 출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밖에도 이미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투자법인에 대해 장기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그리고 외국의 합작기업이 투자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본래의 해외투자사업 지원제도

이외에 수은은 역외금융이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서도 이미 진출한 투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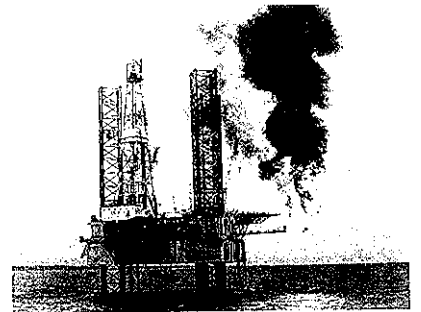
다.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국내소비용 뿐만 아니라 수출용 원자재도 수입에 크게 의존해오고 있다. 한편 세계 자원시장은 부존자원의 유한성과 지역적인 편재 및 자원보유국들의 資源民族主義 강화 등으로 공급면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는 반면, 자원에 대한 수요는 인구의 증가와 경제규모의 확대, 자원나소비형 산업의 발달 등으로 계속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자원 및 중요 물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 매우 긴요한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해외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필요한 자원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하는 單純輸入方式과 자원보유국에 진출하여 자원의 탐사와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생산된 자원을 장기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開發輸入方式의 두 가지가 있다. 자원의 개발수입은 단순수입에 비하여 필요한 자원을 안정된 가격으로 장기간 수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사업수행에 장기간의 시간과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투자사업이라는 면에서 각종 위험이 수반된다. 또한 자원개발에 성공한 다음에도 국제 자원가격의 등락에 따른 판매면에서의 위험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원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수은 자금과 같은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수은은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술한 해외투자자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지만, 자원개발사업이 통상적인 해외투자사업보다 자본의 회입기간이 길고 사업수행에 따르는 위험도 큰 점을 감안하여 일반 해외투자자금보다 대출기간이 긴 主要資源開發資金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수은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석탄, 원유, 원목, 양곡 등 주요 자원의 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이 자금은 상환의 확실성을 진제로 하는 다른 자금과 달리 국민경제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최장 20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은은 수은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重要物資 및 主要資源의 단순수입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수은은 설립 후 10여년 동안은 자



원의 단순수입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원보유 개도국들이 외국 기업에 의한 자원개발사업을 점차 제한하게 됨에 따라 단순수입방식에 의한 자원확보가 긴요해져, 1988년부터 중요 물자와 주요 자원의 수입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

수은이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자본재 수출이나 해외투자사업 또는 자원개발사업 등도 우리나라와 거래상대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들 거래나 사업의 지속적인 증대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통한 호혜적 협력기반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자원빈국으로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주요한 무역 및 투자 상대국인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수은은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은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技術提供資金貸出과 제8호의 對韓決濟資金貸出 및 제18조 제2항 제2호의 對外經濟協力資金貸出이 그 범주에 속한다.

기술제공자금대출은 외국에 기술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기업에게 대출하는 제도로, 수은법상 해외 건설공사도 기술제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술제공자금의 지원실적은 미미한 실정인데, 이는 외국에 전수시킬 만큼 발전된 우리나라의 기술분야가 많지 않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건설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대한결제자금대출은 우리나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국가가 국제수지상의 문제로 수입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 당해 외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에 그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외경제협력자금대출은 해외 특정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기업 또는 상대국 정부 등에 대출하는 제도이다. 위의 두 자금에 대한 지원실적은 설립 이래 전무하였는데, 수은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과의 유사성 때문에 지원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 政府代行 및 受託業務의 수행

수은은 자본재 수출, 해외투자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고유기능 이외에도 對外經濟協力基金(이하 '경협기금'이라 함)과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은은 1977년부터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까지 16년간 수출보험 업무를 대행하였다.

경협기금, 남북협력기금 및 수출보험 업무는 각각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및 수출보험법에 근거하는 업무로서, 수은법에 근거하는 수은 업무와는 별개의 업무이다. 수은이 이들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게 된 것은 수은의 업무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적 자원이 유사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출과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적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도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요청이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개도국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던 1986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87년 6월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협기금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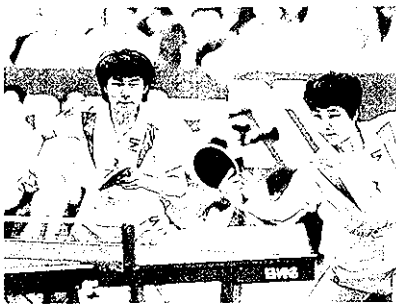
경협기금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開發事業借款이나 機資材借款 등의 차관을 제공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협기금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개도국에서 농림업, 수산업, 탄광업 등과 같이 사업의 위험도가 높고 수익성



이 낮은 해외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장기 저리의 해외투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협기금의 운용주체는 재정경제원장관이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또는 중요 협력사업의 지원결정 등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은은 경협기금법 제9조 및 그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협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부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은은 경협기금의 관리, 지원요청 사업의 심사, 차관계약의 체결, 자금지출 및 사후 관리 등 실무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전담부서로서 경협기금부를 두고 있다.

나. 남북협력기금 업무



南北協力基金은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정부출연금 및 재정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며, ① 남북한간의 주민 왕래, 문화·학술·체육협력 등 인적 교류사업에 대한 무상지원 ② 교역과 경제협력 사업 등 경제적 교류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③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대금결제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남북협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정부부처는 통일원이며, 통일원장관은 관계부처의 차관들로 구성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기금운용 계획 및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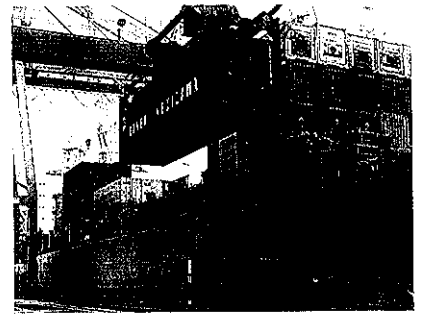
수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부로부터 수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금의 관리, 지원사업의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의 전담부서로서 남북기금부를 두고 있다.

다. 수출보험 업무

輸出保險은 무역 또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非常危險(political risk)과 信用危險(commerci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비상위험이란 수입국 또는 투자대상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 등 수입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위험을 말하며, 신용위험이란 수입자의 파산 또는 대금 지급 거절 등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위험을 말한다.

1968년 12월에 제정된 수출보험법에 근거하는 수출보험 업무는 1969년 1월부터 약 8년간은 당시 大韓再保險公社(현재 大韓再保險株式會社)가 정부를 대신하여 맡았으나, 수은의 설립과 함께 수은의 중장기 수출 및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1977년 1월부터 수은이 수출보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수은은 1992년 7월 韓國輸出保險公社가 설립되어 수출보험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약 16년간에 걸친 대행기간 중에 해외투자보험, 해외건설공사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등의 새로운 보험종목의 개발과 포괄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수출보험 업무를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크게 발전시켰다.





제 2 장

우리나라 經濟의 發展과 韓國輸出入銀行

第1節 概觀

第2節 經濟開發計劃의 추진과

輸出支援體制의 기반 구축

第3節 重化學工業의 육성과 輸銀

業務基盤의 확립

第4節 國際收支 黑字 전환과

輸銀 支援機能의 다양화

第5節 經濟의 國際化 진전과 輸銀의

對外去來 專門 支援體制 구축

第1節

概 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연평균 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1962년 87달러에 불과하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에는 1만달러를 넘어서게 되었고, 수출규모도 1962년의 5,500만달러에서 1995년에는 1,000억달러를 상회하였다. 산업구조 또한 1960년대의 농림어업 중심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되었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양적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1960년대 초부터 실시한 對外指向的 工業化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 공급면에서는 제조업의 발달이, 수요면에서는 수출신장이 경제성장을 주도함으로써 전개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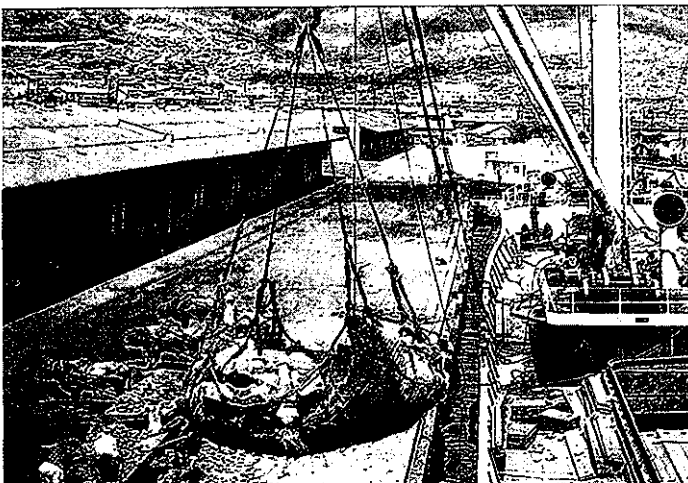
시기적으로는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 초에는 먼저 기간산업의 수입대체와 개발기반의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정책의 역점이 두어졌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공업화 전략은 임금의 상승, 기술축적의 미흡과 후발 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점차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이후에는 重化學工業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自力成長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철강, 일반기계,

1960년대 초의 수출상품 선적 광경



조선, 석유화학 및 전기·전자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내국세와 관세의 감면, 정책금융의 지원, 수입규제, 기타 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1977년의 제조업 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공업의 비중을 능가하였고, 공산품 수출에서도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이 1970년의 12.8%에서 1983년에는 56.6%로 증가하여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중화학공업화는 이들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을 극복하고 적정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육성 초기 단계부터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경공업 제품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거래단위가 거액이며, 수출대상국이 주로 자본이 빈약한 개도국이라는 등의 특성을 갖는 관계로 선진국에서는 延拂金融과 輸出保險의 지원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저리의 연불수출금융 지원이 불가피하였고, 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1976년에는 韓國輸出銀行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성과

구 분		1차계획 (62~66)	2차계획 (67~71)	3차계획 (72~76)	4차계획 (77~81)	5차계획 (82~86)	6차계획 (87~91)
경제성장률	실질 GNP (연평균, %)	8.5	9.7	10.1	5.5	8.6	9.9
1인당 GNP	기반, 달러	125	289	803	1,734	2,505	6,518
수 출	기반, (통관기준, %)	2.50 (43.6)	10.68 (33.7)	77.15 (48.5)	212.54 (22.2)	347.14 (10.6)	718.70 (15.7)
수 입	기반, 억달러 (연평균, %)	7.16 (17.3)	23.94 (27.3)	87.74 (29.7)	261.31 (24.4)	315.84 (3.9)	815.25 (21.0)
무역수지	기반, 억달러	-4.66	-13.26	-10.59	-48.77	31.30	-96.55
무역의존도	기반, %	26.1	36.4	57.5	70.9	64.5	54.5
공산품 수출비중	기반, %	66.8	86.1	87.9	91.0	93.8	95.4
중화학제품 수출비중	기반, %	10.2	14.2	29.1	41.6	51.9	59.9
산업구조	구성비, %						
농림수산업	기반 총산출	34.8	26.8	23.5	15.8	12.8	8.1
제조업	경쟁가격	20.5	22.2	28.4	30.7	30.1	27.9
서비스업		44.7	51.0	48.1	53.5	57.1	64.0

* 수출·수입의 ()안의 수치는 기반 중 연평균 증가율임

수은이 정식 설립되면서부터 연불수출자금의 지원은 본격화되었다. 1977년 한 해에만 1971~1976년의 6년간 지원액과 거의 같은 1,34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후 지원규모는 1979년 4,443억원에서 1982년 6,281억원, 1985년에는 7,74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수은의 자금지원을 받은 수출액은 1977년의 1억 5,500만달러에서 1980년에는 3억 9,800만달러로 배가되었으며, 1984년에는 다시 13억 9,100만달러로 증대되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1.5%에서 2.3%, 이어 4.8%로 계속 높아져 왔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로 인해 초래된 경제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제운용 방식을 정부 주도의 성장우선 정책에서 민간 자원에 바탕을 둔 안정성장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합리화와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정부의 강력한 경제안정 시책은 성공을 거두어 1982년부터 한 자리수의 물가상승률이 정착되었으며, 안정화의 바탕 위에 해외부문에서 나타난 이른바 '3低現象'(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치)이 우리 경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의 우리 경제는 연평균 10%가 넘는 고성장, 국제수지의 흑자 전환, 저물가 등의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화학공업 부문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의해 건설된 많은 기간설비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조선, 철강제품 등이 높은 수출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반도체, VTR, PC 등의 신개발품이 수출 신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지속과 국제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가 선진화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의 압력이 가중되는 한편, 후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새로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폭적인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1989년에는 거의 전 품목의 공산품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1987년 對外經濟協力基金을 설치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경제환경은 더욱 다양하고 격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동·서간의 이념대결이 종식되면서 국가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경쟁이 치

열해졌고, 국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는 자율과 개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새로운 문민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新經濟 5個年計劃을 수립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金融實名制의 실시, 金利自由化 조치 등 금융부문의 개혁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또한 UR 협정의 발효 및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의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정부의 정책적 금융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등 우리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이 기간 중 수은의 지원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업무도 크게 다양화되었다. 수은의 대출증인액은 1986년 3,241억원에서 1994년 3조 8,677억원으로 8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여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의 약 8%를 지원하게 되었다.

수은의 지원은 중화학공업 제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특히 조선산업은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일본과 1, 2위를 다투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초부터는 플랜트, 반도체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크게 늘려 이들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편 수은은 수출자금 외에 1988년에는 수입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투자자금대출을 크게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1991년에는 南北協力基金 업무를 정부로부터 수탁함으로써 정책적 자금지원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

第2節

經濟開發計劃의 추진과 輸出支援 體制의 기반 구축(1962~1972)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시작된 한국의 산업화는 '自立的工業化'와 '輸出振興'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즉 제1차 계획(1962~1966년)의 자립경제기반의 구축은 1950년대의 원조 의존적인 소비경제체제에서 자립적인 공업화 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한 것이었으며, 제2차 계획(1967~1973년)의 산업구조의 근대화는 철강·기계·화학 등 기간공업 건설을 수입대체산업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경공업을 수출산업으로 개발·성장시킴으로써 한국의 산업을 국제 분업체제의 편입으로 확대시킨 이른바 수출지향적인 산업화가 그 핵심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발표
(조선일보, 1962. 1. 14)

1. 輸出指向的 經濟開發의 착수(1962~1966)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1950년대에도 몇 차례 수립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체계적으로 수립·추진되었다.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그 목표를 '社會經濟的 惡循環의 시정과 自立經濟基盤의 구축'에 두었다. 계획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1%로 책정되었고, 산업구조는 기준연도인 1960년의 1차산업 36.0%, 2차산업 18.2% 및 3차산업 45.7%에서 목표연

도인 1966년에는 34.8%, 26.1% 및 39.1%로 각각 개선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개선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으로 볼 때 1차산업이 5.7%, 2차산업이 14.8%, 3차산업이 4.4%로 각각 성장하도록 계획된 것을 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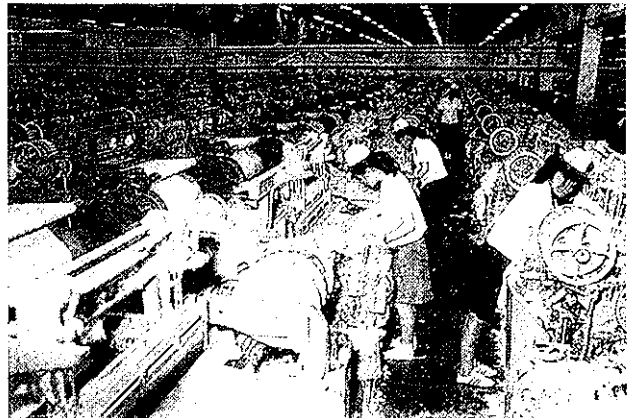
또한 이 계획에서는 공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정책의 주요 과제를 ①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② 산업생산력의 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의 증대와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③ 기간산업의 진흥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④ 유희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개발 ⑤ 수출 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진흥에 두었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시멘트, 비료, 철강, 정유 등 기간산업에 대하여 총량지표를 책정, 육성하였는데 이 계획기간 중에 이룩한 주요 공업의 발전분야는 전력, 비료, 합성섬유, 나일론사, 정유, PVC 및 시멘트 등이다. 한편 정부는 1966년 2월 선박건조 목표를 34만여톤으로 책정하고 이후 조선산업의 정책적 육성을 천명하는 등 개발 초창기부터 중화학공업 분야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

1960년대 수출진흥을 위한 상품전시회 개최 장면



휴전 이후 활기를 띤 방직업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특징은 공업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수출 주도하의 성장전략은 세계무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제개발이론이 제시한 對內指向的 開發戰略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실행되었던 시기에 채택된 것으로, 1962년 당시 국내 수출비중이 GNP의 약 3%에 불과하였던 경제상황에서 매우 모험적이었다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을 보면, 경제성장은 연평균 7.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당초 목표치였던 연평균 7.1%를 상회하였으며,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37.0%에서 34.8%로 낮아진 반면 제조업은 14.4%에서 18.6%로 높아져 많은 개선을 이룩하였다.

한편 수출실적은 1962년의 5,500만달러에서 1966년에는 2억 5,000만달러를 기록하여 연평균 44%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증가와 함께 수출상품의 구조도 고도화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총수출 중 공산품의 수출액과 그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1차상품의 수출이 1962년의 4,000만달러에서 1966년에는 9,600만달러로 약 2.4배가 증가한 데 비하여 공산품의 수출은 같은 기간 중 1962년의 1,500만달러에서 1억 5,500만달러로 10배가 신장되었다. 이러한 공산품 수출의 증가로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공산품의 비중도 크게 높아져, 1962년의 27.7%에서 1964년에는 55.2%, 1966년에는 61.8%를 기록하였다. 공산품 수출액의 급속한 신장과 함께 수출상품의 구성도 점차 다양화되었는데, 경제개발의 초기에는 수출 대종품목이 중석, 쌀, 철광, 면직물 등이었으나 중반 이후에는 의류, 합판, 가발 등으로 전환되었으며,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도 10.2%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다.

수출상품 구조의 변동 추이 (1962~1966년)

(단위 : 백만달러, %)

	1 차 상 품		공 산 품		수 출 실 적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62	39.6	72.3	15.2	27.7	54.8	100.0
1963	41.7	48.0	45.1	52.0	86.8	100.0
1964	53.4	44.8	65.7	55.2	119.1	100.0
1965	67.6	38.6	107.5	61.4	175.1	100.0
1966	95.5	38.2	154.8	61.8	250.3	100.0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2. 高度 成長軌道에의 진입(1967~197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제1차 계획에서 이룩한 기반을 토대로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진함을 목표로 하였다. 그 기본지침으로 화학, 철강 및 기계공업을 건설하고 공업고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제조업 생산을 배가하여 수출을 늘리고 수입대체를 추진하여 획기적인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산업화의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7년부터 1973년의 '重化學工業化 宣言' 이전까지 우리 경제는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출의 급격한 신장에 힘입어 연평균 8.7%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산업구조 역시 크게 개선되어 GN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1967년의 19.1%에서 1972년에는 22.2%로 높아졌으며, 제조업내에서 중화학공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비중이 제고되었다. 중화학공업 가운데서도 화학비료, 금속공업, 시멘트 등 다른 산업에 보완성이 큰 산업부문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生産財工業 대 消費財工業의 호프만 비율(Hofmann ratio)이 1962년의 1 : 2.2에서 1972년에는 1 : 1.5로 고도화되었다.

주요 경제지표 (1962~1972년)

	1962	1966	1969	1972	연평균증가율(%)
경제성장률(%)	2.2	12.7	13.8	4.6	8.3
산업구조(%)					
농림어업	37.0	34.8	27.9	26.7	-
제조업	14.4	18.6	20.3	22.2	-
공업구조(%)					
경공업	71.4	65.9	62.4	63.0	-
중화학공업	28.6	34.1	37.6	37.0	-
수출(백만 달러)	55	250	658	1,677	40.4
수입(백만 달러)	390	680	1,650	2,250	43.3
경상수지(백만 달러)	-56	-103	-549	-371	-
생산자물가지수*	5.2	10.1	12.4	16.8	20.3

* 1990년 =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정책의 상징인
농촌 새마을운동(위)과 경부고속도로 개통(아래)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지속적인 공산품 수출의 신장은 수요측면에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수출은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적정 규모의 생산시설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외시장 개발에 의한 수요 확대로 적정 규모의 생산시설을 유지·가동하게 하였으며, 국제분업을 유도함으로써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제2차 계획기간(1967~1971년) 중의 수출실적은 연평균 33.8%의 신장을 보였으며, 1972년에는 48.1%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으로써 1967년 중의 3억 3,000만달러에서 1972년에는 5배가 늘어난 16억 8,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수출의 양적 확대와 함께 수출상품의 질적 개선도 괄목할 정도로 진전되었다. 즉 광산물과 농수산물 등 1차상품의 수출비중이 1967년의 32.5%에서 1972년에는 11.1%로 급격히 저하된 반면, 공산품의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중 67.5%에서 88.9%로 상대적으로 높아져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중 수출증대를 주도하여 온 전략 수출상품의 변동 추이를 보면 1967년 중에는 합판, 스웨터, 피복류, 가발, 생사 등 단순 노동·기술의 가공

상품이었던 데 비해, 1972년 중에는 섬유, 합판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과 아울러 자본집약적 상품인 철강재, 기계류, 수송장비 및 화학제품 등의 수출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 시기에 重化學工業育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였다. 즉 1967년 3월에 '機械工業振興法'과 '造船工業振興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69년 1월 '電子工業振興法'을 제정하고 그 해 12월에는 석유화학공업 육성을 위하여 '石油化學工業育成法'을 제정하는 한편, 연산 에틸렌 기준 6만M/T 규모의 나프타 생산단지과 이를 모체로 한 PVC, 폴리에틸렌, 카프로락탐, PVA,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렌글리콜, DMT 공장 등 8개의 계열공장을 1971년까지 건설함으로써 화학공업의 육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그 해 12월에 '鐵鋼工業育成法'을 제정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철강업체와 원광 공급업체에 대하여 영업세와 법인세 감면혜택 등 세계상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수출상품 구조의 변동 추이 (1967~1972년)

(단위 : 백만달러, %)

	1 차 상 품		공 신 품		수 출 신 적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67	104.1	32.5	216.1	67.5	320.2	100.0
1968	156.4	25.3	340.0	74.7	455.4	100.0
1969	138.5	22.2	484.0	77.8	622.5	100.0
1970	140.6	16.8	694.6	83.2	835.2	100.0
1971	139.0	13.0	928.6	87.0	1,067.6	100.0
1972	179.5	11.1	1,444.6	88.9	1,624.1	100.0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3. 輸出支援體制의 기반 구축

수출증대를 통한 산업화 달성이라는 개발전략에 따라 정부는 수출진흥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제1·2차 계획 기간 중 수출지원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기간 중 시행된 주요 수출지원 시책들을 연도별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962년 3월 정부는 輸出振興法을 공포하여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특혜조치, 해외활동 보장 및 수출실적 링크제를 채택하였으며, 무역금융을 우대하는 한편 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수출을 신장시키도록 하였다.

1963년에는 수입상대지역별 수출액에 비례한 수입제한, 수출자동승인품목의 확대, 수출보조금의 지급 및 구상무역의 확대 시책을 강구하였으며, 그 해 12월에는 關稅法을 개정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反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 탄력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1964년 중의 수출진흥정책의 기초는 전년도와 비슷하였으나, 수출증진과 수입억제를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의 지급이나 수입통제보다는 變動換率制의 실시에 의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었다.

다음 해인 1965년에는 수출목표 1억 7,000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하여 輸出振興綜合施策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종합시책의 주요 내용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마진제도 철폐, 수출금융 금리의 인하, 수출업체에 대한 영업세의 전액 면제와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 감면조치, 수출업체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의 신설 등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연도인 1966년에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복잡한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관계 법규를 체계적으로 통합·정리함으로써 무역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확대에 부응코자 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7년 7월 정부는 1962년부터 수입억제책으로 이용되었던 수출입 링크제를 폐지하고 종래의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무역자유화를 더욱 확대시켰는데, 이는 세계 무역자유화의 조류에 부응하는 개방체제로의 방향 설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수출증대에 수반하여 수출용 원자재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설재 등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종합적인 수입억제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세제면에서 수출진흥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금융면에서는 수출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내자와 외자를 집중 지원하였다. 즉 특정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輸出特化産業 育成資金, 중소기업 중 수출기여도가 큰 업체를 수출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한 輸出轉換 施設資金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수출품 생산업체가 수출용 시설재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그 소요자금을 정부보유 외환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관세에 의한 수출지원으로 ① 수출용 원료 및 기자재의 도입에 대한 관세의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출진흥확대회의 장면



사전면제제도 ② 관세를 납부한 수입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의 關稅還給制度와 관세대치면제제도 ③ 관세부과가 유예되는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 수출함을 허용하는 보세공장제도 등이 실시되었다.

1968년에는 중장기 연불수출에 수반되는 제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輸出保險法이 제정되었으며, 1969년에는 연불수출에 의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韓國輸出入銀行法이 제정되었고, 외자유치에 의한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輸出自由地域設置法이 확정, 공포되었다.

1971년의 수출진흥정책은 수출규모의 양적 확대보다는 국산 원자재의 사용 촉진, 품질 향상을 통한 외화가득률의 제고 등 수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긴급경제조치(1971. 8. 16)에 따라 제반 수출여건이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출지원 조치로서 수출지원금융의 이자율을 국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한국은행 재할인가금의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달러당 용자단가를 종전의 220원에서 295원으로 인상 조치하였다. 이러한 금융지원과 함께 세제면에서도 특별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여 외화수입에 비례하여 특별감가상각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고정자산의 耐久年限도 외국의 사례에 준하여 단축하는 한편 수출품 제조용 소모성 기자재에 대하여 특별관세를 면제토록 하였다.

1972년 중에는 D/A 및 D/P 방식의 단기 연불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의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원자재의 해외개발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이 해부터는 외화가득액을 높이고 국산 원자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득액 제고형 용자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신용대출 기반의 확립을 위해 輸出産業 信用保證法도 제정하였다.

第3節

重化學工業의 육성과 輸銀 業務基盤의 확립(1973~1985)

우리 경제는 1962년 이후 제1차 石油波動이 시작된 1973년까지 국제경제여건의 유리한 전개와 정부의 효율적인 경제운용에 힘입어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위주의 제조업 중심으로 점차 고도화되었으며, 발전단계면에서는 수입대체에서 내수산업화의 기반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이룩한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며 중화학공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는 데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72~1976년) 중의 투자방향을 중화학공업화 추진, 중간재의 국산화 및 기술개발여건의 조성에 두는 한편, 주요 신규 성장산업으로 기계, 철강, 전자 및 조선공업 등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해 투자를 집중시켰다.

그러나 1979년 상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국내에 파급되고 원유수입 부담이 가중된 데 더하여, 주요 선진국이 保護貿易主義를 강화

함으로써 국제경제여건이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산업화를 위한 집중투자는 일부 산업내에 중복투자 현상을 초래하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가 컸으며, 여기에 경제외적 요인이 가세되어 1980년 이후 경제안정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은 발족 기념 친필 휘호

重化學輸出振興

韓國輸出入銀行發足記念

一九七六年 七月一日

大統領 朴正熙 謹

1. 重化學工業 육성(1973~1979)

가. 중화학공업 육성 요구의 증대

우리 경제는 1·2차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工業化, 輸出振興, 社會間接資本 확충 등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나, 소비재와 경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지향적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 전략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석유파동 이후 각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후발 개도국의 추적이 거세지면서 경공업제품의 대량 수출에 의한 급속한 수출 신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로 국제수지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수출 신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히 요청되면서 중화학공업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단위당 수출규모가 크고 부가가치 및 외화가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외국의 수입규제가 적다는 점에서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人的資源이 중요한 부존자원인 우리나라에서 높은 생산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경제외적 요인으로서 당시 낙선독트린으로 인해 새로이 제기된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대한 요구는 절실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년)의 중점을 '수출의 획기적 증대 및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두었으며, 1973년 1월 朴正熙 대통령은 1980년대에 중화학공업 제품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산업 등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重化學工業化 宣言'을 발표하였다.

나. 중화학공업 육성시책 실시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통하여 수입대체를 도모하는 한편,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투융자를 확대하

였다. 먼저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個別産業育成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지원을 감행하고 重化學工業推進委員會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지원형식은 우선 전략산업으로 주요 중화학공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내국세와 관세의 감면, 정책적 금융지원, 수입규제에 의한 국내 판매가격 보조, 기타 행정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특히 일부 중화학공업 제품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수출진흥책이 적극 모색되었다. 이 기간 중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진흥에 관련된 시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4년 석유파동 당시 석유를 사기 위해
주유소 앞에 줄을 선 시민들

1974년 중에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제무역 환경의 악화에 대처하고 국내 경기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지원금융과 내수용 수입 원자재 비축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이 강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산업의 시설 근대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수출산업 설비금융으로 200억원을 책정·지원토록 하였으며, 그 해 12월 7일 특별조치로 對美환율의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단가를 1달러당 38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하였다.

1975년 중에는 상반기까지 계속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에 대한 사전승인 업무를 개선하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국산 원자재의 사용실적과 연계시키는 등의 제도적 개편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화학공업의 구조를 에너지 및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 전자, 조선공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는 한편, 노후시설의 개체를 통한 경공업의 경쟁력 강화시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도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철강, 비철금속, 조선, 전자, 디젤엔진 등 30개 중화학업종을 선정하여 合理化産業으로 지정하는 한편, 합리화기준을 제정하고 國民投資基金과 수출산업확충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세제지원도 병행하였다.

1976년 중 정부는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두고, 공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중 1,018억원의 국민투자기금을 중화학공업 분야에 지원하였다. 특히 기계공업의 육성을 위해 大單位 綜合機械工業 振興計劃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33개 업종, 85개 품목의 핵심품목과 더불어 52개 업

체의 中小企業型 專門機械工場을 선정·지원하였다.

한편 1981년까지 플랜트 건설의 70%를 국산화하도록 연중 시멘트, 비료, 정유, 제철, 합성고무, 플랜트 등 11개 품목의 표준국산화율을 책정·고시하였으며, 시설재와 원자재의 국산화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이를 자금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산기계 구입, 계획조선 등에 국민투자기금과 외화대출로 66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세제면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특별상각인정업종에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을 추가하였다.

1977년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해로서, 100억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의 시설 근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출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중화학공업의 시설 근대화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이며 자원절약적 산업인 일반기계,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을 중점 지원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여 적정 시설규모의 기준을 설정하고 국민투자기금으로 1,524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감가상각 범위의 확대와 관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병행하였다.

한편 중화학공업의 취약부문인 소재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철, 제강 등 소재산업과 기어, 베어링 등 일반 기계부품 산업, 반도체 등 전자부품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나프타 생산시설 등 4개의 석유화학시설과 제철시설 등에 대한 표준국산화율을 고시하여 국내산업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하여 그 해 4월 19일 조선공업의 육성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造船工業 振興 基本計劃을 확정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자동차공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하여 부품단지 조성 및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전략산업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형 기계공장을 선정하여 업체당 원화 2억원, 외화 40만달러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 시멘트, 비료 등의 플랜트 건설에 대한 표준국산화율을 공고하여 국산 기자재의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1977년에 이어 1978년의 산업정책 방향도 중화학공업화에 의한 공업구조 고도화에 맞춰졌으며, 125억달러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대책으로는 산업연관도가 높고 수출전략품목에 속하는 일반기계, 전자, 자동차, 제철 등 13개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합병 및 계열화를 추진하여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

대형 선박의 진수식 광경



는 한편, 시설의 근대화에 의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 밖에 기계, 금속, 조선, 화학, 전자 등 7개 전략부문에 대하여는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도입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국내의 기술개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대덕 연구단지와 창원 및 구미 공업단지에 전문 기술연구소의 완공을 촉진하였다.

또한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기계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機械工業政策調整委員會를 설치하였으며, 기계공업의 시설 근대화를 위해 2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계, 전자, 조선 및 금속공업을 중요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가 연구설비의 설치 및 보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기술개발의 촉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소형 자본재의 중장기 연불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장기 연불수출 금융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화학공업 제품 및 플랜트의 연불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은의 용자비율을 75~80%에서 90%로 인상하는 등 연불수출 금융지원제도의 신설 및 개편이 이루어졌다.

다.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앞서 언급한 중화학공업 분야에의 투자 확대와 수출 진흥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1973~1979년간 연평균 9.3%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다소 저조한 양상을 보였던 1974년과 1975년을 제외하면 10%에 달하는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1973년과 1976년에는 각각 12.6%, 11.9%의 높은 성장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산업별로는 공업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제조업이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을 보이며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며,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이 연평균 15.4%, 기타 서비스업이 연평균 10.0%의 성장을 나타내었다. 한편 산업구조도 제조업 중심으로 개편되었는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을 보면 1973년의 농림어업 24.9%, 제조업 24.9%,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업 5.8%, 기타 서비스업 43.0%에서 1979년에는 농림어업 19.0%, 제조업 27.5%,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업 9.9%, 기타 서비스

업 42.2%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1973년 40.9%에서 1977년에는 경공업을 능가하였으며, 1979년에는 54.9%까지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1970년대 중반부터는 음식료품, 의복, 가구 등 소비재산업과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에너지다소비형 素材産業의 생산액 비중이 낮아진 반면,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용 기기 및 정밀기기 등 에너지 저소비, 기술집약적 조립가공산업의 비중은 1973년의 13.8%에서 1978년에는 20.3%로 크게 높아졌다.

제조업을 소비재산업, 소재산업 및 조립가공산업으로 구분하여 1974년부터 1978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생산증가율을 보면, 제조업 전체평균이 17.7%인 데 비하여 소비재산업과 소재산업은 각각 14.0%와 16.0%로서 제조업 전체의 평균증가율을 하회한 반면, 기계공업을 포함한 조립가공산업은 연평균 32.2%나 증가하여 제조업 생산의 증가를 주도하였다.

조립가공산업의 생산액이 1970년대 중반부터 뚜렷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업구조도 생산액과 부가가치면에서 중화학공업 우위로 반전되어 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조립가공산업의 생산증가가 전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 소재산업도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는 重化學工業國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주요 중화학공업 제품의 생산능력 추이 (1973~1978년)

	단 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조 선	1,000G/T	250	1,100	2,390	2,600	2,670	2,770
자동차	1,000대	63	63	70	120	150	205
제 강	1,000M/T	2,181	2,702	2,852	4,530	4,635	5,040
시멘트	1,000M/T	8,290	10,260	11,850	14,060	14,060	16,000
발전설비	MW	4,271	4,271	4,720	4,810	5,790	6,916

자료 : 경제기획원, 주요 경제지표

한편 수출은 정부의 지속적인 수출지원 및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1973~1979년 기간 중 연평균 3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1977년에는 100억달러를 돌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업구조가 경공업 우위에서 중화학공업 우위로 전환되고 중화학공업 내부에서도 조립가공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 100억달러 달성에 즈음한 송인상 은행장의 대담 기사 (내외경제, 1977. 12. 22)



짐에 따라 수출상품의 구성도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로 고도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기계류 및 운반용 기기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먼저 이 기간 중 수출상품의 구조변동을 1차상품과 공산품으로 대별하여 보면, 공산품의 비중이 85.5%에서 90.1%로 높아진 반면 1차상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연평균 수출증가율도 1차상품이 26.3%, 총수출이 29.7%인 데 비하여 공산품은 30.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공산품 가운데서도 중화학공업의 수출비중은 1973년 중에는 28.9%에 불과하였으나, 1979년에는 43.4%로 제고됨으로써 공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수출상품의 중화학공업화가 이루어졌다. 공산품의 수출을 경공업 제품과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구분하여 보면, 이 기간 중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27.2%의 증가율을 보인 데 비하여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43.2%의 급격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공업화 과정에서 핵심산업인 기계류(운반용 기기 포함)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73년의 3억 9,600만달러에서 1979년에는 약 8.2배가 증가한 32억 3,600만달러에 달하여, 총수출에서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21.5%로 크게 제고되었다.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추이 (1973~1979년)

(단위 : 백만달러)

	총수출 (A)	공산품 (B)	중화학공업 제품(C)	기계류· 운반용기기(D)	C/B (%)	D/C (%)
1973	3,225	2,873	829	396	28.9	47.7
1974	4,460	4,253	1,763	672	41.4	38.1
1975	5,081	4,791	1,620	702	33.8	43.3
1976	7,715	7,283	2,693	1,280	37.0	47.6
1977	10,046	8,795	3,666	1,741	41.7	47.5
1978	12,711	11,420	4,751	2,587	41.6	54.5
1979	15,056	13,397	5,818	3,236	43.4	55.6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이 한편으로는 경제성장과 수출증대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가져온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컸다. 특히 자금배분에 있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중화학공업 분야에 대한 과잉 중복투자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고질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1973~1979년 기간 중 생산자 물가지수는 1974년에 42.4%나 상승하는 등 연평균 18.1%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으로써 경제의 불안정을 야기시켰다.

특히 1979년은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선진 제국의 성장률이 1975년 이래 최저 수

준으로 낮아졌으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제수지의 악화를 겪었다. 제조업 생산은 경공업 부분의 성장이 1978년의 절반 수준인 8.3%의 성장에 그쳤으며, 중화학공업의 성장도 전년의 29.5%에 비해 14.3% 포인트가 낮은 15.2%의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 부분의 성장률이 둔화된 직접적 이유는 선진 제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輸入需要의 감퇴와 정부의 經濟安定化 施策 추진에 따른 경공업 부분의 부분적인 공급 애로 및 중화학공업의 투자조정에 있었다.

주요 경제지표 (1973~1979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연평균 증가율 (%)
경제성장률(%)	12.6	8.0	6.1	11.9	10.1	9.4	6.8	9.3
산업구조(%)								
농림어업	24.9	24.8	24.9	23.5	22.3	20.4	19.0	-
제조업	24.9	25.7	25.9	27.4	26.8	26.7	27.5	-
공업구조(%)								
경공업	59.1	50.1	52.1	50.7	48.5	47.0	45.1	-
중화학공업	40.9	49.9	47.9	49.3	51.5	53.0	54.9	-
수출(백만달러)	3,271	4,515	5,003	7,815	10,047	12,711	14,704	29.3
수입(백만달러)	3,837	6,452	6,674	8,405	10,523	14,491	19,100	32.0
경상수지(백만달러)	-309	-2,023	-1,887	-314	12	-1,085	-4,151	-
생산자물가지수*	17.9	25.5	32.2	36.1	39.4	44.0	52.2	20.1

* 1980년=10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 안정적 成長基盤의 정착(1980~1985)

가. 안정우선 정책하의 중화학공업화 추진

1980년대 들어서는 1979년의 제2차 석유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국제 고금리, 주요 선진 공업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對外經濟環境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된 투자정책이 경제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즉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부진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정부에 의한 투자산업의 선정과 인위적인 자원배분은 경

제력의 집중,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기업과 경공업 중심의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의 기본운용방향을 성장 우선에서 안정 위주로 전환하고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며, 투자의 배분면에서도 정부 주도에서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는 민간 주도로 운용되도록 하였다. 이같은 정책전환에 따라 그동안 고도성장기에 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되었던 중복 및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시책이 강구되었다.

정부는 1981년 4월 産業合理化 措置를 통하여 중화학공업 부문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화된 생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 아래, 당시 복수업체로 다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및 발전설비 부문을 통폐합하여 단일업체로 일원화하고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계속 추진되었는데, 정부는 산업정책의 방향을 국제경쟁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의 배양에 두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비효율적인 기존투자를 조정하는 한편, 설비투자의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면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금융지원의 주요 조치로는 설비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수출산업 및 중소기업에 각각 2,000억원과 1,500억원의 설비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공급규모를 확대하였다. 한편 세제면에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치한도를 인상하였다.

또한 조선공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개 조선소의 증설, 조선기술 용역회사의 설립 및 선박설계의 센터화를 내용으로 하는 '造船部門 長期輸出計劃'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자동차부품 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982년 들어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합리화를 위하여 핵심전략 부문을 중점 개발하고 전문화와 시설개선에 주력하였다. 중화학공업 부문의 산업구조 고도화 시책으로 電子工業 高度化 長期計劃(1982~1991)을 수립하여 반도체, 컴퓨터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자교환기 등의 양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자동차 부문에서는 차종별로 전문 생산업체를 지정하는 한편, 자동차 수요 증대를 위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화학공업과 플랜트의 수출산업 기반 확충을 위하여 1982년 産業設備促進法 施行令을 개정하여, 종래에는 해외건설 면허업체만이 산업설비 설치공사



산업합리화 관련기사 (중앙일보, 1980. 8. 20)

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산업설비 수출업체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도 자체 제작한 기계 및 장치에 한하여 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략산업인 기계공업에 대해서는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해외건설업체에게 국산 건설장비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 증가를 도모하였다.

1983년에는 전자공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의 도입과 외국인 합작투자를 장려하였으며, 컴퓨터, 통신기기, 산업용 전자기기 등 기술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新技術企業化資金制度를 신설하였다. 한편 산업지원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1980년대 산업정책의 과제와 지원시책 개편방향을 확정하여, 산업정책의 중점을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에 두고 이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산업의 장기적인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술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技術振興審議會를 설치하여, 국내의 기술수준과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기술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협의·조정토록 하였다. 한편 기술개발을 수요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및 정책투자기관의 購買例示制度를 활용하도록 하였고 금융 및 재정면에서도 지원을 확대하였다.

1985년 중에도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 계속 추진되었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저조한 고용사정 등에 대처하고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였다. 먼저 금융면에서는 수출산업에 대한 설비자금의 한도를 계속 확대하였으며, 연중 3차례에 걸쳐 수출지원금융의 달러당 융자단가를 종전의 평균 655원에서 74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한편, 중소 소액 수출업체에 대한 포괄수출금융제도를 도입하여 무역금융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1986년 6월 말까지 시한부로 30대 제별계열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조업에 대한 설비금융을 제외하여 시설 근대화를 촉진하였으며, 수출산업 설비금융의 융자비율을 종전의 90%에서 100%로 제고시켰다. 금융면의 지원과 함께 세제면에서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증자소득 공제를 항구화하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단축 운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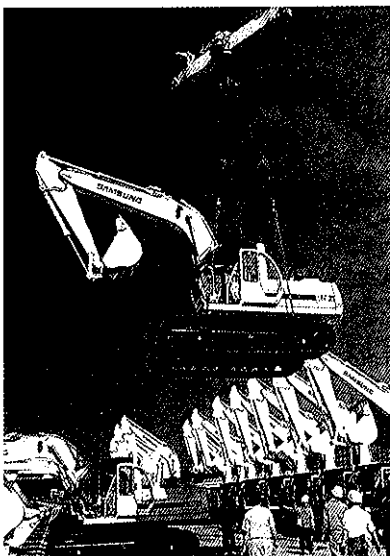
이 밖에 비료, 합판 등 일부 산업에서 과잉설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유헴설비의 처분, 기업의 통폐합 등 불황산업에 대한 構造調整支援施策을 강구하였으며, 중소기업

업의 자력성장 기반의 확충과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3년간 유망 중소 수출업체 1,000개를 선정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기술 지도를 계속 실시하였다.

나. 경제안정 기반의 정책과 중화학공업 부문의 내실화

1980년은 불리한 국제경제 환경과 대내적으로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여기에 경제외적 요인마저 가세하여 경제성장률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3.9%)을 보였다. 제조업 부문도 국내 유가의 대폭 인상과 국내외 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는 일반기계(-23.7%), 전기기기(-13.3%), 수송용 기기(-16.4%) 등 주요 중화학공업이 負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으로, 1980년의 중화학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9.2% 감소하였다. 물가 역시 석유위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과거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 도매물가상승률이 38.9%에 이르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또한 높은 국내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의 수입단가 상승이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국제수지 적자는 53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수출되는 굴삭기의 선적 장면



이처럼 침체되었던 우리나라 경제는 일련의 경기대책으로 인한 수출 증가와 부분적인 내수회복에 힘입어 1981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의 회복세를 보면 1980년의 -3.9% 성장에서 1981년에는 다시 5.5%의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되어 이후 1982년 7.5%, 1983년 12.5%, 1984년에는 8.5%의 고성장을 실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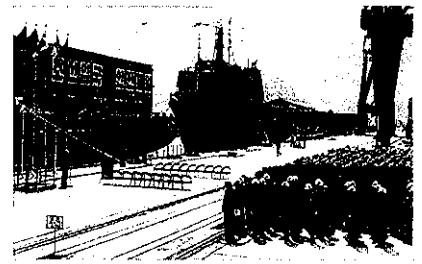
경제성장의 회복에는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의 착실한 성장이 크게 기여하였다. 1981년에는 경공업이 전년대비 5.3% 신장한 데 비해 중화학공업은 국내외 수요의 증가와 철강 등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 확대로 9.8% 증가하였으며, 1982년에는 선박의 수출증가(236.9%)와 자동차의 국내외 수요증가에 힘입어 수송용 기기 부문이 14.5%나 신장한 데다 건설 중장비와 일반 기계류의 국산화가 추진되어 13.5% 성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보였다.

1983년에 들어서도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및 내수의 호조가 지속되었는데, 특히 건설 중장비, 광산용 기계 등의 국산화 촉진과 수출 증가로 일반기계 부문이 21.8% 증가하였으며, 수송용 기기도 신종차 개발과 선박의 수출신장으로 14.7% 확대되는 등 중화학공업은 전체적으로 15.0%나 신장하였다. 1984년의 중화학공업의 신장은 더욱 두드러져, 수송용 기기(60.1%), 전기기기(27.8%), 일반기계(16.8%) 등의 높은 성장으로 중화학공업은 경공업 성장률 9.2%보다 훨씬 높은 19.8%의 성장을 보였다. 이같은 성장으로 제조업에서 점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1979년 45.1%에서 1984년에는 58.1%로 높아졌다.

1985년 중 우리 경제는 미국 등 선진 공업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었고 국내 경기의 불투명으로 투자활동이 저조하여 경제성장률이 6.6%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은 국내투자 및 수출수요가 저조하여 1984년 성장률의 1/3에 불과한 6.2%의 성장에 그쳐 전체 경제성장 둔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중화학공업의 성장률이 전년의 19.8%에서 4.3%로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 것이다. 이 해 중화학공업의 신장이 저조했던 것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한 일반기계(14.8%)와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수송용 기계(8.3%)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선박생산이 해운업의 세계적인 불황으로 受注殘量이 크게 줄어들었고, 전기기기 수출이 컬러 TV의 미국내 덤핑 판정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하였다. 1985년의 경제지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이제 제조업, 그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의 생산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 기간의 물가안정 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의 28.8%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이 1982년에는 7.1%로 크게 낮아졌으며 1983년에는 3.4%를 기록하는 등 획기적인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물가안정의 요인으로는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1979년 이후 추진해 온 안정적인 총수요 관리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용측면의 요인은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일련의 금리인하 조치에 힘입은 금융비용 부담의 경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기간 중에는 국제수지도 크게 개선되었는데, 1980년에 53억달러로 대폭 확대된 경상수지 적자는 1982년 26억달러, 1983년에는 16억달러로 그 적자폭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1985년도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선진국의 수입수요 저조에 따른 수출감소와 투자 및 생산활동의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9억달러로 크게 축소되어 1986년의 국제수지 흑자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



1980년대 선박 진수식 장면

게 되었다. 이처럼 국제수지가 개선을 보인 데는 원유를 비롯한 수입 원자재 가격이 1980년을 고비로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어 수입부담이 줄어든 데 힘입은 바도 컸지만 역시 수출의 증가가 크게 기여하였다.

주요 경제지표 (1980~1985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연평균 증가율 (%)
경제성장률 (%)	-3.9	5.5	7.5	12.2	8.5	6.6	6.1
산업구조 (%)							
농림어업	14.7	15.5	14.4	13.2	12.5	12.5	-
제조업	28.2	28.5	28.1	29.0	29.9	29.3	-
공업구조 (%)							
경공업	46.4	45.6	44.9	42.7	41.9	41.5	-
중화학공업	53.6	54.4	55.1	57.3	58.1	58.5	-
수출(백만달러)	17,214	20,671	20,879	23,204	26,335	26,442	9.2
수입(백만달러)	21,598	24,299	23,474	24,967	27,371	26,461	4.4
경상수지(백만달러)	-5,321	-4,546	-2,650	-1,606	-1,373	-887	-
생산자물가지수 *	72.5	87.3	91.4	91.5	92.2	93.0	5.4

* 1990년 =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3. 輸銀 業務基盤의 확립

1976년 7월 수은이 설립된 이후 1985년까지의 기간은 수은이 자본재 수출 및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완비하고 자금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해나가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업무기반을 공고히 한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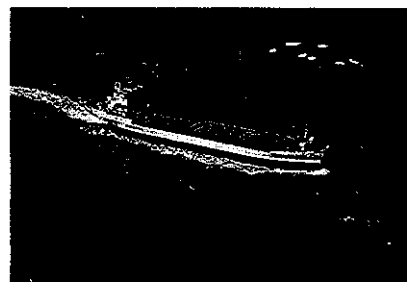
이 기간 중 수은의 용자승인 규모는 1976년의 1억 8,707만달러에서 1977년 2억 7,700만달러, 1980년 3억 9,300만달러, 1984년 13억 7,000만달러로 급신장하여 1985년 말까지 총 68억 7,000만달러를 기록, 115억 4,700만달러 규모의 수출 및 해외투자 거래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수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선박과 플랜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불수출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정착단계를 거쳐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1977년의 제1회 연불수출간담회 개최 장면



아울러 이 기간 중에는 보유 연불어음의 매각과 은행차관의 도입, 外貨表示 輸出入 金融債券의 발행 등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노력이 성과를 거둠으로써 급증하는 수은 자금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信認度를 제고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수은지원 최초 수출 선박

가. 본격적인 연불수출시대의 개막

수은의 설립을 계기로 선박과 플랜트, 기계류 등 자본재에 대한 연불수출금융 지원은 급속히 확대되어, 설립 이듬해인 1977년 한 해에만 1971~1976년 동안의 지원액에 가까운 1,152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본격적인 延拂輸出時代가 열리게 되었다. 이후에도 연불수출금융 지원은 계속 확대되어, 기술재공자금과 전대자금을 포함한 수출자원금융의 총 승인액은 1976년의 818억원에서 1979년에는 4,162억원, 1982년 5,742억원, 1984년 1조 1,242억원, 1985년 7,673억원으로 급증하였다.

北歐 企業家를 위한 船上 세미나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나는 조선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외교섭의 일환으로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에 장기간 출장간 일이 있었다. 그 때 노르웨이의 아카그를 한국에 초청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현대중공업의 시초가 되었다.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가 대한조선공사에게 선박을 발주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에 비해 자본이 빈약한 개발도상국인 한국이 선박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자본수출을 행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모순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용자는 선진 각국의 저명한 은행들이 자금보증을 하기 때문에 마치 현금으로 파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창립 초기의 수은으로서도 극진히 대접해야 할 고객이었다.

나는 이 출장이 북구의 저명한 경제계 인사

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뜻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비단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북구 4개국에 한국을 소개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북구 4개국은 당시 북한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어 북한 공산정권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많은 용자를 해주고 있었으므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는 펄프제지 공장을 플랜트 수출 형태로 건설해 주고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서 기술지도를 해주기도 했다.

1977년 6월 한국 정부의 엘리트 관료들과 함께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그 때 같이 간 사람들은 김선일·김재익·이규성·정인웅·하동선씨 등이었다. 수은에서는 이태호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나는 이 행사를 보다 뜻있게 하기 위해 북구 4개국에 주재하고 있는 공관장 4명을 초대했다. 이 세미

나는 북구에 한국을 소개하는 최대의 모임이었다. 우리는 스톡홀름항에 정박중인 船上에서 세미나를 열고 경제와 무역사항 등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세미나에 이어 런던 소재 스칸디나비아은행을 주간사로 해서 웰즈화고은행 등 10개 외국은행들과 연불어음 매각계약의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북구에서의 이 행사는 우리 기업과 북구 4개국의 기업을 접근시키는 데 일조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 후 에릭슨이라는 전화회사와 ABB라는 전기관련회사가 한국에 진출한 것도 이 세미나의 인연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행사는 수은이 보다 더 국제성을 띠어야 하고 국제관습에 익숙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훈련과 연수에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송인상 초대은행장 저 '부흥과 성장'에서)

이러한 연불수출금융 지원에 힘입어 선박과 플랜트의 수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를 크게 진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수은 설립 이후 중화학공업 생산의 진전도를 보면, 전체 공업생산 중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1972년의 37.0%에서 1977년에는 51.5%, 1980년에는 53.6%로 크게 높아졌으며, 총수출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2년의 21.3%에서 1980년에는 41.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976~1985년 사이에 승인된 수출금융 중 76.5%는 선박수출에 지원되었다. 수은의 집중적인 선박수출 지원은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1975년 이후 불어닥친 세계 조선시장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세계 2위의 造船大國으로 부상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1970년대 후반 일본과 유럽의 선진 조선국들이 조선소의 연쇄도산 사태 등으로 이어진 조선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소의 통합 및 폐쇄 조치 등을 통해 대응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은의 설립을 통한 연불수출금융의 공여로 조선산업의 輸出戰略産業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선박의 수출규모는 1975년 이후 연평균 2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선박수출의 비중은 1972년의 0.2%에서 1977년에는 4.7%로 증가하였으며, 1984년에는 16%로 급증하였다.

신조선 수주량 추이 (1979~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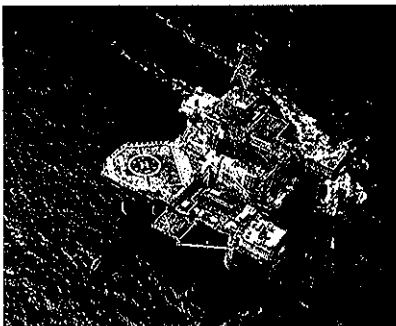
(단위 : 천GT,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한 국	1,060 (6.3)	1,706 (8.9)	1,372 (8.1)	1,098 (9.7)	3,742 (19.1)	2,373 (15.5)	1,482 (11.8)
일 본	8,287 (49.0)	10,004 (52.4)	8,803 (49.2)	5,650 (49.7)	11,126 (56.8)	8,850 (57.6)	6,182 (49.2)
세계전체	16,913	19,090	16,873	11,357	19,594	15,354	12,602

* ()안은 시장점유율임.

자료 : 일본해사연구소, 일본해사산업연구보, 1985. 12.

반잠수식 시추설비



한편 이 기간 중 '기계공업의 꽃'이라 불리는 플랜트 산업도 비교적 유리한 수출시장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무대 진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세계 플랜트 수출시장은 1970년대 내내 안정된 신장세를 유지하여 197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17.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海上油田開發이 활기를 띄면서 1980년대 전반에는 해양 석유·가스 시추 및 생산설비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우리나라의 플랜트 산업은 1970년대 후반의 집중적인 투자로

크게 향상된 수출능력과 수은의 연불수출금융 지원을 기반으로 유리한 시장기회를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큰 폭의 수출증대를 실현하게 되었다. 플랜트 수출은 1978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1980년에 5억 2,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이후 1985년에는 13억 8,700만달러로 급신장하였으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3%에서 4.6%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수은의 플랜트 수출에 대한 지원실적은 1972년의 100만달러 수준에서 1978년 1억 7,400만달러, 1984년 2억 1,800만달러, 1985년 3억 7,100만달러로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지원대상 품목도 화력발전설비, 海水淡水化設備, 해상 석유시추 및 생산설비, 시멘트 플랜트, 타이어 플랜트 등으로 대형화·다양화되었다.

나. 해외투자의 활성화 기반 구축

수은이 설립된 1976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980년대 전반에는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확산된 자원민족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資源開發 投資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수은의 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을 포함한 해외투자금융 지원은 1971~1976년 중에는 99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77년 190억원, 1979년 282억원, 1982년 539억원으로 크게 증대된 후, 자원개발 투자가 부진하였던 1984년부터 감소하여 1985년에는 74억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하였다. 1985년 말까지 수은이 대출승인한 해외투자자금 3억 2,700만달러의 업종별 구성내용을 보면, 금액으로는 자원개발사업이 12건에 2억 2,000만달러로 가장 많고, 건수로는 제조업 투자가 22건에 9,600만달러로 가장 많다.

이 기간 중 수은이 지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동남아 제국에 대한 원목개발사업과 포항종합제철 등이 추진한 유연탄개발사업, 그리고 (주)코데코에너지가 주요자원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 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후 원목개발사업은 산림보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 강화로, 석탄개발사업은 세계적인 석탄공급 과잉으로, 그리고 석유개발사업은 당시의 유가하락 추세로 신규개발 투자가 부진하였다.

제조업 투자는 초기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들어 플랜트 수출에 수



해외에서의 원목개발사업 현장



수은 창립 2주년 기념 미 수은 총재 초청 강연
(1978. 5)

반하는 해외투자과 중소기업에 의해 추진되는 시장지향형 또는 생산요소 지향형의 투자진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증가하였다.

다. 수은 업무기반의 확립

수은은 설립 이후 1977년의 제2차 수은법 개정을 통해 경영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각종 지원제도의 정비와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 및 해외 자금조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수은의 업무기반을 확립하였다.

(1) 제2차 수은법 개정

수은이 설립되면서 연불수출과 해외투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의 확보가 요청됨에 따라, 설립 이듬해인 1977년 12월 19일 제2차 수은법 개정이 이루어져 법률 제3022호로 공포되었다.

수은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은 1,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수은 업무의 경제·외교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외무부장관이 지명하는 1인이 추가되었다. 또한 업무대행기였던 1974년의 제1차 법 개정시 운영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폐지되었던 이사회가 다시 부활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경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 때 수은의 설립목적 중 수은 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中長期信用에 의한'이라는 제한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연불조건이 아닌 일람불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의 이행 또는 대출금의 상환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거래는 수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지원체제의 정비

업무대행기 중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에 국한되었던 수은의 업무는 설립 이후 크게 다양화되었다.

설립 이듬해인 1977년에는 중동 건설 붐의 고조에 따른 해외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제공자금이 처음으로 지원되었고, 1979년에는 구매자신용 방식에 의한 直接貸出과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轉貸資金의 공여가 시작되었다.

그 후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1981년에는 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이 처음으로 지원되었다.

수은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구매자신용 방식을 도입한 것은 금융국제화의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며, 동시에 외국의 구매자가 직접 차주가 됨으로써 국내 수출자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하였다. 전대자금은 주로 중소 기계류의 해외시장 개척에 지원됨으로써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잠재수요를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의 수출보험 업무 인수 (1976. 12. 31)

직접대출의 탄생

1979년 3월 심사2부에 부여된 과제는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직접대출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진열 차장(퇴직)과 조상균 과장이 각각 미국수은과 일본수은 연수에 나섰고, 두 은행의 제도적 장점을 취하여 기본 운영규정과 취급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4개월만에 규정작업은 마무리되었지만, 규정에 국·영문을 병행표기하는 문제,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 어려워 영문을 그대로 표기해야하는 문제로부터 사소한 법적 자구에 이르기까지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는 등 숏한 우여곡절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제도 정립이 끝나자마자 큰 프로젝트 하나가 우리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Stolt Nielsen Group에게 Chemical Tanker 6척을 備船할 예정이었던 조선공사가 이 선박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8,100만달러의 직접대출 승인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우선 직접대출 용자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초창기 우리은행의 입장에서 노하우가

있을리 없었고, 우리는 미국 및 일본수은의 용자협정서를 모델로 하여 Kim & Chang 법률사무소의 정계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에 몰두하였다. 직접대출의 경우 선박이 인도되는 즉시 引受渡讓定款과 함께 약속어음(P/Note)이 발행되고 이어 자금이 집행되는 데, 선박 3척이 이미 인도된 상태이어서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당시 차주사의 전권을 위임받아 서울에 왔던 Kjell Nyborg 변호사와 밀고 당기던 계약서 네고과정은 팽팽한 긴장감(때론 증오감) 속에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선박 인수도의정서의 작성과 P/Note의 발행과정도 앓을 수 없다. 당시 선주측은 미국 휴스턴 근해와 벨기에 쉬스킬港 등의 船上에서, 그리고 P/Note 발행인과 지급보증은행은 현지의 법률사무소에 각각 대기하면서 Kim & Chang 법률사무소에 있던 우리와 International Conference Call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약속어음의 마지막 장

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지급보증서의 일부에 차주사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즉석에서 보완각서를 받는 등 우리의 애를 태우기도 하였다.

이 거래는 당시 조선업계의 장기 불황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공사측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승인하에 추진하였는데, 그 해 11월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은행 이사회 외에 경제장관협의회, 운영위원회의 방청결정을 받아야 했고, 참고서류를 제외한 승인서절만 1,122쪽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당시 언론은 우리나라 최초의 직접대출 승인을 알리면서 이를 통해 조선공사는 약 6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되어 막대한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8개월여의 산고를 거쳐 우리은행의 직접대출 제도가 도입되었고, 대규모 첫 지원거래가 탄생을 보게 되었다.

한편 수은은 급증하는 연불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 초부터 국내 금융기관과의 協調融資制度를 도입·시행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협조융자 제도는 시행 이후 지원대상 사업 및 자금과 협조융자 대상기관이 점차 확대되어 1980년대 전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자본재 수출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1985년에는 국제 고금리 추세의 지속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개도국의 외채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었다. 이에 수은은 저금리통화에 의한 대출로 자본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異種通貨貸出制度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대출업무의 다양화와 함께 보증 및 외환 업무의 확대도 이루어졌다. 1977년에는 선수금환급보증 업무와 계약이행보증 업무가, 1980년에는 협조융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증 업무가 신설되었다.

한편 1976년 10월 甲類 外國換銀行 인가를 받아 수은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및 수출입 업무를 취급하게 된 이후 1978년에는 輸銀內國信用狀 업무를, 1979년에는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위임된 국내 산업기자재의 반출확인 및 외국 기자재의 수입승인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부터는 그동안 상공부에서 전담해오던 산업설비 수출허가 업무 중 일부를 수은이 취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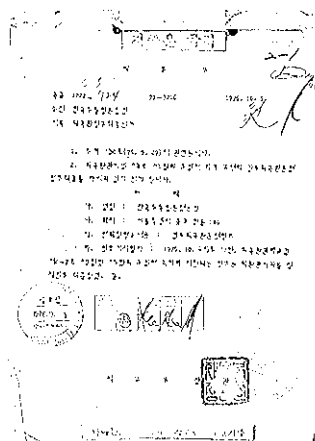
한편 수은은 1977년 1월에 大韓再保險公社로부터 수출보험 업무를 인계받아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규모 증대와 더불어 급증되어 온 수출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을 증액하고, 수출보험의 인수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보험 업무의 기반확충에 힘썼다.

(3) 자금조달 기반의 확충

수은이 설립된 당시 납입자본금은 553억원이었으나, 1977년의 제2차 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이 증액되면서 1985년말에는 4,279억원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제약과 국내 자본시장의 협소 등으로 수은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수은은 설립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77년 6월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1억 4,9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을 국제금

갑류 외국환은행 인가 공문 (1976. 10)



설립초기의 재원 부족 관련기사
(서울경제, 1976. 7. 1)



용시장에서 매각하였고, 1978년 8월에는 2억달러의 은행차관을 당시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한 은행차관 중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하였으며, 1983년에는 동경 자본시장에서 최초로 50억엔 규모의 엔화표시 채권의 발행에 성공하였다. 연불어음의 매각과 은행차관의 도입 및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의 발행은 수출금융의 주요 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수은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첫 해외 자금조달

우리은행 최초의 해외 자금조달은 1977년 6월 15일 발틱해상의 여객선 안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백야의 나라 스웨덴의 스톡홀름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Bore Star호 선상에서는 수은 대표와 스칸디나비아 은행(Scandinavian Bank Ltd.) 등 매입은행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억 5,8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P/Note)매각계약 서명식이 거행되었다(선상에서의 계약 체결은 계약에 따른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

연불어음 매각을 통한 외자조달은 우리은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차입비용 면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해외차입 수단 중 가장 유리한 것이었다. 연불어음 매각금리는 $\text{Libor} + 8/11 \sim 4/11\%$ 였는데, 이는 당시 은행차관(bank loan) 조달금리에 비해 $5/8 \sim 3/4\%$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이 연불어음 매각을 계기로 우리은행은 자체 해외 자금조달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출자금 조기 회수에 의한 자금지원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불어음 매각은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관련채무의 조기 상계를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가져와 결과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연불어음 매각은 대출자산의 가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여 수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매각결과 관련한 대출은 원화표

시였기 때문에 원화약세시 자산가치의 하락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는데, 어음매각에 의한 대출금의 상계는 이러한 환율변동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1980년에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이행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원화가 절하됨에 따라 우리은행의 수지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아울러 서명장소였던 보어스타 호에서는 계약 서명식과 함께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정부·경제계 인사를 대상으로한 무역 심포지엄이 개최됨으로써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나라 경제의 참모습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와 북유럽 국가간의 교역확대 방안이 폭넓게 제시되었다.

이 연불어음 매각은 당초 체이스맨해튼 은행 등 세계 일류 은행들이 매각 주선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북유럽 은행들이 영국에 설립한 스칸디나비아 은행이 개척자 정신으로 나서서 성공시킨 거래였다. 돌아켜보면 이 거래는 당시 송인상 은행장, 이태호 전무이사, 전종배 차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래였다.

한편 교섭 개시부터 계약체결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된 계약은 마무리 단계에서 계약서명 당일까지도 계약문안이 타결되지 않아 서명시

각이 연기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결국 4개의 계약서 중 문안이 타결되지 않은 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약 1주일 후에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인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측은 런던에서 서명하고, 상대방은 런던-파리간 항공기 내에서 서명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당초 필자는 이 계약관련 행사의 준비요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다. 이미 초출된 것으로 여겼던 서류박스 5개분의 방대한 무역 심포지엄 자료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 김포공항에서 낫잠을 자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필자가 이를 직접 운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시절에는 여권발급 절차가 까다로와 정부 고위층 인사까지 동원한 끝에 가까스로 여권을 얻어 비행기를 타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필자로서는 난생 첫 해외 나들이였던 탓에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싶어 바짝 긴장한 채로 기내에서 한잠도 못 이룬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했던가? 계약이 어렵사리 마무리되자 필자는 은행장으로 부터 "귀국할 필요없이 1개월간 런던에 남아 연수를 받으라"는 망외의 보너스를 받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유희선 / 당시 업무부 대리)

第4節

國際收支 黒字 전환과 輸銀 支援機能의 다양화(1986 ~ 1989)

1980년대 후반 우리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 경상수지의 흑자 전환, 한 자리수의 물가안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경제적 호황을 맞이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냄에 따라 대외개방 압력이 점차 가중되었으며, 이와 함께 급속한 원화절상, 임금상승 등이 유발되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산업화의 전반기를 끝마쳤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후부터는 산업의 질적 향상, 즉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에도 많은 관심이 두어졌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대내외적인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후발 개도국에 대해 공적개발원조를 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진화가 추구되었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 개회식



1. 國際收支 黒字 전환과 經濟構造 調整 추진

가. 국제수지 흑자 전환

1986~1989년간 우리 경제는 그동안 착실히 수행해 온 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수출은 중화학공업의 거의 전 품목이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1986~1988년간 26.7%의 증가를 보였는데,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82.5%, 일반기계 54.1%, 전자제품 43.2%를 기록하였고, 철강제품과 화학제품 등도 26.1%를 웃도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 기간 중 신개발품인 반도체, VTR, PC 등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생산국은 수개국에 불과하여 대폭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하였다. 한편 선박은 1986년, 1987년에는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64.0%, -37.3%의 수출 감소가 있었으나 1988년에는 50%를 상회하는 증가를 보여 회복세로 돌아서게

經常收支 46억弗 흑자
 韓銀 86년분향 推計
 지출에 후의지출은 46.5조 원이 필요하며 당하는 기금도 46.5조 원이 필요하며 22조 원의 국외외국인 자본을 제당으로 86년 3월 31일 현재에 이르러

1. 國庫金 2. 公債 3. 外債 4. 外資 5. 外貨 6. 外債 7. 外資 8. 外貨 9. 外債 10. 外資 11. 外貨 12. 外債 13. 外資 14. 外貨 15. 外債 16. 外資 17. 外貨 18. 外債 19. 外資 20. 外貨 21. 外債 22. 外資 23. 外貨 24. 外債 25. 外資 26. 外貨 27. 外債 28. 外資 29. 外貨 30. 外債 31. 外資 32. 外貨 33. 外債 34. 外資 35. 外貨 36. 外債 37. 外資 38. 外貨 39. 外債 40. 外資 41. 外貨 42. 外債 43. 外資 44. 外貨 45. 外債 46. 外資 47. 外貨 48. 外債 49. 外資 50. 外貨 51. 外債 52. 外資 53. 外貨 54. 外債 55. 外資 56. 外貨 57. 外債 58. 外資 59. 外貨 60. 外債 61. 外資 62. 外貨 63. 外債 64. 外資 65. 外貨 66. 外債 67. 外資 68. 外貨 69. 外債 70. 外資 71. 外貨 72. 外債 73. 外資 74. 外貨 75. 外債 76. 外資 77. 外貨 78. 外債 79. 外資 80. 外貨 81. 外債 82. 外資 83. 外貨 84. 外債 85. 外資 86. 外貨 87. 外債 88. 外資 89. 外貨 90. 外債 91. 外資 92. 外貨 93. 外債 94. 外資 95. 外貨 96. 外債 97. 外資 98. 外貨 99. 外債 100. 外資	1. 國庫金 2. 公債 3. 外債 4. 外資 5. 外貨 6. 外債 7. 外資 8. 外貨 9. 外債 10. 外資 11. 外貨 12. 外債 13. 外資 14. 外貨 15. 外債 16. 外資 17. 外貨 18. 外債 19. 外資 20. 外貨 21. 外債 22. 外資 23. 外貨 24. 外債 25. 外資 26. 外貨 27. 外債 28. 外資 29. 外貨 30. 外債 31. 外資 32. 外貨 33. 外債 34. 外資 35. 外貨 36. 外債 37. 外資 38. 外貨 39. 外債 40. 外資 41. 外貨 42. 外債 43. 外資 44. 外貨 45. 外債 46. 外資 47. 外貨 48. 外債 49. 外資 50. 外貨 51. 外債 52. 外資 53. 外貨 54. 外債 55. 外資 56. 外貨 57. 外債 58. 外資 59. 外貨 60. 外債 61. 外資 62. 外貨 63. 外債 64. 外資 65. 外貨 66. 外債 67. 外資 68. 外貨 69. 外債 70. 外資 71. 外貨 72. 外債 73. 外資 74. 外貨 75. 外債 76. 外資 77. 外貨 78. 外債 79. 外資 80. 外貨 81. 外債 82. 外資 83. 外貨 84. 外債 85. 外資 86. 外貨 87. 外債 88. 外資 89. 外貨 90. 外債 91. 外資 92. 外貨 93. 外債 94. 外資 95. 外貨 96. 外債 97. 外資 98. 外貨 99. 外債 100. 外資	1. 國庫金 2. 公債 3. 外債 4. 外資 5. 外貨 6. 外債 7. 外資 8. 外貨 9. 外債 10. 外資 11. 外貨 12. 外債 13. 外資 14. 外貨 15. 外債 16. 外資 17. 外貨 18. 外債 19. 外資 20. 外貨 21. 外債 22. 外資 23. 外貨 24. 外債 25. 外資 26. 外貨 27. 外債 28. 外資 29. 外貨 30. 外債 31. 外資 32. 外貨 33. 外債 34. 外資 35. 外貨 36. 外債 37. 外資 38. 外貨 39. 外債 40. 外資 41. 外貨 42. 外債 43. 外資 44. 外貨 45. 外債 46. 外資 47. 外貨 48. 外債 49. 外資 50. 外貨 51. 外債 52. 外資 53. 外貨 54. 外債 55. 外資 56. 外貨 57. 外債 58. 外資 59. 外貨 60. 外債 61. 外資 62. 外貨 63. 外債 64. 外資 65. 外貨 66. 外債 67. 外資 68. 外貨 69. 外債 70. 外資 71. 外貨 72. 外債 73. 外資 74. 外貨 75. 外債 76. 外資 77. 外貨 78. 外債 79. 外資 80. 外貨 81. 外債 82. 外資 83. 外貨 84. 外債 85. 外資 86. 外貨 87. 外債 88. 外資 89. 外貨 90. 外債 91. 外資 92. 外貨 93. 外債 94. 外資 95. 外貨 96. 外債 97. 外資 98. 外貨 99. 外債 100. 外資
---	---	---

1. 國庫金
 2. 公債
 3. 外債
 4. 外資
 5. 外貨
 6. 外債
 7. 外資
 8. 外貨
 9. 外債
 10. 外資
 11. 外貨
 12. 外債
 13. 外資
 14. 外貨
 15. 外債
 16. 外資
 17. 外貨
 18. 外債
 19. 外資
 20. 外貨
 21. 外債
 22. 外資
 23. 外貨
 24. 外債
 25. 外資
 26. 外貨
 27. 外債
 28. 外資
 29. 外貨
 30. 外債
 31. 外資
 32. 外貨
 33. 外債
 34. 外資
 35. 外貨
 36. 外債
 37. 外資
 38. 外貨
 39. 外債
 40. 外資
 41. 外貨
 42. 外債
 43. 外資
 44. 外貨
 45. 外債
 46. 外資
 47. 外貨
 48. 外債
 49. 外資
 50. 外貨
 51. 外債
 52. 外資
 53. 外貨
 54. 外債
 55. 外資
 56. 外貨
 57. 外債
 58. 外資
 59. 外貨
 60.

1986년의 경상수지 흑자 실현 관련기사

되었다.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1981~1989년)

(단위 : 백만달러, %)

	1981		1983		1985		1987		1989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음료 및 직접소비재	1,467	6.9	1,223	5.0	1,259	4.2	2,191	4.6	2,466	4.0
원료 및 연료	589	2.8	1,023	4.2	1,374	4.5	1,522	3.2	1,666	2.6
경공업 제품	10,109	47.6	9,655	39.5	11,117	36.8	19,634	41.6	24,782	39.7
섬유제품	6,029	28.3	5,838	23.8	6,627	21.8	10,997	23.2	14,427	23.1
신발류	1,021	4.8	1,232	5.0	1,524	5.0	2,731	5.7	3,219	5.1
중화학공업제품	9,089	42.7	12,544	51.3	16,476	54.5	23,934	50.6	33,462	53.7
회공품	315	1.4	379	1.5	575	1.8	855	1.8	1,338	2.1
철강제품	1,771	8.3	1,748	7.1	1,718	5.6	2,161	4.5	3,504	5.6
기계류	608	2.8	865	3.5	1,381	4.5	3,235	6.8	5,625	9.0
전자제품	1,814	8.5	2,442	9.9	2,907	9.5	6,421	13.5	9,150	14.6
선박	1,411	6.6	3,735	15.2	5,040	16.6	1,138	2.4	1,786	2.8
자동차	70	0.3	87	0.3	519	1.7	2,748	5.8	2,048	3.2
합계	21,254	100.0	24,445	100.0	30,226	100.0	47,281	100.0	62,376	100.0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물가는 1982년부터 高物價時代를 벗어나 한자리수 물가시대에 진입한 후 1987년까지 계속 3% 내외의 획기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하여 왔으나, 1988년은 노사분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7.1%의 다소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1989년의 경제는 실질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부진하여 이전 3년간의 12%대의 고율 성장에 훨씬 못 미치는 6.9% 성장에 그쳤다. 수출이 부진했던 것은 그간의 원화절상과 높은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분규에 따른 수출차질이 늘어났던 데 기인하였다.

특히 1986년 이후 원화의 對美달러 환율이 크게 절상되어 1988년에는 13.7%라는 큰 폭의 절상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달러당 원화가치가 1985년의 890원 수준에서 1989년에는 680원 수준으로 상승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이는 1989년 이후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수지면에서도 수출의 부진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988년의 142억달러에서 51억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으로 총외채는 300억달러 이하로, 순외채는 3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되

었다. 물가는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파급효과가 있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86~1989년 중의 우리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 한 자리수의 물가안정 등을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선진 경제로 진입하는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다.

주요 경제지표 (1986~1989년)

	1986	1987	1988	1989	연평균증가율 (%)
경제성장률(%)	11.9	12.3	12.0	6.9	10.8
공업구조(%)					
경 공 업	40.4	40.1	36.8	35.8	-
중 회 학 공 업	59.6	59.9	63.2	64.2	-
수 출 (백만 달러)	33,913	46,244	59,648	61,409	24.2
수 입 (백만 달러)	29,707	38,585	48,203	56,812	21.3
경상수지(백만 달러)	4,617	9,854	14,161	5,055	-
생산자물가지수 *	91.7	92.1	94.6	96.0	0.8
환 율 (원 / 달 러)	861.4	792.3	684.1	679.6	-
원 화 전 상 륜 (%)	(3.2)	(8.0)	(13.7)	(0.7)	(7.1)
명목임금상승률 (%)	9.2	11.6	19.6	25.1	16.4

* 1990년 =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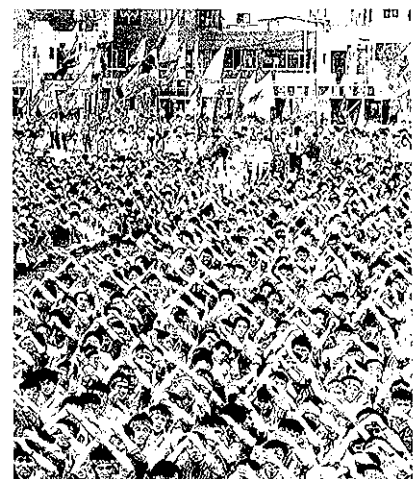
나. 경제구조 조정 추진

1980년대 후반기는 3저현상의 지속 등 유리한 대외여건을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조정에 박차를 가한 시기였다.

이 기간 중 급속한 원화절상, 노사분규 및 임금의 급상승으로 우리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계속된 시장개방으로 대외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으며, 특히 후발 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보호무역, 기술장벽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제동을 가해옴에 따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요청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우리 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자율화 및 개방화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의 산업구조 조정 노력을 유도할 수

1980년대 후반의 노사분규 현장



있도록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金融自律化의 단계적 추진, 公正去來制度의 도입 등으로 국내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수입자유화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해외경쟁을 국내시장에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 기간 중 정부가 경제 구조 조정을 위해 취한 주요 시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합리화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

정부는 1986년 工業發展法을 제정하여 자동차, 발전설비, 전자교환기, 동제련, 디젤엔진, 중전기기, 건설 중장비 등 7개 업종을 合理化業種으로 지정하였다. 이 법은 종전의 선별적 산업육성법을 대체한 것으로, 합리화기간(1986~1989년) 동안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국산화율의 제고 및 수출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조선산업은 1989년 8월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1983년 이후 세계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국내 조선업체가 선박수주량 감소, 선가 하락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일부 조선업체는 재무구조의 악화로 도산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산업 합리화의 기본방향은 ① 공동 기술개발의 확대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② 조선시설의 신·증설 억제와 低價受注 및 과당경쟁의 방지에 의한 經營合理化 추진 ③ 계열기업의 처분, 자산의 매각, 계열사의 출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

(2) 기술개발 노력의 가속화

1986년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 전환에 따라 대외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국제 기술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맞아,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루지 않고서는 당면한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국민총생산 대비 과학기술 투자규모가 1980년의 0.9%에서 1986년에는 2.0% 수준으로, 1989년에는 2.2%로 제고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특히 기업의 기술개발이 크게 활성화되어 기업부설 연구소의 수가 1986년 297개에서 1989년에는 749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정부와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비율도 1980년 68 : 32에서 1989년에는 26 : 74로 민간부문이 크게 앞서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기초화학 연구, 공공복지기술, 대형·복합 첨단기술, 국제 공동연구 등 민간이 담당하기 곤란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기술개발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3) 중소기업의 육성 촉진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부문의 상대적인 부진은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 기간 중 중소기업들은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과 수입개방 압력, 대내적으로는 노사분규와 임금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조정과정을 원활히 극복하여 경쟁력 및 기업체질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일환으로 1989년 6월 처음으로 해외투자에 대해 特別外貨貸出資金 1억달러를 지원한도로 설정하여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의 해외이전을 촉진하였다. 특별외화대출자금의 확충 및 대일본 수입의 부분적 허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1988년 6억달러에서 1989년에는 13억달러로 확대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9년 4월에 부산에 技術信用保證基金을 설립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확충을 위하여 부산과 대구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하였다.

(4) 금융자유화 추진

우리 경제의 자유화는 1980년 초 이후 안정화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대다수의 금융상

품에 대한 금리규제와 함께 외환·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규제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규제는 1986년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부터 크게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이후의 지속적인 물가안정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된 한편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투자재원의 자립이 가능해졌으며, 기업의 내부유보도 증대되고 자금부족 규모도 감소함으로써 금융자유화 여건이 점차 성숙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국내 금융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선진국으로부터의 금융시장 개방 압력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의 진입제한 완화, 金利自由化 등을 비롯한 금융의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金融自由化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금리자유화는 1988년 12월부터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여신금리 자유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금융에 적용되었던 연 10%의 우대금리제 적용, 지방은행 대출금리의 연 1% 포인트 가산제 및 연체대출에 대한 연 19%의 최고금리 적용제도 등은 모두 폐지되었다.

아울러 금리자유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금리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기준금리로서 프라임레이트(prime rate)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신금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치기간별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의 금리 격차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둠에 따라, 자유화 대상은 일부 장기 수신금리에 한정되었다.

또한 장내·장외 콜시장이 통합운영되고 무역금융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무역어음제도가 도입되었다. 외환시장에 있어서도 對顧客換率 결정의 자율화, 한은집중매매율의 신축적 운용, 선물환거래 제한의 완화 등을 시행하여 가격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외화 콜시장이 개설되고 외환집중제가 일부 완화되었다.

다. 개방화 추진과 대개도국 경제협력 기반 구축

(1) 개방정책 추진

1980년대 들어 국가간 통상마찰의 주요 쟁점은 개별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보다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의 시정이라는 측면으로 옮겨져 갔다. 특히 미

국은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 상품시장은 물론 서비스 및 자본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가간 통상 마찰의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쟁기반의 확충을 통한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대외 시장개방을 적극 추진하였다.

1980년대 후반기는 輸入自由化의 확대, 關稅 인하 등 상품시장의 개방에 주력한 시기였다. 정부는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수입자유화를 확대하였는데, 1986년 7월 1일부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과보호하고 있는 품목,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자유화가 필요한 품목, 또는 향후 추가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국제적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수입 원자재로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등을 수입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품목선정 기준에 따라 1986년부터 공산품의 수입개방이 크게 늘어나, 수입자유화율은 1985년 87.7%에서 1989년에는 95.5%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공산품의 수입자유화율은 1985년 89.8%에서 1989년에는 99.5%에 이르게 되어 거의 전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수입자유화와 함께 관세인하 계획도 추진되었는데, 1985년의 제1차 관세인하 5개년계획에 이어 1988년에는 우리나라의 관세보호를 1992년까지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제2차 관세인하 5개년계획이 채택되었다.

外換去來에 대한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그 속도는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1986년부터 빨라졌다. 정부는 1988년 11월 IMF 8條國에 가입하였으며, 또한 GATT 제18조 B항에 의거하여 정당화되어 오던 수량적 수입제한의 특혜를 1990년 1월부터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이 기간 중에 기술도입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가 시작되었으며, 지적 소유권도 국제규범에 따라 보호하도록 되었다. 더욱이 1988년에는 자본시장 자유화 5개

수입자유화율 증가 추이

(단위 : %)

	1984	1985	1986	1987	1989
전 품목	84.8	87.7	91.5	93.6	95.5
(공 산 품)	(86.7)	(89.8)	(94.0)	(96.6)	(99.5)

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는 자본시장의 국제경쟁 노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2)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일원으로서 그간 통상·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다. 개도국은 우리나라 교역의 약 1/3을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건설 진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더구나 우리의 산업구조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제고되어 새로운 수출시장의 확보 및 해외진출 기반의 조성이 긴요한 상황에서,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던 시장을 다변화하고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한편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이 크게 요청되었다. 대부분의 후발 개도국들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개발경험과 기술 및 자본 등의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따라서 축적된 개발경험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같은 대내외 여건의 성숙과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는데, 1987년에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이 설치됨에 따라 그 활동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즉 1987년 이전의 公的開發援助(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개도국 훈련생의 초청 및 전문가 파견, 무상 기술용역의 제공 등 소극적 활동에 그쳤으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치로 자본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개도국들이 산업개발을 위한 산업설비 및 기자재를 우리나라로부터 공급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줌으로써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 나라와의 자본협력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2. 輸銀 支援機能의 다양화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經濟構造 調整과 開放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국제 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면서 수은의 지원기능도 새로운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즉 주요 지원대상 품목인 선박과 플랜트의 수출 부진으로 수출지원 기능이 위축된 반면, 수입금융제도의 시행과 해외투자 지원체제의 확충, 그리고 정부 위탁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의 수행 등으로 기능의 다양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기능의 변화는 일반적인 국제화 과정이 수출입 등 무역에서 출발하여 해외투자와 대외경제협력의 단계로 고도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國際化 支援機能의 다양화'로 집약될 수 있으며, 수은의 지원기능이 '수출입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을 촉진한다'는 수은법상의 설립목적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심전심

예견된 일이긴 하였지만 1986년 100척이 넘는 선박을 지원한 이후 선박수주는 격감하였고, 플랜트 수출은 아직 우리들의 욕심처럼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업무 실적도 크게 침체되어 은행 전체적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모두들 막연히 느끼고만 있었던 해묵은 과제들을 사석에서건, 공식에서건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의류 등의 경공업 제품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은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이나, 확대된 품목의 지원에 필요한 단기수출 지원금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한 것, 그리고 업무 방법서에 제도만 규정된 채 시행되지 않고 있던 수입자금을 비로소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였다.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같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1988년도 감사원 감사 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1986년 이전에 미리 업무활성화 작업에 돌입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관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1985~86년 무렵에는 수출지원 건수가 많아서 한정된 인원으로 이를 취급하기에 비뻤던 우리로서는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활성화 노력이 그다지 지체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았으므로 감사관과 한동안 옥신각신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사관의 입장이 우리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측면지원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담겨있음을 알고 서로 웃고 말았다.

(최지호 / 당시 심사1부 과장)

수은은 국제화 지원체제의 확충을 위해 1986년 12월의 제3차 수은법 개정과 두 차례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1987년 이후 해외투자자에 대한 금융 및 정보의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1988년에는 수은법 제정 이후 시행되지 않았던 수입금융 업무를 개시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정부의 위탁에 따라 신설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86~1989년 기간 중 수은의 지원실적은 수출지원에 1조 8,639억원, 해외투자자금과 수입자금의 지원에 각각 1,753억원과 976억원을 승인하였다. 특히 해외투자금융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정부의 中小企業 育成政策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한편 이 기간 중에는 수출자금의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단기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소 자본재 및 기계류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 제3차 수은법 개정

수은법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79호로 개정, 공포됨으로써 1969년 제정 이후 세번째 개정을 보게 되었다. 제3차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이 증액되고 수입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투자자금 지원업무와 국내외 법인에 대한 출자금거가 신설되는 한편, 수은의 자율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배증되었다. 이러한 법정자본금의 확대는 납입자본금 규모가 1985년 말 4,279억원, 1986년 말에는 4,579억원에 달하여 법정자본금 규모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또한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은 수은의 입장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액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수입자금의 지원대상 범위는 '해외 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료 및 재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물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민경제상 장기 안정적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물자 및 자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물자 또는 주요 자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출용·내수용의 구분 없

이 중요 물자나 주요 자원에 대하여 수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수입지원 기능의 확대는 통상마찰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고, 해외에서의 자원개발 방식에 수반되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해외 자원의 적기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현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二重課税防止協定에 따른 지급이자의 원천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수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업무와 해외차입 및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등 자금조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외에 子會社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국채의 보유, 한국은행에의 예입,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정되었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도 수은의 자금지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수은법에 규정되어 있던 運営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으로 하부 위임되었으며, 사무취급비 등의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있던 수은의 대출이율이나 어음할인을 및 채무보증료를 수출경쟁력의 유지나 해외투자 등의 촉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業務力法律에서 정하고 있던 용자비용, 이자율, 원리금 회수방법 등 여신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수은의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업무방법서에서는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여건의 변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수출금융의 부진

1980년대 후반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은 주요 지원대상 품목인 선박 및 플랜트의 수출 부진과 연불수출금융 수요의 감퇴로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선박인수 기피 관련기사 (매일경제, 1985. 9. 25)

세계 조선시장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장기 불황이 1988년까지 계속되다가 1989년부터는 활황세로 전환되었다. 1989년의 시황 회복은 海運市況의 호전과 船腹需給이 균형을 이루면서 초대형 유조선(VLCC)을 중심으로 노령선의 대체건조 수요가 왕성해지고 선가 급등에 자극받아 조기 발주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선박 수출은 1980년대 후반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주실적에서 모두 심한 기복을 보였다. 수출선 수주실적은 1983년의 374만G/T에서 1985년에는 134만G/T로 반감되었다가, 1986년 이후 엔화가치의 급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우위로 1987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416만G/T를 기록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도 일본의 34.7%에 근접한 30.2%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1988년 중 원화가치 급등과 노사분규 및 임금상승에 따른 수주경쟁력의 약화로 278만G/T로 감소하였다가, 1989년에는 시장점유율이 16.7%로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조선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322만G/T로 다소 회복되었다.

한편 플랜트 수출시장은 1980년대 후반 油價急落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개발수요와 해양 유전개발 사업의 감퇴, 그리고 외채위기를 맞은 개도국의 개발계획 축소

비운의 Probo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선구자였던 대한조선공사(이하 '조공')는 비운의 배 Probo를 남기고 불행하게도 한 시대를 마감했다. 조공이 6척의 시리즈 선박인 Probo선을 수주한 것은 1983년 여름. 그 해는 해운시장의 불황으로 선가가 바닥이라고 본 선주들의 투기적 발주로 인해 세계 조선시장이 '침체 속의 미니붐'이라는 이상 현상을 보인 해였다. 비록 곧 다가올 선박인도 지연사태를 예고하는 불길한 징후였지만.

문제의 발단은 6척 중 첫번째 배의 건조가 완성되어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운항 중의 안전성과 hatchcover seal의 성능에 결함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선가의 잇단 하락으로 인도 거절의 빌미를 찾던 선주로서는 호재였다. Probo선은 방향전환시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엔진부위의 선체에 fin을 달고 있었는데, 쾌속정 등 속도가 빠른 일부 군함의 경우 외에는 상선에 fin을 부착하는 경우는 없었다. hatchcover

seal은 유류 등 액체 화물이 새지 않도록 장착하는 일종의 고무패킹인데,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도 딱딱해지거나 금이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도의 제작기술을 요하는 것이었다.

선주측은 성능하자를 이유로 선가감액과 하자 수리를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선박인도의 지연이 장기화되자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조공은 급가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은 조선공사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주채권자인 우리은행과 신탁은행을 공동보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우리는 Probo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선주측과의 협상을 주선하였고, 수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넘어 협상은 마침내 타결되었다. 그러나 워낙 어려웠던 상황 탓에 600만 달러의 선가 감액, 문제가 되었던 fin과 hatchcover seal의 독일 및 스웨덴 제품으로의 교체 등, 선주측의 뜻이 많이 관철되었다. 당시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서 송도 앞 해상에 계류중이던 Probo선이 갑자기 몰아닥친 태풍으로 인해 침수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어려움을 더하였다.

조공의 불행은 조선시장의 불황에 연유한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념의 선종이었던 Probo선(정유제품, 원유, 광물, 곡물 등 다양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종으로 product, oil, bulk, ore의 약자임)을 기술적 검증 없이 수주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쨌든 Probo선은 우리은행이 하자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6척 모두 인도될 수 있었으나, 조공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진그룹에 인수되어 한진중공업으로 다시 탄생하였다. 조공은 사라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Probo선은 오대양 어딘가를 유유히 항해하고 있을 것이다.

Bon Voyage! Probo!

(방요원 / 당시 금융2부 과장)

등의 요인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여기에 미국의 우리나라 海上構造物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와 원화절상 및 임금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 등으로 우리나라의 플랜트 수출은 1985년의 13억 8,700만달러에서 1986년에는 6억 2,600만달러로 급감한 이후 1988년까지 감소하였다가, 1989년 들어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강화 등에 힘입어 5억 400만달러로 다소 회복되었다.

이처럼 선박과 플랜트의 수출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수은의 수출금융 승인액은 1986년의 3,144억원으로 급감하였고, 1987년 중 8,357억원으로 회복되었으나 1988년에는 2,253억원, 1989년에는 4,816억원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1988년 이후 승인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低金利 추세로 연불수출거래의 비중이 감소한 데에도 영향을 받았다. 선박수출의 경우 1980년대 전반 60~80%에 달하였던 연불수출거래의 비중은 1988년과 1989년에는 40%대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편 수은은 선박과 플랜트 등 주요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이 부진을 보이자 지원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한 수출저변의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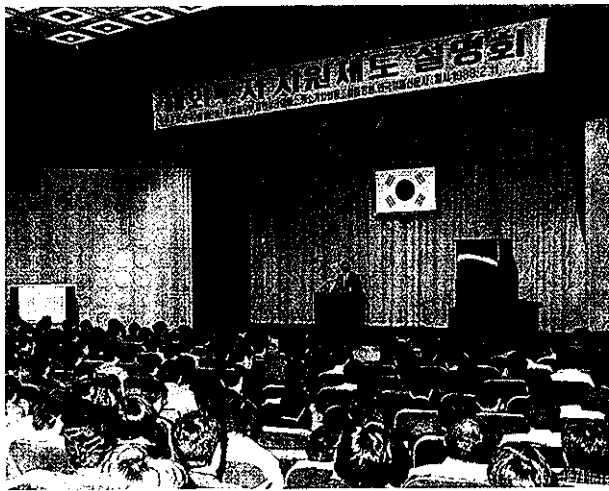
수은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가정용·사무용·오락용 기계류와 전기기기, 항공기와 그 부품류, 광학기기와 정밀기기 및 의료용 기기 등을 새로운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중소 자본재 및 기계류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단기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80년대 들어 세계무역의 선도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다소비형 重厚長大 산업으로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輕薄短小 산업인 첨단산업으로 전환되는 세계무역의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또한 수은이 지원하는 선박 및 플랜트의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제작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수은내국신용장 수혜자에 대한 직접대출제도를 신설하여, 중소 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를 도모하였다.

다. 해외투자 지원체제의 확충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86년의 국제수지 흑자 전환을 계기로 본격적인 확대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화가치의 절상과 임금의 상승 및 세계적인



(위) 해외투자 지원제도 설명회 (1988. 2)

(아래) 해외투자상담실 개설 (1988. 4)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해외투자를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정부도 종래의 국제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한 外換管理의 차원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조정과 해외시장의 개척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의 자유화를 크게 진전시켰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85년의 6,654만달러에서 1986년 1억 6,118만달러, 1988년 1억 6,410만달러, 1989년에는 3억 9,239만달러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기간 중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진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가 낮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수은은 해외투자자금의 수요 증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종래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일부 금지대상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해외투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수은의 해외투자 지원실적은 1986년의 325만달러에서 1988년에는 5,804만달러, 1989년에는 1억 8,932만달러로 급증하여, 수은이 지원한 해외투자금용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말 건수기준 10.7%, 금액기준 12.9%에서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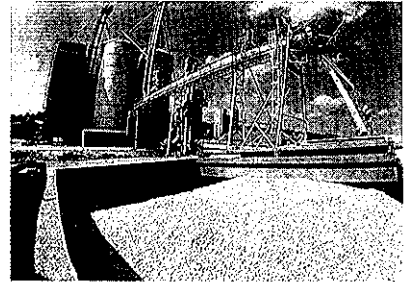
에는 건수기준 24.7%, 금액기준 37.9%로 급증하였으며, 1989년에는 건수기준 47.2%, 금액기준 58.0%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수은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금리, 융자비용, 지원절차 등 금융조건면에서 우대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수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계속 확대되어 1989년에는 41%에 달하였다.

또한 수은은 정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투자에 필요한 정보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1988년 4월 海外投資相談室을 개설하여 해외투자 허가제도, 신고수리 절차, 금융 및 보험 지원제도, 투자대상국의 사업환경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후 불과 2년 반 사이에 해외투자 상담실적은

4,200건을 상회하였으며, 이 중 중소기업의 이용실적이 60%를 차지하였다.

라. 수입금융제도의 시행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자 미국 등으로부터 대외개방 압력이 거세지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수입자유화의 확대 등 市場開放 조치를 통해 대응하였다. 수은은 통상마찰 완화와 국제수지 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정책적 필요와 함께, 국민경제상 필수적인 중요 물자와 주요 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꾀하기 위하여 1987년에 輸入資金 支援制度를 새로 정비하고 1988년부터 자금지원을 개시하였다.



수입곡물의 하역 장면

명실상부한 수출입은행의 탄생

1988년 3월 수은법과 업무방법서 규정 속에 잠자고 있던 수입금융 업무가 개시됨으로써 우리 은행은 명실상부한 수출입은행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첫 승인 거래는 유한킴벌리의 목재펠트 수입.

당시 금리 연 9~10%의 원화표시 대출이었는데, 원화가 평가절하되고 있던 시기여서 수입기업의 문의와 상담이 폭주하였다. 근무시간에는 거의 상담과 문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고 근무시간 후에 시간을 내어 승인서 등 서류작업을 해야 하는 일과가 계속되었다.

당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하여 오후까지 승인을 요청하는 일들도 적지 않아 우리를 당황하게 했지만 성심껏 임한 결과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고객의 얼굴을 보았을 때의 기분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다.

특히 수은법의 제약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주력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을 알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은

행의 정보망을 통해 자원수급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도서관을 비롯한 산림청, 광업진흥공사, 농수산부 등의 자료를 탐색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국제 주요 원자재의 시세 및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는 전문가가 되었고 런던, 뉴욕, 싱가포르 시장 등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도입 첫해인 1988년 200억원으로 시작하였던 공급규모는 1993년부터는 그 10배인 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초기의 복잡하고 어렵던 지원제도도 간단하고 편리해졌다.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1990년대의 국제수지 적자와 더불어 외부의 곱지 않은 시각으로 말미암아 지원규모가 당초의 기대만큼 커나가지 못한 점은 도입 초기의 실무 담당자로서 꼭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황국환 / 당시 심사2부 행원)

수입자금의 지원대상 품목은 제3차 수은법 개정과 1987년 및 1988년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크게 확대되어, 철광 등 55개 품목의 중요 물자와 원당, 생고무 등 주요 자원에 해당하는 45개 품목으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자원은 대부분 망라되었다.

수은의 수입자금 지원은 처음 시행된 1988년 전체 승인실적의 5.8%에 해당하는 127억원의 승인실적을 기록한 후 이듬해인 1989년에는 775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탄생

1986년 9월 12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수탁 준비를 위한 5명의 업무연구반이 기획부 산하에 설치되어 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시급한 것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안) 및 시행령(안)을 확정짓는 문제였는데, 주무부처였던 재무부 해외투자과의 오무영 과장 및 배선영 사무관과 함께 1986년 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워낙 일정이 긴박하여 연구반 직원들은 재무부에서 그 곳 직원들과 밤샘작업을 거듭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가 마련한 초안을 골간으로 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계획대로 1986년 12월 26일 공포될 수 있었다.

법 제정 이후에는 기금의 심사, 자금지출 등 실무에 필요한 세부 지원절차와 표준차관계약서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경험기금 업무 취급규정' 제정 과정에서는 과거 중소기업은행에서 USAID, OECF, ADB 등 차관업무를 실제로 취급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일본 OECF가 우리나라에 주었던 차관 관련 참고 자료를 한 보따리 수집하였던 일, 그리고 일본 OECF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어렵사리 OECF의 한국에 대한 차관계약서 사본 등을

입수하였던 일이 기억난다.

한편 '표준차관계약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공적원조자금에 대한 Model Form이 되는 까닭에 변호사측은 그 양이 방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담당변호사인 조대연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 차관계약서 서명을 정부에서 할 것이냐 우리은행에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정부와 설왕설래하였던 생각이 난다. 정부측의 입장은 'Loan Agreement'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공공차관을 도입할 때 사용하였던 용어인 '차관협정서'에 해당하는 정부간 협정이므로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일반적인 '차관공여계약서'라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이 서명의 주체가 되도록 관련규정에 반영되었는데, 우리은행의 위상과 담당직원들의 긍지를 고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험업무에 참여하였던 작은 보람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정문모 / 당시 경제협력기금부 부장)

마.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의 개시

수은은 1987년 6월 정부의 수탁 요청에 따라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수은은 1986년 8월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방침이 확정되자 곧이어 1986년 9월 業務研究班을 구성하여 기금의 설치에 필요한 법령 및 제반 규정의 제정작업에 참여하여 정부를 지원하였고, 업무 개시 이후에는 업무기반의 구축과 개도국 지원 확대에 노력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기여하였다.

수은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수탁하게 된 것은 수은이 제공하는 수출신용과 공적개발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서로 다른 정책수단이라는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재의 공여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책목적의 유사성이 크고, 또한 자금지원 업무에 필요한 情報的 資源이 유사함으로써 그동안 축적된 수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은이 업무를 개시한 이후 1989년까지 정부는 나이지리아의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및 인도네시아의 파당시 도로건설 사업 등 4개국의 4개 사업에 대해 292억원의 지원방침을 결정하였고, 1989년 나이지리아에 대해 12억원의 차관자금을 최초로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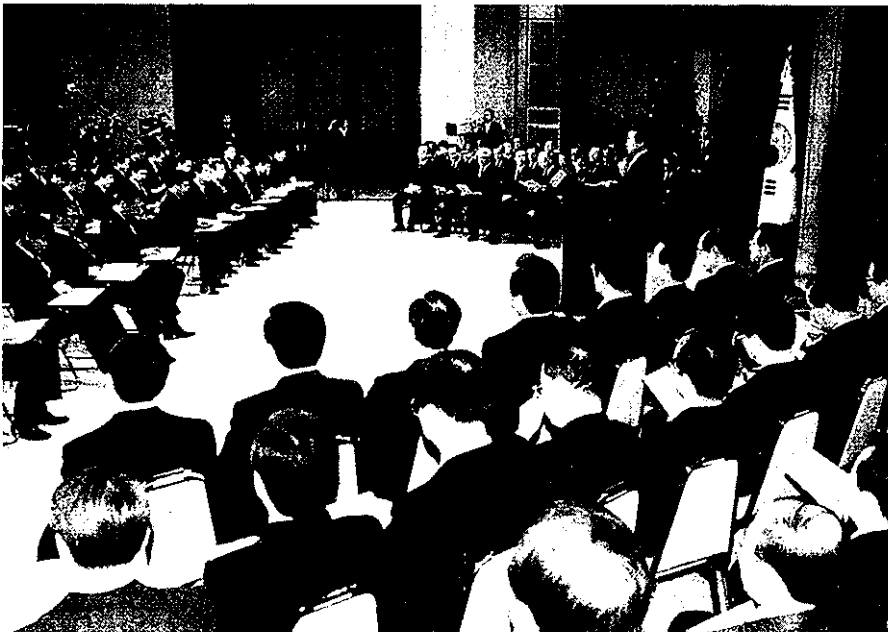
第5節

經濟의 國際化 진전과 輸銀의 對外去來 專門 支援體制 구축(1990~현재)

1990년대 들어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고 격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초 선진경제 진입이라는 국가정책 목표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동·서간의 이념대결이 종식되면서 국가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경쟁이 치열해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우월적 지위 보호와 세계시장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각축전이 세계경제의 多極化와 무한경쟁 구조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인접국 또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이 결속하는 지역주의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선언’을 발표한 김영삼 대통령의
1995년도 연두 기자회견



한편 국내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전된 민주화와 국민의 욕구 증대,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로 우리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소련, 중국 등 舊共產圏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북한과의 경제교류도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도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1. 經濟의 國際化 진전

가. 경제의 자유화 추진과 안정적 성장 지속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초에 걸쳐 정치적 민주화가 고양되면서 근로자 계층의 욕구가 강하게 분출되었다. 그 결과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제조업의 임금지수(명목임금) 증가율이 연평균 17.1%를 기록한 반면 노동생산성 지수의 증가율은 연평균 9.5%에 불과한 사실에서 보듯이, 1960년대 이후 우리 기업의 주요한 국제경쟁력 요인이었던 저임금 구조는 선진국형 고임금 구조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이에 더하여 원화절상 및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무역수지는 1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던 198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7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경제성장은 1990년과 1991년에는 소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 호조에 힘입어 9%대의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1992년에는 경기순환적 요인과 고임금 지수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겹쳐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5.0%의 성장률을 보였다. 물가 역시 임금인상과 과열된 건설투자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90년과 1991년 중 10%에 가깝게 상승하여, 1980년대 이후 유지되었던 한 자리수 물가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1993년 출범한 신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한편,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운영에서 오는 비능률을 제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제반 시책을 추진하여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를 이룩해 내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 아래 新經濟 5個年計劃(1993~1997년)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서는 경제개혁의 중점을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진작될 수 있도록 대내외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반을 확립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공정한 경쟁과 자율성의 보장 및 경제정의의 구현을 위해 재정, 금융, 행정 등 각 분야의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經濟改革의 추진과 더불어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의 강화를 경제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잠재성장률을 높여가되,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금융개혁안 발표
(매일경제, 1993. 5. 23)



재성장률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구조를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공정경쟁의 틀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및 농·어업의 육성, 기술·인력의 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시책을 금융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金融自律化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구조를 개편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금융자율화의 주요 내용은 금리의 자유화, 간접통제방식의 확대, 여신관리제도의 개편, 은행 내부의 경영자율화 및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특히 정부는 1993년 11월에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1994년 7월과 12월에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 2년 이상의 정기예금 금리 및 회사채, 금융채, 국공채, 통화채의 금리를 자유화하였다.

한편 1993년 8월 대통령의 '緊急財政經濟命令'에 의해 金融實名制가 전격 실시되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하경제의 척결과 함께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의 조짐을 가시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실명제 발표 (중앙경제, 1993. 8. 13)

주요 경제지표 (1990~1994년)

	1990	1991	1992	1993	1994	연평균증가율 (%)
경제성장률 (%)	9.5	9.1	5.1	5.8	8.6	7.6
공업구조 (%)						
경 공 업	34.1	31.7	30.6	28.4	26.9	-
중 회 학 공 업	65.9	68.3	69.4	71.6	73.1	-
수 출 (백만달러)	63,124	69,582	75,169	80,950	93,676	8.9
수 입 (백만달러)	65,127	76,561	77,316	79,090	96,822	11.6
경상수지(백만달러)	-2,179	-8,728	-4,529	385	-4,531	-
생산자물가지수 *	100.0	104.7	107.0	108.6	111.6	3.1

* 1990년 =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당초에는 이러한 신정부의 과감한 제도개혁이 경제의 성장기반을 저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신경제계획 추진 이후 우리 경제는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를 이루게 되었다. 경제성장률은 세계경기의 부진 속에서도 1993년에 5.8%로 회복추세를 보인 이후 1994년 8.6%, 1995년 9.0%로 다시 고도성장을 실현하였다. 물가

산업별로는 輕工業과 重化學工業의 兩極化 현상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공업은 경기침체기인 1992년과 199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경기호황기인 1994년과 1995년에도 4%대의 저조한 성장을 나타낸 반면, 중화학공업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선박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994년 13%, 1995년 17%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 중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1994년에 27 : 73, 수출에서 차지하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1995년에 24 : 76을 기록하였다.

(단위 : 억달러, %)

	1990		1991		1992		1993		199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650.2	4.2	718.7	10.5	766.3	6.6	822.4	7.3	960.1	16.8
경공업 제품	251.5	1.5	253.0	0.6	248.3	-1.9	240.8	-3.0	257.4	6.9
섬유류	139.4	-3.4	147.2	5.6	150.1	1.9	151.3	0.8	163.4	8.0
신발류	40.2	25.0	35.8	-11.1	29.1	-18.6	20.3	-30.0	14.9	-26.8
중화학 제품	358.6	7.2	415.0	15.7	462.9	11.5	524.0	13.2	639.5	22.0
화학품	17.4	30.2	23.5	35.1	34.6	46.8	37.9	9.7	49.0	29.3
철강	56.6	-1.8	59.9	5.8	70.2	17.2	80.5	14.6	77.8	-3.3
기계류	60.6	7.7	70.0	15.6	75.5	7.8	86.5	14.6	103.3	19.3
전차	102.3	11.8	116.0	13.4	127.7	10.1	134.6	5.4	181.7	35.0
(반도체)	(45.4)	(12.8)	(56.9)	(25.4)	(68.0)	(20.2)	(70.3)	93.3)	(129.8)	(84.8)
자동차	21.6	-7.2	25.7	19.3	31.5	22.3	48.9	54.4	57.6	18.5
선박	28.0	56.6	41.3	47.4	41.1	-0.4	40.6	-1.3	49.4	21.8

수출 1,000억달러 돌파 관련기사
(매일경제, 1995. 10. 28)

1.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2.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3.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4.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5.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6.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7.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8.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9.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10. 199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輸出 1천억 弗 오늘 돌파

64년 1억弗이후年 25%씩 증가

국제수지면에서는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원화절상과 시장개방의 확대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1994년과 1995년에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경상수지는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본시장 개방 확대로 주식투자 등을 위한 외국자본 유입이 급증하여 종합수지는 1992년 이래 큰 폭의 흑자를 실현해 오고 있다.

나. 능동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추진

세계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감에 따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責任分擔 요구가 늘어났고,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개척자적인 국가라는 인식이 중국, 러시아 등 시장경제전환국가들간에 확산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의 경제협력 요청도 크게 증대되었다. 한편 이 기간 중에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南北 經濟交流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전반기의 대외경제협력의 특징은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市場經濟轉換國家와의 경제협력 강화, 南北間 經濟交流의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1) 해외투자의 증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수출입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의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서 국경이 사라지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外國換管理法 등 해외투자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한 자유화·개방화 조치로 해외시장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해외 투자기업간의 출혈경쟁 및 국내 산업의 空洞化 현상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1988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각종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994년 외환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확대조치로 투자액이 급증하고 있다. 1994년의 총 해외투자액은 23억 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8%가 늘어났으며, 이어 1995년 1~9월 중에도 전년동기 대비 45.4%가 증

가하였다.

이처럼 이 기간 중 해외투자가 급증한 것은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요인, 즉, 민간 기업 스스로의 해외진출 노력과 정부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산업별, 국가별로 볼 때 잔액기준으로 해외투자의 약 절반 가량이 북미와 동남아 지역의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었다. 1994년에는 인가액 기준의 65%가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로서, 업종별로는 1차금속, 금속조립(또는 기계류), 섬유 및 신발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섬유와 신발업종의 해외투자는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천만달러)

	1968~1977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광업	-	-	71,424	151,959	123,294	140,159	144,701	113,477
임업	20,277	-	3,211	5,550	250	1,900	4,547	1,035
수산업	6,277	125	2,089	27,854	14,404	26,032	7,752	8,579
제조업	14,810	6,451	20,747	477,905	598,133	651,340	536,071	1,524,921
건설업	3,453	5,449	1,590	4,931	12,662	466	20,150	64,317
무역업	16,383	4,487	11,122	219,925	232,939	303,268	409,200	487,897
기타	18,213	1,252	5,379	60,602	143,682	121,882	195,000	146,435
계	79,413	17,764	115,562	959,326	1,125,364	1,255,047	1,317,421	2,236,661
증가율 (%)	-	-	-	-	(17.3)	(11.5)	(5.0)	(78.1)

자료 : 한국은행,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1995, 11

(2) 시장경제 전환국가와의 경제협력 증대

1991년 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1992년 이후 舊社會主義計劃經濟國家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구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개방의 가속화는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韓·中 관계는 1990년 양국간에 무역대표부가 설치된 이래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 교류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2년 8월에는 양국간에 정식으로 수교가 이루어졌다. 베트남과는 1991년 12월 수교교섭단이 베트남을 방문한 뒤 1992년 12월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하고, 양국간 경제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舊蘇聯邦인 獨立國家聯合(CIS)과는 1991년 12월 러시아와의 수교를 필

한·중 수교 (매일경제, 1992. 8. 24)



두로 각 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개설하였으며, 구소련과 체결된 모든 협정은 러시아가 승계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과는 외교 수립 이후 무역 및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제 관련 일반협정을 체결하고,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을 통해 상호 교류기반을 넓혀나갔다.

이러한 경제협력 기반의 꾸준한 확충으로 이들 국가(중국, 러시아, 베트남)와의 교역은 1992년 70억 7,000만달러에서 1993년 114억 7,000만달러, 1994년에는 150억 달러로 연간 30.8%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은 1994년 말 현재 116억 7,000만달러에 달해 우리의 제3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수출입 형태도 우리가 이들 국가에 전자·섬유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이들 국가들로부터는 주로 농수산물, 자원 등 1차상품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를 보임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종전의 수출시장이 크게 다변화되었다.

무역 확대와 더불어 직접투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국가별로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내수수요의 열기 및 성장애로 요인의 해소를 위한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꾸준한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 총 해외투자 중 대중국 투자의 비중이 1994년 말 현재 14.4%로 우리의 제2위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 역시 1992년 미국의 대베트남 禁輸措置 해제 이후 1993년과 1994년에는 연간 200%가 넘는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이들 시장체제전환국가에 대한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외에 經濟協力借款의 공여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舊蘇聯邦 붕괴 전인 1990년 9월 韓·蘇 修交 후 우리 정부는 소련에 대해 경제교류 확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적 측면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등 정치·외교적 측면을 고려하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은행차관 10억달러를 포함하여 총 30억달러의 경제협력차관의 공여를 약속했으며, 1991년에 이 중 14억 7,000만달러를 집행하였다. 중국에 대하여는 1995년 말 현재 도로건설, 항구 확장공사, 통신망 건설 등 9개 사업에 총 913억원의 경제협력자금의 지원을 승인하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협력기금 수혜국가가 되었다. 이 밖에 경제협력차관 승인액 규모로 루마니아가 3위(395억원), 베트남이 4위(382억원)를 차지하는 등 시장체제전환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협력 상대로 등장하였다.

(3)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

1988년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 이후 1990년 8월 南北 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및 그 施行令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1992년 남·북한의 정부관리 또는 기업가들의 상호방문으로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핵문제 등의 정치적 이유로 실제적인 경협사업 추진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남북 교역규모나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간의 南北交易은 승인기준으로 볼 때 1989년과 1990년의 1,000만달러 수준에서 1991년 1억 1,000만달러로 급증한 이후 1994년에는 1억 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남북 교역규모는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4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남북간 교역방식은 제3국을 경유한 間接交易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1991년 이후에는 直接交易, 貨加工交易도 증가하는 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민간차원의 북한주민 접촉 역시 계속 활발히 이루어져 1989년 이후 1993년 12월까지 182건이 성사되었다.

정부는 1994년 10월 美·北韓 核協商이 타결됨에 따라 11월 南北 經濟活性化 措置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을 단계적·신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기업인의 북한방문, 시범적 경협사업 및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 등이 허용됨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대북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치에 의해 1994년 12월 쌍용그룹의 방북을 시작으로 대우, 삼성, 한화,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이 북한을 방문하여 의류·신발 등 위탁가공, 전자·통신 및 식음료 분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1차적인 사업협의를 실시한 바 있다.

북한과의 경협은 저임의 노동력, 지리적 인접성, 동일언어 사용 등의 동기요인과 북한의 개혁·개방이 외국 경제가 아닌 남북간의 경제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민족적인 동질 의식이 바탕이 되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모색되어 오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하해·불가침·교류협력' 원칙에 합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

북한의 나진항 전경



남북한간 교역 추이 (통관기준)

(단위 : 백만달러,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반 입	19	12	106	163	178	176
반 출	-	1	5	10	8	18
계	19	13	111	173	186	194
(증가율)	(-)	(-28.1)	(726.3)	(55.9)	(7.6)	(4.3)

자료 : 통일원

(4) WTO 체제 출범과 OECD 가입 추진

UR협상을 마무리짓는 마라케시 회의
(1994. 4. 15)

이 기간 중 우리 경제는 국제화의 최종 단계로서 '세계化 經營戰略' (global strategy)을 본격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UR協定の 발효 및 WTO體制의 출범 등 국제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국제교역의 전면적 자유화를 기치로 내걸고 1947년 GATT 발족 이래 8차례의 대규모 다자간 협상을 이끌어 오면서 1994년 4월 최종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정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상품 이외에 국제무역에서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분야까지 포괄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는 물론, 과거 소홀히 다루어진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 보호주의 수단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객관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더욱 강력한 법적 구속력과 분쟁해결 절차를 갖춘 世界貿易機構(WTO)가 1995년 1월 창설되었으며, 이로써 21세기를 향한 국제 경제 환경은 군비 경쟁과 안보협력 위주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축으로 하는 오랜 동서 냉전체제로부터 WTO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다자간 경제질서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체제의 일원으로서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교역국의 대폭적인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으로 인해 세계시장으로의 더욱 폭넓은 진출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온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구별이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WTO 가입과 더불어 정부는 1996년 중 선진국들간의 정책협조기구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화된 경제정책 제도 및 관행

을 확립한 주요 선진국들과의 상설 대화채널을 확보하여 그들의 경험과 제도를 활용하며, 국내의 주요 경제현안 및 정책에 관하여 상호 토의·협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OECD에의 가입은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 및 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OECD 제반 규정의 수탁 및 회원국과의 정책협의 등으로 인한 점진적 제도개편의 부담과 경제운영의 자율성 감소, 개도국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각종 혜택 축소·폐지 등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은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 規約와 資本移動 自由化 規約에 포함된 각종 자유화 조치의 확대였다.

“오늘 싸우러 왔느냐?”

1993년 9월 1일(수)

조선협상에 참가하라는 총장명령을 받았다. 이제
는 닥쳐온 일이다.

9월 5일(일)

총장을 앞두고 북한산에 오르다. 종일 등산하며
알뜰으로 총장의 성공을 빌었다.

9월 6일(월)

이번 수출신용전문가회의의 한국측 대표인 상공부
이감열 파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최
종적으로 정리하였다. 조선시업의 경쟁력이 높아 향
후로도 선박을 원조로 지원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만큼, 협상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원조거래를 제한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임하기로 하였다.

9월 7일(화)

예정대로 런던행 KE907을 탔다. 9월 9일 아침부
터 협상이 시작되므로 시차는 가내에서 극복해야만
한다. 런던을 거쳐 파리시간으로 밤 11시에 드골공
향을 나온다.

9월 8일(수)

회의준비를 위하여 상공부 이과장과 종일 속의하다.

9월 9일(목)

회의는 오전 10시에 OECD 본부에서 시작하는데
회의장소에 도착하니 9시 30분이었다. 작년 4월 협
상이 결렬된 후로 1년여만에 같은 장소에 다시 와

본다. 회의장 안에는 일본수출입은행의 Mr. Ito 대
표 등 낮은 얼굴들이 미리 나와 있었다. 의장인
Mr. Samuelson은 노르웨이의 공적 수출신용기관
인 Eksportfinans의 Senior Vice President로서,
항상 호감이 가는 반백의 신사이다. 그가 오랜만이
라는 듯 “오늘 싸우러 왔느냐?”고 농담하길래, 나도
“오늘 많이 싸우게 되길 바란다”라고 응수하였다.

10시 10분이 되어 회의가 시작되었다.

한국 대표인 이과장이 선박수출신용양해안 제7조
와 관련, 원조거래는 되도록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양허도 수준의 차이를 없애는 single rule로 하되
그 양허도 수준을 50% 이상으로 하자고 박력있게
주장하여 회의의 기선을 제압하였다.

곧바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일본의 반박이 이어졌
고, 각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한치의 양
보도 없었다.

상공부 이과장은 발표하는 데 거의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미리미리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은 주
로 본인 몫이었다. 주요한 쟁점이 있을 때마다 의장
은 조선강국인 한국의 위치를 감안하여 한국의 입
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오후 6시 회의가 끝날 때까
지 조금도 방심할 수 없었던 고된 하루였다. 반면
한국의 입장을 유감없이 발표한 보람있는 하루이기
도 하였다.

9월 10일(금)

9시 30분에 회의장에 도착하니, 전날 토의된 내
용을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선박수출신용양해 제7
조, 8조 및 9조에 대하여 다시 작성하여 배포하였는
데, 분쟁해결에 관한 제8조의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불분명한 것은 이 자리가 아니면 다시 확인할 기회
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의 법률고문 등을 만나 이 내
용에 대한 사무국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각국 대표
들도 8조의 내용을 확인하느라 바빴다.

10시 50분쯤 회의가 시작되어 7조에 대하여는
한국측의 입장을 각주로 표시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
루어졌고, 제9조(Matching)에 대하여는 한국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다른나라 대표들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제8조인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는 사무국이
추후 수석대표회의의 전까지 안을 작성하여 다시 토의
하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6시에 회의를 마치고 서류정리를 하는데 누가 어
깨를 차길래 뒤돌아 보았더니, 의장인 Mr.
Samuelson이었다. “곧바로 비행기 타고 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인사 못한다. 이번 협상에서
수고 많이 했다. 잘가라.” 하며 사라졌다.

(임성수 / 당시 여신기획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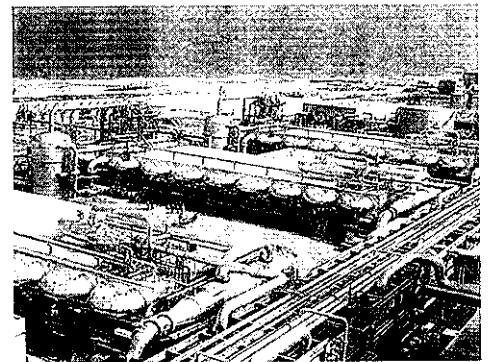
2. 輸銀의 對外去來 專門 支援體制 구축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수은은 국내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우위 확보, 해외투자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산업구조 조정, 주요 자원의 적기 안정적 확보를 통한 산업생산성 향상 도모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정부의 수탁업무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새로이 수탁한 남북협력기금 업무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다.

(1)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증대

이 기간 중 수은 금융지원의 정책적·제도적 변천 중 특징적인 것으로 1991년까

지 수출자금대출의 주종 품목이었던 선박에 대한 지원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신, 산업설비와 기계류의 비중이 대폭 상승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선박수출의 결제방식이 상당 부분 延拂에서 一覽拂로 전환되는 한편, 플랜트와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자금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1992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출에 대한 지원은 단기수출거래 지원이라는 점에서 수은 자금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수은 자금이 대외거래 관련 정책금융으로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컸다. 즉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첨단기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지원 정책은 자국의 경쟁력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新國際貿易理論의 논지로서, 이는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자금지원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항공, 우주산업, 원자력산업 등을, 일본은 전자, 자동차, 반도체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輸出補助金 등 각종 지원을 통해서 독점적 지위를 고수해 나가고 있다.



한국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세계 최대의 담수화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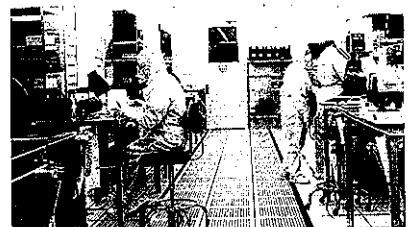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이후 기계류 및 플랜트,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기술 산업을 수출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은 연구개발에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은의 자금지원은 이 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반도체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수출증가가 두드러져 1995년에는 최대 수출품목으로 성장하였는데,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도 수은 지원비율은 1992년 1% 수준에서 1994년에는 10% 가까이 이르렀다. 플랜트 수출에 대한 수은 지원비율은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35.2%와 39.5%를 차지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우위나 독점적 지위가 없고 기술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아직도 매우 취약한 플랜트 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큰 힘이 되었다.

플랜트·반도체 수출의 수은 지원비중

(단위 : 백만달러, %)

	플랜트			반도체		
	총수출 (A)	수은지원액 (B)	지원비율 (B/A)	총수출 (C)	수은지원액 (D)	지원비율 (D/C)
1992	2,678	245	9.1	6,800	77	1.1
1993	2,432	960	39.5	7,030	628	8.9
1994	3,821	1,344	35.2	12,980	1,216	9.4

'산업의 쌀' 반도체 생산 장면



(2) 해외투자 활성화정책 적극 지원

이 시기에 수출자금대출의 신장세에 못지 않게 두드러졌던 것은 해외투자 관련 자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그에 따른 지원규모의 확대였다. 즉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대, 불확화 경향의 가속화 등을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시장 선점 및 개척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高賃金, 高地價, 高金利 등 높은 생산요소 비용에 기인하여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됨으로써 比較劣位 업종의 해외이전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정부로서는 자본자유화에 따른 대규모 외자유입이 원화절상 등을 초래하며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해외

최대의 해외투자금융 승인

우리은행 최대의 해외투자 지원사업은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제조사업으로 승인금액은 8,000만달러.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한 중앙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검은 사막으로 덮여있는 우즈베키스탄은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등의 주요 도시가 마치 사막의 孤島와 같았지만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우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번영하였다.

고려시대 고선지 장군이 이곳까지 원정왔던 기록이 남아있고, 1943년 스탈린에 의해 沿海州로부터 강제 이주해온 20여만의 '까레이스끼'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곳으로서 우리나라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는 곳이다.

총 사업비용이 6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는 현지출장을 통해 정부 및 컨설팅 회계법인인 KPMG 본사 인사와 면담하는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신중을 기하였고, 승인 후에도 현지에서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1991년 8월 31일 舊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카리모프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하여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쳐 세제혜택, 현지화의 태환성 보장 및 시장보호 조치 등을 담은 파격적인 포고령을 발표하여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만큼 투자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것이었다.

한편 대우는 이미 국내에서 자동차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심사하는 데 있어 주요 관심사는 土地문제와 자동차의 판매가능성이었다.

우선 입지문제는 수도 타쉬켄트에서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안디잔주의 아사카시에 있는 기존의 트랙터공장을 개조하여 사용키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철도가 공장 구내까지 들어와 있었고, 천산산맥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用水, 전기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기본시설은 문제가 없었다. 처

음에는 이렇게 산골에 자동차공장을 세우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으나, 대우측의 놀라운 판단력에 감탄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의문은 과연 잘 팔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KPMG는 우즈베키스탄 국내의 유일한 차량 생산공장인 합작사인 Selchozmas의 판매량 이용이 가능하고, 경쟁차종인 러시아의 Lada의 판매가격보다 10% 정도 저렴한 점, 인근 최고국가에 이미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계획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중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지원하게 된 이 사업은 완공시 1,500cc급 Racer, 800cc급 Tico 및 Damas 등 연간 20만대의 차량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

이 사업은 현대 산업의 꽃인 자동차산업을 현지화 생산전략에 따라 시장 잠재력이 큰 우즈베키스탄에 진출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화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 되었다.

(정태성 / 당시 해외투자금융2부 차장)



1996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
관련기사 (매일경제, 1995. 12. 16)

(2)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확대

주로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경협기금은 업무성격상 수은의 중장기 연불수출(특히 플랜트 수출) 지원업무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협기금 업무를 수은에게 위탁한 것이며, 수은은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협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유지해 왔다.

수은은 1987년 경제협력기금 설립 이래 1995년까지 총 24개국의 46개 사업, 총 4,888억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기 위해 受惠國의 경제조사, 프로젝트 심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총 1,460억원을 집행하고 약 9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수은은 경제협력기금 업무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경제협력기금은 그 특성상 주로 개도국의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의 경우 사업발굴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수은은 정부와 함께 소요기간의 장기에 따른 수혜국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협기금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금지원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금으로 높은 지원효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대상국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개도국의 개발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수혜국들과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벌여왔다.

사회주의권 최초의 사무소 개설

냉전시대의 막이 서서히 내리던 1990년 9월, 우리나라와 구소련간의 역사적인 수교와 더불어 구소련에 대한 30억달러의 차관 공여가 검토되면서 경협지원 창구로서 모스크바사무소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그 해 8월 개설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작업을 서둘렀고, 드디어 1991년 1월 13일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최초이자 외국 금융기관으로서는 60번째인 모스크바사무소 개설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당시 준비위원장 발령 자체가 대외비였던 터라 은행내에도 알리지 못한 채 은행장실에서 직접 명령장을 받던 기억이 새롭다.

본격적인 사무소 개설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은

개설준비위원 3인이 현지에 부임한 3월 22일. 약 1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레닌의 생일인 1991년 4월 22일 모스크바 강변에 위치한 베주드나 로드나야 호텔 3층 컨벤션룸에서 개설기념 리셉션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리셉션은 모스크바 시립현악 4중주단의 은은한 '고향의 봄' 선율 속에 홍재형 은행장을 비롯하여 정영의 재무부장관, 공노명 대사, 미슬루코프부총리와 게라센코 중앙은행 총재 등 400여명의 주요인사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리셉션 준비기간 중 신명을 바쳐 도와주던 모스크바 고려인회의 조국사랑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개소 이후 정상적인 사무소 운영은 갖가지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무실 임차문제. 당초 크레믈린궁 앞 신축건물로 예정했던 입주계획이 취소되면서, 현지의 극심한 사무실 부족난으로 마땅한 사무실 확보가 여의치 않자, 궁여지책으로 1991년 5월 초 우크라이나 호텔에 임시사무실을 열게 되었다. 말이 임시사무실이지 본국직원 3명과 현지직원 2명이 함께 앉으면 무릎을 맞대어야 했던 협박은 상황이었다.

어느 지역이건 초대 사무소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모스크바의 경우는 유별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개소 초기는 체제변혁기를 고스란히 몸으로 경험하면서, 되는 것도 없고 되지 않는 것도 없는 묘한 상황속에서 하나하나 이를 처리하는데 무한한 인내심이 요구되었던 시간이었다.

(김병기 / 당시 모스크바사무소 소장)

(3) 남북협력기금 업무의 개시

수은은 1991년 2월 정부가 南北間 交流·協力 강화를 위해 설치한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수탁하게 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장차 통일을 연결짓는 중요한 매개수단이다.

1991년 남북협력기금 업무가 개시된 이후 그 해 3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 사업과 10월 (주)천지무역의 대북한 쌀 반출과 관련한 손실보조 등 2건, 1992년 9월에는 8·15 기념 이산가족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나 그 후 북한 핵문제로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문제가 타결된 후에는 1995년 6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위해 15만톤의 쌀을 무상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1,82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995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총 지원규모는 5개 사업 1,852억원에 달하였다. 이 기금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향후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금확보 필요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수은은 이러한 국가적 중대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다.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코리아 단일팀' (1991. 3)

다.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

1990~1995년 기간 중 수은의 총 대출승인 누계액은 14조 7,009억원으로, 연도별 대출승인 실적을 보면 1990년 9,315억원에서 1994년에는 사상 최대인 3조 8,677억원을 달성하였으며, 1995년에는 3조 7,436억원을 기록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0.7%에 이르는 급성장세를 보였다.

이 기간 중 총 누계액 기준으로 수출자금대출은 11조 8,378억원, 기술제공자금대출은 107억원, 전대자금대출은 4,131억원, 중소자본재수출자금대출은 1,424억원을 지원하여, 전체 수출지원금융의 승인액은 총 12조 4,041억원에 달해 전체 대출승인

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수은의 역할 증대

1995년 1월부터 시작된 WTO 체제는 각국의 수출금융지원을 크게 제약하게 되었다. WTO 체제에서 수출금융지원을 규율하는 규정은 주로 UR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인데, 이 협정에서는 보조금을 무역왜곡 효과의 크기에 따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조금에 대한 분류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규제조치를 마련하였다.

이 협정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지원제도였던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 등의 수출금융과 직접세 감면에 의한 수출보조금적 요소의 공여가 전면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 자본재 연불수출을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은 보조금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한다는 특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연불수출금융에 내재된 보조금적 요소의 규제에 대해서는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성장에 걸맞는 金融産業體制를 구축하고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가 불가피해졌다.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는 결국 정책금융의 축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제 정책금융은 시장의 불완전한 경쟁요인으로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거나 국가정책적인 견지에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국한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 자본재 시장이 受注國間 경쟁 격화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면서 자본재 수출시 다양한 형태의 금융제공이 요구되는 등 금융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재 산업은 아직까지 기술수준 및 생산성의 저위, 생산설비의 투자부진으로 인한 공급능력 부족, 중간재의 국산화 부진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어, 금융지원을 통한 경쟁력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 금융환경 및 우리나라 자본재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수출보조금인 수은의 공적수출신용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WTO 체제하의 수은 역할에 관한 기사
(한국금융신문, 1995. 3. 27)

韓國輸出入銀行 業務의 發展

第1節 概觀

第2節 金融支援機能의 확충

第3節 資金調達 및 國際金融
業務의 다양화

第4節 政府代行 및 受託業務의 발전

第5節 調査 및 法規 業務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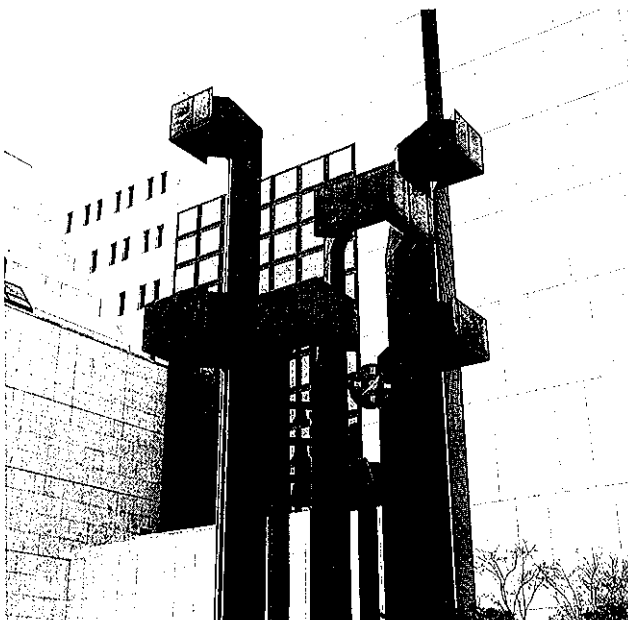
第1節

概 觀

수은은 설립 이후 지난 20년간 국내외 경제여건과 지원산업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支援制度和 金融技法을 도입하고 대출조건을 개선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융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에 부응하여 왔다. 이와 함께 수은은 원활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의 조성을 위해 재원의 확충과 조달기법의 다양화에 힘써 왔다.

1987년과 1991년에 정부로부터 각각 수탁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와 남북협력기금 업무는 제도의 정착기를 거쳐 수은 업무의 한 축이 됨으로써 수은의 대내외 업무활동 영역을 확대시켰다. 1977년 이후 정부대행 체제로 수행되던 수출보험 업무는 1992년 신설된 수출보험공사로 이관되었다.

수은의 진취적 기상을 은행 휘장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시민공간과의 조화를 위해 종소리의 아름다운 선율까지 가미한 수은 정문의 증시계탑



한편 수은의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법규 업무도 질적, 양적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1. 金融支援機能의 확충

지원제도의 다양화

수은의 지원제도는 대부분 설립 후 5년 이내에 도입되었다. 즉 설립 이전의 업무대행기에는 수출자금대출과 해외투자자금대출만이 취급되었으나, 설립 이듬해인 1977년에는

기술제공자금대출이, 1979년에는 구매자신용 방식에 의한 直接貸出과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轉貸資金貸出이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0년에는 국내 최초로 협조용자제도가 도입되었고, 1981년에는 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대출이 처음으로 취급되었다. 이 밖에 채무보증·지급보증 업무와 외국환업무도 1970년대 후반부터 취급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심화·발전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수은의 업무환경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1988년부터 주요 자원 및 중요 물자의 적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자금대출이 취급되기 시작하였고, 1994년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이 시행되었다. 아울러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대출과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업무가 1992년과 1995년에 각각 도입, 시행되었다.

지원조건의 탄력적 조정

수은은 자금지원 업무의 기준이 되는 업무방법서를 대항기간 중의 12차례를 포함하여 모두 49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및 시장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각종 지원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왔다.

지원대상 품목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구성 변화나 산업구조의 변화 추세 등에 맞추어 수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이나 사업으로 조정해 나갔다.

대출이율은 모든 대출종목에 대해 설립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지원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수출자 또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책정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보조금 시비 등에 따른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점차 상업금리 수준으로 책정하게 되었다.

수은은 채권보전을 위해 초창기에는 세계 일류은행이나 수입국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국내은행 지급보증 등만을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하였으나, 이후 개도국의 중앙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수용하고 나아가 일류은행 기준을 '신용이 양호

한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등 그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특히 공급자신용에서는 점차 신용대출 취급의 폭을 넓혀오고 있다.

이 밖에 자금운용에 있어 특정 부문에 우선권을 주는 각종 우선지원자침,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기술수준 제고 등을 겨냥한 각종 요건이나 기준 등도 점차 완화 또는 폐지되어 왔다.

지원규모의 대폭 확대

1976년 설립 이후 1985년까지는 선박과 플랜트에 대한 수출자금대출과 해외투자자금대출이 약간의 기복을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신장세를 보여 이 기간 중 수은 업무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6~1992년의 기간 중에는 산업설비와 선박의 자금수요가 감소하여 수출자금대출이 부진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배경으로 한 해외투자자금대출과 수입자금대출이 활성화되었다.

1993년 이후에는 산업설비와 기계류에 대한 자금공급이 늘어나 수출자금대출이 다시 급신장하였고 해외투자자금과 수입자금의 대출도 꾸준한 성장을 보였으며,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도 가세함에 따라 자금공급 규모는 설립 이래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1976~1995년 말까지의 대출승인액 누계는 284억 6,100만달러인데, 이 중 수출자금대출이 239억 4,900만달러로 84%를 차지하여 수은 업무의 근간임을 보여주었다. 수출자금의 지원대상 품목 중 선박은 112억 4,900만달러를 지원받아 여전히 수출자금 지원총액 중 가장 큰 4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업설비는 1993~1995년의 급속한 실적 확대(기간 중 50억 3,100만달러)에 힘입어 71억 2,100만달러가 지원되었다. 한편 기술제공자금대출은 총 4,300만달러가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00만달러는 1977~1982년의 기간 중 10건에 대해, 1,300만달러는 1995년에 1건에 대해 지원된 것이다.

직접대출에 의한 자금지원은 총 35건에 21억 5,200만달러(승인기준)를 기록하였는데, 1992년까지는 주로 선박에 대해 지원되었으나 1993년 이후에는 산업설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대자금은 1995년 말 현재 19개국의 32개 금

융기관에 총 3억 5,100만달러의 여신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1979~1995년의 기간 중 총 585억원이 집행되었다.

해외투자자금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자원개발 부문에 대해 지원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점차 증가되었다. 설립 이래 총 1,082건에 19억 3,600만달러(승인기준)가 지원되었는데,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전체의 53%(금액기준),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1%, 투자규모별로는 1,000만달러 초과 사업이 39%를 차지함으로써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은 1994년부터 취급되기 시작하여 1995년 말까지 총 22건에 4,900만달러(승인기준)가 지원되었다.

이 밖에 수입자금은 도입연도인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총 1조 2,31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은 1981년에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 개발사업에 대해 단 1건이 승인되어 이후 총 6,200만달러가 집행되었다.

2. 資金調達 및 國際金融 業務의 다양화

국내 자금조달원의 확대

수은의 재원은 자본금과 적립금, 차입금 및 수출입금융채권 발행대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립 당시 554억원이던 납입자본금은 1995년 말 현재 6,859억원으로 크게 증대되었으며, 법정자본금은 3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 결산이익금의 20%를 적립하는 법정적립금과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은 설립 이래 지속적인 이익 실현에 힘입어 설립 첫째의 15억원에서 1995년말에는 3,236억원으로 증대되었다.

설립 이후 수은 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외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규모도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 자기자본이 수은 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수준으로 확충되지 못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커질수록 수은의 차입의존도는 심화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수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는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

외환은행, 은행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중 國民投資基金 차입은 수은 설립 이후 1992년이 기금이 전면 폐지되기까지 국내 자금의 주요 원천이었으며, 총 1조 122억원이 이 기금으로부터 조달되었다. 財政投融资特別會計로부터의 차입은 1991년 구소련에 대한 소비재차관 제공에 따른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시작되었는데, 1995년까지 총 4,025억원이 조달되어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는 1977년과 1978년에 한국의환은행으로부터 200억원이 조달된 바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는 1977년 이후 동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수탁형태로 조달하고 있다. 한은 보유외화 수탁규모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나 국내 자금조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1995년까지의 수탁누계액은 6조 5,392억원에 달하고 있다.

해외 자금조달 비중의 증대

수은은 수은법에 의거하여 외국 정부, 외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수은은 설립 이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해외 금융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왔는데, 대출규모의 확대 등 업무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자금의 해외조달 비중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왔다.

수은의 해외 자금조달은 국제금융시장 진출 초기 은행차관(bank loan)과 보유 연불어음(promissory note) 매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들 수단을 통한 자금조달은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와 수은의 信認度 개선을 배경으로 國際債市場에서의 외화채권 발행이 시작된 이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 채권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화채권 발행이 해외 자금조달의 주된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조달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조달시장도 유로시장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금융 및 자본시장으로 다변화됨으로써 조달기반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 조달규모의 대형화 및 차입 표시통화의 다양화도 두드러져, 1회 차입규모가 최근에는 5억달러까지 증대되었으며, 차입통화도 미 달러를 비롯하여 일본 엔,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및 유럽통화단위(ECU) 등으로 확대되었다. 수은의 기타통화표시 차입

은 주로 차입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차입과 동시에 통화·금리스왑(currency & interest rate swap)을 통해 전액 미 달러표시 채무로 전환되었다.

국제금융 업무의 다양화

수은은 해외 자금조달 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과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하에서의 여신지원제도 보완을 위하여 수은법의 개정과 함께 국제금융 업무를 다양화하여 왔다.

우선 수은은 1988년 8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상업금융을 공여하여 왔으며, 1993년 하반기부터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을 공여하여 왔다. 한편 1990년 8월부터는 한국은행으로부터 外國換平衡基金을 수탁하여 이를 국제채권시장 등에 투자·운용하여 왔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 업무의 다양화는 수은으로 하여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관리 능력의 배양과 경험의 축적을 가능케 하였다.

3. 政府代行 및 受託業務의 발전

지난 20년간 수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와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업무의 영역을 넓힌 것과, 그간 업무의 한 축을 이뤄왔던 수출보험 업무를 타 기관에 이관한 것을 들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수은은 1987년 6월 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식 수탁하여 업무를 개시한 후, 각종 규정의 제정, 선진 각국의 원조기관 및 제도

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절차의 간소화 및 지원조건의 완화 등을 통해 경험기금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1987년에 정부출연금 300억원으로 출발한 經協基金은 이후 매년 정부출연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1995년 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7,972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험기금 최초의 지원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파당市 도로건설 사업으로, 1987년 12월에 지원방침이 결정되어 1989년 11월에 자금이 집행되기까지 거의 2년이 소요되었다.

경험기금 지원실적은 1990년까지는 출범 초기의 여러 제약요인으로 부진하였으나, 1991년 이후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본격 강조되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7~1995년의 기간 중 총 24개 국가의 46개 사업에 4,888억원이 승인되었는데, 지역별로는 아시아(56.2%)와 동유럽(20.6%)이, 업종별로는 통신부문(33.5%)과 운송부문(27.6%)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1995년 말까지의 기금집행 총액은 1,460억원에 이르렀다.

남북협력기금 업무

수은은 1991년 2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공식 위탁받음으로써 기금의 관리, 사업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남북기금은 ①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②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타 기금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③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④ 기금운용 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수입금 등에 의해 조성될 수 있는데, 1991년 이후 주로 정부출연금이 기금조성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95년 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4,214억원으로, 정부출연금 3,850억원, 운용수익 363억원, 기타 정부외출연금 1억원으로 구성되었다.

남북기금은 1991~1995년의 기간 중 총 5건에 1,85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건은 1991년에, 나머지 2건은 1992년과 1995년에 각각 1건씩 지원되었다.

수출보험 업무의 발전과 독립

수은은 수출보험 업무를 1977년 1월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인수하여 1992년 7월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이관하기까지 이 업무를 질적·양적 측면 모두에서 크게 신장시켰다.

수은이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했던 15년 6개월 동안 수출보험 종목은 초기의 5개에서 9개로 늘어났고 포괄수출보험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수출보험 효율의 인하 및 체계 정비 등의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1977년 인수 당시 3,928억원이던 수출보험기금은 1992년에는 5조 3,58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수출보험 인수실적도 크게 늘어나 1969~1992년 기간 중 총 90,847건에 14조 5,371억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업무신장에 따라 1970년대 중반 1%를 밑돌던 수출보험 활용률은 1980년대 초에는 5~6%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으며, 이후 3~4%선을 유지하였다.

한편 수은의 대행기간 중에는 수출자·수입자·국별 신용조사 업무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Berne Union 가입 및 주요국 유사기관과의 업무협력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수출보험 업무의 국제화에도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4. 調査 및 法規 業務의 발전

수은의 주요 지원대상인 자본재의 수출,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대외경제협력 등의 거래 및 사업에는 정치적 위험과 상업적 위험이 적지 않게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은은 설립 초기부터 정치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국의 국별신용도 평가업무를 도입하여 이를 심화·발전시켜 오는 한편, 상업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적검토 업무에도 큰 비중을 두어왔다.

조사업무

조사업무는 크게 국별신용도 평가와 해외투자환경 조사, 일반경제 조사 등의 업무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별신용도 평가업무는 1977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79년 4월에 현재와 같은 국별신용도 평가방법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모두 5차례의 평가방법 개정을 통해 질적 개선을 이룩하였다. 이 평가의 결과는 1993년 3월 이전까지는 수은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國別與信限度의 설정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이보다 더 범위를 넓혀 우리나라 전체의 국별여신 종합관리를 위한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국별신용도 평가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1977년부터 1995년까지 총 535회에 달하였으며, 1995년 말 현재 평가대상국은 140개국에 이르렀다.

국별 투자환경 조사를 포함한 해외투자환경 조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강화된 업무로서, 생산된 정보 및 자료와 수은의 금융지원제도 등을 해외투자정보시스템(OIIS : Overseas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 등을 통해 일괄 안내 및 제공하는 이른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외에도 수은의 지원대상 산업인 플랜트·조선 시장 및 국내외 산업구조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 주요국 수출신용기관의 제도 및 동향 등에 관한 조사업무, 수은의 업무 및 기능과 관련한 국내외 경제의 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일반경제 조사업무 등이 조사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주요 조사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를 수은조사월보에 게재하거나 단행본 등으로 발간함으로써 연불수출,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및 대외경제협력 분야의 유관기관 및 산업계의 정책 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축적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서자료의 확충도 도모하여 왔다.

한편 수은은 1988년 11월에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 및 지원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조직구성의 변화 속에서도 조사업무의 질적 개선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규업무

법규업무의 중심은 國際契約法에 대한 법적검토 업무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자금 지원규모의 증가와 함께 해외 자금조달 실적도 늘어남에 따라 법적검토 업무는

질적·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1977~1995년 기간 중 계약서 법적검토 실적은 총 1,179건에 달하였다. 한편 계약서 법적검토 외에도 업무와 관련한 각종 법규 상담과 조사자료의 발간 등을 통해 수은 직원은 물론 외부 고객에게까지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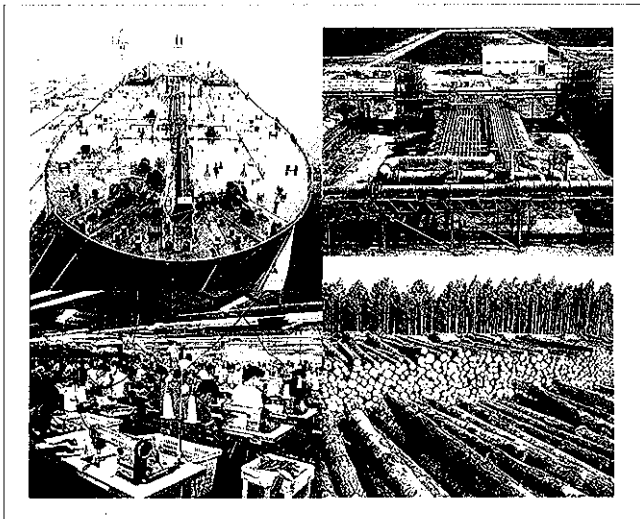
第2節

金融支援機能의 확충

1. 支援制度의 개요

수은은 지난 20년간 기존 지원제도의 심화·발전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자금지원 규모를 꾸준히 늘려옴에 따라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한다'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달성해 왔다.

수은의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재화(주로 자본재)와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자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투자지원자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주요 자원 및 중요 물자의 적기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 수입자금, 장기 안정적 확보를 요하는 주요 자원의 해외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주요자원개발자금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 밖에 자금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보증업무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가. 수출지원자금

(1) 수출자금대출과 기술제공자금대출

수출자금대출과 기술제공자금대출은 그 지원대상이 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산업설비를 포함한 자본재의 수출이

며 기술제공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기술 등 용역의 수출이라는 점에서는 다르나, 자금의 직접적 수혜자가 국내의 공급자(제작자 또는 수출자)라는 점에서는 다같이 이른바 '供給者信用'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은은 그동안 기술제공자금의 대출조건에 수출자금의 대출조건을 준용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수출자금대출

수출자금대출은 '資本財 輸出의 支援'이라는 수은 설립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는 근간이 되는 자금으로, 설립 이래 수은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수은의 자금지원은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輸出資金貸出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에 한해서 특정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즉 ① 대통령령 또는 수출입은행장이 지정하는 특정한 품목이 기준 외자재의존율(또는 국산기자재율)을 충족시키고 ② 그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선수금으로 수령되며 ③ 대출기간은 일정 기간을 넘지 않고, 수용가능한 채권보전책이 강구되어 ④ 일정한 상환 및 결제방법을 따르는 수출거래만이 수출자금대출의 적격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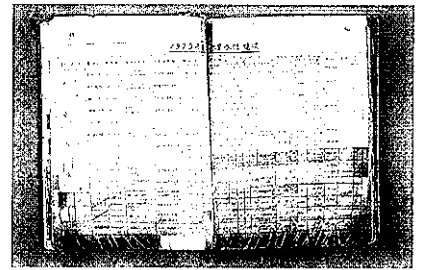
이러한 적격요건을 갖춘 거래는 다시 수은이 지원환경 및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여러 조건, 즉 대출비율, 대출이율, 대출형식, 상환방법 등의 대출조건하에서 지원되고 있다.

수은은 설립 이래 우리 경제의 성장과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수출자금의 적격대상 요건과 대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다.

기술제공자금대출

技術提供資金貸出은 해외 수출입시장의 확보 및 개척, 경제교류의 촉진 또는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대외 기술제공(해외 건설공사 포함)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기술이라 함은 ① 산업시설(선박과 차량 포함)과 이를 위한 원료, 예비품, 부분품 및 부속품의 설치 또는 운영에 수반되는 기술 등의 용역 및 조사, 설계, 감리 ② 해외 건설공사와 해외 건설용역 ③ 기타 해외 수출입시장의 개척 및 확보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금융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은행장이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용역을 말한다.

기술제공자금대출은 그 성격상 엔지니어링 업체나 컨설턴트 업체 또는 기술전문



원명 '족보'로 불리는 여신승인 대장

업체에서 이용하여야 할 자금인데, 이러한 기술용역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드물 뿐 아니라 기술제공 사업의 대금수령 방식이 일반적으로 일람불 조건이어서 수은의 지원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기술제공자금대출의 지원조건은 수출자금대출의 지원조건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1985년부터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직접대출과 전대자금대출

직접대출과 전대자금대출은 다같이 자금의 직접적 수혜자가 국내의 공급자가 아닌 외국의 구매자(수입자) 또는 은행이므로 '購買者信用'에 속하나, 결국 우리 기업의 자본재 수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수출자금대출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직접대출

연불수출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1979년부터 도입·운용해 오고 있는 직접대출제도는 국내 수출자와 해외 구매자 및 수은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이점을 주고 있다. 즉 국내 수출자는 수출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되므로 延拂債權의 회수위험이 없고 연불수출금융의 차입이 필요하지 않아 재무구조의 악화를 피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인도로 거래관계가 종료되어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이에 수반되는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과 같이 취급되므로 자국내의 세제에 따라서는 이자지급시 원천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高速 減價償却이 허용되며, 수출목적물 인도시까지 수출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수출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어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금을 대출하는 수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자간의 수출계약과는 별도로 수은이 구매자와 직접 용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수은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채권보전 등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으며, 수입자 앞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이라는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접대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점 외에도 融資 協定과 체결의 장기화로 수출거래가 차질을 빚어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은은 이 제도가 선진화된 금융기법의 하나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자본재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전대자금대출

전대자금은 해외의 신용있는 금융기관에 일정 규모의 與信限度(credit line)를 설정하고, 그 금융기관(轉貸銀行)으로 하여금 이 자금을 자국내 수입자들에게 轉貸(relending)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수입결제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금융방식이다.

전대은행은 설정된 여신한도 범위내에서 자기자금의 부담 없이 수입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계류, 전기기기 등 중소규모 자본재 및 내구성 소비재 등의 수입거래를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의 수입자는 자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용자를 받아 우리나라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자는 상품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제도는 1978년 3월 정부의 對開途國 中長期 延拂輸出 지원조치에 따라 같은 해 4월과 6월에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차관 취급규정' 과 '외국 금융기관 앞 전대차관 취급에 대한 기본운영방침' 이 마련됨으로써 본격 시행되었다.

전대자금은 1984년 11월 이전에는 제도의 명칭이 '轉貸借款' 으로 되어 있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과의 수출입거래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됨으로써 자원대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OECD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점차 엄격해지면서 양허적 조건으로의 지원이 곤란해지는 등 지원여건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전대자금은 통상의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개척 지원 역할을 맡아 오고 있다.

나. 해외투자지원자금

수은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금융지원제도로는 海外投資資金貸出, 외국법인에 대한 事業資金貸出, 海外事業資金貸出 등이 있다.

(1) 해외투자자금대출

수은법 및 그 시행령에서 해외투자자금대출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금은 ①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이 외국법인에 출자(주식취득 포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우리나라 국민이 출자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외국인이 출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③ 우리나라 국민이 이미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해 설비를 대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이다. 따라서 해외투자자금은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운영하는 데 필요한 出資資金, 貸付投資資金, 施設貸與資金에 국한되어 지원되며, 차주는 외국의 법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모기업이 된다.

수은은 설립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유일의 해외투자지원 전담은행으로서 자원개발 부문 및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우리 기업의 국제화 붐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의 여타 금융기관들도 해외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함에 따라, 수은은 1993년 이후 지원조건의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2)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은 우리나라 국민이 이미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의 施設資金 및 運營資金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은 대출금의 차주는 국내 모기업이 아닌 외국법인이 된다.

이 자금은 이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사업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법인은 조달비용 및 인력의 절감, 적기의 자금조달 등의 효과를 얻는 동시에 이자소득세의 면제와 같은 이익을 보게 된다. 아울러 해외의 현지법인이 직접 차주가 되므로 국내의 모기업도 채무의 증가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이 자금은 1986년 12월의 輸銀法 개정과 1987년 5월의 業務方法書 개정으로 그 취급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신규진출 지원에 중점을 둔 해외투자자금대출에 우선순위가 두어짐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4년 3월 基本運營規程의 제정과 함께 본격

취급되었다.

(3) 해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은 우리나라 국민(법인 포함)이 해외 수출입시장의 개척 및 확보,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의 확보, 또는 외국과의 경제교류 촉진 등을 위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자금은 국내의 개인 또는 기업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직접 또는 비영업조직인 해외지사 등을 통해 영위하는 해외사업에 대해 지원되므로, 수은 대출금의 차주는 국내의 개인 또는 모기업이 된다.

해외사업자금대출은 그 대상사업이 통상의 투자사업과는 달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수은 설립 이래 단 1건의 사업만이 지원되었다.

다. 수입자금

수입자금은 국내 수입자가 국민경제상 長期 安定的인 確保 또는 適期輸入이 요구되는 重要 物資 및 主要 資源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국민경제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해외에서 개발하여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융자대상이 되는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은 수은법 시행령에 정해진 것과 수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출입은행장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 품목의 내용은 그간 여러 차례 변동되어 왔다.

수입자금제도는 설립 당시부터 그 취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인 1988년부터이다.

라. 주요자원개발자금

주요자원개발자금은 국민경제상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필요로 하는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자금은 상환의 확실성을 전제로 하여 취급되고 있는 이른바 '수은법 제18조 제1항의 자금'과는 달리, 대상사업 자체가 위험이 높고 국익 차원에서 추진되므로 상환기간 등의 지원조건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자금은 1974년 12월 수은법 1차 개정 시 그 취급근거가 마련되었으나 1980년대 초반에 단 1건만이 지원되었다.

2. 支援制度의 발전과 지원실적

가. 수출자금대출

(1) 제도의 발전

개관



지원제도 안내 소책자

수은 설립 첫해인 1976년에는 선박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자금대출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은 자금의 수요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설립 다음 해인 1977년부터는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 지원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業務方法書를 1977년에만 8차례나 개정하는 등 연불수출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0년에 이르러 지원자금의 종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제도와 플랜트 수출에 대한 자금지원지침 및 선별지원방침을 수립, 시행하였다. 또한 1982년에는 국내 기계공업의 적극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산기자재 사용거래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국산기자재 사용거래에 대한 優先支援指針'을 제정하였다.

1985년에는 해외 건설수주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과잉시설을 보유하게 된 섬유산업 설비와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 중장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遊休産業設備 輸出에 대한 자금지원지침'도 이 때 마련하였다.

1987년에는 수출용 원자재를 제작·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내국신용장의 수혜자에 대한 대출취급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1990년에는 차주의 신용과 지원대상 사업의 성격 및 대출금 회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信用貸出을 취급할 수 있는 세부지침도 마련하였다.

1991년에는 선수금률, 연불기간, 대출비율 등 연불금융의 대출조건을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조정하였는데, 이 때 대출기간이 2년 미만인 거래는 OECD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업무방법서에서 규정한 대출대상 및 대출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얻어 예외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3년에는 일람불거래를 예외취급 대상에 추가시켰다.

1992년에는 여신관련 제반 규정의 정비작업으로 여신규정 체제가 與信規程과 與信要綱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여신규정 및 여신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수은 용자 우선지원지침 등 제반 지침에 규정된 내용은 새로이 정한 여신운용지침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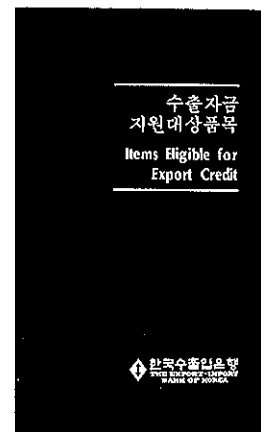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中小企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경주되어, 수은도 이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 위해 1994년에는 '수출용 원자재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였고, 1995년에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제도를 마련하였다.

지원대상 거래요건의 완화

· 지원대상 품목

수은법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된 당시의 수출자금대출의 지원대상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 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상품”(수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과 “산업시설(선박, 차량과 당해 산업시설을 위한 원료, 예비품,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과 외화획득을 위한 상품으로서 일반 수출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 중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합의하여 자정한 품목”(시행령 제13조)이었다.

시행령상의 산업시설(선박 및 차량 포함) 이외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1975년 11월 일반 기계 및 기계제품, 재봉기, 유선통신기기,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단기 연불수출 촉진을 위한 잠정적인 지원품목으로서



수출자금 지원대상 품목 안내책자

시멘트, 타이어류 등을 지정하였다. 이후 1977년 1월에는 자동차 제품 및 건설중기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1977년 5월에는 다양한 중화학공업 제품을 열거하는 데 따른 실무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CCCN 분류를 원용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였는데, 당시의 지정품목은 CCCN 제84류인 기계류와 제85류인 전기기기 (단, 부품류인 품목 및 가정용, 사무용, 오락용의 품목은 제외), CCCN 제87류인 철도차량이었다. 아울러 국제 경쟁입찰에 있어 연불조건에 의한 수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본재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한편 1978년 4월에는 당해 거래의 수입자가 외국 정부로서 대외경제협력 측면에서 수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당해 거래의 수입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로서 그 거래의 해외시장 개척도 및 대외경제협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에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3일에는 CCCN 제7321호의 鐵構造物과 CCCN 제8608호의 컨테이너가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그런데 컨테이너의 경우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지정되는 등 변화를 겪다가 1989년 4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액체 또는 압축가스 운반용의 컨테이너만이 수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박 수리 및 개조 전문회사인 현대 미포조선 전경

그간 기술제공자금으로 지원되던 船舶修理 및 改造는 그 내용으로 보아 선박의 신규 건조와 동일한 정도의 설계를 요하며 상당한 자재가 투입되는 등 신규 건조공사와 유사하므로 1980년 2월 융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수출거래로 지원받게 되었다.

1984년 12월에는 특수선박류에 대한 대상품목 구분기준을 원거리 自航能力과 경제적 목적을 기준으로 다시 마련하였는데, 이 때 그간 선박으로 지원되던 해양시추설비가 산업설비로 분류되었다.

한편 승용차(CCCN 8702)는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대선진국 거래의 경우 L/C 방식 또는 단기 D/A 베이스로 수출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전대자금을 이용하여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1986년 1월부터는 자동차 수출의 증대 및 시장개척 측면을 고려하여 개도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자금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88년 12월 수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업시설(선박 및 차량 포함) 및 이

를 위한 원료, 예비품, 부분품, 부속품 등을 제외한 지원대상 품목은 종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출입은행장이 지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4월 수출입은행장은 이들 품목을 새로이 지정하는 동시에 기존의 CCCN 분류방식 대신 국제통일 상품분류방식인 HS 분류방식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지정하게 되었다.

지원대상 품목

분 류	품 목
대통령령 지정품목	산업설비(PLANT), 선박, 차량과 이를 위한 원료, 예비품, 부분품 및 부속품
수출입은행장 지정품목	1. 철강 및 철강 제품과 그 부품류(HS 제72류 및 제73류의 품목) 2. 비철금속제품(HS 제74류 내지 제83류의 품목) 3.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그 부품류(HS 제84류 및 제85류의 품목) 4. 철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품류(HS 제84류의 품목) 5. 컨테이너(HS 제8609호의 품목) 6. 항공기와 그 부품류(HS 제88류의 품목) 7. 광학기기, 정밀기기 및 의료기기와 그 부품류(HS 제90류의 품목) 8. 철도차량의 부품류(HS 제8607호의 품목) 9. 철도노선 설치용 부품류(HS 제8608호의 품목 중 철도노선상의 것)

· 선수금

수은 지원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 외국 구매자의 계약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일정률 이상의 先受金을 수령하는 거래만을 지원해 오고 있다.

수은 규정상 '선수금'이라는 용어가 정의된 것은 1977년 3월 제16차 업무방법서 개정에 의해서였다. 그 이전에는 1975년 3월 제11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원칙적으로 輸出價額의 20% 이상이 수출목적물의 인도완료 전에 결제되는 것일 것' 이라고 묵시적으로 처음 규정된 후, 1977년 1월 제14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의 경우는 수출가액의 15% 이상, 선박의 경우는 25% 이상, 차량 및 기타 제품의 경우는 수출가액의 20% 이상이 수출목적물의 인도완료 전에 결제되는 것일 것' 으로 세분화되었을 뿐이다.

1980년 1월 제26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그간 세계 조선경기의 침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조선소가 요구하는 선수금률이 낮아지게 되자 선박수출거래의 선수금률을 25%에서 20%로 인하하는 한편, 플랜트는 15%, 플랜트 이외의 품목은 20% 이상

으로 정하고 이를 '基準先受金'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1982년 12월 제32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기계류가 플랜트의 주요 구성 요소로 플랜트와 유사함을 감안하여 기계류의 선수금률을 플랜트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1989년 4월 제45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항공기에 대한 선수금을 플랜트와 동일하게 책정하였다.

이후 1991년 6월 제47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선수금에 맞추어 선박은 20%, 선박 이외의 품목은 15% 이상으로 기준선수금을 조정하였다.

· 연불이율

연불수출거래에서 수출자가 금리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자로부터 연불대금의 이자를 상환받을 때 적용하는 延拂利率이 적어도 수출자금의 차입이율, 즉 수은의 대출이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은은 업무방법서에서 수은 자금을 지원받는 거래의 연불이율은 수은의 대출이율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오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처음 규정에 명문화된 것은 1975년 3월의 제11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이며, 이 원칙은 이후 지금까지 대출이율의 수준 및 체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외교와 선박수출의 줄다리기

가나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솔직히 말해 지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영국에 의존하는 가나 정부가 주산물인 코코넛을 운반하기 위해 16,000톤급 다목적 화물선 4척을 구입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다. 차주는 Black Star Line이라는 기선회사였다. 현대중공업이 체결한 계약서를 고문 변호사인 김영무·신용식 씨에게 보였더니 "계약의 절대요건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용자가 어렵겠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외무부는 가나가 미수교국이므로 대

UN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용자해 주어야만 공관 설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 북한은 대사관을 설치했다가 철수한 상태였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용자결정이 내려지자 북한은 철수했던 공관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가나측에 전달해왔다. 가나의 외무부 당국은 신임장만이라도 북한보다 대한민국에서 먼저 받고자 한다면서 대사 부임을 서둘러주기를 요청했다.

예과도르의 대사로 있던 박창남 대사가 급거 부임해서 가나 주재 한국 대사관이 개설되었고 북한은 그 후에 대사가 다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용자계약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차주와 교섭을 벌인 끝에 마침내 1978년 7월 선박수출 용자가 이루어졌다. 비록 상환기간이 늦긴 했으나 4척중 일부는 상환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원리금이 회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냉전시대 한국외교의 한 부산물이라는 하지만 수은으로서도 그 설립목적에 달성하는 데 일조가 된 용자였다고 생각한다.

(송인상 초대 은행장 저 '부흥과 성장'에서)

한편 용자대상 거래요건상의 연불이율은 1975년 3월~1976년 12월의 기간 중에는 6% 이상, 1977년 1월~1978년 12월의 기간 중에는 8% 이상 등과 같이 단일이율로 명시되어 왔다. 그러나 1979년 1월~1984년 10월의 기간 중에는 수은의 대출이율이 자금종류별로 업무방법서의 별표에서 정해짐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인도 후금융 대출이율 이상'으로 포괄 규정되었다. 이후 수은의 대출이율 결정방식 변경(別表에 따라 이사회가 정함 → 이사회가 단독으로 정함)과 용어의 변경을 거쳐, 현재와 같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연불금융 대출이율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 연불기간

수은 설립 당시에는 연불금융의 용자기한만을 산업시설 10년, 선박 8년, 철도차량 5년, 자동차 3년, 기타 5년으로 정하였는데, 1977년 2월 제15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 동일한 내용을 용자대상 거래의 연불기간으로 규정하였다. 1977년 5월 제17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부품류의 연불기간을 정하면서 모든 품목에 대한 연불기간을 수출가액 100만달러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계약금액 규모에 따른 연불기간의 차등 적용은 1989년 4월 제45차 업무방법서 개정 전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품목별 연불기간 변동추이를 보면, 철도차량의 경우는 당초 최장 5년이던 연불기간이 평균 10~15년의 연불기간을 허용하는 선진국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1979년 5월 제23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플랜트 수출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되었으며, 기계류의 연불기간도 이 품목의 수출이 설계, 설치, 기술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플랜트 수출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1981년 11월 제30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플랜트와 같은 기간으로 조정되었다. 한편 1985년 12월 제38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선박에 대한 연불기간이 종전의 8년에서 OECD 船舶輸出信用讓解상의 기간과 같은 8.5년으로 연장되었다.

1989년 4월 제45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수출계약금액 규모에 따른 연불기간 공여방식을 폐지하고 단순히 품목별로 연불기간을 분류하는 한편, 항공기, 철강 및 철강제품 등에 대한 연불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다. 이후 1991년 6월 제47차 업무방법서 개정으로 연불기간을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연불기간은 10년 이내에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국제협약 내용, 당해 수출목적물의 거래규모 및 내용연수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기간일 것'으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산업시설, 선박, 철도차량, 기계류, 전기기기 등 연불대금 상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1979년 1월 제22차 업무방법서 개정시부터 2년 이내의 거치기간이 허용되어 왔으나, 1987년 5월 제41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 허용되도록 하였다.

현재 대상거래의 연불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서 公的輸出信用에 관한 국제협약(OECD 협약) 내용, 당해 수출목적물의 거래규모 및 내용연수 등을 감안한 적정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선박의 경우는 8.5년까지, 항공기(대형 여객기) 및 재래식 발전설비는 12년까지, 핵발전설비는 1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 상환방법

연불대금에 대한 元利金은 수은 설립시부터 연 1회 이상 定期 分割償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6월 제47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OECD 가이드라인 규정에 맞추어 선박은 연 1회 이상, 선박 이외의 품목은 연 2회 이상 정기 분할상환되도록 규정하였다.

· 채권보전 방법

수은은 설립 당시부터 연불대금에 대해 세계 일류은행이나 수입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또는 신용장을 청구하는 것을 지원대상 거래의 요건으로 정해 왔다.

그러나 수은의 자금지원을 받는 연불수출거래의 상당 부분이 개발도상국과 이루어지고 수입자가 외국 일류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1977년 1월부터는 수입국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운영위원회(1979년 9월부터는 이사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1991년 6월 제47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 支給保證書 발행기관의 요건을 '외국의 일류은행'에서 '신용이 양호한 외국 금융기관'으로 완화하는 한편, 수입국 중앙은행의 지급보증서나 취소불능신용장도 수은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로서 취득할 수 있도록 채권보전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이후 1993년 9월 제48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정부기관, 중앙은행 또는 신용이 양호한 외국 금융기관이 어음 또는 債務證書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보전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였다.

· 결제통화

지원대상 요건에 결제통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안정성있는 통화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대출금 상환시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3월 제11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외국환관리법상의 지정통화'로 처음 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1979년 11월 미 달러, 독일 마르크, 스웨덴 크로네 및 사우디아라야이 결제통화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자국통화로 수입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1983년 2월 결제통화의 폭을 '금융단협정상의 시장환율이 고시되는 모든 통화'로 확대했다. 이어 1984년 8월에는 금융단협정상의 고시대상 이외의 통화라 하더라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市場換率이 고시되는 통화에 대해서는 대출심사시 최근 수년간의 대출통화에 대한 환율변동과 당해 통화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매건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88년 3월 제43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원화차관 공여거래 지원에 대비하여 결제통화에 원화를 포함시켰으며, 다음 해인

괌속정 수출과 미래예측

수은 설립 초기 코리야타코마에서 건조하는 알루미늄제 괌속정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이세설 대사(후에 농림수산부장관 역임)가 주재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는 나로서는 이대사의 의견이 꼭 중요했다. 이대사는 인도네시아의 여러가지 사정을 이야기해주며 용자를 적극 권고했다.

한국에서 만든 괌속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물여와 무장한 뒤, 수많은 섬들을 경비하기 위한 일종의 방위용 선박이었다. 수은으로서의 무기가 장착되지 않은 괌속정에 대해서만 용자해주는 것이었으므로 군함 수출은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스스로 무기를 사 가지고 와서 장착해 가져갔기 때문이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석유회사인 발테미나사의 과잉투자로 2억 수천만달러대로 바닥나 있을 때였다. 그후 인도네시아를 보는 눈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때

는 용자결정에 몹시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에는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법률이 없었다. 나라에서 구입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했는데, 누가 차주가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다. 우리측은 당연히 수하르토 대통령이 차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인도네시아측은 재무부장관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결국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어음을 받고 3,000여만달러를 용자해 주었다.

후일 이 괌속정 건은 아무 연체 없이 전액이 회수되었고, 다시 추가로 약간의 용자를 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을 가지고 밤낮으로 고심한 끝에 용자결정을 내린 것은 아무래도 그 때의 일처리가 미숙하고 어려웠음을 잘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송인상 초대 은행장 저 '부흥과 성장' 중에서)

1989년 4월 제44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현물결제도 가능하도록 결제통화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수은은 여신규정에서 외화표시대출의 통화는 미 달러, 일본 엔,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통화로서는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지정영수통화로서 당해 통화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장이 인정하는 통화로 하고 있다.

· 외자재의존율 및 국산기자재율

수은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본재 산업의 국산화를 제고 차원에서 일정률의 外資材依存率을 정하고 그 이상의 외자재 사용을 억제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12월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가 '1977년도 輸銀 資金支援基準'을 의결한 때부터이다. 이 때의 외자재의존율은 선박이 40% 이하, 기타 품목이 30% 이하였으며, 1977년 5월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된 부품류의 외자재의존율은 25% 이하였다.

1978년 5월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는 '1978년 수출입은행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기준 외자재의존율에 관한 사항을 수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비율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연불수출이 아직도 초기 단계로서 외국 수입자가 사용 기자재를 외국산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아 시행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외자재의존율을 契約金額(FOB 가격)대비 外資材輸入額(CIF 가격)의 비율로 정의하고, 선박은 56% 이하, 플랜트는 50% 이하, 부품류는 25% 이하, 기타 제품은 5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플랜트의 경우 소요 기자재를 국내에서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외자재의존율을 산정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업종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50% 이하를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여, 1979년 6월 운영위원회는 플랜트 수출에 대한 자금지원지침을 새로 마련하면서 '기준 외자재의존율'을 '國產機資材率'로 바꾸고 그 비율을 차등화하였다.

한편 외자재의존율과 국산기자재율이 지원대상 거래요건으로서 규정내에 명문화된 것은 1981년 11월 제30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외자재의존율 및 국산기자재율에 대한 근거규정이 신설된 때부터인데, 이 때 외자재의존율과 국산기자재율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부 위임되었다.

이후 국산기자재율은 업종별로 상향 조정되는 한편 외자재의존율은 품목별로 하향 조정되어 왔으며, 1992년 2월 여신규정 제정시에 산업설비의 국산기자재율은 10~

57%로 차등 적용하고, 산업설비를 제외한 품목에 대한 외자재의존율은 선박 25~35% 이하, 철도차량 40~50% 이하, 컨테이너 25~50% 이하 등으로 조정되었다.

대출조건의 탄력적 조정

· 대출비율

수출자금의 대출금액이 製作金融과 延拂金融에 대해 모두 '수출계약금액에서 선수금을 공제한 잔액의 일정비율 범위내'로 규정된 것은 1972년 5월 제5차 업무방법서 개정시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수출계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었다. 대출금액 산정 베이스(수출계약금액에서 선수금을 공제한 잔액)에서의 선수금은 제작금융의 경우에는 1981년 11월~1986년 6월의 기간 중 '계약서상의 선수금'으로 적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197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實受領 先受金'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으며, 연불금융의 경우에는 1980년 7월 이후 '실수령 선수금'이 '기준선수금'으로 바뀌어 적용되어 오고 있다.

대출비율은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에 있어서 모두 초기의 단일비율 체제에서 품목별 차등비율 체제로 운영되다 다시 단일비율 체제로 환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작금융의 대출비율은 1969년 10월 업무방법서 제정시에는 수출계약금액의 60%, 1972년 5월~1976년 12월의 기간 중에는 대출금액 산정 베이스의 90%로 운용되었고, 1977년 1월~1991년 5월의 기간 중에는 70~90%의 범위내에서 품목별로 차등 적용되었으나, 1991년 6월 제47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품목구분 없이 90%로 단일화되었다.

연불금융의 대출비율은 1972년 5월~1976년 12월의 기간 중에는 대출금액 산정 베이스의 100%, 1977년 1월~1980년 6월의 기간 중에는 품목별로 70~90%가 적용되었으나, 1980년 7월 제27차 업무방법서 개정으로 품목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70%가 적용되었다. 당시 대출비율을 70%로 낮춘 것은 선박대출을 중심으로 협조용자가 활발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1985년 6월에 85%로 상향 조정된 대출비율은 1991년 6월 수은의 대출조건을 OECD 가이드라인 체제에 맞추면서 사실상 대출금액 산정 베이스의 100%까지로 인상되었다.

한편 수은은 중소기업의 연불수출 촉진을 위해 1984년 3월부터 中小企業에 대한 製作金融 貸出比率를 품목구분 없이 90%로 정함으로써, 부품류나 철도용 이외의 차량 및 기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그러

나 이 우대조치는 1991년 6월 제47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대출비율을 90%로 단일 화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 대출기간

수출자금의 貸出期間은 그간 기산일 및 종료일의 개념이 바뀌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제작금융의 경우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목적물의 인도완료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연불금융의 경우는 '대출취급일로부터 당해 거래에서 약정된 분할상환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운용되어 왔다.

이 대출기간은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의 경우 모두 1977년 1월부터 2월까지의 1개월간만 품목별로 구분 운용되었을 뿐, 업무방법서 제정 이후 오늘날까지 품목별 구분 없이 두 금융의 통산 대출기간이 10년(예외적인 경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 오고 있다.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의 대출기간을 합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은 일시적으로 폐지된 경우(제작금융은 1975년 3월~1976년 7월, 연불금융은 1979년 5월~1981년 2월)를 제외하고는 업무방법서 제정시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는 업무방법서 제14조에서 수은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내용 중 대출기간 제한규정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대출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개념 변천을 보면, 제작금융의 경우 기산일을 '최초 수출계약 발효시'에서 자금집행 시점이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초 대출취급일'로, 종료일은 '인도기일'에서 플랜트 수출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인도완료일'로 바뀌었다. 연불금융의 경우도 기산일이 '수출목적물 인도완료시'에서 '대출취급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융자기간은 예외적인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製作金融은 ①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② 수출자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인도지연의 경우 ③ 거래 성격 및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등에 융자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延拂金融의 융자기간도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기간 연장은 업무방법서 제정시에는 은행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77년 12월 제21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은행장이 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1991년 6월 제47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다시 은행장이 승인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 대출이율

수은 설립 당시인 1976년 7월 1일의 貸出利率은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이 다같이 연 7%로 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8월 업무방법서 개정시 대출이율을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제작금융은 연 8%, 연불금융은 용자기간별로 연 8~9%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수은 업무가 아직 초창기에 있었고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금융조건의 일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1977년 2월에 다시 업무방법서의 개정 부칙에서 전체적인 금리체계는 유지하되 1977년과 1978년 중 용자승인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잠정적으로 연 7%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미 승인된 거래도 차기 이자지급일로부터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연 7%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잠정금리의 적용은 1979년까지 연장되었다.

1980년 1월에는 그간의 국제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제작금융의 원화소요자금은 연 8%, 외화소요자금은 外國換管理規程에서 정한 중장기 외화자금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연불금융은 기간의 구분 없이 연 8%를 적용하되 강세통화표시로 용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화의 국제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였다. 이후 국제 고금리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수은의 대출금리도 1981년 11월 연 8%에서 연 9%로 다시 인상되었다.

1984년 11월에는 품목별 거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품목별 대출이율을 차등화하는 한편, 대출이율 조정의 신속성 및 불필요한 대외노출 방지 등을 위해 업무방법서에는 금리의 범위(연 9~10%)만을 정하고 실행이율은 수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1984년부터 시작된 한·미간의 무역분규와 1985년 수은이 지원한 대미 해양시추설비에 대한 相計關稅 제소건을 계기로, 수은의 금리를 OECD 가이드라인 금리 또는 실질차입금리 수준으로 6개월마다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미간 통상협상이 타결을 보게 됨에 따라 1985년 8월 대출실행이율을 실질차입금리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제작금융의 대출실행이율은 국내금리의 등락에 큰 구애없이 연 9%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연불금융의 대출실행이율은 실질차입금리 산정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점차 OECD 가이드라인상의 대출금리 수준을 준용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대출이율 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연불금융의 대출이율은 완전히 OECD 가이드라인의 금리체계와 같게 되었으며, 제작금융의 대출이율도 보조금 지급논쟁 등을 피하기 위해 1995년 7월 이후 국내의 소요자금 모

두 상업금리 수준에 맞추도록 하였다.

한편 수은의 대출이율은 1993년 9월 제48차 업무방법서 개정시 수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출이율을 조정해 오고 있다.

현재 제작금융의 대출이율은 원화표시대출과 외화표시대출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한·미 통상협상

1985년 7월 말, 하계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자 워싱턴 출장 명령이 떨어졌다. 미국과의 금리 협상을 위해 구성된 정부 대표단에 합류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은행은 A社 및 D社가 미국으로부터 수주한 해상석유 시추설비에 대한 수출 금융을 지원했는데, 미국의 철강협회가 덤핑 및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로 소원을 청구하였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조사단 파견후, 수은 지원에 보조금 요소가 있다는 예비판정하에 쌍무협상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은행의 지원금리는 8%였는데, 미국은 이 금리가 수은의 실질 조달금리를 하회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은행의 지원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수출경쟁력 위축으로 플랜트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와 우리은행은 수세에 몰린 입장에서 고심하였다.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미국이 제시하는 계산방식에 대한 반박자료와 함께 낮은 조달 코스트 순위에 입각한 협상카드를 마련하는 등 반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드디어 D-day, 우리는 워터게이트 호텔을 출발하여 미 무역대표부 회의실에 정시에 들어섰고 그 순간 모두 아연 실색했다. 회의실 탁자에는 종이컵, 휴지 등이 치워지지 않은 채 지저분하게 놓여 있었고, 상대방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있었다. 약속국의 비애감이 전신을 휘감았고 그 순간 저서는 안된다는

투지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름을 느꼈다.

잠시 후 미국측 협상단장인 Cooper 무역대표부 부대표, Lange 재무성 국장, Allgeier 부대표보, 국무성의 아시아·한국 담당관 등 무려 15명으로 구성된 대부대가 들어와 지저분한 회의탁자를 검연쩍은 얼굴로 치우고 나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측은 앉자마자 한국측이 보조금 수준의 금리로 금융을 공여한 것은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미국이 제시한 계산방식에 수은의 금리를 맞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준비한 대로 미국 계산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반박하였고, 특히 그들이 제시하는 금리(고정금리 채권발행 코스트에 warehousing cost, fixed spread margin을 가산한 13%)는 기본적으로 우리측이 계산한 금리수준(변동금리인 연불어음 매각금리(Libor+spread)를 고정금리로 환산한 10%)을 크게 벗어난다고 반박하였다.

2일 동안 각자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팽팽히 맞서다가 3일째 되는 날 오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제시하는 방식이 논리상 하자가 없으며 그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 미국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스왑방식은 우리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은행으로부터 배운 것이니,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당장 미국 은행에 전화하여 이의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문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후 미국측은 정회를 요청하였으며 40여분 후 다시 협상이 속개되었다. 그들은 우리측의 계산방식이 이론상으로 틀리지는 않으나, 계산된 금리가 너무 낮다고 반박해 왔다.

이튿날 미국측은 협상인원이 너무 많으니 각각 2인씩으로 부대표실에서 협상을 진행하자며 집무실로 안내하였다. Cooper 부대표는 커피를 권하며, 자신의 입장이 미국회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측 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50%씩 입장을 후퇴하자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 절충안은 우리가 작성한 5안중 2안 정도 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입장이었음)

나는 이러한 제안에서 우리가 최종 입장까지 밀어도 되겠다는 감을 잡았고, 이후 팽팽히 맞서는 공방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측이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잠시 다른 방에 갔다 오더니(아마 모처와 전화 협의하는 것 같았음), "축하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악수를 청하였다. 결국 우리측 안이 수용된 것이었다. 우리의 끈기와 집념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에 따라 수은 지원금리는 자금조달비용이나 OECD 가이드라인 금리 중 택일하는 방안이 쌍무협정의 최종결과로 정해졌고, 이후 실무차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OECD 금리로 현재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홍성욱 / 당시 자금부 과장)

있는데, 원화표시대출은 국내 시중은행 우대금리의 평균이율에 일정률(2.50% 이내)을 더한 變動金利로, 외화표시대출은 스왑금리(swap rate)에 일정률(1.00~1.50%)을 더한 固定金利 또는 Libor에 일정률(0.75~1.50%)을 더한 변동금리로 운용되고 있다.

연불금융의 대출이율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되는데,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경우 선박은 연 8%, 선박·핵발전설비·대형 항공기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상업참고금리(CIRR :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가 적용되고,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Libor에 일정률을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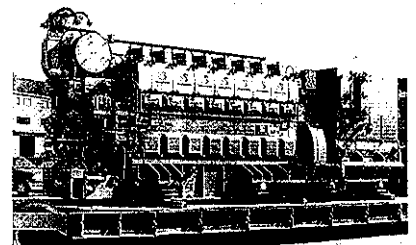
산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 지원대상 거래의 국산화율 제고

수은은 1981년 11월 당시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기관과 연불수출거래의 국산화를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이듬해인 1982년 2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國產機資材 使用去來에 대한 優先支援指針'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국산화율이 50% 이상인 국산기자재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적정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거래만 지원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외산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자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지침은 수출자금대출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직접대출을 지원받는 모든 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선박용 엔진만을 대상 국산기자재로 정하고 있어 선박수출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용자비율은 당초 국산엔진 사용시 70%, 예외취급시 60%를 지원토록 하였으나, 1985년 6월 제36차 업무방안서 개정시 용자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예외취급시에는 업무방법서상의 용자비율에서 1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변경하였다.

당초의 지침은 대상요건에 부합되는 엔진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취급하여 용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1983년 7월에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국산엔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은 지원대상으로 해석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어 1985년 8월에는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기준으로 '국산기자재 사용거래 우선지원지침 시행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대체사용이 가능한 엔진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이를 대상 국산기자재로 인정하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1986년 2월에는 국산엔진 사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산화



선박용 엔진

율이 50%에 미달하는 선박용 엔진에 대해서도 조선기자재 협동조합의 수입추천심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이를 대상 국산엔진으로 인정하여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금년중 발효예정인 OECD 다자간 조선협정에서는 국내 조선사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제반 공적 규제 및 관행을 철폐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용 엔진의 국산화가 진전되어 거의 모든 수출선박에 국산엔진이 탑재되어 우선지원지침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해짐에 따라 현재 그 폐지를 검토중이다.

· 유휴산업설비 수출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遊休産業設備의 해외이전에 의한 국내산업의 적정 시설규모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84년 12월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국내 유휴산업설비의 해외이전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수은은 1985년 1월 '유휴산업설비 수출에 대한 자금지원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제정 당시 纖維産業 설비와 合理化對象 해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해외 건설 중장비의 해외수출시 기준선수금을 제외한 잔액의 70%를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산업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양산업 설비나 과잉 유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산업설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6월 지침을 개정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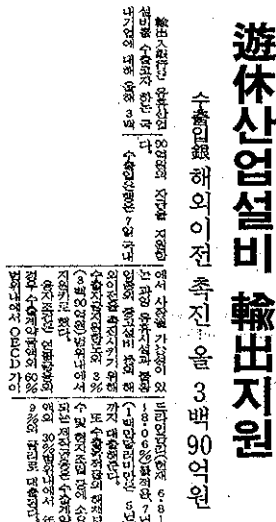
· 플랜트 수출에 대한 선별지원 강화

수은은 설립 이후 지원대상 품목의 다변화 차원에서 플랜트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의 일환으로 1979년 6월 '플랜트 수출에 대한 資金支援指針'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수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요건과 국산기자재율이 골자를 이루고 있는데, 제정 이래 4차례에 걸쳐 개정된 후 1992년 여신규정 제정시 이에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 협조융자제도



유휴산업설비 수출지원 관련기사
(내외경제, 1992. 7. 8)

1970년대 말부터 수은 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1979년 9월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가 수은의 장기자금 조달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내 외국 환은행과 협조융자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協調融資制度가 태동되었다.

수은은 1980년 2월 연불금융(당시는 인도후금융)의 80%를 수은이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협조융자기관(당시 한국외환은행, 5개 시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Libor 금리로 융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조융자취급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시중은행이 수은과의 협조융자 취급분도 국내 여신한도에 포함됨으로써 자체 융자한도를 잠식한다는 이유로 협조융자를 피하였고,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협조융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본협정 체결을 위해 본점의 승인을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협조융자에 소극적이어서 그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협조융자의 활성화를 위해 1980년 7월 협조융자취급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① 종전에는 연불금융에만 적용하던 것을 제작금융(당시는 인도후금융)에도 확대 적용하여, 수은은 제작금융의 원화소요자금을 지원하고 협조융자기관은 외화소요자금을 지원하며 ② 제작금융에 대한 협조융자기관의 융자비율을 종전의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수은의 융자비율은 종전의 80%에서 70%로 낮추며 ③ 융자에 참가할 수 있는 협조융자기관에 국내 종합금융회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④ 원자재 연불수입을 위한 해외조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수은 및 외국환은행이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었다.

또한 1981년 2월 제28차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하여 協調融資取扱 金融機關에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및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시키는 한편, 외국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취급에 따른 대외지급보증 업무의 취급근거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융자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협조융자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1980년대 전반기는 협조융자가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은의 자금공급 여력이 커지고 협조융자기관도 이 제도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따라 참여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1987년 11월의 승인권 하부위임(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및 1993년 9월의 취급대상 제한문구 삭제 등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협조융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95년 12월 말 현재 수은과 융자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 금



협조융자 관련기사 (현대경제, 1978. 7. 1)

유통기관 15개(종합금융회사 6개 포함), 외국은행 국내지점 35개, 외국은행 1개로 모두 51개에 달하고 있다.

· 이중통화대출제도

수은은 22개국 통화를 대출대상 거래의 決濟通貨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용자통화의 종류와 운용방법 등을 명시한 취급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 달러 이외의 외화표시대출이나 계약통화와 대출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異種通貨貸出의 경우에는 대출금액 산정의 어려움이나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1982년부터는 세계경제의 계속된 침체로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국내 수출자들로부터 대외 수주경쟁 특히 저금리통화국과의 수주경쟁을 이유로 미 달러 이외의 통화표시대출 요청이 늘어나게 되어 1985년 6월 '貸出表示通貨의 운용에 관한 指針'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외화표시대출통화는 미 달러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본 엔, 스위스 프랑, 독일 마르크 등 3개 低金利通貨로의 용자도 허용하되 이 경우 당해 저금리통화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상의 최저이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저금리통화표시대출은 수출계약통화가 저금리통화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었으므로, 미 달러로 체결된 수출계약은 저금리통화표시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다.

1985년 8월 수은의 금리가 미국과의 수출보조금 분쟁의 결과 實質借入金利 수준으로 조정됨에 따라, 선박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거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보조금 시비를 피하고 수출업계의 대외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금리통화표시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그 해 8월 금리조정과 병행하여 대출표시통화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저금리통화표시대출의 경우 이중통화대출을 취급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닌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기업의 수출거래는 대부분 미 달러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이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예비승인제도

수은은 설립 초부터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원대상 수출거래의 契約條件을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이 용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

래조건 등에 관하여 수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자를 요청해 오에 따라 지원조건에 맞도록 계약을 수정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契約書案을 가져와 수은의 豫備承認을 받도록 하고, 수은이 승인한 내용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면 본승인을 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1977년 1월 제14차 업무방법서의 개정을 통하여 사전에 수은의 예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박수출거래 등은 수주의 확실성과 수주경쟁 등을 이유로 예비승인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필요에 의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 5월 제23차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하여 수주대상 요건에 적합한 거래로서 은행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87년 5월 제41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일람불거래도 단기 일반무역금융 절차에 준하여 예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1993년 9월 제48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승인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대출

수은은 1990년대 들어 大企業 편중지원에서 탈피하고 中小企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2년 1월 '輸出用 原資材 供給者에 대한 貸出要綱'을 제정하여, 수은내국신용장에 의거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주로 중소기업)에 대해 제작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의 거의 대부분은 내국신용장이 아닌 物品供給契約書에 의거하여 원수출자에게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하므로, 제작기간 중 수은의 제작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제작하는 중소 납품업체도 수은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4년 2월 여신규정과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대출요강을 개정함과 동시에 수출용 원자재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부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설명회

輸出用 자본재 部品 半製品 生産자금 貸出 절차 간소화

국방, 산림청에서 제작한 자료

製作비용 90%까지 신용으로
을 8천여만 4천2백만원

수출용 원자재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기사 (서울경제, 1994. 2. 16)

이 자금은 수출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물품공급계약금액의 90%까지를 물품공급계약서상의 인도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내에서 제작금융의 원화대출금리로 대출되며, 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어 도입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수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수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재 육성시책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中小企業의 자본재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여신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資本財 輸出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要綱'을 제정하였다.

이 제도는 자본재 및 첨단기술 제품을 제작·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과거 6개월 내지 1년 동안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향후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지원대상 기업은 기계류, 전자·통신기기 및 첨단기술 관련제품 등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자본재 품목을 제작·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우대금리에 가산율을 더하여 적용되며, 대출비용은 대출기간에 소요되는 제작자금의 90%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6개월 내지 1년 이내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델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하며, 대기업의 연대보증도 적극 수용한다.

중소기업 지원의 새로운 창

지점생활을 하다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지점에서 플랜트, 선박 등 수출자금을 취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지원대상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아 발로 뛰어야만 만큼만 성과가 나타난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 담당하던 차에 마침 1995년 8월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개발되었다. 고객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 하면서 김강언 지점장 이하 실무자들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연일 회의를 갖는 등 정말 바쁜 한달을 보냈다. 우선 기존 고객과 KOTIS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체 리스트를 작성, 약 400개 기업

에 우편 및 FAX로 광고문안을 발송함과 동시에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편 지역신문에 제도 도입에 대한 기사가 실리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입체적인 홍보 결과 고객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워 대출상담이 쇄도하였는데, 시중은행의 무역금융보다 융자기간이 장기인 포괄금융이었던 관계로 상담과정 중 고객의 관심은 대단했다.

한편 대부분의 이용고객이 신규업체인 관계로 우리는 융자기간 6개월 및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신용을 요구하는 H사와 S사가 있었다. 우리는 신용평가를 위해 공장방문 등 이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두 회사의 과거 우리지점 거래 실적은 모두 괜찮은 편이었다. H사는 우리은행 규정상 30억원 정도를 차입할 수 있으나 구배

여 10억원만 쓰겠다며 일부라도 신용을 달라는 것이었고, S사는 모 은행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회의 결과 S사는 앞으로 자금경색, 현금흐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담보조치를 취하고, H사에 대해서는 일부 신용대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H사가 일부 신용만이라도 고집한 이유는 우리은행에서의 신용대출이 차후 여타 금융기관 이용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비록 한정된 자금으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을 골고루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지원의 새로운 창으로서 지점의 업무기반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손호진 / 부산지점 대리)

이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제도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資本財 輸出 中小企業의 발굴 및 이의 중점 지원을 통한 수출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지원실적

개 관

수출자금대출의 1976~1995년 기간 중 承認額 累計는 18조 2,712억원으로, 같은 기간 중 전체 자금의 총 승인액 누계 21조 6,588억원의 84.4%를 차지하여 수은 지원자금의 대종을 이루어왔다.

수출자금대출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선박에 대한 대출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산업설비와 기계류에 대한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1976년 이후 年度別 支援實績(승인기준)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3~4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 괄목할 만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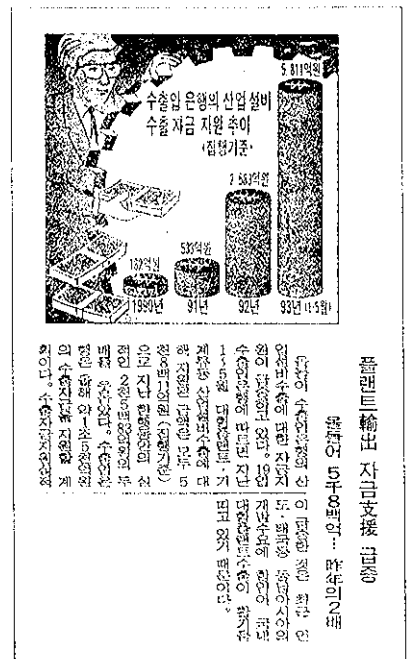
지원실적의 증가 추세는 대략 ① 1976~1980년 ② 1981~1984년 ③ 1985~1988년 ④ 1989~1995년의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설립 초기인 ①의 기간

수출자금대출 승인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산업설비	-	3,345	84,182	5,348	89,583	171,923	58,561	130,019	180,117	330,316
선박	78,097	100,865	22,946	398,852	155,671	371,340	505,064	467,134	939,205	423,378
기계류·기타	3,713	1,351	12,664	6,143	7,374	8,967	7,188	6,650	743	5,641
계	81,810	105,561	119,792	410,343	252,628	552,230	570,813	603,803	1,120,065	759,335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산업설비	131,667	114,675	6,897	9,135	7,742	82,545	193,791	1,397,226	1,115,178	1,462,615	5,574,865
선박	180,114	710,000	218,359	460,385	590,563	790,485	574,033	297,624	549,750	473,357	8,307,212
기계류·기타	2,663	11,049	-	12,036	24,753	33,194	389,765	1,214,686	1,669,934	971,078	4,389,091
계	314,444	835,724	225,256	481,556	622,548	906,224	1,157,589	2,809,535	3,334,862	2,907,050	18,271,168



플랜트 수출지원 관련기사
(중앙경제, 1993. 5. 20)

주) 개관과 산업설비 등 품목별 지원실적 분석에 사용된 통계의 불일치는 승인조건 변경, 승인 후 미집행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임.

중에는 각종 지원제도의 미비 및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열위 등으로 인해 선박과 산업설비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②의 기간에 들어서는 양질의 저임 노동력과 조립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박 및 산업설비 수출 등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지원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③의 기간에는 제2차 석유위기 등에 따른 세계경기의 전반적 침체 여파로 선박수출이 급감하고 산업설비 수출이 위축되면서 지원실적도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④의 기간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자본재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을 배경으로 선박수출이 고부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설비와 기계류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수은의 연간 지원실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3조원 내외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미완성 교향곡

프로젝트파이낸스 지원체제가 자리잡기 전인 1993년 초, 대림엔지니어링의 한 임원이 A4용지 2장에 사업개요를 간단히 정리하여 산업설비금융부에 내민 것은 '태국 Star Petroleum Refining Company 앞 정유공장 연불수출에 대한 5억달러의 프로젝트파이낸스 지원 가능성'이었다. 총 사업비용 18억 달러, 관련 당사국 4개국, 관련기관 15개 이상, 관련 계약서만 20여종에 이르는 매우 복잡한 초대형 사업이었다. 당시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세계일류은행의 지급보증에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기에 우리는 물론 수출기업들도 협의 초기에는 지원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였고 그런 상태로 2~3개월이 흘러갔다.

그러던 중 제작자 컨소시엄의 일원인 미국의 Bechtel사가 1993년 5월 초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달러 지원 예비승인을 받고 대립을 독촉하면서 협의가 환기를 띠게 되었고, 드디어 경영진으로부터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방침이 떨어졌다. 김성웅 부장의 진두 지휘하에 우리들은 먼저 사업 주체(sponsor)인 미국의 석유 제벌 Caltex사

에 사업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는 한편, 우선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예비검토에 들어갔다. 예비검토 결과 ① IFC 및 미국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정치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고 ② Caltex사와 태국국영석유공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면서 원재료 조달 및 판매 위험이 적으며 ③ 정유사업의 특성상 수익마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점 등이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Caltex사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 및 자금조달 계획서가 입수되면서 본격적인 심사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경쟁입찰 기한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눈코 뜰 새 없는 긴장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사회 부의안의 내용을 5층에 보고한 후 새벽 3~4시까지 수정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5층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새벽까지 수정하는 과정을 4~5차례 거친 후에야 50여장의 부의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드디어 1993년 7월, 이사회에서 "국산 기자재 및 용역 수출만을 대상으로 하여 5억달러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완공전위험은 상업은행이 부담하고 완공후위험만 수용하기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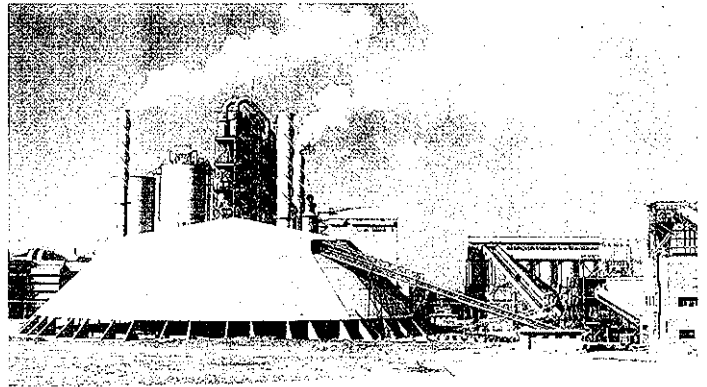
다"는 예비승인이 의결되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프로젝트파이낸스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다는 조심스러운 희열이 일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입찰결과였다. 발표예정일 열흘 쯤 전부터 '일본 기업의 수주 유력'이라는 기사가 외국신문에 게재되더니, 결국 우리 기업보다 1억달러 이상 낮게 응찰한 일본 기업의 낙찰이 확정되자 수출자는 물론 우리도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수은의 최초 프로젝트파이낸스 예비승인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수출자와 우리은행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였고, 예비승인 이후 국제적인 프로젝트파이낸스 전문은행들로부터 공동참여 제의를 받는 등 수은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은행내에 프로젝트파이낸스 전담 라인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때의 노력이 물거품만은 아니었다는 위안을 가져본다.

(윤성근 / 당시 산업설비금융부 과장)

수출자금대출의 地域別 구성을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선진국에 대한 선박수출이 주류를 이룸에 따라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개도국에 대한 산업설비 및 기계류의 수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시멘트 제조설비

산업설비

· 지원실적 추이

1976년 이후 줄곧 수출자금 지원실적에서 선박에 이어 2위에 머물러 오던 산업설비는 1990년대 들어 태국·인도·중국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된 데 힘입어 그 지원실적이 급속히 늘어나, 1993년부터는 선박에 대한 지원실적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3~1995년의 총 수출자금 승인액 누계에서 차지하는 산업설비수출 자금 승인액 누계의 비중은 43.4%로, 1976~1995년의 30.5%에 비해 12.9%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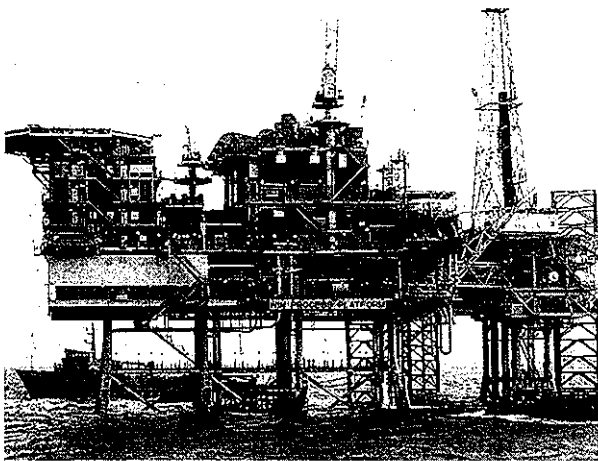
수은의 지원을 받은 산업설비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순·중급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시멘트, 합판, 섬유, 신발 등의 제조설비)으로부터 고급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업종(석유화학설비, 해양설비, 항만하역설비, 발전설비 등)으로 전환되어 왔다.

1976~1995년의 산업설비 수출자금 총 승인액 누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석유화학설비와 해양설비로, 두 업종 모두 각각 약 30% 수준에 이르렀다. 석유화학설비에 대한 지원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설비 제조기술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양설비에 대한 지원은 198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는 미국에의 해양석유시추설비 수출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동남아 국가에의 해양가스생산설비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업종별 산업설비 수출 지원실적
(1995년 말 현재 승인액 누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금 액	구성비(%)
정강제조설비	457	0.8
금속선비	167	0.3
시멘트제조설비	4,494	8.1
차량관련제조설비	392	0.7
당수화선비	4,835	8.6
시멘트제조설비	318	0.6
합판생산설비	128	0.2
섬유제조설비	389	0.7
신발제조설비	57	0.1
전기전자제조설비	2,096	3.8
해양설비	15,866	28.5
약공제조설비	58	0.1
저장(탱크)설비	324	0.6
발전발전설비	4,229	7.6
송전설비	153	0.3
석유화학설비	16,532	29.6
항만하역설비	2,775	5.0
전기집진설비	254	0.5
엘리베이터제조설비	1,067	1.9
자동화설비	119	0.2
기타	1,000	1.8
계	55,710	100.0



인도의 ONGC에 수출한 해양석유시추설비

이 두 업종 다음으로 지원비중이 높은 업종은 담수화설비(8.7%), 시멘트 제조설비(8.1%), 발전·변전설비(7.6%), 항만하역설비(5.0%) 등이다. 담수화설비에 대한 지원은 1980년대 전반기에 주로 이루어진 데 비해 발전·변전설비와 항만하역설비 등에 대한 지원은 주로 1990년대에 집중되었다.

· 지역별·국별

1976~1995년의 승인액 누계(5조 5,749억원)의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아시아가 64.9%로 가장 높고, 이어 중동 15.4%, 북미 9.3%, 유럽 6.9%, 아프리카 2.9%, 대양주 0.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남미에 대한 지원은 1981년 에콰도르에의 시멘트 제조설비 수출 1건만이 이루어졌다.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1990년대 들어 기존의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외에도 새로이 중국과 베트남 등의 산업설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1980년대 이후 석유생산 관련 해양설비 등을 중심으로 수은 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아 총 승인액 누계의 15.8%를 차지하였다. 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석유화학설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15.4%를 차지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주요 수출시장이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8.0%와 7.2%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산업설비 수출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① 1990년대 이후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관련한 시설투자 증대에 힘입어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 ② 기존의 주요 수출대상국 외에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괌, 홍콩 등의 국가가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등장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역별 산업설비 수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지역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대양주	합계
지원액	36,161	3,847	5,208	1,600	8	8,604	282	55,710
비중(%)	64.9	6.9	9.3	2.9	0.1	15.4	0.5	100.0

중동 지역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승인액 누계의 12.7%를 차지하여 이란과 이라크의 1% 내외에 비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은 주로 해수담수화설비와 석유화학설비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북미 지역의 경우는 미국이 전체의 8.1%, 지역내 실적의 87.2%를 각각 차지하였는데, 1980년대 전반기에 해상석유시추설비 등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났으나, 1987년~1991년까지는 승인실적이 전무하였고 이후 항만하역설비 및 전기·전자 제조설비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지원되었다.

유럽 지역의 경우는 영국과 그리스 등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며, 1990년대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東歐圈 국가에 대한 지원이 개시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나이지리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집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 유일의 주요 고객이 되어오고 있다.

· 결제조건별

1976~1985년의 총 승인액 누계에서 차지하는 연불거래의 비중은 건수면에서는 44.1%, 금액면에서는 52.0%를 차지하여, 일람불거래에 비해 건수면에서는 열세였지만 금액면에서는 우세하였다. 그러나 시계열로 볼 때 산업설비 수출거래의 決済條件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건수 및 금액면 모두 연불조건 우세에서 일람불조건 우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금리가 비교적 장기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건수면에서는 1976년부터 1988년까지 평균 60~70%에 달하던 연불거래의 비중이 1989년 이후 30% 내외로 크게 낮아졌고, 이에 따라 일람불거래의 비중은 30~4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비중의 변화는 금액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제조건별 산업설비 수출 지원실적 (1995년 말 현재 승인액 누계 기준)

(단위: 억원)

	건 수	비중(%)	금 액	비중(%)
연불조건	157	44.1	28,951	52.0
일람불조건	199	55.9	26,759	48.0
계	356	100.0	55,7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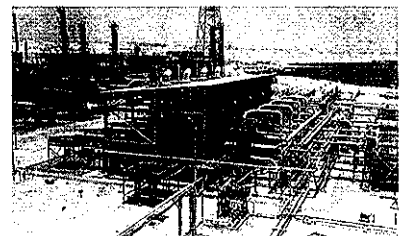
체코에 延拂金용

輸 送 1 億 7 千 萬 弗 規 模

체코 공화국	1,700,000,000	100.0%
슬로바키아	1,700,000,000	100.0%
아제르바이잔	1,700,000,000	100.0%
나이지리아	1,700,000,000	100.0%
가나	1,700,000,000	100.0%
남아프리카공화국	1,700,000,000	100.0%
이집트	1,700,000,000	100.0%
이탈리아	1,700,000,000	100.0%
영국	1,700,000,000	100.0%
그리스	1,700,000,000	100.0%
프랑스	1,700,000,000	100.0%
독일	1,700,000,000	100.0%
일본	1,700,000,000	100.0%
미국	1,700,000,000	100.0%
중국	1,700,000,000	100.0%
인도	1,700,000,000	100.0%
태국	1,700,000,000	100.0%
말레이시아	1,700,000,000	100.0%
싱가포르	1,700,000,000	100.0%
홍콩	1,700,000,000	100.0%
타이완	1,700,000,000	100.0%
대만	1,700,000,000	100.0%
필리핀	1,700,000,000	100.0%
인도네시아	1,700,000,000	100.0%
말라야	1,700,000,000	100.0%
브루나이	1,700,000,000	100.0%
사우디아라비아	1,700,000,000	100.0%
이라크	1,700,000,000	100.0%
이란	1,700,000,000	100.0%
요르단	1,700,000,000	100.0%
레바논	1,700,000,000	100.0%
시리아	1,700,000,000	100.0%
팔레스타인	1,700,000,000	100.0%
이스라엘	1,700,000,000	100.0%
튀르키예	1,700,000,000	100.0%
그리스	1,700,000,000	100.0%
영국	1,700,000,000	100.0%
프랑스	1,700,000,000	100.0%
독일	1,700,000,000	100.0%
일본	1,700,000,000	100.0%
미국	1,700,000,000	100.0%
중국	1,700,000,000	100.0%
인도	1,700,000,000	100.0%
태국	1,700,000,000	100.0%
말레이시아	1,700,000,000	100.0%
싱가포르	1,700,000,000	100.0%
홍콩	1,700,000,000	100.0%
타이완	1,700,000,000	100.0%
대만	1,700,000,000	100.0%
필리핀	1,700,000,000	100.0%
인도네시아	1,700,000,000	100.0%
말라야	1,700,000,000	100.0%
브루나이	1,700,000,000	100.0%
사우디아라비아	1,700,000,000	100.0%
이라크	1,700,000,000	100.0%
이란	1,700,000,000	100.0%
요르단	1,700,000,000	100.0%
레바논	1,700,000,000	100.0%
시리아	1,700,000,000	100.0%
팔레스타인	1,700,000,000	100.0%
이스라엘	1,700,000,000	100.0%
튀르키예	1,700,000,000	100.0%

동구권에 대한 연불수출지원 관련기사
(내외경제, 1992. 5. 13)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해수담수화설비





플랜트업계 대표 초청 간담회 (1994. 1)

· 승인액 규모별

산업설비 수출에 대한 지원실적을 件別 承認額 規模로 살펴 보면, 총 승인액 누계에서 1,000만달러 미만건은 7.2%, 1,000만달러 이상 5,000만달러 이하건은 29.5%, 5,000만달러 초과 1억달러 이하건은 26.0%, 1억달러 초과건은 37.4%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시계열로 보면, 1,000만달러 미만건과 1,000만달러 이상 5,000만달러 이하건의 경우는 1970년대 후반 이후 1995년까지 각각 7~8% 및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침체기를 기점으로 5,000만달러 초과 1억달러 이하건의 경우는 그 비중이 40%선에서 30% 이하로 낮아진 반면, 1억달러 초과건의 경우는 20%선에서 40% 내외로까지 급격히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들어 인도, 태국,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산업설비 수출지원 규모별 승인실적(1995년 말 현재 누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1,000만달러 미만	1,000만달러 이상 5,000만달러 미만	5,000만달러 이상 1억달러 미만	1억달러 이상	계
금 액	514.6	2,103.5	1,853.6	2,669.7	7,141.4
비중(%)	7.2	29.4	26.0	37.4	100.0

선박

· 지원실적 추이

선박에 대한 대출은 1976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수출자금은 물론 자금지원액 전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수은 자금지원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으며, 지원금액면에서 산업설비에 1위 자리를 넘겨준 1993년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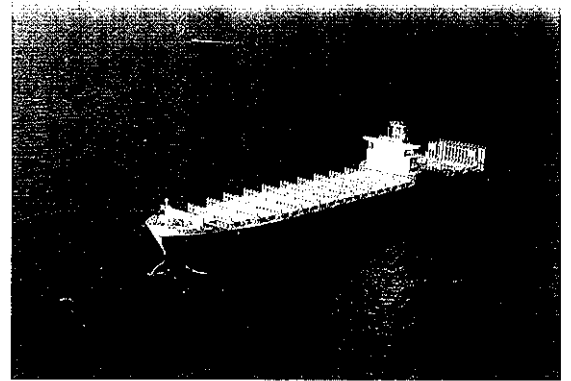
선박의 수출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세계 造船市場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은의 선박수출 지원실적도 설립 이후 이러한 여건 및 동향 변화에 따라 부침을 보여왔다. 1976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 造船社의 시설 능력 증대, 해운경기의 호황과 국내의 풍부한 숙련 저임 노동력 등의 유

이중신체구조의 초대형 유조선



리한 여건으로 연불조건의 수주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은의 자금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계造船市場이 1985~1986년에 심각한 불황을 겪음에 따라 수은의 지원실적도 감소하였다. 1987년부터 세계적인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조선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지원실적이 다시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초 국제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일람불거래가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은의 지원실적은 오히려 정체 내지는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의 선박수출액에서 수은의 금융지원을 받은 선박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9~1989년에는 평균 6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 이후에는 앞서의 요인 등에 따라 점차 낮아져 20% 내외에 머물게 되었다.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에콰도르 Flopec과 리스케줄링

신입행원 티도 채 못했던 1988년 1월, 에콰도르의 Flopec사로부터 텔렉스 한 장이 날아들었다. 자기나라의 외환부족과 과다한 외채로 인하여 원리금 연불채무의 상환이 어렵게 되었으니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텔렉스를 받은 그날 Flopec사에 유조선 5척을 수출한 대우의 담당 직원이 은행을 찾아왔다. 당시 US Lines의 도산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우로서는 우리은행이 리스케줄링(rescheduling)을 승낙해 주지 않으면 자기자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우리은행의 승인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리스케줄링 방침이 결정되어 작업에 들어갔지만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리스케줄링으로 인하여 상환기간이 10년이 넘게 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에콰도르의 채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했고, 또한 한국은행의 국민투자자금 운영지침

(상환기간)도 문제가 되었다.

리스케줄링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에콰도르 정부가 파리클럽에 요청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 했지만, 국민투자자금 상환문제는 한국은행과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우선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상환일정 조정에 들어갔는데, Flopec사에 대한 상환일정은 이미 한 차례의 리스케줄링으로 매우 복잡하였던 탓에 연불대금 회수시 계산상의 오류가 가끔 발생하여 속을 태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시 2차 리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5척 각각에 대해 3종의 자금(연불원리금, 대출원리금, 국민투자자금 원리금)과 9가지의 이용이 적용되어 상환일정만 총 135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정말 복잡한 작업이었다.

리스케줄링 절차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여 방두훈 대리와 함께 파리클럽에서 발행한 자료를 전문 번역하는 한편,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환일정 작성은 전산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에 대한 관심

도 약했고, PC 1대 없었던 시절이라 전산실의 주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COMPUALC라는 계산용 프로그램으로 일정표를 작성하였다. 술한 시행착오 끝에 리스케줄링 일정이 먼저 완성되고, 파리클럽의 에콰도르에 대한 리스케줄링 합의에 이어 우리은행 운영위원회의 리스케줄링 승인을 받던 날, 어둡고 음습한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눈부신 태양과 신선한 공기를 맛보는 듯한 환희를 느낄 수 있었다.

Flopec사의 리스케줄링을 끝내고 보니 서울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에콰도르 팀은 11개 종목에 37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동메달 1개를 따내는 수확을 거두었다. Flopec사의 리스케줄링이 맺어준 인연으로 에콰도르 팀이 참가하는 육상경기를 응원하려고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안타까웠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강순기 / 당시 금융2부 행원)

· 선종별

1976~1995년의 승인금액 누계를 기준으로 볼 때 一般船舶(여신규정 별표1에 의한 구분)의 비중은 74.7%, 特殊船舶의 비중은 25.3%로 나타났다.

전체 선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선종은 유조선과 산적선으로 각각 전체 승인금액 누계의 25.9%와 20.4%를 점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컨테이너선(12.5%), 광적·산적유조선(8.7%), 프리덱트 캐리어(7.7%) 등의 순이었다.

유조선과 산적선은 국내 조선사들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저임 노동력을, 1980년대 말 이후부터는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각각 경쟁우위 요인으로 하여 많은 양을 수주함에 따라, 이들 선박에 대한 수은의 지원도 수은 설립 이래 꾸준히 이루어졌다.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선종인 컨테이너선은 1980년 이후 지원 선박 중 제3의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광적·산적유조선은 1980년대 전반기와 1990년대 전반기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다.

특수선박 중 가장 높은 지원비중을 차지한 프리덱트 캐리어는 수은 설립 이후 꾸준히 지원되어 왔으며, 고부가가치선에 속하는 액화가스운반선은 1988~1992년에, 케미컬 탱커와 프리덱트 오일 탱커는 1980년대 중반에 각각 많이 지원되었다.

선종별 선박수출 지원실적 (1995년 말 현재 승인액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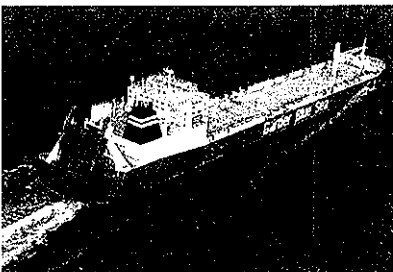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일반선박					특수선박					합계
	유조선	산적선	컨테이너선	광적·산적 유조선	소계	프리덱트 캐리어	프리덱트 오일탱커	액화가스 운반선	케미컬 탱커	소계	
금액	21,435	16,841	10,320	7,211	61,724	6,388	2,962	2,586	2,069	20,909	82,633
비중(%)	25.9	20.4	12.5	8.7	74.7	7.7	3.6	3.1	2.5	25.3	100.0

· 지역별·국별

지역별 지원실적을 보면 1976~1995년의 용자승인액 누계에서 해운산업이 가장 발달한 유럽 지역이 46.4%로 단연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아시아(23.4%), 북미(11.0%), 아프리카(10.4%), 중남미(5.2%), 중동(3.1%), 대양주(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아프리카의 경우는 라이베리아가, 중남미의 경우는 버뮤다와 파나마가 각각 便宜置籍國이어서 이들 국가에의 선박수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데 기인하였다.

자동차 전용 화물선인 RORO선



유럽 지역에서는 해운 강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각각 전체의 12.2%와 11.7%를 차지하였으며, 그리스와 덴마크가 각각 4.0%, 영국이 3.4%, 러시아가 2.4%, 벨기에가 2.3% 등을 차지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선박수출 지원은 1990년과 1991년 및 1995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 홍콩이 각각 전체의 8.3%와 7.4%를 차지하여 주요 지원대상국이었으며, 일본이 2.3%, 싱가포르가 1.9%, 인도네시아가 1.4%, 말레이시아가 1.3%를 차지하였다. 세계 제일의造船國인 일본에 대한 지원이 2.3%나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상반기에 우리 조선소가 저임의 풍부한 숙련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적선 등을 수출한 데 따른 것이었다.

북미 지역의 경우는 미국에 대한 선박수출을 중심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할 만큼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 1995년에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특기할 만하다.

· 결제조건별

1976~1995년에 수은이 지원한 선박수출거래 중 연불거래의 비중은 척수면에서 85%, 금액면에서 80.6%로 일람불거래에 대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선박수출거래의 決済條件이 연불이나 일람불이나의 여부는 주로 당시의 국제금융시장 여건, 특히 국제금리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어 오고 있다. 즉 국제금리가 OECD의 선박수출신용양해에서 규제하고 있는 수은의 연불금리인 8%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일람불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연불거래가 척수 및 금액면 모두에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Libor가 8%를 밑돌았던 1977년과 1987년에는 일람불거래의 비중이 척수기준으로 각각 54%와

지역별 선박수출 지원실적
(1976~1995년 승인액 누계 기준)

(단위 : 억원)

지 역	지원액	비중(%)
아시아	19,326	23.4
유럽	38,307	46.4
북미	9,057	11.0
아프리카	8,572	10.4
중남미	4,331	5.2
중동	2,578	3.0
대양주	461	0.6
합 계	82,632	100.0

선박수출 지원자금의 결제조건별 구성비 추이
(1995년 말 현재 승인액 누계 기준)

(단위 : %)

	척 수		금 액	
	연불	일람불	연불	일람불
1977	45.8	54.2	47.5	52.5
1980	97.1	2.9	78.7	1.3
1985	100.0	0.0	100.0	0.0
1987	74.6	25.4	87.6	12.4
1991	71.1	28.9	79.4	20.6
1993	42.1	57.9	45.8	54.2
1995	12.5	87.5	6.9	93.1

2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1년 이후 국제금리가 8%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져, 연불대 일람불의 척수기준 비율이 1991년의 71.1%대 28.9%에서 1995년에는 12.5%대 87.5%로 크게 반전되었다.

기계류·기타

· 지원실적 추이

기계류·기타의 연평균 승인실적은 1976~1986년에 57억원, 1987~1991년에는 161억원 수준에 머무는 등 비교적 부진하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 기존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한편 반도체 등 첨단 제품에의 지원이 개시됨에 따라, 1992년 3,898억원에 불과하던 승인실적이 1993년에는 1조원을 넘어섰고 이어 1994년에는 1조 6,699억원을 기록하는 등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기계류·기타의 총 승인액 누계 4조 3,891억원 중 96.7%가 1992~1995년의 4년간의 실적치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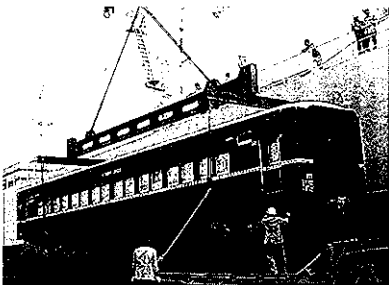
· 세부 품목별

1976~1995년의 승인액 누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반도체와 모니터 등 전자산업 관련 첨단 제품으로, 반도체가 전체의 47.3%, 모니터가 21.8%, 컴퓨터가 4.5%를 차지하였다.

철도차량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 및 1994~1995년에 활발히 지원되어 전체의 9.3%를 차지하였는데, 반도체 등예의 지원이 개시되기 전인 1991년까지는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전자 부품은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와 1992년 이후에 많이 지원되어 전체의 3.4%를 차지하였고, 항공기 부품은 1989년 이후 활발히 지원되기 시작하여 전체의 3.3%를 차지하였다.

1980년에 최초로 지원이 이루어진 철도용 이외의 차량에 대한 지원은 1992년 이후 크게 늘어나 전체의 2.3%를 차지하였고, 그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선박용 엔진에 대한 지원도 1992년 이후 활발해져 전체의 2.0%를 기록하였다. 1992년 이후에는 중장비에 대한 지원도 개시되어 전체의 1.6%를 차지하였다.



수출되는 철도차량의 선적 장면

품목별 수출자금대출 승인실적

(단위 : 백만달러, %)

기간	산업선택비		선 박		기계류·기타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76~1980	328	17.6	1,477	79.2	60	3.2	1,865	100
1981~1985	1,076	23.8	3,403	75.3	38	0.9	4,517	100
1986~1990	332	10.0	2,926	87.9	69	2.1	3,327	100
1991~1995	5,385	37.8	3,443	24.2	5,411	38.0	14,239	100
계	7,121	29.7	11,249	47.0	5,578	23.3	23,948	100

· 지역별·국별

1976~1995년의 승인액 누계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북미 45.9%, 아시아 32.6%, 유럽 16.9%, 중동 2.4%, 중남미 1.6%, 아프리카 0.5%, 대양주 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비중은 1992년 이후 반도체 등에서의 지원이 개시된 이후에 나타난 결과이며, 1976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만으로 보면 단연 아시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국에 대한 지원은 주로 반도체, 항공기 부품, 전기·전자 부품 등을 중심으로 1989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져,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6%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1992년 이후 반도체와 전기·전자 부품에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 일본(9.8%), 대만(8.2%), 싱가포르(8.1%), 홍콩(2.4%)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였다. 이 밖에 태국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 이외의 차량 등에 대한 지원에 힘입어 1.5%를 차지하였고, 수은 설립 초기의 주요 지원대상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1976년~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직기 및 목재건조기, 1990년대 이후에는 전기·전자 부품 및 철도용 이외의 차량 등에 대한 꾸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0.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유럽 지역의 경우는 독일이 1992년 이후 반도체, 항공기 부품, 자동차 엔진, 전기·전자 부품 등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 전체의 13.0%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지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는 전체의 1.3%를, 선박용 엔진에 대한 지원이 많았던 덴마크와 스위스는 각각 1.1%를 차지하였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1993년과 1994년에 철도용 이외의 차량에 대해 지원을 받은 콜롬비아가 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동, 대양주 및 아프리카의 경우는 지원국 모두 미미한 실적을 보였다.

· 결제조건별

기계류·기타의 경우도 산업설비의 경우와 유사하게 1976~1990년에는 연불조건 거래가 건수 및 금액면에서 모두 전체의 7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2년 이후 반도체 등의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1976~1995년의 전 기간에 걸쳐 연불조건 거래의 비중은 건수면에서는 27.8%, 금액면에서는 5.3%로 크게 낮아졌다.

결제조건별 선박수출 지원실적
(1995년 말 현재 승인액 누계 기준)

(단위 : 억원)

	건 수		금 액	
		비중(%)		비중(%)
연불조건	99	27.8	2,298	5.3
일람불조건	257	72.2	4,252	94.7
계	356	100.0	43,550	100.0

이처럼 연불거래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단기거래인 반도체 등의 수출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데다, 국제금리의 하향 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일람불거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 등에 따른 것이었다.

· 승인액 규모별

기계류·기타의 승인액 규모별 비중은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된 1992년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76~1991년의 승인액 누계에서는 1,000만 달러 미만건이 전체의 73.8%, 1,000만달러 이상 5,000만달러 미만건이 나머지 26.2%를 차지하여, 승인건 모두가 5,000만달러 미만의 거래였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반도체 등 거래의 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76~1995년의 승인액 누계에서는 1억달러 초과건이 전체의 47.7%로 단연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000만달러 이상 1억달러 미만건도 19.9%를 차지하였다. 1,000만달러

선박수출지원 규모별 승인실적 (1995년 말 현재 누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구분	기간	1,000만달러 미만	1,000만달러 이상 5,000만달러 미만	5,000만달러 이상 1억달러 미만	1억달러 이상	계
승인금액	1976~1991	149.5	53.0	-	-	202.5
	1976~1995	444.0	1,344.2	1,099.9	2,632.2	5,520.3
비중(%)	1976~1991	73.8	26.2	-	-	100.0
	1976~1995	8.0	24.4	19.9	47.7	100.0

이상 5,000만달러 미만건은 1976~1995년의 비중과 비슷한 24.4%를 기록하였으나, 1976~1995년의 기간 중 73.8%이던 1,000만달러 미만건의 비중은 8.0%로 대폭 줄어들었다.

나. 기술제공자금대출

(1) 제도의 발전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수은법 제정시 技術提供資金의 지원대상 범위는 외국에 제공되는 '기술'로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산업시설(선박과 차량 포함)과 이를 위한 원료·예비품·부분품·부속품 등의 설치 및 운영에 수반되는 기술 등의 용역과 조사, 설계, 감리 등이었다.

그러나 1974년 12월 수은법 제1차 개정시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제공자금의 지원대상에 해외 건설공사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원조건의 개선

기술제공자금대출의 각종 지원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자금대출의 지원조건에 맞추어 변화되어 왔다. 즉 업무방법서 제정시부터 技術提供前金融과 技術提供後金融으로 나뉘어 구분, 지원되어 왔으며, 선수금, 연불이율 및 연불기간 등 융자대상 요건은 1991년 5월까지의 '플랜트'의 경우에 준하도록, 1991년 6월 이후부터는 '선박 이외의 품목'에 준하도록 하여 왔다.

또한 기술제공전금융과 기술제공후금융의 대출이율, 대출기간, 원리금 상환방법 등 모든 대출조건은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과 연불금융의 조건에 맞추어 지원되도록 하여 왔다.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제도의 변천

1974년 12월 수은법 제1차 개정시 지원대상 기술의 범위에 '해외에서 행하는 建設工事'가 포함되고, 1976년 1월 운영위원회에서 '海外建設輸出支援金融規程'이 의

해외건설 지원금융 안내 광고

(서울신문, 1976. 6. 29)

海外建設輸出支援金融融資

中東地域에 進出하여 實施하고 있는 建設工事에 對하여 1976年 2月 9日부터 上述의 要領으로 融資을 取扱하고 있다. 소나 積極利用하시기 바랍니다.

1. 融資對象

『海外建設輸出支援金融』에 關한 海外建設工事中 土木工事의 各種 建設 資金을 融通한 工事가, 工事에 依한 外國(外國) 和對部 政府에 對하여 國內資金의 貸付를 받는 形態로 實施되는 融資

나. 融資金額의 限度 融資100萬圓 또는 그 相當額以上인 建設工事가 契約締結後에 1월 6月以上인 期間 工事가 中斷狀態에서 行하지 않고, 76年 1月 1日以後 新 工務는 實施

마. 融資對象의 銀行에 對하여 該銀行 對外 外貨 準備 金에 對한 所定한 完結한 擔保
2. 資金用途

國內에서 生産되는 機械 및 資材의 購入資金
3. 融資條件

가. 支援資金: 總 300億圓(其間 設備資金 150億圓)

나. 形態 및 金利 設備資金(其間 設備資金: 設備資金의 1/3; 年 12%)

다. 融資期間: 5年以內
4. 融資取扱商次

가. 設備資金出入銀行: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 韓國海關銀行, 第一銀行

나. 設備資金: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 韓國海關銀行, 第一銀行

마. 設備資金: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 韓國海關銀行, 第一銀行
5. 取扱銀行

韓國輸出銀行, 韓國外換銀行, 韓國銀行, 韓國海關銀行, 第一銀行
6. 其 他

가. 融資한 事項은 韓國 政府의 承認을 受한다

나. 設備資金出入銀行: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 韓國海關銀行, 第一銀行

마. 設備資金: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 韓國海關銀行, 第一銀行

바. 設備資金: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 韓國海關銀行, 第一銀行

1976年 6月 29日

韓國輸出銀行 韓國外換銀行
 朝鮮銀行 韓國商業銀行
 第一銀行 第一銀行
 서울銀行 韓國信託銀行



가봉의 유신백화점 개점 장면 (1977. 12. 7)

결됨으로써 수은은 국내 외국환은행과 협조융자 방식으로 해외 건설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 외국환은행이 협조융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외 건설업체도 외화표시금융과 현지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1977년 수은이 단독으로 지원한 대우실업의 수단 영빈관 공사와 가봉 백화점 건설공사 2건만이 제도 도입 이후 지원된 실적의 전부일 정도로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 선별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외 건설공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수립되어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그 후 수은은 해외 건설공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3년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의 지속으로 해외 건설수주가 격감하고 공사대금의 지불조건도 악화되어 선수금비율이 축소되는 한편 공사완료 후 일정 기간의 연불결

가봉의 유신백화점

수은 발족 5개월 후인 1976년 12월에 아프리카의 가봉을 방문하는 수은 최초의 심사출장이 있었다. 쌍용이 Sogacco라는 현지 합작법인을 가봉에 설립하여 Libreville 시내 중심가에 15층짜리 현대식 건물을 지어 1~4층까지는 백화점으로 운영하고, 5~15층은 사무실과 아파트로 분양하려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당시는 UN에서의 한국지자 국가를 늘리려는 외교노력이 한창 진행중이던 때였고, 한편으로는 공업화와 수출 입국에 자신을 얻은 한국이 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대한 미개척 시장에서의 진출과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자원확보를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던 시기였다. 1975년 7월 서울을 방문한 가봉의 봉고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외교적인 지지와 경제협력에 대한 약속이 쉽게 이루어졌다. 쌍용이 추진한 유신백화점 건설사업은 이 때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의 하나였고, 자금지원은 때맞춰 발족한 수은이 맡게 되었다.

당시 가봉은 석유수출로 소득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생산공장과 유통시설 미비로 생필품 품

귀현상을 빚고 있던 티라 수도 Libreville에 한국 자본과 기술로 백화점을 건설하여 미국, 유럽 또는 한국으로부터 생필품을 직접 조달공급함으로써 Libreville 시내에서 유일한 프랑스계 슈퍼마켓의 폭리를 막고 물가안정을 꾀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로서도 가봉에의 진출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었다.

그 후 이 사업에 대한 승인과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봉의 수도 한복판에 '維新百貨店'이 들어서고 쌍용은 백화점과 아파트 임대를 시작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대출승인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아파트 임대가 여의치 않아서 우여곡절을 겪었고 나중에는 백화점 운영이 순조롭지 못해서 대출금 상환이 몇 년간 지연되었으며 종래는 백화점을 현지인에게 양도하고 쌍용은 철수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 때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경험이 부족해서 현지인들의 의식구조와 문화적, 제도적 차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한국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된 실패원인이었다. 건축자재와 상품을 엄청난 수송거리인 한국에서 무리하게 수송하다 풍량을 만나 유실되기도 하고, 슈퍼

마켓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 프랑스계 인사들의 공공연한 방해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수은의 입장은 양국 정부간의 합의와 경제장관협의회의 지원결의가 먼저 되어 있었고, 1977년 6월 개최 예정이던 OAU 정상회담에 맞춰 백화점을 준공한다는 외교적 측면이 강했던 만큼 수은 제 18조 제2항의 대외경제협력자금으로 지원코자하는 것이었으나, 자금배정이 되어있지 않았던 관계로 해외투자자금과 기술제공자금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기록만 남아 있지만, 경제협력과 순수 해외투자의 성격이 복합된 이런 프로젝트를 다루어 본 전례와 경험이 없던 우리들은 수은법의 해석과 취급절차 등에 대해 위아래가 격의없이 토론하였고, 잦은 야근을 하면서도 수은의 장래 모습을 그려가기에 모두가 열심이었던 기억이 난다.

이 프로젝트는 수은 초창기에 우리의 존재가치를 정부와 업계에 인식시키고 수은의 역할을 대외에 알리기 시작한 잊을 수 없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다.

(이광인 / 당시 업무부 대리)

제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해외건설 수출의 지원 필요성이 다시 대두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은은 1985년 1월에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해외건설업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은은 이 지침을 제정한 후 1995년 2월까지 모두 7차에 걸쳐 개정하면서 대출대상 및 대출조건을 완화해 왔으나, 수은 융자조건에 부합하는 수익성이 양호한 공사의 수주가 어려워 융자신청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1995년 10월 제8차 개정시에는 건설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우리 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제공전금융의 대출범위를 종전에는 융자대상 계약금액의 90% 범위내에서 국내소요자금만 지원하던 것을 예외적으로 융자대상 계약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국내외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수입자를 차주로 하는 구매자신용 방식의 거래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였다.

(2) 지원실적

기술제공자금은 수은 업무 개시 이후 1995년 말까지 총 10건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9건은 1977~1982년의 기간 중에 지원되었고 나머지 1건은 1995년 중에 지원되었다.

1977~1982년의 기간 중 지원된 9건은 建設工事(2건), 船舶改造(3건), 航空測量 및 地圖製作(4건) 등이며, 1995년에 지원된 건은 독일의 브라운관 공장 건설공사였다.

기술제공자금의 지원실적은 여타 자금의 지원실적에 비해 극히 미미한데, 이는 군

기술제공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달러)

승인연	국가	사업명	승인금액
1977. 3	기타	백화점 건설	2,212
1977. 5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측량 및 지도제작	2,494
1977. 7	수단	영빈관 건설	12,800
1977. 11	노르웨이	선박 개조	2,386
1978. 1	이탈리아	선박 개조	3,080
1978. 3	노르웨이	선박 개조	2,430
1978. 8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측량 및 지도제작	1,653
1980. 9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측량 및 지도제작	349
1982. 6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측량 및 지도제작	1,542
1995. 4	독일	브라운관 공장 건설	8,893

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만큼의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직접대출

(1) 제도의 발전

개관



최초의 직접대출 지원선박인 액체화합물 운반선

수은이 直接貸出을 취급하게 된 것은 1978년 8월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가 외국의 한국산 자본재 구매자에 대해 수은이 직접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선진국 수출신용기관의 유사제도를 조사·연구하는 한편 직원 파견교육 등을 실시한 후, 1979년 8월 이 제도 운영의 골격이 되는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 基本運營規程'을 제정한 데 이어 그 해 9월에는 취급규정을, 11월에는 표준융자협정서 양식을 제정함으로써 지원제도를 갖추었다. 이후 기본운영규정은 수출자금대출의 대출조건 및 절차 등이 변경될 때 그에 준하여 개정되어 왔다.

다만 대출이율에 있어서는 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당시 연 8.5% 이상에서 수출자금 대출 인도후금융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1982년 3월 이 규정의 2차 개정시 수출자금 인도후금융 대출이율 이상에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1984년 11월의 7차 개정시 수출자금 대출이율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실행이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대출의 實行利率은 기본운영규정의 제정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수출자금 인도후 대출이율과 국제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는데, 통상 수출자금 인도후금융 대출이율보다 0.5% 높게 책정되어 차주에게 약간 불리하였으나 1985년 8월 규정의 9차 개정 이후 수출자금 대출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해오고 있다.

1991년 6월에는 업무방법서상의 선수금률, 융자비율, 상환기간 등 수출자금대출의 대출조건이 OECD 가이드라인의 규정내용에 맞추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기본운영규정의 제12차 개정을 통하여 직접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조건을 업무방법서의 개정취지에 맞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선수금률이 선박의 경우 20%, 선박을

제외한 여타 품목의 경우 15%로 각각 변경되었고, 상환기간도 10년 이내에서 OECD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한 '적정한 기간 이내'로 변경되었다. 이어 제13차 개정에서는 기본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선수금, 용자비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의 대출조건을 업무방법서의 수출자금대출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방법서가 개정되는 경우 본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업무방법서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3년 9월의 제14차 개정에서는 기술용역 수출을 용자대상 거래에 추가시킴으로써 당시 산업설비 수출과 함께 점증하고 있던 기술용역 수출을 경쟁력있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채권보전의 요건도 완화하여 직접대출의 차주가 당행이 인정하는 지급보증기관 수준의 신용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도 직접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購買者信用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였다.

융자협정서의 간소화

標準融資協定書는 1979년 제정 당시부터 거래형태별 특성 등이 감안되지 않은 汎用形式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까지는 직접대출의 지원실적이 거의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해 그동안의 국제금융 관행이나 거래형태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연불거래형태가 다양해지고 직접대출도 늘어남에 따라 표준융자협정서 문안을 국제관행에 맞추어 대폭 간소화하였는데, 산업설비의 경우는 1993년에, 선박의 경우는 1995년에 표준융자협정서가 각각 개정되었다.

(2) 지원실적

수은이 직접대출제도를 도입한 후 1995년 말까지 취급한 대출승인 건수는 모두 40건이며, 대출승인액은 총 21억 5,200만달러로서 수은 총 대출승인액의 약 7.6%, 수출지원금융 승인액의 9.0%를 각각 기록하였다.

제도 도입 이래 1983년까지는 수출자의 재무구조 개선 및 수입자의 세제상의 혜택 등의 유인과 개도국 정부기관의 정부발주사업 증가 등을 배경으로 직접대출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직접대출 지원현황 (1979~1995년)

(단위 : 백만달러, 건)

	1979	1980	1981	1982	1983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계약액	144	3	42	145	193	73	757	1,052	403	265	66	20	3,143
승인액	81	2	23	81	113	50	515	716	274	225	55	17	2,152
건수	6	2	2	3	4	1	7	7	2	4	2	1	40
〈선박〉	(6)	(0)	(1)	(3)	(3)	(1)	(8)	(7)	(2)	(0)	(1)	(0)	(32)
〈산업설비〉	(0)	(0)	(1)	(1)	(1)	(0)	(0)	(0)	(0)	(4)	(1)	(1)	(9)

그러나 직접대출 지원실적은 1984년 이후 5년여 동안 전무하였는데, 이는 이 기간 중 세계 조선경기가 장기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데다가 이 제도가 일부 경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출당사자들이 직접대출 이용을 기피한 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과 1991년에는 선박을 중심으로 직접대출 지원이 활발해졌는데, 이는 당시 대기업을 위한 편중여신 해소 및 수출자의 재무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직접대출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정책적인 유도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1992년 이후에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유망 개도국의 공공채무에 대한 산업설비 수출을 중심으로 직접대출이 다소 활기를 띠어 왔으나, 1995년에 들어서는 이들 국가의 공공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국제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연불금융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직접대출은 연중 1건이 승인되는 데 그쳤다.

라. 전대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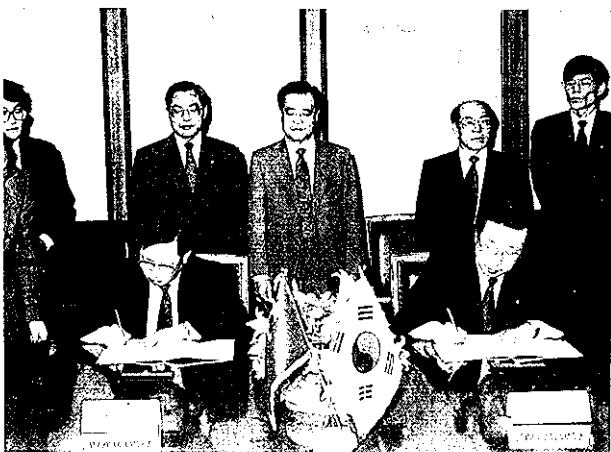
(1) 제도의 발전

지원적격 국가 및 차주 요건

1978년 4월과 6월에 '外國 金融機關에 대한 轉貸借款 取扱 規程'과 '외국 금융기관 앞 전대차관 취급에 대한 基本運營方

(위) 인도 ONGC 앞 직접대출 융자협정 체결 (1983. 1)

(아래) 중국은행 앞 직접대출 융자협정 체결 (1993. 12)



針'이 제정되어 전대자금(당시에는 전대차관)이 본격 취급되었을 당시에는 지원적격 국가로 OECD 회원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차주는 신용있는 금융기관으로 포괄 규정되었다.

1978년 12월에는 OECD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 수준에 있는 국가가 지원적격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1981년 11월에는 종전의 '대상국의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던 차주의 범위가 '대상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어 선진국 금융기관의 지점 등이 포함되었다.

1984년 1월 수은 융자 우선지원지침이 제정되면서 대상적격 국가는 '국별신용도 평가기준 C급 이상인 국가와 D급 국가의 경우에는 국제수지 및 외채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적격 차주는 '이들 국가에 소재하는 수위 또는 상위급 은행으로서 순자산이 1,000만달러 이상인 은행'으로 그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이후 D급 국가 중 적격 국가의 기준은 1990년 7월에 'GDP 규모가 30억달러 이상인 국가로서 국별신용도 평가표의 대외거래 항목 및 정치사회 항목이 E급이 아닌 국가'로 바뀌어 오늘에 오르고 있으며, 적격 차주의 요건은 1994년 2월에 純資産 기준이 현재와 같은 2,0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수은은 1978년 제도 도입시부터 國家別 여신한도는 1,000만달러, 借主別 여신한도는 차주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500만달러로 설정하여 국별 및 차주별 익스포저를 관리하였다.

국가별 여신한도는 1990년 7월에 폐지되었고, 차주별 여신한도는 1980년 2월에 300만달러로 하향 조정되었다가 1990년 7월에 다시 1,000만달러로 인상된 후 1993년 11월에 폐지되었다.

Banco Israelita de Chile와의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



중국공상은행과 1,000만달러의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 (1993. 12)



지원대상 품목 및 대출재원

전대자금대출의 지원대상 품목은 1978년 업무취급 시작 당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0년 2월 수출자금대출의 지원대상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출재원은 업무 개시 이후 1985년까지는 주로 한국은행의 보유외화 차입금이었으나, 1986년부터 수은 자체조달 자금으로 바뀌었다.

주요 대출조건

· 대출기간

1978년 6월 전대자금 취급 개시 당시의 대출기간은 1년 초과 3년 이내였으나 같은 해 12월에 5년 이내로 늘어났으며, 1980년 2월에는 2~5년에서 품목별 및 수출계약금액별(100만달러 기준)로 차등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이후 1989년 4월에는 수출계약금액별 차등은 폐지하고 대상품목별로 수출자금대출의 경우와 같은 최장 상환기간만을 명시하도록 하였다가, 1990년에는 다시 수출가격이 100만달러 이상인 단일품목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원리금 최장 상환기간을 정하고 100만달러 미만인 단일품목 거래와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품목을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별로 원리금 최장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전대자금의 대출기간은 1995년 3월 산업설비 및 자본재의 경우는 최장 10년 이내, 기타의 경우는 최장 5년 이내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대출이율 및 전대이율

수은이 轉貸銀行에 개별 수출거래를 승인할 때 적용하는 대출이율은 1978년 업무 개시 당시에는 연 7~9%에서, 1980년 2월~1981년 11월까지는 연 9% 이상에서, 그리고 1981년 11월~1985년 8월까지는 연 10% 이상에서 각각 수출거래 승인시 결정되었다.

이후 1985년 9월~1990년 6월까지는 수출자금대출의 연불금율 적용이율로 바뀌었다가, 1990년 7월에는 수출자금대출의 연불금율 금리에서 금액별로 0.5~1.5% 포인트를 차감한 이율로 변경되었다. 대출이율은 이후 1994년 3월에 다시 수출자금대출의 연불금율 이율, 즉 OECD 가이드라인상의 CIR로 바뀌었으며, 1996년 4월에는 차주의 선택에 따라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도 가능해졌다.

211

전대자금 여신한도 설정 현황 (1995년 말 현재)

(단위 : 달러)

차 주 국	차 주 은행	여신한도
태국	Thai Farmers Bank	10,000
	Slam City Bank	10,000
말레이시아	Bank Industri Malaysia Berhad	10,000
스리랑카	National Development Bank	5,000
베트남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10,000
	Firstvina Bank	10,000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of Vietnam	10,000
중국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10,000
	Bank of China	50,000
	Bank of Communications	20,000
멕시코	Banamex	2,000
	Bancomer	10,000
	Nacional Financiera	10,000
	Banca Creml	3,000
	Banco Mexicano	5,000
브라질	Banco Frances e Brasileiro S.A.	35,000
	Banco do Estado de Sao Paulo	5,000
	Banco Nacional	5,000
	Banco de Credito Nacional S.A.	10,000
	Banco Bamerindus do Brasil	5,000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	50,000
콜롬비아	Banco Cafetero	5,000
	Banco Popular	5,000
아르헨티나	Banco Almagro Coop. Ltda.	3,000
트리니다드토바고	The Royal Bank of T & T	3,000
헝가리	Hungarian Foreign Trade Bank	10,000
	MHB-Daewoo Bank	5,000
루마니아	Banco Romana de Comer Exterior	5,000
포르투갈	Banco Nacional Ultramarino	5,000
남아프리카공화국	Nedcor Bank Ltd.	5,000
	First National Bank of South Africa	10,000
	ABSA Bank	10,000
합 계	19개국 32개 은행	351,000

주 : 베트남의 Vietcombank 와 여신한도 1,000만달러 설정을 위한 전대자금 용자협정서 계약이 체결되었음.

기간별 자금집행 실적

자금집행액은 1979~1990년 중에는 총 107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공급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15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연간 자금집행액은 100억원을 상회하였다.

자금집행 내용을 기간별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9~1990년

1979년 중 최초로 칠레의 Banco Israelita de Chile에게 국내 기업의 자동차 수출 거래 지원을 위한 대출을 집행함으로써 중남미 지역에 대한 신시장 개척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0~1981년 중에는 자유중국의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에게 대출을 집행하여 자유중국에 대한 냉연관 등의 철강재 수출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최대 철강재 수출시장인 미국이 철강재 수입을 규제함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 대두에 부응한 것이었다. 자메이카 중앙은행인 Bank of Jamaica에게는 국내 기업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카리브 지역에서의 수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집트의 한·러·이집트 합작은행인 Cairo Far East Bank에게는 국내 기업의 자동차 수출거래 지원을 위한 대출을 집행하여 한·이집트 경제협력의 창구로 활용하고 중동 지역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 아이티의 Banque de la Republique d'Haiti, 수리남의 중앙은행인 Centrale Bank van Suriname에도 대출을 집행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건설장비 등 기계류 수출의 증대에 기여하였다.

· 1991~1992년

1979~1990년까지 칠레의 Banco de Chile, 페루의 Corporacion Financiera de Desarrollo S.A., 멕시코의 Bancomext, Banamex, 중미 5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中美經濟統合銀行(CABEI) 등 중남미 지역 금융기관과의 신규 여신한도 설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1991~1992년 중에는 이들 국가에 대한 인쇄기, 편직기, 염색기 등 기계류, 컬러 TV 및 그 부품, 승용차, 트럭 등의 수출 지원이 활성화되었다. 1991년 중에는 동구권 국가 중 처음으로 헝가리에 대한 컬러 TV 및 그 부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



Bank of Jamaica(자메이카 중앙은행)와의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 (1979. 2. 9)

하여 헝가리의 Hungarian Foreign Trade Bank에게 대출을 집행하였다.

한편 1991~1992년 중에는 구소련에 대한 국내 20여개 업체의 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일상생활용품 등 41개 품목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소련대외경제은행(VEB)에 대해 3,611억원을 대출집행하였다.

· 1993~1995년

이 기간 중에는 주로 중남미 지역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집행이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Bancomext, Bancomer, 브라질의 Banco Frances e Brasileiro, CABEL, 아르헨티나의 Banco Almagro Coop.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폴리에틸렌 발포제 제조기, 굴삭기, 섬유기계, 사출성형기 등 기계류, 전자레인지, 컬러 TV, VCR 부품 등 전기·전자제품, 승용차, 통신설비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거래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 동남아 지역 국가 중에는 인도네시아의 Bank Bumi Daya, 태국의 Thai Farmers Bank를 통하여 접착제 공장용 설비, 염색 및 나염공장용 설비, 랜턴 제조 설비 등 주로 생산설비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동구권 국가인 헝가리에 대해서는 (주) 대우의 현지 합작은행인 MHB-Daewoo Bank를 통하여 승용차, 전기·전자제품, 굴삭기 수출을 지원하였다.

1995년에는 중국의 Bank of China, 베트남의 Vietcombank,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of Vietnam에 대해 국내 기업의 망간건전지 제조기, 신발 제조설비, 건설장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집행함으로써 이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장 개척을 지원하였다.

(3) 구소련에 대한 소비재차관 공여

추진 경위

우리나라와 구소련(러시아)은 1990년 9월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한 이후 1991년 1월의 한·소 정부대표단 회의에서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교역,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수은 消費財借款 15억달러와 延拂輸出資金 5억달러를 3년에 걸쳐 제공하고,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차관단이 현금차관 10억달러를 제공기로 한·소 정부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수은은 소련대외경제은행(VEB)과 1991년 4월 16일에 1차연도 소비재차관 8억달러의 공여를 위한 대소

소련대외경제은행과의 소비재차관 8억달러
공여계약 체결 (1991. 4. 16)



소비재차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1년 6월 1일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차관계약서가 발효되었다.

대출집행

개별용자는 1991년 8월 27일 최초로 6건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1991년 12월 28일 승인이 중단될 때까지 총 107건, 4억 7,300만 달러의 개별대출이 승인되었다. 이 승인액은 1991년 12월 2일~1992년 11월 9일의 기간 중 총 1,167건, 4억 6,600만달러가 대출집행되었으며, 700만달러는 국내 수출자 선적계획 차질 및 인출기한(승인 후 1년) 종료 등에 따른 미선적, 승인액과 L/C 발행액과의 차액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집행되었다.

한편 소비재차관 계약서상 주요 조건을 보면, 대출원금 상환은 개별용자건별 대출취급일로부터 약 2년(720일)째 전액 일시상환, 이자는 6개월물 Libor+1.375% p.a.로 산정하여 6개월마다 후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출원리금 회수현황

이 소비재차관은 1992년 6월부터 이자상환 기일이 도래하고 1993년 11월부터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였으나, 1992년 11월에 1,300만달러, 1993년 2월에 600만달러가 상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체되었다.

이와 같이 1992년부터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어 오던 중 1995년 7월 10일에는 1993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債務再調整(rescheduling)하기 위한 한·러 정부간 협정 및 수은과 소련대외경제은행과의 은행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들이 체결됨에 따라 소련대외경제은행에 공여한 소비재차관 중 1993년 말까지 기일도래한 연체원리금 2억 8,300만달러와 이에 대한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이자 4,300만달러를 原資材, 헬기, 防産物資 등의 현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에 걸쳐 분할상환받기로 하였다.

(4) 기타 채무재조정 사례

수은이 여신한도를 설정하여 대출집행한 전대은행들 중에서 소련대외경제은행 외

에도 Bank of Jamaica, Centrale Bank van Suriname에 대해서 元利金 延滞에 따른 채무재조정(rescheduling) 조치를 취한 바 있다.

Bank of Jamaica는 1985년 8월에 제4차 수정융자협정서를 체결하여 연체원금 200만달러를 基準元金化하여 원계약서상 최종상환일인 1985년 3월부터 1991년 9월까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6.5년간 매년 3월과 9월에 균등 분할상환하도록 채무재조정을 하여 전액 상환받았다. Centrale Bank van Suriname과는 연체원금과 상환기일 미도래원금의 합계금액인 200만달러를 기준원금화하여 1995년 9월~1997년 8월까지 매월 말에 일정금액을 24회에 걸쳐 분할상환받는 조건으로 1995년 8월에 Supplemental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마. 해외투자자금대출

(1) 제도의 발전

우리나라 해외투자정책의 변천

수은의 해외투자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정책 변천에 맞추어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정책 또는 제도의 변천은 크게 도입단계(1968~1974년), 기반조성단계(1975~1979년), 장려단계(1980~1985년), 발전단계(1986~1990년) 및 활성화단계(1991~1995년) 등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導入段階는 해외투자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1968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로, 이 기간에는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당시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상태 등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투자사업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基盤造成段階에 들어서면서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더불어 무역업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운수업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해외투자와 관련된 각종 허가 및 사후관리 지침들이 제정되어 해외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다져졌는데, 그 기준은 예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의 獎勵段階에 들어서면서 국제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제도는 엄격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자

이후 1995년 10월에는 투자제한 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투자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최소 자기자금 조달비율을 설정·운용함으로써 해외투자가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지원대상 조건 및 범위

우선 수은법 시행령 제정시(1969. 10. 6)부터 수은 설립 이전인 1975년 2월까지 수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투자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국내 필수 원자재의 확보에 기여하는 투자와, 투자에 의한 추가 수출이윤 또는 기타의 외화수취액이 투자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총액에 달하고 그 후에도 계속 국제수지에 도움이 되리라고 인정되는 투자로 한정되어, 당시의 극히 제한적인 해외투자정책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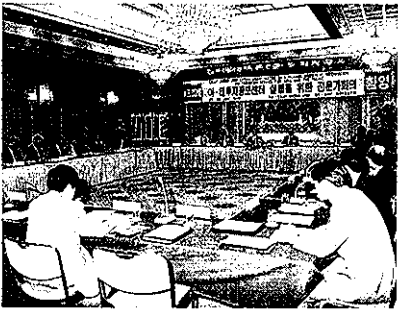
[illegible]

제2절 금융지원기능의 확충 217

1975년 3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이러한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의 확보에 기여하는 투자, 외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투자, 해외 교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 기타 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투자 등이 수은의 해외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89년 1월부터는 위와 같은 구체적 요건 대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투자'로 포괄 규정하고, 다만 업무방법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외 대상 투자를 지정하여 개인의 해외투자, 금융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간접투자, 금융업·보험업·오락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정부는 그간 구체적인 지원 또는 제한대상 사업이나 업종의 관리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며, 수은은 정부가 정한 정책 및 지침에 맞추어 해외투자를 지원해 왔다. 현재 수은은 정부가 정한 '海外直接投資指針' 상의 제한사업을 제외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制限事業은 크게 ① 중요 기술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 ② 생산제품의 역수입 등으로 국내 관련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③ 특정 지역 및 업종에서 과당경쟁이 초래될 수 있는 일부 특정 사업 ④ 대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투자사업 ⑤ 제한이 필요한 부동산 관련 사업 ⑥ 기타 해외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등이다.



아·태 투자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1992. 6. 23~25)

· 대출비율

수은 설립 당시 소요자금의 70%이던 해외투자자금의 융자비율은 1977년 1월 80%로 인상되었다가 1980년 7월 제27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 다시 70%로 인하되었다. 수출자금의 융자비율 인하에 이어 1983년 3월 제33차 업무방법서 개정시에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비율이 다시 80%로 인상되었는데, 이 중소기업 우대비율은 당시에는 대개도국 투자에만 적용되었으나 1984년 3월에는 모든 국가에 대한 투자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 70%, 중소기업 80%로 차등화된 융자비율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국내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해외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1988년 3월에 대기업 80%, 중소기업 90%로 각각 인상되었다.

이후 1994년 4월에는 대기업에 대한 융자비율을 중소기업과 같은 소요자금의 90%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수행할 경우 융자비율이 총

소요자금의 80%에 불과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 대출이율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기반조성단계 및 장려단계에 해당되는 수은 설립 이후 1984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투자자금의 貸出利率은 기본적으로 수출자금의 대출이율에 준하여 책정·운용되어 왔다. 이 기간 중에는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 확보 사업에 대한 대출이율이 여타 사업에 대한 대출이율보다 낮게 정해졌는데, 이러한 우대금리 지원정책은 1989년 3월 초까지 유지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수은은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984년 1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율을 대기업이나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 확보사업에 대한 대출이율보다 유리하게 책정하였다. 대출이율은 이 때부터 1989년 2월까지 중소기업,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 확보사업, 기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책정·운용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는 금리수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볼 때 연 10%에서 연 7%로 계속 인하되어 왔다.

이어 1989년 3월에는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의 확보사업에 대한 대출이율과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율을 단일화함으로써, 대출이율의 구분이 중소기업과 기타의 두 가지로 단순화되었다. 이러한 기업규모 및 사업별 구분에 따른 差等利率 시스템은 1992년 12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중의 금리수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율로 볼 때 대략 연 7~8%선이었다.

한편 1993년 1월에는 종전의 固定金利에 대하여 變動金利貸出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차주가 변동금리부 대출을 신청하여 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어 차등이율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이율 적용은 1994년 4월 이후 폐지되고, 대신 담보의 유무 및 성격에 따라 차등이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이 때부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역전현상을 피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의 이율을 CIRR에 연동시켰다.

이후 1995년 3월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가산율을 담보 여하에 관계없이 단일 구간대로 운용하도록 조정하여, 현재 대출이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CIRR ~

CIRR + 1.0%, 변동금리의 경우 Libor + 0.50~1.25%이다.

· 대출기간

수은 설립 당시의 해외투자자금 대출기간은 10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1977년 5월 제17차 업무방법서 개정으로 100만달러 초과시에는 10년, 그 이하는 7년으로 소요자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다. 그러나 1988년 3월 제43차 업무방법서 개정으로 대출기간이 소요자금의 총액에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단일화되었다. 융자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예외취급 승인권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를 거쳐 1991년 6월 이후 은행장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용대출의 취급

1994년 3월 해외투자 활성화조치의 일환으로 우량기업에 대하여 해외투자 관련 대출을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信用貸出 取扱規程'을 제정하였다. 적격 우량기업 즉 자체신용으로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이 가능한 기업이 그 대상이 되,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과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이 AA 이상인 기업(중소기업은 A 이상)의 경우 신용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용도가 우량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량기업이 연대보증할 경우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1988년 12월 대출취급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 해외투자자금대출 취급지침을 제정, 100만달러 이하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집행 방식의 간소화를 위하여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 자금집행계획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9년 2월에는 해외투자자금 지원지침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推定財務計劃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수은의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출심사 업무의 신속·효율적인 처리와 징구서류의 간소화가 긴요해짐에 따라, 1990년 11월에는 해외투자자금 지원지침에 정부의 해외투자자금 지원기준과 대규모 및 자기자본 초과사업 심사강화,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별심사에 관한 기준, 외국환관리규정 제15-2조(해

海外투자 자금지원 시행		輸銀、우량기업에 信用대출	
1. 지원대상	1. 우량기업	2. 신용등급	2. 신용등급
2. 지원규모	2. 100만달러 이하	3. 지원기간	3. 10년 이내
3. 지원금리	3. CIRR + 1.0%	4. 지원방식	4.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4. 지원절차	4. 운영위원회 승인	5. 지원서류	5. 자금집행계획서 면제
5. 지원대상	5. 중소기업	6. 지원대상	6. 선별심사 대상
6. 지원금리	6. 변동금리	7. 지원방식	7.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면제
7. 지원기간	7. 10년 이내	8. 지원서류	8. 推定財務計劃 자료 면제
8. 지원방식	8.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9. 지원대상	9. 선별심사 대상
9. 지원서류	9.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10. 지원대상	10. 선별심사 대상
10. 지원대상	10. 선별심사 대상	11. 지원금리	11. 변동금리
11. 지원방식	11.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12. 지원대상	12. 선별심사 대상
12. 지원서류	12.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13. 지원방식	13.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13. 지원대상	13. 선별심사 대상	14. 지원금리	14. 변동금리
14. 지원기간	14. 10년 이내	15. 지원방식	15.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5. 지원서류	15.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16. 지원대상	16. 선별심사 대상
16. 지원대상	16. 선별심사 대상	17. 지원금리	17. 변동금리
17. 지원방식	17.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18. 지원대상	18. 선별심사 대상
18. 지원서류	18.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19. 지원방식	19.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19. 지원대상	19. 선별심사 대상	20. 지원금리	20. 변동금리
20. 지원기간	20. 10년 이내	21. 지원방식	21.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1. 지원서류	21.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22. 지원대상	22. 선별심사 대상
22. 지원대상	22. 선별심사 대상	23. 지원금리	23. 변동금리
23. 지원방식	23.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24. 지원대상	24. 선별심사 대상
24. 지원서류	24.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25. 지원방식	25.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25. 지원대상	25. 선별심사 대상	26. 지원금리	26. 변동금리
26. 지원기간	26. 10년 이내	27. 지원방식	27.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7. 지원서류	27.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28. 지원대상	28. 선별심사 대상
28. 지원대상	28. 선별심사 대상	29. 지원금리	29. 변동금리
29. 지원방식	29.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30. 지원대상	30. 선별심사 대상
30. 지원서류	30.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31. 지원방식	31.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31. 지원대상	31. 선별심사 대상	32. 지원금리	32. 변동금리
32. 지원기간	32. 10년 이내	33. 지원방식	33.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33. 지원서류	33.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34. 지원대상	34. 선별심사 대상
34. 지원대상	34. 선별심사 대상	35. 지원금리	35. 변동금리
35. 지원방식	35.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36. 지원대상	36. 선별심사 대상
36. 지원서류	36.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37. 지원방식	37.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37. 지원대상	37. 선별심사 대상	38. 지원금리	38. 변동금리
38. 지원기간	38. 10년 이내	39. 지원방식	39.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39. 지원서류	39.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40. 지원대상	40. 선별심사 대상
40. 지원대상	40. 선별심사 대상	41. 지원금리	41. 변동금리
41. 지원방식	41.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42. 지원대상	42. 선별심사 대상
42. 지원서류	42.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43. 지원방식	43.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43. 지원대상	43. 선별심사 대상	44. 지원금리	44. 변동금리
44. 지원기간	44. 10년 이내	45. 지원방식	45.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45. 지원서류	45.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46. 지원대상	46. 선별심사 대상
46. 지원대상	46. 선별심사 대상	47. 지원금리	47. 변동금리
47. 지원방식	47.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48. 지원대상	48. 선별심사 대상
48. 지원서류	48.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49. 지원방식	49.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49. 지원대상	49. 선별심사 대상	50. 지원금리	50. 변동금리
50. 지원기간	50. 10년 이내	51. 지원방식	51.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51. 지원서류	51.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52. 지원대상	52. 선별심사 대상
52. 지원대상	52. 선별심사 대상	53. 지원금리	53. 변동금리
53. 지원방식	53.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54. 지원대상	54. 선별심사 대상
54. 지원서류	54.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55. 지원방식	55.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55. 지원대상	55. 선별심사 대상	56. 지원금리	56. 변동금리
56. 지원기간	56. 10년 이내	57. 지원방식	57.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57. 지원서류	57.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58. 지원대상	58. 선별심사 대상
58. 지원대상	58. 선별심사 대상	59. 지원금리	59. 변동금리
59. 지원방식	59.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60. 지원대상	60. 선별심사 대상
60. 지원서류	60.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61. 지원방식	61.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61. 지원대상	61. 선별심사 대상	62. 지원금리	62. 변동금리
62. 지원기간	62. 10년 이내	63. 지원방식	63.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63. 지원서류	63.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64. 지원대상	64. 선별심사 대상
64. 지원대상	64. 선별심사 대상	65. 지원금리	65. 변동금리
65. 지원방식	65.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66. 지원대상	66. 선별심사 대상
66. 지원서류	66.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67. 지원방식	67.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67. 지원대상	67. 선별심사 대상	68. 지원금리	68. 변동금리
68. 지원기간	68. 10년 이내	69. 지원방식	69.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69. 지원서류	69.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70. 지원대상	70. 선별심사 대상
70. 지원대상	70. 선별심사 대상	71. 지원금리	71. 변동금리
71. 지원방식	71.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72. 지원대상	72. 선별심사 대상
72. 지원서류	72.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73. 지원방식	73.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73. 지원대상	73. 선별심사 대상	74. 지원금리	74. 변동금리
74. 지원기간	74. 10년 이내	75. 지원방식	75.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75. 지원서류	75.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76. 지원대상	76. 선별심사 대상
76. 지원대상	76. 선별심사 대상	77. 지원금리	77. 변동금리
77. 지원방식	77.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78. 지원대상	78. 선별심사 대상
78. 지원서류	78.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79. 지원방식	79.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79. 지원대상	79. 선별심사 대상	80. 지원금리	80. 변동금리
80. 지원기간	80. 10년 이내	81. 지원방식	81.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81. 지원서류	81.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82. 지원대상	82. 선별심사 대상
82. 지원대상	82. 선별심사 대상	83. 지원금리	83. 변동금리
83. 지원방식	83.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84. 지원대상	84. 선별심사 대상
84. 지원서류	84.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85. 지원방식	85.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85. 지원대상	85. 선별심사 대상	86. 지원금리	86. 변동금리
86. 지원기간	86. 10년 이내	87. 지원방식	87.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87. 지원서류	87.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88. 지원대상	88. 선별심사 대상
88. 지원대상	88. 선별심사 대상	89. 지원금리	89. 변동금리
89. 지원방식	89.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90. 지원대상	90. 선별심사 대상
90. 지원서류	90.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91. 지원방식	91.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91. 지원대상	91. 선별심사 대상	92. 지원금리	92. 변동금리
92. 지원기간	92. 10년 이내	93. 지원방식	93.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93. 지원서류	93.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94. 지원대상	94. 선별심사 대상
94. 지원대상	94. 선별심사 대상	95. 지원금리	95. 변동금리
95. 지원방식	95.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96. 지원대상	96. 선별심사 대상
96. 지원서류	96. 推定財務計劃 자료 제출	97. 지원방식	97.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97. 지원대상	97. 선별심사 대상	98. 지원금리	98. 변동금리
98. 지원기간	98. 10년 이내	99. 지원방식	99. 현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99. 지원서류	99.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100. 지원대상	100. 선별심사 대상

해외투자자에 대한 신용대출제도 도입 관련기사
(제일경제, 1994. 4. 1)

외투자의 방법) 및 제15-4조(해외투자업종)와 업무방법서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투자규정 등을 총괄적으로 반영·일원화함으로써 대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1993년 6월에는 심사대상 및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여, 원칙적으로 투자진출 업종에 기술능력·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 의뢰를 생략하고, 계약서의 법적심사 의뢰도 수은의 표준계약서 또는 이미 법적심사를 받은 다른 계약서에 비하여 그 내용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저당권, 질권 등에 의하여 채권이 보전되는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한편 여신위원회 심의대상 거래로서 L/I 발급 또는 예비승인시 이사회에 부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거래는 여신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여신위원회의 위원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실무부서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임원의 중복심의를 피하도록 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그 절차 및 기능을 개선하였다. 특히 해외투자자금의 대출대상자 제한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2년 이상 투자업종에서의 생산 또는 판매의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 경험을 갖춘 국내의 기업과 합작 또는 공동투자하는 경우로 그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當該事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 사실상 그 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수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때 거래 초기단계에 수은 지원조건에 알맞은 거래를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수은의 자금조달계획 등에 참고하기 위한 '事前協議制度'를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대출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보완적 지원수단의 구축

· 신용보증제도의 활용

1984년 10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의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취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은은 1985년 5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우대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은의 해외투자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의 信用保證書로 담보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체결 당시 대출금의 80%이던 최고 보증한도는 1988년 4월 9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 다시 100%로 조정되었다. 한편 1990년 1월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도 수은의 대출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중소기업 해외투자 지원 1,000억원 돌파
자축연 (199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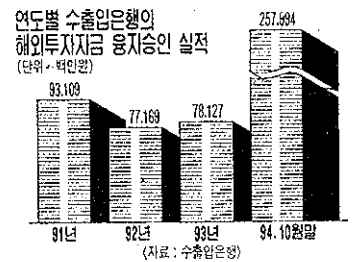


도별 업종별 투자대상국별 해외투자 현황 및
경기도 상세히 알려준다.
이용방법은 하이빔이나 천리안에서 수출
입은행의 해외투자정보시스템항목을 찾아
검색하는데도 편리하지만 하면 된다.

획득 및 시장 확보를 위해 이러한 방식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왔다.

한편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규모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실적은 감소추세로 반전되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국제금리의 하향 안정세로 기업이 해외투자자금을 자체조달하거나 현지에서의 금융조달을 증가시켰고, 다른 국내 외국환은행도 해외투자자금을 취급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었다.

수은은 1994년 이후 해외투자자금의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을 타 금융기관보다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이미 진출한 해외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자체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은의 지원실적은 1994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외투자 지원실적 관련기사
(매일경제, 1994. 12. 26)

업종별 지원실적

수은의 해외투자 지원실적(승인기준)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는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 등 국내 부족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자원개발 부

일본의 자존심 건드린 LUX 인수

1994년은 우리은행의 해외투자금융 업무가 질과 양 모두에서 크게 도약한 한해였다.

그 해 승인한 여러 사업 중 우리나라 기업의 높은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삼성전자의 일본 진출 지원건을 들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경우 상당한 해외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오디오 분야에서는 취약하여,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오디오 브랜드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이 분야에서 세계 7위인 일본의 렉스(LUX)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렉스맨(LUXMAN)이라는 브랜드로 국내 오디오매니아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렉스사는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오디오 브랜드로서, 삼성전자의 인수로 일본인들의 자존심이 매우 상했다고 한다. 렉스사는 음향기술에 있어 세계적인 전문업체이지만 편리성과 다기능성을 강조한 보급형 오디오의 확산과 엔고의 영향 등으로 삼성전

자가 매수할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설비금융이나 선박금융의 규모에 비할 수는 없지만 해외투자자금으로서는 큰 규모인데다 신용대출 조건이라 실사한 작성에 매우 신경이 쓰였다. 더구나 자본잠식된 기업을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는 사업이고 대출이율을 예외취급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통상 국내의 전문 평가기관의 사업타당성 보고가 있었으나 이 건의 경우 인수계약 체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사업타당성 평가없이 주식거래 가격만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계약체결전 인수정부가 유출되면 주식가격의 급등으로 통상 인수에 실패함).

실사의 핵심은 인수가격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나, 술한 고민끝에 '시장가격이 모

든 것을 말한다', 즉 시장의 주식가격이 기업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범한 상식에 충실하기로 하였다.

몇 가지 기업가치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인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를 준비하는 한편 오디오에 관심이 많은 경영진에 대해서는 오디오 전문가인 백성기 차장의 선무작업(?)이 별도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인수 후 주식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현재까지 성공적인 인수사업 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전형적인 M&A 사업 지원이라는 점에서 우리은행의 해외투자금융사에 몇 가지 이정표를 기록할 수 있었다. 모쪼록 렉스사의 성장을 기원해 본다.

(이규훈 / 당시 해외투자금융1부 대리)



해외투자 초기의 석제품제조 사업장 모습

문에 대한 해외투자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고 임금화 추세에 따라 섬유업 등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즉 1979년 5,174만 8,000달러(1건)로 88.9%, 1982년 6,337만 5,000달러(3건)로 99.5%를 차지했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해외투자자금의 지원비중은 1990년에는 2,238만달러(3건)로 10.9%, 1994년에는 90만달러(1건)로 0.2%에 그쳐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1979년 135만 2,000달러(5건)로 2.3%, 1982년 35만달러(1건)로 0.5%에 불과하던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금 지원비중은 1990년에는 1억 6,522만 9,000달러(127건)로 80.8%, 1994년에는 3억 6,404만 3,000달러(159건)로 97.8%를 기록하여 건수와 금액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부문, 식품부문의 투자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원개발사업 투자는 초기에는 산림개발사업과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고, 1980년대 초반에는 호주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유연탄 개발사

업종별 해외투자 지원실적 (1976~1995년)

(단위 : 천달러)

연 도	제조업		자원개발		수산업		기타		합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976							2	17,432	2	17,432
1977			1	980	2	4,000	1	34,239	4	39,219
1978	3	5,787					1	31,184	4	36,971
1979	5	1,352	1	51,748	1	400	1	4,737	8	58,237
1980	2	1,835							2	1,835
1981			1	13,650					1	13,650
1982	1	350	3	63,375					4	63,725
1983	1	130	2	17,360			2	496	5	17,986
1984	3	896	1	7,809					4	8,705
1985	2	2,590							2	2,590
1986	7	3,250							7	3,250
1987	13	5,176							13	5,176
1988	39	42,617	1	360	1	8,400	6	6,660	47	58,037
1989	93	103,852	3	10,140	6	30,710	10	45,135	112	189,837
1990	127	165,229	3	22,380	2	10,780	3	6,160	135	204,549
1991	118	118,183	1	1,800	1	1,000	1	1,400	121	122,383
1992	111	94,591			2	4,000	2	2,790	115	101,381
1993	119	92,520	1	180			6	3,750	126	96,680
1994	159	364,043	1	900	2	1,360	6	5,858	168	372,160
1995	209	547,412	2	3,240	1	160	15	23,738	227	574,550
누계	1,012	1,550,043	21	193,922	18	60,810	53	183,579	1,104	1,988,353

호주의 유연탄광 개발사업



업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 지원실적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자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유럽, 북미,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제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저임 노동력이 풍부한 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별로는 수은 설립 이후 1995년까지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미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업종에 따른 국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섬유부문은 중국 4,907만 4,000달러(67건), 인도네시아 4,488만 8,000달러(43건), 필리핀 1,526만 5,000달러(20건), 파나마 1,218만 7,000달러(16건)을 지원하여 저임노동력이 풍부한 아시아, 중남미에 집중되었다. 전기·전자 부문은 중국 3,827만 3,000달러(45건), 인도네시아



한·일의 대중국 해외투자 세미나 개최

지역별 해외투자 지원실적 (1976~1995년)

(단위: 천달러)

	아 시 아		중 남 미		북 미		대 양 주		유 럽		아 프 리 카		중 동		합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976									1	11,779	1	5,653			2	17,432
1977							1	980	1	34,239	2	4,000			4	39,219
1978	1	94	1	93					1	31,184			1	5,600	4	36,971
1979	3	992	3	760	1	51,748			1	4,737					8	58,237
1980	1	99											1	1,736	2	1,835
1981							1	13,650							1	13,650
1982					2	43,528	2	20,197							4	63,725
1983	1	13,160	1	130			2	4,376			1	320			5	17,986
1984	1	312	1	394	1	394	2	7,999							4	8,705
1985	1	2,100					1	490							2	2,590
1986	2	720	2	500	2	1,050	1	980							7	3,250
1987	5	1,720	4	930	1	210	2	636					1	1,680	13	5,176
1988	21	16,168	12	10,582	9	27,203	2	510	2	2,584	1	990			47	58,037
1989	61	74,705	21	41,070	17	17,917	7	12,435	1	990	1	160	4	42,560	112	189,837
1990	96	115,061	20	42,430	10	28,318	4	6,600	2	2,700			3	9,440	135	204,549
1991	97	98,496	15	10,897	6	9,300	1	3,000	2	690					121	122,383
1992	93	77,903	12	11,890	7	7,560			2	3,738			1	290	115	101,381
1993	107	80,519	7	5,940	10	9,841	1	180	1	200					126	96,680
1994	136	169,840	10	21,803	10	12,581	1	350	6	97,000	1	90	4	70,497	168	372,160
1995	182	452,279	12	31,847	16	19,945	5	2,655	11	66,915			1	900	227	574,550
누계	808	1,104,168	120	179,266	92	229,595	33	75,048	28	256,756	7	11,213	16	132,703	1,104	1,988,353



안데안 5개국 해외투자 세미나 개최 (1991. 9)

1,093만 6,000달러(10건), 말레이시아 1,120만달러(9건), 태국 1,435만 3,000달러(12건), 미국 1,699만 2,000달러(10건)를 지원하였으며, 신발·완구 부문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대한 투자사업에 주로 지원하였다.

자원개발사업 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은 미국 5,174만 8,000달러(1건), 캐나다 4,317만 8,000달러(1건), 호주 3,070만 6,000달러(4건)가 지원되었고, 산림개발은 파푸아뉴기니 투자사업에 1,883만달러(3건)가 지원되었다.

기업규모별 지원실적

기업규모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는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사업이 중심을 이루어 대기업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지원은 1987년까지는 매년 10건 이내였으나, 198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104건, 1994년에는 132건, 그리고 1995년에는 16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1980년대 후반의 국내 고임금 추세와 소위 '3D 業種'에 대한 취업기피에 따른 국내 인력난 가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1995. 10)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깨를 걸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방식은 바람직한 투자모델의 하나로써 적극 권장될 만하다. 우리은행이 1994년 10월에서 1995년 말에 걸쳐 대양신소재 등 3개 중소기업에 대해 266만달러의 해외투자자금을 적극 지원한 것은 바로 이들 투자가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진출의 모범적인 사례였기 때문이었다.

삼성전관을 비롯한 삼성그룹의 3개 대기업은 1990년 말부터 말레이시아에 진출하여 칼라 TV 일괄생산체제를 구축(우리은행은 이중 2개 기업에 대해 5,670만달러의 해외투자자금 지원)한 이후, 대양신소재, 신화물산, 동양전기 등 중소기업 협력업체에게 동반 진출을 권하였

다. 중소 협력업체들은 임금 및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국내에서의 사업 유지가 어려웠던 터라, 대기업의 권고에 따라 현지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들 6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인근 공단 내에 위치하면서 현지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직계열화와 안정적인 부품공급체제를 이룩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과 기업경영의 국제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해외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했던 경험은 늘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선우유민 / 해외투자금융부 책임연구원)

기업규모별 해외투자 지원실적 (1976~1995년)

(단위: 천달러)

	대 기 업		중 소 기 업		합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976	2	17.432			2	17.432
1977	2	35.219	2	4.000	4	39.219
1978	2	36.784	2	187	4	36.971
1979	6	57.917	2	320	8	58.237
1980	2	1.835	-	-	2	1.835
1981	-	-	1	13.650	1	13.650
1982	3	63.375	1	350	4	63.725
1983	3	17.490	2	496	5	17.986
1984	1	7.809	3	896	4	8.705
1985	2	2.590	-	-	2	2.590
1986	3	1.890	4	1.360	7	3.250
1987	5	3.070	8	2.106	13	5.176
1988	15	33.098	32	24.939	47	58.037
1989	32	118.558	82	71.279	114	189.837
1990	47	88.866	94	115.683	141	204.549
1991	18	30.767	104	91.616	122	122.383
1992	22	32.677	95	68.704	117	101.381
1993	13	19.915	113	76.765	126	96.680
1994	37	285.414	132	86.747	169	372.161
1995	61	373.015	167	201.535	228	574.550
누계	276	1,227.721	844	760.633	1,120	1,988.354

등 개발도상국들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그리고 수은의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4년 동안은 건수와 금액면 모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대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능가하였다.

투자규모별 지원실적

수은은 설립 이후 1995년까지 총 1,120건에 19억 8,835만 3,000달러를 지원하여,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80만 1,000달러를 기록하였다.

투자금액 100만달러 미만의 해외투자는 총 지원실적 중 건수면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66.8%)을 차지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1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투자는 건수면에서는 2.4%에 불과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38.5%)을 차지하였다.

해외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1980년대 초반까지의 해외투자 지원은 자원개발

투자규모별 해외투자 지원실적 (1976~1995년 승인금액 기준)

	100만달러 미만	1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	1,000만달러 이상	합계
건 수	737	309	31	27	1,104
비중(%)	66.8	28.0	2.8	2.4	100.0
금액(천달러)	357,927	632,140	232,567	765,689	1,988,353
비중(%)	18.0	31.8	11.7	38.5	100.0

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1) 제도의 발전

외국법인에 대한 事業資金貸出은 1986년 12월 수은법 제3차 개정시 그 취급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으며, 1987년 5월 제41차 업무방법서 개정에서 수은의 신규 업무로 추가되었다. 이 당시에는 수은의 해외투자자금을 지원받아 설립된 外國法人만이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은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1993년 9월 업무방법서 개정시 이 제한문구를 삭제,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1994년에 들어서면서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가시화됨에 따라 그 해 3월 '外國法人에 대한 事業資金貸出 基本運營規程'을 제정, 대출대상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현재 이 자금은 우리나라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범위내에서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영자금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외투자자금과 동일한 이율로 지원되고 있다.

(2) 지원실적

제도가 도입·시행된 1987년 5월부터 1993년 말까지는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은 사실상 지원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4년부터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94년과 1995년의 2년간에 총 22건 4,923만 3,000달러가 승인되었다.

지원실적을 대출금규모별로 보면 총 22건 중 100만~500만달러가 11건, 100만달러 미만이 9건으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건, 중소기업이 17건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주요 대출대상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최근에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집중된 중국에 6건이 지원되는 등 아시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남미가 4건, 대양주가 2건, 유럽이 1건 등이었다.

사. 수입자금대출

(1) 제도의 발전

지원대상 거래 및 품목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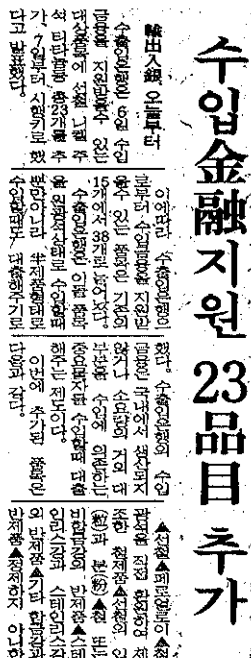
1969년 수은법 제정 당시 수입자금의 지원대상 거래는 '연불수출에 필요한 원료·재료·기자재 중 그 수입이 투기·매점 및 기타 불건전한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물자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입거래'로 한정되었다.

당시 시행령에는 중요 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연불수출 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로서 국내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적기 확보가 곤란한 품목 중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물품'으로 정의되었다.

1974년 12월 수은법 제1차 개정시 중요 물자의 정의가 '해외 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료·재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물자'로 바뀌었고, 이어 1975년 2월 시행령 제1차 개정시 중요 물자가 14개 기초 원자재(광물 11, 임산물 3)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물자로 명시되었다.

1986년 12월 수은법 제3차 개정시에는 지원대상이 종전의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거래에서 현재와 같은 '국민경제상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물자와 자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물자와 주요 자원의 수입거래'로 바뀜으로써 주요 자원이 수입자금의 지원대상에 추가되었다. 이어 1987년 3월의 시행령 개정시 주요 자원, 광물자원, 임산자원, 농업자원, 기타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원 등이 새로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 때 종전까지 중요 물자에 포함되어 있던 원목과 생고무는 주요 자원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중요 물자의 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 물자와 주요 자원의 추가지정 절차는 1988년 12월의 시행령 제3차 개정시 재무부장관 지정에서 수출입은행장 지정으로 간소화되었다.

수입자금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관련 기사 (한국경제, 1994. 4. 7)



제한된 재원으로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하고 물가와 물자수급 안정을 위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상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이 긴요하다는 주무부서 장관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한 '輸入推薦制度'는 1987년 5월부터 운용되어 오다가 1990년 7월에 폐지되었다.

한편 1989년 3월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자원 중 금광을 포함한 33개 광물이 주요자원에 추가로 지정되었다. 이어 1990년 7월에는 尖端技術 産業의 육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첨단 산업용 시설재와 연구용 시설재가 중요 물자에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전력요금의 안정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국민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핵연료가 중요 물자에 추가로 지정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광물자원 중 일부 가공된 형태의 원자재, 반제품 등 23개 품목(HS 72~81류)이 다시 중요 물자로 지정되었다. 한편 1988년 수입자금이 취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지원되던 농업자원 중 소맥, 대두, 옥수수는 1993년 8월 이후 자원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1995년 4월 다시 주요 자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이 재개되었다.

년 6월 이후 오늘까지 9%의 고정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다.

융자기간의 변천

1977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일반 수입거래에 대한 수입자금의 융자기간은 업무방책서에는 2년 이내이되 부득이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988년 3월에 제정된 수입자금 지원지침에서 1년 이내로 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개발수입거래의 경우는 자원의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1987년 5월부터 10년 이내로 적용해 오고 있다.

한편 시설재에 대해서는 1990년 7월부터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固定資産 耐用年數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核燃料의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가공과정과 장기간의 연료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융자기간을 8년 이내로 하였다.

(2) 지원실적

개관

수입자금의 연간 지원실적은 여타 자금의 지원실적이 결과치인 것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미리 정해진 목표에 대한 달성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수은의 수입자금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의 수입에 제한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매년 정부가 수은의 업무계획을 승인할 때 여타 자금에 비해 그 공급규모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취급 첫해인 1988년에 127억원이던 수입자금 지원실적(집행기준)은 1989년에는 775억원으로, 1990년에는 1,20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업무계획상 공급한도(1991~1993년 2,000억원, 1994~1995년 2,200억원)의 9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되었다.

기업규모별 지원실적

1988~1993년 중에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90% 내외를 차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은 10% 내외에 머물렀는데, 이처럼 대기업 지원비중이 높았던 것은 지원대상인 농산 및 임산자원의 수입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이었던 데 기인하였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확대 노력에 맞추어 수은

도 수입자금 지원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비율, 대출이율, 담보 등의 조건을 우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요인에 힘입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1994년에는 19.2%로, 1995년에는 35.3%로 크게 확대되었다.

대상자원별 지원실적

수입자금의 지원대상 자원을 농산자원, 임산자원, 광물자원, 시설재, 핵연료 등으로 구분해 볼 때, 시행 초기인 1988~1990년에는 농산자원이 수입자금 지원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核燃料에 대한 자원이 본격화된 1991년 이후에는 핵연료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농산자원과 임산자원은 지원비중이 1988년 이후 계속 감소되어 오다 1995년에 들어 소폭 증가하였으며, 광물자원의 경우는 지원비중이 1988~1993년에는 등락을 보이다 1994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지원대상이 된 시설재의 경우는 1991~1993년에만 소규모 지원되었다.

핵연료의 경우는 1990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그 지원비중이 수입자금 총 지원액의 71.8%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단일품목 편중지원 해소 등의 차원에서 지원규모를 줄임에 따라 그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수입자금 지원실적 (승인기준)

(단위 : 억원)

연도	합계	기업규모별		자 원 별				
		대기업	중소기업	농산자원	임산자원	광물자원	시설재	핵연료
1988	12,749 (15)	11,135 (11)	1,614 (4)	8,280 (8)	3,329 (4)	1,140 (3)	- (0)	- (0)
1989	77,496 (32)	70,714 (23)	6,782 (9)	47,996 (20)	23,539 (8)	5,961 (4)	- (0)	- (0)
1990	120,141 (54)	97,769 (23)	22,372 (31)	41,577 (19)	18,692 (7)	29,192 (27)	- (0)	31,680 (1)
1991	197,803 (58)	178,854 (29)	18,949 (29)	32,990 (20)	14,358 (8)	35,234 (26)	525 (3)	114,696 (1)
1992	197,894 (41)	177,883 (23)	20,011 (18)	40,872 (16)	14,418 (8)	20,058 (13)	4,957 (3)	117,589 (1)
1993	191,365 (40)	172,383 (19)	18,982 (21)	26,482 (12)	8,978 (6)	17,358 (20)	1,170 (1)	137,377 (1)
1994	214,290 (66)	173,252 (25)	41,038 (41)	17,132 (10)	15,227 (10)	51,823 (45)	- (0)	130,108 (1)
1995	219,802 (96)	142,210 (32)	77,592 (64)	39,592 (31)	25,869 (16)	76,870 (48)	- (0)	77,471 (1)

주 : ()안은 건수임.

아. 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

(1) 제도의 발전

지원대상 및 품목

主要資源開發資金은 1974년 12월 수은법 제1차 개정시 그 취급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수은법상의 지원대상은 '국민경제상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요하는 자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원(즉 주요 자원)의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 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으로 되어 있었으며, 수은법 시행령상 주요 자원은 ① 석탄·철광석·동광석·원유 등 광물자원 ② 원목 등 임산자원 ③ 양곡·원면·원당·생고무 등 농업자원 ④ 기타 운영위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원 등이었다.

이후 지원대상은 수은법의 제2차 및 제3차 개정시 표현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대상품목은 앞서 열거한 4가지 대분류 자원 중 ①~③은 그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④의 기타 지정자원의 경우에는 그 지정절차가 1987년 3월의 시행령 2차 개정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지정'에서 1988년 12월의 3차 개정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출입은행장이 지정' 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었다.

대출조건의 변천

· 대출대상 요건

수은 업무 개시 당시의 수은 업무방법서에서는 주요자원개발자금의 貸出對象要件을 '외국에서의 주요 자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정부의 자원개발계획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자원수급에 관한 의견을 첨부한 추천서 또는 허가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1년 6월의 업무방법서 개정시 정부의 자원개발계획에 의한 지원방침 요건이 삭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대출조건

수은 업무 개시 이후 1981년 4월까지의 운영위원회가 貸出條件을 매 건별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1981년 5월 이후 대출조건이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대출비율은 소요자금 총액의 70%이던 당초 수준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년 이내이던 대출기간은 1991년 6월 업무방법서 개정시 3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도록 바뀌었다. 대출이율은 1981년 5월~11월에는 연 8%, 1981년 11월~1987년 1월에는 연 9%이던 것이 1987년 2월 이후 다시 연 8%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지원실적

수은의 주요자원개발자금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이 그 지원실적의 전부다. 당초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석유자원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1981년 4월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지원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3,851만 8,000달러가 최초 승인되었다.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속지원 방침에 따라 1985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366만 7,000달러가 증액 대출되어, 본건에 대한 수은의 대출승인액은 총 6,218만 5,000달러에 이르렀다.

본건은 수은이 지원한 유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인데, 사업이 당초 전방과 달리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총 대출금 중 일부(733만 6,000달러)가 1984년 12월에 상환되어 대출금 잔액은 1985년 이후 5,484만 9,000달러를 유지해 오고 있다.

자. 보증 및 외국환 업무

(1) 보증업무

수은의 보증업무는 수은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대출업무와 같은 지원수단의 하나로 취급되는 채무보증과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대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대외채무보증으로 대별된다.

債務保證은 업무방법서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이 수은법과 그 시행령 및 업무방법서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취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채무보증은 주로 국내외 금융기관의 협조용자

지원과 관련하여 취급되어 왔는데, 국내 협조융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증은 1979년 11월에,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증은 1981년 2월에 각각 취급이 허용되었다. 1995년 말 현재 채무보증 잔액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협조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전무한 상황이다.

先受金還給保證은 수은의 금융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입금되는 선수금을 환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의 환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며, 契約移履保證은 수출자의 계약이행을 수은이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1977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도입 당시에는 수은의 금융지원을 받는 거래에 한하여 취급하였으나 지금은 수은의 금융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은의 금융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하고 있다. 1995년 말 현재 선수금환급보증 잔액은 총 96건에 4,474억원이며, 계약이행보증 잔액은 총 28건에 1,242억원이다.

한편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외국인이 대출을 취급한 경우 이의 상환이행을 보증하는 對外債務保證은 1981년 2월에 그 취급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도입 이후 취급실적이 없다.

자금보증 잔액 (1995년 말 현재)

(단위 : 억원)

	채무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기타 *	계
잔액	-	1,242	4,474	4	5,720

* 수입화물선취보증 등

(2) 외국환업무

수은은 1976년 10월 5일 당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甲類 外國換銀行 업무취급을 인가받아 외국환, 수출입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취급해 왔다. 수은의 외국환업무는 이후 수은 지원거래에 국한되어 취급토록 정해져 있었으나, 1992년 9월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에서 수은 업무와 관련되거나 수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한 업무로 취급범위가 확대되었다. 외국환업무는 크게 수출자금 지원과 관련된 수출승인, 수출신용장 통지 및 수출환어음 매입(negotiation), 수입자금 지원과 관련된 수입승인, 수입신용장 발행, 수입환어음 결제, 輸入貨物 先取保證書(Letter of Guarantee) 발행, 기타 내국신용장 개설 등의 업무로 나눌 수 있다.

輸出承認(export licence) 업무는 1986년 12월 22일 당시 상공부의 연불수출 허가에 관한 방침에 따라 수은 지원거래에 대한 수출승인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정상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업무, 국내기자재 반출확인 업무 및 제3국 도착도 수입승인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지원과 이에 수반된 허가업무를 일관되게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978년 5월 輸銀內國信用狀 取扱規程을 제정하여,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물자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계약서나 수출신용장에 의거하여 수은 또는 수은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수은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은이 소정 내국신용장의 개설과 그 어음의 매입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輸入承認(import licence)업무는 설립 초기부터 갑류 외국환은행의 자격으로 수은 지원거래에 대한 수입승인 업무를 취급하였으나, 1980년 2월 협조용자취급규정을 제정하고 수출자금 중 원자재 수입을 위한 국외소요자금 해당분은 협조용자기관에서도 취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1986년까지는 수입승인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8년부터 수입자금 업무를 개시하게 됨에 따라 수은이 지원하는 건에 대하여는 수입승인 및 수입신용장 개설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행요강, 수입신용장 취급요강을 개정 및 제정하였으며 1990년 6월부터 수입승인 및 수입신용장 개설업무를 개시하였다.

한편 통관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정부의 貿易業務 自動化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업자, 세관, 은행간에 컴퓨터 통신망에 의해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電子文書 交換方式(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 도입됨에 따라 수은도 이 통신망에 가입하여 EDI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업무 자동화를 위하여 1994년 6월 무역업무 자동화 취급요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수출입 승인 및 그 내용변경의 승인, 수입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 업무를 EDI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第3節

資金調達 및 國際金融 業務의 다양화

1. 資金調達 業務의 변천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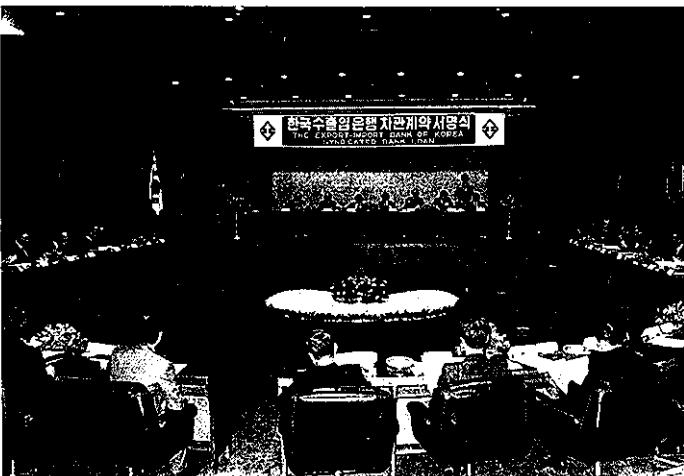
수은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수신업무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자금조달 방법이 수은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 사업연도의 조달규모는 수은 업무계획상의 자금조달 계획에 의하여 재원별로 정해진다. 수은은 수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 차입금,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의 3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수은의 法定資本金은 3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1995년 말 현재 1조원으로 늘어났

다. 수은법 제4조에 의하면 수은에 대한 출자는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은행법 제3조 제1항상의 금융기관, 수출업자 단체 및 국제금융기구가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995년 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6,859억원으로, 정부, 한국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3개 기관에 의해서 납입되었다.

積立金은 수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결산이익금의 20%를 적립하는 법정적립금과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으로 구성되며, 1995년 말 현재 적립금 총액은 3,236억원이다. 수은은 자기자본

최초의 은행차관 도입계약 서명식 (1978. 12. 7)



의 확충 필요성에 의해 설립 이후 1986년까지 매당을 실시하지 않고 이익금 전액을 내부 유보하였으나, 1987년부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기관에 배당하여 왔다.

수은은 수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외국 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은 설립 이래 정부, 한국은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단기 자금을 활발히 차입하여 왔는데, 1995년 말 현재 국내외 차입금 잔액은 2조 6,331억원에 달하고 있다.

수은법 제20조는 국내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은은 1984년 이후 각종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해외에서 거채하여 왔으며, 1995년 말 현재 발행잔액은 1조 5,448억원으로 전체 조달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의존도가 높아졌다.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 금리 逆마진 발생 문제로 인해 발행하지 않다가, 1990년대 초반 구소련에 대한 소비재차관 제공을 위해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총 495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제한적으로 발행하였다.

한편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 수은법 제23조에 차입금과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를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5년 말 현재 차입금과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잔액 합계액은 4조 1,779억원으로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 1조 95억원의 4.1배에 달하고 있다.

설립 후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수은이 조달한 자금규모는 자금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재원구성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수은 지원조건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한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사정상 자본금의 추가납입이 수은 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커질수록 수은의 차입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국내 원화재원의 가용성 제약으로 인해 外貨調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져 왔다.

나. 조달형태의 변천

수은의 자금조달은 설립 첫해에는 출자금과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 등 國內財源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듬해인 1977년도부터는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과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국내 자금조달원으로 새로이 가세하였다.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는 1977년과 1978년에 총 200억원이 장기차입금 형태로 조달되었다.

전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이들 국내재원의 비중은 설립 초기의 3년간 6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79년의 은행차관(bank loan) 도입을 계기로 수은의 해외 자금조달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감소세를 나타내어 1980년대 중반에는 20%를 밑도는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1987년부터 韓國銀行 保有 外貨 수탁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자금조달의 비중은 다시 크게 증대되어 1988년과 1989년에는 조달자금 전액이 국내에서 조달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도 조달자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재원에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다만 이러한 국내 자금조달 비중의 증대는 출자금 내지 재정자금의 증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교적 단기자금인 한국은행 수탁금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국내재원 확충을 통한 장기·안정적 자금조달 기반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1977년의 보유 연불어음(promissory note) 매각으로 시작된 수은의 해외 자금조달은 1979년 2억달러 규모의 은행차관이 처음 도입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77년 17.5%에 불과하였던 해외조달의 비중은 은행차관이 도입된 1979년에 53.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8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수은의 해외차입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외화조달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자금조달에서 두드러진 점으로는 자금조달원 및 조달기법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수은의 해외 자금조달 방식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은행차관 도입 및 보유 연불어음 매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國際債市場에서의 채권 발행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국제채 발행이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제채 발행의 증가와 함께 발행채권의 종류 및 발행시장도 다양해졌는데, 특히 최근에는 차입비용의 절감을 위한 스왑연계채권(swap-related bond)의 발행이 크게 증가해 왔다.

재원별 자금조달 추이

(단위 : 백만원)

	국 내 조 달								한 외 조 달						합 계
	자본금	적립금	재특회계 차입	국특기금 차입	국내 금융기관 차입	외 화 수 출 입 금융채권	한 은 보유외화 수탁	소 계	은행 차관	외 화 수 출 입 금융채권	연방아음 각	전대차관	기타	소 계	
1976	65,355	1,481	-	10,000	-	-	-	76,836 (100.0)	-	-	-	-	-	-	76,836 (100.0)
1977	40,000	2,263	-	30,000	5,000	-	16,732	93,995 (82.5)	-	-	19,873	-	-	19,873 (17.5)	113,868 (100.0)
1978	35,000	6,312	-	29,684	15,000	-	85	86,081 (62.3)	-	-	52,189	-	-	52,189 (37.7)	138,270 (100.0)
1979	4,500	6,499	-	30,000	-	-	964	41,963 (48.4)	48,400	-	-	-	-	48,400 (53.6)	90,363 (100.0)
1980	34,250	19,695	-	30,000	-	-	1,700	85,645 (51.6)	79,188	-	-	1,046	-	80,234 (48.4)	165,879 (100.0)
1981	65,750	468	-	75,000	-	-	1,552	142,770 (31.9)	142,202	-	140,801	22,415	-	305,418 (68.1)	448,188 (100.0)
1982	74,000	1,088	-	100,000	-	-	1,852	176,920 (27.3)	312,998	-	119,574	37,942	-	470,514 (72.7)	647,434 (100.0)
1983	39,000	707	-	175,000	-	-	692	215,399 (31.9)	23,069	-	429,579	8,219	-	460,867 (68.1)	676,266 (100.0)
1984	10,000	1,287	-	100,000	-	-	-	111,287 (14.0)	57,918	41,370	582,969	-	-	682,257 (86.0)	793,544 (100.0)
1985	60,000	19,794	-	80,000	-	-	1,747	161,541 (17.3)	15,439	267,060	487,693	-	-	770,192 (82.7)	931,733 (100.0)
1986	30,000	28,762	-	80,000	-	-	-	138,762 (29.2)	32,557	-	304,082	-	-	336,639 (70.8)	475,401 (100.0)
1987	30,000	14,229	-	90,000	-	-	197,211	331,440 (49.9)	158,461	-	174,039	-	-	332,500 (50.1)	663,949 (100.0)
1988	30,000	1,035	-	75,000	-	-	266,946	372,981 (100.0)	-	-	-	-	-	-	372,981 (100.0)
1989	20,000	13,907	-	56,315	-	-	308,986	399,208 (100.0)	-	-	-	-	-	-	399,208 (100.0)
1990	3,000	29,705	-	40,186	-	-	664,808	737,699 (66.7)	-	364,135	-	-	3,582	367,717 (33.3)	1,105,416 (100.0)
1991	75,000	42,252	100,000	8,599	-	26,358	690,794	943,003 (64.7)	222,747	449,423	107,844	-	-	780,014 (45.3)	1,723,017 (100.0)
1992	24,300	62,730	22,500	2,443	-	23,102	244,402	379,477 (85.7)	63,300	-	-	-	-	63,300 (14.3)	442,777 (100.0)
1993	45,700	19,642	-	-	-	-	988,843	1,054,185 (86.7)	-	161,620	-	-	-	161,620 (13.3)	1,215,805 (100.0)
1994	-	23,552	140,000	-	-	-	1,360,768	1,524,320 (86.6)	78,870	157,740	-	-	-	236,610 (13.4)	1,760,930 (100.0)
1995	-	28,247	140,000	-	-	-	1,791,103	1,959,350 (73.0)	-	723,929	-	-	-	723,929 (27.0)	2,683,279 (100.0)
1995 년말 잔액	금역	685,855	323,635	402,500	24,354	-	1,791,103	3,227,447	396,312	1,544,807	18,861	-	-	1,959,980	5,187,427
	구성비	13.2	6.2	7.8	0.5	-	34.5	62.2	7.6	29.8	0.4	-	-	37.8	100.0

* ()안의 수치는 연도별 자금조달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수은의 통화별 자금조달 구성 추이를 보면, 설립연도인 1976년에는 자금조달이 출자금과 국민투자기금 차입만으로 행해짐에 따라 전액 원화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도 원화조달은 출자와 국민투자기금 차입 증대 등에 힘입어 1980년까지 대체로 외화조달을 웃돌았으나, 이후 해외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20%를 하회하게 되었으며, 1993년에는 5.4%까지 떨어졌다. 1995년의 경우 전체 자금조달에서 접하는 원화와 외화의 비율은 각각 6.3%, 93.7%로 외화조달이 원화조달을 압도하였다.

지난 20년간 자금조달 누계를 보면 총 조달액은 14조 9,251억원으로, 이 중 9조 328억원(60.5%)이 國內調達이었으며, 5조 8,923억원(39.5%)이 海外調達이었다. 재원별로는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이 4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연불어음 매각,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은행차관이 각각 16.2%, 14.5%, 8.3%를 차지하는 등 상위를 모두 외화조달원이 점하였다. 원화재원인 자본금 및 적립금, 국민투자기금 차입,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은 각각 6.8%, 6.8%, 2.2%를 차지하였다. 통화별로는 원화가 16.7%, 외화가 83.3%였다.

한편 1995년 말 현재 총 자금조달 잔액은 5조 1,874억원으로, 국내조달 62.2%, 해외조달 37.8%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재원별 구성을 보면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이 34.5%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였고, 다음으로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29.8%, 자본금 및 적립금 19.4%,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 7.8%, 은행차관 7.6% 순이었다. 국민투자기금 차입과 연불어음 매각의 비중은 1992년 이후 이들 재원을 통한 자금조달이 중단됨에 따라 각각 0.5%, 0.4%의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통화별로는 원화가 27.7%, 외화가 72.3%였다.

통화별 자금조달 구성비 추이

(단위 :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76~85 누계액	1985년말 잔액
원 화	100.0	67.9	62.2	45.4	50.6	31.5	27.0	31.7	14.0	17.2	28.6	23.7
외 화	0	32.1	37.8	54.6	49.4	68.5	73.0	68.3	86.0	82.8	71.4	66.3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86~95 누계액	1995년말 잔액
원 화	29.2	20.2	28.4	22.6	6.6	14.6	30.5	5.4	9.3	6.3	16.7	27.7
외 화	70.8	79.8	71.6	77.4	93.4	85.4	69.5	94.6	90.7	93.7	83.3	72.3

2. 國內 資金調達

가. 자본금 및 적립금

(1) 자본금

수은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資本金은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납입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의 출자가능기관 중 현재까지 수은에 출자한 실적이 있는 기관은 정부, 한국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3개 기관뿐이며, 출자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입되었다.

설립 당시 1,500억원이었던 法定資本金은 연불수출 지원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듬해인 1977년 12월 5,000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1986년 12월에는 다시 1조원으로 증액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설립 첫째 654억원에 불과하였던 納入資本金은 그 후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꾸준히 이루어져 1993년 말에는 6,859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는 각 출자기관의 사정에 의해 자본금 추가납입이 중단됨에 따라, 1995년 말 현재 납입자본금 규모는 1993년 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관별 출자현황을 보면, 먼저 정부는 1987~1988년을 제외하고는 1993년까지 매년 출자를 실시하여 수은의 최대 출자기관이 되었는데, 1995년 말 현재 정부 출자금은 3,059억원으로 납입자본금 총액의 44.6%를 점하였다. 韓國銀行은 1995년 말 현재 납입자본금 총액의 38.6%에 상당하는 2,650억원을 출자하였다.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출자는 꾸준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1회 출자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데 기인하여, 출자가 중단된 1992년까지 한국은행은 최대 출자기관의 위치를 고수하였다. 韓國外換銀行은 1976년과 1978년 및 1982년의 3개 연도에 총 1,150억원을 출자하여 전체 납입자본금의 16.8%를 점하였다. 한편 1989년 2월 한국외환은행의 민영화 방침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이 은행의 수은 출자분에 대한 처리문제가 현안이 되어 왔는데, 현재 타 출자기관의 지분인수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년 내에 이와 관



자본금 증자 관련기사 (현대경제, 1977. 5. 27)

련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은의 법정자본금 추이

(단위 : 억원)

법 제정 (1969. 7. 28)	1차 개정 (1974. 12. 26)	2차 개정 (1977. 12. 19)	3차 개정 (1986. 12. 31)
300	1,500	5,000	10,000

자본금 납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출자기관			합계	누계	납입액 총조달액
	정부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1976	15.355	20.000	30.000	65.355	65.355	85.1
1977	20.000	20.000	-	40.000	105.355	35.1
1978	5.000	-	30.000	35.000	140.355	25.3
1979	4.500	-	-	4.500	144.855	5.0
1980	4.250	30.000	-	34.250	179.105	20.6
1981	15.750	50.000	-	65.750	244.855	14.7
1982	19.000	-	55.000	74.000	318.855	11.4
1983	19.000	20.000	-	39.000	357.855	5.8
1984	10.000	-	-	10.000	367.855	1.3
1985	30.000	30.000	-	60.000	427.855	6.4
1986	30.000	-	-	30.000	457.855	6.3
1987	-	30.000	-	30.000	487.855	4.5
1988	-	30.000	-	30.000	517.855	8.0
1989	5.000	15.000	-	20.000	537.855	5.0
1990	3.000	-	-	3.000	540.855	0.3
1991	55.000	20.000	-	75.000	615.855	4.4
1992	24.300	-	-	24.300	640.155	5.5
1993	45.700	-	-	45.700	685.855	3.8
1994	-	-	-	-	685.855	-
1995	-	-	-	-	685.855	-
합계 (구성비)	305.855 (44.6)	265.000 (38.6)	115.000 (16.8)	685.855 (100.0)	-	-

(2) 적립금

수은은 수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결산이익금 중 20%를 의무적으로 적립(法定積立金)한 후, 정부 이외의 출자기관에 대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잔여 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任意積立金)하도록 되어 있다. 1979년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은의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한 조치로서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합계액이 납입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은은 설립 이후

1986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이익금 전액을 내부 유보하여 왔다. 그러나 1987년부터는 그 해 정부가 제정, 시행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의 취지에 의거하여 정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수입정책이 확고히 추진되면서 수은도 매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기관에 배당하게 되었다.

적립금 규모는 설립 이래 계속적인 이익 실현에 힘입어 1976년 15억원에서 1995년 말에는 3,236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 중 법정적립금은 1976년에 2억 7,600만원이 적립된 이래 1995년 말까지 총 782억원이 적립되었으며, 임의적립금은 1976년 말의 12억원에서 1995년 말에는 2,454억원으로 증대되었다.

이같은 적립금의 증대는 자기자본의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차입금 규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1976년 말의 82.8%에서 1995년 말에는 15.2%로 낮아졌다.

나. 국민투자기금 차입

國民投資基金은 중화학공업 등 주요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투융자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1973년 12월 國民投資基金法이 제정된 이후 한국은행이 그 운용업무를 담당하였다. 수은은 국민투자기금법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6년부터 이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대상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기금은 1980년대 들어 정부의 정책금융 축소 계획에 의해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전면 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1992년부터 기금의 신규 승인이 중단되고 기승인분의 인출 및 차입잔액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만 남게 되었다.

국민투자기금은 폐지될 때까지 수은의 가장 안정된 원화자금 조달원으로서 연불수출자금 지원에 큰 몫을 담당하여 왔다. 또한 이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리는 수은의 해당 대출금리보다 연 1% 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수은의 수지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설립 이래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의 총 차입누계액은 1조 122억원에 달하여 출자금 총액 6,859억원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국내 조달자금 중 한국은행 수탁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점하였다. 기간별 자금차입 실적을 보면, 1976년 100억원에 불과하였

던 기금 차입액은 이듬해인 1977년부터 3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1980년까지 같은 규모를 유지한 후, 1981년에는 다시 750억원으로 크게 늘어으며, 이후 매년 증액되어 1983년에는 1,750억원을 기록하였다. 이같은 차입규모의 확대에 따라 전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국민투자기금의 비중도 1976년의 13.0%에서 1983년에는 25.9% 수준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국민투자기금 차입규모는 1983년을 정점으로 정부의 정책금융 축소 방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이 기금이 폐지되기 직전에는 100억원대를 훨씬 하회하면서 전체 자금조달에서 점하는 비중도 0.5%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한편 국민투자기금 차입이 중단됨에 따라 1991년도부터 시작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은 수은의 새로운 원화자금 조달원으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

財政投融資特別會計는 기존의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승계한 것으로서, 재정자금으로 수행되는 출연·출자·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별도 설치된 특별회계의 하나이다. 이 회계는 1987년 12월 '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이 제정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① 정부출자기관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출자·출연을 행하는 출자계정 ②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해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상으로 융자하는 융자계정 ③ 공공차관 협약에 의해 도입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차관계정의 세 가지 계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수은에 대한 출자 및 배당수입은 출자계정에서, 융자와 이에 따른 원리금 수입은 융자계정에서 각각 관리된다.

수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은 1991년 구소련에 대한 소비재차관 제공 등 수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다. 수은은 1991년 이 회계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하여 구소련에 대한 소비재차관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어 1992년에는 225억원을 차입하였으며, 1994년과 1995년에는 각각 1,400억원을 조달하여 수출지원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에 대해서는 차입이 개시된 이래 금리 연 7%, 만기 6년 일시상환 조건이 적용되어 왔으나, 1995년 4월 '재정자금 융자조건 등의 결정 및 변경'(재정경제원 공고 제95-28호)에 따라

1996년 이후 신규 차입분에 대해서는 연 1회 금리가 변경되는 변동금리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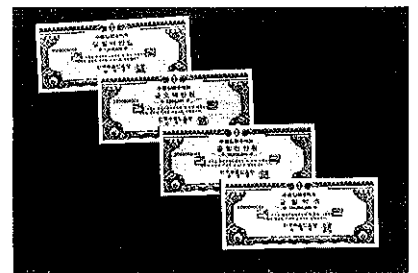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은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중단되고, 특히 1994년 이후 자본금의 추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은의 유일한 원화자금 조달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라.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수은은 수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국내외에서 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은 1984년에 처음으로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 이래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발한 기재활동을 벌여 왔으나,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은 발행시 금리 역마진 발생 문제로 인하여 발행이 유보되어 왔다. 1987~1988년에는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이 매년 당해연도의 수은 업무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내 채권시장 여건 및 역마진 문제 때문에 채권발행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구소련에 대한 소비재차관 제공이 결정된 후 이에 필요한 자금을 통상적인 재원으로부터 조달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소비재차관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을 최초로 발행하게 되었다.

당시 소비재차관을 통한 대소련 수출거래는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불 때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이 거래의 매출실적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였으므로, 1991년 5월 정부의 북방 경제교류 조정위원회에서는 수출대금의 일정 비율(대기업 15%, 중소기업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입금융채권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수은은 1991년 11월에 처음으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1992년 11월까지 매월 채권을 발행하여 총 495억원을 조달하였다. 이 채권은 차관 수혜업자에 대한 매출발행 방식으로 특수하게 발행되었기 때문에 발행금리가 시장금리 수준보다 훨씬 낮은 연 8%로 결정되었으며, 이자지급은 3개월마다 복리계산된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기 2년 일시상환 조건인 이 채권에 대한 상환은 1994년 12월 초에 완료되었는데, 수은은 이 채권 발행을 끝으로 원화표시채권 발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들어 수은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건양

서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은 수은의 국내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시장금리가 수은의 대출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채권발행시 과도한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수은의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은 채권발행에 따른 역마진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거나, 수은의 자기자본이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발행여건이 호전되는 시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

수은의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은 설립 이듬해인 1977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예탁은 이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대외자금준비자산의 일부를 국내 외국환은행에 예탁 운용하는 제도로서, 수은에 대한 예탁은 1977년 2월 한국은행이 보유외환의 증가를 배경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한 外貨資金 特別預託制度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실시되었다.

예탁 개시 이후 수은에 대한 예탁금의 용도는 연불수출자금대출과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대출로 제한되어 오다가, 1987년 한국은행 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상 총제가 특별히 인정하는 외화자금 지원을 위해 수은,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 등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영업자금용 예탁이 신설되면서 예탁금 용도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해제되었다. 한편 수은은 한국은행이 1987년 3월 차입조건이 불리한 외채의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외채 조기상환용 특별예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1987년, 1989년 및 1990년에 이 예탁을 과거에 도입한 은행차관 및 변동금리채의 조기상환에 사용하였다.

수은의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실적 추이를 보면, 수탁 첫해인 1977년 167억원(3,460만달러)을 수탁하여 전체 자금조달의 14.7%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듬해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극히 부진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수탁실적의 부진은 외환사정의 악화로 한국은행이 연불수출자금 대출용 예탁을 억제한 데다, 전대자금용 예탁도 수은의 전대자금대출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그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외환사정이 개선되면서 1987년부터 외채 조기상환용 예탁이 시작되고 예탁금 용도에 대한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수은의 수탁실적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7년 1,972억원(2억 5,000만 달러)에서 1991년에는 6,908억원(9억 2,000만달러), 1995년에는 1조 7,811억원(23억 1,000만달러)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수탁금의 비중도 1995년에는 66.8%로 높아지는 등, 한국은행 보유외화 수탁에 대한 수은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 일반 영업자금용 수탁에 적용되는 조건을 보면, 금리는 6개월 Libor + 0.25%이며 만기는 1년으로 6개월마다 재수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海外 資金 調達 비중의 증대

수은의 설립을 계기로 선박을 비롯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은 자금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제약과 국내 자본시장의 협소 등으로 수은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자금을 국내에서만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설립 이후 수은은 필요한 자금을 장기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해외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해 왔으며, 대출규모의 확대 등 업무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해외자금의 조달비중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왔다.

國際金融市場 진출 초기 수은의 해외 자금조달은 은행차관(bank loan)과 보유 연불어음(promissory note)의 매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들 수단을 통한 자금조달은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와 수은의 신인도 개선을 배경으로 국제채시장에서의 외화채권 발행이 시작된 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채권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화채권 발행이 수은 해외자금 조달의 주된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조달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조달시장도 유로시장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금융·자본시장으로 다변화됨으로써 조달기반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 조달규모의 대형화 및 도입 표시통화의 다양화도 두드러져, 1회 차입규모가 최근에는 5억 달러까지 증대되었으며, 차입통화도 미 달러를 비롯하여 일본 엔,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및 유럽통화단위(ECU) 등으로 확대되었다. 수은의 기타 통화표시 차입은 주로 차입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차입과 동시에 통화·금리스왑(currency &

interest rate swap)을 통해 전액 미 달러표시 채무로 전환되었다.

가. 은행차관 도입

수은은 1978년 12월 미국의 First Chicago Asia Ltd. 등 6개 은행을 간사은행으로 하여 2억달러 규모의 銀行借款 도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하였다. 중동계 은행이 대거 참여한 이 차관은 만기 10년에 금리는 최초 2년간 Libor + 0.625%, 잔여기간은 Libor + 0.75%로, 당시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한 은행차관 중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차관에는 총 46개 국제금융기관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3억 7,000만달러나 초과 용모되어 국내외 금융계의 관심을 끌었다. 최초의 은행차관을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수은은 자금조달원을 해외 금융시장으로 확대하고, 더욱 유리한 차입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 1981년 6월에 행해진 2억달러 규모의 제2차 은행차관 도입도 미국의 Chemical Asia Ltd. 등 8개 은행이 주간사은행으로 참가한 것을 비롯, 세계 각국의 일류은행들이 참가은행(participation banks)으로 참여함으로써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對外信認渡가 높아지면서 수은의 은행차관 도입은 시장동향 조사단계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 종전보다 차입규모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차관 주선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차입조건도 크게 개선되어 가산금리(spread)가 종전의 0.625~0.75%에서 0.5%로 낮아졌으며,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도 종전의 0.875%에서 0.625% 수준으로 낮아졌다.

3억달러 은행차관 도입계약 서명식 (1982. 3)



1982년 이후 중남미 제국의 대외채무 불이행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비산유 개도국의 외채 리스케줄링 등이 빈번해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은 종전의 借入者市場(borrower's market)에서 貸出者市場(lender's market)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차입조건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은은 1982~1984년 사이에 매년 3억달러 규모의 은행차관을 도입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는 악화된 차입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입시장의 다변화와 합

계 차입방식 및 표시통화의 다양화가 시도되었다.

1983년 6월 미국내 優待金利(prime rate)를 기준금리로 한 은행차관에는 미국계 은행이 다수 참여한 외에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및 호주계 금융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참가은행의 다변화를 이루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100억엔 규모의 엔화표시 은행차관이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이 차관은 6개월마다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부분(floating tranche) 50%와, 5년마다 적용금리가 바뀌는 고정금리부분(fixed tranche) 50%로 구성되었다. 1984년에 도입한 은행차관은 유로시장 조달분과 미국시장 조달분이 혼합된 것으로, 유로시장 조달분에 대해서는 基準金利를 Libor와 Libid의 중간인 Limcan으로 정하여 차입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미국시장 조달분에 대해서도 정기에금증서(CD) 이율로 상환을 제한함으로써 불리한 금리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특히 차관계약에 복수통화 차입조건을 삽입하여 미 달러 외의 여타 국제통화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수은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인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5년 1월에는 수은으로서는 처음으로 私募(club deal)방식에 의한 1억달러의 은행차관 도입계약을 Chase Manhattan Bank와 체결하였으며, 이어 9월에는 40개 국제은행과 3억달러 규모의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차관에는 신증 금융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대출증서(transferable loan certificate) 발행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자금공여자로 하여금 은행차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10월에는 300억엔의 엔화표시 은행차관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듬해인 1986년 5월에는 Chase Manhattan Asia Ltd.의 주선으로 사모방식에 의한 1억달러 규모의 은행차관을 Libor + 0.25~0.375%의 조건으로 도입하였다.

한편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호전됨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자금조달을 축소시키고, 기존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은은 1985년에 계약이 체결된 300억엔의 은행차관을 인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종료시켰으며, 1986년 12월에는 1983년에 도입한 은행차관의 미상환잔액 2억 7,300만달러를 조기상환한 데 이어, 1987년 1월에는 1983년에 도입한 엔화차관 100억엔 전액을, 1987년 5월에는 1984년에 도입한 3억달러 전액을 각각 조기상환하였다.

198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해외 자금조달은 1990년대 들어 국제수지 사정이 변화



3억달러 은행차관 도입계약 서명식 (1984. 7)

은행차관 도입실적

계약일 (인출일)	차입금액 (백만)	차입금리	만 기 (가치기간)	대 주	비 고
1978. 12. 7 (1979. 2. 27)	US\$ 200 (분할인출)	처음 2년: Libor+0.625% 그 이후: Libor+0.75%	10년 (3년)	UBAF 등 46개 기관	1987. 9. 14 조기상환
1981. 6. 1 (1981. 8. 3)	US\$ 200 (분할인출)	Libor+0.75%	8년 (3년)	UBAF 등 47개 기관	1987. 9. 4 조기상환
1982. 3. 12 (1982. 4. 19)	US\$ 300 (분할인출)	Libor+0.5%	8년 (3년)	BTC 등 36개 기관	1987. 12. 17 조기상환
1983. 6. 14 (1983. 7. 27)	US\$ 300 (분할인출)	Tranche A 처음 4년: Libor+0.75% 그 이후: Libor+0.875% Tranche B Prime+0.25%	8년 (3년)	Chemical Asia 등 46개 기관	1986. 12. 15 조기상환
1983. 7. 5 (1983. 11. 30)	¥ 10,000	Tranche A 처음 5년: LTPLR+0.3% 그 이후: 5년째 LTPLR Tranche B LTPLR+0.2%	10년 (5년)	LTCB 등 16개 금융기관	1987. 1. 5 조기상환
1984. 7. 13 (1984. 8. 31)	US\$ 300 (분할인출)	처음 2년: Limean+0.75% 그 이후: Libor+0.75%	8년 (3년)	LTCB 등 43개 금융기관	1987. 5. 29 조기상환
1985. 1. 18 (1985. 2. 28)	US\$ 100	처음 2년: Libor+0.625% 그 이후: Libor+0.75%	12년 (5년)	Chase Manhattan Asia	1990. 1. 18 조기상환
1985. 9. 24 (1985. 10. 30)	US\$ 300 (분할인출)	처음 8년: Libor+0.625% 그 이후: Libor+0.75%	8년 (3년)	Sumitomo Finance Asia 등 40개 기관	1987. 7. 31 조기상환
1986. 5. 29 (1987. 5. 29)	US\$ 100	처음 2년: Libor+0.25% 그 이후: Libor+0.375%	8년 (4년)	Chase Manhattan Asia	1994. 5. 31 조기상환
1991. 4. 9 (1991. 4. 12)	US\$ 120	Libor+0.35%	5년	BTC 등 19개 기관	1996. 4. 12 조기상환
1991. 6. 25 (1991. 6. 28)	¥ 10,000	7.55%	5년	Norinchukin Bank 등 10개 기관	
1991. 7. 9 (1991. 7. 16)	US\$ 100	Libor+0.3%	5년	BTC 등 18개 기관	
1992. 3. 6 (1992. 3. 12)	¥ 10,000	6.285%	7년	Nippon Life Insurance 등 3개 기관	
1994. 9. 6 (1994. 9. 9)	Tranche A US\$ 50 Tranche B ¥ 4,978	Tranche A Libor+0.3% Tranche B: 4.75% (Libor+0.3% swap)	6년	IBJ 등 11개 기관	

하면서 재개되었다. 수은은 1991년 4월 Bankers Trust Company를 주간사기관으로 하여 1억 2,000만달러의 은행차관을 Libor + 0.35%에 도입한 것을 계기로 해외차입 활동을 재개한 데 이어, 6월에는 일본 Norinchukin Bank를 주간사기관으로 하여 100억엔의 엔화표시 고정금리 차관을 연 7.5%의 조건으로 도입하였으며, 7월에는 미국 Bankers Trust Company를 주간사기관으로 하여 1억달러의 은행차관을 Libor + 0.3%의 양호한 조건으로 도입하였다. 1992년 3월에는 다시 100억엔의 엔화표시 차관을 固定金利 6.28%의 조건으로 일본 Nippon Life 등으로부터 사모형식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1994년 9월에는 Industrial Bank of Japan의 주선으로 1억달러 상당의 차관을 5,000만달러의 Tranche A와 49억 8,000만엔 규모의 Tranche B로 나누어 도입하였는데, Tranche A에 대해서는 Libor + 0.3%가, Tranche B에 대해서는 연 4.75%의 고정금리가 각각 적용되었다.

이 밖에 수은은 1993년부터 취급한 域外金融用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1995년 7월에 50억엔, 11월에 50억엔, 12월에 30억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30억엔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들 엔화차관은 차관단이 구성되지 않고 하나의 貸主로부터 도입된 차관으로서, 도입과 동시에 모두 미 달러화 자금으로 스왑되어 域外貸出資金으로 사용되었다.

나. 연불어음 매각

保有 延拂어음의 賣却은 수은의 해외 자금조달 활동에서 초기 10년 동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방식은 중장기 연불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은의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수은 고유의 외화자금 조달방식이었다.

보유 연불어음의 매각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수출자가 해외에 연불로 제품이나 용역을 수출할 경우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약속으로 수입자로부터 어음을 수령하며, 이 어음에 대해 세계 일류은행의 지급보증을 받는다. 수은은 수출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면서 수입자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일류은행의 지급보증을 대출담보로 취득하며, 이 연불어음 중 일부를 국제금융 시장에서 매각 처분하여 자금화한다.

연불어음의 매각은 순수한 의미의 해외차입과는 구분되나, 관련 대출금의 조기회

첫 연불어음 매각 관련기사 (내외경제, 1977. 6. 27)



수를 통한 수은 지원자금의 회전을 제고와 장기 저리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활용된다. 수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국내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연불어음 매각은 대외채무를 증가시키지 않고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연불어음의 매각방식은 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이차정산방식과 할인방식으로 구분되며, 시장진출 방식에 따라 쌍방 매각방식(bilateral)과 차관단 구성 매각방식(syndication)으로 나누어진다. 수은은 이차정산방식에 의해 어음매입자와 수은간에 매각금리와 어음금리의 차를 정산 수수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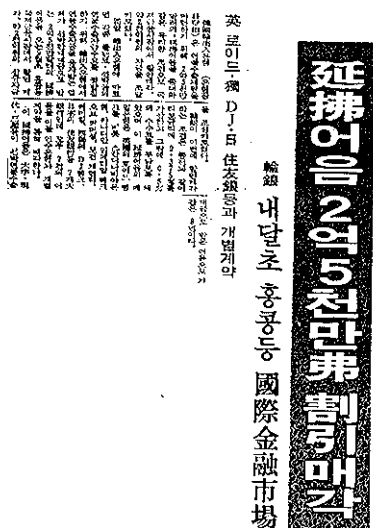
최초의 보유 연불어음 매각은 1977년 6월에 행해졌는데, 당초에 계약된 1억 5,800만달러보다 약간 줄어든 1억 4,9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을 Scandinavian Bank Ltd.를 대리인으로 한 차관단에 매각하였다. 매각조건은 금리가 Libor + 1.125~1.25%, 인출수수료는 0.125% flat이었다. 1981년 6월에는 두 번째로 2억 1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을 Wells Fargo Bank, N.A.를 비롯한 차관단에 매각하였다. 매각금리는 1977년의 매각시보다 크게 개선된 Libor + 0.375%였으며, 약정수수료와 인출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소액의 대리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들어 연불수출 지원규모가 증가하면서 외화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은의 연불어음 매각규모도 계속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매각방식도 종래의 차관단 구성 방식으로부터 지급보증은행에게 매각하는 개별 매각방식으로 전환하여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매각조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연불어음 매각은 특히 1983년부터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내어 1983년 한 해에만 7억 4,300만달러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연불수출의 대중을 이룬 선박수출이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보유 연불어음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수은은 1984년에 8억 6,200만달러, 1985년에 5억 7,400만달러, 1986년에는 3억 2,300만달러에 달하는 연불어음을 非遡求(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홍콩,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매각하였다.

연불어음 매각을 통한 수은의 자금조달 활동은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섬에 따라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중단된 후 1991년에 재개되었다. 1991년에

연불어음 매각 관련기사 (한국경제, 1983. 8. 27)



수은은 1억 4,100만달러의 연불어음을 매각이 시작된 이래 가장 유리한 조건인 Libor + 0.15~0.20%로 매각함으로써 1991년 말까지 총 31억 3,300만달러를 연불어음 매각방식에 의해 조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일시 재개되었던 연불어음 매각은 1992년 이후 다시 중단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및 수은의 신용도 격상으로 해외차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연불어음 매각보다는 은행차관이나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비용면에서 유리해진 데 따른 것이다.

연불어음 매각실적

계약체결연도	매각금액(백만달러)	가중평균차입조건	매입기관
1977	149	Libor+1.25%	Scandinavian Bank
1981	201	Libor+0.375%	Wells Fargo Bank 등
1982	160	Libor+0.375%	Chase Manhattan Asia 등
1983	743	Libor+0.408%	LTCB Asia 등
1984	862	Libor+0.380%	Chemical Asia 등
1985	533	Libor+0.321%	Sumitomo Finance 등
1986	409	Libor+0.241%	Chemical Bank Int'l 등
1991	142	Libor+0.164%	Wardley 등

다. 전대차관 도입

1980년대 들어 수은은 외화조달원의 다변화와 유리한 조건의 장기 안정적 외화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의 공적수출금융기관이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입자에게 공여하는 구매자신용을 주선, 도입하여 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전대해 주는 轉貸借款을 도입하였다.

수은이 전대차관을 도입한 것은 전대차관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이 借主가 되면 국내 수입자가 차주가 될 경우에 필요한 은행 지급보증 업무가 면제되어 차주의 차입비용이 절감된다. 둘째, 수입자가 개별 수입계약 체결시마다 정부로부터 차관도입 승인을 얻는 것보다는 수은이 일괄 승인을 얻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며, 동시에 차관을 도입할 능력이 없는 국내 수

입자들도 수은을 통하여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은행차관에 비하여 차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부담 경감 및 재원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다. 넷째, 수은 지원 프로젝트의 소요기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현금수입을 연불결제로 전환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한다. 다섯째, 외자재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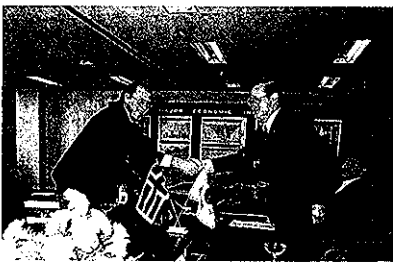
이러한 장점을 배경으로 수은은 1980년에 처음으로 原資材 延拂輸入代錢 決濟用 전대차관을 도입한 이래, 1985년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의 공적수출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억 5,400만달러에 달하는 크레디트라인을 확보하여 이 중 약 9,500만달러를 인출, 사용하였다.

1980년 8월에 도입된 최초의 전대차관은 계약금액이 1,810만달러 규모였으며, 대주는 스웨덴의 수출신용기관인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SEB)과 Ostgotabanken, Linkoping이었다. 이 차관은 수은이 1979년 말에 용자승인한 대우조선의 대노르웨이 연불수출용 케미컬탱커 4척의 건조에 소요되는 기자재의 수입결제자금 용자를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조건은 차입금리가 연 7.65%, 용자기간 5년(매 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당시 Libor가 연 17~18% 수준이었던 점에 비추어 상당히 양호한 조건이었다.

이어 1980년 9월에는 덴마크의 Den Danske Bank(DDB)와 300만달러의 전대차관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차관은 대우조선의 노르웨이 케미컬탱커 4척의 건조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용역을 Aalborg Vaerft A/S 등 덴마크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같은 해 12월 수은은 노르웨이의 Eksportfinans와 2억노르웨이크로네에 상당하는 미 달러화 전대차관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차관의 金利는 개별 용자기간(3~10년)에 따라 연 7.77~7.83%의 상이한 금리가 적용되었으며 OECD 가이드라인 금리에 따라 변동되도록 하였다. 이 차관은 앞서 체결된 SEB 및 DDB의 전대차관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크레디트라인'이었던 것에 반해, 자금의 용도가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 크레디트라인'이었다. 이후 자금이 인출되면서 이 차관의 크레디트라인이 소진되어 감에 따라, 수은은 1982년 5월 소진되지 않은 부분의 개별용자 승인기간을 1983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추가로 2억 노르웨이크로네를 증액하였다.

또한 수은은 1차 SEB 전대차관의 크레디트라인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2차로 SEB와 2,000만달러의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하였는데, 2차 계약에서는 인출기일을



노르웨이 Eksportfinans와의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 (1980. 8)

한정된 1차 계약과는 달리 계약만기일이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다.

한편 수은은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기자재의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1년 10월 영국의 National Westminster Bank Ltd.(NATWEST)와 2,000만달러의 전대차관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NATWEST 1차분 중 1,920만달러가 소진됨에 따라 1982년 12월 NATWEST와 2차로 2,000만달러의 전대차관 도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인출시한인 1984년 6월까지 사용되지 않은 채 계약이 종료되었다.

북유럽 제국 및 영국으로부터의 전대차관 도입과 더불어, 1982년 3월에는 종래 일람불 결제방식으로 수입하던 프랑스산 기자재를 2~7년의 연불상환 조건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Société Générale로부터 1억프랑스포랑의 전대차관을 도입하였다. 도입조건은 상환기간 2~7년에 프랑스 정부가 수출금융에 적용하는 금리가 적용되었으며, 도입된 자금은 대우조선이 미국의 Dual Offshore Co.로부터 수주한 승강식 석유시추선 2척을 건조에 필요한 프랑스산 기자재의 도입에 사용되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덴마크로부터 도입되는 자본재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DDB와 다시 1,000만달러의 크레디트라인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밖에 수은은 외자재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 1985년 8월 독일의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KfW)와 2억마르크의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차관의 용도는 독일에서 수입되는 선박건조용 자본재 및 용역의 수입대금 결제에 한정되었으며, 금리는 개별 용자계약시 KfW의 조달금리에 0.5% 포인트를 가산한 금리와 OECD 가이드라인 최저금리 중에서 수은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1985년의 KfW 차관을 끝으로 전대차관 도입을 위한 신규 계약체결은 중단되었다. 이는 전대자금에 대한 업체의 수요가 부진한 데 따른 것인데, 실제로 1985년까지 전대차관으로 확보한 크레디트라인은 총 2억 5,400만달러에 달했으나, 인출금액은 약 9,500만달러에 그쳤으며 1984년 이후에는 인출실적이 전무하였다.

라. 외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수은 자금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수은의 외화자금 조달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어났는데, 설립 초기의 외자조달은 주로 은행차관 도입과 연불어음 매각 등에 주로 의

존하였다. 1980년대 들어 국제자본시장이 활발해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은행차관 도입과 연불어음 매각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수은의 신인도가 제고되는 등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수은은 조달방법의 다양화 및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금융 방식의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이하 '채권')의 발행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1984년 1월에 東京 자본시장에서 최초로 50억엔의 엔화표시 채권을 성공리에 발행한 것을 시발로 하여, 1984~1985년 중 변동금리부 유로달러채, 독일 마르크화 채권 및 스위스 프랑화 채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채활동을 벌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사정 개선을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채권발행이 중단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재개되어 해외자금 조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채활동의 재개와 함께 발행채권 및 시장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1991년에는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인 미국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조달시장 다변화의 획기적 발전을 이룬 후, 1996년에는 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global bond)를 미국과 유로시장에서 성공리에 발행하여, 발행금액을 대형화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수은의 위상을 제고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1990년대에는 유로엔채, 中期債(medium-term note) 및 ECU채 등이 새로이 발행되는 등 채권종류 및 표시통화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1990년대 들어 수은은 본격적인 국제채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수은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1990년 9월 일본의 Japan Bond Rating Institute(JBRI)로부터 AA+의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Moody's와 Standard & Poor's(S&P)로부터 각각 A1과 A+의 등급을 받았다. 이후 S&P는 1995년 5월 수은의 신용등급을 AA-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JBRI도 1991년 2월 AA로 하향 조정했던 수은의 신용등급을 1995년 8월에 다시 AA+로 복귀시켰다. Moody's의 경우 1990년 12월 이후 계속 A1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각 신용평가기관의 수은에 대한 신용등급은 우리나라 정부와 같은 것으로, 한국계 기관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1) 엔화채권 발행

동경 국제채시장은 1970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60억엔을 기채한 이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1980년 이후 일본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저금리 등을 배경으로 급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던 수은으로서는 은행차관 도입 등으로 밀접한 교류를 유지해 온 금융기관이 많고, 또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발행한 경험이 있는 동경 자본시장이 첫 채권을 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1983년 하반기 중 50억엔 규모의 엔화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主幹事務機關으로는 일본의 4대 증권회사의 하나로서 채권발행 주선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수은의 외화차입에 참여해 온 Yamaichi증권을 선정하였다. 발행방법은 최초의 채권발행인 점을 감안하여 발행절차가 간단하고 발행조건이 신축적인 私募方法(private placement)을 택하였다. 이후 금리 및 가격조건의 결정을 거쳐, 1984년 1월 동경에서 채권발행 계약이 체결되었다. 만기 7년(4년 후 분할상환)인 이 채권은 표면금리(coupon rate) 연 8.4%, 발행가격 99.9(할인발행)의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이 채권 발행은 수은 최초의 채권발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을 뿐만 아니라, 차입통화의 다변화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1990년 12월 수은은 250억엔 규모의 두 번째 엔화채권을 만기 5년, 표면금리 연 7.6%의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이 채권은 당시까지 수은이 발행한 채권 중 가장 큰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사기관인 일본의 Yamaichi증권 외에 29개 기관이 인수단으로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발행되었다.

1991년 3월 수은은 일본의 Kankaku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60억엔 규모의 逆二重通貨債(reverse dual currency bond)를 국내 최초로 발행하였다. 만기 10년인 이 채권은 엔화로 발행된 후 이자는 호주달러로 지급되며 만기시 원금은 다시 엔화로 상환하는 형태의 채권으로, 호주달러의 금리가 높은 점을 활용하여 고금리를 추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었는데, 금리는 연 7.2%였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Yamaichi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400억엔 규모의 엔화채권을 만기 5년, 금리 연 7.5%의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수은의 엔화채권 발행활동은 1995년 중 가장 활발하여 연간 해외조달 총액의 약 74%가 엔화채권의 발행으로 조달되었으며, 이와 함께 일본 국내에 국한되었던 발행 시장도 유로시장으로 확대되었다.



엔화채권 조인식 (1990. 12)



200억 원 규모의 유로엔 채권 발행
관련기사 (매일경제, 1995. 2. 16)

1995년 2월 수은은 런던에서 Nomura증권을 주간사기관으로 하여 최초로 200억엔 규모의 유로엔채를 만기 5년, 금리 연 4.35%의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종전까지 수은이 발행한 엔화채권은 모두 '사무라이본드' (Samurai bond)로서 일본 국내에서 발행된 데 비해, 이 채권은 유로시장에서 발행되어 수은 발행 엔화채권에 대한 일본 이외 지역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Daiwa증권과 LTCB증권을 공동 주간사기관으로 하여 20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본드를 만기 5년, 금리 연 2.5% 조건으로 발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Nomura증권의 주선하에 만기 4년, 금리 1.75% 조건으로 15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하였다. 12월에는 두 번째로 100억엔 규모의 역이중통화채를 Daiwa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만기 10년, 금리 연 4.1%(호주달러 지급) 조건으로 발행하였는데, 이 채권은 첫째 역이중통화채와는 달리 홍콩시장에서 발행되어 유로엔채로 분류되었다.

(2) 미 달러화 채권 발행

변동금리부채권 발행

첫 엔화채권 발행을 성공리에 마친 수은은 1984년 11월 유로시장에서 5,000만달러 규모의 變動金利附債券(FRN : floating rate note)을 발행함으로써, 국제 중장기자본 이동과 관련하여 유로크레디트시장과 더불어 양대 시장을 이루고 있는 유로채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다. FRN은 문자 그대로 금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Libor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출·차입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금리의 변동에 연동되어 정기적(매 6개월 또는 3개월)으로 적용 금리수준이 변경되는 중장기 채권이다.

수은이 최초로 발행한 FRN의 조건은 만기 10년에 금리는 6개월 Libor + 0.25%였으며, 투자자에게 발행후 5년째와 7년째에 임의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put option)을 부여하는 한편, 발행자에게도 발행 후 5년째부터 6개월 주기로 임의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call option)을 갖도록 하였다. 이 FRN에 적용된 가산금리 0.25%는 당시 미국 등 선진 공업국의 주요 기업들이 발행하는 FRN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앞서 수은이 도입한 은행차관의 평균금리인 0.75%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이 FRN 발행에는 First National Bank of Chicago(FNBC), Long Term Credit Bank of Japan(LTCB), Manufacturers Hanover Trust Bank(Mantrust), Sumitomo Bank 등 4개 주간사기관 외에 BA



첫 FRN 발행 관련기사
(한국경제, 1984. 11. 6)

Asia Limited, Dai-ichi Kangyo Bank 등 18개 금융기관이 부간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FRN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차입비용면에서 은행차관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수은은 1985년 중 2회에 걸쳐 FRN을 발행하여 총 2억달러를 조달하였다.

1985년 5월에 발행된 1억달러 규모의 2차 FRN은 만기와 가산금리, 풋옵션 및 콜옵션의 내용 등이 1차 FRN과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FRN 발행에 따른 총비용(all-in cost)은 발행수수료가 1차 발행시의 1.875%에서 1.625%로 낮아지는 등 수수료 절감에 힘입어 1차 FRN의 $\text{Libor} + 0.634\%$ 에서 $\text{Libor} + 0.584\%$ 로 낮아졌다. 이 채권발행에는 Chase Manhattan Bank(CMB), FNBC, LTCB, Orion Royal Bank of Canada 등 4개 주간사기관을 비롯, 일본의 DKB 등 20개 기관이 부간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1985년 11월에 발행된 1억달러 규모의 3차 FRN 역시 발행수수료가 1.25%로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 가산금리 및 상환옵션 등의 조건이 1, 2차 FRN과 동일하였는데, 발행수수료의 절감에 따라 총 발행비용도 $\text{Libor} + 0.53\%$ 로 낮아졌다. 3차 FRN 발행에서는 1, 2차 발행시와는 달리 CMB가 단독 주간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간사기관으로는 LTCB, Saitama 등 일본계 15개 기관을 비롯하여 미국계 5개 기관, 영국계 2개 기관 및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벨기에 각 1개 기관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3차 FRN 이후 수은의 FRN 발행은 5년간 중단되었다가 1990년 9월 홍콩에서 일본 LTCB를 주간사기관으로 하여 1억달러 규모의 FRN을 발행하면서 재개되었다. 이 채권의 만기는 7년으로 발행 5년째부터 행사가능한 콜옵션과 풋옵션이 첨부되었으며, 금리는 6개월 $\text{Libor} + 0.0625\%$, 발행수수료는 0.325% 수준으로, 당시 까지 수은이 조달한 자금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다. 1994년 8월에는 다시 일본의 LTCB를 주간사로 하여 2억달러 규모의 5년 만기 FRN을 홍콩에서 발행하였다. 발행조건은 금리 6개월 $\text{Libor} + 0.30\%$, 발행수수료 0.20%로서 1990년 FRN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는데, 이는 당시 한반도 정세가 북한 최고위층의 사망 등으로 불안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채권은 수은이 발행한 FRN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였으며, 발행조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1994년 중 발행된 한국계 기관 FRN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편 1995년 이후에는 정부가 국내 기관의 해외차입과 관련하여 수은 등 신용도



1억달러 FRN 발행계약 체결 (1990. 9)

가 높은 기관에 대해 고정금리채권 위주로 차입방식을 변경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신규 FRN 발행실적이 전무하였다.

유로노트 퍼실리티(Euronote facility) 설정

유로노트 퍼실리티(note issuance facility : NIF)는 은행차관과 FRN을 결합한 방식으로, 차입자가 미리 약정된 차입한도와 차입기간 내에서 3~12개월의 단기어음을 발행하여 당해어음 만기도래시 이를 상환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계속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융방식이다.

수은은 1985년 8월 홍콩에서 Bankers Trust Asia Ltd.를 주간사기관으로 하여 1억달러 규모의 유로노트 퍼실리티를 설정하였는데, 이 퍼실리티의 幹事團에는 Continental-Illinois, Dai-ichi Kangyo Bank, Sumitomo Bank, LTCB, National Australia Finance Asia Ltd., IJB, Morgan Guaranty, FNBC가 공동주간사로, Barclays Bank를 비롯한 9개 금융기관이 부간사기관으로 각각 참여하였다.

이 퍼실리티의 만기는 5년이었으며, 매회 발행되는 어음의 만기는 3개월과 6개월 중 수은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질차입금리는 Libor + 0.25%를 상한으로 하되, 매 어음발행시 입찰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加算金利를 제시받아 평균낙찰 가산금리를 금리상한인 0.25%에서 차감한 뒤, 이 중 1/2을 평균낙찰 가산금리에 더하여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유로노트 퍼실리티의 경우, 차입자는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받고 최고금리와 투자자의 평균낙찰 가산금리간의 차감분을 모두 간사단이 취하는데 비해, 이 퍼실리티에서는 금리차액을 간사단과 공동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였다.

계약체결 직후 수은은 1차로 3,500만달러의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한 이래 총 24차에 걸쳐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어음 발행금리가 줄곧 Libor + 0.18%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금리면에서 유로노트 퍼실리티가 여타 해외차입 수단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퍼실리티는 차입자에게 계약체결 2년 후 퍼실리티의 잔존기간을 만기로 하는 FRN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였는데, 수은은 1987년 8월 전환 옵션을 행사하여 이 퍼실리티를 3년 만기 FRN으로 전환하였다. 전환시의 가산금리는 당초 계약상 0.25%로 되어 있었으나 간사단과의 교섭을 통하여 0.125%로 개선하였다.

고정금리채 발행

1990년대 들어 수은은 자금조달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인 미국시장에의 진출을 추진하였다. 수은은 우선 미국내 채권발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Moody's 및 Standard & Poor's에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1990년 12월 한국계 기관으로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A1과 A+를 각각 획득하였다.

이후 수은은 주간사기관 선정, 미국 證券去來委員會(SEC :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에 대한 채권발행 신고, 투자설명회 등 제반 발행준비 절차

Launch or Lunch?

우리은행 양키본드 발행팀이 뉴욕에 도착한 것은 1993년 5월 15일. 이튿날 있을 투자가 대상 오찬설명회 준비와 예행연습으로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만하탄 한가운데 우뚝 솟은 First Boston Corp.(FBC)본사의 Park Avenue Plaza(PAZ)에 가서 먼저 C.S.First Boston Group과 FBC의 회장을 예방하였다. 그들 총수들이 이렇게 원요일 아침에 만나주는 것은 파격적인 것이라고 실무자가 귀뜸해 주었는데, 이번 딜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우리는 만담 직후 Yankee Market 상황에 대한 FBC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었다. 미국 재무부에서 향후 7년물 T/B 발행을 중지키로 하였다는 발표에 따라 7년 만기로 발행하는 우리은행 양키본드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어서 발행 스프레드가 더욱 축소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정오에는 PAZ 43층 소강당에 마련된 오찬회에서 준비된 기재취지서(Prospectus)를 각 투자기관에서 나온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점심식사에 이어 홍성욱 차장의 차분한 설명이 20분간 이어졌다. 이어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우

리는 시장상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World Trade Center에 있는 Lehman Brothers, Merrill Lynch, Salomon Brothers 등 인수 공동간사(Co-Manager)들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17일 하루 동안의 시장상황과 투자가들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채권은 T/B 7년물 금리에 85bp를 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갖게 되었다. 지난 4월 22일 산업은행이 발행한 3억달러 양키본드 7년물의 스프레드가 89bp였는데, 그렇다면 한국물 중 최저 스프레드 갭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러나 T/B금리가 좀 더 오른 공산이 컸다. 인플레이션 심리로 T/B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다면 발행 스프레드를 아무리 낮추어 봤자 별 의미가 없다. 우리는 FBC의 채권시장 수석 책임자인 R.E.Diamond부회장 등과 협의한 후 T/B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을 때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을 하루 앞당겨 5월 18일에 발행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5월 18일 11시 30분, 가능한 한 스프레드를 좁혀서 조달비용을 절감하려는 우리측과, 될 수 있는대로 투자수익률을 높여 채권의 시장성을 높이려는 FBC측과의 팽팽한 줄다리가 시작되었고, 13시 11분에야 T/B 7년물에 스프레드

83bp로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곳에서는 채권발행을 'launch'라고 표현한다. 점심을 미룬 채 발행조건 협상을 계속하였는데 협의를 마칠 때쯤 강승구 부장이 FBC측에 합의의사를 확인하면서 'Launch or Lunch?'라 하자 긴장감이 흐르던 회의장은 때아닌 파안대소로 출렁거렸다. 이어 Trading Floor 총수인 Diamond부회장이 우리은행 강당 4배만한 크기의 Trading Floor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판매인과 딜러들에게 수은 양키본드 2억달러의 모집을 개시한다고 마이크로 방송하면서 모험권총을 치켜들고 수은 양키 딜이 성공적이어야 한다고 다짐하던 광경은 기억에 새롭다.

긴장된 기다림 속에 2억달러의 채권물량이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문으로 완전히 소화된 것은 16시 58분. 발행조건이 확정되어 launch가 성공한 것이다. 동시에 Telerate 화면에 우리은행 양키본드 발행뉴스가 헤드라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로써 전 세계 채권 딜러들에게 우리은행의 제2호 양키본드 탄생을 고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발행된 한국계 7년물 중에서는 가장 낮은 스프레드로 발행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광인 / 당시 국제금융부 대리)

었다. 이 채권에 적용된 가산금리는 당시까지 한국계 기관이 발행한 양키본드의 발행 가산금리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채권의 발행에는 중간사기관인 First Boston 외에 3개 미국계 증권회사와 2개 한국계 증권회사가 인수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수은은 그동안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활발한 起債活動으로 국제적인 지명도와 신인도가 축적됨에 따라 1996년에 글로벌본드의 발행을 추진하였다. 글로벌본드란 유로시장에 발행되는 유로본드나 특정국 내에서 발행되는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와는 달리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 등 전 세계를 판매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통상 발행규모가 5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 채권 발행을 위하여 수은은 우선 1991년에 실시한 미국 SEC 앞 일괄등록에 대



글로벌본드 발행계약 체결 (1996. 2. 15)

Global Bond 발행

1996년 1월 29일 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월 30일 새벽 1시, 요란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 뉴욕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전화였다. “오늘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로부터 우리은행 등록서류에 대한 review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통상 우리은행과 같은 정부기관의 경우 review 없이 승인하던 SEC가 review를 하게 된 배경은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은 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한국계 기관이기 때문이었다.

Global Bond 발행을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 7시에 다시 뉴욕에 확인한 결과 일단 SEC의 review가 전면 review가 아닌 일부 review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출근하자마자 담당 이사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SEC와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1월 31일 진중원 이사를 단장으로 조상균 부장, 켈자 등 4명이 중간사기관의 대표들과 함께 런던으로 출발하였다. 호텔에 도착하자 SEC의

정식 질의내용이 도착해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그렇지만 추가 보완자료 작성을 위해 런던에서의 첫날 밤을 꼬박 밝혔다. 다행히 SEC는 2월 1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할 경우 2월 5일에 최종 승인여부를 알려주기로 하였고, 이 경우 2월 7, 8일로 계획한 최종 발행일정에는 차질이 없게 된다.

2월 1~5일 런던과 뉴욕에서의 설명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이동하니 SEC의 최종승인 통지를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2월 6일 보스턴에서의 투자자 회의 및 설명회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와 다음날인 2월 7일 오전에 Launch하기로 하고, 중간사기관과 발행조건에 대한 최종협의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은행과 유사한 한국계 기관들의 10년 만기 채권의 유통 스프레드는 82bp 내외였는데 우리은행은 처음부터 한국계 10년 만기 채권의 새로운 벤치마크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최종협상에서 중간사기관은 78~80bp 수준에서 Launch를 주장하였으나, 우리는 77~79bp로 Launch하여 77bp에 발행하고자 하였다. 끈질긴 협상 끝에 2월 7일 오전 9시 77~79bp로 뉴욕에서 Launch하였다.

2월 8일 오전 8시, 최종 발행조건 결정을 위해서 각 당사자들이 다시 모였다. 그간의 투자설명

회와 개별회의를 통한 마케팅이 주효한 결과 투자수요가 폭발하여 77bp로 발행하는 데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전 9시 30분 발행조건을 공표하였다. 금리 6.375%, 발행가격 99.446%, 스프레드는 77bp 수준이었다. 우리은행 최초의 Global Bond이자, 최초의 10년 만기 공모채권이며, 금액면에서 최대규모인 5억 달러의 Global Bond가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마케팅과 우리은행 및 우리나라의 신인도 제고로 한국계 채권의 새로운 10년물 벤치마크가 발행되었으며, 아울러 이 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다른 한국계 채권의 유통시장 스프레드를 개선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6.375%의 쿠폰 금리는 우리은행의 고정금리 달러채권 발행금리로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채권발행 이후 바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여 2개월만에 1%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당시 밤을 새워가며 발행일정을 계획대로 진행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커다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김진경 / 국제금융부 차장)

한 추가보완 서류등록을 추진하여 SEC로부터 등록유효 선언을 받았다. 주간사기관으로는 글로벌본드 발행주선 실적이 많고 특히 한국계 채권에 대한 주간사실적이 많은 미국의 Lehman Brothers와 Salomon Brothers가 공동으로 선정되었다. 이 밖에 수은은 이 채권이 전 세계를 판매대상으로 함에 따라 일본, 유럽, 미국 등 여러 지역의 금융기관들을 간사단에 포함시켜 지역별 안배를 도모하였다.

이어 런던, 뉴욕, 보스턴 등 주요 지역에서의 투자설명회를 거쳐, 1996년 2월에 5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글로벌본드가 수은 최초로 발행되었다. 미 정부채 수익률에 0.77% 포인트가 가산되어 발행된 이 채권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좋아 발행규모의 3배 이상 주문이 쇄도하는 등 매우 성공적으로 발행되었다. 이 채권은 미 달러 고정금리채 시장에서 10년 만기 한국계 채권의 벤치마크(benchmark)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공적 발행으로 다른 한국계 채권의 유통 가산금리를 낮추는 촉매가 되기도 하였다.

(3) 독일 마르크화 채권 발행



1억마르크 채권 발행계약 체결

수은은 1984년 1월의 엔화채권 발행에 이어 두 번째 其他通貨債券 발행을 위해 독일 자본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 마르크는 독일의 경제력 성장을 배경으로 국제채시장에서 미 달러 다음의 비중을 지닌 기채통화였는데, 수은으로서는 외화자금 조달원의 다양화 및 저금리통화 차입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독일 마르크화 시장의 진출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수은은 1985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Deutsche Genossenschafts Bank(DG Bank)를 주간사기관으로 하여 1억마르크 규모의 마르크화 채권을 만기 5년, 금리 7.625%의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발행수수료는 독일시장의 정형화된 규칙에 따라 2.75%가 적용되었다. 이 채권발행에는 주간사인 DG Bank 외에 Bank of Tokyo, Commerzbank 등 7개 기관이 간사단으로 참여하였다.

1차 마르크화 채권의 성공적인 발행에 힘입어 수은은 1986년 3월 다시 DG Bank를 주간사기관으로 하여 2차 마르크화 채권을 발행하였다. 5년 만기, 1억마르크 규모로 발행된 2차 마르크화 채권의 금리는 6.875%로 1차에 비하여 0.75% 포인트 개선되었으며, 발행수수료도 2.5%로 0.25% 포인트 개선되었다. 이 채권발행의 간사단에는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 1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그 후 수은은 마르크화 채권 발행을 중단했다가, 2차 발행으로부터 거의 10년만인 1995년 10월 독일 Commerzbank의 주선으로 만기 3년, 3억 5,000만마르크 규모의 3차 마르크화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 때는 이미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수은의 지명도가 높아진 시기였기 때문에 발행규모가 1, 2차 발행시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었으며, 발행조건도 금리 5%, 발행가격 101.75, 수수료 1.8%로 종전의 마르크화 채권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이 채권발행을 위한 간사단에는 주간사기관인 Commerzbank를 비롯하여 유럽, 미국, 일본 등지의 2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였다.

(4) 스위스 프랑화 채권 발행

스위스 프랑화 채권은 스위스 프랑이 국제금융시장의 5대 주요통화 중 가장 금리가 낮고 환율도 안정되어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독일 마르크화 채권과 함께 1985년 초부터 그 발행이 추진되었다. 채권발행 추진과정에서 스위스 증권당국이 외국인 채권 발행의 전제조건으로 스위스 중앙은행의 동의와 함께 발행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1985년 하반기 들어 수은의 경우에는 정부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음으로써 채권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1985년 12월 스위스 3대 은행의 하나인 Swiss Bank Corporation(SBC)을 주간사기관으로 하여 5,000만스위스프랑 규모의 스위스 프랑화 채권을 만기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리 6.1258%, 수수료 3%의 조건으로 액면(par)발행하였다. 한편 채권발행 후 4년째부터는 유통시장에서의 채권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300만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채권을 수은이 재매입하도록 하였다. 이 채권발행을 위한 간사단에는 SBC 등 9개 스위스 국내은행과 4개 스위스내 일본계 은행, 그리고 미국계 및 독일계 은행 각 1개가 참여하였다.

이 채권발행 이후로 수은은 지금까지 추가로 스위스 프랑화 채권을 발행한 실적이 없다.

(5) ECU 채권 발행

1990년 5월 수은은 Merrill Lynch의 주선하에 설립 이래 처음으로 複合通貨인 ECU(European Currency Unit)표시채권을 발행하였다. 당초 수은은 비화 1억

외화표시 채권 발행실적

발행일	발행장소 (발행방법)	발행금액 (백만)	표면금리	발행가격 (%)	만 기	상 장	주요사 기 관	비 고
84. 1. 30	일본 (사모)	¥ 5,000	8.4%	99.9	7년 (3년거치 4년분할상환)	비상장	Yamaichi 등 8개 기관	88. 1. 27 조기상환
84. 11. 21	영국 (FRN, 공모)	US 50	Libor+ 0.25%	100	10년	London	LTCB 등 4개 기관	89. 11. 22 조기상환
85. 5. 10	영국 (FRN, 공모)	US 100	Libor+ 0.25%	100	10년	London	Chase 등 4개 기관	90. 5. 14 조기상환
85. 6. 28	독일 (공모)	DM 100	7.625%	100	5년	Frankfurt	DG Bank	90. 6. 28 조기상환
85. 8. 22	홍콩 (Euronote Facility)	US 100	Libor+ 0.18%	100	5년 (2년후 FRN전환권)	비상장	BT Asia 등 8개 기관	87. 6. 12 조기상환
85. 12. 4	영국 (FRN, 공모)	US 100	Libor+ 0.25%	100	10년	London	CMB	90. 12. 5 조기상환
86. 1. 20	영국 (공모)	SFr 50	6.125%	100	8년 (4년거치 4년분할상환)	Zurich, Basel, Lausanne, Geneva	SBC	94. 1. 20 조기상환
86. 3. 20	독일 (공모)	Dm 100	6.875%	100	5년	Frankfurt	DG Bank	91. 3. 21 조기상환
87. 8. 12	- (FRN, 공모)	US 100 (Euronote Facility에서 전환)	Libor+ 0.125%	100	3년	London	BT Asia 등 8개 기관	90. 8. 12 민기상환
90. 5. 11	영국 (공모)	ECU 105	11.0%	101.625	5년	Luxembourg	Merrill Lynch Int'l	93. 5. 11 조기상환
90. 9. 21	홍콩 (FRN, 공모)	US 100	Libor+ 0.0825%	100	7년 (5년째 Put-Call Option)	Luxembourg	LTCB Asia, Goldman Sachs Int'l	96. 4 현재 잔액 US 15백만

발행일	발행장소 (발행방법)	발행금액 (백만)	표면금리	발행 가격(%)	만 기	상 장	주요사 기 관	비 고
90. 12. 7	일본 (Samurai, 공모)	¥ 25,000	7.6%	101	5년	Tokyo	Yamaichi Sec	95. 12. 7 만기상환
91. 3. 8	일본 (Reverse Dual, 공모)	¥ 6,000	AS 7.25%	95	10년	비상장	Kankaku Sec	
91. 5. -	미국 (Yankee, 공모)	US\$ 200	9.0%	99.5	7년	비상장	Salomon Brothers	
91. 5. 20	일본 (Samurai, 공모)	¥ 40,000	7.5%	101.2	5년	Tokyo	Yamaichi Sec	
91. 10. 30	미국(MTN, 공모)	US\$ 60	7.85%	100	5년	비상장	Gold Sachs	
93. 5. 27	미국 (Yankee, 공모)	US\$ 200	6.5%	99.555	7년	비상장	First Boston	
94. 8. 30	홍콩 (FRN, 공모)	US\$ 200	Libor+ 0.3%	100	5년	Hong Kong, Singapore	LTCB Asia	
95. 2. 23	영국 (Euro, 공모)	¥ 20,000	4.35%	100	5년	비상장	Nomura Int'l plc.	
95. 6. 15	일본 (Samurai, 공모)	¥ 20,000	2.5%	100	5년	비상장	Daiwa Sec.	
95. 10. 20	일본 (Samurai, 공모)	¥ 15,000	1.75%	100	4년	비상장	Nomura Sec.	
95. 12. 7	독일 (Euro, 공모)	DM 350	5%	101.75	3년	Frankfurt 비상장	Commerz bank	
95. 12. 19	홍콩 (Reverse Dual, 사모)	¥ 10,000	AS 4.1%	100	10년	Hong Kong, Luxembourg	Daiwa Sec. (HK)	
96. 2. 15	미국 (Global, 공모)	US\$ 500	6.375%	99.446	10년		Lehman Brothers, Salomon Brothers	



국내 최초의 ECU채권 발행계약 체결 (1990. 5. 8)

2,500만달러 상당의 호주달러표시 채권발행을 계획하였으나, 호주달러 채권시장의 여건이 불리하게 변화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ECU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ECU 채권은 ECU 구성통화로 효율적 투자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채권발행자로는 국제기구와 주요국 정부 및 정부기관 등 신용도가 높은 기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발행금액은 당초 조달목표인 미화 1억 2,500만달러에 상당하는 1억 500만ECU였으며, 만기 5년, 금리 연 11%에 수수료 1.375%의 조건으로 割増發行(발행가격 101.625)되었다. 이 채권발행에는 Merrill Lynch 외에 11개 기관이 간사단으로 참가하였다.

4. 國際金融 業務의 다양화

수은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商業金融,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운용하는 域外金融(offshore banking),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을 수탁받아 이를 국제채권시장 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등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국제금융 업무를 다양화하여 왔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제금융 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수은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해외 자금조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왔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하에서 공적수출지원 위주의 수은 여신제도를 보완하여 왔다.

가. 해외 현지법인의 활동

수은은 수은법 제20조 제2항(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수은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나 자금조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출자 또는 자금대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은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으로, 수은법 3차 개정시 신설되었다.

이 조항의 신설로 수은이 국내외 법인에 대하여 出資 및 資金貸與를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987년부터 당시 기획부 종합기획과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을 적극 검토·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홍콩, 영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네 곳에 현지법인을 두게 되었으며, 1996년 중에는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일단 현지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그 관리 및 지원업무는 본점 국제금융부의 현지법인 파트에서 담당하게 된다.

國際金融部에서는 현지법인이 부여된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법인의 경영방침 및 전략, 업무목표, 예산,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해외 현지법인 통할규정 및 해외 현지법인 자금운용 업무지침 등에 따라 통할관리하고 있다. 현지법인은 기본적으로 현지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감독당국에 의해 지도·감독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본점과는 독립된 법인이며, 또한 본점과는 달리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에 필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최대한 현지법인에 위임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할범위는 현지법인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 관리, 경영평가 등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출 및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일정금액 이상(1996. 4. 30 현재 200만달러 초과)에 대해서만 본점과 사전협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1) 홍콩 현지법인(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 KEXIM Asia Ltd.)

홍콩 현지법인은 수은의 자금조달 및 여신업무의 지원과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과의 경제교류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설립된 수은 최초의 자회사로, 1988년 8월 1일 납입자본금 1,000만달러 규모로 설립되었다.

商業貸出 및 有價證券 投資를 중심으로 하는 綜合金融業을 취급하는 홍콩 현지법인은 설립멤버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의 결과 설립 초년도부터 흑자를 기록하는 등 만족스러운 경영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경영성과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설립 초년도 총자산 2,600만달러, 당기순이익 10만 6,000달러의 영업실적에서 1995년 말 현재 총자산 4억 2,200만달러, 당기순이익 304만 8,000달러의 영업실적을 기록



홍콩 현지법인의 Bank of Commerce 앞 6,000만달러 FRCD 발행 서명식

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현지법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실적을 시현하게 되었다.

한편 자산규모가 증가하면서 홍콩 현지법인의 自己資本適合比率(Capital Adequacy Ratio : CAR)이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율에 근접하게 됨에 따라, 1990년 8월과 1993년 3월 등 2회에 걸쳐 500만달러씩 증자가 이루어져 1995년 말까지 총 2,000만달러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

1992년 9월 중국과 수교하게 되면서 홍콩 현지법인의 설립 취지의 하나인 대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어, 대중국 거래에 대한 지원실적은 1995년 말 현재 총 16건 6,100만달러(여신잔액 기준)에 이르고 있다.

홍콩 현지법인은 수은의 현지법인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로 수은의 후발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에 많은 도

돈이 되거나 이름을 알릴 수만 있다면

- 첫 자회사 翰銀亞洲金融有限公司

1988년 8월 1일은 우리은행 역사에 큰 획이 그어진 날로 길이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翰銀亞洲金融有限公司 (KEXIM Asia Limited)라는 긴 이름을 가진 우리은행 최초의 자회사가 홍콩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는 처음으로 자회사를 갖는 데 대해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자기자본 3,600만달러, 총자산 4억 8,000만달러, 세전순이익 400만달러 내외의 번듯한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당시의 걱정은 한낱 기우에 불과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영업의 질에 있어서도 홍콩 현지법인은 연간 20여건의 주선업무를 취급함으로써 홍콩 금융시장에서 미국, 유럽, 일본계 등 유수의 국제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머천트 뱅킹' 전문기관으로서의 명성과 위치를 굳혔다.

가끔 사무실을 방문한 외국 금융기관 인사들은 우리가 외부에 알려진 지명도와 달리 소규모 인

원으로 구멍가게(?) 같은 사무실에서 자금조달, 대출 및 유가증권 발행의 주선, 유가증권 매매, 자금운용, 사후관리, 거래, 일반관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전천후로 수행하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경이스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홍콩 현지법인이 주업무로 하는 대출 및 유가증권 발행주선 업무는 시장경제의 치열한 경쟁원리가 철저히 관철되는, 그야말로 국제금융의 백미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나의 주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입선을 물색해야 하고 (marketing), 어떻게 찾아낸 차입선과 거래조건 (pricing 등)을 흥정하거나 경쟁입찰을 통해 거액의 거래를 따오고, 그 물건(?)을 시장에다 효과적으로 팔기 위해 언론에 널리 홍보하고, 그리고 신디케이션 참여권고 서한 또는 전화를 통해 약간의 수수료를 챙긴 후 물건을 팔고 (book running, 신디케이션 구성), 계약서 등 법적서류를 작성하고, 성대한 계약서 서명식을 거행하고 (signing ceremony), 선행조건서류 징구, 자금 이체 및 제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agent),

이러한 모든 작업이 무사히 종료된 후에는 지금 지긋지긋던 수개월의 행적을 모두 잊어버리기 위해 간단한 거래개요가 적힌 묘비(tombstone)를 만들어 화일 속에 묻어 버리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설립 초기에는 그 모든 역할에 대한 경험 부재로 신디케이션에 단순 참여하면서 술한 시행착오를 거쳐 하나 하나의 역할을 익혀갔지만, 이제는 돈이 되거나 이름을 널리 알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역할도 마다 않는 철저한 프로의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믿음직스럽게 일해가고 있다.

우리은행의 현지법인은 홍콩 현지법인을 필두로 런던, 자카르타, 싱가포르로 확대되어 이제는 4개 자회사의 자산규모가 10억달러에 달할 만큼 그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현지법인의 활동은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고유의 기능과 함께, 공적기관인 우리은행에 신선한 '상업적 마인드'를 불어넣음으로써 수은이 세계 일류의 경쟁력있는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의미있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창주 / 당시 홍콩 현지법인 과장)

움을 주고 있다.

(2) 런던 현지법인(수은영국은행 : KEXIM Bank (UK) Ltd.)

런던 현지법인은 수은의 자금조달 및 여신업무를 지원함은 물론 수은이 수탁취급하고 있는 外國換平衡基金의 효율적 운용체제를 갖추고, 우리 기업의 EU(당시 EC) 및 동구권 진출에 관련된 현지 금융조달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상업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금융업 취급을 목적으로 1992년 7월 15일 납입자본금 1,000만파운드 규모로 설립되었다.

런던 현지법인은 현지 금융당국인 英蘭銀行의 규제강화 등으로 영업여건이 여타 현지법인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일례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자기자본적합비율(CAR) 규제 기준율이 각각 9%와 8%인 데 비해 영국의 경우는 16%에 이르고 있다. 자본적합률 규제 기준율이 높으면 자산규모의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1993년 12월 3일 1,000만파운드의 증자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총 2,000만파운드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

런던 현지법인은 1994년 Bearings증권의 도산으로 야기된 영란은행의 규제강화 조치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한국계 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자산구조를 재편하고 본점 역외금융팀이 주선하는 거래에 대한 공동참여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영업실적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 1995년 말 현재 런던 현지법인은 총자산 1억 5,300만파운드, 당기순이익 38만 1,000파운드의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3) 자카르타 현지법인(수은인니금융(주) : P.T. KOEXIM BDN Finance)

자카르타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設備投資 및 運營資金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산 기계류 및 자본재의 수요 확대 등의 필요성에 따라 1992년 6월 1일 납입자본금 150억루피 규모로 설립되었다.

자카르타 현지법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현지 임직원들의 활발한 영업활동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금융기관이 성장



수은영국은행 주주총회 후의 다과회 모습 (1995. 4)



자카르타 현지법인의 운영위원회 (1995. 11)

과정에 있고,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만성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요소에 기인하였다.

자카르타 현지법인은 리스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과 合作法人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홍콩 현지법인 및 런던 현지법인과 다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법인과 合作投資 형태만이 허용되어 있음에 따라, 수은은 인도네시아 정부은행인 Bank Dagang Negara(BDN)와 합작(투자비율 : 수은 70%, BDN 30%)으로 자카르타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업종은 리스, 팩토링, 신용카드, 소비자금융, 벤처캐피탈 등 5종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업으로 출발하였으나, 1995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재무성장관령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취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1995년 10월 3일 재무성장관령을 통해 합작금융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기존의 150억루피에서 250억루피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해외차입 억제제를 통한 외채감축 등을 목적으로 해외 차입규모를 기존의 자기자본 15배에서 5배 이내로 축소 제한함으로써, 자카르타 현지법인은 법정 최소 납입자본금 유지를 위한 증자 외에 추가 증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은 기존의 150억루피에서 360억루피(수은 282억

인도네시아 리스업체의 신예

- 수은인니금융(주)

자카르타 현지법인이 1995년에 기록한 3,840만달러의 대출실적은 거액 여신을 위주로 하는 본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미미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건당 30만달러 내지 300만달러 정도의 소규모금융을 위주로 하는 현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실적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확실한 채권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은 기존의 거래은행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이고, 현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수수료가 통상 2~3%의 고율인지라 지급보증서 징수도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출심사는 명실상부한 신용평가에 의한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지 기업의 재무제표도 신뢰성이 의심(흔히 세무용, 은행용, 자체용 등 3종의 재무제표를 유지)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대출심사시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하는데 출장직원들은 흔히 목숨을 건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수마트라, 칼리만탄 등으로의 여행은 여행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펄프공장, 합판공장 및 palm-oil plantation은 밀림 속 오지나 거대한 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이 큰 만큼 대가도 짝짤하다. 이러한 현지조사 경험이 인도네시아 특유의 경영 스타일, 공장관리기법 및 여러 산업부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설립역사가 일천한 우리 입장에서 치열한 대출경쟁을 뚫고 우량기업(주로 상장회사 및 유수 대기업의 자회사)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

선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거절당하기 일쑤이며, 겨우 약속을 얻어내 만난다 하더라도 금리 등 대출조건 교섭에서 약자의 위치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유수의 우량기업(Salim Group, Sinar Mas Group 등의 자회사)들을 우리 법인의 고객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간 견제를 해왔던 일본계 및 유럽계 금융회사도 그들의 대규모 신디케이션에 우리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게 되는 등 우리 법인은 어느새 인도네시아 리스업체에서 가장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회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동훈 / 당시 자카르타 현지법인 과장)

루피, BDN 78억루피)로 증액되었으며, 증자의 결과 합작비율도 기존의 수는 70%, BDN 30%에서 수는 78.3%, BDN 21.7%로 변경되었다.

1995년 말 현재 자카르타 현지법인은 총자산 9,900만달러, 당기순이익 44만 3,000달러의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4) 싱가포르 현지법인(수은싱가포르 종합금융회사 : KEXIM International (Singapore) Ltd.)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동남아 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금융 제공, 외화자금 조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한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 外貨資金 조달지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신디케이트론의 알선 및 참여, 有價證券 발행의 알선 및 참여 등을 목적으로 1995년 9월 1일 납입자본금 1,500만달러 규모로 설립되었다.

현지 임직원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힘입어 설립 4개월만에 총자산 규모가 9,4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영업기반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홍콩 현지법인과 런던 현지법인처럼 100% 당행 단독출자로 설립되었다.

설립 초년도인 1995년 말 현재 총자산은 9,360만달러, 영업수지는 92,000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설립 초기 창업비용 지출이 많은 때문으로, 활발한 영업활동과 현지의 양호한 영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나. 역외금융의 취급

域外金融이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운용하는 금융을 말한다. 수은은 이와 같은 역외금융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현지 사업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輸出補助金에 대한 총체적인 규제 강화 및 국내 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 국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수은은 기존의 제한된 정책금융만으로는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투자 촉진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公的輸出支援

國內社 海外法人대상 자금지원

[illegible]

위주의 여신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국제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은은 1993년 하반기부터 역외금융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수은의 역외금융은 외국환관리 관련 법규의 큰 틀 속에서 역외대출, 유가증권투자, 역외예치금의 형태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에서 자금의 용도, 차입자의 신용상태 등이 감안되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차입자와 보증인의 신용도, 대출기간 및 국제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 건별로 정하는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모두 가능하다.

역외자금은 차주사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역외대출의 지원절차는 사전상당, 대출승인 신청,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 원리금 상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역외자금의 조달은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단기자금과, term-loan 또는 채권발행 등의 형태로 조달되는 중장기자금으로 구성된다.

1996년 4월 13일 현재 역외자산의 구성은 역외대출잔액 2억 5,300만달러, 유가증권투자잔액 500만달러, 역외예치금잔액 2,000만달러로 총 2억 7,800만달러이며, 1995년 말 현재 116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수탁·운용

外國換平衡基金은 해외부문 통화증발을 흡수하고 市場換率制 실시에 따른 외환수급조절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86년에 설치되었으며, 처음에는 한국은행이 기금운용을 전담하였으나, 1988년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1990년 8월에는 수은도 수탁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이 기금으로부터 일부 외화자금을 수탁·운용해 오고 있다.

수은이 외국환평형기금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다수의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려는 정부의 취지 외에도, 수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다년간의 차입경험을 축적해 온 한편 수은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수은이 이 기금으로부터 해외운용자금을 수탁관리하는 금리는 1년 만기 Libid(London interbank bid rate)이며, 1년 단위로 재수탁(revolving)되고 있다. 수은은 이 수탁자금이 公의保有外貨資産인 점을 감안하여, '외화자산 해외운용지침'

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안정성 위주의 해외 유
가증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 수은은 총 3억 1,500만달러를 수탁하여 이 중 본점이 2억 500만달러를 직접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를 홍콩 현지법인에 3,000만달러, 런던 현지법인에 4,000만
달러,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4,000만달러씩 각각 재예탁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수탁자금의 운용을 통한 국제채권시장에서의 투자경험은 수은의 해외 자금
조달 업무에 활용되었고, 투자에 따른 제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스왑, 선물, 옵션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등 수은의 국제금융 업무 발전에 기여하였다
고 평가되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실적

구분	운용수익(천달러)	순수익률(bp)
1990 (8.30~12.31)	376	79
1991	1,793	60
1992	3,350	112
1993	7,874	262
1994	3,136	102
1995	4,168	132

초창기 국제채 딜링 이야기

우리은행의 국제채 딜링업무는 1990년에 한국
은행으로부터 '해외운용자금 지원용'으로 3억달러
를 예탁받음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는 우리은행의
국제금융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당시 총재
형 행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사시킨 것이다.

외화자산 운용에 대비한 작업은 1990년 6월 이
를 위한 준비반이 자금부내에 구성되면서부터 본
격화되었다. 예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은 국제채 투자를 담당할 딜러의 양성
이었다. 이미 수립되어 있던 딜러양성 계획에 따
라, 딜링을 설립요원으로 차출된 필자와 J대리는
LTCB Asia Ltd.와 Shearson Lehman Hutton
Asia Ltd. 등의 기관에서 국제채 투자기법 및 전략
과 채권결제 방법 등을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딜링 연수와 함께 딜링을 설치, 투자지침 및 관
련 장표의 제정, 투자전략 수립 등의 절차가 계획
대로 마무리됨에 따라 9월에는 최종단계로서 열흘
간에 걸친 모의투자를 실시하여 곧 닥칠 실전에 대
비하였다.

이어 9월 27일에는 첫 거래로서 유로 중기채
(medium-term notes) 및 VRN(variable rate
notes)에 대한 투자가 행해지면서 본격적인 국제
채 딜링이 개시되었다. 필자는 처음부터 미 정부

채(US treasuries), 유로 보통채(Euro
straights) 등 고정금리채(fixed income bonds)
투자를 담당하였는데, 변동금리채 투자와는 달리
고정금리채 투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
성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딜러의 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고정금리채에 대한 투자는 홍콩 출장결과를 보
고하는 자리에서 딜링을 설립을 진두지휘하던 C차
장이 흔쾌히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보다
앞서 국제채 딜링을 시작한 국내은행들도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린 과감한 결정이었다.
당시 미국의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미 달러 금리의
하향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에서 변동금리채 투자만으로는 기대 수익을 올리
기 힘들 수도 있다는 판단이 고정금리채 투자 결정
의 주된 이유였다. 또 '채권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금리채 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국제
채 딜링에 관한 한 국내 최고기관이 되고 싶다는
야심(?)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행히 딜링
업무가 개시된 이후 애초 전망대로 미 달러 금리가
3년여간 하락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이 결정은 옳
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고정금리채에 대한 투자는 10월 5일 미 정부채

100만달러어치를 일종매매(day trade)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매매차익은 1/2푼(156.25달러 상
당)에 불과하였지만 첫 거래에서 이익을 냈다는 사
실에 가슴 뿌듯한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새롭다.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거래규모가 늘어남과 함께 거래범위도 채권 일반
도에서 벗어나 OTC 옵션, 유로달러 선물 및 미 정
부채 선물로 확대되었다. 어쩌면 초창기 딜링에서
는 모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거래를 겁없
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딜링팀을 책임지고 있
던 C차장의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되
었다. 지면의 제약상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으나,
딜링팀 설립을 전후한 C차장의 역할과 자세는 우
리은행의 국제채 딜링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필자의 딜링생활은 1992년 해외 학술연수를 떠
나게 되면서 끝났다. 돌아와보면 채권딜러로서의
2년 세월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고달픈 세월
이었음이 분명하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금융시장
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개척자로서의 기쁨과 자
부심을 느끼게 해준 더없이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
각한다.

(이영재 / 당시 자금부 대리)

第4節

政府代行 및 受託業務의 발전

1. 對外經濟協力基金 業務

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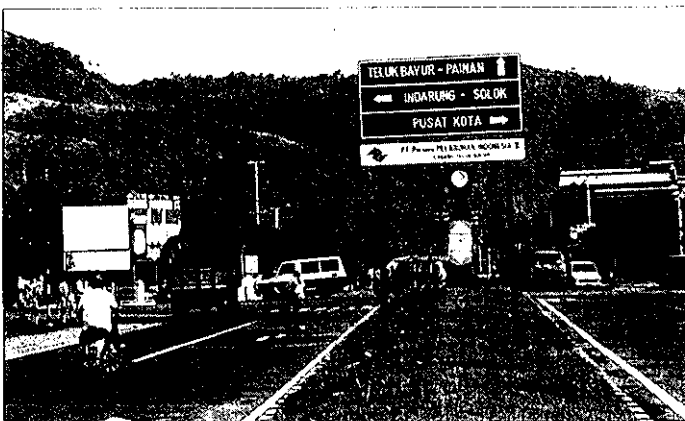
(1)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일반적으로 經濟協力은 투자 및 자본협력 등을 지칭하나, 넓은 의미로는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며, 때로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따르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

력자금은 양허성 자금인 원조와 비양허성 자금으로 대별되고 있다. 원조는 공여국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公的開發援助(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대표되며, 비양허성 자금은 ODA 이외의 공적수출신용, 공적해외투자 및 국제기구의 융자 등 其他 公的資金(OOF : other official flows)과 민간수출신용, 민간직접투자, 은행대출 및 증권투자 등을 지칭하는 民間資金(PF : private plows)으로 구분된다.

실질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자금에 해당되는

EDCF의 첫 지원사업인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ODA는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양허적인 조건으로 지원된다. OECD의 DAC에 의하면, ODA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중앙 또는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또는 그 시행기관이 개도국 또는 다국간 기구에 공여하고, 둘째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이어야 하며, 셋째 그랜트 엘리먼트(grant element) 25% 이상의 양허적 조건으로 공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경협기금' 이라 함)에 의한 경제협력은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 즉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경협기금의 설치 배경과 경위

설치 배경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 무역,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1980년대 중반에는 개도국은 우리나라 교역의 약 1/3을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해외건설 진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 들어 개도국간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협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1980년대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경협기금의 설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이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여론을 수용하여, 개도국의 경제협력 요청에 부응하고 南南協力을 증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많은 개도국들이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자본과 기술 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과 개발모형을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선발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이전 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셋째,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증

대 및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결국 경험기금은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적정 기술 및 설비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남남협력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그 설치가 추진되었다.

설치 경위

1980년대 들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개도국 경제협력 확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3년 1월에 ‘海外協力委員會’를 설립하였다.

해외협력위원회는 1983년 9월과 1984년 12월에 각각 마련한 ‘개도국 협력확대 방안’과 ‘대개도국 경제협력 방향’에서 자본협력 수단의 하나로 경제협력기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제시했다.

그 후에도 해외협력위원회와 외무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기금 설치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1986년부터 경제협력기금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해외협력위원회가 경제기획원의 조직으로 재편된 후 경제기획원 對外經濟調整室은 1986년 3월에 작업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같은 해 6월에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 방안에서는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된 대개도국 협력방안을 검토·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對外經濟協力公社’의 설립안과 ‘對外經濟協力基金’의 설치안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1986년 7월 3일에는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방안’의 구체적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대외경제협력공사의 설립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므로 우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치만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곧이어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은 1986년 7월 11일 최초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안을 마련, 예산실 등 경제기획원 내부의 의견 수렴과 수정을 거쳐 1986년 7월 29일 관계부처에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 8월 27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동

안 문제가 되었던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재무부로 최종 결정되었다.

한편 수은은 1986년 9월 12일 업무연구반을 구성, '대외경제협력기금법령' 및 제반 규정의 제정과 준비 등 경험기금 설치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재무부는 수은의 도움을 받아 경제기획원의 경험기금법 시안을 바탕으로 1986년 9월에 재무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1986년 10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3) 경험기금법의 제정과 개정

1986년 7월 정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경험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경제기획원은 '對外經濟協力基金法'의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경험기금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 문제 이외에도 기금 설치와 관련한 별도 입법의 추진 여부와 경험기금의 회계 등 관리·운용을 담당할 기관의 선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경험기금 설치와 관련한 별도 입법문제에 대해서는 수은법 제18조 2항을 근거로 수은이 경제협력 업무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험기금은 수은이 취급하고 있는 공적수출신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ODA로서 정부간 개발협력자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별도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경제기획원 등의 주장이 우세하여 경험기금법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또한 경험기금 관리 위탁기관의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은이 이미 공적수출신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 수은에 경험기금을 위탁하도록 정부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경험기금법 시안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재무부는 1986년 9월에 경험기금법안을 마련, 같은 해 10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0월 3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경험기금법안은 1986년 11월에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정책질의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국제수지 흑자 전환 전망이 불투명하고 농어촌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등 당시의 경제발전단계로 보아 경험기금의 설치가 이르다는 시기상조론이었으며, 또 하나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후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1986년 12월 2일 제131회 정기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어, 12월 26일에 법률 제3863호로 공포됨에 따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경협기금법은 1986년 12월 제정, 공포된 후 1995년 말까지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의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개정으로, 경협기금법의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정부가 1993년 12월 31일 국채법을 개정하여 각종 정부기금의 채권발행 창구를 國債管理基金으로 일원화하도록 함에 따라, 경협기금도 독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경협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법이 동시에 개정되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추이

	일시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1차 개정	1987. 12. 4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자자특별회계'로 용어 변경 (제12조 2호)	재정투자자특별회계법 (법률 제3982호)에 따라 용어 변경
제2차 개정	1993. 12. 31	국채법 개정에 따라 기금채권 발행 대신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재원 조정	국채법(법률 제4675호)에 따라 기금채권 관련 조항 정비
제3차 개정	1994. 12. 2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 정리 (경제기획원, 재무부 → 재정경제원)	정부조직법(법률 제4831호)에 따른 관계부처 명칭 정리

(4) 경협기금 업무의 개시

경제협력기금부의 창립 주역들 (198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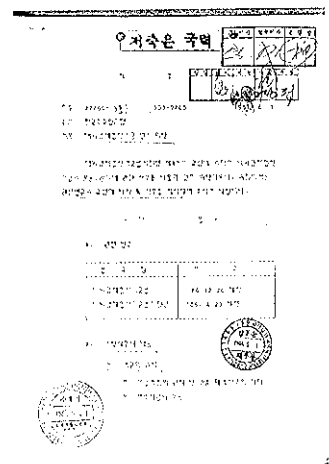
1986년 8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경협기금 설치에 합의하고, 그 다음날 기금운용 주체가 재무부로 결정됨에 따라 재무부와 수은은 경협기금 설치 준비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수은은 경협기금법령 및 제반 규정의 제정과 정비를 위해 1986년 9월 12일 기획부내에 7명으로 구성된 업무연구반을 발족시켰다. 경제기획원이 이미 마련한 경협기금법안을 토대로 재무부안을 작성하는 데 일조한 이 업무연구반은 1987년 3월에 경제협력기금부 설립준비위원회(직원 21명)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경협기금법 시행

령(안)의 마련 등 본격적인 기금법령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1987년 4월 23일에는 경협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141호)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6월 25일에는 경협기금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15호)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정이 마무리되었다.

수은은 법령 제정작업과 병행하여 관련 규정의 제정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7년 5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세칙'이, 1987년 6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 1987년 7월에는 수은의 내규로 경협기금 실무 전반을 다루는 '기금지원업무 취급규정'의 제정 등 경협기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제정·정비해 나갔다.

한편 재무부가 경협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1987년 6월 1일자로 경협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은에 정식으로 위탁함에 따라, 수은내에 經濟協力基金部가 정식으로 발족되면서 경협기금 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이어 1987년 7월 1일에는 최초로 정부출연금 150억원이 경협기금에 납입되었다.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공한 (1987. 6. 1)

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제도의 개요 및 변천

(1) 운용 체계

경협기금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재정경제원장관(당초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基金運用委員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무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등 경제협력 관련 6개 정부부처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경협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 운용계획, 결산보고 사항,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부의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경협기금 운용에 대한 제반 정책의 수립, 연도별 운용계획 수립·집행 및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등을 수행한다. 경협기금 업무는 초기에는 재무부 국제금융국 해외투자과에서 관장하였으나 1987년 11월 9일자로 경제협력국 경제협력과로 이관되었다가, 1994년 정부조직 개편 후에는 재정경제원 대외

경제국 경제협력과가 관장하게 되었다.

외무부는 지원요청 사업의 접수와 지원방침 통보, 정부간 협정의 체결, 기타 경협 기금 업무와 관련한 대외 연락·교섭 업무 등 대외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무부의 경협기금 관장부서는 국제경제국의 경협2과이다.

한편 수은은 경협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협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부로부터 수탁하여, 경협기금의 관리,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계약의 체결, 자금지출 및 사후관리 등 경협기금 지원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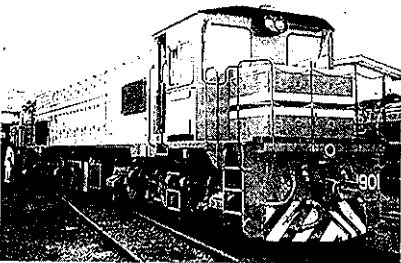
(2) 지원제도의 개요

경협기금의 기본 특성

경협기금은 원칙적으로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중 2국간 有償援助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국은 OECD의 DAC에서 분류하고 있는 개도국으로 정하고 있다.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등 경제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비슷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조건도 공적개발원조(ODA)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경협기금은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ODA로 지원되며, 또한 DAC가 제시하는 ODA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경협기금은 개도국에 대한 차관과 함께 개도국과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海外投融資資金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투융자자금은 대개도국 차관과는 달리 DAC가 분류하는 기타 공적자금(OOF)에 해당되는 경제협력자금이다.

EDCF 자금이 처음으로 집행된 나이지리아
천도차량 현대화사업



지원의 종류

경협기금의 지원은 크게 개도국에 대한 借款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海外投融資資金으로 구분된다.

개도국에 대한 차관은 개도국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공여되는 2국간 정부 베이스의 양허적 차관으로, 그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차관, 기차재차관, 전대차관, 물자차관, 사업준비차관으로 구분된다.

❶ 개도국에 대한 차관

· 개발사업차관

댐, 발전소, 도로, 공장 건설 등 개도국의 개발사업 실시를 위한 설비, 기자재, 서비스, 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통상 사업비용 중 외화 소요자금을 지원하나, 필요에 따라 차주국이 부담하는 現地貨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대부분의 경험기금 차관이 이에 해당된다.

· 기자재차관

개도국의 특정 산업부문 또는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복수 사업 포함)의 실시를 위해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경험기금은 나이지리아의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등 다수의 기자재차관을 지원하고 있다.

· 전대차관

개도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자작농 육성과 같이 다수의 최종 수익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해당 금융기관의 육성에도 기여하는 차관으로 'two-step loan' 이라고도 불린다. 경험기금은 파키스탄의 산업설비 대여사업에 대해 최초의 전대차관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물자차관

개도국의 국제수지 및 국내경제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자(공업 자본재, 공업용 원재료, 비료, 농약, 농기구, 기계류 등)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대부분의 경우 차주국의 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관금액을 할당하며,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계획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차관으로, 그 목적상 자금인출기간이 단기(통상 2년 이내)인 것이 특징이다. 물자차관은 아직은 지원실적이 없다.

· 사업준비차관

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사업성 검토, 사업 설계 및 입찰서류 작성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는 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정부는 1995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의 발전소 건설부문에 2건의 사업준비차관을 지



스리랑카에 대한 개발사업차관 공여계약 체결
(199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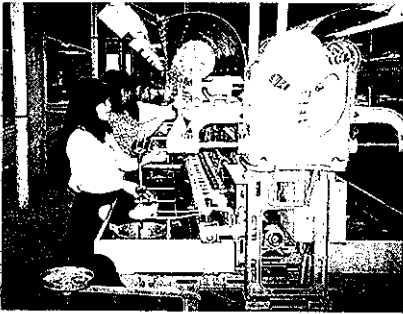


파키스탄과의 첫 전대차관 공여계약 체결 (1993. 5)

원하기로 지원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② 해외투융자자금 대출 및 출자

경협기금의 해외투융자자금 대출이나 출자는 수은 및 기타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해외투융자자금으로 지원한 인도네시아의 양잠사업

해외투융자자금 대출은 대한민국 국민이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도국에 출자 또는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림업, 수산업, 탐광업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 자원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경우이다. 1995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양잠사업 등 2건에 대하여 해외투융자자금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해외투융자자금 출자는 해외투융자를 목적으로 신설되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추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험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아 경협기금의 출자로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의 실시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된다.

(3) 지원제도의 개선

지원절차

개도국의 개발사업에 차관을 지원하는 경우, 世界銀行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개발기구와 마찬가지로 사업 발굴·선정, 사업 준비, 심사, 차주와의 협의, 사업 실시·감리 및 사후평가 등의 순환단계를 거치게 된다.

경협기금은 특성상 주로 개도국의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게 되며, 이러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발굴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정부와 수은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차주국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협기금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협기금 설립 초기에는 사업발굴 방식으로 요청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최근에는 우량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요청주의와 협의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모든 개별사업에 대해 交換覺書(E/N : exchange of note)를 체결하였으나, 1995년에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 다수의 경협기금 차관 자원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包括協定(agreement)을 체결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施行約定(arrangement)을 체결하도록 政府間協定 체결방식을 개선하였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1995년 4월 12일에는 우리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에 최초의 포괄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수은은 경협기금 설립 초기부터 각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국간·다국간 외국 원조기관의 제도 조사·연구를 통해 경협기금 업무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베트남의 도로 개량사업

지원조건

우리 정부는 경협기금 설립 초기에 25%의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되,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조건을 점차 완화하기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협기금은 원칙적으로 금리 연 4~5%, 상환기간 2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등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초기에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동일 조건을 적용,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원화표시 차관을 지원함으로써 국산 재화 및 용역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원화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모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경협기금 설치 후 운용과정에서 지원조건을 점차 완화하고, 주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다. 1987년에 승인된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의 경우 금리 5.0%, 상환기간 20년, 거치기간 5년 등의 지원조건이 적용된 데 반해,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차주국의 대통령령상 제약을 감안하여 금리 연 3.5%, 상환기간 25년, 거치기간 7년으로 예외취급하는 등 지원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1989년 12월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조건 등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개도국을 4개 그룹으로 구분, 지원조건을 달리 적용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즉 개도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 연 2.5~5.0%, 상환기간 20~25년, 거치기간 5~7년을 적용하게 되었다. 1989년 12월 이후 경협기금의 지원조건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1995년 4월에 이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금리를 일부 인하하고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1995년 말 현재 경협기금의 지원조건은 금리 연 2.0~5.0%, 그룹별 최장 상환기간 20~25년, 최장 거치기간 5~7년 등이다.

국제기구와의 협조유자 추진

경협기금은 설립 초기부터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유자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

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8년 10월에 경험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의 협조융자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중도에 보류되고 말았다. 그 후 정부는 1989년 12월 30일 '기금운용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협조융자 절차를 신설하는 등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융자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재무부(현재 '재정경제원')는 1992년 10월 세계은행과 협조융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듬해인 1993년 6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과 協調融資 基本協約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이같이 협조융자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경험기금과 이들 국제기구와의 협조융자를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가 ADB와의 협조융자로 경험기금을 지원키로 한 필리핀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의 경우 수은과 차주간에 차관계약이 체결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험기금의 협조융자 실적은 1995년 말 현재 단 1건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들 국제개발기관과 연례 협의 등을 통해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협조융자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의 필요에 부응한 지원체제 모색

정부와 수은은 초기부터 개도국의 다양한 필요를 수용하여 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政府事業協議團의 파견 등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도국과의 이해 증진과 개발수요 파악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험기금 설치 초기에는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부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사전 예비검토 없이 정부사업협의단을 파견, 개도국 정부와 경험기금 지원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제개발기구 및 주요 원조국이 추진하는 원조 조정 및 협조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실례로 수시로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개도국 원조회의 참석과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거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개도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개도국, 국제개발기구 및 선진국과 다양한 형태의 대화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수은은 1991년 12월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가 주도하는



경제협력 협의회 쿠아라롱가 스리랑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은행장

개발정보교환연구그룹(Informal Study Group on Exchange Information)에 가입하여 개발원조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현재 개발정보교환연구그룹은 INDIX(International Network for Development Information Exchange)로 개칭되었으며, 세계은행, USAID 등 약 250개 개발원조기관의 원조활동 관련자료를 수집, 매년 회원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발전

(1) 경험기금의 조성

1987년 6월 경험기금 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그 다음 달인 7월에 최초의 政府出捐金 150억원이 납입되었다. 뒤이어 1987년 12월 30일에 정부출연금 150억원이 추가로 납입됨에 따라 경험기금 설치 첫해인 1987년에 3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납입되었다. 특히 1989년에는 정부출연금 500억원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금 400억원으로 새로이 900억원이 조성되는 등 경험기금 조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1989년 말에는 경험기금 조성액이 총 1,500억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1993년 중에는 당초 예상보다 경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지출이 부진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됨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감소하였다. 그 후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경험기금 관련기사 (서울경제, 1995. 2. 13)

연도별 경험기금 조성 추이

(단위 : 억원)

	정부출연금	재정차입금	운용수익	계	누계
1987	300	-	9	308	309
1988	200	-	48	248	557
1989	500	400	93	993	1,550
1990	100	-	257	357	1,907
1991	100	500	395	995	2,902
1992	-	100	641	741	3,643
1993	199	100	332	631	4,274
1994	850	200	336	1,386	5,660
1995	1,200	673	439	2,549	7,972
합계	3,449	1,973	2,550	7,972	

* 1995년 만기도래 상환액 27억원을 제외한 순차입액임.

1994년부터 정부출연금 등 기금조성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 말 현재 경험기금 총 조성액은 7,97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출연금 3,449억원, 財特借入金 1,973억원 및 運用收益 2,5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말 현재 자기자본(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은 약 6,000억원으로 총 조성액의 75.3%를 차지하는 반면, 타인자본(재특차입금)은 1,973억원으로 24.7%를 차지하여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은 3 :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타인자본에 해당하는 재특차입금의 차입조건은 금리 연 5.5%, 상환기간 20년, 거치기간 5년으로 경험기금 차관의 지원조건에 비해 오히려 불리하므로 조성액 중 차입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경험기금의 수지기반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으나, 현재는 당초 예상에 비해 정부출연금이 순조롭게 납입되는 등 자기자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경험기금 지원의 확대

최초의 차관 지원

1987년 6월 수은의 경제협력기금부가 공식적으로 발족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 간 지원을 요청해온 8개국 16개 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를 추진하기로 하고 수은에 예비심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수은은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사업,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과 함께 방글라데시(1개 사업), 미얀마(3개 사업), 네팔(3개 사업), 페루(1개 사업), 가이아나(5개 사업), 레소토(1개 사업) 등 총 8개국 16개 사업에 대해 최초로 豫備審査報告書를 작성하여, 1987년 8월 재무부에 제출하였다.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의 주재하에 주로 관계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예비심사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5개국 8개 사업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나머지 6개국 8개 사업은 지원부적격 사업으로 결정하였다.

이같은 관계부처 실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로 정부조사단을 구성하여, 1987년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4개국에 파견하였다. 이 때 정부조사단은 현지 정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 등을 타진한 결과, 2개국 2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은은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 1987년 11월 재무부에 제출

미얀마의 통신망 확충사업



하였다. 뒤이어 정부는 제1회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1987년 12월에 최초의 경협기금 지원사업 2건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후 인도네시아 파당시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 1988년 11월에 政府間 協定이, 1989년 9월에는 借款契約(loan agreement)이 각각 체결되었다. 이는 경협기금 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파당시 도로건설 사업은 사업내용의 조정 등으로 1991년 2월에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가 늦어지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에 대해 12억 800만원이 1989년 11월 30일자로 지출되어, 1987년 6월 경협기금 업무의 개시 이후 최초로 자금지출이 이루어졌다.

경협기금의 요약 대차대조표 (1995년 말 현재)

(단위 : 억원)

명 목			금 액
자 산	유동자산		528,634
	예치금 및 유가증권		519,429
	미수수익		9,205
	투자 및 기타 자산		268,851
	대출금		145,451
	개도국차관		144,283
	해외투융자금		1,168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123,400
	합 계		797,485
자 본 과 부 채	자 본	정부출연금	344,870
		이익배당금	211,055
		당기순이익	43,903
	계		599,828
	부 채	재특차입금	197,330
		미지급비용	327
		계	197,657
	합 계		797,485

지원실적의 확대

경협기금 설립 초기인 1989년까지 경협기금 지원실적은 부진한 양상을 보여, 이 기간 중 정부의 지원방침이 결정된 사업은 총 4개국 4개 사업 292억원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2개 사업(피지의 교량건설 사업, 페루의 어선 현대화사업)은 나중에 차



중국에 대한 제1차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
(1995. 7. 26)

주국이 지원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실질적인 승인사업은 2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지원요청은 활발히 이루어져, 이 기간 중 개도국으로부터의 경험기금 지원요청 사업은 총 27개국으로부터 57개 사업에 달했다.

1990년대 들어 이미 요청된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험기금의 승인규모는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연도별 승인실적은 1993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도국이 이미 지원요청한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고, 특히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OECD 가입 등이 본격 논의됨에 따라 경험기금 지원확대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었으며,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로 등장한 중국, 베트남 등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전환에 힘입어 승인규모는 1994년에 1,000억원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1995년에는 12개 사업에 약 1,5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必死即生

1995년 3월 중국에 대한 제1차 EDCF 차관 지원을 위한 정부협의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받은 느낌은 각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차관제공 오퍼가 쇄도하고 있어 수혜국인 중국측이 오히려 이를 취사 선택하는 buyer's market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행측의 차관 계약안 수정 요구서가 도착하였는데, 무려 34개 조문의 수정을 요구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그후 차관계약이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정부내에서 나오면서 빠른 협상진행을 위한 직접 대면협상의 필요성이 거론되던 중, 중국은행 협상단이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 오게 되었다.

서울에서의 협상은 조문 하나하나에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는 난항의 연속이어서 토요일인 6월 11일에는 새벽 2시까지 협상이 계속되었다.

양측의 가장 큰 이견은 차주의 사업실시 책임에 관한 문제였는데, 논란 끝에 중국 정부로부터 사업실시에 관한 책임을 약속하는 'Letter of Undertaking(이행각서)'을 발급받는 것으로 절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중국정부(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이의 발급에 동의할 지가 걱정이었다. 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우리 은행과 중국은행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었다.

어찌되었건 서울에서의 협상을 마친 우리측(김진호 부장, 곽홍송 차장, 김학수 과장, 필자)은 바로 다음 날 북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북경에서의 2라운드 협상의 중국측 대표는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과장으로, 젊은 나이였지만 일본 전문가로서 합리적이면서도 자신만만한 신진 엘리트 관료였다. 첫날 회의에서 즉시 하고 걱정했던 대로 중국측은 Letter of Undertaking 발급이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후 2차 회의에서도 중국측은 통명스럽게 완강했으며, 특히 회의 중간에 참석한 부국장은 혼자서 1시간 반 동안 비판적 어조로 발언하더니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려 하였다. 이에 김진호 부장은 약 50분 동안 차분하지만 강경한 어조로 논리를 반박하였다. 김진호 부장은 중국 정부의 Letter of Undertaking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관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지도

모르며, 그 대안으로 중국측이 계약상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수은의 연불자금을 주선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 발언을 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온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검토하였는데, 이때 김진호 부장이 必死即生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보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드디어 일정 마지막 날 아침 9시에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전날의 최후통첩성 발언이 주효하였는지 회의 시작 후 먼저 중국측이 Letter of Undertaking 발급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여 왔다. 하지만 끝이은 문안 협의에서 다시 일진일퇴가 거듭되었으나, 상호 양보 속에 오후 3시경 간신히 문안 합의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고는 바로 합석하였던 중국은행과 차관계약 마무리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양측 모두 시간이 촉박함을 인식하고 그때까지 미결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일괄협상(package deal)을 시도하여 저녁 늦게 구두 합의에 이름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강승중 / 당시 경험기금부 대리)

최초 정부 지원 내용

국명	사업명	차관한도 (억원)	지원조건		기타
			금리 (연)	상환기간 (거치기간)	
인도네시아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22km 2차선 포장도로 건설 지원)	105 (98)*	3.5%	25년(7년)	지원조건 예외취급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 (철도객차 50량 교체 지원)	80	5.0%	20년(5년)	

*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차관한도를 98억원으로 조정

지원대상의 다변화

① 승인실적

1995년 12월 말 현재 경협기금의 승인액은 46개 사업 4,888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이 2,746억원으로 약 56.2%를, 동유럽 지역이 1,007억원으로 20.6%를 각각 차지하고, 다음으로 아프리카(12.9%), 중동, 중남미 등의 순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개 사업에 91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인도네시아(593억원), 루마니아(395억원), 베트남(382억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통신부문이 1,635억원으로 33.5%, 운송부문이 1,348억원으로 27.6%, 관개·급수부문이 11.2%를 각각 차지하고, 다음으로 에너지(8.1%), 교육(7.6%) 및 제조업, 농림수산업 등 기타 부문이 12.0%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기금지원 승인 실적 (1987. 6. 1 ~ 1995. 12. 31)

(단위 : 억원)

	1987~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전체
국가수	4	3	6	7	2	6	4	24
사업건수	4	4	6	7	2	11	12	46
금액	292	238	580	754	504	1,028	1,490	4,888

* 해외투융자사업(2개국 2개 사업)과 차주국의 요청으로 철회된 차관사업(피지의 교랑건설 사업, 페루의 어선 현대화사업 및 불가리아의 컬러TV 공장건설 사업 등 3개국 3개 사업) 포함

② 자금지출 실적

경협기금의 資金支出은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에 대해 1989년 11월에

경협기금의 지역별 승인 현황 (1995년 말 현재)

(단위 : 억원)

지 역	승인액	구성비(%)
아시아	2,746	56.2
동유럽	1,007	20.6
아프리카	628	12.9
중 동	189	3.8
중남미	185	3.8
대양주	133	2.7
합 계	4,888	100.0

경협기금의 업종별 승인 현황 (1995년 말 현재)

(단위 : 억원)

업 종	승인액	구성비(%)
통 신	1,635	33.5
운 송	1,348	27.6
관개·급수	547	11.2
에너지	396	8.1
교 육	373	7.6
기 타	589	12.0
합 계	4,888	100.0

12억원이 지출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5년 말 기준의 경험기금 자금지출 총액은 1,46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9억원이 회수되어 자금지출 잔액은 1,4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속해 있는 동구 지역에 645억원이 지출되어 전체의 44.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아프리카(368억원), 아시아(340억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통신분야에 740억원(50.6%), 운송분야에 383억원(26.2%), 에너지 부문에 140억원(9.6%)이 각각 지출되었다.

경험기금은 주로 개도국의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이들 사업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승인실적에 비해 자금지출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승인된 사업에 대한 자금지출이 본격화되면 자금지출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南北協力基金 業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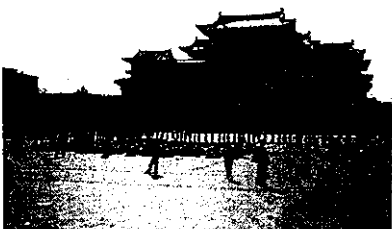
가. 남북협력기금의 설립

(1) 기금의 설치배경 및 경위

정부는 南北關係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한관계를 종전의 대결구도에서 공존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對北韓 開放政策의 일환으로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宣言'(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7·7선언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의 상호 교류·방문을 허용하고, 남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조하는 등의 정책방향이 제시됨으로써 남북한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 후 정부는 7·7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988년 7월 13일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제의, 7월 15일 남북교육당국자회담 제의, 7월 16일 전향적인 대북 관련 외교정책 시행방침 발표, 9월 3일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개방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평양 인민궁전 앞에서 집단체조를 준비하는 어린이들



특히 1988년 10월 7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성명을 통해 ①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허용 ②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중계 허용 ③ 북한물자의 원산지 표시 및 상표 부착 허용 ④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미부과 ⑤ 남북 경제인 상호 접촉 및 방문 허용 ⑥ 북한선적의 상용선박 입항 허용 ⑦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7가지 주요 항목을 담은 '對北 物資交流에 관한 基本指針'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의 교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방향과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법률 제4239호)이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남북한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자로 '南北協力基金法'(법률 제4240호)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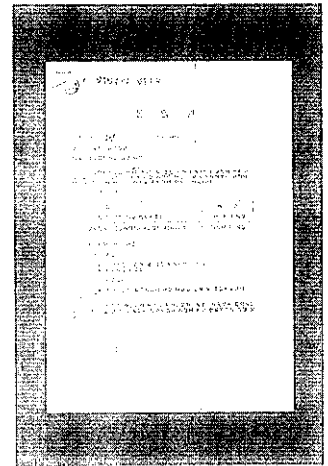
(2) 남북협력기금 업무의 수탁

수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에 따른 정부 위탁사무의 취급을 위한 준비기구로 '南北協力基金 受託準備班'을 1990년 9월 25일 설치하여 정부위탁에 대비한 업무에 착수하였다.

1990년 12월 31일 南北協力基金法 施行令이 제정되어 1991년 1월 4일자로 통일원이 기금 업무를 수은에 정식으로 위탁함에 따라 수은은 1991년 2월 1일 남북기금 부를 정식 발족시키고, 이어 3월 20일 정부로부터 250억원이 최초로 출연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수탁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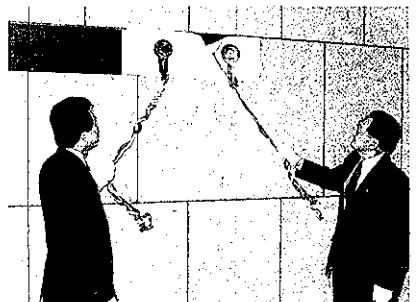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원장관이 한국수출입은행장(기금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금 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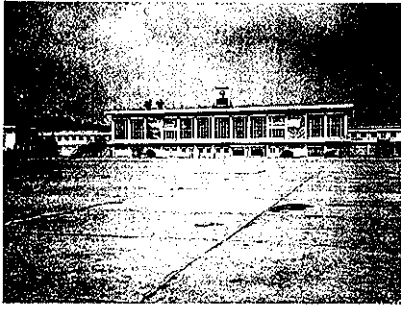
수은은 위탁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으로서 1991년 3월 20일 업무 수탁과 동시에



통일원의 남북협력기금 위탁 공한 (1991. 1)

남북협력기금 원판식 (1991. 2)





평양의 관문인 순안 비행장 전경 (1992. 4)

기금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남북협력기금 회계사무처리요강'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을 마련하였으며, 10월 2일에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남북협력기금 업무취급요강'을 제정함으로써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 및 내규

법령 및 내규명	제정일	비 고
남북협력기금법	1990. 8. 1	법률 제4240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7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1991. 4. 17	통일원고시 제91-1호
남북협력기금 회계사무처리요강	1991. 3. 20	한국수출입은행 내규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	1991. 3. 20	"
남북협력기금 업무취급요강	1991. 10. 2	"

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체제의 개요

(1) 기금의 운용체계

남북협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정부의 주무부처는 통일원으로, 통일원장관은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특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보고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한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일원에 설치된 협의기구로서, 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며,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995년 12월 현재 이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서 재정경제원차관, 통일원차관, 외무부차관, 내무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통상산업부차관, 문화체육

북한·중국간 관문인 圖們·南陽 1급 세관 전경 (1995. 10)



부차관, 공보처차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국가안전기획부 제3특별보좌관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의 수탁관리업무

수은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으로서 기금의 관리, 지원사업의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의 수탁관리 업무내용

업 무 명	주 요 내 용
기금의 관리	· 기금계정의 관리 및 각종 회계사무의 처리 · 여유자금의 운용
사업심사	· 지원요청된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 남북한 주민 왕래 비용의 지원,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 자금의 지원 및 교역·경제 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의 집행 및 사후관리 · 물품의 반출·임대금의 대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등의 집행 및 사후관리 (융자의 실행, 원리금상환 등의 관리) ·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 업무 (금융기관 손실 보전, 금융기관 융자, 미경제채권 인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등의 집행 및 사후 관리
기 타	· 기타 관련 법규 및 통령 등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기금 수탁관리자)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의 취급



버스를 기다리는 평양 시민들 (199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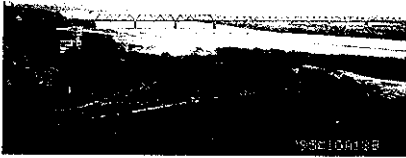
(2) 기금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제도의 종류

남북협력기금은 ① 남북한간 주민 왕래 및 문화·학술·체육협력 등 인적 교류사업에 대한 부상 지원 ②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등 경제적 교류사업에 대한 손실보조, 융자, 채무보증 및 보조금 지원 ③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대금결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 등으로 대별된다.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8강에 진출하였던
코리아팀 (1991. 6)





두만강 철교(1995. 10)

· 주민 왕래 지원

남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 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눈물젖은 두만강

나고야에서 일박을 한 UNDP 한국대표단 일행은 1992년 4월 28일 일본 대표단과 함께 조선민항 TU154B 중형 여객기에 올랐다.

비행기는 소련 영토를 거쳐 북한의 최북단 서수라를 경유하여 평양 순안 비행장에 도착했다. 예상외로 길어진 입국수속을 마치고 평양 시내를 경유, 평양 교예극장의 서커스를 관람하러 갔다.

잠깐 스치면서 본 평양 시내 모습에는 주로 청량음료점의 간판과 물고기상점, 남새(채소)상점, 리발소와 미용실 등이 눈에 띄었다. 간간히 책방이 보였는데 우리 일행이 묵었던 고려호텔 책방에 들러보니 김일성 최고령과 주체사상에 관한 책, 그리고 관광안내 서적을 제외한 다른 책은 거의 볼 수 없었다.

4월 29일 오후 2시 우리 일행은 평양역을 출발, 나진행 특별 전용열차에 올랐다. 민둥산이 되어 버린 철로 주변의 산야, 허름한 도시와 시골 마을들은 평양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농촌은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이었으며 어떤 도로는 차 2대가 비켜가기 힘들 정도로 좁았다. 집들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너와지붕에 나무로 된 굴뚝과 나무로 만든 울타리, 그리고 울타리에는 무수한 마른 나뭇가지들이 꽂혀있었다. 북한 안내원은 궁금해하는 필자에게 단콩나무를 기르기 위해 울타리에 나무를 꽂았으며 여름에는 그들의 역할도 하는 일석이조의 착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하였다.

꼬박 18시간을 달려 나진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나진항과 선봉항 시찰을 마치고 선봉군 굴포리 해안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영덕계를 연상시키는 붉은 대게와 밥조개, 그리고 밥조개 껍데기를 후라이팬으로하여 고체연료로 데운 신선로, 조개죽 등 인상적인 해변만찬을 끝낸 우리 일행은 우리나라 최북단 서수라가 바라보이는 우암리 전망대에서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받은 다음, 4월 30일 오후 4시 우리의 최대 관심지역인 두만강으로 향하였다.

실향민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소주 한잔에 즐겨부르는 '눈물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한때는 왜곡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수난이 서려있었던 두만강, 이 지역이 이제는 동북아 협력의 중핵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두만강을 향하였던 열차는 강을 횡단하지 못하고 북한의 영토권이 미치는 강 중앙에 열차를 세우게 되었다. 두만강의 흙을 한 줌 쥐어보기를 고대했지만, 철교가 너무 높아 강변에 내릴 수 없었던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았다.

5월 1일 아침 7시 30분쯤 경성역에 닿은 우리는 김책제철소가 있는 청진서항과 한양은 만경봉호가 정박하고 있는 청진동향을 둘러보았다.

항만시찰을 하는 동안 3일밤을 열차에서 보낸 탓에 5월 2일 한밤중에 평양역에 도착한 우리 일행들은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다. 고려호텔로 향한 우리 일행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두만강 지역개발을 위한 평양 국제회의 때문에 대부분 잠을 설치게 되었다.

(배종렬 / 해외투자연구소 선임연구원)

· 손실보조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남한주민이 손실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90% 이내에서 손실을 보조한다.

·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90% 이내에서 융자한다.

· 반출·반입자금 대출

남한주민이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90% 이내에서 융자한다.

· 채무보증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취급한다.

· 금융기관 지원 업무

- 금융기관 손실보전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융자 및 대금결제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보전한다.

- 금융기관 융자자금 지원

남북한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을 지원한다.

- 미결제채권 인수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 계좌(청산계정)에 미결제된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인수한다.

-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인수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금융기관에 매각한다.



남북한 단일팀이 참가한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1991. 3)

·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융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 보조금 지급 등)한다.

지원조건

남북협력기금은 무상지원, 융자, 손실보전,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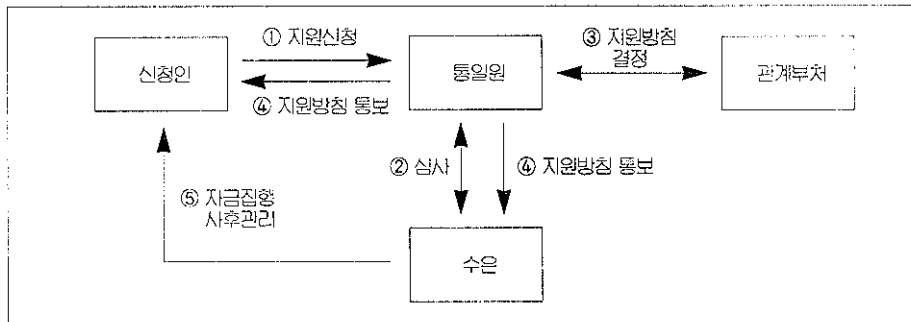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조건

자금종별	지원한도	이자율	기간	담보
주민왕래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무 상		
문화·학술·체육 협력 지원 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예상수익금 제외)	무 상		
손실보조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관련 손실의 90% 범위내(예외 인정)	업무취급수수료 : 0.1%	대금결제기간 또는 사업기간 이내	-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계약금액의 90% 범위내(예외 인정)	연 5.0%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남한내 담보 또는 주식, 채권, L/C, L/G, P/N 등
반출·반입자금 대출	계약금액의 90% 범위내(예외 인정)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사업별로 정함.		
채무보증	피보증인과 융자은행간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함	당해 거래 융자기간에 30일 기산기간 이내	남한내 담보 또는 주식, 채권, L/C, L/G, P/N 등
금융기관 손실보전	손실금액 범위내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 별도로 정함		
금융기관 융자금	융자취급액 범위내	"		
미결제채권 인수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액 범위내	"		
복합원화의 인수 및 매각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 별도로 정함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남북한 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결정에 따름			

지원절차

남북협력기금의 支援節次는 지원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남북기금의 지원 절차도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통일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통일원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수은은 통일원에 사업타당성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통일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수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수은은 지원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운용 및 지원 실적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

남북협력기금법(제4조) 및 그 시행령(제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①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②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여타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③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④ 기금의 운용수익금 ⑤ 기금

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1995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1991	1992	1993	1994	1995	누계
조성	정부출연	25,000.0	40,000.0	40,000.0	40,000.0	240,000.0	385,000.0
	정부외출연		-	4.0	-	119.5	123.5
	운용수익	576.4	5,088.7	6,302.1	8,947.6	15,397.5	36,312.3
	계(A)	25,576.4	45,088.7	46,306.1	48,947.6	255,517.0	421,435.8
운용	기금지원	2,217.7	551.4	-	-	182,403.7	185,172.8
	운용비용	250.0	270.0	270.0	270.0	200.0	1,260.0
	계(B)	2,467.7	821.4	270.0	270.0	182,603.7	186,432.8
순조성액(A-B)		23,108.7	44,267.3	46,036.1	48,677.6	72,913.3	235,003.0

남북협력기금 민간 출연현황 (1995년 말 기준)

(단위 : 원)

출연지	출연일자	출연금액
건흥초등학교 전교생 (경남 사천군 곤양면)	92.1.16	65,310
이부영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93.12.7	3,000,000
경북 상주군 자유총연맹 부녀회	93.12.27	1,018,950
세계장교회 회원	95.1.12	2,045,000
최진영 (경기도 화성군 대안읍)	95.4.19	7,631,000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95.9.28	19,072,500
국민투자신탁(주) 통일소망신탁 기금자	95.11.20	90,732,100
계	7건	123,564,860

의 운용관리과정 또는 남북 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금조성은 1991년 기금 설치 후 1995년 말까지 대부분 政府出捐金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5년에는 당초 550억원이 출연될 예정이었으나 대북한 쌀 15만톤 무상지원과 관련하여 1,850억원이 추가됨으로써 2,400억원이 출연되었다.

政府外 民間出捐은 1992년 1월 16일 경남 사천군 곤양면 소재 건흥초등학교 전교생이 65,310원을 출연한 것을 시초로 1995년 말까지 총 7건에 1억 2,356만 4,860원이 출연되었다. 1995년 말 현재 출연금과 운용수익에서 기금지원액과 운용비용을 제외한 기금의 순조성액은 약 2,350억원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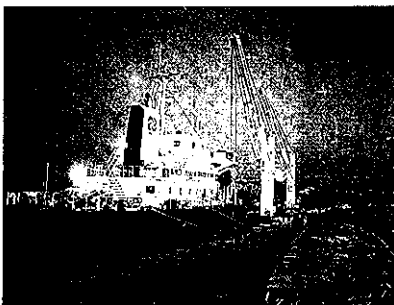
(2) 기금의 지원실적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3월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한 것을 효시로, 6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참가 남북한 단일팀 구성 사업에 7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에는 (주)천지무역이 북한에 쌀 5,000톤을 반출하였으나 북한측으로부터 쌀 대금에 상응하는 물자(석탄, 시멘트)를 받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실 12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다.

1992년 9월에는 8·1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에 5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그 후 북한의 核問題 대두로 남북관계가 긴장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기금의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 후 1994년에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간의 긴장관계가 다소 해소됨에 따라 북한의 식량 부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1995년 6월 17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남북한간 쌀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쌀 15만톤을 무상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9월 4일 쌀 수송에 소요된 경비 중 일부인 35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그 후 12월 21일 쌀 대금과 해상운임 1,788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기금의 총 지원액은 5건 1,851억 7,300만원에 달하였다.

북한에 지원되는 쌀 선적 장면



남북협력기금 지원실적 (1995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지원내용	지원자금 구분	지원일자	지원금액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참가 단일팀 구성 사업	체육협력 지원	1991. 3. 22	164
제8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참가 단일팀 구성 사업	체육협력 지원	1991. 5. 4	786
(주)전지무역의 대북한 쌀 반출 관련 손실 보조	손실보조	1991. 10. 23	1,268
8·1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사업 *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1992. 9. 8	551
대북한 쌀 15만톤 무상지원 사업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1995. 9. 4 1995. 12. 21	3,515 178,889
합 계	5 건		185,173

* 본 사업은 무산되었으나 사업준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자금을 지원한 것임.

3. 輸出保險 業務의 발전과 독립

가.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輸出増大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이래 정부는 각종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수출규모의 증가와 함께 L/C 거래뿐 아니라 D/A, D/P 등으로 수출거래 형태가 다양화되고 수출시장도 선진국 중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도 동시에 증대되었다.

따라서 수출거래 형태 및 수출시장의 다양화를 통해 수출확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輸出代金 回收不能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보험에는 민간 상업기관으로서는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위험이 수반되므로, 여타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 담당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고 하겠다.



대한재보험공사의 수출보험 개업식 (1969. 2)

輸出保險制度는 이처럼 수출증대가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던 196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수출보험법의 제정 및 개정

(1) 수출보험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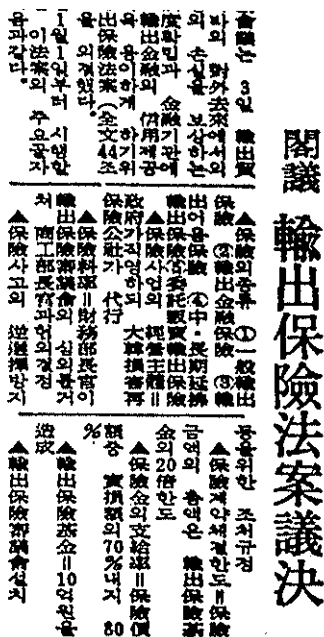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2차연도인 1968년 초에 수출 주무부처인 상공부가 무역업계, 금융계, 학계 및 기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부터 구체적인 도입·운영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출보험제도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운영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공부보다는 보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가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어, 보험운영에 대한 관장은 재무부가 맡되 그 실질적인 운영은 당시 국내에서 유일한 정부투자기관으로 재보험을 취급하고 있던 大韓再保險公社가 대행토록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어 1968년 6월에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호로 輸出保險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69년 1월 21일에는 대통령령 제3743호로 수출보험법 시행령이, 같은 해 1월 30일에는 재무부령 제562호로 수출보험법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다.

(2) 수출보험법의 개정

수출보험 운영의 목적, 보험종목, 보험자(정부)와 피보험자의 권리, 업무사항 및 경영재원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수출보험법은 제정 당시 총 9장 4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법 제정 이후 17년이 경과되는 동안 5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총 9장 62개조(실제로는 추가조항으로 인해 13장 84개조)와 부칙 4개조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 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① 수출보험제도의 확대 개편을 위한 각종 보험종류의 담보범위 확대, 인수한도의 기금배수제 철폐와 보험금지급률 인상 및 보험



수출보험법 제정 관련기사
(서울경제, 1968. 9. 4)

종목의 신설 ② 효과적인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수출보험 운영주체 즉 정부의 수출보험 관계부처 및 대행기관의 변경 ③ 수출보험제도의 확충과 운영체제의 개선·강화를 위한 수출보험심의회의 설치기관 변경 및 수출보험 전담기관(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치근거 설정 ④ 위험분산의 적정화를 위한 재보험의 실시근거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다. 수출보험 운영체제의 변천

(1) 대행체제에 의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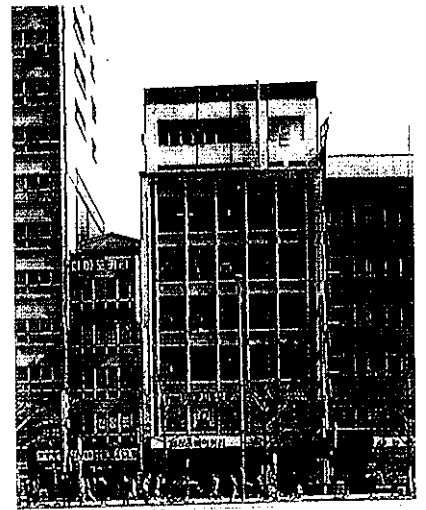
대한재보험공사

1969년 1월 17일 재무부로부터 수출보험 업무의 대행지시를 정식으로 접수한 이후 대한재보험공사는 1969년 2월 15일 정부로부터 최초의 輸出保險基金으로 2억원을 수령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출보험 운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수출보험 업무 개시 당시 3개과의 분장업무를 살펴보면, 관리과는 기금의 운영·관리, 예산 편성 및 통제, 결산, 일반사무 및 경리를 담당하였고, 업무과는 보험계약의 인수와 손해사정 및 보상액의 결정을, 신용조사과는 외국 수입자의 신용조사 및 신용도 판정, 신용조사기관과의 업무 제휴, 보험제도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였다. 수출보험의 운영조직은 1970년 2월 신용조사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업무과에서 수행하는 등 수출보험 업무 개시 초기에는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수출보험 업무가 활기를 띠면서 1974년에는 신용조사과를 부활하는 한편, 영남지역 수출업체에게 부보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출보험의 이용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부산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 1월 수은으로 대행업무가 이관되기까지 대한재보험공사에서의 수출보험 운영조직은 1부 3과, 1사무소 체제였다.

한국수출입은행

정부는 수은의 설립과 함께 수은의 中長期金融 및 海外投資金融 지원과 연계하여 금융의 담보역할을 하는 수출보험 측면에서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1976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을 개정하여 대한재보험공사에서 대행하던 수출보험 업무를



수출보험 업무의 최초 대행기관인 대한재보험공사

1990년대 들어 조세와 금융 등을 이용한 보호주의 수단 남용의 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를 추구하는 UR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적 규제강화로 인해 공적금융, 세제 등의 직접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수밖에 없어 수출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러한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수출보험이 통상마찰의 우려 없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률(수출보험 가입액/총 수출액)은 1990년대 초 겨우 3%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선진국의 수출보험 활용률이 20~30%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보험의 역할 증대에 대비하여 수출보험 운영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1985년 수출보험법의 개정으로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한 韓國輸出保險公社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공사설립 문제는 1992년 3월 초 경제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설립에 대한 집중 토의가 있었으며, 상공부가 1992년 설립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등 정부 관련부처가 이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경제장관회의가 끝난 5일 후인 1992년 3월 12일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계획이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됨으로써 설립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 (1992. 7)

라. 수출보험 지원제도의 확충

(1) 수출보험 종목의 개발

초창기 수출보험은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 연불수출보험 및 위탁판매 수출보험 등 5개 종목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다섯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해외투자보험, 해외건설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및 수출대금금융보험 등을 신설하여 총 9개 종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새로운 보험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갔다.

이 가운데 해외투자보험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장벽 타개 및 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하여 제2차 법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해외건설



가봉國아파트 百貨店建立費 1천 2백50만弗

雙龍社 再保公社
 保險料 2억 9천

해외투자보험 첫 인수

(서울경제, 1976. 10. 26)

[illegible]

중장기 연불수출보험의 포괄보험제도 시행

(매일경제, 1980. 6. 26)

공사보험도 건설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마련되었다.

또한 수출보증보험은 자본재 수출이나 해외 건설수출 등과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의 원활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4차 법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수출대금금융보험은 1978년 6월 수은이 購買者信用制度를 도입·시행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제5차 법 개정시 신설되었다.

(2) 포괄보험제도의 운영

包括保險은 보험계약자가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만을 선택적으로 부보하는 개별보험과 달리, 사전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포괄보험특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 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부보토록 하며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는 '부보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보험자도 특약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므로, 보험자측에서 보면 보험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의 역선택 방지를 통한 위험분산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자로서도 보험가입의 확실한 보장 아래 과감한 수출을 추진할 수 있고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포괄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개별보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80년 7월 중장기연불수출보험과 수출보증보험에 포괄보험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이를 수출어음보험 및 수출대금금융보험으로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3) 수출보험요율의 개정

보험료率は 업무 개시 후 8차에 걸쳐 조정되었다. 보험요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종 보험종목에 대한 요율의 신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요율의 인하, 보험요율 체계의 합리적 정비 및 특별합인율의 도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 수출보험의 운영실적

(1)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정부가 초창기에 출연한 기금규모는 개업 당시인 1969년에 3억원, 그 이듬해 2억원으로 총 5억원이었다. 그 후 1975년까지 정부로부터 추가출연이 없다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10억~50억원씩 출연되었고, 공사 설립계획이 거론되기 시작한 1990년을 전후로 基金出捐 규모가 200억~40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여 1992년 말에는 535억원으로 늘어났다.

수출보험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정부출연 (A)	기타출연 (B)	이익전입액 (C)	손실보전금 (D)	합계 (A+B+C-D)	총누계
1969	300	-	-	-	300	300
1970	200	-	33	-	233	533
1971	-	-	71	-	71	604
1972	-	-	130	-	130	734
1973	-	-	254	-	254	988
1974	-	-	6	-	6	994
1975	-	-	194	-	194	1,188
1976	1,000	-	101	-	1,101	2,289
1977	2,000	-	-361	-	1,639	3,928
1978	3,000	-	212	-	3,212	7,140
1979	2,500	-	-	-	2,500	9,640
1980	3,000	-	-	-	3,000	12,640
1981	5,000	-	-	-	5,000	17,640
1982	950	-	-	-	950	18,590
1983	1,000	-	-	-	1,000	19,590
1984	-	-	-	-	-	19,590
1985	1,000	-	-	-	1,000	20,590
1986	1,000	-	-	-	1,000	21,590
1987	1,000	-	-	-	1,000	22,590
1988	2,000	-	-	-	2,000	24,590
1989	17,000	-	-	15,000	2,000	26,590
1990	7,000	-	-	5,000	2,000	28,590
1991	42,900	5,000	-	22,900	25,000	53,590
1992	20,000	-	-	20,000	-	53,590
누 계	110,850	5,000	640	62,900	53,590	



수출보험제도 설명회 (1980. 12)

(2) 수출보험 인수실적의 확대

1969년부터 수출보험공사가 독립되던 해인 1992년까지의 수출보험 인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인수건수는 90,863건, 총 인수금액은 14조 5,091억원에 달하여 연평균 건수 3,786건, 금액은 6,04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수금액의 종목별 비중은 수

출어음보험 34.0%, 중장기연불수출보험 29.3%, 수출보증보험 19.6%, 해외공사보험 9.1% 및 해외투자보험 6.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보험 인수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인수실적(1969~1992)	
	건수	금액(%)
일반수출보험 *	256	1,815 (1.3)
수출금융보험 *	270	76 (0.1)
수출어음보험	87,615	49,455 (34.1)
중장기연불수출보험	316	42,590 (29.3)
수출대금금융보험	1	9 (0.0)
위탁판매수출보험	16	0 (0.0)
해외투자보험	114	9,460 (6.5)
해외공사보험	43	13,192 (9.1)
수출보증보험	2,232	28,494 (19.6)
합 계	90,863	145,091 (100.0)

* 단기 및 중장기 선적전 포함

행 이후 1980년까지 이용되었으나 그 후로는 전무한 상태를 보이다가 일반수출보험만 1988년 이후 다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에 도입되어 1976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해외투자보험은 점차 인수가 증가하여 1983~1987년 중에는 연평균 1,200억원이 인수되었으며, 1988~1989년에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1977년에 도입되어 1978년부터 인수가 시작된 해외공사보험은 중동 산유국의 건설공사 발주에 힘입어 1979년에는 2,049억원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그 해 인수실적 2,591억원의 79.1%를 차지하는 등 1982년까지 활발히 이용되었으나,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와 함께 1983년 이후에는 인수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증서(bond)를 발행하는 외국환은행의 요청에 의해 1979년 도입된 수출보증보험은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와 함께 활용이 둔화되었다. 또한 1981년 도입된 수출대금금융보험은 1988년 수은의 수리남에 대한 전대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처음 이용되었으나 그 후로 실적이 없다. 한편 포괄보험의 운영실태를 종목별로 보면, 수출어음보험의 경우 1978년 최초로 포괄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자격요건 및 인식부족 등으로 1988년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9년 4월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 실시요령'의 시행 이후 일련의 제도개선을 거쳐 포괄보험제도의 정착이 급진전되었다.

보험종목별 이용추이를 분석해 보면, 1969년 도입된 5개 보험종목 가운데 수출어음보험과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은 초기부터 꾸준히 활용되어 왔으나, 위탁판매수출보험은 1971~1972년의 2년 동안만 미미한 인수실적이 있었고, 일반수출보험 및 수출금융보험은 시

중장기수출보험 포괄보험제도는 1981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1984년 중에는 연간 총 인수실적의 84.2%를 점유하는 등 활황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조선업계의 자금난 등으로 연불방식의 수출선박에 대한 포괄보험을 정부가 3년간 유예(1986~1988년)함에 따라 인수실적이 한동안 저조하였다.

(3) 수출보험 활용률의 추이

수출보험 활용률

(단위 : 억달러)

	수출액*	보험인수액	활용률(%)
1970	10.5	0.09	0.9
1975	62.5	0.36	0.6
1980	257.6	7.40	2.9
1985	349.7	15.00	4.3
1990	717.9	23.60	3.3
1992	795.6	26.60	3.3

*1980년부터는 건설수출액을 포함

수출보험 활용률은 총 수출액 중 수출보험 인수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수출보험의 수출진흥 효과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로 쓰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률은 1970년대에는 연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상품수출 활용률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중동 건설공사의 호조로 해외건설공사보험 및 수출보증보험의 인수실적이 급증하면서 1981년과 1982년에는 수출보험 활용률이 5~6%대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에도 수출보험 활용률은 3~4%를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상품수출관련 보험수요의 증감에 따라 활용률의 하락 및 상승이 반복되면서 1992년에는 3.3%의 활용률을 나타냈다.

(4) 사고보상 및 사후관리

수출보험 업무가 개시된 1969년 이래 1992년까지 지급한 보험금은 총 958건에 1,689억원으로, 수입보험료와 대비한 손해율은 236.1%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입보험료의 약 2.4배를 수출자 및 외국환은행에 보험금으로 지급했음을 의미한다. 지급연도별로 볼 때 1989년 이전까지는 손해율이 100%를 넘는 연도가 3개연도(1975년, 1977년, 1989년)에 불과하며, 1969년부터 1989년까지의 평균 손해율은 32.8% 수준에 그쳤다.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의 손해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주)대우의 미

체제 등을 규정한 輸出保險 國別信用度 評價方法書가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2년 3월 1일 수출보험 신용조사규정의 제5차 개정시 동구권 국가의 개방화 및 정부의 공산권에 대한 수출증대 노력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보험 부보요청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산권 국가에 대한 국별신용도 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기관으로서 최초로 1983년에 중공, 소련, 체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동독, 불가리아 등 7개 공산권 국가에 대하여 국별신용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매년 약 20개국을 평가하고 있다.

수출신용정보센터의 운용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진흥을 위한 간접적 지원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보험 종목의 운영 이외에 해외의 각종 신용정보자료를 입수·분석하여 이를 국내 수출업체에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3년 10월 수출보험2부내에 '수출신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다. 수출신용정보센터는 해외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내 수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무료)되고 있으며, 회원자격은 ①국내에 사무소를 둔 수출업체(수출관련 생산업체 포함) ②금융기관 및 수출유관기관으로 하고 있다.

해외 신용조사기관과의 업무제휴

수입자 신용조사는 통상적으로 해외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해외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이용할 경우 포괄적인 자료 입수와 광범위한 지역의 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별 수입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기 때문에 수입자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해외 신용조사기관과의 업무제휴는 1969년 2월 25일자로 세계 최대의 신용조사 전문기관인 미국의 Dun & Bradstreet사와 처음 협약을 체결한 이래 세계 각국의 주요 신용조사기관들과의 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신속·정확한 신용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83년 8월 23일자로 한국데이터통신의 회원으로 가입, 미국 소재 세계 최대의 Dialog Data Bank를 이용한 미국의 D&B사와 온라인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 신용조사기관들로부터의 신용조사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고 있어 업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게 되었다.



1983년 설치된 수출신용정보센터(위) 및 관련기사 (매일경제, 1983. 5. 27) (아래)

바. 수출보험 업무의 국제화

(1)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Berne Union) 가입



서울에서 개최된 Berne Union 운영위원회 회의
(1984. 10)

우리나라는 1975년에 Berne Union 회원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업무를 대행할 당시인 1976년 2월 서독 뮌헨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업저버 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았다.

이듬해인 1977년 1월 수출보험 정부대행기관이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달 스위스 쥐리히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수은이 업저버 자격승계를 인정받았고, 총회에 2회 이상 참석하면 정회원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당시의 연맹 규약에 따라 같은 해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34차 연차총회에서 정회원이 되었으며 동시에 輸出信用保險委員會에도 가입하게 되었다. 이어 1978년 당시 서독의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5차 연차총회에서 투자보험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Berne Union 가입 이후 각종 회의와 합의사항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1981년과 1988년의 두 차례에 걸쳐 運營委員會(Management Committee) 위원이 되었고 1994년 4월 멕시코 회의에서 다시 운영위원으로 피선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회의와 연차총회를 각각 한 차례씩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서울에서의 운영위원회는 1982년 2월 홍콩에서 개최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84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서울 회의에는 운영위원회의 의장기관인 서독의 Hermes를 비롯하여 14개국 14개 기관 대표 25명과 Berne Union 사무총장 등 27명이 참석하였다. 서울 연차총회는 미국수출입은행, 영국의 ECGD, 일본의 EID/MITI 등 30개국 36개 정회원기관과 IMF, IBRD, IDB 등 3개 준회원기관에서 총 84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987년 6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이 총회는 우리나라 수출보험기관이 1984년 서울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인 동시에, 1977년 Berne Union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의 기념비적인 회의이기도 하였다.

(2) RCG 회의 참여

RCG(아시아 지역 수출보험협력회의 : The Regional Cooperation Group)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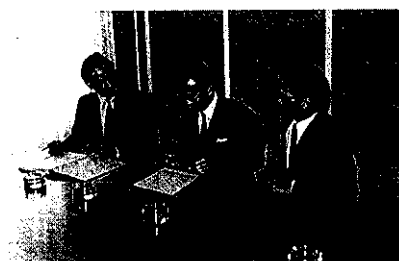
Berne Union과는 별도로 아시아 지역 수출보험기관간의 유대 강화와 수출보험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Berne Union 會員機關 대상의 지역협력회의로, 우리나라는 1990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12월 18일에 회원기관들의 만장일치로 입회승인을 받았다. RCG 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의 Berne Union 회의 기간 중 각각 1회씩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회원기관이 교대로 주최하고 있다.

(3) 주요국 수출보험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공동보험협정 체결

플랜트 수출, 해외 건설공사 등은 국제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플랜트 및 각종 건설공사가 거액이고 복합적인 프로젝트이므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력의 결집, 수주기회의 확대 및 위험의 분산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共同保險은 이와 관련하여 주계약국의 보험기관과 하청 계약국의 보험기관이 共同保險協定에 따라 공동으로 자국의 수출계약 부분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선진국 기업과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벨기에의 OND(1978. 5. 20), 네덜란드의 NCM(1980. 6. 5), 프랑스의 COFACE(1981. 10. 12) 등 3개 기관과 공동보험협정을 체결하였다.



COFACE와의 공동보험협정 체결 (1981. 10)

개도국 수출보험제도 개선의 지원

수은은 과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개도국의 수출보험기관의 설립, 직원연수 및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왔다. 1984년 2월부터 약 1년간 IBRD의 권고에 따라 직원 1명을 인도네시아 수출보험 운영을 담당하였던 자카르타 소재 신용보증기관(P.T. Askrindo)에 Consultant로 파견하여 동국의 수출 신용보증 업무 개선에 일조를 하였다. 말레이시아도 1987년에 IBRD가 Bank Negara Malaysia에 권고하여 UNDP 자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수출보험부에 전문가를 요청해 오에 따라, 수은 직원 3명이 말레이시아 산업은행에 파견되어 말레이시아 수출보험기관(MECIB)의 업무기틀을 마련하여 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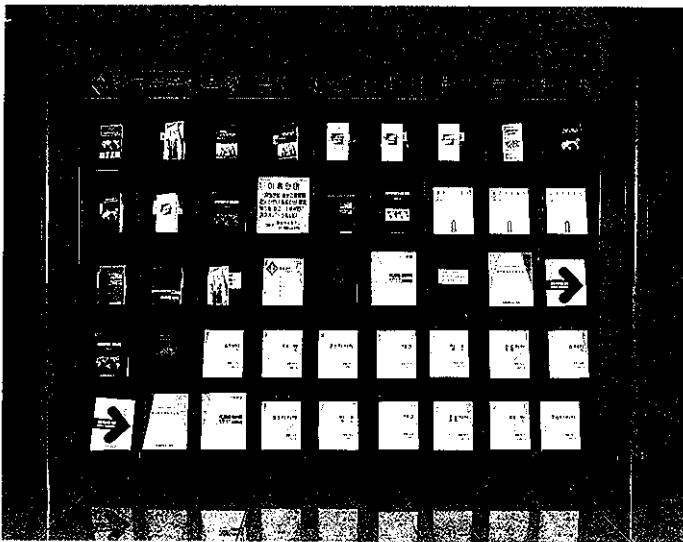
第5節

調査 및 法規 業務의 발전

1. 調査業務의 발전

수은의 조사업무는 중장기신용 공여대상국에 대한 國別信用度 評價와 延拂輸出 支援政策 및 制度에 관한 기초조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수은 설립 6개월 뒤인 1977년 1월 기획조사부가 확대 개편되어 경제조사 기능만을 전담하는 독립부서로 海外投資調査部가 신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들 업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분야인데다가 조사요원의 부족, 자료의 미비 등으로 초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1988년 11월 15일에는 海外投資研究所가 설치되는 등 꾸준한 성장 및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객을 위해 설치한 무인자료배포대



수은은 초기의 열악한 조사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별신용도 평가방법을 개발·발전시키는 한편, 수은 발족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미개척 분야이던 연불수출금융 지원제도, 지원산업 및 해외투자 동향,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국내외 경제 및 국제금융 등에 관한 일반경제 조사업무를 병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사·연구자료들은 週間輸銀뉴스, 輸銀調査月報 등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로 발간됨으로써 수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관계기관들의 정책 입안 및 관련업계의 업무참고자료로 제공되어 왔다.

그동안 추진, 발전되어 온 조사·분석업무를 크게 구분하여 보면 국별신용도의 평가, 국별 투자환경의 조사를 포함한 해외 직접투자 관련 조사, 기타 일반경제 조사 분석 업무와 주요 조사자료의 발간 및 도서자료 관리 등의 업무로 나뉜다.

가. 국별신용도 평가업무의 개선과 발전

(1) 국별신용도 평가업무의 의의

國別信用度 評價란 금융기관이 해외에 신용을 공여할 경우 차주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債權回收上의 危險 정도를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국별신용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 공업제국의 금융기관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융자를 본격화 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국별신용도 문제가 특히 중요시된 것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1차산품 가격의 하락, 국제 고금리현상 등으로 인하여 非產油 개발도상국의 외환수입이 격감하고 대외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외채상환 지연과 채무구제 사례가 빈발하기 시작 하면서부터이다. 또한 이 시기에 들어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1975년), 이란 사태의 발생(1978년), 니카라과의 좌경화(1979년), 아프가니스탄의 공산화(1980년) 등 많은 국제정치상의 격변이 일어남에 따라 국별신용도 평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왔다.

이와 같은 국별신용도 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은 1980년대 초반 중남미 국가에서의 채무위기, 1980년대 말 이후 구공산권 국가의 경제체제 전환의 진행, 1994년 12월부터 1995년 초에 걸쳐 발생한 멕시코의 폐소화 위기사태 및 이의 여파에 대한 우려 증가 등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시장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고 있다.

국별신용도 평가업무는 국제기구를 비롯한 주요국의 公的輸出信用機關에서는 물론 국제상업은행이 해외투융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되고 있다. 수은으로서도 중장기신용 공여를 통한 수출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고 지

원대상 국가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국별신용도 문제가 일찍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 즉 수은 공여신용의 최종 수혜자가 주로 외국 정부 및 외국 기업으로 해외채권이 발생하고, 대출금 상환재원의 기반이 원천적으로 외국에 존재하며, 대출규모가 거액이고 상환기간이 장기인 데 따른 국별신용도 문제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지원대상 국가가 비교적 정치적 안정도가 낮고 외채상환 부담능력 및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는 개발도상국임에 따라, 국별신용도 평가가 대출심사의 주요 요건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은은 국별여신 편중의 배제와 여신의 위험분산 등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투융자자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의 증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수은 설립과 더불어 국별신용도평가업무를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수은 고유의 국별신용도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해외투자연구소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국별신용도 평가방법의 개선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선진 공업국의 연불수출금융 담당기관 및 국제상업은행 등은 개별 기관의 성격이나 경영방침 또는 경험에 따라 독자적인 국별신용도 평가방법을 개발, 채택해 왔다.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별신용도 평가방법은 質的 分析方法(qualitative analysis)과 計量的 分析方法(quantitative analysis)으로 대별될 수 있다.

질적 분석방법은 각국별로 정치, 경제, 사회 정세의 현황과 전망을 보고서 형식으로 기술,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석방법이나 보고서 형식이 각 평가대상국에 따라 다른 자유서술법(fully qualitative system)과, 분석방법이나 보고서 형식을 표준화한 정형적 서술법(structured qualitative system)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각국의 특징과 주요 문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수량화할 수 없는 요소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국가간에 신용도 비교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유서술법의 단점을 다소 개선한 정형적 서술법은 우수한 국제상업은행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법이다.

한편 계량적 분석방법은 수치로 표시된 지표를 이용하여 각국의 신용도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공통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지수가중평균법(checklist system)과, 계량경제학에서 이용되는 예측모형을 활용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질적 분석방법에 비하여 분석자의 주관이 배제되고 국가간 신용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사회정세 등 수량화할 수 없는 요소가 무시되며 지표의 선택에 있어 주관의 완전한 배제가 어렵고 그 결과치가 현실과 유리되는 면이 적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이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수은은 각국의 특성과 주요 문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수량화할 수 없는 요소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분석자의 주관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국가간 신용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질적 분석방법에 수량적 분석방법을 가미한 고유방법을 개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미국수출입은행 등 국별신용도 평가기관에 대한 담당조사역의 해외연수, 국내외 전문가의 초청연수, 해외투자연구소 내의 자체연구 등을 통한 평가방법 및 절차의 개선으로 신용도 평가업무의 질적 개선을 거듭하여 왔다.

수은은 1977년 4월에 대외채무 부담능력 평가에 중점을 둔 제1차 시안을 마련하여 처음으로 평가방법을 도입한 이후, 1977년 8월 제2차 시안, 1978년 3월 국별 여신한도 설정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제3차 시안, 1979년 3월 제4차 시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별신용도 평가 및 국별여신종합관리제도 도입시까지 활용되던 與信限度 設定方法의 기본체제를 갖추었다. 그 후 1982년 8월에는 업무방법서 제7조에 의거하여 국별신용도 평가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방법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1985년 5월에는 위의 지침, 국별신용도 평가위원회 요강(1977. 9), 국별 여신한도 관리 및 운용기준(1980. 11) 등으로 각기 분리되어 있던 국별신용도 평가에 관련된 규정을 통합·조정하여 '국별신용도 평가 및 여신한도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국별신용도 평가 및 여신한도 설정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한편 1993년 2월에는 국별 여신한도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國別與信 綜合管理規程을 제정하고 직제분과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별 여신한도 관리업무가 국별여신종합관리 업무로 조정, 여신기획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국별신용도 평가업무와 국별여신 관리업무는 국별신용도 평가규정(해외투자연구소 담당)과 국별여신 종합관리규정(여신개발부 담당)으로 이원화되었다.

현재 수은의 국별신용도 평가대상국은 원칙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하되, OECD에 가맹된 국가라도 경제개발 정도로 보아 개발도상국에 가까운 국가는 필요에 따라 대상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995년 12월 말 현재 평가대상국은 140여개 국가이다. 이 중 당행 여신잔액이 있는 국가와 당행의 자금지원이 예상되는 국가 중에서 약 50개국을 '매년도 평가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이를 다시 주요평가대상국과 일반평가대상국으로 구분, 평가한다.

현행 수은의 국별신용도 평가방법을 보면, 한 나라의 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 ① 국내경제 ② 대외거래 ③ 개발정책 ④ 정치사회 ⑤ 기타(우리나라와의 관계) 등 5개의 평가분야로 구분하여, 각 평가분야마다 신용도의 상태와 전망을 고려하여 9개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평점(a: 1, b: 2, c+: 3, c: 4, c-: 5, d+: 6, d: 8, d-: 11, e: 16)과 각 평가분야에 대한 가중치(국내경제 0.3, 대외거래 0.3, 개발정책 0.1, 정치사회 0.2, 기타 0.1)에 의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종합등급(A, B, C, D1, D2, D3, E)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국별신용도 평가방법은 그동안 주로 평가분야별 가중치의 조정과 함께 분야별 평가등급의 세분화(c → c+, c, c-; d → d+, d, d-) 및 종합평점등급의 세분화(D급 → D1, D2, D3) 등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종합평점	등급
1.0 ~ 1.5	A
1.5 ~ 3.0	B
3.0 ~ 6.0	C
6.0 ~ 8.0	D1
8.0 ~ 10.0	D2
10.0 ~ 12.0	D3
12.0 ~ 16.0	E

이는 주된 평가대상국이 개발도상국이어서 각 분야별 평점이 c·d급에, 종합평점등급이 D급에 집중되고 있어, 보다 정밀한 평가로 신용도등급이 유사한 국가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상의 신용도 평가시에 고려되는 각 평가분야별 주요 요소로는 ① 국내경제는 경제규모 및 산업화 정도, 부존자원, 정책수행능력, 경제성장, 통화와 재정상태, 물가와 임금수준 ② 대외거래는 국제수지, 대외채무와 상환능력, 외국인투자환경 ③ 개발정책은 경제정책, 외자정책 등을 포함하는 경제개발계획과 개발전망 ④ 정치사회는 정치안정도, 실업률, 문맹률 등을 포함하는 사회환경 ⑤ 기타는 우리나라와의 외교·통상관계와 특기사항 등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 사정된 국별신용도등급은 국별신용도 평가담당 조사역회의에서의 사전 심의와 국별신용도 평가위원회의 본회의를 거쳐 은행장의 결재를 받

음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일반평가대상국에 대해서는 국별신용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국별신용도 평가담당 조사역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무이사회의 결재로 신용도등급이 확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국별신용도의 심층적 평가를 위하여 1995년 8월 해외투자연구소내에 地域専門家制度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육성대상자에 대해서는 장기 근무 및 이에 따르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해외투자연구소내에 4개의 지역팀을 설치하여 팀제에 의한 국별조사 업무의 강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3) 국별신용도 평가결과의 활용

국별신용도 평가결과는 수은 여신의 채권보전상의 안전성 제고, 국별 자금지원의 편중성 방지,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별여신 종합관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국내기업앞 해외직접투자 자금지원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수은의 국별신용도 종합평점 및 등급은 1970년대 말 이래 국별 여신한도 관리에 이용되어 왔으며, 1993년 3월부터는 국별여신 종합관리제도에 의한 여신규모의 종합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국별여신한도제는 국별신용도 평가등급에 따라 국별 여신한도를 정하는 제도로써, 수은은 각국에 대한 여신잔액이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1978년 5월 제8차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국별 여신한도의 설정과 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수은의 국별 여신한도 설정 및 그 활용방안을 의결하여 수은의 국별 여신한도 책정결과를 6개월마다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별여신이 해당국 여신한도의 200% 이하인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수은은 1979년 3월 국별신용도 평가를 위한 제4차 시안에서 국별신용도등급과 GDP 규모를 기준으로 한 국별여신한도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그 후 1980년 2월의 제17차 국별신용도 평가위원회에서는 수은 융자 지원절차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은 자체의 국별신용도 평가기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서의 방안을 폐지하고 수은이 자율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의결하였으며, 국별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처럼 국별신용도 평가결과만을 중심으로 한 국별 여신한도의 설정 및 이에 의한 여신의 관리는 1993년 3월 국별여신 종합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종전의 국별 여신한도 관리제도는 대출자산의 危險分散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이 충분히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신한도의 설정방식은 수은 여신에 대한 최종 채무자인 수입자 또는 지급보증기관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국별위험만을 고려하여 국별 여신한도를 일률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양질의 거래가 국별 여신한도 때문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은 여신의 운용을 경직적으로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별 여신한도 설정방식을 폐지하고, 국별여신 관리방식을 國際決濟銀行(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자기자본적합비율(CAR : capital adequacy ratio) 산출방식과 같이 지원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출자산을 危險勘案資産(risk weighted asset)으로 환산하여 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별여신 종합관리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대외위험감안자산 산출시 국별신용도 평가결과를 국별위험 가중치로 반영하게 되어 있어, 신용도등급이 A급인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위험 가중치가 '0'이며 B급은 20%, C급은 40%, D급은 80% 등으로 되어 있다.

현행 국별여신 종합관리제도하의 위험감안자산의 국별한도는 대외위험감안자산, 즉 국별위험 가중치와 해외채무자 신용위험 가중치를 여신잔액에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수은 순자산의 25% 이내이며 그 나라 GDP의 1%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수출보험, 대내지급보증 등 국내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종합위험감안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수은 순자산의 25%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여신한도 초과취급에 대한 허용 여부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수은의 자금수급 및 수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장이 결정한다.

수은의 국별신용도 평가는 대외적으로는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국내기업앞 해외투자자금 지원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외국환관리규정 제12~18조(해외직접투자) 및 재무부 해외직접투자지침 제4조(투자상대국)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대상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은이 평가한 국별신용도 등급이 D급 이상인 국가'이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은은 국별신용도 평가결과를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내 민간산업은행 앞으로 통보하고 있다.

한편 국별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작성, 발간되는 국별신용도 평가자료는 대상국의 제반 경제현황과 전망, 해외투자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상황까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해당 국가에 대한 정책방향 또는 개별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판단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수은은 이러한 자료가 발간되는대로 정부 관계기관이나 해외진출업체에 배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국별신용도 평가실적

수은이 국별신용도 평가업무를 시작한 것은 1977년 1월 기획조사부가 해외투자조사부로 확대 개편되면서부터였다.

국별신용도 평가자료의 작성은 1977년 상반기 중에 국별신용도 평가방법의 수립과 이에 관한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우선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중 수은의 거래실적과 전망에 비추어 가장 평가가 시급한 3개국씩을 선정하여 12개국에 대하여 평가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8년부터 본격적인 국별신용도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1978년에 71개국, 1979년에 80개국, 1980년 말까지 총 93개국(누계 220개국)에 대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였다.

국별신용도 평가 및 여신한도 설정은 1978년 2월 국별신용도 평가위원회가 처음 개최되면서 시작되어 1978년 54개국, 1979년 22개국, 1980년 49개국을 평가완료함으로써 1980년 말까지 총 68개국(누계 125개국)에 대한 평가 및 여신한도 설정을 완료했다. 이와 같이 수은은 1980년까지 국별신용도 평가방법을 개발·정착시킴과 아울러 평가대상국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평가를 일단 완료하였다.

이어 수은과 거래를 추진중인 국가는 물론 거래가 예상되는 국가, 특히 정치·경제상황의 변동이 잦은 국가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평가자료의 작성 및 신용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1981년 50개국, 1982년 33개국, 1983년 49개국, 1984년 46개국, 1985년 43개국을 신규 또는 재평가하여 1981년부터 1985년 말까지 총 102개국(누계 221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OECD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 수준의 일부 국가와 동구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 추세에 맞추어 신용도 평가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1985년 이후 1990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연간 30~50개국을 평가하였는데, 1986년에 31개국, 1987년에 32개국, 1988년에 28개국, 1989년에 31개국, 1990년에는 50개국을 평가하여 기간 중 총 172개국(누계 274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대공산권 투자진출에 대비하여 소련 등 미수교국가에 대한 평가를 개시하여, 1988년에 소련, 불가리아, 폴란드 등 3개국에 대한 신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어 1989년에 6개국, 1990년에 8개국을 신규 평가완료하였다.

1990년 이후에도 평가업무를 계속 확대하여 1991년에 26개국, 1992년에 26개국, 1993년에 39개국, 1994년에 52개국, 1995년에 50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기간 중 193개국(누계 467개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국별신용도 평가대상국 현황 (1995. 12. 31)

지 역 별	국 별
아시아 대양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이크로네시아, 미얀마, 나우루, 네팔, 북마리아나, 파키스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대만, 태국, 바누아투, 서사모아 (27개국)
중남미	안티구아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버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31개국)
중 동	알제리, 바레인, 사이프러스,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몰타,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예멘 (21개국)
아프리카 유 럽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채널군도,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이디오피아, 기봉, 감비아, 가나,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니제르,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짐바브웨 (42개국)
특수지역	알바니아, 불가리아, 캄보디아, 중국,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헝가리, 키르기스스탄, 리투아, 몽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19개국)

말 현재 평가대상국 수도 140개국으로 늘어났다.

나. 해외투자관련조사의 강화

(1) 해외투자관련조사의 배경

1970년대 이후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함에 따라 원유, 광물, 삼림 등 주요 산업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資源保有國에의 진출 노력이 요청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선진국들과 신흥공업국들(NICs)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경제불력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장벽의 극복 및 현지시장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등 시장개척 수단으로서의 海外直接投資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수은은 이같은 대외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별신용도 평가업무의 추진은 물론 각국의 투자환경에 관한 자료조사도 병행함으로써, 수은의 대출심사에 대한 참고자료 외에 관련 산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자료를 제공해 왔다.

1982년 9월에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계기로 그 동안의 업무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투자조사부내에 아프리카 투자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1983년 3월에는 이를 세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투자상담실로 개편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유망시되는 카리브해 및 중미 지역의 투자환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관련업체에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1985년부터는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유망시되는 60개국을 선정하여 과거의 개괄적인 투자환경 조사에서 탈피, 각국의 투자정책은 물론 투자절차, 각종 인센티브, 노동사정, 사회간접자본 등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투자환경 조사업무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출 호조에 따라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내산업의 자본 및 기술 축적이 크게 진전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적 지위 향상과 개도국들의 개발경험 및 기술이전 요청 증대에 따른 南南協力 수단으로서의 해외투자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는 국제수지 흑자 시현에 따른 정부의 해외투자 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유망 투자대상국가에 대한 투자환경 조사를 강화하였다. 그 하나로 1986



해외투자 관련 발간자료

국별투자환경 2집 발간 (1987. 7)



년에는 30개 투자유망국가에 대한 투자정보를 수록한 국별투자환경 제1집을 발간하였으며, 1987년에는 29개국에 대한 투자정보를 수록한 제2집을 발간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진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경제개황을 수록한 국별경제요람을 2차에 걸쳐 발간하여 정부기관 및 관련업계에 제공하였다.

(2) 해외투자연구소의 설립과 해외투자관련조사의 강화

해외투자연구소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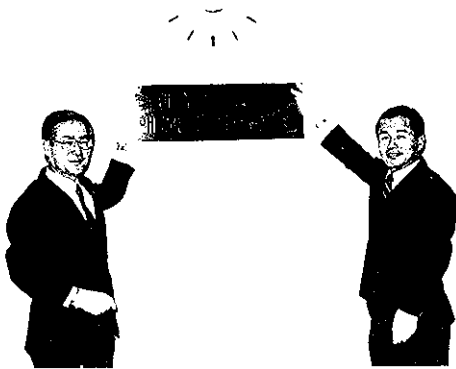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 들어 국내의 급격한 임금인상, 원화절상 등으로 인하여 비교우위를 상실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처럼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해외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수은과 신용보증기금간의 中小企業海外投資支援協約 체결(1985.

5), 수은의 해외투자정보지원센터 설치(1986. 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투자상담센터 설치(1987. 2),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1987. 4~8 기간 중 3회) 등 금융, 세제, 외환 등의 측면에 있어서는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의 해외진출 의욕 고취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정보 지원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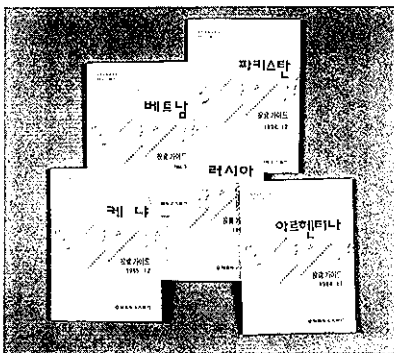
또한 1980년대 중반까지의 해외투자 진출은 자원개발 및 종합상사 중심의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투자정보의 입수·분석은 물론 투자환경 조사 및 평가능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사업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은, 한국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몇몇 기관이 해외투자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인적·물적 제약으로 인하여 각각의 고유 업무영역에 대한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투자환경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하여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해외투자 활성화가 요청되는 당시의 시점에서 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해외사업을 효



해외투자연구소 현판식 (1988. 11. 15)

주요 관심국에 대한 국별 투자가이드 발간



이에 수은은 1988년부터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를 본격화함과 아울러 1988년 11월 15일에는 종전의 해외투자조사부를 확대 개편하여 해외투자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함께 해외투자 증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투자자금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수은이 해외투자 지원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해외투자사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극소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연구소의 확대 개편을 통하여 국별신용도 평가 및 투자환경 조사업무를 보다 심화·발전시켰다. 국별조사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국별신용도 평가대상국을 확대하는(1995년 말 현재 140개국) 동시에 평가기법을 심화하는 한편,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조사업무를 강화하였다. 그 일례로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북방외교 정책이 가시화됨에 부응하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 등 비수교국가들에 대한 신용도 평가 및 투자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또한 이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관한 조사내용을 조사자료로 발간하거나 수은 정기간행물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정부 유관기관 및 우리 기업의 북방관련 정보수요에 대처하였다. 또한 1991년 8월에는 북한의 개방화 움직임에 대비하여 연구소내에 북한조사전담반을 설치하여 '북한편람', '남북 경제협력 실무 안내' 등 북한 관련 기초정보자료를 정부, 관련업계 및 기타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보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였다.

[illegible]

남·북 경제협력 실무안내
수출입은행 발간, 배포

[illegible]

에서는 남부유럽과 아시아와 관련된 남·북간의 모든 무역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반박된 '남북간 협회'의 실사내내, 기업에 의해 적자회계에서부터 금융기관에 걸쳐 실지에 이르기까지 그 수혜자에게만 한때만 한 이익과 구성원에게도 실사 때 남부지역 개발, 일한 나라에서부터 자원집중에 이르기까지 세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분담한 정리가 제공적으로 반박되었다.

다. 경제조사·분석업무의 강화

해외투자연구소는 전술한 국별신용도 평가업무 이외에도 주요국 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 개발수입 등과 관련된 각종 제도조사와 더불어 조선, 플랜트 등 수은 지원산업 및 국내외 경제동향 등에 관한 조사·분석업무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수은의 업무기반 확충과 국제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1) 연불수출금융 지원제도 조사

연불수출, 주요 자원 및 중요 물자 개발수입 등에 대한 주요국 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中長期 延拂輸出金融 支援制度에 대한 조사·연구는 국별신용도 평가업무와 더불어 수은의 가장 중요한 경제조사·분석 업무의 하나가 되어왔다. 해외투자연구소는 그동안 주요 선진국의 중장기 연불수출신용 공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의 제도를 비교 연구함과 동시에 최근의 지원동향, 연불수출금융정책 등을 분석하여 수은의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해 왔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는 주요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기능변화 추이와 지원제도 개선내용 및 지원실적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은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설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 조사·연구 결과를 수은조사월보 등에 게재하거나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관계기관의 정책수립에 기여하였다.

(2) 지원대상 산업 조사

해외투자연구소는 수은의 지원대상 산업인 플랜트, 조선 등에 대한 조사·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플랜트, 조선 등의 동향에 관한 기초조사와 이들 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을 통하여 수은 여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선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별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하여 수은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계 조선산업의 침체현상 속에서 세계 조선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문제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정부 또는 관련 업계에 대한 정책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발간 (1994. 12)

(3) 국내외 경제동향 조사

해외투자연구소는 수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조사·분석자료의 발간을 확대해 왔다.

이 조사·분석 업무의 범위는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있으나, 주요 내용은 중화학공업 정책 및 지원전략, 수출구조, 경제개발계획 등 수은 업무와 관련이 깊은 국내 경제 동향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 문제, 주요국의 자원현황,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등에 관한 조사분석이 중심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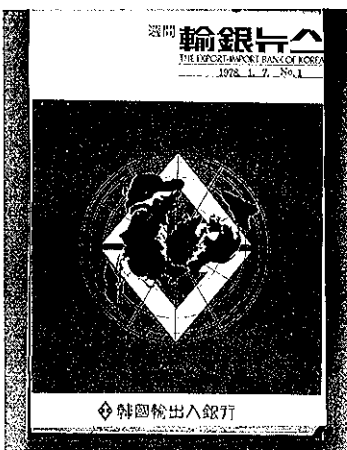
라. 주요 조사자료의 발간 및 도서자료의 관리

수은은 定期刊行物로서 주간지인 '주간수은뉴스', 월간지인 '수은조사월보', 영문계간지인 'EXIM Bulletin'과 영문연차보고서인 'Annual Report'를 발간하였다.

주간수은뉴스는 설립 직후인 1976년 7월 13일부터 국내외 주요 경제단신과 행내활동을 실은 EXIM NEWS를 매일 발간하여 행내에 배포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다. EXIM NEWS는 1977년 6월 10일 제288호를 끝으로 주간 EXIM WEEKLY(제1호 발간 1977년 7월 7일)로 개편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행내용으로만 발간해 오던 EXIM WEEKLY는 1978년 1월 1일 제25호를 끝으로 제호를 '주간수은뉴스'로 바꾸어 배포처를 관계기관 및 업계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1980년 1월 1일부터는 주간수은뉴스의 경제해설기사 증편, 지역별 해외경제란 신설, 국제기구 동향, 국제금융시장 동향, 수은 업무활동 등 수은 기관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어 1982년 12월 22일 수은조사월보의 창간을 계기로, 주간수은뉴스는 주간지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 경제의 주요 현안문제와 진출대상 지역의 경제동향 분석에 특화하되, 시사성이 있는 문제와 신속을 요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주간수은뉴스는 수은의 가장 오래된 정기간행물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의 투자환경 및 제도, 해외투자 상담내용, 해외투자 성공사례 등 해외투자진출기업이 필요로

주간수은뉴스 창간호 (1978. 1)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1988년 5월 28일 지령 제539호를 끝으로 '주간해외투자정보'로 개편되었다.

주간해외투자정보는 1988년 6월 4일 지령 제540호로 시작하여 1993년 7월 10일 지령 제800호로 폐간될 때까지 약 5년여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수은조사월보는 1982년 12월 22일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수은조사월보에는 연불수출,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및 대외경제협력 등과 관련하여 대외 진출전략에 관한 정책방향, 주요국의 각종 중장기 연불수출 지원제도와 지원정책, 진출대상국에 대한 투자환경 등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자료가 수록되어 수은은 물론 관계기관 및 산업계의 정책수립 등의 업무에 기여해 왔다. 수은조사월보에는 논증, 해설, 자료, 해외시장 동향, 국제금융시장 동향, 경제단신, 기타자료(국내경제일지), 통계(수은 업무활동 상황,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등이 고정컬럼으로 수록되어 왔다. 한편 수은조사월보는 주간해외투자정보의 폐간 이후 국별조사 전문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컨트리 정보, 국별 투자환경, 프로젝트 정보, 공적수출신용기관 관련 내용을 수록할 수 있도록 고정 컬럼의 내용을 조정,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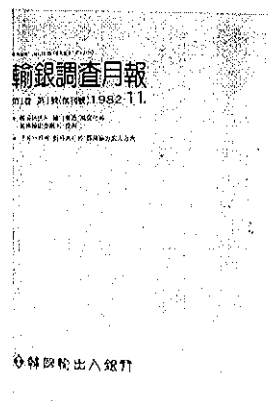
EXIM Bulletin은 1977년 1/4분기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 영문계간지는 우리나라의 대외거래와 관련된 주요 경제동향, 조선·플랜트·기계 등 관련산업의 조사·분석 결과, 업무내용 및 업무실적 등을 수록하여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수은 지원사업의 확대와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해 오다가 1991년 6월 지령 제58호(Vol.15 No.2)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이외에도 1976년 이후 매년의 업무실적을 수록한 영문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또한 수은은 1976년 7월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 중심의 국별신용도 평가대상국에 대한 평가자료를 발간해 왔으며, 1980년부터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개황과 주요 경제지표를 수록한 '세계각국편람'을 격년으로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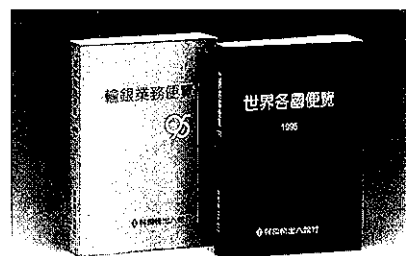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참고용으로 수은의 주요 업무내용, 지원제도 및 실적, 국제기구 및 주요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개요, 업무실적, 각종 경제관련통계 등을 수록한 '수은업무편람'을 매년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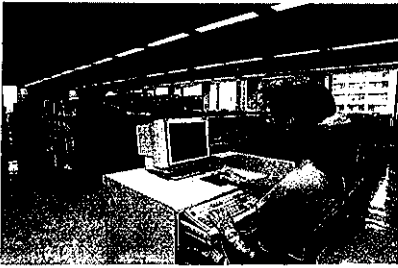
한편 연불수출, 해외투자, 국별신용도 평가방법, 일반 경제동향, 수은 지원대상 산업, 공적수출신용기관, 국제기구, 국제금융, 법규, 심사 분야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은조사월보 창간호(1982. 11) (위)와
통권 100호 발간 기념 축하연 (1991. 3) (아래)

세계각국편람과 수은업무편람





도서실 전경

여러 차례 발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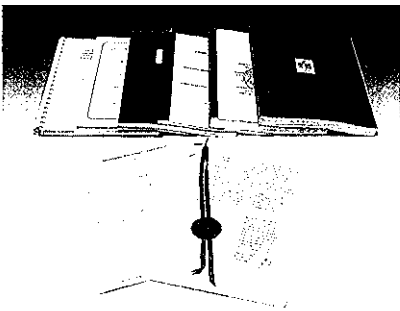
수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립 이래 도서자료실을 운영해 왔는데, 장서 수는 1996년 3월 말 현재 국내도서 15,000권, 洋書 12,000권, 日書 7,000권으로 총 34,000권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경제전문 도서가 70~80%를 점하고 있다. 또한 약 500종에 달하는 정기간행물을 비치함은 물론, 자료목록의 전산화를 이룩하여 국제금융 및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주력해 왔다.

2. 法規業務의 발전

수은의 업무는 대부분 국제거래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제계약이 직·간접적으로 수반된다. 먼저 자금지원 부분을 보면 선박, 플랜트 등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국제계약 체결이 전제가 되며, 수입자가 차주가 되는 購買者信用(buyer credit)의 경우 수은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국제계약인 용자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해외투자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해외투자의 주된 유형의 하나인 합작투자시 투자자와 현지 합작선간에 맺는 合作投資契約이 자금지원의 전제가 된다.

한편 주요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인 해외기채시에도 용자조건 등 모든 사항이 국제계약에 근거하게 되며, 경제협력기금 지원시에도 수혜국 차주와 용자협정을 체결한 후 이 계약조건에 따라 기금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수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국제계약의 올바른 체결·이행 및 정확한 이해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각종 국제계약서 건양



가. 국제계약서의 법적검토

國際契約이란 국적을 달리 하는 당사자간에 체결되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2개국 이상이 연관된 계약을 말한다. 상거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내거래·국제거래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하나, 특히 국제계약은 국내계약과는 달리 먼 거리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협상과 이행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관계국의 제도·언어·문화 등이 서로 달라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며, 각국의 수출입·환거래·외국투자 등의 규제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므로, 국제계약을 올바르게 체결하는 것은 국제거래에서 대단히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국제계약서의 법적검토는 국제계약서의 법적하자 내지 법적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수은이 당사자가 되는 국제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며, 지원요청 거래의 계약서에 대한 법적검토는 당해 거래에 대한 수은의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대출심사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국제거래상의 계약서는 그 형태가 다양하며 이질적인 문화배경을 가진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또 기대한대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계약의 해석에 있어 보충적, 유추적 또는 확대적 해석을 피하는 것이 통례이다.

특히 국제계약서는 대부분이 영문으로 작성되며, 영미법계 제국의 법에 따라 계약의 해석이 행하여지거나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英美法 특유의 口頭證據法則(parol evidence rule)이라든가 禁反言(estoppel)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서의 서면화와 계약내용면에 있어 계약서의 존재형태와 방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약서의 법적검토는 분쟁예방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제계약의 당사자는 권리·의무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총망라함으로써 사후에 야기될지도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 내지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은의 법적검토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은 크게 수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지원요청 거래의 근거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선박·산업설비 등의 수입자와 체결하는 직접대출 융자협정, 전대자금대출 여신한도 설정협정, 역외금융 융자협정, 자금조달 관련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 융자협정 등이고, 지원요청 거래의 근거계약은 선박건조계약, 산업설비 수출계약 및 합작투자 계약 등이다.

원칙적으로 위의 계약들은 모두 법적검토의 대상이 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법규부의 법적검토를 거치지 않고 소관부서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표준계약서 또는 이미 법적심사를 받은 다른 계약서에 비하여 그 내용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
- ② 선박수출자금대출로서 은행장이 정한 '선박건조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경우
- ③ 산업설비수출자금대출로서 은행장이 정한 '산업설비 수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경우
- ④ 해외투자관련대출의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저당권, 질권 등에 의하여 채권이 보전되는 경우
- ⑤ 대상거래가 단기수출거래인 경우
- ⑥ 차관단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대주측의 변호사가 이미 선임되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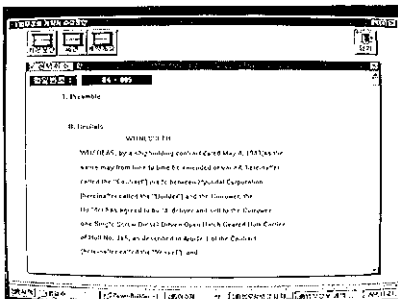
나. 계약서 법적검토 업무의 확대 발전

(1) 법적검토의 다양화

국제계약서에 대한 법적검토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수은의 법규업무는 자금공급 규모의 증가와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설립 초기 업무부 법규과에서 담당하던 법규업무는 선박·플랜트 수출, 해외투자 등 지원대상 거래에 대한 대출심사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계약서의 법적검토가 주종을 이루었다.

1977년 총 26건의 검토실적을 시작으로 80년대 중반까지는 양적인 측면에서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여 1984년에는 계약서 법적검토 건수가 123건에 달하였다. 이러한 실적 증가는 당시 수은의 주된 자금지원 대상이었던 선박의 연불수출거래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저금리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연불수출거래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출관련 계약서를 중심으로 하던 계약서 법적검토 건수도 감소추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대출관련 계약서의 법적검토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규업무는 여러 면

국제계약 등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법무정보시스템 화면



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며 발전을 계속해 왔다.

수는 자금 지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채권 마련을 위한 해외 자금조달이 빈번해지고, 국제거래 형태의 복잡다기화에 따른 지원방식의 다양화와 함께 새로운 용자방식의 도입 등 업무여건의 변화가 계속되었으며, 더욱이 대출관련 계약서와는 달리 수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크게 늘어나 계약서의 법적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먼저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1977년 연불어음 매각계약 2건, 1978년 은행차관 도입계약 1건 등 1982년까지 총 9건에 불과하였으나, 1983년 이후에는 건수의 증가와 함께 채권발행 계약 등 자금조달 관련 계약서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특히 1985년에는 연불어음 매각계약 28건 등 총 36건의 자금조달 관련 계약서의 법적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1979년 전대자금 여신한도 설정협정 3건, 1980년에는 구매자신용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대출계약 5건에 대한 법적검토를 새로 취급하였

국제계약서 법적검토 실적

(단위 : 건)

	선박 수출	플랜트 수출	해외 투자	직접 대출	전대자 금대출	연불어 음매각	은행 차관	채권 발행	역외자 금대출	경제협 력기금	기타	합계
1977	5	5	2			2					12	26
1978	5	6	4				1				8	24
1979	26	8	6		3						8	51
1980	34	14	4	5	7		4				10	78
1981	41	4	7	3	5						11	71
1982	35	11	2	2	12	2					6	70
1983	66	21	10	1		9	2	1			4	114
1984	66	18	7		5	13	2	2			10	123
1985	32	14	4	1	8	28	3	5			8	103
1986	71	8	3		5			1			28	116
1987	45	5	4			1					1	56
1988	34	5	9							2	4	54
1989	22	3	2		2					9		38
1990		5	1	9	15	1	3			7	2	43
1991	21	7	2	3	7	4	1	6		1	30	82
1992	10	8		5	10						9	42
1993	2	7		2	9			1	3		1	25
1994	1	8	3		7				5		5	29
1995	2	2	1	1	3			3	16	4	2	34
합계	518	159	71	32	98	60	16	19	24	23	159	1,179

는데, 이 계약들은 수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선박수출계약서 등 대출관련 계약서의 법적검토에 비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또한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를 위탁받음에 따라 1988년부터 수은이 대주가 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융자협정에 대한 법적검토가 시작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새로 도입된 역외금융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1993년 域外金融融資協定書 3건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5건, 1995년에는 16건에 이르는 계약서 법적검토 실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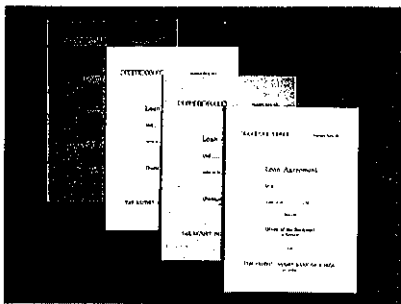
(2) 법적검토의 질적 개선

계약서 법적검토의 양적 변화 및 대상계약서 종류의 다양화에 못지 않게 여신업무의 신속·효율화를 위한 법적검토 방법의 개선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수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맺어지는 수많은 국제계약에 대해 일일이 법적검토를 거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시에 법적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런데 10여년간 각종 계약서를 검토해오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거래의 계약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유사하고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그래서 수은이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標準契約書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거래추진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수은이 당사자가 되는 국제계약의 표준계약서를 만들게 되었다.

먼저 1992년에 '선박수출용 직접대출 표준융자협정서'가 제정되었으며 1993년에는 '플랜트 수출용 직접대출 표준융자협정서', '전대자금 표준융자협정서' 등이 만들어져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수출자·해외투자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선박건조계약서 문례', '중소규모 자본재 연불수출용 표준계약서 문안', '해외투자자금 관련 계약서 문례' 등을 제작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3년 9월에는 대출심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출관련 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정리한 Check List를 발간하였는데, 공급자신용이 공여될 선박 또는 산업설비 수출계약서의 내용이 해당 Check List와 비교하여 수은이 정한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법규부의 법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이고 있다.



각종 표준계약서 견양

계약서의 법적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법규부는 법규업무의 효율화와 직원들의 법규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1991년 9월 契約書 法的審査 業務 電算化計劃을 수립, 업무와 관련된 제반 계약서에 대한 전산화를 이룩함으로써 신속하고 객관적인 법적 심사를 통한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 수은의 채권보전, 자체 법적심사 기회의 확대, 법적심사 비용의 절감 및 법적심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은 업무 발전에 맞추어 법규업무가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의견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방식은 비용·시간 등의 면에서 그 한계를 느끼게 되어, 수은 법규담당 직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이래 법규담당 직원의 해외 법률전문회사 연수, 법과대학원(law school) 석사과정 연수 등이 이루어져오다가, 1994년 행내변호사(in-house lawyer) 양성제도가 도입되어 1995년에는 직원 2명이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이 제도에 의한 전문가 양성으로 수은 법규업무는 모든 법적 문제의 자체 해결은 물론 고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확대 등 새로운 면에서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3) 기타 법규관련 업무

법규상담

효율적인 법적심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설립 초기 법규부는 계약과 관련된 각종 질의에 대한 書面答辯을 통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제반 문제에 미리 준비, 대처함으로써 여신업무를 지원하여 왔다. 당행의 창립연도인 1976년부터 시작된 법규질의 답변업무는 1970년대 말까지 융자협정서 및 지급보증 또는 기업의 해외사업에 관한 당행대출의 법적 타당성 검토 등 대출관련 법적질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1980년대 들어 대출관련 질의 외에도 은행과 연관된 혹은 그 외의 다양한 질의가 접수되었는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업무질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법적질의, 공동 입차제도에 관한 일반질의 등이 그것이다.

1990년대에는 구두·간이 상담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각 부서의 구두 법적질의에 신속히 답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는 국가간 협력이 활기를 띠는 시점에서 당행의 경험기금 업무의

수출입은행 파장 2명이 지난 2월 실시된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나란히 합격, 국내 최고 모 시도인 行內변호사제도가 첫 결실을 보게 됐다.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지난 89년과 89년 각각 수출입은행에 들어온 최호준, 具本홍 파장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수출입은행이 지 상해 부러 추진한 '행내변호사제도'인 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 미국에 파견돼 현지변호사 양성 과정을 이수했다.

파장級 2명 美파견

6개월만에 국제변호사 취득

해외계약팀 전문가 활용

해 일일이 자문을 받아야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 게 사실. 수출입은행은 기업들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은행내부인력을 국제변호사로 양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이번엔 2명의 국제변호사를 배출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은 거래기업들이 까다로운 영문계약서 작성 작업을 빠른 시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상거래와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鄭東報】

행내변호사의 탄생을 알리는 신문기사 (서울경제, 1995. 5. 11)

성장에 발맞추어 경험차관 계약 관련 법적질의가 많았으며, 국내 기업의 베트남, 중국 등 시장경제 이행국에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투자자금 지원 관련 법적질의 답변업무가 다량 이루어졌다.

특히 1995년부터는 법규부내의 행내변호사를 주축으로 직원 및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규자료 발간 및 배포

1984년 6월에 창간된 '法律業務가이드'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오고 있는데, 국내외 법규에 대한 연구자료와 계약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질의 응답 및 법률 용어 해설을 중심으로 1985년 말까지는 월 2회, 1986년부터는 월 1회씩 발간해 오다가 1990년 5월부터는 분기당 1회씩 발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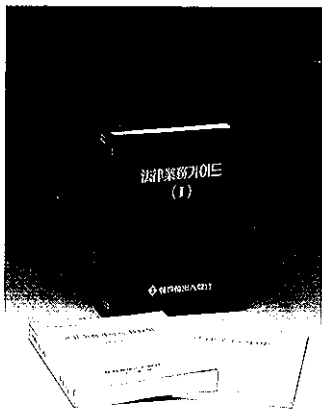
내용면에서는 1989년 6월부터 판례소개가 추가되어 각 부서의 법적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최신 판례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1993년 7월에는 법률업무가이드 제100호 발간을 분수령으로 하여 창간호부터 제100호까지의 내용중에서 수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정하여 '법률업무가이드 초록집'으로 발간함으로써 직원들이 법적 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법률봉사 차원에서도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

1990년 11월에는 법규부(당시 법규실)에서 그동안 쌓은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행의 주요 업무인 연불수출, 해외투자, 수출보험, 대외경제협력기금 등과 관련하여 야기된 각종 법적질의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法規質疑 回信集'을 발간·배포하였는데, 이는 당행 직원이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법적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을 때 참고하도록 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한편 법규부에서는 각 부서에 대한 법률정보 제공이나 계약서 심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해외사무소나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각국의 통상·투자 및 계약에 관련된 법률자료들을 수집,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직원 및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능률 제고는 물론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제계약상담실 운영

수은은 수출입·해외투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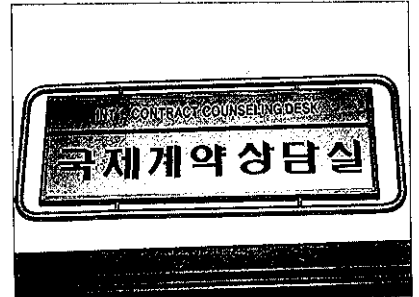
법률업무가이드 100호 및
법률업무가이드 초록집 발간



법규질의 회신집 발간

외거래 전담은행으로서 그 성격상 지원거래 상대방의 대부분이 외국 기업,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관 등이므로, 영문계약서의 작성 또는 외국법의 적용 등의 문제로 인해 국제법률 관계업무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수은의 지원을 받는 거래업체들은 해외진출에 필요한 英文契約의 체결시 외부 변호사들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수은의 자금지원을 받거나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제법률 업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력, 정보 등이 부족하고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국제거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은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 '國際契約相談室'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 관련 계약서의 작성·지도 또는 수은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에 대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상담실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상담역 2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행내변호사의 증원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범위 및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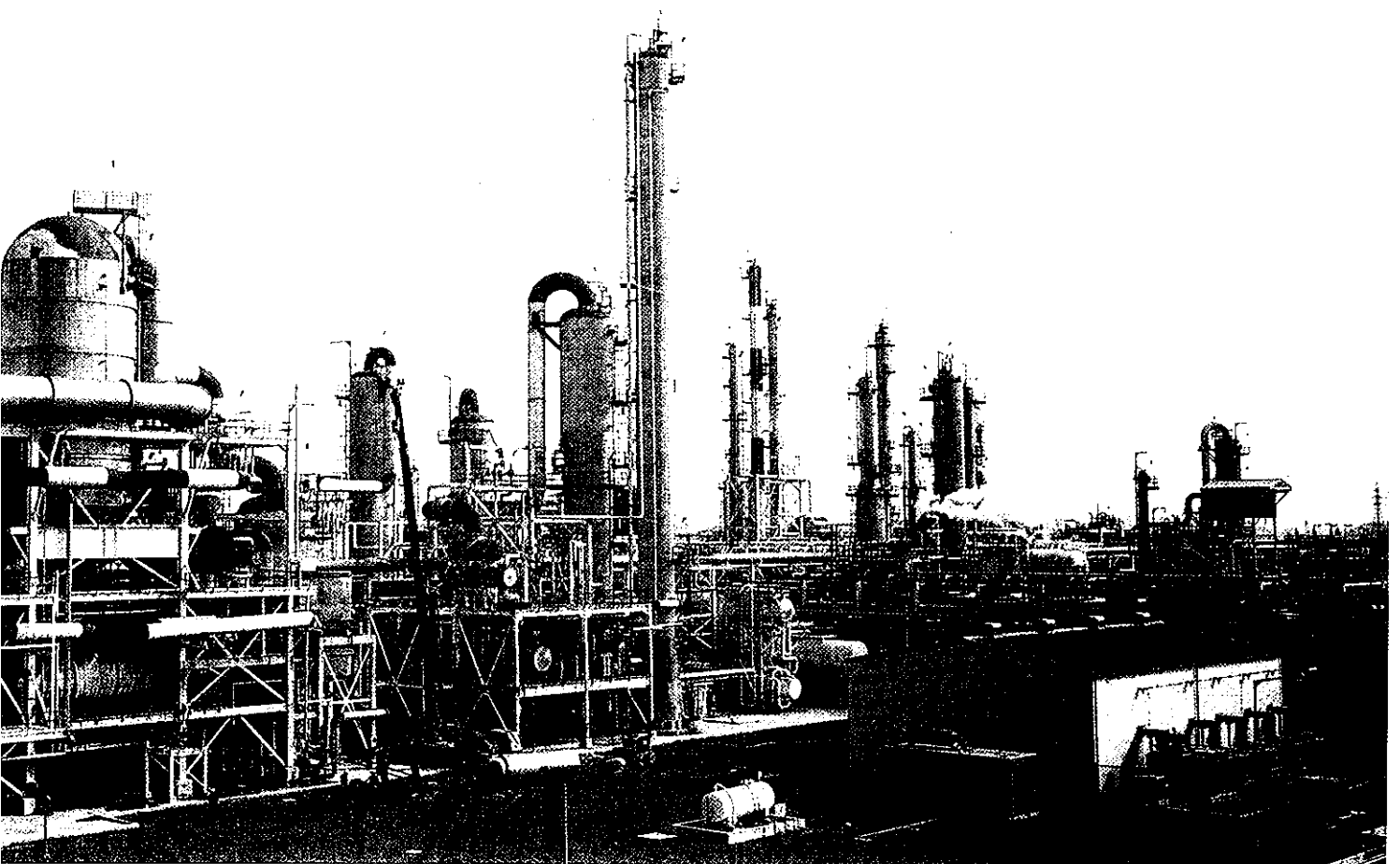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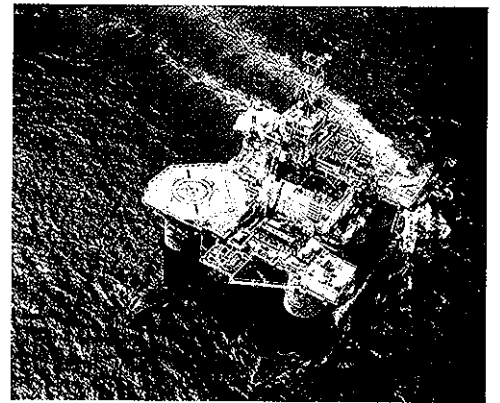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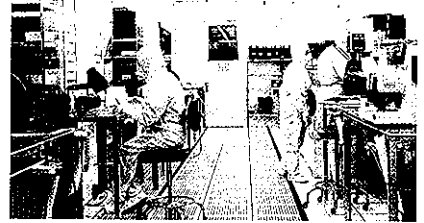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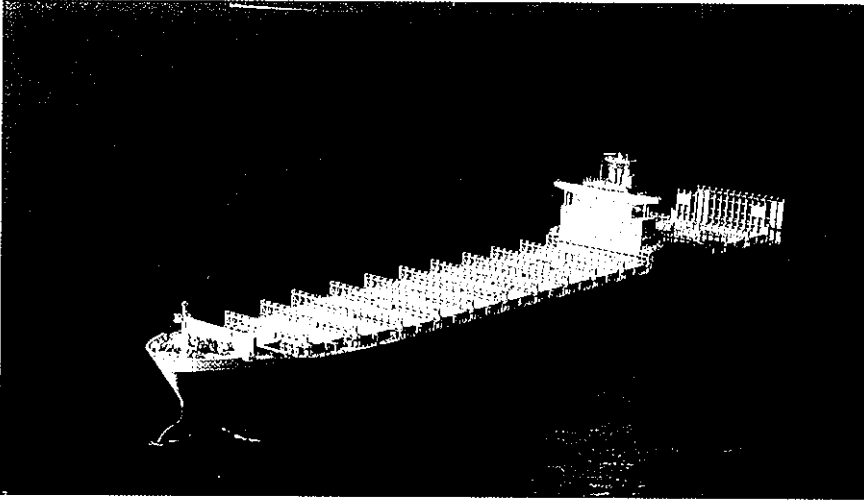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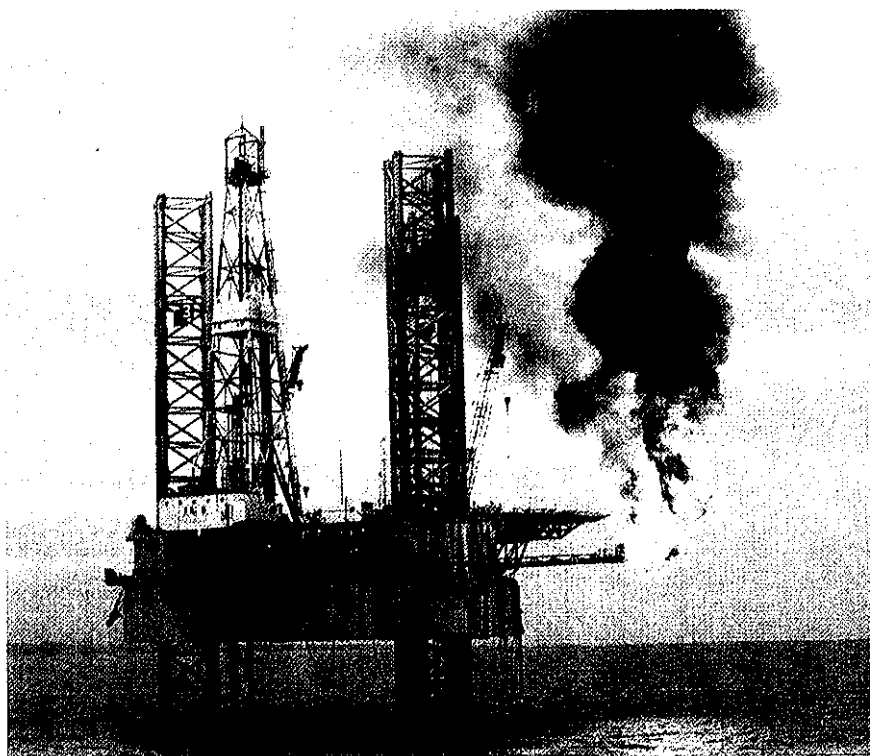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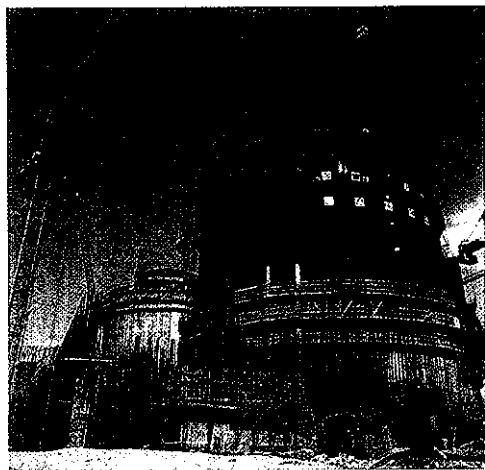
국제거래 계약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계약상담실

지구촌 시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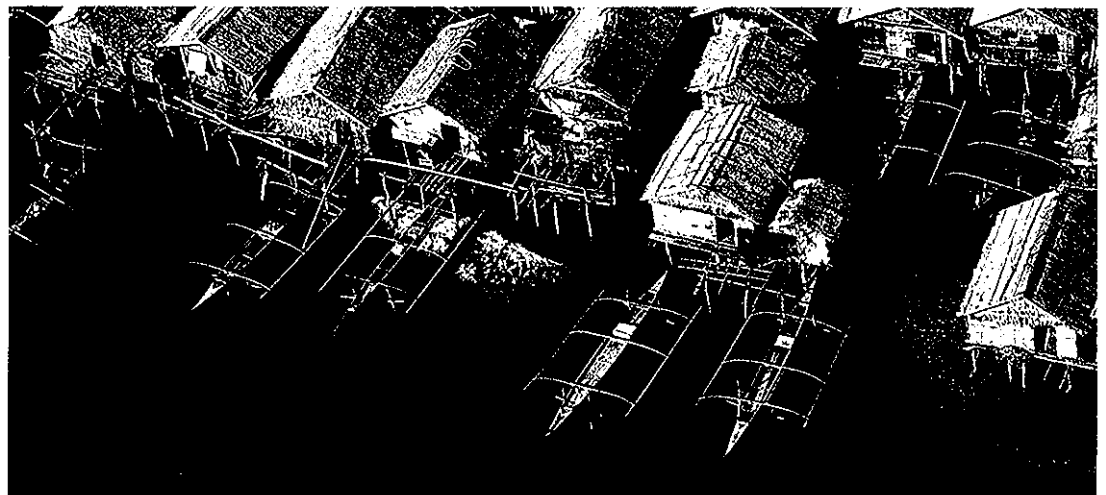
수은, 수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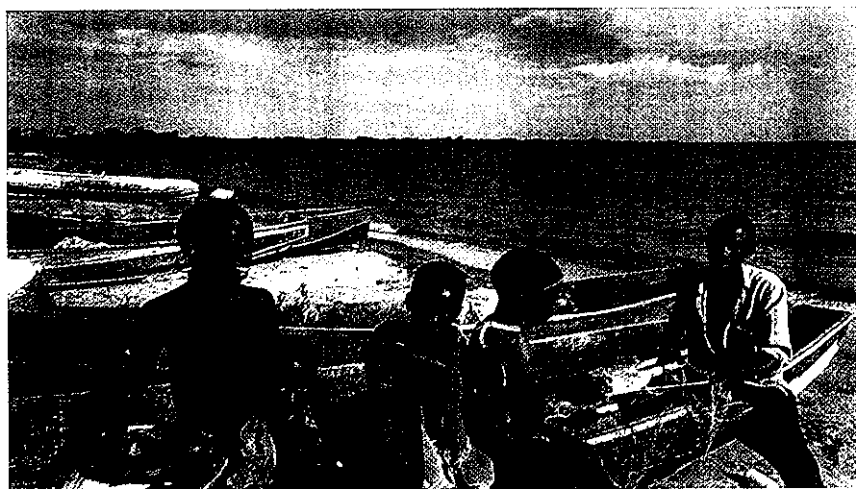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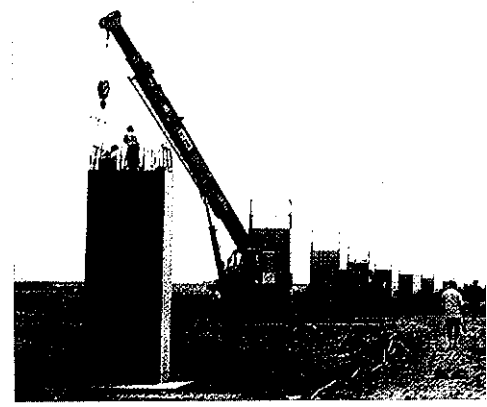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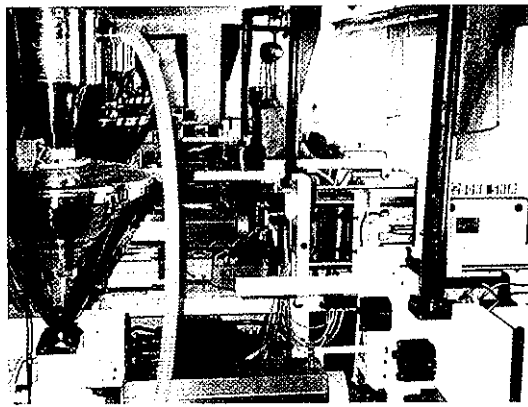
수출업에서 해외투자, 해외 자원개발까지
우리 경제와 기업 세계화의 믿음직한 동반자, 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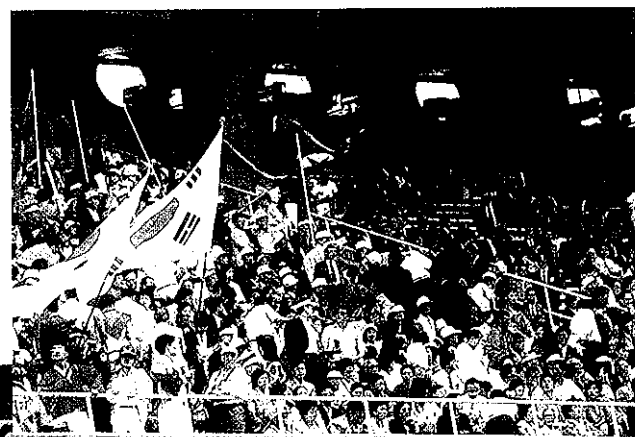
개도국과 함께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성실한 관리자, 수은





21세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전문 수탁기관, 수은





나라 안과 밖,
지구촌 곳곳에 한국정신을 전파하는 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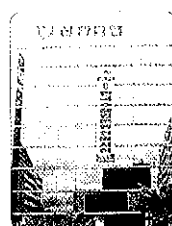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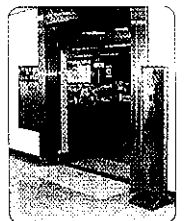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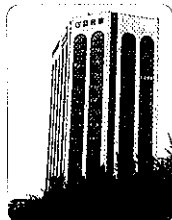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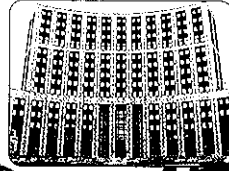
● 본점
인천웅자상담소

● 대구지점

● 부산지점
● 창원지점

● 광주지점





London

Paris

Moscow



New Delhi

Beijing

Tok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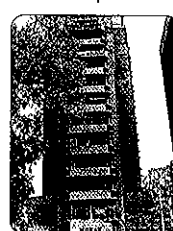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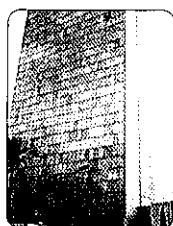
Hong 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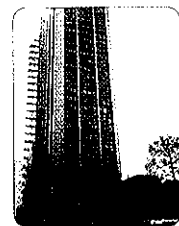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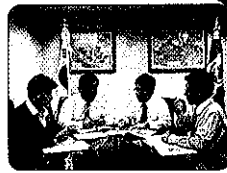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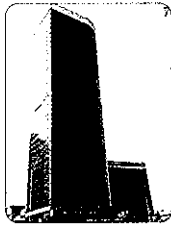
Ho Chi Minh City

Abidj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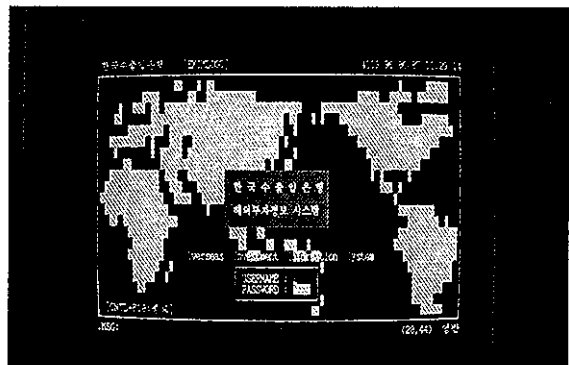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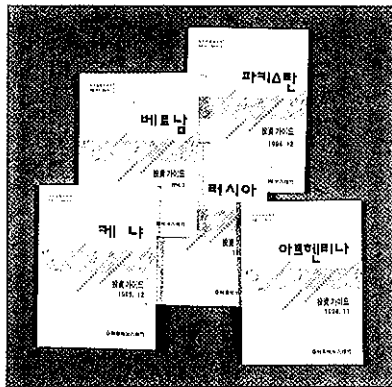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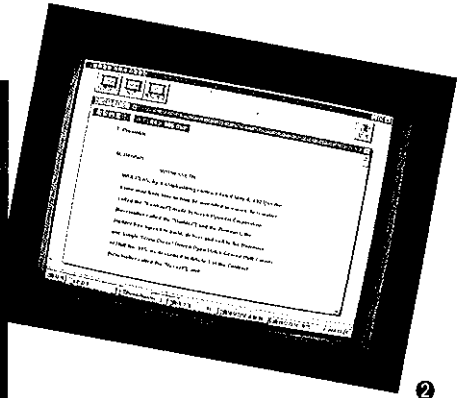
Singapore

Jaka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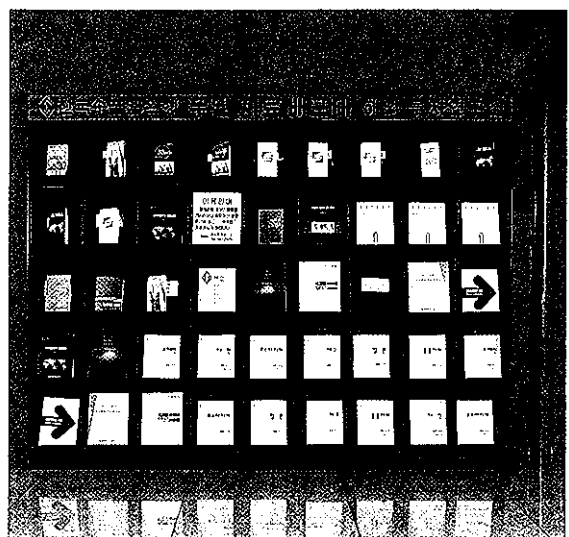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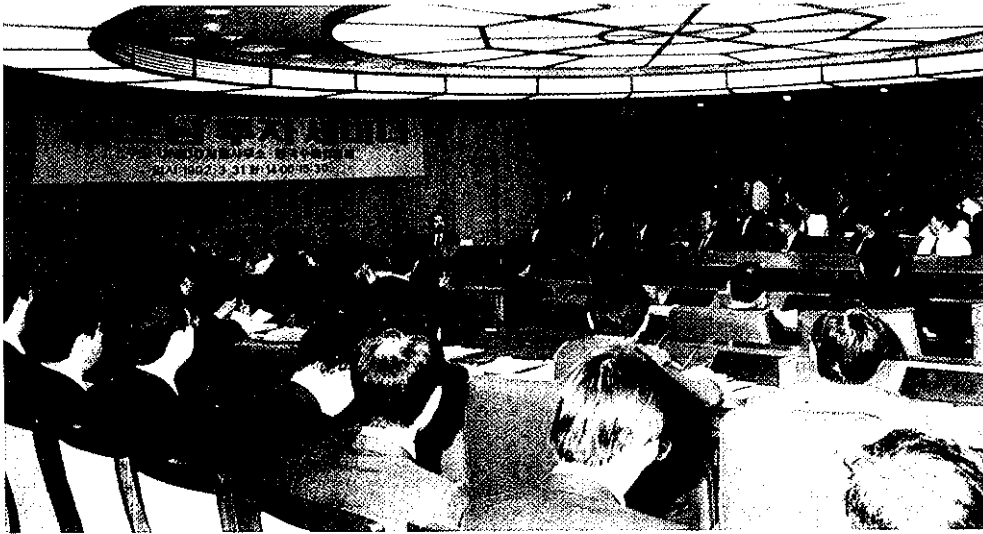


고객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수은인, 세계화의 벽을 함께 넘습니다



- ① 국제계약상담실에서 수은이 양성한
행내 국제변호사와 상담하는 고객
- ② 국제계약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법무정보시스템 화면
- ③ 고객의 해외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별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자료
- ④ 천리안과 하이텔을 통해 제공되는 수은
해외투자정보시스템(OIS)
- 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 자료배포대





①

- ① 신흥 유망시장인 베트남에 대한 투자 세미나 개최
- ② 아프리카개발은행 구매절차관련 세미나 개최
- ③ 부산·경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④ 한국중공업에서 생산현장을 시찰하는 은행장
- ⑤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 기업 워크샵에서의 즐거운 한 때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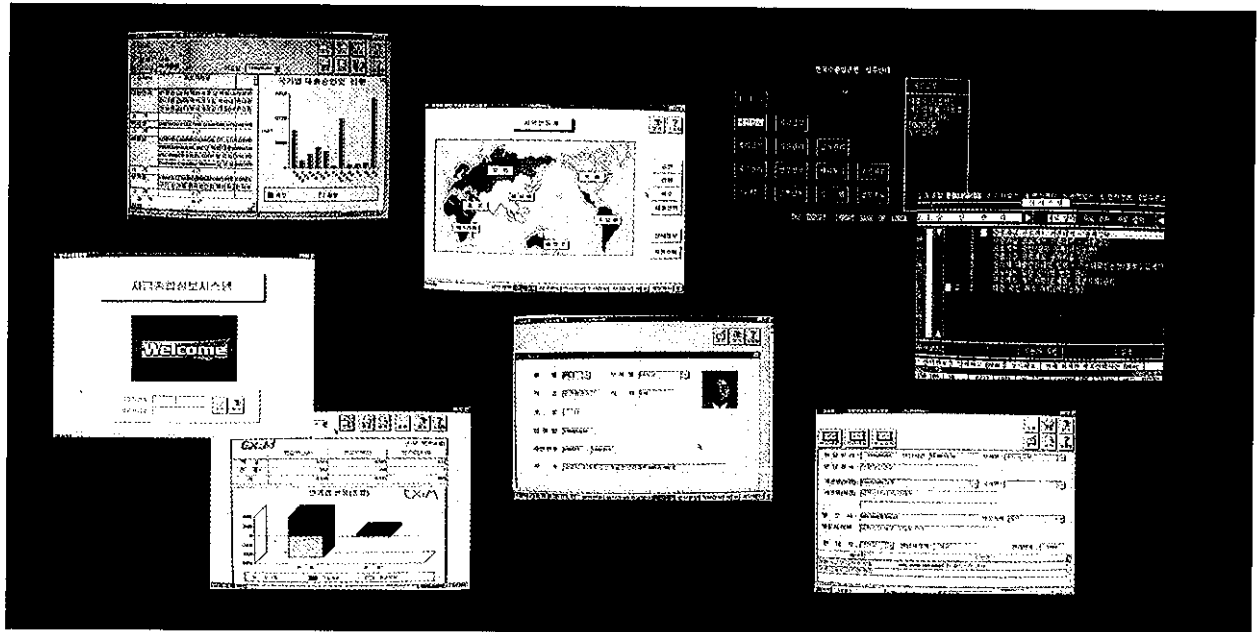


④



⑤

수은인은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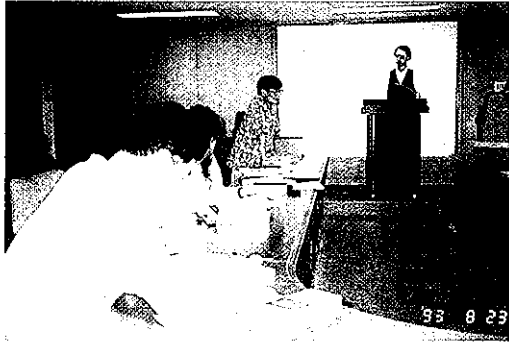


①



②

- ①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는 각종 정보시스템
- ② 34,000권의 정서와 500종의 정기간행물을 비치한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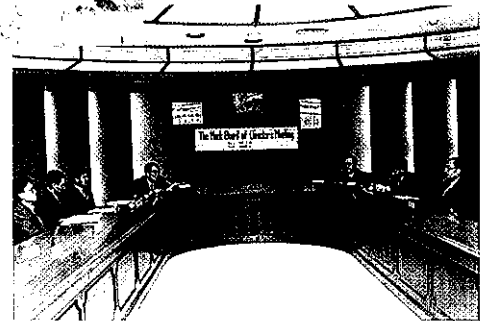
①

① 연수원에서의 합숙 영어연수



②

② 매주 업무지식 공유를 위해 열리는 수요일표회



③

③ 영어 구사능력과 관리자능력 배양을 위한 영어 모의이사회 개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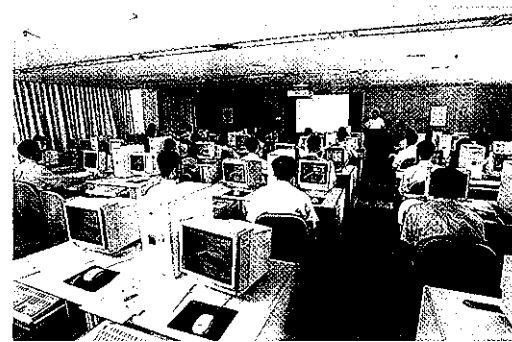
④ 자행 박사 1호 탄생을 기념한 특별강좌 개최

⑤ 수은정보시스템을 배우는 신입행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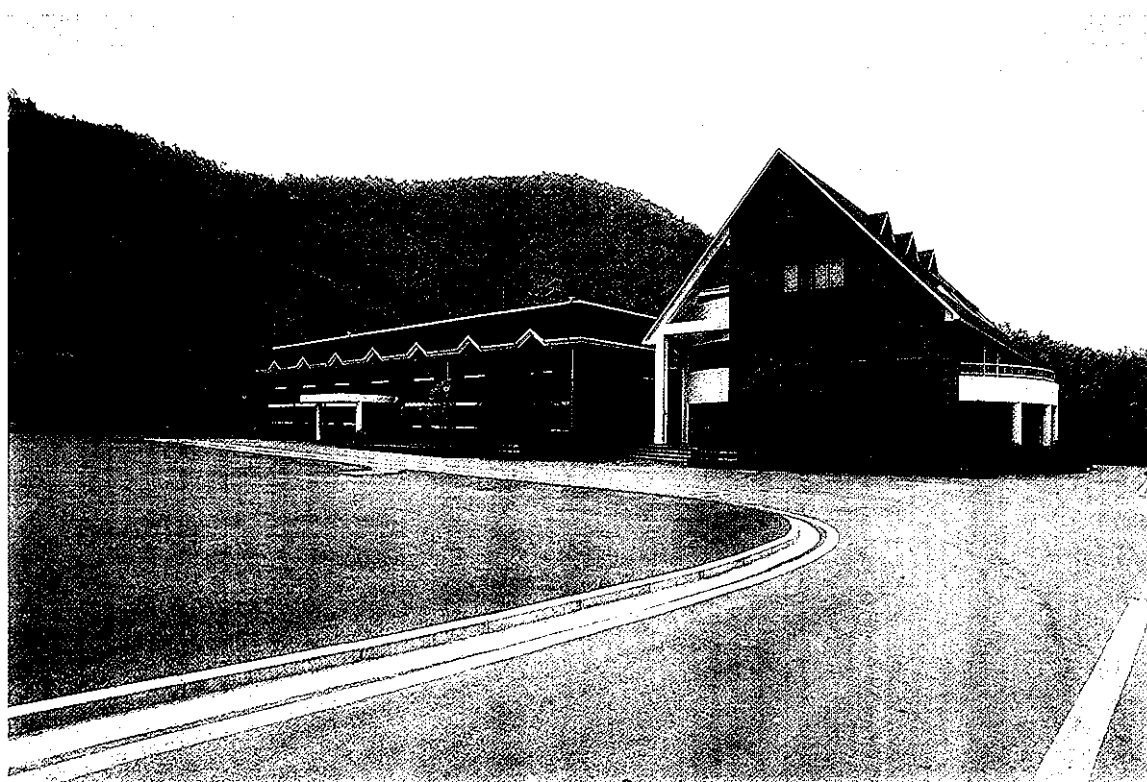
⑥ 첨단장비를 갖춘 강의실과 어학 실습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등을 갖춘 연수원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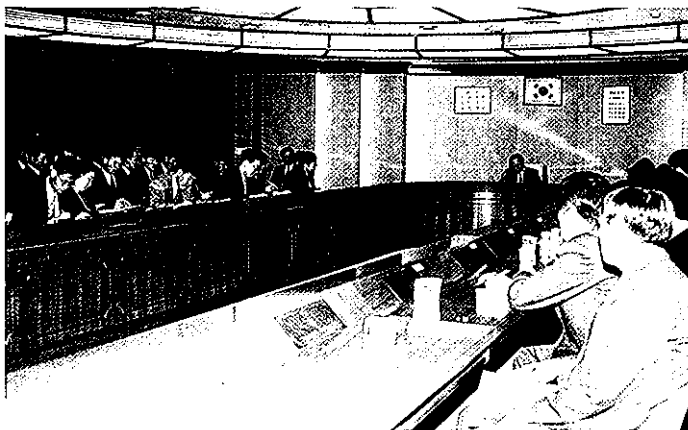
⑥

막힘없는 의사소통과 진보와 개선을 추구하는 정신,
수은문화의 자랑입니다



①

- ① 매주 목요일 즐거운방에서 열리는
의사소통의 장, 맥주광장
- ② 은행장과 4급 직원들과의 간담회
- ③ 발로 뛰는 여신문화급 정립해 나가는
대충 세일 주역들의 좌담회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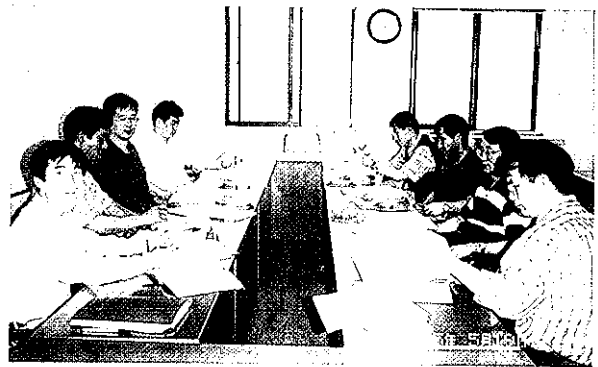
- ① 직원 워크숍을 마치고 포장마차에서의
부담없는 한 때
- ② 직원 워크숍에서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진지한 모습
- ③ 21세기 장기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분임토의
- ④ 1996년도 임원·간부직원 워크숍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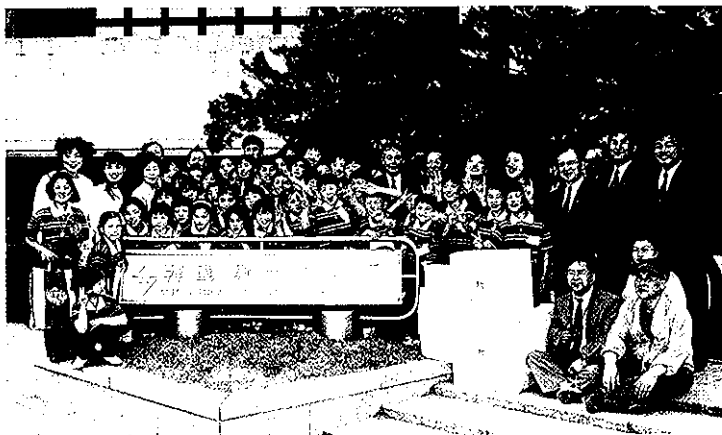
이웃 사랑의 실천, 수은인의 마음입니다



①



③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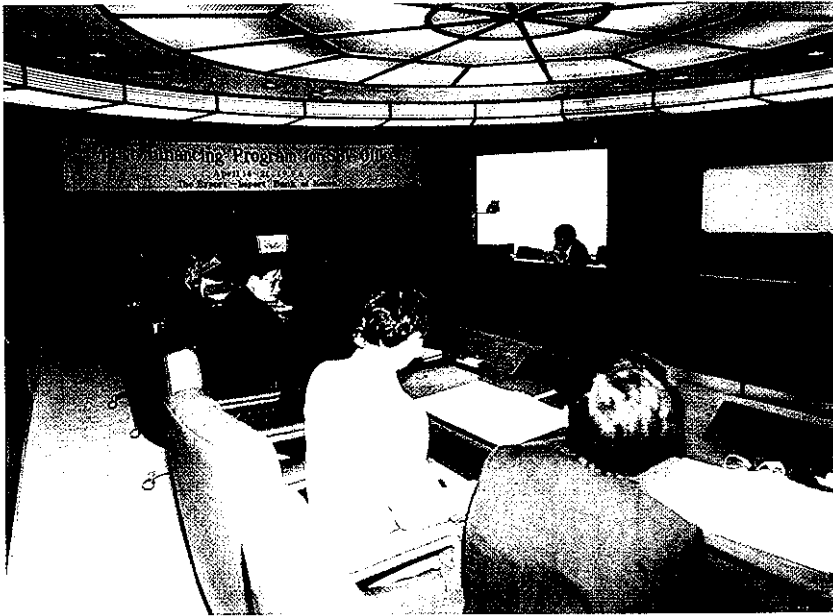
④



⑤

- ① 1995년도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가한 은행장과 직원들
- ② 강원도 평창군 덕거초등학교 어린이 초청행사
- ③ 임직원 부인들이 매년 개최하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바자회
- ④ 은지회가 주최한 불우이웃을 위한 임원차집
- ⑤ 임원차집 성금으로 찾은 신앙요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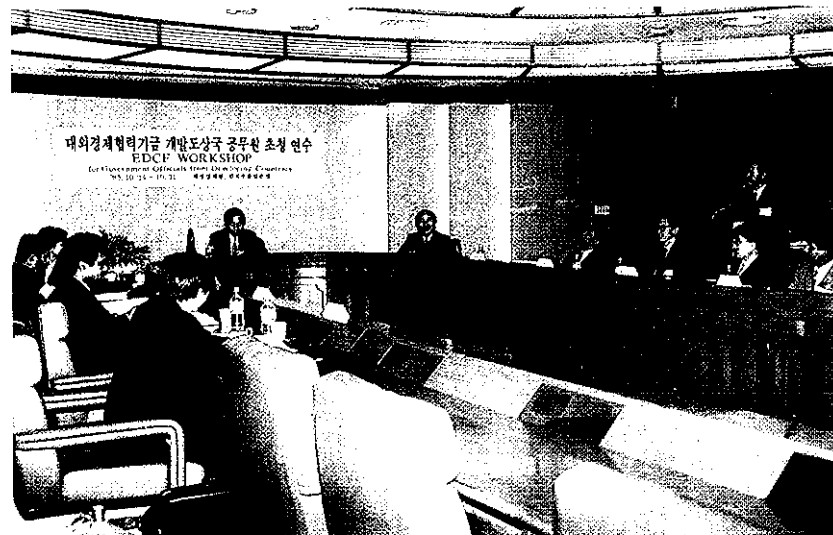
지구촌 사랑의 실천,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과 함께 나눕니다



①



③



②



④

- ① 베트남 중앙은행 연수단 초청행사
- ②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
- ③ 인도 금융계 인사 방한시작단을 맞아
- ④ 재정경제원과 공동 주최한 EDCF 워크숍

마음을 열고 활기차게, 가을 종합체육대회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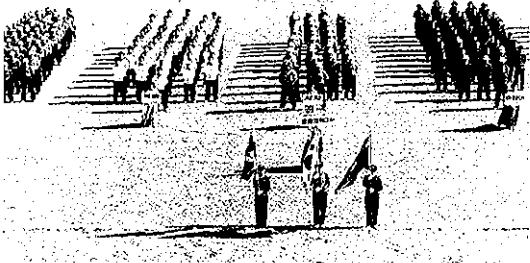
①

① 가을 종합 체육대회 개최식

② 입장식

③ 폐회식

④ 마음은 바쁜데 몸은...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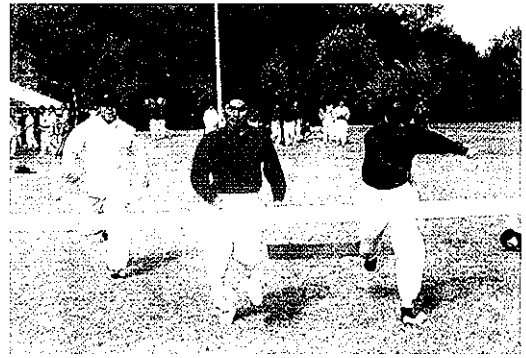
③



④



- ① 100미터 달리기에서의 편사의 스포트
- ② 적자생존의 최후 승자를 가리는 동원 경주
- ③ 풍문반의 흥겨운 사물놀이
- ④ 잔정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푸는 임직원
- ⑤ 체육대회의 꽃인 줄다리기 시합
- ⑥ 참가능을 모르는 남녀 마라토너들
- ⑦ 순발력과 단결력을 요구하는 풍선나르기



①

②



④

③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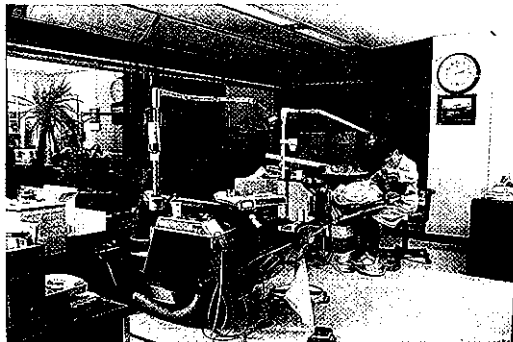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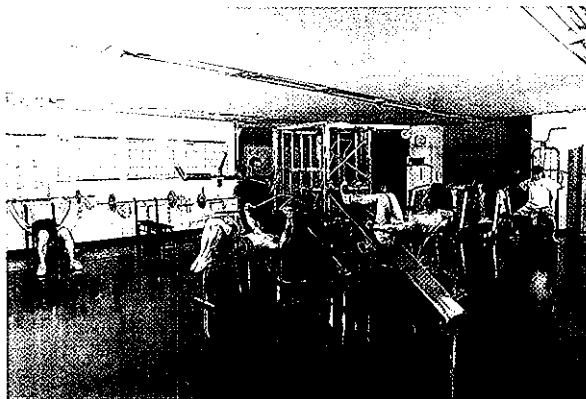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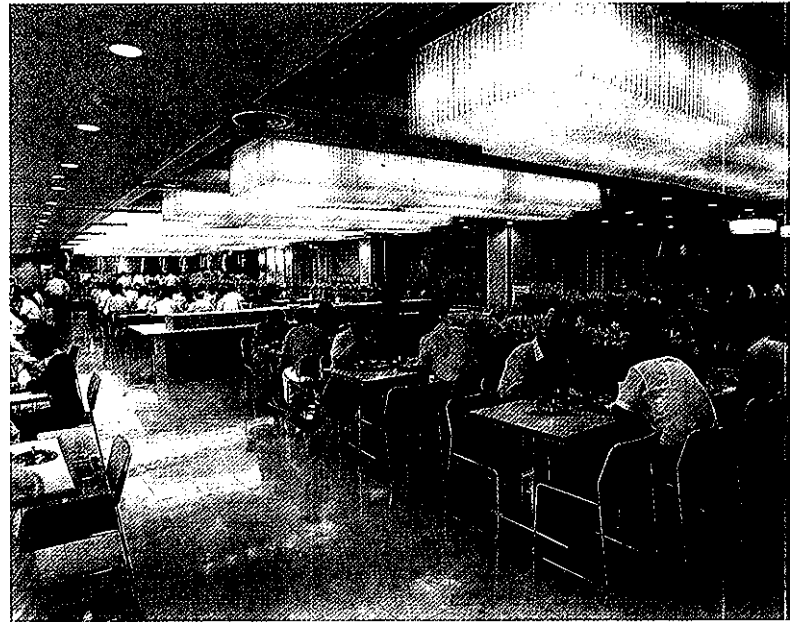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
수은가족의 만족이 수은의 기쁨입니다



②



③



①

- ① '즐거운방'에서의 즐거운 점심
- ②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무실
- ③ 건강한 육체에 깃드는 건전한 정신
- ④ 수은가족에게 개방되는 연성장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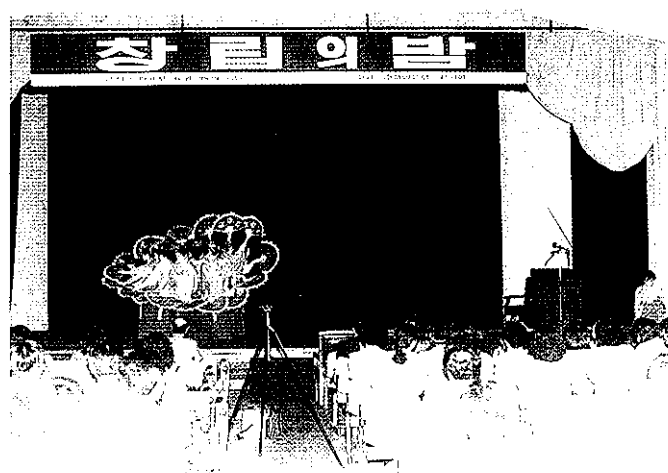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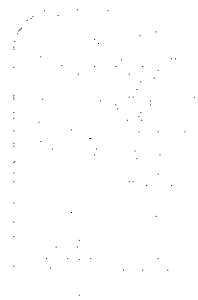
- ① 행가경연대회에서 확인하는 열린마음 한마음
- ② 창립기념 수은가족 초청행사
- ③ 창립의 밤을 수은은 온지회의 부채춤



②



③



제 4 장

韓國輸出入銀行의 組織과 經營

第1節 概觀

第2節 韓國輸出入銀行의 組織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의 經營

第1節

概 觀

1. 組織의 확대 · 발전

수은은 설립 당시 총 80명의 임직원과 업무부, 기획조사부, 총무부 및 감사실 등 3부 1실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政策決定機構로는 수은법과 그 시행령, 업무방법서 등에서 규정된 권한 범위내에서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와, 업무 전반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를 두었다.

그 후 업무의 규모와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은의 조직도 크게 확장되었는데, 설립 초기 연불수출지원체제가 구축되고 수출보험 업무를 수은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1980년에는 8부 5실 1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로 확대되었으며 임직원도 437명으

공채 1기 신입행원 선서식 (1976. 12)



로 늘어났다. 또한 융자심의위원회, 업무심의위원회, 국별신용도 평가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은행장을 자문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직접대출, 전대자금, 수입자금 등 다양한 업무가 도입되었으며, 선박·플랜트 등 자본재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폭넓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한편 1987년에는 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수탁하였으며 금융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1988년 8월 홍콩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외 영업망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킨 결과, 1990년 말 수은의 기구는 15부 4실 2부속실 1국내지점 1국내출장소 9국외사무소 1해외 현지법인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990년대에는 자금공급 규모의 확대, 남북협력기금 업무의 수탁, 업무전산화의 추진 및 수출보험 업무의 분리·독립 등 수은의 업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여신·자금조달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조직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996년 2월 말 현재 수은의 조직은 16부 2실 1연구소 3부속실 4국내지점 14국외 사무소로 조정되는 한편, 4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자회사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임직원 수는 674명에 이르게 되었다.

2. 經營管理의 합리화

가. 경영계획

수은은 설립 이래 경영계획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중장기 경영계획은 1980년대 중반 국제수지 흑자 및 국내 임금상승 등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수은은 1987년 '中長期 業務發展計劃(1988~1992)'을 수립한 데 이어 1991년에는 제2차 중장기 업무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 '輸銀 長期發展方案(1991~2000)'을 마련하여 장기경영계획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연간 경영계획으로서 매년 종합운영계획과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경영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나. 재무관리

수은의 자산 및 부채 규모는 업무규모의 신장과 함께 급속한 증가추세를 지속하였

다. 총자산 규모는 1976년 말 807억원에서 1995년 말에는 6조 6,70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금 규모도 1976년 말의 654억원에서 1995년 말에는 6,85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지면에서 설립 이래 흑자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 규모도 1976년 말 15억원에서 1995년 말에는 3,236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수은은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2년 資産・負債 綜合管理(ALM : asset & liability management)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다. 인사·연수

인사 및 연수관리면에서는 설립 이래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인력의 양성에 주력해왔다. 과학적인 定員 및 職務管理를 위하여 1980년 이래 꾸준히 직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채용·승진면에서 공모전형 및 종합평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1995년에는 직군제를 도입하는 등 職員 專門化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연수제도면에서도 국제금융·여신심사 등 전문 분야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켰으며, 각종 어학연수를 통해 직원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왔다.

라. 전산정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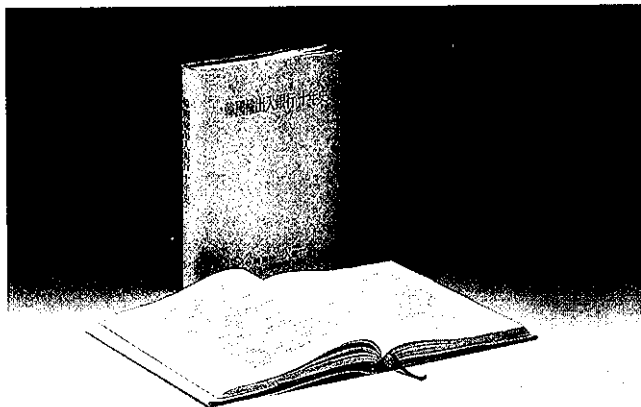
수은은 1979년 이후 業務電算化와 事務自動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급여업무를 자체 개발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대출, 사무관리 등 각 부문에 대한 업무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5년에는 '수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사무자동화 분야에서도 1990년 LAN을 설치한 데 이어 1994년에는 새로운 개념의 groupware를 도입하여 전자결재 문화와 직원간 정보교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마. 자산관리

인원 및 조직의 확대에 따라 창립 후 5년 만인 1982년 말 本店 建物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1985년 9월 건물의 준공을 보았다. 또한 행내연수의 지속적인 증대에 부응하여 1984년에는 경기도 용인군 소재의 研修院을 매입·운용하였으며, 1993년에는 연수수요의 확대로 연수원을 증축·완공하였다. 수은은 이와 같은 본점 건물, 연수원 등 보유자산의 수선 및 개·보수공사와 합리적인 물품의 구입과 재고관리 등을 통해 자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도모하여 왔다.

바. 보수 및 복지후생

보수체계는 직종, 근속연수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한 직무수행 능력이 임금의 격차를 결정하는 年功給 임금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3년에는 여행원제도를 폐지하여 성별에 따른 보수차이를 없앤 데 이어 1995년에는 기준봉급을 생활급 차원의 본봉과 직종·직급에 따른 職能給으로 분리하는 한편, 일반행원의 직급수당을 신설하는 등 能力主義 賃金體系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반 복지자금 대출, 임차주택 대여, 의료혜택, 연성장 운영 등을 통해 직원의 복리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수출입은행 10년사 발간

第2節

韓國輸出入銀行의 組織

1. 政策決定機構

수은은 정책결정기구로서 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運營委員會와 업무 전반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理事會를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수은은 다수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은행장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가. 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1976. 7. 2)



수은의 運營委員會는 이사회 의 상위 기구로서 수은 법과 그 시행령 및 업무방법서 등에 규정된 권한내에서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며 그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다. 수은법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권한 중 주요한 사항으로는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변경, 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과 대외 경제협력자금대출에 관한 업무, 잔여이익금의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은이 이사회 이외에 별도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유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이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은의 업무가 정부의 정책과 국민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수출입은행장, 재정경제원장관, 외무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인, 한국은행총재 및 한국외환은행장이 그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각 1인,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원 소속위원, 통상산업부 소속위원, 외무부 소속위원의 순위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수은의 설립 이래 1995년 말까지 총 207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총 53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운영위원회 업무처리 실적

(단위 : 건)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계
회의	83	57	43	24	207
안건	216	133	133	55	537

운영위원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회의개최 횟수 및 처리안건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종전에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들의 대부분이 이사회로 위임되었기 때문이었다.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1. 회의일시 : 1976년 7월 2일

에 즈음하여 의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은 다음 안건심의에 들어가다.

2. 장 소 : 대회의실

◎ 보고안 제1호 -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업무이관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인수

3. 출석위원

송인상(수은) 고병우(재무부)
박필수(상공부) 김 건(한국은행)
홍완모(외환은행) 오범식(무역협회)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조사부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이 있은 다음 이를 접수하다.

4. 회의

수출입은행이 발족된 다음날 제1차 운영위원회

◎ 의안 제1호 - 현대조선중공업(주) 앞 수출자금대출 200억원의 대출기한 연장

의장의 요청에 의한 업무부장의 제언취지 설명에서 차주사의 갑작스런 임금계획 변경으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있은 다음, 각 위원들 간에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며, 의장이 '이 안건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 부의하겠으니 대출기한 연장건은 소급 적용되도록' 요청하는 발언이 있은 후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함.

제1차 이사회 의사록

1. 의안제목

- 제1호 한국수출입은행 이사회규정 제정
- 제2호 제안제도규정 개정
- 제3호 제안심의위원회규정 개정
- 제4호 휴가규정 중 일부개정

2. 의결일시 : 1977년 12월 30일
15:05 ~ 17:15

3. 출석구성원 : 의장 송인상

전무이사 이태호
이사 원유민, 전석두,
이홍준

나. 이사회

理事會는 운영위원회 다음 가는 意思決定機構으로서 사실상 수은 업무의 중요 사항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이사회의 권한은 수은법, 정관, 다른 내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은의 내규인 이사회 규정에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5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은행장은 은행의 최고집행기관인 동시에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정 당시의 수은법에는 이사회만 규정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한국외환은행이 수은 업무를 대행하던 1974년 12월 제1차 수은법 개정으로 이사회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정부측 위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수은이 정식으로 설립된 이후에는 수은 내부의 경영진으로 구성된 정책결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7년 12월의 제2차 수은법 개정시에 이사회에 대한 근거규정이 다시 마련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전에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과 업무방법서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의 많은 부분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현재에는 이사회가 수은 업무의 대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사회 의 권한과 의무

이번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되어 그 개정된 취지에 의거해서 이사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무릇 사회현상에 있어서 한 제도가 설정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만한 사회적, 객관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족해서 1년 반 동안,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라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설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려는 한국수출입은행 발족사의 한 이정표가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 이것을 우리 이사회의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하여 파오가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이, 또 기대되는 사명이 막강한 만큼 우리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결정이 이 은행에 관계되는 법·시행령·업무방법서·기타 모든 법규가 요구하는 것에 맞도록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어진 권한과 요구되는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그렇게 웅대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

떤 때에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다 기울여서 판정을 해야 되겠고, 또 그 판정한 것이 은행의 이익과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이익에 맞는 것이라는 절대적 자신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1977년 12월 30일은 우리 한국수출입은행사에 있어서 한 장을 기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1차 이사회 의장 개회사)

다. 주요 자문위원회

(1) 업무심의위원회

1977년 8월에 설치된 業務審議委員會는 수은의 주요 업무에 관한 은행장의 자문기구로서, 전무이사, 이사, 해외투자연구소장 및 본점의 각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종합기획부장이 된다.

업무심의위원회는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 은행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간사는 심의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융자심의위원회

融資審議委員會는 수은의 여신업무에 대한 은행장의 자문기구로서 1976년 8월에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전무이사, 이사, 자금부장, 국제금융부장, 해외투자연구소장, 여신개발부장 및 각 여신부서장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여신개발부장이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융자상담건 중 지원요건의 일부가 업무방법서 등의 규정과 맞지 않는 거래 또는 사업의 지원여부를 검토하거나 여신관련 제도 또는 방침의 개정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3) 국별신용도 평가위원회

1977년 9월에 설치된 國別信用度 評價委員會는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대상국가의 신용도 평가에 관하여 은행장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국별신용도 평가는 대상국가의 정치·경제의 안정성, 외채상환능력, 경제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수은 여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국별신용도 평가위원회는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 해외투자연구소장, 여신관계 부서장 및 경험기금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국별신용도 평가에 관한 사항과 신용도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심의한다.

(4) 인사위원회

人事委員會는 1976년 7월 수은의 설립과 동시에 설치된 은행장 자문기구로서 인사 제도, 직원의 포상 및 징계, 직원의 연수계획 등 인사와 연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는 전무이사, 이사 및 인사부장으로 구성되고, 전무이사는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사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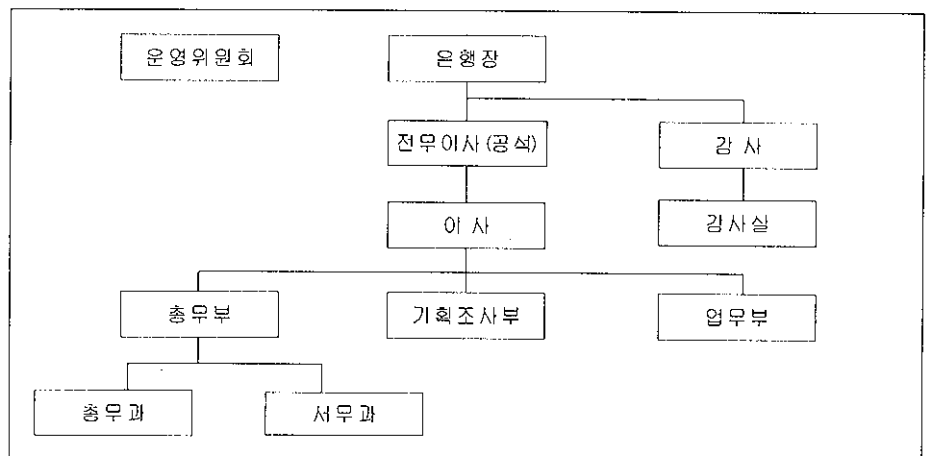
(5) 기타 자문위원회

수은은 전술한 각 위원회 이외에도 與信委員會, 企業信用度 評價委員會, ALM委員會, 電算化推進委員會 등의 자문기구를 둠으로써, 국별여신한도 초과거래의 지원, 신용대출, 자산·부채의 종합관리, 업무전산화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은행장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2. 本店

수은은 1976년 7월 1일 설립될 당시 業務部, 企劃調查部, 總務部, 監査室 등 3부 1실의 소규모 조직을 갖추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수은 설립 당시의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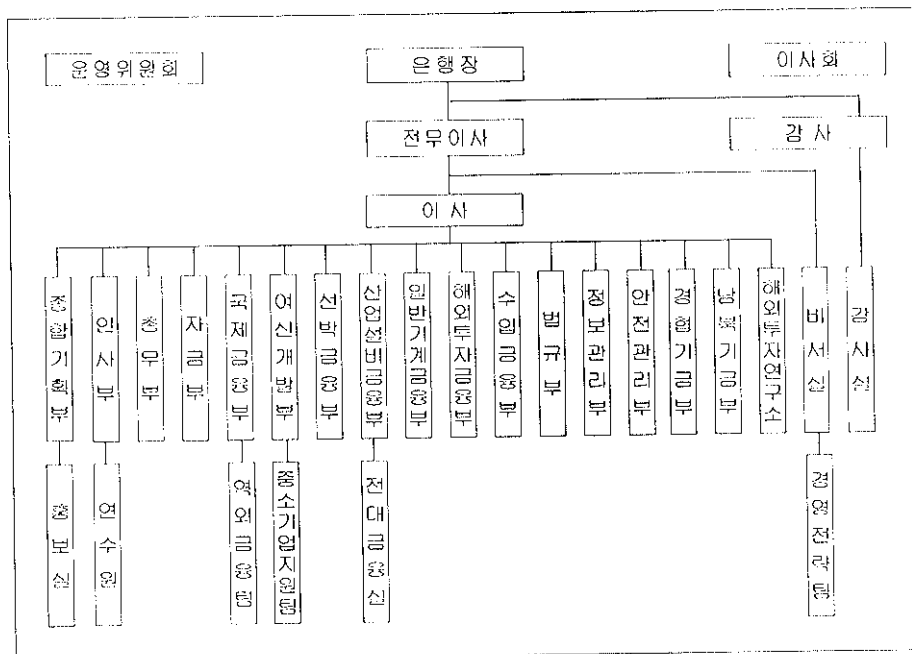


설립 이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수은은 업무영역이 확대 또는 변경됨에 따라 40차에 걸친 기구개편을 통해 조직을 확대·정비하여 왔으며, 조직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설립 초기인 1976년부터 1980년까지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연불수출지원 체제가 구축되고 정부대행 업무인 수출보험 업무를 인수함에 따라 조직이 8부 5실 1 국내출장소 6국외사무소로 창립시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1981~1990년의 10년 동안은 직접대출, 전대자금, 수입자금 등의 업무가 도입되고 플랜트 수출, 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해외차입이 자금조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해외투자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수은이 해외투자정보의 연구 및 제공을 담당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도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말 수은의 기구는 15부 4실 2부속 11 국내지점 1 국내출장소 9 국외사무소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 기간 중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국제금융 업무 및 해외 자금조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금융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자회사인 홍콩 현지법인을 설립한 점을 들 수 있다.

수은 본점의 조직도 (1996. 2 현재)



1991년부터 1996년 초까지는 자금공급 규모의 확대, 남북협력기금 업무의 수탁, 업무의 전산화, 수출보험 업무의 분리 이관 등 업무의 확대·변경과 함께 조직의 내실을 다져온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조직도 정비되어 1996년 2월 말 현재의 기구는 16부 2실 1연구소 3부속실 4국내지점 14국외사무소를 갖추게 되었으며, 자회사로 4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은 본점 조직의 변천과정을 여신, 기획·자금·조사, 일반관리, 정부대행 및 수탁업무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여신부문

수은은 설립 당시에는 업무부로 하여금 延拂輸出金融 支援業務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1977년 1월에 업무부를 심사부와 금융부로 분리하여 확대 개편하였다. 이는 여신심사와 집행업무가 같은 부서에서 수행됨으로써 여신업무의 전문화가 어려웠고 업무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심사부는 대출의 심사와 승인, 여신운용지침 등 여신에 관한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부는 대출승인에 따른 자금집행과 대출금회수, 담보권 실행 등 여신의 사후관리 업무 및 이와 관련되는 외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해 8월에는 대출심사 업무가 증가하고 1979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직접대출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대출 업무를 취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심사부를 심사1부와 심사2부로 개편하여 여신심사의 능률 제고를 도모하였다.

1985년 9월에는 금융부를 금융1부와 금융2부로 분리 개편함으로써 업무량 증가에 대처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업무를 보강하도록 하였다. 1989년 2월에는 수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확대, 수입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의 대출수요 증가 등 업무여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신부서의 업무를 자금별로 분류하여 재조정하였고, 1990년 2월에는 여신제도의 개선 및 업계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신총괄부를 신설하였다.

1991년 1월에는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의 승인과 집행기능을 통합하는 대신 자금별 또는 품목별로 여신

부서의 업무를 전문화하였다. 즉 여신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심사1·2부와 금융1·2부로 되어 있던 여신부서를 船舶金融部, 産業設備金融部, 海外投資金融部 및 輸入金融部の 4개 부서로 재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박금융부는 선박수출에 대한 대출 승인 및 집행 업무를 맡고, 산업설비금융부는 선박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자금대출과 전대자금대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금융부는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수입금융부는 수입자금대출의 승인과 집행 이외에 사후관리와 외국환 관련 업무도 수행하였다.

1991년 11월에는 여신총괄부가 여신기획 기능의 강화에 따라 여신기획부로 개명되었으며, 1992년 8월에는 기술검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여신기획부의 부속실로 기술실을 신설하고, 여신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융부에서 일괄하여 취급해 오던 사후관리 업무를 각 여신부서로 이관시켰다.

1994년 2월에는 여신기획부를 폐지하고, 여신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수은조직의 생산성 및 전문성 제고와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도모하였다. 즉 산업설비금융부의 담당업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 유럽, 아프리카는 산업설비금융1부가, 기타 지역은 산업설비금융2부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해외투자금융부도 분리 확대하여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해외투자금융1부가, 기타 지역은 해외투자금융2부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1995년 2월에는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술실을 폐지하고 해외투자금융1·2부를 해외투자금융부로 통합하였다. 한편 여신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신관련 업무의 기획 및 통할을 전담하는 與信開發室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기획, 통할을 담당하는 中小企業支援팀을 설치하였으며, 부서장의 통할을 받는 부서내 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산업설비금융1·2부를 지원품목에 따라 산업설비 수출지원, 기술제공자금 지원 및 직접대출을 담당하는 産業設備金融部와 일반기계류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 및 새로 도입된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一般機械金融部로 개편하였다. 또한 역외금융은 여신업무이면서 역외자금 조달업무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금융부 부속팀으로 域外金融팀을 신설하였으며, 각 자금의 특성에 맞추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팀을 폐지하고 업무를 각 여신부서 및 여신개발실로 이관하였다.

1996년 2월에는 해외투자정보팀의 폐지에 따라 해외투자금융부에 해외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거래선 알선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여신개발부 부속팀으로 중소기업지원팀을 부활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였다.

나. 기획·자금·조사부문

설립 당시에는 수은 조직의 규모가 작아 기획 및 조사 등의 업무를 기획조사부에서 통할하였으나, 기획·자금 및 조사 등 성격이 상이한 업무를 1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처리상 비능률적인 면이 많았다. 또한 조사업무도 수은의 특수성에 맞추어 국별신용도 평가 및 각종 조사분석에 관한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1977년 1월 기획조사부를 업무부와 해외투자조사부로 분리 개편하고, 신설된 업무부 내에는 기획과, 법규과 및 자금과를 두었다.

1978년 2월에는 선박, 산업설비 등의 연불수출 증대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의 효율적인 조달 및 운용과 해외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부의 자금과를 자금부로 분리 개편하였다. 또한 수출관련 계약서의 법적심사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부 소속 법규과를 법규실로 독립시켰으나, 1982년 3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정기구의 축소 정책에 부응하여 법규실을 임원부속실과 통합하여 문서부로 개편하였다.

1986년 4월에는 문서부를 다시 법규실과 서무부 소속 임원부속실로 분리 개편함으로써 동일 부서내에서 상호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임원의 서무업무, 의사업무 및 문서관리 업무는 기획부와 업무개선실이 각각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1988년 11월에는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조사부를 海外投資研究所로 확대 개편하여 연구소내에 해외투자조사부 및 해외투자정보센터를 두었다.

1989년 2월에는 해외투자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조사부를 海外調査部와 國別調査部로 분리시켜 2부 1실의 해외투자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였고, 1991년 1월에는 향후 수은의 외화자금의 조달규모가 크게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적인 국제금융 업무 수행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國際

金融部를 신설하였다.

1992년 3월에는 대외론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의 적극적 추진 등 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실을 종합기획부의 부속실로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기획부는 종합기획부로, 종합기획과는 경영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8월 21일에는 해외투자연구소내에 해외투자정보센터를 해외투자정보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1994년 2월에는 경영 전반에 관한 기획업무를 통할하는 경영기획실을 은행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으며, 종합기획부를 경영총괄부로 개편하여 총괄과, 제도과, 예산과 및 국제과를 두었다. 한편 제도과의 신설에 따라 여신기획부를 폐지하고 해외투자조사 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해외조사부를 국별조사부에 흡수 통합시켰다.

1995년 2월에는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및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하여 경영기획실과 해외투자정보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영전략팀과 해외투자 설명회, 세미나, 외빈면담을 담당하는 해외투자정보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경영총괄부의 명칭을 부서기능을 감안하여 종합기획부로 다시 변경하고 부서내에 경영기획과를 신설하여 중장기 경영계획, 직제, 총 정원, 위임전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서무부 통신과의 폐지에 따라 텔렉스 등의 업무를 자금부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1996년 2월에는 조직 정비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정보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해외투자금융부 및 해외투자연구소 등의 유관부서로 이관하였으며, 팀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서내에 설치되어 있던 과를 폐지하고 부서내 팀제를 도입하였다.

다. 일반관리부문

수은의 설립 당시 인사, 서무 등 일반관리 업무는 총무부내의 총무과와 서무과가 담당하였으나, 1977년 1월에는 총무부내에 안전계획과를 신설하였고, 1979년 10월에는 임원의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부속실을 신설하였다. 안전계획과는 1979년 10월 안전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80년 3월에 독립부서인 안전관리실로 승격되었는데, 이는 1979년부터 수은이 을지연습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및 지휘, 감독업무가 추가되어 독립된 전담부서의 신설이 불가피

했기 때문이었다.

1980년 11월에는 전반적인 업무전산화 추진과 더불어 각종 통계자료의 기록·보존 및 분석, 거래상대국별 경제동향, 투자환경 등에 관한 정보자료를 수집, 분석하는데 필요한 집중 정보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산반을 설치하였다.

1985년 9월에는 본점이 여의도 신축 行舎로 이전함에 따라 행사관리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총무부로부터 서무부를 분리하고 밑에 서무과, 관리과 및 영선과를 두었다. 한편 서무부가 분리 확대됨에 따라 인사, 후생, 연수 기능만 맡게 된 총무부의 명칭도 인사부로 변경하여 종전의 총무과를 인사과와 급여과로 분리하고 연수과를 뒀으로써 인사관리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였다.

1986년 4월에는 서무부 소속 임원부속실을 다시 설치하여 임원의 서무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1990년 2월에는 淨化業務의 폐지 및 전산업무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개선실을 서무부 부속 전산실로 개편하는 한편, 서무부에 통신관련 업무를 전담할 통신과를 신설하였다.

1991년 7월에는 임원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수은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 홍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서무부 부속 임원부속실을 전무이사 직속의 독립된 비서실로 개편하는 한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을 통한 종합 정보관리체제의 조기 구축을 위해 서무부 부속 전산실을 독립부서로 개편함으로써 조직관리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전산실은 1991년 11월 1일 정보관리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1993년 2월에는 연수기능의 강화 및 연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사부내 부속 기구로 연수원을 신설하였으며, 전산화 업무의 확대 및 업무기능 분화에 따라 정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부내에 과체도를 신설하여 정보기획과, 시스템개발과, 시스템운영과, 정보관리과의 과체제를 갖추었다. 1994년 2월에는 인사부 급여과를 급여과와 후생과로 분리하여 효과적인 직원복지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업무개선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경영총괄부, 인사부, 감사실로 이관하였다.

1995년 2월에는 서무부 통신과를 폐지하여 텔렉스 등의 업무는 자금부로 이관하고, 기타 통신업무는 서무부 영선과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9월에는 인사부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부내에 인사기획팀을 설치하고 인사부의 인사과와 연수과를 통합하여 인사관리과를 신설하였다. 1996년 2월에는 서무부의 명칭을 총무부

로 변경하는 한편, 팀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인사부, 총무부, 정보관리부 내에 설치되어있던 모든 과를 폐지하는 대신 부서내 팀제로 전환시켰다.

라. 정부대행 및 수탁업무 부문

(1) 수출보험 업무

1976년 12월 수출보험법의 개정으로 수은이 수출보험 업무를 대행하게 됨에 따라 1977년 1월 수출보험부를 신설하여 업무과, 관리과 및 신용조사과를 두었으며, 8월에는 수출보험제도의 연구, 개선 및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과와 보상과를 추가 신설하였다. 이어 수출보험의 인수실적이 늘어나고 抱括保險制度의 실시에 따라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1981년 2월에 수출보험부를 수출보험1부와 수출보험2부로 확대 개편하고, 수출보험1부에는 통합과, 업무과 및 보상과를 두고 수출보험2부에는 제도조사과, 관리과, 신용조사과를 두었다.

1988년 2월에는 상사신용 조사 및 국별정세 조사 등 수출보험 관련 조사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수출보험조사부를 신설하였으며, 1991년 1월에는 계속되는 업무량 증가와 업무전문화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출보험 관련 3개 부서를 輸出保險總括部, 輸出保險引受部, 輸出保險補償部 및 輸出保險調查部の 4개 부서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992년 7월 7일에 韓國輸出保險公社가 설립되어 수출보험 업무를 인수함에 따라 수출보험 관련 4개 부서는 폐지되었다.

(2)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1986년 12월에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제정되고 정부로부터 경협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게 됨에 따라, 수은은 1987년 6월 經濟協力基金部를 신설하여 경협기금의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개도국의 차관요청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1991년 1월에 경협기금부를 경협기금1·2부로 확대 개편하여 1개 부서를 추가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경협기금1부는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 및 해외투융자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경

협기금2부는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국내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능률의 제고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수은은 1995년 2월에 경협기금1부와 경협기금2부를 단일부서인 경협기금부로 통합하였다.

(3) 남북협력기금 업무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정부로부터 수탁하여 수은은 1991년 2월 南北基金部를 설치하여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3. 支店・國外事務所・現地法人

가. 국내지점

1977년 당시의 부산사무소 전경



수은은 1977년 1월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 업무를 인수하면서 同 공사의 부산사무소도 함께 인수함으로써 최초의 지방점포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수은은 업무 신장 및 지방소재 기업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요 도시에 支店과 出張所를 설치하여 왔으며, 현재에는 부산, 대구, 광주, 창원에 지점을 두고 있고 인천에 融資相談所를 개설하고 있다.

(1) 부산지점

1977년 1월 대한재보험공사로부터 부산사무소를 인수한 후에도 그 명칭은 부산사무소였으나, 소장에 대한 은행장 대리권 위임 및 이들 행위에 수반한 등기절차 등 제반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6월에 부산출장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부산출장소는 1985년 5월부터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은내국신

용장 수해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점이 행하고 있는 내국신용장 매입의 중개업무를 개시하여 금융부문 업무도 본격적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출장소는 수출보험 인수와 수은내국신용장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소라는 명칭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로 인식되어 업무 신장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점포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86년 3월 부산지점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광주지점

광주지점은 호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수출보험 업무 지원을 위하여 1987년 12월에 광주출장소로 개설되었다. 이후 이 출장소는 광주 및 호남 지역에 위치한 유망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수은 업무의 홍보를 통하여 지원업무를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오던 중 1995년 6월 광주지점으로 승격되었다.

출장소가 지점되던 날

출장소라는 명칭은 수신업무만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의 최말단 조직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돈이 있음직한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는 어김없이 금융기관의 출장소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비록 수신업무는 취급하지 않지만 호남지방의 대표도시인 빛고를 광주에 우리은행 출장소가 생긴 것은 1987년 12월이었다.

광주출장소가 개소하게 된 것은 부산지역에 지점이 있는 만큼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모습을 갖추고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출장소 개소 이후 7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구지점과 창원출장소가 문을 열게 되었지만, 광주의 출장소는 여전히 출장소로 남아 있었고, 우리은행의 역할에 걸맞지 않게 이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이 지역 산업구조가 우리의 지원대상과는 다소 거리가 먼 데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업무를 이 지역 기업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매달 열리는 간부 회의에서 발표할 실적이 없었던 전임 출장소장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이는 잘 모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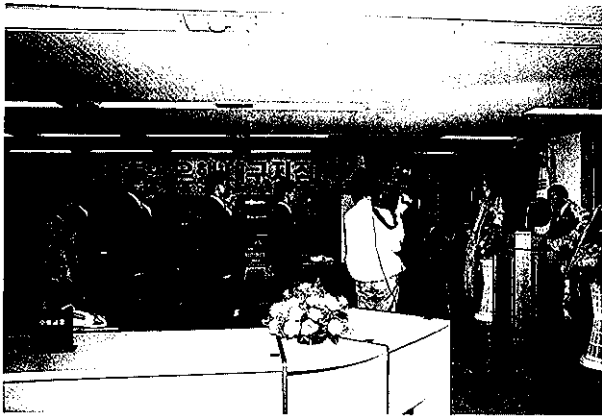
그러던 중 제5대 정성창 소장이 재임하던 1993년 하순께 해외투자자금으로 약 6,600만 원을 첫 대출하게 되었고, 출장소의 지점승격 희망을 본점에 구두로나마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1994년 8월 제6대 박진철 소장이 부임하고 나서 지점 승격의 본격적인 추진과 업무완성화를 위한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이 지역 상공회의소가 정부와 본점에 지점승격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게 되었다. 여신지원도 1994년 중 22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도약의 밑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드디어 1995년 6월 23일 채홍식 이사과 이곳 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은행 지점장 등이 자리를 빛낸 조촐한 지점승격 기념식이 열리던 날, 우리가 나눈 성취감과 기쁨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흡족할 수 없었고, 지점에 근무하는 보람을 넉넉히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지점승격이 이루어진 1995년, 업무실적은 전년보다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출장소도 그런 큰 금액의 여신을 취급하나요?"하는 우리사장 장 모르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더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 이제 광주 한복판 금남로에 터잡은 광주지점이 이 지역에 수출입은행의 인상을 각인시킬 날도 멀지 않으리라 믿는다.

(광주지점 제공)



대구지점 개점 기념식 (1992. 6)

(3) 대구지점

대구지점은 주변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2년 6월 신설되었다.

다른 지점들은 사무소 또는 출장소로 시작한 뒤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점으로 승격되었으나, 대구지점은 설립 이전부터 대구·경북지역내 中小企業의 금융지원 요청이 많았으므로 처음부터 지점형태로 출발하였다.

(4) 창원지점

현장영업의 선봉에 서서

아스팔트 온도 40℃, 한국전쟁 때부터 내려온 전통의 따로국밥, 전국 어음부도를 1위, 전국의 고속도로가 모이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소비도시인 대구, 1991년부터 시작된 지하철 1호선 공사로 하루 종일 분주한 시내 한복판.

1992년 6월 30일 부산지점, 광주출장소에 이어 3번째 국내점포로 문을 연 대구지점은 2개월여의 짧은 개점준비에도 불구하고, 평소 해외투자 설명회 공동개최로 인연이 깊었던 대구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지역 상공인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힘찬 출발을 할 수 있었다.

다른 지점과 달리 대구지점은 개점과 동시에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은 물론, 개점 후 6개월만에 우리은행 초유의 '6개 업체 공동 해외투자사업' 지원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타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던 지역 상공인에게 '지점 알리기'가 무엇보다 급선무였던 개점 당시, 우리는 주로 direct mail이나 전화안내, 제도 설명회 개최 등 전형적인 홍보활동에 치중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상업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지점 최초로

산업설비 연불수출거래를 이사회외 예외취급으로 지원하는 등 각 자금별 영업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1995년부터는 업무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점 영업기반의 확대를 위해 지방점포에도 자금별 업무계획 목표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고 광주출장소와 창원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6. 23)되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은행도 4개의 지방점포를 활발히 가동하게 됨에 따라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자금과 해외투자자금,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공급이 눈에 띄게 대폭 확대되었다.

지방점포라 해서 취급하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없게 되었을 만큼 4개 지점의 업무신장은 꾸준히 상승하여 대구지점은 개점된지 만 4년이 채 되지 않아 대출잔액 1,000억원을 돌파하였고, 이제는 품목별 자금한도로 인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아픔(?)을 겪게 되었다. 지역업체 스스로도 서울의 본점이 단능이 아님을 직접 체험이나 구전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고객에 대한 접근도 다양해져, 국제 저금리

현상으로 연불거래 지원이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업체에게 전대자금 지원방식의 수출금융을 안내, 1996년 4월 현재 4건의 전대자금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였으며, 1995년에는 우리은행 최초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금 대출을 신용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1996년 7월 1일이면 대구지점은 개점된지 4년 1일이 된다. 1996년 3월 29일 포정동 서울은행 건물에서 범어동 중앙투자신탁 건물로 이전한 대구지점은 미개척 분야였던 반도체 수출거래 등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이제 제2의 도약기를 맞아 힘찬 비상을 꿈꾸고 있다.

지점의 역사는 곧 본점의 역사이다. 지점은 본점의 분신이기 때문이다. 멀리서 본점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본점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높여주며 나름대로 대외거래 공적신용기관으로서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모든 지점이 이제는 다 본점의 선봉장인 것이다.

(조종호 / 당시 대구지점 대리)

창원지점은 지원업체 다양화를 위한 전국적인 영업망 구축의 일환으로 1994년 4월 출장소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였다. 그 이후 창원출장소는 창원지역내 지원업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이라는 위상 제고를 위하여 1995년 6월 광주지점과 함께 지점으로 승격되었다.

(5) 인천용자상담소

인천용자상담소는 수은 업무의 홍보 및 상담 등을 통해 경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수출공단 등 각종 공단으로부터 지원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1995년 7월에 설립되었다.

나. 국외사무소

수은은 설립 2년 뒤인 1978년에 뉴욕과 런던에 國外事務所를 처음으로 개설한 데 이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요 지역에 국외사무소를 계속 설치하여 현재 전 세계 14개 도시에 국외사무소를 두게 되었다.

이들 국외사무소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주 지역

수은은 현재 미주 지역에 뉴욕사무소, 워싱턴사무소, 멕시코시티사무소, 사오파울루사무소 등 4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뉴욕사무소는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해외 자금조달과 관련된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동향 조사와 수은이 지원가능한 거래의 알선 등을 위해 1978년 6월에 설치되었다. 미국내의 또다른 사무소인 워싱턴사무소는 1994년 2월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1978년 8월에 설치된 로스앤젤레스사무소가 수출보험 업무의 분리로 인하여 1993년 9월에 폐쇄됨에 따른 조치였다. 특히 워싱턴에는 미국수출입은행, OPIC 등 수은과 유사한 공적수출신용기관 뿐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 등 수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國際金融機構들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업무 관련 정보수집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도모



창원출장소의 지점승격(위) 및
인천용자상담소의 개소 기념식(아래)

하기 위하여 사무소가 설치된 것이다.

한편 수은은 1981년 9월에 개설한 칠레 소재 산티아고사무소를 1992년 3월에 폐쇄하는 대신에 멕시코시티사무소를 1992년 8월에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사무소 이전의 이유는 1991년에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계기로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수은 자금의 수요증가가 예상되었으며, 대미국 우회수출의 거점으로서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남미 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3년 9월에는 사옹파울루사무소가 개설되었다.

(2) 유럽 · 아프리카 지역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는 런던, 아비잔, 파리, 모스크바에 수은의 국외사무소가 있다. 런던사무소는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해외 자금조달과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꿈꾸는 나라

파리에서 비행기로 6시간, 사하라 사막 건너편에 우리은행 아비잔사무소가 있다. 지평선 너머로 아름다운 황혼이 펼쳐지는 아비잔은 리군이라는 천혜의 연해호수에 둘러싸여 있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 곳 아비잔 교민사회의 상징인 타이거 포토(Tiger Photo)는 우리은행이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투자를 처음으로 지원한 프로젝트이다. 타이거 포토의 아비잔 진출로 인해 오늘날 우리 교민 인구가 200명으로 늘어났으며, 서부 아프리카 일대의 사진업은 우리 교민이 거의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타이거 포토는 출범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당시 이 나라에는 레바논계와 현지인이 경영하는 사진관이 있었는데 사진 현상에 며칠씩 걸리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나 타이거 포토는 우수한 기술과 좋은 기계로 몇 시간만에 사진을 현상하여 주니 현지인들이 매일 아침 전부터 사진을

맡기기 위하여 장사진을 쳤고, 그날 벌어들인 돈을 미처 다 셀 수가 없어서 마대자루에 담아와 밤을 세워가며 돈을 세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 때 일손 부족으로 코트디부아르에 초청되어온 사진 기술자들이 독립하여 사진에 관한 한 교민 카르텔을 형성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곳 교민들의 사업분야는 사진업을 중심으로 양복점, 플라스틱 공장, 가발 공장, 선박업 등 매우 다양한데, 최근에는 이곳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발걸음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우리 사무소는 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연계체제를 갖추고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및 해외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타이거 상사에 대한 해외투자 지원 이후 거의 10년만에 우리은행의 지원 프로젝트가 마지막 성사단계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코트디부아르 국영석유공사가 발주한 가스통 제조 프로젝트로서 삼성물산과 대구소재 중견기업인 대창산업이 컨소시엄으로 수주하게 되었는데, 초기단계의 정보수집에서 자료 제공,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 입수 및 번역문 제공, 수주활동에 필요한 통역, 차량 및 통신수단의 제공 등 거의 전 과정에 걸쳐 우리사무소의 정성이 구석구석 깃들여있는 프로젝트이며, 이미 우리은행의 지원 의향서가 발급된 상태이다.

1994년 세파프랑의 평가절하 이후 이곳 서부 아프리카 제국의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큰 코트디부아르는 우리나라를 본받아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되겠다는 야심으로 경제개발계획 및 구조조정 정책을 힘껏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미지의 가능성일 뿐이지만, 머지않아 펼쳐 보일 아프리카 대륙의 꿈들임을 이곳 아비잔사무소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비잔사무소 제공)

국제금융에 관련된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1978년 6월에 개설되었다. 이에 비해 아비잔사무소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6월에 개설되었다. 특히 아비잔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소재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의 수도로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 및 투자환경의 조사활동과 자료수집이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1989년 12월 파리사무소의 개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대비한 OECD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동향 조사와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 용이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北方政策 추진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은의 消費財借款이 제공되고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및 동구 지역 진출과 해외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수은은 1991년 4월에 모스크바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첫 국외사무소인 런던사무소 전경

야속하기만 했던 1989년 봄, 파리

프랑스는 외국인들의 자국 이민이나 지사설치에 대하여 유별나게 엄격한 데가 있다. 단순한 조사목적의 은행사무소라 할지라도 사무소장은 영업증(Carte de Commerçant)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이 영업증이 발급되기까지 무려 9~12개월이 소요된다. 또 사무소 직원들은 현지인들과 같이 사회보장기금에 원 급여의 56%를 회사 부담으로 납부하여 퇴직, 실업, 상해시에 보상받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사무소 직원이 퇴직, 실직할 일은 없으므로 이 기금에 납부되는 돈은 프랑스 실업자들을 보조해 주는 셈이다.

1989년 3월 12일, 10주간의 BNP 국제금융 연수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한 필자에게 연수참가와 더불어 사무소 개설준비도 시작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우선 프랑스 중앙은행을 찾아 사무소 설립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우리가 정부 금융기관인데다 조사업무만 수행한다는 조건하에 은행장 명의의 신청서한 한 장으로 모든 절차에 갈음하기로 되었다.

이제 문제는 사무소장과 직원들의 신분과 연간 수만달러 이상의 사회보장기금 납부. 이 건의 접촉상대는 관료주의의 대표주자격인 프랑스 공무원들. 무한한 인내심과 체력이 요구되는 과정이었다. 우연이 겹쳤겠지만 찾아가는 곳마다 면담상대는 독신인 듯한 중년의 여성 공무원들이었다. 풍채가 아주 건장하면서, 말을 극히 아끼는. 파리 경시청, 상업등기소, 법무부, 상업회의소를 전전하면서 이틀로부터 들은 정보는 "귀행만 예외적 용서시켜줄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때로는 법무부 민원실 앞 복도에서 알레리 난민들과 섞여 1시간 이상이나 줄을 선 끝에 받아낸 답변치고는 참으로 허무한 것이었다.

실망이 절망으로 겹게 채색되어 갈 즈음, 다이 니믹한 후발 상업은행인 C.C.F은행 국제부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나의 고민을 들은 이들은 다음날 그 은행 법규부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만들어 주었다. 법규부 차장은 며칠 후 프랑스 법무부 대확동창과의 3차 면담을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수은 사무

소는 본점의 특수기능을 고려, 사무소장이 준외교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장 대리도 본점 파견직원으로서 사회보장기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환호의 소리가 입천장 부근까지 전진하였다가 멈추었던 기억이 난다.

파리사무소 개설준비위원장으로 강말이 부장이 발령난 것도 이즈음. 사무실 정식계약을 체결한 9월부터 12월 1일까지 숨막히는 개소준비. 황창기 은행장이 대통령 유류순방길에 수행차 파리에 오는 길에 개소식을 거행하여야 했다. 50여일 만에 사무실 꾸미고, 집기, 비품 들여 놓고 현지 직원 뽑으면서, 수은 사무소를 유럽 한가운데 탄생시키기는 차라리 모험이었다. 물건 주문받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1주일전부터 Rendez-Vous를 해야 하는 프랑스 사람들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날은 왔고, 대통령 행사 때문에 외빈도 거의 없는 가운데, 개소식은 그냥 조촐하게 치루어졌다.

(이종래 / 당시 파리사무소 과장)



동경사무소 전경

(3) 아시아 지역

수은은 아시아 지역에 홍콩사무소, 동경사무소, 자카르타사무소, 호치민시사무소, 북경사무소, 뉴델리사무소 등 6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설치된 국외사무소는 1978년 9월에 개설된 홍콩사무소이다. 원래 홍콩사무소는 주로 수출보험 관련 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지만 1992년에 수출보험 업무가 수은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수은의 사무소로서 존속하면서 홍콩 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79년 6월에 개설된 동경사무소는 동남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동경에서 주로 외화자금 조달과 일본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카르타사무소는 인도네시아와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한 연불수출과 자원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2년 11월에 개설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자원보유국으로서 동남아 지역 협력기구인 ASEAN의 본부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동남아 지역의 경제활동을 조사하는 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50회 중국 여행기

우리나라의 중국 진출 초기 이 나라를 총체적,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국여행은 홍콩사무소 근무 중 대개 이루어졌다. 1992년 12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총 50여회에 걸쳐 격주 1회 꼴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당시 한국사람들간에 팽배한 중국 경시풍조가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지만, 홍콩 호텔방에서 울고 있는 중소기업가의 고민을 국책은행의 한사람으로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중국 답사의 중점은 경제 외관에 국한하기보다는 중국 사람, 사회, 문화 등 전체적 모습을 파악하는 데 두었고, 따라서 숙소도 서구식 호텔보다는 한국계 현지공장의 기숙사(합숙소), 중국회사의 관사(합식집)나 중국 친구의 아파트(승강기 전무, 침대 부족시는 바닥)를 이용하였다.

우선 여행 준비로 현지가이드 겸 통역을 확보하고 홍콩 주재 총영사관의 특수지역 복수 여행허가와 중국 공안당국이나 정식 외교부의 복수비자(각 6개월 유효)를 취득하였다. 현지가이드는 마침 인근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외국인투자상담회에서 통역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어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사권 몇 사람은 중국내 여행경비를 방문하는 시의 시장이 부담하는 기회를 주선했기도 하였다.

여행일정은 대개 휴일을 이용했던 관계로 당일치기나 2~3일이 대부분이었고, 따라서 여행지역도 양자강 이남 광둥성, 복건성에 집중되었다. 교통수단은 촉박한 일정도 그렇지만 현지 실정을 파악할 목적으로 비행기, 직행기차, 새벽 사골기차, 여객선, 쾌속선, 직행버스, 합승버스,

봉고, 일반택시, 총알택시 그리고 도보, 인력거에 오토바이까지 모든 수단이 활용되었다.

목적지는 대개 산업현장과 인근 도시 중심으로 짜여져 그 혼한 桂林유람 한 번 못하였지만, 결국은 허허벌판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상전벽해로 나타나는 신도시 개발현장,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혼재하는 중국 사회, 어느 방향이든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닌 가운데 유동하는 엄청난 사람물결 속에서 별 두드러짐이 없이 적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얻은 소득은 중국 여러 곳의 요리도 그렇지만 중국을 50회 내지 100회 업무출장한, 손가락으로 꼽을 우리나라의 진짜 전문가들을 전화 한 통화로 연결할 수 있는 인맥이라 할까?

(안경환 / 당시 홍콩사무소 차장)

1992년 11월에 설치된 호치민시티사무소는 1988년 이후 정부의 北方政策 추진노력과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개선 움직임 등으로 베트남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이러한 경제교류가 자본재 거래와 직접투자 형태 위주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지원거점 확보 및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현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북경사무소는 1988년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현지의 해외투자정보, 수출관련 자료 수집, 수출거래 알선,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유망 프로젝트의 발굴·지원 등을 위해 1993년 2월에 설립되었다.

이 밖에 수은은 1994년 9월에 국내 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인도의 뉴델리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는데, 뉴델리사무소의 개설 이유는 1990년대 들어서 인도와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대폭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인도가 풍부한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갖추고 있어 장래 자본재 수출과 해외투자 등 수은의 지원사업 발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호치민시티사무소 개소 (1992. 11)

다. 해외 현지법인

수은은 수은법 제20조의 2에 근거하여 홍콩 등 4개 지역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운용하고 있다.

(1) 홍콩 현지법인

홍콩 현지법인은 수은의 해외 자금조달 및 여신업무의 지원과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수은 최초의 子會社이다.

홍콩은 1980년대 초반 수은의 외화자금 조달액의 약 50%가 조달된 곳으로 수은의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향후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수은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불수출과 해외투자거래의 발굴 및 금융 알선, 본점이 직접 지원하기 곤란한 거래의 우회지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

첫 자회사인 홍콩현지법인 개점식을 마치고 (1998. 8)



지법인 설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부의 설립 내인가(1987. 12. 22) 및 본인가(1988. 5. 11)를 받아 1988년 8월 1일 납입자본금 1,000만달러의 홍콩 현지법인이 설립되었다. 홍콩 현지법인의 정식명칭은 수은 아주금융 유한공사(KEXIM Asia Ltd.)이며, 그동안 2회의 증자를 거쳐 1995년 말 현재 자본금 2,000만달러, 총자산은 4억 3,2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홍콩 현지법인에는 1996년 4월 30일 현재 본국에서 파견된 직원 7명과 현지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영은 본국 직원 중에서 사장과 부사장을 선임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현지의 사장, 부사장, 이사 외에 본점 국제금융부장 및 종합기획부장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런던 현지법인

까다로운 런던 금융시장에의 安着

1992년 7월 15일 정식 설립된 수은영국은행(KEXIM Bank (UK) Ltd.)은 적정 규모의 투자자산 확보를 개업 초기의 주요 영업목표로 설정하고, 파운드화 및 달러화 자산의 적극 확보와 은행으로서의 업무 특성을 살려 대출 확대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성 증권을 중심으로 한 딜링업무에도 경험을 쌓아나감으로써 수지개선에도 힘을 기울였다.

영업에 있어서 런던 금융시장의 규제는 매우 까다롭다. 특히 한국계 금융기관은 런던에 진출한 역사가 짧아 자본적합비율, 거액여신 규제 등에 있어 서구의 금융기관이나 일본계 금융기관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영란은행의 담당자에게 이러한 제약요인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 제도의 배경설명에서부터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한다. 친절하게 그러나 엄격하게 규정과 원칙을 시행하는 이들의 세련됨에서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 런던 금융시장의 저력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철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영란은행도 수은영국은행 업무감사를 당초 예정기간보다 단축하여 종료하기도 하는 등 우리 현지법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은행을 감사하면서 수은영국은행의 영업상황을 모범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다소 곤란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런던 현지법인의 큰 어려움 가운데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위한 credit line 확보 문제를 빼 놓을 수 없다. 수은영국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초기에는 특히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당시 현지법인 사장은 몇몇 일본계 금융기관 지점장이 김치를 즐겨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의 내조를 얻어 김치외교(?)까지 동원했던 일이 있다. 김치의 위력은 대단해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한 것은 물론이고 어느 지점장은 연초 본점에 회의 참석차 다녀오는 길에 최고급 일본쌀로 답례를 하기도 했다.

어느 현지법인도 예외가 아니겠지만 우수한 자질의 현지 직원을 채용하고 이들을 적재적소

에 기용하는 일은 성공을 위한 주요 변수가 된다. 런던 현지법인이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창립 때부터 보여준 현지 직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많은 은행들이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 운영에 애로를 겪었으나 다행히 수은영국은행은 경험있는 직원을 확보하여 창립 초기부터 회계정보 관리와 영란은행 보고서 작성 등에 현지 직원들이 기여한 바가 컸다.

현지에서 첫발을 순조로이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수은영국은행은 유럽통합 이후에도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한국계 기업 지원을 더욱 본격화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험 축적에도 노력해 나갈 각오다.

비록 지금은 작은 규모의 은행이고 영업여건으로 보아 성장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더라도 수은영국은행은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유럽에 수은의 전진기지를 구축한다는 사명감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박동수 / 당시 런던 현지법인 과장)

런던 현지법인은 홍콩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본점의 외화자금 조달업무를 지원하고 국제금융 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무부의 설립 내인가(1990. 12. 11) 및 본인가(1992. 5. 26)를 거쳐 1992년 7월 15일 납입자본금 1,000만파운드 규모로 설립되었다.

정식명칭이 수은영국은행(KEXIM Bank (UK) Ltd.)인 런던 현지법인은 1993년 12월 3일 1,000만파운드의 증자가 이루어져 1995년 말 현재 자본금 2,000만 파운드, 총자산은 1억 5,300만파운드이다.

(3) 자카르타 현지법인

자카르타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재무부의 설립 내인가(1991. 5. 27) 및 본인가(1992. 5. 30)를 거쳐 1992년 6월 1일 납입자본금 150억루피 규모로 설립되었다. 이 법인의 설립 이유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설비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차입형태가 아닌 리스형태로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진출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현지 마케팅 및 영업 확대의 측면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인 Bank Dagang Negara(BDN)와 합작투자(수은 70%, BDN 30%)로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단순한 리스업무만이 아닌 향후의 업무 확대에 대비하여 벤처캐피탈, 팩토링 등을 포함하는 綜合金融業을 취급하는 현지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자카르타 현지법인의 최초 납입자본금은 150억루피였으나, 인도네시아 재무성의 외자유치 정책 등으로 2차례의 추가 증자가 불가피하게 되어, 1995년 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60억루피로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작비율도 수은 78.3%, BDN 21.7%로 변경되었다.

자카르타 현지법인에는 현재 본국에서 파견된 4명의 직원과 현지 직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국 직원 중에서 사장과 이사 1명이 선임되고 부사장은 BDN측에 의해 선임되어 이들 3인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자카르타 현지법인은 이사



런던 현지법인 개점식 (1992. 7)

자카르타 현지법인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회의 상위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대표 운영위원은 BDN측 상무이사, 부 대표 운영위원은 수은 국제금융 담당 이사, 나머지 1명의 운영위원은 수은 국제금융 부장이 맡고 있다.

자카르타 현지법인은 종합금융회사로서 정식명칭은 수은인니금융(주)(P.T. KOEXIM BDN Finance)이며, 1995년 말 현재 총자산은 9,900만달러이다.

(4) 싱가포르 현지법인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동남아 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금융지원 강화, 외화자금 조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한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 외화자금 조달 지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신디케이트 론의 알선 및 참여, 유가증권 발행의 알선 및 참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재정경제원의 설립 내인가(1994. 12. 16) 및 본인가(1995. 8. 24)를 거쳐 1995년 9월 1일 납입자본금 1,500만달러 규모로 설립되었다.

동남아 경제개발의 현장에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아세안 제국의 중심지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은행 현지법인 중 막내인 수은싱가포르 종합금융회사가 merchant bank의 간판을 내걸기까지는 적지 않은 산고를 겪어야 했다.

현지법인의 간판인 법인 명칭을 등록하고, 싱가포르식 '風水'를 감안하여 사무실의 위치를 선정하는 일, 본국 직원들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맺어야 하는 현지 직원의 채용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다.

특히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현지 금융당국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담당자의 당당함엔 다소 위축감을 느끼기까지 하였으나, 고문변호사와 회계법인의 도움, 그리고 본점과 홍콩 현지법인이 그동안 뒀아놓은 명성 덕택으로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다.

창립준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업을 통

해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이었다.

공교롭게도 막 영업을 시작할 즈음 국제금융시장을 엄습한 소위 'Japan Premium'이 기승을 부렸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자금이 풍부한 일본계나 유럽계 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끌어 받아야만했던 우리로서는 자금조달 코스트의 인상으로 당장 수지에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1995년 11월 처음으로 신디케이트 론에 참여하게 되었고 IFR과 BP에 우리 현지법인의 이름이 나왔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제 싱가포르 현지법인은 날로 경쟁이 더해가는 싱가포르 금융시장에서 초기의 신디케이트 론 및 유가증권 투자 외에 채권발행 주선활동도 활발히 해 나가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스 등과 같이 본점과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여 수은의 이름에 걸맞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완길 / 싱가포르 현지법인 부부장)

싱가포르 현지법인에는 현재 본국에서 파견된 직원 4명과 현지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영은 본국 직원 중에서 사장과 부사장을 선임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현지의 사장, 부사장, 이사 외에 본점 국제금융부장 및 종합기획부장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현지법인의 정식 명칭은 KEXIM International (Singapore) Ltd.이며, 1995년 말 현재 자본금은 1,500만달러, 총자산은 9,360만달러이다.



싱가포르 현지법인 개점 (1995. 9)

4. 任職員 및 職制

가. 임직원

수은에 근무하는 인원은 수은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된다. 任員은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며, 職員은 본국 직원과 현지 직원으로 구분된다.

수은 발족시의 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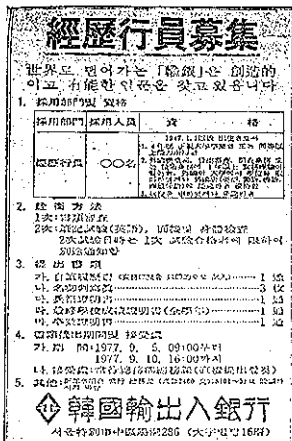
수은법 제정 당시 수은은 정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는 '대외거래에 관한 중앙은행'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비록 정부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인해 제1차 법 개정시 출자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러한 위상은 불분명해졌지만, 발족 당시 수은 임원의 인사과정에서 수은의 위상을 높이려 했던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초대 은행장으로 임명된 송인상 행장은 이미 부흥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거물급 인사였고, 수은 이사로는 한국의한은행 이사를 연임 중에 있던 3인의 중진이 추천되었다. 이 중 우여곡절 끝에 본인만 수은 이사로 임명되었지만...

한편 정부는 어느 회사의 신설과정에서 유휴인

력의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던 터라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수은의 정원을 소수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풀린 것은 설립 이듬해인 1977년 초 재무부장관에게 수은 업무의 특성을 브리핑하여 이해를 구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보고된 내용은 수은의 중장기 대외채권이 대내채권과 달리 일단 實損이 나면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수은의 기구조직은 여유인원을 갖고 심사역, 조사역, 법규역, 관리역 등 전문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제시된 분야별 전문가의 큰 몫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태호 제3대 은행장)



설립 초기의 경력직원 채용 광고

은행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무이사와 이사 및 감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될 수 있다.

본국 직원은 국내에서 채용된 직원을 가리키며 일반직원, 서무직원 및 별정직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직원은 수은의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1~4급의 책임자, 중견행원 및 일반행원으로 구성되며, 서무직원은 전기, 전화, 설비유지 등의 기능직과 경비, 영선, 문서발송 등의 노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별정직원은 전문직, 기술직, 의무직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견습직원 등의 임시직원도 별정직원으로 분류된다. 한편 현지 직원은 국외사무소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채용되는 직원을 가리킨다.

수은은 설립 당시에는 임원 4명, 책임자급 직원 34명, 남녀행원 22명, 서무직원 20명 등 총 80명의 임직원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후 조직이 확대되고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1977년 1월에 수은이 수출보험 업무를 인수하면서 대한재보험공사 직원 20명이 수은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한편 수은은 1977년부터 매년 1~2회씩 중견행원의 공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확보에 노력해 온 결과 임직원의 수는 1996년 2월 현재 총 674명에 이르고 있다. 1992년 7월에는 수출보험 업무가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 130여명이 수은으로부터 퇴직하여 동 공사로 이적한 바 있다.

수은 임직원의 변동 추이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임원	4	6	8	8	8	8	8	8	8	8	8
1급	6	8	13	18	19	21	24	35	37	40	47
2급	3	17	25	29	34	38	45	51	54	60	59
3급	12	41	46	59	66	71	77	91	90	99	105
4급	25	63	80	89	99	104	120	129	113	121	129
중견행원	24	83	109	140	148	148	186	184	132	142	133
일반행원	17	42	68	69	86	83	96	98	96	90	79
서무·별정직	35	62	88	109	109	132	128	137	118	131	114
합 계	108	311	423	502	556	591	671	718	638	681	674

나. 직제

설립 이래 본점의 각 부 또는 실에 1급 또는 2급 직원인 부장과 실장을 두어 해당 부서의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 이후 부속실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에는 해외투자연구소가 신설되었으며, 1995년부터 부속팀이 설치됨에 따라 현재에는 부장, 실장, 연구소장이 부서장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부속실장과 부속팀장도 단위부서의 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외 지점과 사무소에는 각각 지점장과 사무소장이 소관업무를 통할 및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을 맡고 있다.

한편 본점의 경우 기획, 인사 및 서무 관련 부서에는 부서내의 업무분장에 따라 課 제도를 두고 3급 직원으로 과장을 보임하여 왔으나, 1995년 3월에 처음으로 도입된 부서내 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6년 2월 모든 課 제도를 폐지하고 부서내 팀제도로 대체하였다.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의 經營

1. 經營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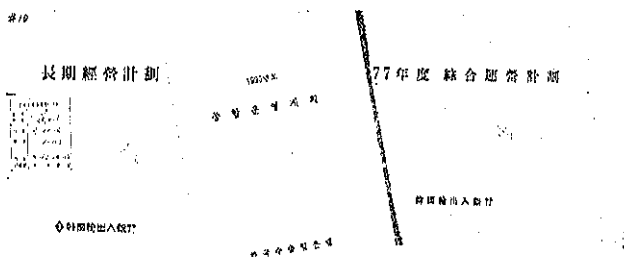
가. 개관

수은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창립 이래 제반 경영계획은 주변 업무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경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은이 시대적 상황에 알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설립 초기인 1979년 2월에 수은은 1986년까지를 대
상기간으로 하는 長期 經營計劃을 수립하여 업무발전
및 효율적 경영관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후 1980
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제수지의 흑자 전환 및 국내임금
상승 등 우리나라 경제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수은은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
기 위해 1987년 '中長期 業務發展計劃(1988~1992
년)'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1989년에는 '수은 업무기능 개선방안'이 검
토되었고, 은행경영의 전반적인 측면과 각 부서별 세부
적인 업무내용을 평가하는 '수은의 經營評價制度'가 마

수은 경영의 방향타인 잠단기 계획



런되었다. 특히 1991년에는 제2차 중장기 업무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수은 장기 발전방안(1991~2000년)'이 수립되어 사실상 수은의 장기 경영계획의 근간이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국제무역경영연구원의 용역결과인 '21세기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다.

1993년 들어 정부의 세계화 정책 추진과 함께 수은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업무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6월에는 대외 거래정책금융 전달기관으로의 특화를 위한 '輸銀 機能 專門化 方案'을 수립하였고, 이듬해인 1994년에는 '경영합리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1995년 5월에는 중장기 발전방안 자료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21세기를 향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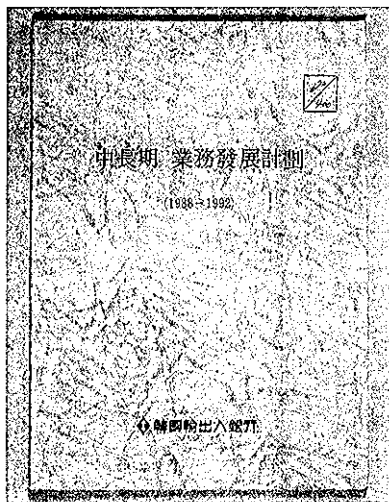
수은은 이상에서 언급한 중장기 경영계획 외에도 매년 종합운영계획과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경영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가운데 업무계획은 주로 자금조달과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연도별 업무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종합운영계획은 각 부서의 연도별 주요 추진사업 계획을 포괄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나. 중장기 경영계획의 변모

(1) 장기 경영계획(1979~1986년)

수은은 중장기 수출입금융 전달기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경영의 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장기 안정적인 업무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79년 2월 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대상기간(1979~1986년)을 기반확충단계(1979~1981년)와 선진화단계(1982~1986년)의 2단계로 나누어, 예상되는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포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신, 자금조달, 조직·기구, 인사·연수 등 부문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기반확충단계(1979~1981년)에서는 연불수출의 지속적 신장, 연불수출 대상지역의 확대 등에 대비하여 연불수출금융 지원기법의 개선, 외화자금 조달능력의 배



중장기 업무발전계획

양, 해외 조사활동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선진화단계(1982~1986년)에서는 소요자금 국내조달의 한계, 연불수출의 급증, 금융의 국제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연불수출기법의 고도화, 해외 자금조달의 확대, 기구 및 조직의 선진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2) 중장기 업무발전계획(1988~1992년)

1980년 중반 우리나라 경제는 3저현상에 힘입어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곧이어 원화절상, 국내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경기도 침체되어 수은의 업무규모가 다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여신, 자금 조달 및 운용 부문에 있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점검하기 위해 1987년에 중장기 업무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수은의 당면 과제를 국제수지 흑자 기조하에서의 기능 재정립, 지원 조건의 신속적 운용 및 경제협력기금과의 연계지원 모색, 그리고 장기 안정적인 재원조

제1차 장기경영계획을 회고하면서

우리는행이 설립된 지 2년 가까이 되었을 무렵, 그러니까 1978년 봄, 여러 사람이 모이면 '수출입은행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중화학공업이 아직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탄생한 신설은행으로서, 수출입 은행으로서의 몫을 언제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주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직경영에 탁월한 혜안을 가졌던 송인상 초대 행장과 은행 발전에 유별난 애착을 가졌던 이태호 전무로부터, 기획부가 우리은행의 장래 모습을 한 번 구상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선 뚜렷한 문제가 몇년 뒤의 수출입은행을 그려 보느냐는 것이었다. 5년, 10년, 15년 등 논란 끝에 창립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연간 자금집행 규모는 1,000억원, 대출

잔액은 1,200억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10년 후의 여신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무척 난감한 일이었다. 그 때 계획한 1986년의 연중 자금공급액이 1조원, 대출잔액이 3조 1,000억원이었는데, 1985년의 실제 실적이 연간 자금공급 8,500억원, 대출잔액 3조 3,000억원이었던 것을 보면 어지간히 적중시킨 셈이다.

당시 제안했던 방안 중 buyer credit, bond 발행, 운영위원회의 기능 전환, 대출업무의 전산화, 경제협력자금 지원 확대, 분야별 전문요원의 확보 및 양성, 국내외 점포의 확충 등 많은 분야가 실현되었다.

행내 각 부서가 중지를 모아 작성한 부문별 계획을 가지고 당시 기획부 차장이던 필자를 비롯하여 윤기학 기획과장, 박태동 대리, 윤수영, 안경환 행원 등으로 특별팀을 만들어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영동 유스호스텔에 1주일간 합숙

하면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장기 경영계획(1979~1986)' 초안을 만들었다.

버스에 내려 숙소로 들어가려면 황량한 테헤란로의 모래바람이 휘몰아쳐 머리의 모래를 한 움큼 털어내야 했는데 오늘날 테헤란로는 고층 빌딩이 즐비한 신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이에 못지 않게 우리은행도 20년만에 업무규모나 직원 수준, 그리고 국민경제적 기여도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장기 경영계획은 미래의 모습을 한 번 미리 그려보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임직원에게 미래지향적인 경영감각을 심어주고 일상 업무를 하는 데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직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우리은행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 한다.

(최성룡 / 당시 기획부 차장)

달 등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역할증대 방안으로서 플랜트,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기술집약적 제품의 수출에 대한 지원 강화, 해외투자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 및 다변화, 중요 물자 및 주요 자원의 수입지원과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긴급 자원수입 지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원확보 및 경영수지 안정화 대책으로는 국내 자금조달 확대, 수은 대출재원용 한은외화수탁제도의 정립, 연불어음 매각, 환차손 보전제도의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3) 수은 장기 발전방안(1991~2000년)

1990년대 초 수은의 업무실적이 비록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이는 對北方 支援, 조선경기 호황 등 일시적인 요인에 힘입은 바 크므로, 수은의 업무기반을 더욱 공고히하기 위해 1991년 輸銀長期發展審議會가 구성되어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방안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 내지 국제화 진전에 따라 수은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와 조직을 재정비함은 물론 새시대에 걸맞는

수은 발전의 염원을 모아

세계적인 자본재 수요의 감소와 개도국 외채위기의 휴유증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적수출 신용은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이하였다. 1989년 미국수은의 대출 및 보증잔액은 15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본수은은 1988년부터 연타이드 론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우리은행의 수출자금 공급실적은 1981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1990년 7월 홍재형 은행장은 수은 발전을 염원하는 직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9명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수은장기발전심의회를 발족시켰다. 심의회 산하에 구성된 10명의 실무소위원회는 8월부터 4개월간 시간을 쪼개어 토론과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하였다.

파타타임에 의한 작업에 한계를 느낀 실무소위는 12월에 4명으로 구성된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그해 연말에 57쪽에 이르는 수은 장기 발전

방안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중간보고서는 그간의 실무소위의 토의내용(주로 조직의 문제점)과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향후 수은이 지향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발전모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듬해인 1991년 1월에는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에는 중장기 발전방안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작업반이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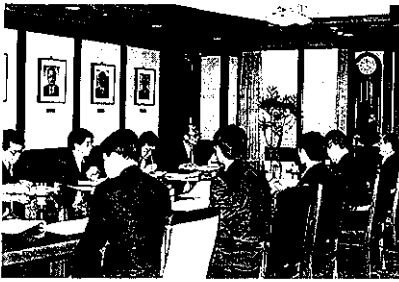
5명으로 구성된 전담작업반은 2개월간의 집중한 노력으로 총 127쪽에 이르는 '수은 장기 발전방안'을 작성, 4월에 심의회를 거쳐 은행장에게 보고하였다.

심의회가 발족한 1990년 7월부터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1991년 4월까지 약 9개월에 걸친 장기계획 수립작업은 심의회 개최 3회, 실무소위원회 개최 37회, 전 직원 설문조사 1회, 전담반 집중작업 3개월, 보고서 총 184쪽 등 계획수립 사업으로는 창립 이래 최대 인력과 최장 시간이

소요된 작업이었다. 인사이동 등으로 발족 당시 성욱기 전무이사였던 심의회 위원장이 최종 보고서에는 이학성 전무이사로 교체된 것을 비롯, 연인원 26명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당시 두 차례의 전담작업반에 반장으로 참여하였던 필자는 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이 보여준 열의와 자발적 협조가 가장 가슴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심의회 운영과 뒷바라지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기획부의 구자협 부장, 권순학 과장, 조재삼 행원, 보고서 내용의 검증과 발표의 고통을 기꺼이 맡았던 황정길 부부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업장소 마련이 어려워 9평 남짓한 9층 연수교재실에서 계속되는 야간작업과 끊임없는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던 전담작업반원 성기원 과장, 노성관 대리, 윤성근 대리, 남기섭 대리의 헌신적 노력을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

(박태동 / 당시 여신총괄부 차장)



제1차 경영혁신운동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 모습 (1993. 3)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방안에서는 1990년대에 예상되는 금융산업의 변화로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자유화, 국제화의 가속, 국제수지 흑자 기조 정착 및 자본거래 자유화,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 정책금융의 축소 및 정책금리의 시장금리화 등을 예상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계 및 첨단산업의 수출주력산업 전환, 수출 및 해외투자 규모의 지속적 증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화 가속 등을 예측하였다. 수은과 관련된 것으로는 공적수출금융에 대한 제약 가중, 수출보험 및 보증 중심의 공적수출신용 확대,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경제협력자금 지원 강화 등을 1990년대의 주요 경영환경 변화로 전망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수은은 대외거래 관련 부문의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

제1차 경영혁신운동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는 경영혁신과 전략경영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업변신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 7월 수출보험공사의 독립으로 업무의 양대 축의 하나였던 수출보험 업무를 잃게 된 우리은행은 참담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한동안 짓눌려 있었다. 제1차 경영혁신운동은 이러한 침체를 깨고 1990년대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경영의 쇄신을 이루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해 8월 22일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경영혁신추진본부와 실무추진반이 구성되었는데, 당시 3~4급이 주축이었던 실무추진반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제도와 의식에 개혁의 메스를 대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던 만큼 칭찬과 성원, 비난과 질책이라는 양극단의 평가 속에서 어렵게 활동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수은인이 혁신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동의 방향을 잡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직원 및 고객 워크숍의 개최, 맥주광장의 운영, 쉽게 고칠 수 있는 사무개선

운동의 추진을 3대 起暴事業으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경영혁신의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당시 부서장 이하 전 직급에 걸쳐 100여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는 성역없는 토론이 발세 이어졌는데, 특히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부서장 워크숍에서는 열띤 토론이 끊이지 않아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부서장들께서 앞장선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하는 설레임으로 상기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2급 이하 직원들의 워크숍 최종 강평에서 "우리들의 바램을 경영진에 전달하여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실패하면 분신자살할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하던 직원들의 丹心이다.

한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고객워크숍은 우리 실무반원과 15개 고객기업의 실무책임자들이 참가하였는데, 처음에는 때아닌 금융기관의 접대(?)에 긴장된 의아함을 품지 않던 기업 직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맹렬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이러한 자리

가 마련된 데 대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자주 그리고 밀도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맥주광장은 부서를 달리하는 직원 상호간에 부담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은행내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된 것으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직원들의 힘만으로 지속되어 온 것은 자랑스럽지만, 아직 그 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비록 제1차 경영혁신운동은 직원들의 바램을 실현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지만, 직원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반영한 60건의 경영혁신과제를 도출할 때까지 윤기학 추진본부 간사와 김진호 실무반장 이하 모든 요원이 땀뿜 뭉쳐 신명을 바쳐 일하였다고 생각된다.

수은의 창창한 앞날은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이 열린 가슴과 뜨거운 논 속에서 하나되어 힘차게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기약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권영국 / 당시 여신기획부 과장)

키는 동시에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하여 기업국제화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확대를 예상하여 새로운 경제협력 업무를 개척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 종합운영계획 및 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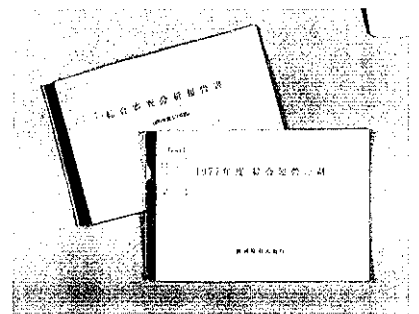
(1) 종합운영계획

1969년 10월 한국외환은행이 업무대행을 시작하여 1976년 7월 1일 수은이 설립 되기 전까지의 수은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매 분기 별 審査分析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수은이 정식 발족된 후인 1977년부터는 재무 부훈령 제300호 '재무부 산하 정부투자기업체 및 관리기관의 심사분석 업무요강 (1977. 6. 10)'에 의하여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시효과를 매 분기 별로 심사분석하였다.

수은은 목표연도의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등에 대한 지침에 따라, 각 사업별로 주요 사업과 세부 사업을 분류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조정,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후 당해 사업연도 2월 20일까지 재무 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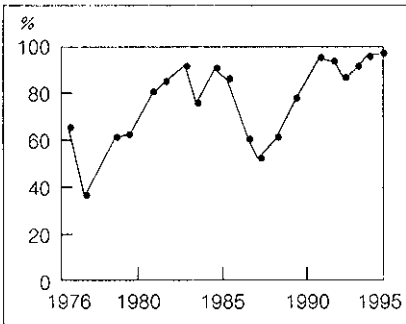
한편 심사분석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그 집행결과에 대한 심사분석보 고서를 작성하여 분기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체 심사분 석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1980년 5월에는 심사분석에 대한 부서평가기준을 수 립, 업무활동 실적, 목표달성도 및 계획의 적정성 등의 평가요소에 따라 일선업무 부 서군과 후선업무 부서군으로 나누어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하고, 그 결 과에 따라 군별로 최우수 1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한편 1985년 12월 31일의 재무부훈령 85-6 '재무부 산하 관리기관의 심사분석 업무요강'이 금융자유화, 행정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1993년 7월 1일자로 폐지 됨에 따라 정부지시에 의한 심사분석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수은은 '종합운 영계획 및 심사분석 규정'을 폐지하고 1993년 12월 종합운영계획규정을 새로이 제 정하여 은행 자체 차원에서 업무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해 실적을 평가



최초의 종합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책자

연도별 업무계획 달성률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수은은 각 사업 주관부서가 종합운영계획 주관부서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주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운영계획 주관부서가 이를 종합·조정하여 종합운영계획안을 작성한 후 다음 사업연도 1월 10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 각 사업주관부서는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는 7월과 다음 사업연도 1월에 중간 및 연간 종합운영계획 평가보고서를 작성·보고함으로써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

(2) 업무계획

수은은 자금 집행 및 조달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서로서 사업연도마다 業務計劃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고 있다. 그동안 수은은 대외 거래 전문은행으로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적수출신용의 확대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해외투자금융 및 주요 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입금융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의 방향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왔다.

수은의 업무계획은 총칙, 자금공급 및 조달계획과 분기별 자금공급 및 조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은 업무추진의 기본방향(별도의 항목으로 취급하던 것을 1992년부터 총칙에 포함), 자금공급 총액 및 자금조달 총액을 비롯하여 대출승인 한도, 채무보증 한도 및 업무계획의 변경사유·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자금공급 및 조달계획에서는 수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공급계획과 제4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고 있다.

업무계획은 연간 자금공급 및 조달계획으로서 종합운영계획과 아울러 은행의 업무 활동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은행의 재무구조, 경영수지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은은 정부의 산업금융정책, 국내외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업무계획의 총 규모를 결정한 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한다. 이 업무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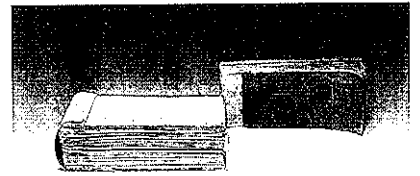
중장기 연불수출지원금융 전담기관으로 발족할 당시 수은의 업무계획(1976. 7. 1

최초의 업무계획 (1976년)

(단위 : 억원)

자금공급		자금조달	
수출자금	623	전기이월 및 적립금	1
기술제공자금	100	대출금 회수	223
대외차관	30	국민투자자금	100
해외투자자금	40	KEB 차입금	279
예비비	10	한은 차입금	200
계	803	계	803

~12. 31) 규모는 803억원이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의 육성 정책 추진 등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자본재 수출 지원자금을 중심으로 업무계획 규모가 크게 신장되어 1996년에는 4조 6,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은 업무 대행기 및 설립 초기의 전표

2. 財務管理

업무규모의 신장에 따라 수은의 자산 및 부채 규모는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수은의 總資産 규모는 1976년 말의 807억원에서 1995년 말에는 6조 6,70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總負債 규모도 1976년 말의 139억원에서 1995년 말에는 5조 6,58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1976년 말 654억원에 불과하였던 資本金은 그 후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꾸준히 출자가 행해진 결과 1995년 말에는 설립 당시의 10배가 넘는 6,859억원으로 증대되었다.

수지측면에서 수은은 설립 이래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1976년 14억원 수준이었던 순이익 규모는 그 후 연도별로 큰 폭의 증감을 나타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체로 200억원대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흑자 기조의 지속에 따라 수은의 적립금 규모도 1976년의 15억원에서 1995년 말에는 3,236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수은은 1987년부터 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 해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기관에 배당해 오고 있다.

한편 수은은 영업의 결과 발생하는 금리위험 및 환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은행수지를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1992년 6월부터 '資産·負債 綜合管理(ALM)制度'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가. 자산·부채의 변동 추이

수은의 자산·부채 규모는 수은 업무실적의 변동과 그 궤를 같이 해 왔다. 수은의 업무는 기간별로 설립 이후 1985년까지의 성장기, 1980년대 후반의 위축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재도약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업무 성장기(1976 ~1985년)

설립 이후 10년간 수은의 업무는 선박, 플랜트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 기간 중 수은의 대출금 규모(잔액 기준)는 연평균 57.5%의 급증세를 나타내어 1976년의 562억원에서 1985년에는 3조 3,499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같은 대출규모의 증가로 인해 1976년 807억원 수준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1985년에는 그 64배에 달하는 5조 1,774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대되었다. 대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조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 중 수은의 자금조달은 외부로부터의 차입에 주로 의존하였는데, 그 결과 부채는 1976년의 139억원에서 1985년에는 4조 6,90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도 7.3%에서 90.6%로 증대되었다.

(2) 업무 위축기(1986~1989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던 수은의 자산과 부채 규모는 1985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추세 반전은 설립 이래 수은 대출의 대종을 점하여 왔던 선박에 대한 수출자금대출이 세계 造船市場의 침체와 더불어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1985~1989년 기간 중 대출금 규모(잔액 기준)는 연평균 12.5% 감소하여 1989년에는 1985년 수준의 60%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대출의 부진에 따라 1989년도 수은의 총자산 규모는 1985년 수준의 43%에 불과한 2조 2,140억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총부채 규모도 1985년의 33% 수준인 1조 5,431억원으로 급감하였다. 부채 규모의 감소와 함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은 69.7%로 낮아졌다.

(3) 업무 재도약기(1990년 이후)

1990년대 들어 수은의 업무는 세계 造船景氣의 회복 배경으로 선박에 대한 수출 자금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해외투자자금 및 수입자금의 공급이 활발해짐을 계기로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93년 이후 플랜트와 기계류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출금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1995년에는

10년 전의 최고 수준을 훨씬 웃도는 5조 4,631억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같은 대출 증가에 힘입어 수은의 총자산 규모는 1995년 6조 6,701억원으로 늘어나 설립 이래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총부채 규모 역시 1995년 5조 6,583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負債比率은 84.8%로 높아졌다.

나. 이익의 발생과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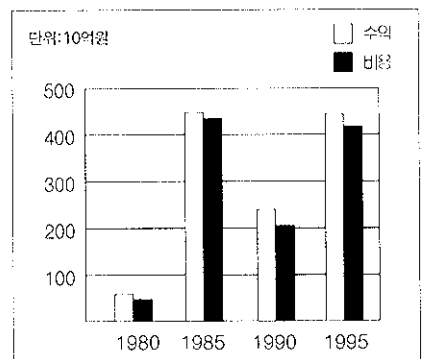
(1) 이익의 발생

수은은 설립 이래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흑자 규모는 연도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면서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 1976년 14억원에 불과하였던 純利益이 1995년에는 306억원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설립 이래 수은의 수지는 업무규모의 변천과 더불어 환율 및 국제금리의 추이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국제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수은의 업무특성상 환율과 국제금리의 변동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수은의 換пози션 추이를 보면, 수은은 199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외화표시 자산이 외화표시 부채보다 큰 買入超過 пози션(overbought position)을 유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환율상승(원화절하)시에 換差益이 발생하고, 환율하락(원화절상)시 換差損이 발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외환부문에서 매입초과 пози션 상태가 지속된 것은 설립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수은의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원화자금의 비중이 외화차입의 급증에 따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대출은 대부분 외화표시로 행한 결과였다. 다만 최근에는 일람불수출의 증가와 함께 원화표시 대출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매입초과 пози션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산·부채의 금리구조면에서는 대체로 변동금리 부채 규모가 변동금리 자산 규모를 상회하여, 국제금리 상승시에 수지가 불리해지고, 국제금리 하락시에는 반대로 수지가 유리해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수은의 대출이 주로 고정금리 조건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차입은 대부분 변동금리 조건으로 행해진 데 기인한 것이었다.

수은의 기간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설립 초기인 1976~1979년간은 업무 규모의 확대와 함께 순조로운 이익 증가가 이루어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76년에

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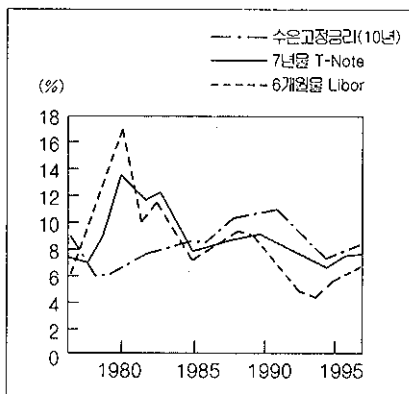
14억원 수준이었던 순이익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1979년에는 65억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기간에는 국제금리의 상승세 지속에 따른 차입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비중이 높아 전체 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원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고정되어 환율변동의 영향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수지기반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순이익 규모가 확대될 수 있었다.

1980년대 들어 수은의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外貨借入의 비중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單一變動換率制度에서 複數通貨바스켓制度로 이행됨에 따라, 금리 및 환율의 변동이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의 시행 첫 해인 1980년의 경우 수은의 순이익 규모는 전년도 수준의 3배에 달하는 19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국제 고금리 현상에 따른 차입비용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급상승하여 외환부문에서만 22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환율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부문은 수은의 흑자 기조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영업의 기본이 되는 이자수수부문에서는 국제 고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지급이자가 수취이자를 상회함으로써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자부문의 역마진 현상에 따라 순이익 규모는 1981년도에 5억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국제금리의 하락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된 1985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설립 초기의 수준을 크게 밑도는 부진을 나타냈다.

1980년대 후반은 환율이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그동안 순이익에 크게 기여해 왔던 외환부문이 적자로 전락한 반면, 이자부문에서는 국제금리의 안정과 자금 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순이익 규모가 확대된 시기였다. 이 기간 중 순이익 규모는 1986년에 전년대비 45% 증가한 287억원을 기록한 후, 1986~1987년에는 환손실 증가와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89년에는 외환부문의 흑자 전환에 힘입어 296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業務規模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환율 및 금리가 대체로 수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양호한 수지여건이 마련되었다. 1990년 이후 미 달러 금리는 미국의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급락세를 거듭하여 1993년에는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미 달러 금리는 미국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199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1995년 말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수은의 借入費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수은 대출금리와 시장금리 추이



역시 환포지션이 매입초과 포지션 상태에 있던 1990~1993년 중에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賣渡超過 포지션(oversold position)을 나타낸 1994년에는 하락세로 반전하여 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1995년에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포지션이 매입초과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섬에 따라 외환부에서 손실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같은 수지여건하에서 수은의 순이익 규모는 1990년대 초반 급속히 확대되어 1992년에는 설립 이래 최고 수준인 698억원을 기록하였으나, 1993년 이후에는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구소련에 제공한 소비재 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금리변동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1991년도에 체결한 금리스왑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데 기인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 이익의 처분

수은은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에 유보하여 왔는데, 이에 따라 積立金 규모는

결산이익금 및 이익금 처분 내역

(단위 : 백만원)

	결산이익금	이익금 처분 내역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금	배당률(%)
1976	1,380	276	1,104	-	-
1977	2,263	485	1,777	-	-
1978	6,312	1,354	4,959	-	-
1979	6,499	1,446	5,053	-	-
1980	19,696	4,383	15,313	-	-
1981	468	104	364	-	-
1982	1,068	257	811	-	-
1983	707	192	514	-	-
1984	1,287	257	1,030	-	-
1985	19,794	3,959	15,835	-	-
1986	28,762	5,752	23,009	-	-
1987	27,972	5,594	8,635	13,743	3.0
1988	3,963	793	243	2,928	0.6
1989	29,460	5,892	8,015	15,554	3.0
1990	36,005	7,201	22,504	6,300	정부·한은 : 1.0, 외환은 : 1.8
1991	49,028	9,806	32,447	6,775	정부·한은 : 1.0, 외환은 : 2.0
1992	70,043	14,009	48,721	7,314	정부·한은 : 1.0, 외환은 : 2.0
1993	23,559	4,712	14,930	3,917	정부·한은 : 0.3, 외환은 : 1.8
1994	28,144	5,629	17,923	4,592	정부·한은 : 0.2, 외환은 : 3.0
1995	30,547	6,109	22,138	2,300	정부·한은 : - , 외환은 : 2.0

1976년의 15억원 수준에서 1995년 말에는 3,236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수은의 결산 이익금은 이익금의 20/100을 적립하는 法定積立金, 配當金, 그리고 법정적립금과 배당금을 제외한 잔여 이익금을 적립하는 任意積立金으로 처분된다. 수은은 지원조건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의 확충 필요성에 의해 1986년까지 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매년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 왔다. 그러나 1987년 정부가 제정, 시행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정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수입 정책이 확고하게 추진되면서 수은도 1987년부터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 추이를 보면, 1987~1989년간은 각 출자기관에 동일한 배당률이 적용되었는데, 연도별로는 1987년 3%에서 1988년에는 이익 규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0.6%로 축소되었다가 1989년에는 다시 3%로 복귀하였다. 1990년 이후에는 출자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배당률이 축소됨과 함께, 정부·한국은행과 한국외환은행간에 배당률 차등화가 이루어져 한국외환은행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배당이 실시되었다.

다. ALM제도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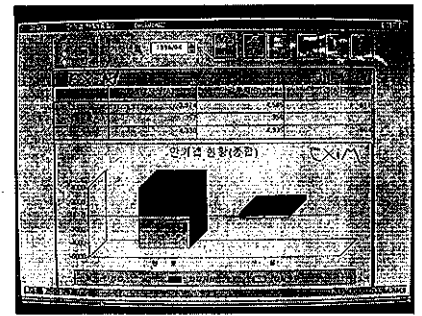
(1) 수지관리와 ALM 체제의 출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은의 수지는 환율 및 국제금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수은의 업무특성상 자금 조달·운용간 표시통화 및 금리조건이 불일치함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는데, 이에 따라 순이익 규모가 환율 및 금리의 급변동기에 큰 폭의 증감을 나타내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여 수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수은은 1986년에 Chase Manhattan Ltd. 등 7개 국제금융기관과 만기 2년 및 5년으로 구성된 총 5억달러 규모의 금리스왑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데 이어, 1991년에는 Bankers Trust International 등 6개 금융기관과 총 11억달러 규모의 금리스왑계약(만기 5년)을 체결하였다. 이들 스왑계약은 모두 '變動金利 受取/固定金利 支給'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국제금리 상승시 수지가 악화되는 수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 밖에 수은은 매입초과 포지션하에서의 환율상승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991년 12월에 Bankers Trust Co. 서울지점과 2억달러 규모의 원-달러간 통화스왑계약(만

기 3년)을 체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환위험 및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이들 위험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상반기 중 資産・負債 綜合管理(ALM : asset & liability management)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결과 1992년 6월 'ALM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이 확정됨으로써 ALM 체제가 본격 가동하게 되었다.



ALM 전산화면

(2) ALM 업무 및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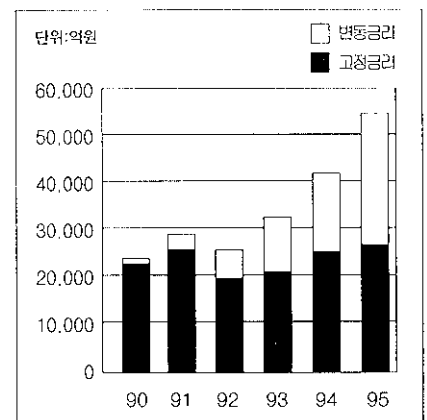
업무 현황

ALM이란 '수지에 영향을 주는 위험현황을 파악하고, 금리 및 환율 변동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資産・負債 構造를 最適化하여, 수익과 위험의 균형 및 經營의 健全性을 도모하기 위한 財務技法'이다. 궁극적으로 ALM의 목표는 자산·부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수지를 안정화하고, 適正利益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은의 출범 이래 ALM 업무는 외화부문의 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위험관리를 외화부문에 한정된 것은 수은의 주된 리스크가 이 부문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화부문은 자산·부채의 금리구조 불일치로 인해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아 왔으나, 원화부문은 차입과 대출이 모두 고정금리 조건으로 행해져 왔으며, 일정 수준의 마진이 확보되어 금리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대책이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7월부터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과 기술제공전 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국내 우대금리(prime rate)에 기초한 변동금리 방식으로 변경되고, 또한 1996년부터는 수은의 주요한 원화자금 조달원인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용자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됨에 따라 원화부문의 금리위험 관리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危險分析과 관련하여 수은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단순한 분석기법인 금리갭과 환포지션 분석을 사용해 왔다. 금리갭 분석은 변동금리 자산과 변동금리 부채의 차액(금리갭)을 구하여, 향후 금리변동이 수지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는 방법이다. 수은은 설립 초기부터 변동금리 현물부채가 변동금리 현물자산보다 큰 네거티브 금리갭 상태를 유지하여 금리상승시 수지가 악화되는 추이를 보여 왔는데, 이에 따라 금리위

대출자산의 금리구조(1995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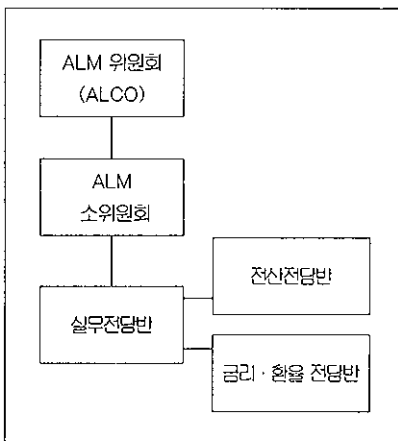
협 관리의 초점은 네거티브 금리갭의 축소에 두어졌다. 환포지션 분석은 외화표시 자산과 외화표시 부채의 차액(포지션)을 구하여 환율변동이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수은은 1993년 및 1994년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설립 이래 만성적인 매입초과 포지션 상태를 유지하여 환율하락(원화절상)시 환차손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원화표시 대출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포지션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험의 정확한 파악은 ALM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은은 위험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은의 실정에 적합한 위험분석 방법의 개발과 전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危險管理 실태를 보면, 수은은 수시로 환위험 및 금리위험과 금리·환율의 추이를 점검하는 것 외에, 매 분기 1회의 ALM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험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위험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조직 현황

ALM 조직현황



수은의 ALM 조직은 은행장 또는 이사회에 대한 건의 및 자문기능을 맡고 있는 ALM위원회(ALCO)와 ALCO 심의사항을 사전 검토 협의하는 ALM소위원회, 그리고 위험 파악과 ALM 안전 작성 등 ALM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전담반이 있다. 이 밖에 ALM 지원조직으로 금리 및 환율 예측을 담당하는 금리·환율 전담반과 ALM 전산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전산전담반이 있다.

각 조직의 구성을 보면, ALCO의 경우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담당하고 있고, 위원은 자금담당 이사, 국제금융담당 이사, 여신개발담당 이사, 종합기획부장, 자금부장, 국제금융부장, 여신개발부장 및 정보관리부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위원회는 자금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ALCO 위원 담당 부서에 속해 있는 2급 직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실무전담반은 자금부내에 설치되어 있다. ALM 지원조직의 구성을 보면, 금리·환율전담반은 ALM 실무전담 3급 직원(반장), ALM 실무전담 4급 및 국제금융부 소속 4급 직원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산전담반은 정보관리부 3급 직원(반장)과 자금부, 국제금융부, 여신개발부 및 정보관리부 소속 4급 직원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人事・研修

가. 인사관리

(1) 개관

수은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업무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業務의 專門性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수은은 창립 이래 수은 고유의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금융 업무를 중심으로 직원의 專門化에 주력하여 왔다. 또한 정부로부터 수탁·대행한 수출보험 업무,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인력의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과학적인 定員管理와 職務管理를 위하여 1980년 이래 꾸준히 직무분석을 시행하여 왔으며,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5년 총무부 총무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사부를 정식 발족하였다. 이러한 효율적 인사관리의 결과 1976년 설립 당시 76명의 직원으로 출발하여 1995년 말에는 연간 자금공급 규모가 창립연도에 비해 약 80배 증가한 4조원을 넘어선 반면, 직원 수는 682명으로 약 9배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면에서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1995년에는 職群制를 도입하고 경력개발제도(CDP)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인사관리의 합리화

인력관리

1982년 2월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의 책정 등 제반 人事管理 사항이 자율화되면서 職務分析 실시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는 자체 인력관리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은도 매년 업무내용 및 업무량 조사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부서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총 정원 및 각 부서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 운영해 왔다. 또한 부서별 업무내용 및 업무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

하여 1981년과 1986년에 이어 1993년 은행 전반에 걸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요인력 산출 이외에도 전산화 가능업무를 파악하고 일반행원의 고유업무를 발굴하는 등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은은 1976년 설립 당시 기준정원이 78명이었던 것이 1986년에는 542명으로 늘어났으나,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와 남북협력기금 업무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는 610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직원 전문화, 업무전산화 추진 및 팀제 도입 등 인사 및 조직효율을 극대화하여 온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수은의 인적 구성을 보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중간관리자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업무 성격상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적은 반면 국제금융, 대형 프로젝트 심사, 경제협력 업무 등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채용

수은은 장기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직종별로

첫 직무분석

우리은행 최초의 직무분석은 1980년 2월 7일 계획이 수립되어 그 해에 여신 3개부서(심사 1·2부 및 금융부)에 대한 분석을 우선 실시하고, 이듬해에 수출보험 부문과 해외사무소를 제외한 전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을 완료하였다.

당시 직무분석을 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허가사항인 조직과 정원의 적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설립 5년째를 맞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과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가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유수 대학의 경영연구소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업무가 아직 정형화되지 못한 초창기의 조직은 외부용역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 인사라인의 자체인력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인사과장이었던 필자와 김정준 대리, 이평구, 박동수 행원 등 4명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행

외연수 참가, 외부강사 초빙, 각 부서 실무요원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작업에 착수하였다.

직무분석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예금이나 대출처리 건수 등 비교적 업무량의 측정기준이 명백한 일반 사증은행들과는 달리 지원 프로젝트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융자상담이라든가 계약서 검토, 외국 바이어와의 업무연락 등 우리은행만이 가지는 업무의 특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또한 직무분석에 관한 참고서적에는 생산기업체의 업무량 측정방법만이 기술되어 있을 뿐, 기획, 심사, 조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우리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은행 전체의 업무를 295개 단위업무로 분류하고, 각 단위업무별로 선정된 6개월 이상 경험직원 5~6명과의 group interview를 거쳐

표준 업무처리 과정을 설정하는 한편, 요소작업별 발생빈도와 소요시간을 오늘날의 집중근무 여건을 가정하여 순수소요시간(net working time)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직무분석 결과로는 295개 표준 업무처리 과정의 설정, 부서별 소요인력 측정, 직무분류표 및 직무평가표의 작성 외에도 여러가지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건의사항이 포함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미 15년 전에 우리은행의 직군을 A, 일반관리 및 계리직군, B, 기획 및 조사직군, C, 자금조달 및 여신직군, D, 특수직군(별정직 등으로 순환근무 제외)으로 구분하여 행원 때는 A,B,C 3개 직군, 대리 때는 A,B,C 중 2개 직군(주직군 및 부직군), 과장 때는 1개의 주직군에만 보임토록 하는 직군별 전문화 방안이 건의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전문 직군제 시행방안을 보면서 새삼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생각이 든다.

(윤기학 / 당시 인사부 과장)

소요인력을 구분 채용하여 왔다. 직원채용에 있어 성별 구분채용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직원은 행원급은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학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행원과 기타 일반행원으로 구분 채용하고 있다. 채용은 공모전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수기능 보유자, 법정 의무고용자의 임용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필기, 실기, 면접 고시 및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채 1기 신입행원과 여직원들의 야유회 모습
(1977. 3)

승진

승진관리면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이를 승진인사에 반영해 왔으나, 1977년 8월 이후에는 綜合評定制度를 시행함으로써 年功 위주의 인사관리에서 탈피하여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등이 조화된 효율적 인사관리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종합평정점의 구성은 직급별로 다소 차이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골격은 경력평정(40점), 근무성적평정(50점), 연수평정(10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가점을 하고 있다. 수은은 종합평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수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변화의 큰 흐름은 종합평정

또 하나의 자화상

외양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는 것은 질적인 부분의 발전이라고 한다. '수은소식'의 탄생도 우리은행이 일정수준 성장한 창립 1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즈음부터는 우리은행도 그동안 일구어 온 전통을 하나씩 다지고 굳혀 나가야 했으며 직원들을 하나로 묶어줄 문화적인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수은소식'은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들의 꿈과 바람, 그리고 기쁨과 애환까지도 담아내리라는 각오로 1988년 7월 1일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다. 창간호의 모습은 12페이지, 4x6 배판의 소박한 얼굴이었지만 수은가족이 직접 꾸며서 만든 책자였기에 이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였으며, 그러한 직원들의 관심과 애정은 8

년이 지난 지금, 통권 100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사실 당시는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각 회사마다 직장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때라 사보가 불을 이루다시피 발간되었다. 조직의 활력은 몸과 마음이 활기에 찬 구성원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시에 인식하기라도 한 것처럼.

'수은소식'의 첫 출산은 제법 진통이 컸다. 먼저 담당부서를 정하는 일에서부터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다른 기업들처럼 홍보실이 따로 있지 않았던 우리로서는 새로운 업무인 데다가 직원들로부터 받을 적잖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뜻 나서지는 부서가 없었다. 결국 행보의 여러가지 기능 중 지도·교육의 목적을 만족시킬만하다고 판단된 인사부 연수과에서 행보 발간을 시작되었다.

그 후 1992년 4월 1일 홍보실 신설과 동시에 '수은소식'은 약 4년만에 새로운 환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읍지와 양지의 조화라든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앞으로 더 많은 시점을 맞고 성장하게 될 '수은소식'의 짧은 기간의 업적을 얘기한다는 것이 어설픈 감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우리의 지나온 모습과 생각들의 궤적이자 자화상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 속에 등장한 퇴직 선배들의 추억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직원들의 기호, 그 때그때 이슈화되었던 주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 신입사원들의 환기찬 목소리, 직원 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 등은 앞으로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향기로 남을 것이다.

(남윤희 / 당시 인사부)

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능력과 업적에 기반을 둔 승진인사가 가능토록 하는 방향을 취하여 왔다.

창립 이래 고졸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채용한 일반행원에 대하여는 직급승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5년 12월 직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일반행원의 직급을 1~6급으로 신설하고 종합평정에 의거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일반행원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

수은은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인재양성의 원칙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직원의 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이동도 실시하고 있다. 직원의 이동은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성적, 연수와 인사상담 기록 등의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직원의 잦은 이동이 자칫 직원 전문화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1995년에는 職群制의 도입과 經歷開發制度(CDP : Career Development Program)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1995년 8월에는 우선적으로 전문화가 요구되는 7개 분야에 專門家 育成對象者를 지정하여 해당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은행 내외의 전문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1995년 1월에는 1993년 이래로 추진하여 온 인사관리정보시스템(PMIS)이 완성됨으로써 인사관리 업무 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보다 과학적인 인사기록 관리가 가능해졌고 경영자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인사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연수

(1) 개관

수은의 研修制度는 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고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한편, 지속적인 자기啓發을 통하여 장래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공적수출

신용기관으로 출범한 수은은 업무수행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수제도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설립 초기인 1977년 8월 당시 총무부내에 연수과를 두고 인사 부분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직원연수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인사부에서 연수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93년 6월에는 경기도 용인군에 연수원을 개원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수가 가능토록 하였다.

(2) 연수제도의 확대

연수제도의 기반 구축

수은의 연수는 1976년에 실시한 外國語研修를 시초로 하여 설립 초기에는 직원의 외국어 실력 배양을 위한 행내의 외국어연수와 업무기법의 습득을 위한 국외 업무연수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 1977년 들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專門職 과정 연수, 수출학교 연수 등 외부기관 파견연수를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체계화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1978년 이후에는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종합실무연수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행내 업무연수와 해외사무소 근무연수가 실시되었으며, 1979년부터는 국외 학술연수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들어 수은의 연수체계는 더욱 구체화,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 최초로 발행한 업무교본을 바탕으로 직원에 대한 실무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책임자급 직원의 업무수행 및 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1984년 이후에는 신입대리급 직원에 대해 관리자 훈련 과정을, 차·과장급 직원에게는 실천관리자 과정 통신연수를, 그리고 고위간부 직원에게는 해외기관 고급관리자 과정 파견연수를 실시하였다.

1987년에는 그 이전까지의 직원연수제도인 장학요강과 국외연수요강을 폐지하고 현행 연수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연수규정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연수규정에 따라 은행의 연수제도는 國內研修와 國外研修로 분류되어 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국내연수는 다시 행내외 연수로 나뉘어 업무연수, 외국어연수, 관리자연수, 전산연수, 부서단위 조직활성화연수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국외연수로는 학술연수, 장·단기 업무연수, 외국어연수, 해외전학연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전문분야 연수의 강화

1989년부터 시작된 당행의 장기 발전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專門人力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1993년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대외거래 전담은행으로서 수은 고유기능의 전문화가 더 한층 강조되면서 전문인력 양성은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수은의 長期發展戰略을 추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제금융 및 여신심사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수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1989년부터 해외 현지법인에 OJT연수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ADB 외에 IFC, USAID, JCIF 등 선진 국제금융기관에 장기 업무연수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한국금융연수원 전문과정 등 전문기관 위탁연수

첫 학술연수

1979년 5월, 필자는 첫 국외 석사과정 장기 학술 연수자로 발령을 받고 Columbia 대학 Business School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은행의 연수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었고, 특히 한국은행이나 외환은행 등은 학술연수를 이수한 직원들이 대학 강단 등으로 자주 이직하는 바람에 제도시행을 중단하고 있었던 터라, 우리은행에서 이를 다시 시도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것이었다.

첫 학술연수인이라 은행에서도 그 절차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고민하던 외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었다. 당시에는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해외유학시험에 합격하여야 유학여권이 나오던 때라 국사, 논문, 영어 3과목으로 치루어지는 유학시험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다. 영어와 논문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국사가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날 정부출자 국영기업체 직원은 국사와 논문과목이 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즉시 문교부 유학담당과에 알아보니 시험면제대상 국영기업체 리스트에 수출입은행은 없었다. 실무자에게 이야기해 보았으나 마이동풍이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수출입은행의

정관, 등기부등본, 법, 시행령 등을 직접 들고 들어가서 설득한 후에야 우리은행을 리스트에 올릴 수 있었고, 필자는 영어시험만으로 유학시험을 치르고 무사히 뉴욕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뉴욕에 도착하여 학교에 등록하고 나자 예비과정으로 컴퓨터 과목이 기다리고 있었다. 난생 처음 대하는 컴퓨터를 한국어로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컴퓨터 전문용어(jargon)를 써서 강의하니 참으로 난감하였다. 그때 자칫하면 pre-term에서 재수 내지는 탈락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를 악물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본과정에서도 문제는 남아 있었다. 첫 학기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case study group을 짜는 데부터 어려움에 부딪혔다. 언어가 달리는 동양계 등 외국인들은 잘 넣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폴란드 친구가 교수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학생들 그룹에 끼게 되었지만 원하지 않던 멤버를 영입받은 그 쪽인들 달가울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어쩌랴. 통계처리 및 보고서 제출용 타이핑은 무료로 책임 지겠다고 나서서 겨우 환심을 사고 가끔

저녁에 집으로 초대하여 불고기 파티도 해주며 화합을 다졌다. 그 결과 기말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다음 학기부터는 자기네 그룹에의 참여를 권유받는 인기(?)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만 2년간 재미없는 전공분야지만 참으로 공부하는 많이 했다. 물론 방학 때에는 76년산 Pontiac 3800cc 덩치 큰 고물 자동차를 몰고 북으로는 캐나다, 남으로는 플로리다까지 동부 전역을 누비며 미대륙의 웅장한 대자연을 호흡해 보기도 하였다.

그 당시 필자가 배웠던 경영이론은 그동안 급변해온 국제경영환경 때문에 이제 대부분 고물 이 되었지만, 뉴욕사무소 근무시절 Columbia 동창생이라고 반갑게 대해주고 업무협조를 해주던 World Bank, Salomon Brothers, Lehman Brothers의 쟁쟁한 금융인들이 있음도 학술연수의 덕분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다.

(김진호 / 당시 업무부 대리)

를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1992년 하반기에는 업무교본을 전면 개정하고 1993년에는 행내 전문강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내실무연수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1994년 12월에는 여신심사 및 자금·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행내 전문업무연수를 실시하여 직원의 전문화를 촉진토록 하였다.

또한 직원의 국제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9년 8월부터 1년 동안 대만 국립사범대에서의 중국어 연수를 시작한 이후 연차적으로 프랑스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특수 외국어에 대한 현지국 연수를 확대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는 국외 업무연수 예정직원에 대하여 업무연수 전에 장기 외국어연수를 실시하여 국외 업무연수의 효율성을 제고시킨 바 있다.

국내 외국어연수에 있어서도 1993년 9월 연수원 합숙영어연수를 시작으로 1995년 2월에는 신입 중견행원 전원에 대하여 정식 부서배치 전에 서강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연구소에서 6개월간의 장기 영어연수를 금융기관 최초로 실시하는 등 외국어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첫 ADB 장기연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Secondment Program은 ADB가 회원국으로부터 연수생을 받아 인력확충의 기회를 갖는 한편, 회원국의 금융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마련한 연수제도이다.

우리은행의 초창기에 단기연수로 시작된 ADB연수는 1982년부터 1년 기간의 장기연수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당시 정훈목 ADB이사(우리은행 이사 역임)가 ADB측에 특별히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첫 ADB 장기연수의 행운을 누리게 된 편지는 Country Dept.(연간사업계획 입안)에서 출발하여 Project Dept. 중 수은 업무와 연관성이 가장 큰 Industrial & Mineral Division을 거쳐, 자금인출 부서인 Controller's Dept.에서 1년간(1992. 6 ~ 1993. 6)의 연수과정을 마쳤다.

지금은 우리은행에도 프로젝트파이낸스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있지만, 연수 당시로서는 세계

은행과 더불어 프로젝트파이낸스 전문기관인 ADB의 철저한 사업성 검토 과정, 특히 용자취급절차(project cycle)와 프로젝트 심사업무의 팀워크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예비조사, 계약체결, 공사진행, 공사감독 및 시후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철저한 현장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용자취급절차, 경험있는 Senior Officer(또는 Project Engineer)를 팀리더로 하여 Project Economist, Financial Analyst, Country Officer, Counsel, Specialist(필요시)가 한 팀이 되는 심사팀(Appraisal Team)의 짜임새 있는 전문성, 그리고 자금의 자출에서 회수까지의 사후관리와 피드백 시스템은 편자로 하여금 새로운 여신세계에 눈뜨게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당시에는 ADB 예산사정이 좋았던지 연수생인 본인에게 4번의 출장기회가 주어졌다. 싱가포르의 Container Terminal 프로젝트, 스리랑카의 Graphite Mining 프로젝트 및 파키스탄의 Sui Gas Transmission 공사 등의 심사

팀에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었으며,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었다.

당시 ADB 정박사께서 본인의 출장보고서를 철저히 챙겼는데, 처음에는 고통스럽기도 하였으나 심사기법과 보고서 작성요령을 터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첫 ADB 장기연수였던 만큼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기법'이라는 연수보고서를 정성껏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은행 연수교본(1985년)에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칼럼을 처음 작성하게 된 것을 지금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조상균 / 당시 심사2부 과장)



연수원 전경

연수원 설립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한 업무신장과 이에 따른 연수수요의 증대로 研修施設 및 그 수용능력의 확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 소재 연수원 부지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직원 연수체계

			주요 연수
국 내 연 수	행 내 연 수	업무연수	- 직급별 종합실무연수 (4급책임자, 종견행원, 일반행원) - 신입종견행원 연수 - 전문업무연수
		외국어연수	- 행내 아학강좌 - 정기 외국어 고시
		기타 연수	- 전산연수 - 산업시찰연수 - 부서조직 활성화연수 - 신임관리자연수
	행 외 연 수	관리자연수	- 금융연수원 금융최고(고급)경영과정 - 서울대학교 고급금융과정
		업무연수	- 금융연수원 통신연수 - 금융연수원 전문직과정 - 신임관리자연수
		외국어연수	- 아학교육 전문기관 위탁연수 (외국어대, 서강대 등) - 행외 외국어학원 수강료 보조
		기타연수	- 학술연수(아간대학원 석사과정) - 업무세미나 등
	국 외 연 수	학술연수	학술연수
업무연수		- 장기업무연수 - 단기업무연수 - 현지법인 OJT연수	
외국어연수		- 장기 영어연수 - 특수외국어연수	
기타 국외연수		해외견학연수 등	
기타연수		- 국민정신교육 - 경제교육 - 교양강좌	

1993년 4월에 14,484평의 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총 건물면적 863평의 연수원을 완공하였다. 현재 연수원 본관은 직원 숙소, 첨단장비를 갖춘 강의실 및 어학실습실로, 별관은 임원·부서장 숙소,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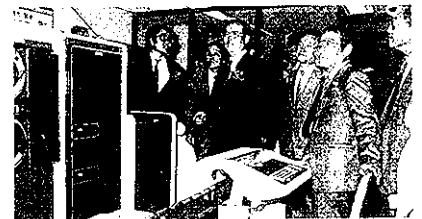
연수원의 개관으로 연수제도 운용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수방법 및 연수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는 종래의 강의 위주의 연수방식에서 연수원 연수에 적합한 토의법, 사례연구법 등을 응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되었다. 또한 장기 합숙연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어 합숙연수, 부서단위 조직활성화연수 등을 시행하는 등 연수의 내실화와 활기찬 조직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4. 電算情報 시스템

가. 개관

수은은 창립 이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業務電算化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수은은 1977년 업무개선실의 사무합리화 업무를 출발점으로 하여 1979년 전산인력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업무진산화 및 事務自動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수은은 1980년 급여업무를 자체 개발한 데 이어 대출, 사후관리, 예산 등 일반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95년에는 명실상부한 수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사무자동화 분야에도 집중 투자하여 1993년에는 본점 및 국내지점간을 연결하는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한 직원간 정보교환 통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4년 groupware를 도입하여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1995년에는 전자결재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종이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였다.



컴퓨터 가동식 (1984. 10. 24)

나. 전산조직 및 기초환경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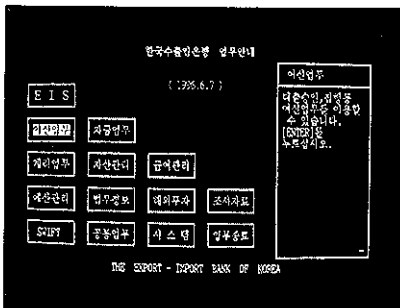
1977년 8월 업무개선실에서 출발한 수은의 電算組織은 1979년 전산요원 9명을 보강하여 업무전산화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금융산업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정보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1990년 전산실이 단일부서로 독립한 데 이어 1991년에는 전산실이 정보관리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1995년 말 현재 전문 전산요원만도 24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電算 基礎環境(infrastructure)을 살펴보면 1984년 미국 Data General사의 Eclipse MV/8000 II System을 도입한 것이 수은 중앙 컴퓨터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전산개발 및 운용 업무의 증가에 따라 1988년 상위 기종(MV/20000 II)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자료의 분산관리, 컴퓨터의 소규모화, 정보통신망 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 정보시스템 부문의 기술 변화에 따라, 여신, 자금, 예산 등 업무를 분산처리하기 위해 미국 Sequent사의 SE20, S290을 도입하여 1994년 5월 여신종합시스템의 개통에 맞추어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輸銀情報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1991년에는 關係形 데이터베이스인 Oracle을 도입하여 수은의 정보관리체계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종래 모든 자료를 중앙컴퓨터에 집중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독립적인 컴퓨터에 분산하는 분산처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PC의 업무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무기기 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995년에는 1인 1대 PC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다. 수은정보시스템의 개발

여신종합시스템 초기 화면



(1) 여신종합시스템

수은은 1984년 최초로 대출 및 사후관리, 외환, 통계 등의 여신업무를 전산화하여 활용하였다. 이 후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오던 중 다양한 정보제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1년에는 신기법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Oracle을 도입하여 與信綜合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결과 1994년 5월에는 모든 자원자금을 대상으로 승인, 집행 및 사후관리, 통계 등 여신전반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하게 되었으며, 관리자를 포함한 전 직원으로 이용자층을 확대하여 수은의 정보시스템 부문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2) 자금종합시스템

1984년 4월 計理 및 決算 업무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10월에는 자금조달, 원화자금 운용 및 환거래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였다. 그러나 옛 시스템은 은행 전체적 측면의 자금조달 및 운용 정보의 제공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개발 및 유지·보수가 편리한 신기술을 도입하였다. 1995년 8월에 개발한 資金綜合시스템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자금 조달 및 운용, 외국환평형기금, 역외금융, 현지법인 관리, 자금수급계획, ALM 등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금종합시스템 화면

(3) 일반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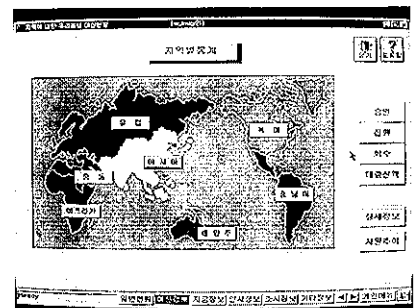
1980년 給與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운용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예산, 급여 및 자산 등 일반관리 부문에 대한 시스템 개발도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제도변화에 대처하고 사용자 이용환경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및 1995년에 걸쳐 예산, 자산, 급여 등 一般管理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여신 및 국제금융거래의 각종 계약서에 대한 법률심사 의견 등을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法務情報시스템을 1993년 2월 개발하였으며, 외빈 면담자료 관리 시스템도 개발하여 주요 면담인사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전 직원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4) 관리자정보시스템

1995년 9월 개발이 완료된 管理者情報시스템은 여신, 자금, 인사 등 수은의 모든 내부 및 외부 정보를 경영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수집, 분석, 가공하여 합리적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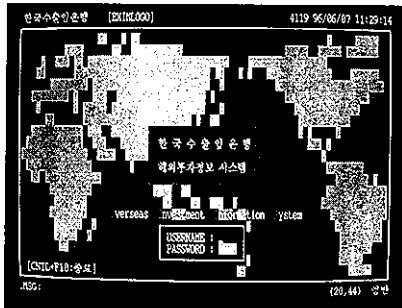
관리자정보시스템 화면



(5) 외부 데이터베이스 접속

해외투자정보시스템(OIIS)

1990년 초반부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수은은 1994년 7월 최초로 하이텔, 천리안 등 외부 통신망을 통하여 국가별 투자환경, 투자절차 및 성공사례 등 海外投資情報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11월 현재 이용현황이 총 37,503회, 3,398시간에 이르는 등 고객을 위한 정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투자정보시스템(OIIS) 초기화면

무역자동화망(EDI)

수출입 승인, 수입신용장 등 무역 관계 서류를 貿易自動化網과의 접속을 통하여 電子文書化하여 수출입업체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의 PC를 통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Internet homepage 개설

Internet 등 國際通信網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를 통한 정보의 수은정보의 제공이 필요해 됨에 따라 수은의 업무 및 각종 지원현황 등 수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homepage를 1996년 중 개설할 계획이다.

라. 사무자동화 및 정보통신망 구축

(1) 사무자동화기기 보급

1983년 word processor 및 personal computer(Apple사)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전동볼 타자기, XT, 286급 컴퓨터를 문서작성 업무에 병행 사용하여 오다가 1990년 전산실 독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事務自動化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 기종인 386 PC 69대, 도트 프린터 31대를 각 부서에 배치하였고 그 때까지 사용되던 여러 종류의 word processor를 '훈글'로 통일하여 문서작성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Spread Sheet(Lotus 1-2-3), Database(dBASE III)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PC를 중심으로 한 사무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업무능률을 높이고 사무자동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초로 PC 경진대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환경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PC 및 프린터 보급을 확대해온 결과 1995년에는 1인 1대 PC 시대를 실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2) 정보통신망

1993년 11월 1년여의 검토 끝에 드디어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하여 본점과 지점(부산, 대구)에 총 110대의 PC 및 업무용 main server를 접속하였다. 이 후 광주지점, 창원지점, 인천용자상담소, 연수원에 LAN을 계속 확대한 결과 1995년 8월에는 국내 본점·지점간 통신망 설치를 완료하였다.

1994년 8월에는 새로운 개념의 groupware인 핸디 오피스 2.0을 도입함으로써 Windows 환경하에서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재 등 각종 기능구현이 가능하게 되어 결재문화와 직원간 정보교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1996년에는 국외사무소와의 Internet 접속을 통하여 국내외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첨단 회의문화의 도입을 위해 畫像會議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중이다.



신입행원들의 윈도우 연수 장면

(3) 전자결재시스템

1993년 11월 근거리통신망 도입 이래 電子決裁 실시에 따른 제도적, 기술적 검토 등을 계속하였으며, 1995년 9월 문서관리 통할업무가 정보관리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도 및 기술 측면의 종합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1995년 11월 전자결재와 문서결재 병행의 우선 실시단계를 거쳐, 1996년 1월에는 문서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전자장표 제정 등의 제도 도입과 함께 전자문서에 대한 결재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총체적 文書處理 및 管理 自動化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종이없는 사무환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결재시스템 활용교육



5. 資産管理

가. 개관

수은은 보유자산을 업무용 고정자산, 기타자산 및 簿外資産으로 구분, '자산관리요강'에 이의 취득, 보관, 유지, 사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자산관리자는 본점에 있어서는 자산관리 담당부서장(전산관련 기자재의 경우는 전산담당 부서장), 지점(출장소, 사무소, 개설준비위원회 포함)에 있어서는 지점장(출장소장, 사무소장, 개설준비위원장 포함)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담당부서장은 수은 전체의 자산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固定資産은 업무용 토지, 업무용 건물, 공구기구비품, 차량운반구로 나누어 관리한다. 자산관리자는 매년 예산이 성립되면 資産需給計劃 수립지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주요 물품 및 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우며 연 1회의 정기 財物調査를 통하여 관리상태, 정수, 배치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건물과 공구기구비품은 화재 및 동산 종합보험에 부보하며,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不用資産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처분하여 왔다.

業務用 不動産은 대부분 본점의 토지 및 건물과 지점의 공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구입 및 개·보수공사가 관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물품수급계획 또는 공사계획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는 시장조사와 함께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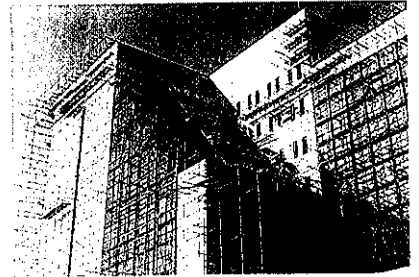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수은은 합리적인 물품구입과 재고관리, 보유자산의 수선 및 개·보수공사를 통한 자산의 최적상태 유지 및 불용자산의 처분 등을 통한 자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왔다.

나. 본점 건물의 신축

(1) 추진 경위

수은은 1976년 설립 당시 대우센터 빌딩내에 600여평을 임차하여 업무를 개시했으나, 업무량 및 인원 증가에 따라 매년 임차면적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보증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업무량 및 인원의 증가 외에도 국제금융기관으로서의 對外公信力を 제고하고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981년에 본점 건물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다. 1981년 12월 28일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여의도동 16-1 소재 시유지 2,756평을 구입하였으며 1982년 1월 15일 신축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부 소속으로 건축추진반을 구성하였다. 또한 신축업무의 주요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은행장 자문기구로서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建築推進委員會'를 구성하였다.

1982년 5월에는 본점 건물의 종합설계를 (주)정림건축에 의뢰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하였다. 이어서 12월 13일 시공



건축중인 본점 행사

여의도의 상징물

서울의 젓줄 한강을 내려다보며 우뚝 서 있는 본점 행사는 완공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의도의 대표적 상징물로서 빼어난 아름다움과 격조를 자랑하고 있다.

본점 행사는 '명실상부한 국제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표현'과 '건축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를 양대 목표로 하여 설계되었는데, 설계상의 주안점은 첫째, 도시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질서를 제시함으로써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수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둘째,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복잡한 대규모 건물의 내외부 공간에 정연한 질서를 부여하고, 은행업무가 일관된 空間分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절제와 질서'의 마를 담아내는 데 맞추어졌다.

3층까지 톱 트인 로비의 웅장함, 석재(가평석)로 마감한 건물 외벽의 중후함, 콘크리트의 삭막함을 덮어 주는 옥상 정원의 포근함, 직선의 고

정관념에서 탈피한 계단식 사선처리가 주는 진취의 기상 등은 수은 건물만의 독특함이다.

이러한 본점 행사의 신축과정에는 숱한 우여곡절이 숨어있다. 특히 약 3,000평의 부지경매 과정에서 우리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임찰자 자격이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었던 데 크게 힘입었는데, 여기에는 당시 엄보현 서울시장과 하영기 산업은행 총재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이태호 은행장의 숨은 공이 주요하였다. 아울러 국내에서 시선을 돌려 외국의 은행 행사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첨단의 예술적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임직원의 장기적 안목과, 수은의 행사신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26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한푼도 깎지 않고 승인해 준 강경식 재무부장관 등도 오늘 본점 행사가 있게 한 공로자라 할 수 있다.

(임재승 / 당시 건축추진반 행원)

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한 결과, 지명자 13개사 중 대림산업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1982년 12월 17일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착공 후 각종 법적 조건의 충족과 정밀한 시공, 우수자재 사용, 완벽한 공정관리 등에 주력하여 1985년 8월 31일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착공 후 2년 8개월 만인 1985년 9월 17일에 본점 건물의 준공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2) 본점 건물 개요

새 본점 行舎는 대지면적 2,756평에 연면적 10,369평의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철골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함께 각종 기계실이 배치되어 있고 1, 2, 3층은 영업장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실을 연결배치하였으며, 기타 층에는 전산기기실, 임원실, 강당, 복지시설 등 사무공간과 공용부분이 상호 연결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주차시설은 옥내 133대, 옥외 50대 등 총 183대를 주차할 수 있고, 기계설비로는 보일러 4톤급 2대, 2톤급 1대, 냉동기 350R/T 2대, 150R/T 1대 등이 설치되었으며 각종 공조방식으로 자동감지 및 원격조작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기설비는 계약전력 3,500kW로서 정전시에는 즉시 가동될 수 있는 1,220kW 비상용 자가발전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방범설비로서 CCTV, 초음파 시설, 적외선 외곽감시 시설, 도난방지 시설 등이 설치되어 경비본부에서 일괄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통신설비는 국선 100회선 및 구내선 3,000회선이 수용가능하고 교환기는 SL-1시스템(컴퓨터형 최신 전전자식)으로 설치하여 음성 및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SL-1 세트 65대를 운용하여 왔으며, 현재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문예진흥법에 의한 예술품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김형근씨의 '한국의 환상' 및 '영원의 장', 장이석씨의 '바다의 역군', 박영선씨의 '향토' 등의 벽화를 설치하였고, 김찬식, 박영욱, 최기원, 정관모씨 등의 조각 작품을 설치하였다. 또한 지구본 모양의 만국시계를 로비에 설치하는 등 미관을 갖추는 데 주력하였는데, 본점 건물은 1985년에 서울특별시 건축대상 '銀賞'을 수상하였다.

신축 행사로의 이전 축하를 겸한 IMF/IBRD 연차총회 리셉션

새로 지은 본점 행사에 실림을 옮기게 된 시점은 IMF/IBRD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기 바로 직전이어서 본점 신축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이 총회 기간 중에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계 인사들에게 새 건물을 선보이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넓고 높은 로비는 리셉션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리셉션이 열리던 날, 축하 화분으로 3층까지 장식을 하고, 연회 테이블은 2층까지 배치되어 입체적 효과를 더하였다. 지구본 시계 옆 피아노에서는 피아노 트리오가 각국의 민요를 내내 연주하여 연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객들은 대성황을 이루어 로비는 초만원이었고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가 운행되어 각층, 특히 여러 기관에서 기증한 미술품이 전시된 5층과 옥상 정원을 둘러보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당시 외국의 금융전문가들은 우리은행의 리셉션을 가장 개성있는 성공작으로 평하기도 하였다.

(정창진 / 당시 문서부 과장)

다. 연수원 구입 및 증축

(1) 추진 경위

수은은 행내연수의 지속적 확대에 의해 본점 건물내의 연수시설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1984년 12월 24일 (주)동산토건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중리 39번지의 6필지 43,845평을 구입(연면적 913.14㎡의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 포함)한 바 있으며, 이 중 임야 일부를 1990년 1월 30일자로 매각하여 현재는 14,484평의 研修院 부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상위 직급을 포함한 직급별 연수, 부서별 전문업무연수의 확대, 부서단위 조직활성화연수, 외국어연수 및 합숙연수 등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연수원의 증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2월 연수원 증축 및 보수계획안을 확정된 후 연수원 건축반을 구성하고, 기존 연수원 건물에 2층을 증축하는 한편 운동장, 본부석 및 관람석도 설치하여 1993년 8월에 완공을 보았다.

(2) 연수원 개요

현재 연수원은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에 주차장(공지), 2단에 잔디구장, 3단에 테니스 코트 4면과 연면적 863평의 연수원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연수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본관과 지상 4층의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관 1층에는 수용인원 56명의 강의실, 48명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는 어학실습실과 식당, 2층에는 수용인원 42명의 숙소 17실과 휴게실이 있다. 한편 별관 1층에 강의실과 세미나실, 2층에 분임토의실 4실, 3층에 숙소 2실이 있다.

연수 시설면에서는 중앙통제 스튜디오 방식을 채택하여 시청각연수에 필요한 방송, 음향, 녹화재생 등을 중앙조정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동시에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하고 교재의 자체 제작 및 활용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완비하였다.



연수원 현판식(1993. 8)

6. 報酬 및 福祉厚生

가. 보수

(1) 개관

수은의 報酬體系는 기준봉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직종, 근속연수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한 직무수행 능력이 임금의 격차를 결정하는 年功給賃金體系를 유지하고 있다.

초임 호봉은 직종에 따라 종합사무직의 경우 11호봉, 일반사무직 및 서무직의 경우에는 6호봉을 부여하고 근속 1년마다 1호봉씩 승급시키며, 호봉간 승급액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지양하고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5년 기준봉급을 생활급 차원의 본봉과 직종 및 직급에 따른 職能給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일반행원의 직급수당을 신설하여 일반행원에게도 승진개념을 도입함으로써 能力主義 임금체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3년에는 男女僱傭平等法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여행원 제도를 폐지하여 성별에 따른 보수차이를 없애기도 하였다.

(2) 보수체계의 구성

기준봉급

基準俸給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본봉과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직급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990년 본봉과 직급수당을 통합하고 금융수당의 일부를 기준봉급에 편입시킴으로써 기준봉급의 비중을 강화한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준봉급 위주의 연공급 체계를 탈피하고 직원의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직능급제를 도입함으

1981년도 11월분 급여 명세표

기본급	직급수당	직종수당	연공급	상여금	기타	합계
93,990	6,849	8,779	0	0	109,618	
직종수당	직급수당	연공급	상여금	기타	합계	
10,000	1,000	0	0	0	11,000	
직종수당	직급수당	연공급	상여금	기타	합계	
10,000	1,000	0	0	0	11,000	

93,990

109,618

11,000

11,000

1981. 11. 21

소속기관장

인사팀장

한국수출입은행

인사팀장

로써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즉 기존의 기준봉급을 호봉에 따라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본봉과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능급으로 분리하고, 연봉금용수당의 일부를 직능급에 편입시켰다.

각종 수당

수은은 직급 및 직무에 따라 담당업무의 난이도, 책임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액의 각종 手當을 지급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 근로의욕 고취 등을 도모하여 왔다.

우선 1984년 책임자수당 및 가족수당을 신설하였고 1987년에는 연구수당을 확대하여 연봉금용수당을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일반행원에 대하여 직급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의 확대를 꾸준히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기준봉급의 확대를 위하여 1990년에는 직종별로 기준봉급의 40~60%씩 지급하던 금용수당의 일부를 기준봉급에 편입시키고 1991년부터는 이를 폐지, 모두 기준봉급화하였다. 또한 기준봉급과 책임자수당의 45%씩 지급하던 연봉금용수당은 1995년 직능급제 도입으로 그 일부를 기준봉급화하여 현재는 기준봉급(본봉, 직능급)의 25%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출납, 전산, 조사 등 일부 업무 종사자들에게만 지급해 오던 업무관련수당을 1983년 전 직원에게 확대하여 담당업무에 따라 직급별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1987년부터는 이를 업무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은 은행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1984년부터는 시간외근무 명령권자를 인사담당 이사로 하부 위임하여 운용하여 왔다. 1995년부터는 이를 더욱 간소화하여 담당부서장의 승인만으로 시간외근무를 인정함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현실화하였다.

상여금

수은은 후불임금 성격인 상여금을 당초에는 정기상여금 300%, 특별상여금 200%로 구분하여 연간 기준봉급의 500%씩 지급하였으나, 1982년부터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의 구분없이 연간 기준봉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시중은행과의 상여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1995년에는 상여금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으로 변경하여 보수에 있어서 상여금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의 소정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일정 기준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은은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직원의 신체단련을 위하여 매년 통상임금의 300%씩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고 있다.

퇴직금

수은은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재직중의 공로에 대한 보상 및 퇴직 후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후불임금 성격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1980년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수준 하향조치에 따라 1981년부터 지급기준과 지급률이 조정되었다. 이로써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기준봉급에서 기준급여(기준봉급, 연불금용수당,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금)로 확대되었고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일시금의 지급률과 동일하게 조정되었다.

나. 복지후생

수은의 福祉厚生制度는 직원 개개인의 복리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하여 직장 근무의욕을 북돋아 줌으로써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다. 수은은 이러한 취지에서 직원의 복리 증진 및 보건 향상을 위해 복지관련 제도를 수시로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생활안정 지원

복지자금대출

직원의 복지 및 가계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1984년부터 대출해 주고 있다. 복지자금대출은 은행에 재직중인 임원 및 1년 이상 근속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한도내에서 대출해 주고 있다.

임차주택 대여

해당 근무지에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주택을 대여하고 있다. 당초에는 부양가족을 동반한 기혼 직원에 대하여만 대여하던 것을 1994년 1월부터는 지방 출신 미혼 직원은 물론 지점, 출장소, 연수원 근무직원으로서 부양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기혼 직원에게도 임차주택을 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연금

國民年金은 임직원의 노령, 질병, 사망 등 소득능력 상실시에도 연금급여를 통한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수은은 1987년 10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표준보수월액의 일정률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및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雇傭保險法이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가입하여 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능력 개발을 도모하였다. 이 제도의 주요 사업으로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있으며, 총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3%로서 이 중 은행이 1.0%, 직원이 0.3%를 부담하고 있다.

단체정기보험

직원이 불의의 재해 또는 일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의 퇴직금만으로는 유족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고, 최근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은은 1993년 5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단체정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결핵성 폐질환, 전염성 B형간염 포함), 장애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에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및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본인이 소유 또는 거주하

는 주택이 손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준보증금 및 연불금응수당의 100%에서 최고 700%까지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 보건·의료 혜택

건강진단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직원들

직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979년부터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왔으며 임직원의 심도있는 건강체크를 위해 綜合健康診斷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검진내용도 내실화하여 38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혈액검사, 초음파, 심전도 검사 및 내시경 검사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38세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혈액 40여종에서 혈액 50여종으로 검진항목을 확대하였다.

부속 의료시설



직원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치과

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의약품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행내에 의무실과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1977년 12월 내과가 개설된 이래 의무실은 전문의 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을 배치하여 질병에 대한 진찰, 진료, 처방과 이에 따른 투약 및 간단한 치료와 신장, 체중, 혈압 등 기본계측을 실시하고 있다. 치과는 1980년 1월에 추가로 설치되어 직원들의 치아 건강을 위하여 전문의 1명, 위생사 1명으로 본점 내에 운영하고 있다.

의료보험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임직원의 질병, 부상, 분만 및 사망 등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수은은 1977년 6월 의료보험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79년 7월 1일부터는 의료보험조합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제1지구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월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3%로 본인 및 은행이 각각 1.5%씩 부담하고 있는데, 본인은 물론 직원이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직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은에서는 1992년 1월부터 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항목은 최초에는 의료보험 적용대상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만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의료보험 제외대상 치료비 중 일부 항목까지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운 종합체육대회에 즐거운 한 때

(3) 체육·교양활동 지원

직원 연성장 운영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심신 단련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의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鍊成場을 운영하고 있다. 연성장 운영지역은 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체인지역으로 하며 아울러 개별 숙박시설 이용제도도 병행하여 운영, 임직원 각자의 취향에 맞게 전국 어느 지역의 휴양소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열어 놓았다.

임의단체 활동지원

직원의 친목도모,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을 위해 산악회 등 11개의 비상설 임의단체(동호인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임의지원 단체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직원 상호간의 친목 및 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필요에 따라 벌이고 있다. 현재 임의단체로서는 테니스회, 산악회, 낚사회, 바둑회, 축구회, 사진회, 스키회, 태극권 수련회 등이 있다.

또한 직원의 체력향상 및 단합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체육행사를 실

사기막 부락과 姉妹號

우리은행은 농촌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1977년 11월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사기막 부락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 부락에 동력선 한 척을 기증하였다.

다음은 당시 이태호 전무이사가 姉妹號 進水式(1979. 4. 5)에서 행한 인사말의 일부이다.

“오늘 우리은행이 사기막 부락과 자매결연을 맺어 형제의 인연을 맺은 후 그 첫 사업으로 추진해온 ‘동력선 건조사업’이 결실을 맺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해 마지 않습니다. 자매부락 주민 여러분의 숙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이 한결같이 일일다실을 운영하고 성금을 모금하는 등 많은 노력

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단합된 힘으로 동력선 건조사업을 추진하신 자매부락 주민 여러분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자조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결실이 있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새삼 기억이 됩니다. 오늘 결실을 맺은 동력선 건조사업을 시발로 마을의 훌륭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등산객을 많이 유치한 다름가 하는 방법으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 소득도 많이 증대되어 지금보다 더욱 살기 좋은 부자마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체육실

시해 왔다. 봄에는 본점 부서별 및 지점별 체육교양 행사를, 가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임직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는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 직원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점에 체육실 및 스퀘시룸을 설치함으로써 직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4) 근로복지기금 설치

勤勞福祉基金은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수은은 1991년 8월 제정되어 199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제정하여 이 기금을 재원으로 각종 목적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은은 1990년 2월 6억원을 최초 기금으로 출연한 이래 1995년 현재 9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금의 수익금은 주로 장학금 지급, 의료비 보조, 생일축하금 지급 등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5) 기타

행우회

임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도모를 위해 1977년 9월 1일부터 行友會를

영원한 행복의 첫걸음!

요즘 시중의 예식장을 구하려면 5~6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겨우 구할 수 있고 혼례비용도 만만치 않아 결혼을 앞둔 직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있다.

처음 행내예식장 설치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1995년 5월 20일, 드디어 예식장과 폐백실, 신부대기실, 피로연장까지 갖춘 행내예식장이 탄생하였다.

개관식이 있던 날, 행내예식장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행운의 주인공은 김영석 행원으로 참석한 친

구들로부터 멋진 결혼식이었다는 부러움을 산 것은 물론, 양가 부모님께 직장을 자연스럽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매우 만족스런 표정. 여유로운 결혼식 진행, 넓은 주차시설, 환상적인 예식 분위기 연출, 예식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및 친절한 안내는 수은예식장만의 자랑이다. 행내예식장에서 영원한 행복의 첫걸음을 내딛은 청년 수은인의 마음 속에 진한 수은사랑이 움트기를 바라는 것이 수은예식장의 마음이다.

(이영섭 / 인사부 대리)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본회는 상조사업으로 회원에게 결혼,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순직 임직원 등에 대한 행우장도 거행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임직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0년 11월 설립되었다. 1995년 말 현재 자본금은 8억 1,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 수납, 직원 대출업무 및 구판장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기타

이 밖에도 수은은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이발소, 휴게실, 신용협동조합 구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하·동계 사무복)을 대여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매년 문화의 달에는 일정액의 서적·음반권 등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문화활동을 돕는 한편, 봄·가을에 걸쳐 직원 보건단련을 위해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행내 예식장을 1995년 초에 설치함으로써 직원 결혼시에는 강당, 폐백실, 식당 및 기타 비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행내예식장에서의 첫 직원 결혼식(1995. 5. 20)

7. 勞動組合

가. 수은 노조의 설립 및 연혁

수은 勞動組合은 제5공화국 초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1982년 12월 23일 설립되었다. 이날 신유순 조합원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다음날인 12월 24일 노동부로부터 조합설립 신고필증을 정식 교부받아 공식적인 조합활동이 시작되었다.

현재 노총 산하 金融勞聯에 가입하고 있는 수은 노동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금융노련 최초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금융권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제1회 노동조합 임시조합원 총회



역대 노조위원장

성명	재임기간
1대 신유순	1983. 1 ~ 1984. 2
2대 최병호	1984. 2 ~ 1985. 1
3대 정금석	1985. 1 ~ 1986. 2
4대 김동균	1986. 3 ~ 1988. 2
5대 정재화	1988. 3 ~ 1990. 2
6대 안상술	1990. 3 ~ 1992. 2
7대 김영수	1992. 3 ~ 1994. 2
8대 박환우	1994. 3 ~ 1996. 2
9대 박윤상	1996. 3 ~ 현재

전임간부는 최초 3인(위원장, 부위원장 1인, 여성부장)으로 시작되어 1987년부터 총무부장 1인이 추가되어 4인으로 증원되었다. 1988년 제5대 집행부 선출시 1인의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이 러닝메이트제로 출마하여 여성부장을 포함한 4인의 전임 간부가 근무하고 있다.

집행부의 임기는 2년이며 통상 임기만료 1~2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여 왔다. 1995년 현재 14년차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부수련대회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나. 조합 현황

조합원은 1995년 말 현재 3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점 분회 23개와 지점 분회 2개 등 25개 분회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기구조직을 보면 상임근무자로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여성부장 1인 등 총 4인, 비상임 부장으로서 8개 부서장(기획·조사부, 조직부, 교육부, 홍보1부, 홍보2부, 문화부, 후생부, 서무·별정직부)과 7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두고 있다.

한편 회계감사 위원은 2인을 총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기관지인 '수은노보' 발간을 책임지고 있는 노보 편집위원회는 집행부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결기구로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조합원 총회, 각 분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 대회, 상임간부 및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 전원회의, 상임간부와 각 부서 부장으로 이루어지는 집행간부 회의, 각 분회 총회 그리고 전문위원회, 직급별 협의회 등 특별위원회가 있다.

또한 노사 양측의 현안문제를 교섭, 협의하기 위한 단체교섭위원회, 노사협의회, 근로복지기금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수은노보 및 회의자료

다. 노동조합의 활동

(1)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측 위원 5인과 조합측 위원 5인 총 10인으로 구성된 勞使協議會는 주요 안건을 갖고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노사간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대화통로가 되고 있다.

단체협약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보호를 위해 단체교섭을 통해 團體協約을 체결하며, 임금 부문은 매 1년, 기타 부문은 2년마다 체결된다. 단체교섭위원회는 사용자측 5인, 노동조합측 5인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사안발생시 수시로 개최되어 1993년 이후 총 14회 열렸으며, 협의회 구성 역시 노사 각 5인,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

조합원의 개인적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은행측 1인과 조합측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고충 접수시 담당 책임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내부사업

노동조합 자체 사업으로는 노조 활동방향 및 은행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기획·조사 사업, 조직력을 배양하고 다른 노동조합과의 連帶事業을 강화하는 조직사업, 각종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사업, 대내외 홍보를 통한 노조위상 강화 및 조합원 단결을 꾀하는 홍보사업,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사업과 직원 복리·후생 관계를 전담하는 후생 사업이 있다.

그동안 수은 노동조합은 3차례에 걸쳐 職員 住宅組舍를 추진하여 입주완료 1건, 착공중인 사업 2건 등으로 무주택 직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행내 가요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직원들의 호응을 받았다.



단체협약 체결장면

노동조합이 상영한 영화
'누가 용의 발목을 보았는가'의 한 장면



제 5 장

21世紀를 맞는 韓國輸出入銀行

第1節 概觀

第2節 發展方向

第3節 앞으로의 課題

第4節 未來의 모습

第1節

概 觀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輸出主導型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와 수출 1,000억달러를 넘어서 경제규모면에서 선진국에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수은은 정부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추진정책에 발맞추어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수출구조의 고도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의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은은 과거 수출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선박 및 기계류 수출로부터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산업설비,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資本財 輸出 진흥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海外投資, 주요 자원 및 중요 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海外資源開發의 촉진 에도 이바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창설된 對外經濟協力基金의 수탁기관으로서, 그리고 남북한간 경제협력 및 대북한 투자지원을 위한 南北協力基金의 수탁기관으로서 수은은 경제협력면에서도 그 역할을 꾸준히 확대·발전시켜 오고 있다.

21세기의 진입을 앞둔 오늘날 대내외적 경제·무역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과 수은의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자유·공정무역의 기치 아래 지구촌 전체가 無限競爭에 돌입하게 되고 NAFTA, EU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의 地域主義와 相互主義가 보다 강화되는 등 우리 경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품·서비스·투자·금융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등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은 경제 전반의 대폭적인 개편과 아울러 수은의 역할에도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범하에서 경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의 총체적인 국제경쟁력 제고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이 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 속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신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느냐가 국민경제 성장의 관건으로 남게 된다. 오늘날의 국제경쟁은 특히 대형 수출거래에 있어 단순한 상품 경쟁이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수은은 대외거래에 특화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公的輸出信用機關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함과 아울러 대개도국 및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專擔支援機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第2節

發展方向

먼저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은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상 상업금융기관과의 補完關係는 물론 외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과의 競爭關係에서도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최근의 자본시장 발달과 국내 금융기관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인해 과거 특수은행만이 담당하던 기능의 상당 부분을 상업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金融自律化 차원에서 국책은행의 민영화 및 시중은행으로의 전환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우량기업은 중장기 외화자금을 직접 해외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기업의 해외신용도가 제고되고 금융시장도 개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본재 생산은 대규모 투하자본을 필요로 하는데다 자본의 회입 기간이 길며, 대개도국 수출은 신용공여에 있어 상업적 리스크뿐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도 수반하게 된다. 아울러 지원조건에 있어서도 수입자측에서는 장기간 분할상환을 통한 자금부담 분산을 선호하는 데 반해 상업금융기관은 그 성격상 리스크 부담을 회피하고 장기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장기 연불수출에 상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업금융기관의 수출지원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은이 경쟁력을 갖춘 對外政策金融의 전담자로서 활동함은 금융의 效率性면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아울러 상업금융기관이 부담하기 어려운 國別 信用危險의 최종적인 擔保者로서 지급보증, 협조융자 등의 형태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수출보조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특히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외환·자본의 자유화가 가속화됨과 아울러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에 있어서도 국제적 適合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延拂輸出金融은 이 체제하에서도 허용되는 매우 유력한 수출지원수단이다. 이에 현재 모든 OECD 회원국이 수은과 같이 대외거래에 특화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유지·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輸出支援體制를 구축하여 격화되는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외국의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최소한 동일한 금융여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해외투자의 경우 종전 국내 임금상승 등과 관련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시장 개척은 물론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 회피, 주요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선진기술 획득 등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대규모의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수은의 지원기능이 확대되어 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수입금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수출용 원·부자재와 국제적으로 수급상황이 불안정한 주요 자원의 수입지원은 물가안정과 수출에 대한 간접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經協基金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 안정적 자원공급원의 확보 등을 지원하는 經濟外交 手段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초기 단계에는 전략국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향후 국제기구의 개발 프로젝트에 협조융자 방식 등으로 참여하여 선진심사기법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사후관리기능도 강화하여 경제협력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수은은 南北協力基金의 수탁기관으로서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앞서 남북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북한 경제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기획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원리에 의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一貫的 支援體制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第3節

앞으로의 課題

수은이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요재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수은의 재원은 주로 재정자금 및 외화차입에 의존하여 왔는데, 재정자금 조달은 정부의 예산사정이나 외환수급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늘어나는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차입의 증가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해외차입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차입여건도 변화하게 되어 소요재원을 적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은의 자체 자금조달원으로서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을 통한 원화자금 조달은 국내금리가 수은의 운용수익률인 참고상업금리를 상회함에 따라 역마진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요재원을 장기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수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은에 대한 財政資金의 지원비중이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수준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法定資本金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자금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융자보다는 출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종합적 수출지원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수은과 정부 및 관계기관, 금융기관, 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 수출거래에 대한 공적지원제도인 연불수출금융과 수출보험의 連繫支援體制를

구축하고, 수출에 있어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위험을 수은이 부담하거나 지급보증, 협조융자 등을 통해 상업금융기관과의 상호 補充인 관계를 새로이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금규모, 상환기간, 업무경험, 리스크 부담능력 등의 이유로 상업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 참여는 물론, 특히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대외지급정지, 외환통제, 정변 등 국별신용위험에 대해 수은이 最終 危險負擔機關으로서 수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협자금 지원을 통한 경제협력 업무는 OECD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협력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개발전략 수립, 사업 발굴, 진행,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수은이 직접 참여하고, 나아가 이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협력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第4節

未來의 모습

우리나라가 향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하에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안정적 자원공급원의 확보 등을 달성함에 있어 수은은 거시적으로 國民經濟的 波及效果가 큰 분야에 중점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은의 역할도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더욱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모될 것이며 기존 업무의 심화·발전과 아울러 정보의 창출 및 유통, 수출 및 투자기회의 개발, 위험의 분산 및 흡수 등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나

아가 수은은 對外去來에 특화하는 공적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國際化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한 자금공여 차원을 넘어 위험부담, 정보제공 등을 통한 종합적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 제고에도 전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은은 체계적인 국내외 연수를 통해 지역, 산업 및 국제금융에 능통한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활용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지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현지정보와 역외금융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화를 지향하는 해외진출전략을 구사하여 수은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새로이 개척되는 유망한 분야를 과감하게 발굴·지원하는 先驅者로서 그리고 世界化를 선도하는 대외거래 전담기구로서 새로이 태어날 것이다.

부록

법규
자료
통계

법 규

1. 한국수출입은행법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3. 한국수출입은행 정관
4.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방법서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남북협력기금법
7. 수출보험법

1. 韓國輸出入銀行法

制定：法律 第2122號, 1969. 7. 28 公布

改正：法律 第2736號, 1974. 12. 26 公布

改正：法律 第3022號, 1977. 12. 19 公布

改正：法律 第3879號, 1986. 12. 31 公布

第 1 條 (目的) 이 法은 韓國輸出入銀行(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經濟協力을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性格 등) ① 輸出入銀行은 法人으로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과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營한다.

③ 韓國銀行法과 銀行法의 規定은 輸出入銀行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3 條 (本店·支店·出張所·代理店) ① 輸出入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店·出張所 또는 代理店을 둘 수 있다.

第 4 條 (資本金) 輸出入銀行의 資本金은 1兆원으로 하고, 政府·韓國銀行·韓國產業銀行·韓國外換銀行·銀行法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輸出業者의 團體와 國際金融機構가 出資하되 政府出資의 時期와 方法은 大統領令이 정한다.

第 5 條 (定款) ① 輸出入銀行은 定款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本店·支店·出張所와 代理店의 所在地
4. 資本金에 관한 事項

5.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6.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6의 2. 理事會 運營에 관한 事項

7.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8. 會計에 관한 事項

9. 公告의 方法

10. 債券發行에 관한 事項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거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6 條 (登記)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本店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事項은 그 登記 후가 아니면 第3者に 對抗하지 못한다.

第 7 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輸出入銀行이 아닌 者는 韓國輸出入銀行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 8 條 (任員) 輸出入銀行에 任員으로서 銀行長 1인, 專務理事 1人, 理事 5人 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第 9 條 (任員의 職務) ① 銀行長은 輸出入銀行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 專務理事는 銀行長을 補佐하고 銀行長이 事故가 있

을 때에는 그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銀行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分掌한다.

④ 銀行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銀行長이 미리 指定한 順位에 의하여 理事가 그職務를 代行한다.

⑤ 監事는 輸出入銀行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 9 條의 2 (理事會) ① 輸出入銀行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銀行長·專務理事와 理事로 構成하고, 輸出入銀行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③ 理事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 10 條 (運營委員會) ① 輸出入銀行에 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範圍내에서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管理에 관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③ 委員會는 第2項의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規定을 정할 수 있다.

④ 委員會의 構成과 그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0 條의 2 (委員會의 構成) (1986. 12. 31 削除)

第 10 條의 3 (議長) (1986. 12. 31 削除)

第 10 條의 4 (會議) (1986. 12. 31 削除)

第 10 條의 5 (會議參與의 制限) (1986. 12. 31 削除)

第 10 條의 6 (委員會의 權限에 관한 特例) ① 輸出入銀行長

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卽刻的 行爲가 필요한 경우에 委員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委員會의 權限 내에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輸出入銀行長은 第1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第1項의 措置를 確認·修正 또는 停止할 수 있다.

第 11 條 (任員의 任免) ① 銀行長은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銀行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③ 監事는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第 12 條 (任員의 任期) ① 銀行長·專務理事와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될 수 있다.

② 任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으로 한다.

第 13 條 (任員의 兼職制限) 任員은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를 除外하고는 다른 職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第 14 條 (任員의 代表權에 대한 制限) ① 銀行長·專務理事 또는 理事의 利益과 輸出入銀行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당해 銀行長·專務理事 또는 理事는 輸出入銀行을 代表하지 못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輸出入銀行을 代表할 다른 理事가 없을 때에는 監事가 이를 代表한다.

第 15 條 (代理人의 選任) 銀行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任員 또는 職員中에서 輸出入銀行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 16 條 (職員의 任免) 輸出入銀行의 職員은 銀行長이 任免한다.

第 17 條 (任員의 責任) 輸出入銀行의 任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 18 條 (業務) ① 輸出入銀行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른 金融機關이 일반적인 條件으로는 取扱할 수 없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資本財 기타 外貨獲得을 위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현저히 기여하는 商品(이하 “製品”이라 한다)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 輸出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2. 外國에 대한 技術의 提供(海外에서 행하는 建設工事を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貸出

4.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 또는 適期輸入을 요하는 物資 및 資源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物資(이하 “重要物資”라 한다) 및 主要資源(이하 “主要資源”이라 한다)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輸入代金の 先給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5.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新設 또는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6.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의 貸與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7.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株式의 取得을 포함한다)하는 外國法人에 대하여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직접 出資 또는 貸與하기 위한 資金의 當해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

7의 2.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행하는 事業에 필요한 長期資金의 當해 外國法人에 대한 貸出

8.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필요한 資金의 當해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貸出

9. 第1號·第2號·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 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받을 경우 그 債務의 保證

10. (1977. 12. 19 削除)

② 輸出入銀行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主要資源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 對外經濟協力 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前準備·調査 및 鑛業權 기타 權利의 取得에 필요한 資金, 기타 海外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 增進을 促進하기 위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대한 貸出 또는 當해 事業에 필

요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당해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

③ 輸出入銀行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1項 및 第2項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를 行할 수 있다.

第 19 條 (資金의 借入) 輸出入銀行은 그 業務를 行함에 필요한 資金의 財源에 充當하기 위하여 政府,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外國政府, 外國의 金融機關 또는 國際金融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 20 條 (輸出入金融債券)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② 輸出入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政府가 保證할 수 있으며, 外國에서 發行하는 경우에는 韓國外換銀行도 이를 保證할 수 있다.

第 20 條의 2 (法人에 대한 出資 등) 輸出入銀行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와 관련된 調査·研究 등이나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資金調達業務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大韓民國 法人 또는 外國法人(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하거나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

第 21 條 (業務計劃의 承認申請) ①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事業計劃을 作成하여 당해 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第18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9號 및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供給計劃과 第4條·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資金調達計劃을 區分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業務計劃에는 分期別 業務計劃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 22 條 (業務計劃의 承認) 財務部長官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計劃을 承認함에 있어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23 條 (借入金 등의 限度額) 輸出入銀行이 第19條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하거나 債券을 發行할 수 있는 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の 合計額의 10倍로 한다.

第 24 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禁止) 輸出入銀行은 第18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行함에 있어서 다른 金融機關과 競爭할 수 없다.

第 25 條 (業務의 制限) ①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支給 또는 履行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限하여 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또는 履行의 期間이 6月 이상 10年 이내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그 期間을 20년까지 할 수 있다.

③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貸出期間은 20年 이내로 한다.

④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貸出의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 金額(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除外한다)과 積立金 및 剩餘金の 合計額으로 한다.

第 26 條 (貸出·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貸出 또는 割引의 利率과 債務保證의 料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輸出을 促進하기 위한 對外競爭力 維持나 海外投資 또는 海外資源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輸出入銀行의 事務取扱費·業務

代手手数料·借入金利息 기타 諸費用과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할 수 있도록 策定하여야 한다.

第 27 條 (財産所有의 制限) 輸出入銀行은 營業에 필요하여 取得하거나 債務의 辨濟를 받기 위하여 引受하거나 기타 業務遂行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動産 또는 不動産을 所有하지 못한다.

第 28 條 (業務의 代行) 輸出入銀行은 그 營爲하는 業務의 일부를 다른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 29 條 (業務方法書)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에 관한 業務處理方法을 정한 業務方法書를 작성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 30 條 (他法令과의 關係) 輸出入銀行은 外國換管理法과 貿易去來法の 適用에 있어서는 外國換銀行으로 본다.

第 31 條 (事業年度) 輸出入銀行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第 32 條 (豫算)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收入과 支出豫算을 編成하여 당해 事業年度가 개시되기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3 條 (追加更正豫算) 輸出入銀行은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할 수 있으며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4 條 (豫備費) ① 輸出入銀行은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 支出에 充當하기 위하여 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豫備費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5 條 (決算) 輸出入銀行은 每 事業年度 經과 후 2月 이내에 決算書를 作成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附屬書類를 첨부하여 財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36 條 (利益金の 處理)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한 후에 決算純利益金を 다음 各號의 順位에 의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1. 資本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分の 20을 積立한다.
2. 政府 이외의 出資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優先적으로 利益金を 配當한다.
3. 第1號의 積立金 및 第2號의 配當金を 除한 殘餘利益金は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처리한다.

第 37 條 (損失金の 補填) 輸出入銀行의 決算 純損失金は 事業年度마다 積立金으로써 補填하고,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第 38 條 (餘裕金の 運用) 輸出入銀行은 第18條의 業務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業務上 餘裕金を 運用할 수 있다. 다만, 財務部長官은 필요한 경우 그 運用方法을 制限할 수 있다.

第 39 條 (監督) 財務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第 40 條 (任員의 解任事由) ① 大統領은 銀行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의

하여 이를解任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의한 命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때
2. 刑事事件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때
3. 破産宣告를 받은 때
4. 心身의 障礙로 인하여 職務遂行이 심히 곤란하게 될 때

② 財務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專務理事·理事 또는 監事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第 41 條 (報告와 檢査) ① 財務部長官은 필요한 때에는 輸出入銀行에 대하여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輸出入銀行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 書類 기타 필요한 事項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財務部長官은 第1項의 檢査를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에게 委囑할 수 있다.
③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은 第2項의 委囑에 의한 檢査의 結果를 財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42 條 (罰則)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한 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 43 條 (施行令) 이 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設立委員 등) ① 財務部長官은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輸出入銀行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②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設立委員은 政府의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이 完了된 때에는 지체없이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 設立委員은 前項의 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그 事務를

銀行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 3 條 (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까지의 業務代行) ① 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까지는 韓國外換銀行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한다. 이 경우에는 第23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韓國外換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한 輸出入銀行의 業務와 그 業務로 인하여 發生한 모든 權利·義務는 輸出入銀行 設立과 同時에 輸出入銀行이 이를 承繼한다.

③ 韓國外換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함에 있어서 政府로부터 貸下받은 資金은 輸出入銀行의 設立과 同時에 政府로부터 輸出入銀行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다만, 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資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附 則 (1974. 12. 26)

第 1 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臨時運營委員會) ① 韓國外換銀行이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하는 期間中 韓國外換銀行에 臨時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臨時運營委員會는 韓國外換銀行이 代行하는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③ 이 법中 輸出入銀行에 두는 委員會에 관한 規定은 臨時運營委員會에 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에 第10條의 2 第1項 第5號, 第10條의 3 第1項과 第10條의 6 第1項 및 第2項中 輸出入銀行長은 韓國外換銀行長으로 한다.

附 則 (1977. 12. 19)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86. 12. 31)

이 법은 公布후 30일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韓國輸出入銀行法 施行令

制 定：大統領令 第 4099號, 1969. 10. 6 公布
1次改正：大統領令 第 7561號, 1975. 2. 28 公布
2次改正：大統領令 第12091號, 1987. 3. 9 公布
3次改正：大統領令 第12603號, 1988. 12. 31 公布
4次改正：大統領令 第13870號, 1993. 3. 6 公布
5次改正：大統領令 第14438號, 1994. 12. 23 公布

第 1 章 出 資

第 1 條 (出資) 韓國輸出入銀行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出資中 政府出資는 年次的으로 分割하여 現金으로 納入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一部를 現物로 納入할 수 있다.

第 2 章 登 記

第 2 條 (設立登記) ① 法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委員(이하 “設立委員”이라 한다)은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이 완료된 날로부터 2週日 이내에 本店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本 店
4. 資本金
5. 納入資本金의 總額
6. 出資方法
7. 任員의 姓名과 住所
8. 公告의 方法

第 3 條 (新設登記) ① 韓國輸出入銀行(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이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各該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本店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處
2. 당해 支店 또는 出張所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第2條 第2項 各號의 事項
3. 新設 支店 또는 出張所 이외의 支店 또는 出張所에 있어서는 第2號의 期間內에 그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處

② 本店·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 새로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경우에는 2週日內에 그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處를 登記하면 된다.

第 4 條 (移轉登記) ① 輸出入銀行이 本店을 移轉한 경우에는 2週日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이 支店 또는 出張所를 移轉한 경우에는 舊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고 新所在地에 있어서는 4週日內에 第2條 第2項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③ 同一登記所의 管轄區域 內에서 支店 또는 出張所를 移轉한 경우에는 2週日內에 그 移轉의 登記를 하면 된다.

第 5 條 (變更登記) 第2條 第2項 各號의 事項이 變更된 경우에는 本店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각각 變更된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第 6 條 (代理人 選任登記) 輸出入銀行長이 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代理人을 選任한 경우에는 2週日內에 代理人을 둔 本店·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서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登記한 事項이 變更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2. 代理人을 둔 本店·支店 또는 出張所
3. 代理人의 權限을 制限한 경우에는 그 制限의 內容

第 7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 (1987. 3. 9 削除)

第 8 條 (登記期間의 起算) 第2條 내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中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 또는 承認을 얻어야 할 事項이 있을 때에는 당해 認可書 또는 承認書가 到達한 날로부터 登記期間을 起算한다.

第 9 條 (登記所) ① 輸出入銀行의 登記는 그 本店·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 登記所를 당해 登記의 管轄登記所로 한다.
② 登記所에는 韓國輸出入銀行 登記簿를 備置한다.

第 10 條 (登記의 申請人, 申請書 添附書類)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는 設立委員이 共同으로 하는 申請에 의하고 第3條 내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는 輸出入銀行長의 申請에 의하여야 하며, 그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第2條의 設立의 登記에 있어서는 定款·定款認可書의 謄本, 財政經濟院長官이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이 完了된 것을 證明하는 書面과 輸出入銀行長이

法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것을 證明하는 書面

2.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支店 또는 出張所의 設置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設置를 證明하는 書面

3.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本店·支店 또는 出張所의 移轉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移轉을 證明하는 書面

4.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事項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變更을 證明하는 書面

5.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代理人 選任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選任이 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것을 證明하는 書面과 그 權限을 制限한 경우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

6. (1987. 3. 9 削除)

第 11 條 (登記에 관한 準用規定) 輸出入銀行의 登記에 관하여는 이 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非訟事件程序法 第192條 내지 第21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 同法 第200條 第2項 第1號·第203條 및 第208條에서 支店이라 함은 支店 또는 出張所로 한다.

第 12 條 (設立登記의 公告) 輸出入銀行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의 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 2 章의 2 運營委員會

第 12 條의 2 (運營委員會의 構成) ① 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輸出入銀行長
2. 財政經濟院長官·外務部長官 및 通商産業部長官이 그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各 1人
3. 韓國銀行總裁 및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各 1人

4. 財政經濟院長官이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 團體의 代表者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② 議長은 第1項 第2號의 委員의 所屬部處 이외의 部處에 관련되는 議案을 審議하는 때에는 당해 部處의 장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으로 하여금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하게 할 수 있다.
- ③ 第1項 第4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 12 條의 3 (議長) ① 委員會의 議長은 輸出入銀行長이 된다.

- ②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미리 指定하는 順位の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12 條의 4 (會議) ① 委員會의 會議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議長이 召集한다.

- ② 議長은 在籍委員 過半數 또는 監事로부터 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④ 委員會의 議決에 있어 당해 議案에 利害關係가 있는 委員은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第 3 章 業 務

第 13 條 (製品) 法 第18條 第1項 第1號의 適用을 받는 製品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産業施設(船舶 및 車輛을 포함한다)과 이를 위한 原料·豫備品·部分品 및 附屬品
2. 外貨獲得을 위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현저히 寄與하고 外貨稼得率이 높으며 一般 輸出去來秩序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는 品目中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輸出入銀行長이 指定하는 品目

第 14 條 (重要物資) 法 第18條 第1項 第4號의 適用을 받는 重要物資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鐵鑛·古鐵
2. 銅鑛·電氣銅·銅屑
3. 亞鉛鑛·亞鉛塊
4. 鉛鑛·鉛塊
5. 알루미늄·알루미늄塊
6. 木材펠프
7. 기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輸出入銀行長이 指定하는 物資
8. (1987. 3. 9 削除)

第 14 條의 2 (主要資源) 法 第18條 第1項 第4號의 適用을 받는 主要資源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石炭·鐵鑛石·銅鑛石·原油 등 鐵物資源
2. 原木 등 林産資源
3. 粉穀·原綿·原糖·生 고무 등 農業資源
4. 기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輸出入銀行長이 指定하는 資源

第 15 條 (海外投資) ① 法 第18條 第1項 第6號의 適用을 받는 海外投資資金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法人에 出資(株式의 取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
2.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外國人이 出資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貸出하기 위한 資金
3.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行하는 事業에 필요한 長期資金을 貸出하기 위한 資金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外投資資金은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經濟協力の 增進에 寄與하는 것이어야 한다.

第 15 條의 2 (主要資源) (1987. 3. 9 削除)

第 16 條 (償還期間 등의 特例) 法 第25條 第2項 但書의 適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그 償還 또는 履行에 특히 長期間이 필요하다고 輸出入銀行長이 인정하는 것에 限한다.

第 17 條 (決算) 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報告하는 決算書(損益計算書·貸借對照表 및 剩餘金處理計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事業計劃 實績分析報告書
2. 財務諸表 附屬書類
3. 기타 決算의 內容을 明白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第 17 條의 2 (利益金の 配當) 財政經濟院長官이 法 第36條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 이외의 出資者에 대한 配當을 承認함에 있어서 그 優先의인 配當率은 100分の 15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 4 章 輸出入金融債券

第 18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承認)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每回 그 發行의 金額·方法 및 條件과 償還의 方法을 정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 19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形式) 輸出入金融債券은 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應募者 또는 所有者의 請求에 의하여 無記名式을 記名式으로, 記名式을 無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第 20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應募) ① 輸出入金融債券의 募集에 응하고자 하는 者는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 2通

에 그 引受하고자 하는 輸出入金融債券의 券種別 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는 輸出入銀行長이 作成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銀行의 名稱
2.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
3. 輸出入金融債券의 券種別 額面金額
4. 輸出入金融債券의 利率
5. 元金償還의 方法 및 時期
6. 利子支給의 方法 및 時期
7.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價額 또는 最低價額
8. 輸出入銀行의 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
9. 輸出入金融債券의 未償還分이 있는 경우에는 그 總額

③ 輸出入金融債券의 最低價額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應募者는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 應募價額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 21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總額引受) 第20條의 規定은 契約에 의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을 引受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22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는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에 있어서 실제로 應募된 總額이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 記載한 輸出入金融債券 發行總額에 未達할 때에도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한다는 表示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應募總額으로써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으로 한다.

第 23 條 (輸出入金融債券 引受價額의 納入)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의 應募가 완료된 때에는 遲滯없이 각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시켜야 한다.

第 24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時期) 輸出入金融債券의 引

受償額の全額이 納入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第 25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記載事項) 輸出入金融債券에는 債券의 番號, 發行年月日과 第20條 第2項 第1號 내지 第6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輸出入銀行長이 이에 記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 26 條 (輸出入의 賣出發行) ①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을 그 賣出期間을 미리 정하여 賣出의 方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는 이를 作成하지 아니한다.

③ 輸出入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하는 輸出入金融債券에는 第20條 第2項 第2號의 事項은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

④ 輸出入銀行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는 賣出期間과 第20條 第2項 第1號 내지 第7號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 27 條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의 備置) ① 輸出入銀行은 本店에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을 備置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金融債券의 數와 番號
2.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年月日
3. 第20條 第2項 第2號 내지 第6號의 事項

② 輸出入金融債券이 記名式인 경우에는 第1項 各號의 事項 이외에 다음 各號의 事項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의 姓名과 住所
2. 輸出入金融債券의 取得年月日

③ 輸出入金融債券의 權利者는 輸出入銀行의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第 28 條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 ①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輸出入銀行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을 質權의 目的로 하는 경우에는 質權者의 姓名과 住所를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輸出入銀行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③ 輸出入銀行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權이 設定된 경우에는 輸出入金融債券에 그 뜻을 表示하여야 한다.

第 29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買入消却) 輸出入銀行은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輸出入金融債券을 買入하여 消却할 수 있다.

第 30 條 (利券 欠缺의 경우) ① 無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을 償還하는 경우에 欠缺된 利券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金額을 그 償還額에서 控除한다.

② 第1項의 利券의 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利券과 償還으로 控除된 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 31 條 (輸出入金融債券 應募者에 대한 通知 등) ①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기 전의 그 應募者 또는 權利者에 대한 通知 또는 催告는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 記載된 住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住所를 輸出入銀行에 通知한 경우에는 그 住所로 하여야 한다.

②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에 대한 通知 또는 催告는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된 住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住所를 輸出入銀行에 通知한 경우에는 그 住所로 하여야 한다.

③ 無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에 대한 通知 또는 催告는 公告의 方法에 의한다. 다만, 그 住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5 章 補 則

第 32 條 (設立委員) ① 設立委員은 다음 各號에 掲記하는 者로 한다.

1. 財政經濟院次官
2. 韓國銀行副總裁
3. 財務部財政次官補
4. 商工資源部第1次官補
5. 財務部理財局長
6. 財務部外換局長
7. 韓國外換銀行專務理事
8. 第1號 내지 第7號 外에 財政經濟院長官이 委嘱하는 2人

② 設立委員은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構成하여 輸出入銀行 設立事務의 處理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③ 設立委員會에 委員長·副委員長 各 1人을 두되, 委員長은 財政經濟院次官인 委員이 되고 副委員長은 韓國銀行副總裁인 委員이 된다.

④ 設立委員會의 會議은 委員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設立委員會의 會議은 設立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서 開議하고 出席委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設立委員會는 法 附則 第2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後 韓國輸出入銀行 設立에 關한 綜合經過報告書를 作成하여 財政經濟院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⑦ 設立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設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이를 定한다.

第 33 條 (業務의 移管) ① 韓國外換銀行은 法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輸出入銀行의 業務開始日에 移管하되, 財政經濟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一部에 限하여 移管의 時期를 따로 定할 수 있다.

② 韓國外換銀行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管되는 業務에 關連된 資産과 負債를 輸出入銀行에 引繼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銀行이 承繼하는 資産과 負債의 價額은 韓國外換銀行 帳簿價額에 의한다. 다만, 外換에 關連된 資産과 負債의 價額은 財政經濟院長官의 승인을 얻어 定한 評價額으로 한다.

④ 輸出入銀行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引受·引繼를 마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銀行이 承繼한 權利中 權利者의 名義를 變更할 需要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遲滯없이 그 名義를 輸出入銀行으로 變更하는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名義變更에 所要되는 費用은 輸出入銀行이 이를 負擔한다.

第 34 條 (業務開始日) 輸出入銀行의 業務開始日은 設立登記를 한 날로부터 30日을 넘기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財政經濟院長官이 定하는 날로 한다.

第 35 條 (設立費用) ① 輸出入銀行 設立에 關한 諸費用은 設立委員會가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 借入하여 使用한다.

② 第1項의 費用은 輸出入銀行이 이를 負擔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75. 2. 28)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代行業務의 區分處理) 韓國外換銀行이 法 附則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銀行業務를 代行하는 경우에

는 그 業務 및 會計處理에 있어서 韓國外換銀行法에 의한 業務 및 會計와는 區分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 ③ (業務代行으로 인한 利益金の 積立) 韓國外換銀行은 輸出 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함으로써 發生하는 各 事業年度の 利益金を 財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輸出入銀行의 計算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附 則 〈1987. 3. 9〉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88.12.31〉

-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品目 등의 指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令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이 指定한 品目・物資 또는 資源은 이 令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銀行長이 指定한 品目・物資 또는 資源으로 본다.

附 則 〈1993. 3. 6〉

第 1 條(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4 條 省略

附 則 〈1994.12.23〉

第 1 條(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5 條 省略

3. 韓國輸出入銀行 定款

制 定 : 1976. 7. 1	7次改正 : 1989. 3. 13
1次改正 : 1977. 1. 1	8次改正 : 1989. 12. 16
2次改正 : 1977. 7. 1	9次改正 : 1991. 2. 13
3次改正 : 1977. 12. 29	10次改正 : 1992. 6. 30
4次改正 : 1986. 3. 7	11次改正 : 1992. 12. 4
5次改正 : 1987. 5. 2	12次改正 : 1994. 2. 28
6次改正 : 1987. 11. 17	13次改正 : 1995. 6. 14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銀行은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의 供與業務를 營爲함을 주된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名稱) ① 이 銀行은 韓國輸出入銀行法(이하 “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設立되며 “韓國輸出入銀行”이라稱한다.

② 이 銀行의 英文名稱은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로 表記한다.

第 3 條 (本店·支店·出張所와 代理店) ① 이 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이 銀行은 毎年 財政經濟院長官이 策定한 年度別新設定數 範圍內에서 필요한 곳에 支店·出張所 또는 代理店을 둘 수 있다.

③ 이 銀行은 國外の 필요한 곳에 支店, 事務所 및 駐在員을 둘 수 있다.

第 4 條 (資本金) ① 이 銀行의 資本金은 1兆원으로 하고 政府·韓國銀行·韓國産業銀行·韓國外換銀行·銀行法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輸出業者의 團體와 國際金融機構가 出資하는 것으로 한다.

② 第1項의 出資는 設立登記前까지 韓國銀行 또는 韓

國外換銀行이 第1回 納入金을 拂入하고 政府는 設立登記의 完了後 韓國輸出入銀行 業務代行機關 韓國外換銀行에 延拂輸出支援資金으로 既貸下한 財政資金을 出資로 전환한다.

③ 이 銀行은 設立의 登記 또는 資本金의 增額에 따른 出資의 納入이 있은 후에 出資機關에게 出資證書를 發行할 수 있다.

第 5 條 (定款의 變更) 이 銀行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6 條 (定款에 정하는 이외의 事項) 이 銀行의 業務를 營爲함에 있어 定款이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事項은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받아 따로 정한다.

第 2 章 任員과 職員

第 7 條 (委員) 이 銀行의 任員으로서 銀行長 1人, 專務理事 1人, 理事 5人 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第 8 條 (任員의 職務) ① 銀行長은 이 銀行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 專務理事는 銀行長을 補佐하고 銀行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銀行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銀行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를 分掌한다.

④ 銀行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銀行長이 미리 지정한 順位에 의하여 理事가 그職務를 代行한다.

⑤ 監事は 銀行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 9 條 (任員의 任免) ① 銀行長은 財政經濟院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銀行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이 任免한다.

③ 監事は 財政經濟院長官이 任免한다.

第 10 條 (任員의 任期) ① 銀行長, 專務理事와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될 수 있다.

② 任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으로 한다.

第 11 條 (任員의 報酬) 銀行長, 專務理事, 理事 및 監事の 報酬와 手當은 承認된 豫算의 범위내에서 理事會가 정한다.

第 12 條 (任員의 兼職制限) 任員은 財政經濟院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職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第 13 條 (任員의 代表權 制限) ① 銀行長·專務理事 또는 理事의 利益과 이 銀行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당해 銀行長·專務理事 또는 理事는 이 銀行을 代表하지 못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이 銀行을 代表할 다른 理事가 없을 때에는 監事が 이를 代表한다.

第 14 條 (代理人 選任) 銀行長은 理事會의 議決를 거쳐 任員 또는 職員中에서 이 銀行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 15 條 (職員의 選任) 이 銀行의 職員은 銀行長이 任免한다.

第 3 章 運營委員會

第 16 條 (運營委員會) ① 銀行에 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韓國輸出入銀行長

2. 財政經濟院長官·外務部長官 및 通商産業部長官이 그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各 1人

3. 韓國銀行總裁 및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各 1人

4. 財政經濟院長官이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 團體의 代表者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③ 議長은 第2項 第2號의 委員의 所屬部處 이외의 部處에 관련되는 議案을 審議하는 때에는 당해 部處의 長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으로 하여금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開陳하게 할 수 있다.

④ 委員會는 이 銀行의 業務運營 및 管理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고 이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規程을 정할 수 있다.

第 17 條 (委員會의 召集) ① 委員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미리 指定하는 順位の 委員이 그職務를 代行한다.

③ 議長은 在籍委員 過半數 또는 監事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會議을 소집하여야 한다.

第 18 條 (議決方法)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19 條 (議決權行使 制限) 委員會의 議決에 있어 당해 議案에 利害關係가 있는 委員은 議決權을 행사하지 못한다.

第 20 條 (委員會의 權限에 관한 特例) ① 銀行長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卽刻的인 行爲가 필요한 경우에 委員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委員會의 權限內에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銀行長은 第1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第1項의 措置를 確認, 修正 또는 停止할 수 있다.

第 21 條 (會議參與) 專務理事, 理事, 監事는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 4 章 理 事 會

第 22 條 (理事會) ① 이 銀行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銀行長, 專務理事,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는 이 銀行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하고, 이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規程을 정할 수 있다.

第 23 條 (會議召集) 理事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 24 條 (議決方法)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25 條 (監事の 會議參與)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 5 章 業務와 그 執行

第 26 條 (業務의 範圍) ① 이 銀行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른 金融機關이 一般的인 條件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韓國輸出入銀行法 施行令이 정하는 資本財 기타 外貨獲得을 위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현저히 寄與하는 商品(이하 “製品”이라 한다)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 輸出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2. 外國에 대한 技術의 提供(해외에서 행하는 建設工事を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貸出

4.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 또는 適期輸出을 요하는 物資 및 資源中 韓國輸出入銀行法 施行令이 정하는 重要物資(이하 “重要物資”라 한다) 및 主要資源(이하 “主要資源”이라 한다)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輸入代金の 先給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5.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

備(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新設 또는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6. 韓國輸出入銀行法 施行令이 정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의 貸與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7.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株式의 取得을 포함한다)하는 外國法人에 대하여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직접 出資 또는 貸與하기 위한 資金의 當해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

7의 2.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행하는 事業에 필요한 長期資金의 當해 外國法人에 대한 貸出

8.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인하여 發生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債務을 履行함에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현재 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債務의 圓滑한 移行에 필요한 資金의 當해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貸出

9. 第1號·第2號·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 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받을 경우 그 債務의 保證

② 이 銀行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主要資源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 對外經濟協力增進에 寄與케 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前準備·調査 및 鑛業權 기타 權利의 取得에 필요한 資金 기타 海外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위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外國政府 및 外國에 대한 貸出, 또는 當該 事業에 필요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當해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

③ 이 銀行은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1項 및 第2項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를 행할 수 있다.

④ 이 銀行은 對外經濟協力基金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對外經濟協力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取扱할 수 있다.

⑤ 이 銀行은 南北協力基金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南北協力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取扱할 수 있다.

第 27 條 (資金의 借入과 限度) ① 이 銀行은 그 業務를 행함에 필요한 資金의 財源에 充當하기 위하여 政府,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外國政府, 外國金融機關 또는 國際金融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② 이 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을 借入하거나 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는 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의 10倍로 한다.

第 27 條의 2 (法人에 대한 出資 등) 이 銀行은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와 關聯된 調査·研究 등이나 法 第19條 및 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資金調達業務를 支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大韓民國 法人 또는 外國法人(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 出資(株式의 取得을 포함한다)하거나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

第 28 條 (業務計劃) ① 이 銀行은 每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해당 年度開始 1月前에 財政經濟院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法 第18條 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供給計劃과 法 第4條,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資金調達計劃을 區分하고 分期別 業務計劃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 29 條 (業務方法書) 이 銀行은 法 第18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에 관한 業務處理方法을 정한 業務方法書를 作成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 30 條 (貸出·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이 銀行이 法 第18條의 規定에 따라 행하는 貸出 또는 割引의 利率과 債務保證의 料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輸出을 促進하기 위한 對外競爭力維持나 海外投資 또는 海外資源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銀行의 事務取扱費·業務代行手数料·借入金利率 기타 諸費用과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할 수 있도록 策定하여야 한다.

第 31 條 (業務의 制限) ① 이 銀行이 法 第18條 第1項에 의한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支給 또는 履行이 確實하게 認定되어야 하며 償還 또는 履行期間이 6月 이상 10年 이내인 것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그 償還 또는 履行에 특히 長期間이 필요하다 고 銀行長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最長 20년까지 할 수 있다.

② 이 銀行이 法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資金의 貸出期間은 20年 이내로 한다.

③ 이 銀行이 法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貸出을 행하는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 金額(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제외한다)과 積立金 및 剩餘金의 合計額으로 한다.

第 32 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禁止) 이 銀行이 法 第18條에 정하는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他金融機關과 競爭할 수 없다.

第 6 章 輸出入金融債券

第 33 條 (輸出入金融債券) 이 銀行은 法 第20條 및 同 施行令 第18條 내지 第31條의 정하는 바에 따라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第 7 章 會 計

第 34 條 (事業年度) 이 銀行의 事業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35 條 (豫算) 이 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收入과 支出豫算을 編成하여 당해 事業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政經濟院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6 條 (追加更正豫算) 이 銀行은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을 變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할 수 있으며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7 條 (豫備費) ① 이 銀行은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위하여 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豫備費 使用에는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8 條 (退職慰勞金) 이 銀行은 退職하는 任員과 職員에게 退職慰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 39 條 (賞與金) 이 銀行은 任員과 職員에게 賞與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 40 條 (研究費와 海外派遣費) 이 銀行은 優秀한 職員 또는

기타 適格者에게 研究費 또는 海外派遣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41 條 (決算) ① 이 銀行은 每事業年度の 決算을 당해 事業年度 경과후 2月 이내에 完結하고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剩餘金處理計算書 등의 決算書와 事業計劃·業績分析報告書·財務諸表附屬書類 및 決算內容에 필요한 書類를 作成하여 財政經濟院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이 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本店·支店·出張所와 代理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第 42 條 (利益金の處理) 이 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한 후에 決算純利益金を 다음 各號의 順位에 의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1. 資本金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分の 20을 積立한다.
2. 政府 이외의 出資者에 대하여는 配當率이 100分の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우선적으로 利益金を 配當한다.
3. 積立金과 配當金を 제외한 殘餘利益金は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處理한다.

第 43 條 (損失金の補填) 이 銀行의 決算 純損失金은 事業年度마다 積立金으로써 補填하고 그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第 8 章 其 他

第 44 條 (公告의 方法) 이 銀行의 公告는 서울特別市에서 發

發刊되는 1 이상의 日刊新聞에 掲載한다.

第 45 條 (業務의 代行) 이 銀行은 그 營爲하는 業務의 일부를 他金融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 46 條 (餘裕金の運用) 이 銀行은 法 第18條의 業務를 수행하는데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業務上 餘裕金を 運用할 수 있다. 다만, 財政經濟院長官은 필요한 경우 그 運用方法을 制限할 수 있다.

第 47 條 (外國換業務) 이 銀行은 外國換管理法과 對外貿易法의 規定에 따라 外國換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

第 47 條의 2 (調査研究業務) 이 銀行은 第26條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調査 및 研究業務를 위하여 海外投資研究所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補 則

第 48 條 (職制) 이 銀行의 職制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銀行長이 정한다. 다만, 이 銀行이 設立當時 設立委員會의 議決을 받아 確定한 職制은 이 定款에 의해 確定한 것으로 본다.

第 49 條 (顧問·囑託) 이 銀行은 그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外國人을 顧問이나 囑託으로 雇傭할 수 있다.

第 50 條 (適用範圍) 第26條 第4項 및 第5項의 業務를 행함에 있어 關係法令에 별도로 規定되어 있는 事項에 대하여는 이 定款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이 銀行이 設立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銀行의 첫 事業年度는 이 銀行이 設立 되는 날로부터 1976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3條 (設立委員會의 記名捺印) 設立委員 一同은 韓國輸出 銀行法 附則 第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定款을 작성하고 다음에 記名捺印한다.

1976. 5.	
서울特別市 鍾路區 世宗路 82番地	
財務部長官	조 충 훈
서울特別市 鍾路區 貫鐵洞 10番地	
韓國輸出銀行 銀行長	송 인 상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3街 110番地	
韓國銀行 副總裁	하 영 기
서울特別市 鍾路區 世宗路 82番地	
財務部 財政次官補	고 병 우
서울特別市 鍾路區 世宗路 77番地	
商工部 商易次官補	박 필 수
서울特別市 鍾路區 世宗路 82番地	
財務部 理財局長	하 동 선
서울特別市 鍾路區 世宗路 82番地	
財務部 國際金融局長	정 인 용
서울特別市 鍾路區 貫鐵洞 10番地	
韓國外換銀行 專務理事	홍 완 모
서울特別市 鍾路區 貫鐵洞 10番地	
	이 태 호

附 則〈1〉

이 定款은 1977. 1. 1부터 施行한다.

附 則〈2〉

이 定款은 1977. 7. 1부터 施行한다.

附 則〈3〉

이 定款은 1977. 12. 29부터 施行한다.

附 則〈4〉

이 定款은 1986. 3. 7부터 施行한다.

附 則〈5〉

이 定款은 1987. 5. 2부터 施行한다.

附 則〈6〉

이 定款은 1987. 11. 17부터 施行한다.

附 則〈7〉

이 定款은 1989. 3. 13부터 施行한다.

附 則〈8〉

이 定款은 1989. 12. 16부터 施行한다.

附 則〈9〉

이 定款은 1991. 2. 13부터 施行한다.

附 則〈10〉

이 定款은 1992. 6. 30부터 施行한다.

附 則〈11〉

이 定款은 1992. 12. 4부터 施行한다.

附 則〈12〉

이 定款은 1994. 2. 28부터 施行한다.

附 則〈13〉

이 定款은 1995. 6. 14부터 施行한다.

4. 韓國輸出入銀行 業務方法書

制 定：1969. 10. 27	13次改正：1976. 8. 2	26次改正：1980. 1. 18	39次改正：1986. 7. 15
1次改正：1971. 7. 22	14次改正：1977. 1. 1	27次改正：1980. 7. 10	40次改正：1987. 1. 30
2次改正：1971. 7. 22	15次改正：1977. 2. 9	28次改正：1981. 2. 6	41次改正：1987. 5. 28
3次改正：1971. 10. 1	16次改正：1977. 3. 31	29次改正：1981. 5. 19	42次改正：1987. 11. 12
4次改正：1972. 3. 22	17次改正：1977. 5. 9	30次改正：1981. 11. 17	43次改正：1988. 3. 5
5次改正：1972. 5. 24	18次改正：1977. 5. 31	31次改正：1982. 2. 18	44次改正：1988. 9. 21
6次改正：1973. 1. 13	19次改正：1977. 7. 1	32次改正：1982. 12. 1	45次改正：1989. 4. 3
7次改正：1973. 5. 31	20次改正：1977. 9. 1	33次改正：1983. 3. 9	46次改正：1990. 7. 16
8次改正：1974. 4. 10	21次改正：1977. 12. 29	34次改正：1984. 3. 22	47次改正：1991. 6. 10
9次改正：1974. 5. 15	22次改正：1979. 1. 12	35次改正：1984. 11. 5	48次改正：1993. 9. 20
10次改正：1974. 12. 20	23次改正：1979. 5. 15	36次改正：1985. 6. 26	49次改正：1994. 4. 4
11次改正：1975. 3. 19	24次改正：1979. 8. 31	37次改正：1985. 8. 31	
12次改正：1975. 4. 17	25次改正：1979. 11. 10	38次改正：1985. 12. 30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業務方法書(이하 “方法書”라 한다)는 韓國輸出入銀行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輸出入銀行(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 이 法 第18條에 規定된 輸出入, 技術提供, 海外投資 및 對外經濟協力 등에 관한 金融을 供與함에 있어서의 業務處理의 基準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業務의 種類) 輸出入銀行은 延擄輸出入과 輸出入目的의 生産期間 및 建設工事의 工事期間이 長期인 對外去來 등 法 第18條에 規定된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1. 韓國輸出入銀行法 施行令(이하 “施行令”이라 한다) 第13條에 定하는 製品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 輸出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이하 “輸出資金貸出”이라 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韓國産業銀行, 韓國長期信用銀行 및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第2條의 規定

에 의한 綜合金融會社를 말한다. 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對한 割引(이하 “輸出資金貸出에 對한 割引”이라 한다)

2. 海外輸出市場의 確保, 開拓 또는 經濟交流의 促進 또는 外貨獲得에 寄與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海外에 對한 技術의 提供(海外建設工事を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이하 “技術提供資金貸出”이라 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發行된 어음의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이하 “技術提供資金貸出에 對한 割引”이라 한다)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에 對한 貸出(이하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貸出”이라 한다)

4. 施行令 第14條에 定하는 重要物資 및 施行令 第14條의 2에 定하는 主要資源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輸入代金の 先給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이하 "輸入資金貸出"이라 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發行된 어음의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이하 "輸入資金貸出에 대한 割引"이라 한다)

5. 海外輸出入市場의 開拓 및 確保, 施行令 第14條에 정하는 重要物資 및 施行令 第14條의 2에 정하는 主要資源의 確保 또는 外國과의 經濟交流를 促進하기 위하여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新設 또는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이하 "海外事業資金貸出"이라 한다)

6. 施行令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投資資金과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의 貸與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이하 "海外投資資金貸出"이라 한다)

7.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株式의 取得을 포함한다)하는 外國法人에 대하여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直接出資 또는 貸與하기 위한 資金의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이하 "外國政府 등에 대한 出資資金貸出"이라 한다)

7의 2.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行하는 事業에 필요한 長期資金의 當該 外國法人에 대한 貸出(이하 "外國法人에 대한 事業資金貸出"이라 한다)

8. 大韓民國 國民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인하여 發生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필요한 資金의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貸出(이하 "外國政府 등에 대한 大韓決濟資金貸出"이라 한다)

9. 第1號, 第2號, 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

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 國民이 그 資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받을 경우 그 債務의 保證(이하 "債務保證"이라 한다)

10. (削 除)

11. 施行令 第14條의 2에 정하는 主要資源의 開發 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前準備, 調査 및 鑛業權, 기타 權利의 取得에 필요한 資金 및 기타 海外 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이하 "主要資源開發資金貸出"이라 한다)

1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위하여 緊要하다고 인정되는 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 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대한 貸出 또는 當該 事業에 필요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이하 "對外經濟協力資金貸出"이라 한다)

13. 前 各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業務(이하 "附帶業務"라 한다)

第 3 條 (用語의 定義) ①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서 大韓民國 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保有하는 自然人和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②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서 技術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産業施設(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과 이를 위한 原料, 豫備品, 部分品 및 附屬品의 設置 또는 運營에 수반하는 技術 등의 用役 및 調査, 設計, 監理

2. 海外建設工事와 海外建設用役

3. 기타 前 各號에 準하는 것으로서 海外輸出入市場의 開拓 및 確保와 國際收支改善을 위하여 金融支援이 특히 緊要하다고 輸出入銀行長(이하 "銀行長"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輸出入銀行 理事會(이하 "理事會"라 한다)의 議決을 얻은 用役

③ 方法書에서 先手金이라 함은 當該去來의 契約書에

정하는 바에 따라 去來目的物の 引渡完了時까지 受領되는 金額을 말한다.

④ 方法書에서 一覽拂去來라 함은 去來目的物の 引渡完了時까지 당해 輸出契約金額中 瑕疵保證 등의 事由로 未回收되는 分을 除外한 全額이 入金되는 去來를 말한다.

⑤ 方法書에서 中小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 및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中小企業者를 말한다.

第 4 條 (業務의 制限) 輸出入銀行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할 수 있다.

1. 金融機關이 一般의인 條件으로는 取扱할 수 없는 경우
2. 第2條 第1號 내지 第9號의 業務는 당해 貸出金の 償還, 割引어음의 支給 또는 保證債務의 履行이 確實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貸出金の 償還, 割引어음의 支給 또는 保證債務의 履行期間이 6月 이상 10年 이내인 경우. 다만, 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된 것과 第2條 第11號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것은 6月 이상 20年 이내인 경우
4. 당해 去來가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과 國際收支 改善에 현저히 寄與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존 一般輸出去來秩序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金融支援이 특히 緊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 5 條 (融資方式) ① 第2條의 業務中 資金의 貸出은 輸出入銀行이 單獨으로 取扱(이하 “單獨融資”라 한다)하거나 1개 이상의 金融機關 또는 外國金融機關과 協調하여 融資(이하 “協調融資”라 한다)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協調融資에 관한 事項은 理事會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金融機關이 輸出者, 輸出品生産者 또는 技術提供者(이하 “供給者”라 한다)에게 輸出에 필요한 資金, 技術提供에 필요한 資金 또는 輸出에 필요한 原料, 材料 및 機材 등의 輸入代金の 先給에 필요한 資金을 貸出した 것이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要件을 具備한 경우에는 取扱金融機關에 대하여 어음을 割引한다.

第 6 條 (事前協議 및 豫備承認) ① 輸出入銀行은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의한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받고자 하는 者와 事前에 去來條件 등에 관하여 協議할 수 있다.

② 輸出入銀行은 貸出, 割引 또는 債務에 대한 保證을 하기 전에 豫備承認을 할 수 있다.

第 7 條 (諸手數料) 輸出入銀行은 第2條의 業務를 取扱함에 있어서 理事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約定手數料 등 諸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第 7 條의 2 (利子減免 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銀行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利子(延滯利子를 포함한다)를 減免할 수 있다.

1. 國營企業體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法人이나 團體에 대한 貸出金으로서 利子の 減免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2. 會社整理法의 規定에 따라 作成된 法院의 整理計劃에 同意한 때
3. 債權回收의 最終의인 方法으로서 對外, 對內에 모든 擔保權을 實行하여도 回收不能할 때
4. 企業正常化를 위한 主要方案으로서 貸出金에 대한 利子減免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5.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金으로서 延滯利子の 減免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第 7 條의 3 (外資材依存率 등) 輸出入銀行 支援對象品目에 대한 外資材依存率 또는 國產機資材率은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7 條의 4 (國別信用度評價) 輸出入銀行이 支援하는 去來의 相對國에 대한 國別信用度評價에 관하여는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2 章 輸出資金貸出

第 8 條 (融資對象) ① 輸出資金貸出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去來를 그 融資對象으로 한다. 다만, 海外輸出市場의 確保나 開拓, 國際收支 改善 또는 對外經濟協力의 增進에 크게 寄與한다고 인정되는 去來이거나, 國際去來 慣例 또는 當該去來의 성격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去來인 경우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例外取扱할 수 있다.

1. 一覽拂去來를 除外한 延拂去來에 있어서는 輸出契約金額에 대하여 基準先手金(船舶은 100분의 20, 船舶 이외의 品目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先手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先手金을 受領하는 것일 것.

2. 輸出契約 등에서 約定하는 延拂利率 및 延拂期間은 다음의 條件을 갖춘 것일 것.

가. 延拂利率은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延拂金融貸出利率 이상일 것.

나. 延拂期間은 10年 이내에서 公的輸出信用에 관한 國際協約內容, 당해 輸出目的物의 去來規模 및 耐用年數 등에 비추어 적정한 期間일 것.

3. 延拂代金에 대한 元利金은 船舶은 年 1回 이상, 船舶 이외의 品目은 年 2回 이상 定期分割償還되는 것일 것.

4. 다음의 要件을 갖춘 去來로서 당해 契約과 관련된

債權回收가 가능하다고 銀行長이 인정하는 것일 것.
가. 政府機關, 中央銀行 또는 信用이 양호한 外國金融機關이 당해 去來와 관련하여 發行 또는 작성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가 있거나,

나. 政府機關, 中央銀行 또는 信用이 양호한 外國金融機關이 發行 또는 確認한 取消不能信用狀이나 支給保證書가 있을 것.

5. 輸出價額이 外國換管理法상의 指定領收通貨 또는 現物로 決済되는 것일 것(이 경우, 輸出價額이 원貨로 표시되는 去來를 포함한다)

6. 對外債權額의 確定에 支障을 주는 條項이 없을 것.

7. 기타 銀行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要件을 갖춘 것일 것.

② 輸出入銀行의 融資承認을 얻은 原輸出契約書 또는 原輸出信用狀에 의하여 發行된 輸出物資 또는 輸出用 原資材 購買를 위한 輸出入銀行 內國信用狀(이하 "內國信用狀"이라 한다) 또는 國內物品供給契約書에 의한 去來도 輸出資金融資對象이 된다.

第 8 條의 2 (融資區分) 第2條 第1號에 規定된 輸出資金貸出은 輸出目的物의 引渡時期까지의 製作金融과 輸出目的物의 引渡完了後 延拂代金의 回收時期까지의 延拂金融으로 이를 區分한다.

第 9 條 (融資條件) ① 製作金融의 融資條件

1. 對象者

당해 輸出目的物을 輸出 또는 生産하거나 同 輸出目的物의 生産에 필요한 原資材를 供給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形式

이음貸出 또는 證書貸出로 한다.

3. 融資比率

가. 당해 輸出目的物의 輸出契約金額에서 이미 受領한 金額을 控除한 殘額의 90% 範圍內에서

生産 또는 輸出에 필요한 金額으로 한다.

나. 內國信用狀이나 國內物品供給契約書에 대한 融資는 原輸出契約書 또는 原輸出信用狀에 대한 輸出入銀行 融資承認額 範圍內에서 실제 所要되는 資金으로 한다.

4. 利率 및 利子徵收方法

가. 理事會에서 따로 정하는 利率로 한다.

나. 元金償還期日 또는 利子支給期日이 經過한 후에는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延滯貸出金 利率을 각각 適用한다.

다. 利子徵收方法은 理事會가 별도로 정한다.

5. 融資期間

가. 輸出目的物의 輸出者 또는 生産者에 대한 融資期間은 最初 貸出取扱日로부터 輸出目的物의 引渡完了日에 30日を 加算한 期間內에서 資金이 실제 所要되는 期間으로 한다. 다만, 當事者간에 引渡日 延長의 合意가 있는 경우, 輸出者에게 歸責되지 아니하는 事由로 引渡가 遲延되는 경우 또는 기타 당해 去來의 성격 및 國際去來 慣行에 비추어 融資期間 延長이 不可避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銀行長은 融資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나. 原資材 供給者에 대한 融資期間은 內國信用狀의 有効期日 이내 또는 國內物品供給契約書의 引渡期日에 10日を 加算한 期間 이내에서 資金이 실제 所要되는 期間으로 한다. 다만, 同 內國信用狀의 有効期日 또는 國內物品供給契約書의 引渡約定日이 延長되는 경우 銀行長은 融資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6. 償還方法

分割償還 또는 一時償還의 方法에 의한다. 다만, 延拂金融이 取扱될 때에는 그 融資金額中에서 먼저 償還토록 한다.

7. 擔 保

原則적으로 國內의 擔保를 取得하고 필요한 경우에

는 連帶保證人을 세우도록 한다. 다만, 借主의 信用이 양호하여 債權回收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信用貸出할 수 있다.

② 延拂金融의 融資條件

1. 對象者

당해 輸出目的物을 輸出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形式

證書貸出로 한다.

3. 融資比率

당해 輸出契約金額에서 基準先手金을 控除한 殘額 範圍內로 한다.

4. 利率 및 利子徵收方法

가. 理事會에서 따로 정하는 利率로 한다.

나. 利子は 당해 去來의 支給保證書, 信用狀 또는 關係契約書의 利子支給計劃에 따라 後取할 수 있으며 元金償還期日 또는 利子支給期日이 經過한 후에는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延滯貸出金利率을 각각 適用한다.

5. 融資期間

가. 延拂金融의 貸出取扱日로부터 당해 去來의 支給保證書, 信用狀 또는 關係契約書에 約定된 分割償還日에 30日を 加算한 期間內로 한다. 다만, 輸出契約當事者에게 歸責되지 아니하는 事由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銀行長은 融資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나. 가目の 規定에 의한 延拂金融의 融資期間은 製作金融의 融資期間을 通算하여 第4條 第3號에 規定된 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6. 償還方法

당해 去來의 支給保證書, 信用狀 또는 關係契約書의 分割償還計劃에 따라 定期分割償還토록 한다.

7. 擔 保

가. 당해 去來와 관련된 債權 또는 어음을 擔保로 取得하고, 第8條 第1項 第4號 나目에 따라 發行

된 信用狀이나 支給保證書가 있는 경우에는 그信用狀 또는 支給保證書 등을 추가로 擔保取得한다.
나. 가목의 規定에 의한 擔保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內의 擔保를 取得하거나, 連帶保證人을 세우도록 하거나, 또는 輸出保險에 付保토록 한다.

8. 輸出目的物の 引渡確認

당해 融資에 관련된 契約에 따라 償還을 保證한 銀行, 또는 輸入者가 政府機關인 경우에는 당해 政府機關이 輸出目的物の 引受를 確認하는 證憑을 受領한다. 다만, 輸出目的物을 船積함으로써 外貨債權額이 確定되는 契約에 있어서는 船積을 確認하는 證券 등을 徵求함으로써 輸出目的物の 引渡完了를 確認한다.

第 9 條의 2 (例外取扱) 第8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一覽拂去來 및 延拂期間이 2年 미만인 去來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例外取扱할 수 있다.

第 3 章 技術提供資金貸出

第 10 條 (融資對象) 第8條의 船舶 이외의 品目에 準한다.

第 10 條의 2 (融資區分) 第2條 第2號에 規定된 技術提供資金貸出은 技術提供 完了時까지의 技術提供前金融과 技術提供完了後 未回收代金の 回收時期까지의 技術提供後金融으로 이를 區分한다.

第 11 條 (融資條件) 融資條件은 다음과 같다.

1. 對象者

당해 技術을 提供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기타 融資條件

가. 技術提供前金融은 第9條 第1項에 準한다.

나. 技術提供後金融은 第9條 第2項에 準한다.

第 4 章 輸入資金貸出

第 12 條 (融資對象) 輸入資金의 貸出은 施行令 第14條에 정하는 重要物資 및 施行令 第14條의 2에 정하는 主要資源의 輸入에 필요한 資金 또는 輸入代金の 先給에 필요한 資金을 支援하는 경우에 限한다.

第 13 條 (融資條件) 融資條件은 다음과 같다.

1. 對象者

당해 重要物資 또는 主要資源을 輸入하는 國內輸入者로 한다. 다만, 第24條에 의하여 당해 主要資源의 開發에 필요한 資金을 融資받은 者는 除外한다.

2. 融資形式

어음貸出 또는 證書貸出로 한다.

3. 融資比率

輸入 및 輸入先給 金額의 100分の 80 範圍內로 한다. 다만, 中小企業 및 研究機關에 대하여는 100分の 90 範圍內로 한다.

4. 利率 및 利子徵收方法

가. 理事會에서 따로 정하는 利率로 한다.

나. 利子徵收方法은 理事會가 별도로 정한다.

5. 償還方法

年 1回 이상 定期分割償還토록 한다. 다만, 融資期間이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年 이내의 据置期間을 둘 수 있다.

6. 融資期間

融資期間은 2年 이내로 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銀行長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施設材를 輸入하는 경우 및 主要資源의 開發에 필요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輸入者가 海外輸出者에게 事前에 貸與하고 그 償還의 方法으로 開發된

主要資源을 輸入하는 경우에는 최초 貸出取扱日로부터 10年 이내에서 당해 事業計劃에 따라 정할 수 있다.

7. 기타 融資條件

第9條의 規定에 準한다.

第 5 章 輸出, 技術提供 또는 輸入資金貸出에 대한 割引

第 14 條 (割引對象) 輸出資金貸出, 技術提供資金貸出, 輸入資金貸出에 대한 割引은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要件을 具備하고 있는 경우, 다음에 列擧하는 어음 등으로서 貸出을 取扱한 金融機關이 背書한 것에 대하여 이를 取扱한다. 다만, 協調融資의 경우에 있어 金融機關이 分擔한 金額에 대하여는 이를 割引하지 아니한다.

1. 供給者가 貸出을 取扱한 金融機關을 受取人으로서 하여 發行한 約束어음
2. 保證人이 發行하고 供給者를 支給人 또는 引受人, 貸出을 取扱한 金融機關을 受領人으로서 하는 換어음

第 15 條 (割引條件) 割引條件은 다음과 같다.

1. 對象者輸出, 技術提供 또는 輸入 및 輸入先給에 所要되는 資金을 貸出した 金融機關으로 한다.
2. 割引比率
輸出, 技術提供 또는 輸入資金貸出에 대한 割引金額은 第9條, 第11條 및 第13條에서 規定한 融資比率 範圍內에서 金融機關이 실제 貸出した 金額으로 한다.
3. 割引率 및 割引料 徵收方法
輸出入銀行 貸出利率에서 年 100分の 1을 減한 率로 한다. 割引料의 徵收는 第9條 第1項 第4號 및 第9條 第2項 第4號에 準한다.

4. 償還方法

融資取扱시에 받는 당해 貸出에 관련된 어음 등을 그 期日에 割引받은 金融機關에 提示하여 融資金을 回收한다.

5. 기타 割引條件

第9條, 第11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각각 準한다.

第 6 章 外國政府, 外國金融機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

第 16 條 (外國政府 등에 대한 貸出) 第2條 第3號, 第7號, 第7號의 2 및 第8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政府, 外國金融機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에 관한 事項은 委員會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17 條 (融資條件) (1979. 5. 15 削除)

第 7 章 海外事業資金貸出

第 18 條 (融資對象) 海外事業資金의 貸出은 그 事業의 設備의 新設 또는 擴充에 所要되는 資材의 대부분이 大韓民國에서 生産되는 物品으로 充當되는 경우를 原則으로 한다.

第 19 條 (融資條件) 融資條件은 다음과 같다.

1. 對象者
外國에서 事業을 營爲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形式
어음貸出 또는 證書貸出로 한다.
3. 融資比率
당해 事業에 필요한 設備의 新設, 擴充 또는 運營에 所要되는 資金總額의 100分の 90 範圍內로 한다.
4. 利率 및 利子徵收方法

가. 理事會에서 따로 정하는 利率로 한다.

나. 利子 是 당해 事業의 關係契約書 또는 事業計劃書의 利子支給計劃에 따라 後取할 수 있으며 元金償還期日 또는 利子支給期日이 經過한 후에는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延滯貸出金利率을 각각 適用한다.

5. 融資期間

融資期間은 최초 貸出取扱日로부터 10年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銀行長은 第4條 第3號에 의한 期間 이내에서 이를 延長할 수 있다.

6. 償還方法

당해 事業에 의한 分割償還計劃에 따라 年 1回 이상 定期分割償還토록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3年 이내의 據置期間을 둘 수 있다.

7. 擔 保

원칙적으로 國內의 擔保를 取得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連帶保證人을 세우도록 한다. 다만, 借主의 信用狀態 및 당해 事業의 事業性 등으로 보아 債權回收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信用貸出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保險에 付保하게 할 수 있다.

第 8 章 海外投資資金貸出

第 20 條 (融資對象) 海外投資資金貸出은 다음의 경우에 限한다.

1. 施行令 第15條에 規定된 海外投資資金.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資金 支援을 할 수 없다.

가. 企業을 營爲하지 아니하는 個人的 海外投資

나. 단순히 配當金, 時勢差益, 利子 등만을 目的으로하여 外國의 證券이나 債權 등을 取得하는 海外間接投資

다. 金融業, 保險業 및 娛樂서비스業을 目的으로

하는 海外投資. 다만, 主務部長官의 推薦이 있는 경우는 例外로 한다.

2.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의 貸與에 필요한 資金. 다만, 당해 設備의 대부분이 大韓民國에서 生産되는 資材로써 充當되는 경우를 原則으로 한다.

第 21 條 (融資條件) 融資條件은 다음과 같다.

1. 對象者

海外投資를 행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比率

所要資金總額의 100分の 90 範圍內로 한다.

3. 기타 融資條件

第19條에 準한다.

第 9 章 債務保證

第 22 條 (保證) 債務保證은 金融機關이 取扱하는 貸出이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要件을 갖춘 경우에 限하여 取扱한다.

第 23 條 (保證條件) 保證條件과 方法은 다음과 같다.

1. 依頼人

第2條 第1號, 第2號, 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을 받는 國內業者로 한다.

2. 受患者

貸出을 取扱하는 金融機關으로 한다.

3. 保證形式

證書에 의한 保證形式에 의한다.

4. 保證金額 및 保證期間

가. 保證金額은 依頼人과 受患者간에 締結된 契約上の 保證限度 範圍內로 한다.

나. 保證期間은 당해 去來의 融資期間에 30日を
加算한 期間 이내로 한다.

5. 保證料率 및 代支給料率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料率로 한다.

6. 擔保

第9條 第1項 第7號에 準한다.

7. 代支給

가. 代支給 發生時는 당해 保證通貨表示 代支給
金으로 처리한다.

나. 代支給金은 지체없이 依頼人으로부터 回收
措置하되, 즉시 回收할 수 없을 때에는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整理한다.

第 10 章 主要資源開發資金貸出

第 24 條 (融資對象) 主要資源開發資金貸出은 施行令 第14
條의 2의 規定에 의한 主要資源의 外國에서의 開發事
業에 필요한 資金을 支援하는 경우로서 主務部長官의
資源需給에 관한 意見을 添附한 推薦書 또는 許可書가
있는 경우에 限한다.

第 25 條 (融資條件) 融資條件은 다음과 같다.

1. 對象者

主要資源開發을 위한 海外投資 또는 海外事業을 營
爲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形式

어음貸出 또는 證書貸出로 한다.

3. 融資比率

所要資金 總額의 100分の 70 範圍內로 한다.

4. 利率 및 利子徵收方法

가. 理事會에서 따로 정하는 利率로 한다.

나. 利子は 당해 事業計劃의 利子支給計劃에 따라
後取할 수 있으며 元金償還期日 또는 利子支給期

日이 經過한 후에는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延滯貸
出金利率을 각각 適用한다.

5. 融資期間

最初 貸出取扱日로부터 20年 이내로 한다.

6. 償還方法

당해 事業에 의한 償還計劃에 따라 年 1回 이상 分
割償還토록 한다. 다만, 3年 이내의 据置期間을 들
수 있다.

7. 擔保

國內擔保를 取得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連帶保證人
을 세우도록 한다.

第 25 條의 2 (例外取扱)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가
특별히 融資條件을 明示하여 決定할 경우에는 銀行長
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例外取扱할 수 있다.

第 11 章 對外經濟協力資金貸出

第 26 條 (融資對象)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府間의 協定,
기타 合議가 있는 경우에 限한다.

第 27 條 (融資條件)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府間의 協定,
기타 合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第 12 章 業務의 代行

第 28 條 (代行) ① 輸出入銀行은 金融機關에 대하여 다음
의 業務의 一部를 代行시킬 수 있다.

1. 資金의 貸出 또는 債務의 保證申請의 接受事務
2.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에
관한 審査
3. 擔保物의 取得, 管理 및 處理

4. 貸出에 관련된 어음 또는 保證에 관련된 債務의 履行에 의하여 取得하는 債權의 管理와 回收에 관한 業務

5. 貸出 또는 業務遂行에 따르는 信用調査 및 附帶 業務

② 輸出入銀行은 위의 各號에 掲記된 業務의 代行을 위하여는 金融機關과 業務代行契約을 締結한다.

③ 金融機關이 위의 業務를 代行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手數料를 支給할 수 있다.

第 13 章 附帶業務

第 29 條 (附帶業務) 輸出入銀行은 附帶業務로서 理事會가 별도로 정하는 規定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할 수 있다.

1. 先手金 還給保證
2. 契約履行保證
3. 對外債務保證
4. 外國換業務
5. 調査研究業務

附 則

이 業務方法書는 法 第29條에 의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1 >

이 業務方法書의 第9條 第2項 “라”, 第11條 “라” 및 第15條 “다”는 法 第29條에 의한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2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

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3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1. 10. 1부터 施行한다.

附 則 < 4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5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6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7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8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 第1項 “라”를 適用함에 있어, 本 施行日 이전에 이미 取扱한 融資殘額에 대하여는 本 施行日 現在 先取한 利子が 滿了되는 次期利子支給日로부터 適用한다.

附 則 < 9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10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11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12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5. 4. 17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 第4號를 適用함에 있어, 本 施行日 이전에 이미 取扱한 融資殘額에 대하여는 本 施行日 現在 先取한 利子가 滿了되는 次期利子 支給日로부터 適用한다.

附 則 〈 13 〉

- ①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6. 8. 2부터 施行한다.
- ② 이 施行日 이전에 貸出承認된 分에 대하여는 同貸出金の 償還完了時까지 從前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貸出承認된 分으로 현재 輸出目的物의 引渡가 完了되지 아니하였거나 對外債權이 確定되지 아니한 分에 대하여는 이 施行日 現在 先取한 利子가 滿了되는 利子支給日로부터 이 業務方法書 別表 “가”의 (1)의 利子率을 適用한다.

附 則 〈 14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7. 1. 1부터 施行한다.

附 則 〈 15 〉

-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 가. 輸出入銀行의 融資承認이 1977年과 1978年中 이루어지는 去來에 대하여는 別表(利率表) “가”의 (1) 및 “나”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貸出金の 償還完了時까지 利率을 年 100分の 7로 한다.
 - 나. 前 “가”의 適用을 받는 去來에 대하여는 이 業務方法書 第8條 第2號의 本文 規定에 불구하고 殘額에 대한 利率을 年 100分の 7로 한다.
 - 다. 이 施行日 이전에 이미 融資承認된 去來에 대하여는

別表(利率表) “가”의 (1) 및 “나”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施行日 現在 先取한 利子 期限이 滿了되는 次期利子 支給日로부터 당해 貸出金の 償還이 完了될 때까지 利率을 年 100分の 7로 한다.

附 則 〈 16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7. 3. 31부터 施行한다.

附 則 〈 17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7. 5. 2부터 施行한다.

附 則 〈 18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19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20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21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22 〉

-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9. 1. 1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이 施行日 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다음 各號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當初 承認內容에 따른다.
 - 가. 施行日 이후 該當分의 約定手數料 徵收는 免除한다.
 - 나. 融資限度에 算入된 先手金이나 一覽拂去來 代錢의

入金額は當初承認時の融資比率에 따라 融資金回収에 充當할 수 있다.

- ③(同前) 輸出入銀行의 融資承認이 1979. 1. 1 이후에 이루어지는 去來에 대하여는 暫定的으로는 別表(輸出入銀行貸出利率) "가"의 (1) 및 "나"의 規定에 불구하고 貸出金の償還完了時까지 利率을 年 100分の 7로 한다. 다만, 銀行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委員會 또는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 附議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年 100分の 7 이상의 利率을 適用한다.

附 則 < 23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24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25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26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當初承認內容에 따른다.
- ③(同前) 이미 豫備承認된 去來로서 이 施行日前에 契約이 締結되고 輸出入銀行이 同 事業을 確認한 것에 대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④(同前) 1979. 1. 1 이후에 適用하던 暫定利率은 前 3項을 除外하고는 이 施行日前까지 融資承認된 去來에 限하여 適用한다.

附 則 < 27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80. 6. 16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후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 < 28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종전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이미 融資承認 또는 豫備承認된 去來로서 協調融資가 곤란하다고 銀行長이 인정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얻은 경우에는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附 則 < 29 >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30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輸出入銀行에 豫備承認申請이 接受된 去來로서 委員會가 별도로 承認한 去來에 대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 < 31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當初承認內容에 따른다.
-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第9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從前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 〈 32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 〈 33 〉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34 〉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35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資金貸出로 이미 豫備承認된 去來의 경우에는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輸出入銀行에 豫備承認申請이 接受된 去來로서 委員會가 別途承認한 去來에 대하여는 從前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 〈 36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 이전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불구하고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따른다.

附 則 〈 37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

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불구하고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따른다.

附 則 〈 38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불구하고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따른다.

附 則 〈 39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1986. 7. 15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불구하고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따른다.

附 則 〈 40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1987. 1. 30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불구하고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따른다.

附 則 〈 41 〉

-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1987. 5. 28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와 輸出契約이 締結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따른다.

附 則 〈 42 〉

-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1987. 11. 12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불구하고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③ (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따른다. 다만, 第9條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附 則 〈 43 〉

-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1988. 3. 5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불구하고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③ (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따른다.

附 則 〈 44 〉

이 業務方法書는 1988. 9. 21부터 施行한다.

附 則 〈 45 〉

이 業務方法書는 1989. 4. 3부터 施行한다.

附 則 〈 46 〉

이 業務方法書는 1990. 7. 16부터 施行한다.

附 則 〈 47 〉

-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1991. 6. 10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 가. 이 施行日前에 事前協議 마쳤거나, 契約이 締結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나.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 다.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당해 承認內容에 따른다.
- ③ (다른 內規의 改正) 이 方法書 施行과 동시에 輸出入銀行의 다른 內規上의 "引渡前金融"과 "引渡後金融"은 "製作金

融"과 "延拂金融"으로 改正한다.

附 則 〈 48 〉

이 業務方法書는 1993. 9. 20부터 施行한다.

附 則 〈 49 〉

이 業務方法書는 1994. 4. 4부터 施行한다.

5. 對外經濟協力基金法

制定：1986.12.26 法律 第3863號

改正：1987.12. 4 法律 第3982號(財政投融资特別會計法)

改正：1993.12.31 法律 第4675號(國債法)

第 1 條 (目的) 이 법은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의 産業發展 및 經濟安定을 지원하고 大韓民國과 이들 國家와의 經濟交流을 增進하는 등의 對外經濟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對外經濟協力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開發國”이라 함은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로서 그 나라의 國民所得水準·産業構造등 經濟發展段階를 고려하여 基金運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財務部長官이 정하는 國家를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 3 條 (基金의 設置) 政府는 對外經濟協력에 필요한 資金을 確保·供給하기 위하여 對外經濟協力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 4 條 (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出捐金
2. 政府投資機關 또는 經濟團體의 出捐金
3.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
4.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5.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6. 基金의 運用收益金

第 5 條 (長期借入) 財務部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投融资特別

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 등이나 外國政府, 外國金融機關, 國際金融機構 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

第 6 條 (1993.12.31 削除)

第 7 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로 運用한다.

1. 開發國의 産業發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大韓民國과 이들 國家와의 經濟交流을 增進하는데 緊要하다고 인정되는 事業(이하 “協力事業”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資金의 貸出(어음의 割引, 債務의 保證 또는 有價證券의 引受를 포함하며, 이하 “融資 등”이라 한다) 또는 出資
2. 協力事業의 準備를 위한 調査 또는 協力事業의 試驗的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資金의 融資 등
3. 開發國의 經濟安定을 위하여 특히 緊要하다고 인정되는 物資를 당해 國家가 大韓民國으로부터 輸入하는데 필요한 資金의 融資 등
4. 기타 開發國의 産業發展에 이바지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등
5. 借入金 및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償還
6.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을 위한 經費의 支出

第 8 條 (基金의 支援要件) 第7條 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基金으로부터의 지원은 韓國輸出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一般的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公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限하여 행한다.

第 9 條 (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財務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② 財務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韓國輸出銀行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 10 條 (基金運用委員會) ①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에 基金運用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財務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1 條 (一時借入) ① 財務部長官은 基金의 運用상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 12 條 (餘裕資金의 運用) 財務部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1. 國債·公債 기타 有價證券의 買入
2. 財政投融资特別會計에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預置 또는 短期貸與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第 13 條 (基金의 會計機關) ① 財務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中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②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韓國輸出銀行에게 委託한 경우에는 財務部長官은 韓國輸出銀行의 理事中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中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③ 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 관한 法律中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 14 條 (利益 및 缺損의 處理) ① 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 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 15 條 (監督 및 命令) 財務部長官은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公布後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87.12. 4〉

제 1 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제 2 條 내지 제 4 條 省略

附 則 〈1993.12.31〉

제 1 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제 2 條 내지 제 8 條 省略

6. 南北協力基金法

制定：1990. 8. 1 法律 第4240號

改正：1990.12.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

改正：1993.12.31 法律 第4675號(國債法)

第 1 條 (目的) 이 法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交流와 協力を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 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第2條 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 3 條 (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確保·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 4 條 (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 외의 者の 出捐金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3.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4. 基金의 運用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 5 條 (長期借入) ① 統一院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投融资 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 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

② 統一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 6 條 (1993.12.31 削除)

第 7 條 (基金의 運用·管理)

- ① 基金은 統一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
- ② 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③ 統一院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中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重要事項에 대하여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④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 8 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支援
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支援
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支援 또는 融資
4. 南北交流·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 등 代金 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力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を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支援
 6. 借入金 및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 償還
 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第 9 條 (基金의 會計機關) ① 統一院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中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②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統一院長官은 委託받은 銀行의 理事中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中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③ 會計關係職員등의 責任에 關한法律中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 10 條 (一時借入) ① 統一院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 11 條 (報告 및 還收) ① 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報告하게 할 수 있다.
 ② 統一院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 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 滯納處分の 예에 의한다.

第 12 條 (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方法

第 13 條 (利益 및 缺損의 處理) ① 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 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 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 14 條 (監督 및 命令) 統一院長官은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公布後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0.12.27〉

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 2 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 〈1993.12.31〉

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8 條 省略

7. 輸出保險法

制定：1968. 12. 31 法律 第2063號
改正：1970. 1. 1 法律 第2167號
改正：1972. 12. 30 法律 第2422號
改正：1976. 12. 31 法律 第2952號
改正：1978. 12. 5 法律 第3107號
改正：1981. 3. 27 法律 第3399號
改正：1993. 3. 6 法律 第4541號(政府組織法)
改正：1993. 8. 5 法律 第4573號(海外建設促進法)
改正：1994. 8. 3 法律 第4776號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법은 輸出 기타 對外去來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保險으로는 救濟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財産상의 損失을 補償하는 輸出保險制度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1994. 8. 3 削除)

第 3 條 (輸出保險의 種類) 輸出保險의 種類는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輸出保險公社(이하 "公社"라 한다)가 商工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第 3 條의 2 (共同保險 및 再保險) 公社는 그 締結한 輸出保險契約에 의한 責任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保險 또는 再保險에 붙일 수 있다.

第 4 條 (保險料率) 輸出保險의 保險料率은 輸出保險事業의 收入과 支出의 均衡이 維持되도록 公社가 商工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第 5 條 (契約의 解止 등) 公社는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

는 被保險者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保險契約에 의한 保險金을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支給한 保險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하거나 그 保險契約를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第 5 條의 2 (保險代位 등) ① 公社가 保險金을 支給한 경우에는 그 保險의 目的 또는 第3者에 대한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得할 수 있다.

② 保險金을 지급받은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는 그 輸出保險契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當해 債權을 回收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 6 條 (保險關係의 成立의 制限) ① 公社는 輸出 기타 對外去來에 있어서 危險이 增大되었거나 기타 輸出保險事業의 運營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締結된 輸出保險豫定保險契約에 의한 輸出保險關係를 將來에 向하여 成立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保險契約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7 條 (保險事故의 逆選擇의 防止) 公社는 輸出保險의 保險

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 의한 保險事故의 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保險에 붙일 수 있는 期間의 制限
2. 保險責任의 始期의 制限
3. (1994. 8. 3 削除)

第 7 條의 2 (包括保險의 실시) 公社は 輸出保險의 효율적인 危險分散 또는 保險料의 平準化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商工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商品別·業體別·組合別·金融機關別 또는 輸入國別 包括保險을 실시할 수 있다.

第 8 條 (契約締結限度) ① 商工資源部長官은 毎年 輸出保險契約締結(輸出信用保險契約의 締結을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의 限度를 정한다. 다만, 代金決済期間이 2年을 초과하는 中長期延拂輸出去來를 대상으로 하는 輸出保險에 대하여는 輸出保險契約締結의 限度의 범위안에서 그 限度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商工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保險契約締結의 限度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 8 條의 2 (1994. 8. 3 削除)

第 8 條의 3 (中小企業의 優待) 公社は 中小企業의 輸出促進을 위하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保險料率의 적용, 保險金支給時期 등에 있어서 이를 優待할 수 있다.

1.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
2.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
3. 第1號의 中小企業者의 輸出을 代行하는 者中 大

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 2 章 내지 第 6 章의 4

(第 9 條 내지 第 29 條의15)

(1994. 8. 3 削除)

第 7 章 輸出保險基金

第 30 條 (基金의 設置) 輸出保險事業의 目的을 效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輸出保險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 31 條 (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 이외의 者의 出捐金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 第1號의 出捐金을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 32 條 (基金의 管理) 基金은 公社가 이를 管理한다.

第 33 條 (基金의 運用) 基金은 다음各號의 方法에 의하여 運用한다.

1. 金融機關에의 預入
2. 國債·地方債 또는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有價證券의 買入
3. 기타 商工資源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方法

第 34 條 (基金의 借入) ① 公社は 保險金의 支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商工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基金의 負擔으로 借入 또는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內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 35 條 (基金의 收入과 支出) ① 基金은 第31條 第1項의 財源과 保險料·回收金·利子 기타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을 그 收入으로 한다.

② 基金은 保險金·利子 및 公社의 運營經費 기타 基金의 運用에 필요한 經費를 그 支出로 한다.

第 36 條 (收益金과 損失金의 處理) ① 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 基金이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第 8 章 韓國輸出保險公社

第 37 條 (設立) 이 法에 의한 輸出保險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韓國輸出保險公社를 設立한다.

第 38 條 (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第 39 條 (定款)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 稱
3. 事務所에 관한 事項
4. 運營委員會 및 理事會에 관한 事項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事項
7. 會計에 관한 事項
8.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9.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10.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② 公社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商工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40 條 (登記) ① 公社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으며, 그 登記申請書에는 公社의 定款과 商工資源部長官의 公社設立認可書 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 稱
3. 主된 事務所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公告의 方法

③ 公社의 設立登記와 기타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41 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輸出保險公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 42 條 (民法의 準用)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43 條 (運營委員會) ① 公社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는 輸出保險의 종류, 保險料率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保險의 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審議·議決한다.

③ 運營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44 條 (任員) ① 公社에 社長 및 副社長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理事와 監事 1인을 둔다.

② 社長은 商工資源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고, 副社長과 理事는 社長의 提請에 의하여 商

工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③ 監事는 商工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第 45 條 (任員의 任期) 社長·副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 46 條 (任員의 職務)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業務를 統理한다.

② 副社長은 社長을 補佐하며, 社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業務를 分掌하며, 社長 및 副社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監事는 公社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 47 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公社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 48 條 (任員의 身分保障) 公社의 任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任期中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解任되지 않는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
2.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公社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3. 心身障碼로 인하여 職務 遂行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不可能하게 된 때
4. 第47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第 49 條 (理事會) ① 公社의 重要事項을 決議하기 위하여 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社長·副社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理事會는 社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 50 條 (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長이 任免한다.

第 51 條 (任員 및 職員의 兼職制限) 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 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任員은 商工資源部長官의, 職員은 社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第 52 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公務員으로 본다.

第 53 條 (業務) ① 公社는 輸出保險事業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輸出保險의 原保險·共同保險 및 再保險
2. 輸出信用保證
3. 基金의 管理 및 運用
4. 信用調査 및 信用情報의 管理
5. 第1號 내지 第4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6. 기타 政府가 委託하는 業務

②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輸出信用保證의 運營에 관하여는 輸出保險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53 條의 2 (業務方法書) 公社는 다음 各號에 관한 業務處理方法을 정한 業務方法書를 商工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작성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輸出保險의 種類別 保險契約의 締結에 관한 사항
2. 保險金의 支給 및 事後管理에 관한 사항

3. 기타 公社의 業務遂行에 관한 重要사항

第 53 條의 3 (約款의 承認) 公社가 輸出保險約款을 制定하거나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商工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54 條 (會計年度) 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 55 條 (豫算과 決算) 公社의 豫算과 決算은 商工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56 條 (報告 및 調査) ①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는 公社가 輸出契約 기타 輸出保險關係에 관련되는 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報告 또는 資料의 제출을 要求하거나, 關係帳簿·書類 또는 輸出貨物을 調査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행하는 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 57 條 (異議申請) ① 公社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處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 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3月 이내에 公社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을 때에는 1月 이내에 이를 審議하여 그 결과를 당해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異議申請人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審議결과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月 이내에 商工資源部長官에게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 58 條 (關係機關 등에 대한 信用調査 등의 依賴)

① 公社는 外國의 輸入制限·換制限 또는 國外商社의 信用·輸出保險事業의 遂行에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外國換銀行 또는 大韓貿易振興公社의 國外支店 기타 關係機關(이하 "關係機關"이라 한다)에 調査를 依賴할 수 있다.

② 關係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賴를 받은 때에는 調査를 행한 후 지체없이 그 事項을 公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公社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調査를 外務部長官 또는 在外公館에 要請할 수 있다.

第 59 條 (監督) 商工資源部長官은 公社의 業務를 監督한다.

第 60 條 (報告 및 檢査) ① 商工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에 대하여 公社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公社의 業務 및 財産狀況과 帳簿·書類·施設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商工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違法 또는 부당한 事項을 발견한 경우에는 公社에 대하여 그 是正·注意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 9 章 補 則

第 61 條 (過怠料) ①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6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때

2. 第6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때

3. 第6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② 第41條의 規定에 違反한 자는 50萬원 이하의 過怠

料에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商工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不服이 있는 자는 그 處分の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商工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商工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 62 條 (施行令) 이 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법은 196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70. 1. 1〉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72.12.30〉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76.12.31〉

① (施行日) 이 법은 197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법 施行當時 종전의 第31條 第1項 및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再保險公社가 代行하고 있는 輸出保險事業 및 輸出保險基金會計事務는 이 법 施行日에 韓國輸出入銀行이 이를 承繼한다.

附 則 〈1978.12. 5〉

① (施行日) 이 법은 197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輸出入銀行이 代行하는 輸出保險業務는 이 법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하는 것으로 본다.

附 則 〈1981. 3.27〉

第 1 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 第2項의 規定은 1982年 1月 1일부터 施行하고, 公社에 관한 規定은 따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輸出保險業務의 代行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법 施行當時 종전의 第31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業務 및 基金會計의 代行은 이 법에 의한 公社가 設立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 公社는 輸出保險事業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를 包括承繼한다.

第 3 條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基金은 이 법에 의하여 政府가 出捐한 것으로 본다.

第 4 條 (公社의 設立準備) ① 商工部長官은 5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嘱하여 設立委員會를 구성하고, 公社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② 設立委員會는 公社의 定款을 作成하여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후 公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 設立委員會는 公社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公社의 社長에게 業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設立委員은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職된 것으로 본다.

附 則 〈1993. 3. 6〉

第 1 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 2 條 내지 第 5 條 省略

附 則〈1993. 8. 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4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 則〈1994. 8. 3〉

①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3條의 2의 改正規定에 의한 業務方法書의 承認 기
타 이 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準備行爲는 이 법 施行前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다른 法律의 改正) 中小企業의 經營安定및 構造調整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 第3號중 “輸出保險法 第29條의 3 規定에 의한”을
“輸出保險法에 의한”으로 한다.

③ (契約締結限度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當時 종전의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년도 輸出保險種類別
契約締結限度金額의 總額은 第8條의 改正規定에 의해 정하
여진 輸出保險契約締結의 限度金額으로 본다.

④ (既存契約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前에 체결한 契約
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자료

1. 연표
2. 조직도
3. 조직 변화 추이
4. 역대 임원
5. 역대 운영위원
6. 역대 법률·세무·경영고문
및 자문위원
7. 역대 부(실·지점·사무소)장
8. 주요 여신조건의 변경 추이

1. 연표

輸 銀

국 내

국 외

1976

4월

- 재무부,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을 결정(8)
-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위원회 구성 및 설립사무국 발족(10)
- 제1차 설립위원회 개최(12)

- 재무부,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결정(8)
- 정부, 가봉과의 경제협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가봉 주식회사(SOGACCO) 설립(30)

- 일본수출입은행, 현행 플랜트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을 은행차관을 포함한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으로 전환(9)
- ADB, 제9차 연차총회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22)

5월

- 초대 송인상 은행장 임명(12)
- 설립위원 일부 변경(14)

- 한국은행, 수출금융의 과다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출금융조건을 강화(6)
- 정부, 중화학공업 제품 장기수출계획 확정(18)
- 재무부,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수입 담보금 적립률을 5%로 인상(18)

- UNCTAD,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제4차 총회 개막(5)
- 세계은행, 대출금리를 8.5%에서 8.85%로 인상(10)

6월

- 초대 임원 임명(1)
 - 감사 박정재, 이사 이태호, 원유민
- 설립 등기(21)
- 정부대하금 53억 5,500만원을 출자로 전환(21)
- 설립위원회, 설립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23)

- 재무부, 117개 섬유류 제품과 22개 화학약품을 관세 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1)
- 278억원의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독립 발족(10)
- 재무부, 외국환관리규정 전면 개편(21)

- OECD, 연례 각료회담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하여 경제성장률을 낮추기로 합의(21)
- G7 경제정상회담, 지속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할 것에 합의하는 '산후안 선언'을 발표(28)

7월

- 한국수출입은행 정식 발족(1)
- 정관 및 직제분과규정 제정(1)

- 재무부, 2년제 재형저축제를 신설(12)
- 경제기획원,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의 도입을 대폭 규제하기로 결정(28)
- 재무부, 외국환관리규정 일부 개정(31)

- 캐나다·EC, 경제협력협정 체결(6)
- EC 개발원조위원회, 대개도국 STABEX제도에 의한 최초의 국별원조할당액 발표(8)
- IDB, 영국·서독·일본 등 9개국의 신규 가입을 승인(9)

8월

- 제13차 업무방법서 개정(2)
- 직장민방위대 발대(19)

- 재무부, 금융기관 預貸금리 인상에 따라 신탁예금금리 인상(2)
- 한국은행, 외화대출금리를 최고금리 범위내에서 각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치(13)

- 호주·인도, 양국간 교역증진을 위한 무역협정 체결(2)
- 영국, 스털링지역의 스털링무역신용에 관한 외환통제 강화조치 발표(23)

輸 銀

국 내

국 외

9월

• 프랑스 경제사절단 내방(20)

• 상공부,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요건 강화(21)

• 멕시코, 폐소화를 변동환율제로 이행(1)

• 상공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의 전
자제품 육성계획안 확정(30)

• EC 9개국 외무장관들, 유럽의회 직접선거 실
시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20)

10월

• 직제분과규정 개정(4)

• 재무부, 외국환관리규정 개정(5)

• IMF, 마닐라에서 세계은행과 합동연차총회
개최(2)

• 한국은행, 수출금융 융자취급세칙 개정(10)

11월

• 재무부,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국내외 점포망 확대 계획 발표(9)

• GATT, 제네바에서 연차총회 개막(22)

12월

• 정부출자 100억원 납입(30)

• 경제기획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확대
수정(7)

• 영국, 재정적자 감축, 고용확대, 투자증진을 내
용으로 하는 긴급종합경제조치 발표(15)

• 제3차 수출보험법 개정(31)

• 재무부, 외환규제의 대폭적 완화를 내용으로 하
는 외국환관리규정 개정(9)

• OPEC 각료회의, 원유가격의 이원화 인상 결
정(17)

• 金通委, 외화대출융자 범위확대와 대출금리 인
하 등 외화대출취급규정 개정(16)

• 멕시코, 외환거래 중지조치 해제(20)

1977

1월

• 제14차 업무방법서 개정 및 제1차 정관 개
정(1)

• 정부 10개 경제부처장관 합동 기자회견(15)

• 아시아경제동맹(ACU), 버마은행협회의 회원
가입을 발표(15)

• 수출보험업무를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인수(1)

• 재무부, 기업어음의 무담보대출금리 및 여신금리
를 최고 22% 범위내에서 금리체계를 재조정(25)

• 직제분과규정 개정(27)

• 제3차 수출보험법 시행령 개정(27)

2월

• 제15차 업무방법서 개정(9)

• 재무부, 우량기업의 무보증사채 발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시장 육성책 마련(14)

•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파운드화 지원을 위
한 30억달러의 대기성차관 공여조건을 확정(7)

輸 銀	국 내	국 외
	•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 발족(19)	• OECD 조산부회, 조선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선업계의 구조개편을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11)
		• ASEAN, 상호간의 무역확대를 위하여 특별무역협정을 체결(24)
3월		
• 제16차 업무방법서 개정(31)	• 경제기획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의요강 마련(3)	• ADB, 통상자본재원에 의한 대출금리를 8.9%에서 8.7%로 인하(3)
	• 경제기획원, 제1차 5·10 경제실무자간담회 개최(3)	• EC 9개국 각료이사회, 공통수출신용정책 실시에 합의(9)
		• 아프리카·아랍 정상회담, 아랍 제국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하여 AfDB를 통한 자금 제공에 합의(9)
4월		
• 직장예비군 소대 발족(9)	• 재무부, 대중통 교역 및 용역수출 촉진을 위하여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의 통화를 재정통화로 추가 지정(1)	• 라틴아메리카 금융개발기구, 자본금 1억달러 규모의 아랍·라틴아메리카 개발은행 설립에 합의(4)
	• 상공부, 조선공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 발표(9)	• IMF, 잠정위원회에서 신금융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26)
5월		
• 제17차 업무방법서 개정(9)	• 외무부, 터키와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5)	• UN 해양법회의, 제6차 회의 개막(23)
• 제18차 업무방법서 개정(31)	• 외무부, 이란과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및 어업협력협정 체결(11)	• 일본·소련, 1975년 말로 종료된 양국간 무역협정을 198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30)
		• IDB, 과테말라에서 연차총회 개최(30)
6월		
• 수출보험 국제기구인 Berne Union에 정식 가입(7)	• 金通委, 금융기관 여수신 최고금리 일부 개정(30)	• ASEAN, 싱가포르에서 경제각료 회의 개최(27)
• 1억 5,8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15)		• 영국, 조선업 및 해운업의 불황 타개 방안으로 이들 업종의 30개 회사를 국영화(30)
• 부산사무소를 부산출장소로 변경(22)		• IMF, 7월 1일부터 Super Gold Tranche에 대한 보상비율을 인하하고 SDR에 대한 이자율 및 수수료를 3.7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발표(30)

연 표

輸 銀	국 내	국 외
7월 - 제2차 정관 개정(1) - 제19차 업무방법서 개정(1) - Sumita 일본수출입은행 총재 내방(18) - 한국은행 출자 200억원 납입(21)	- 상공부, 호주와의 균형된 통상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韓 · 濠 공동성명 발표(5) - 재무부, 단기 연불수입기간 연장을 일체 중지하는 한편, 리파이낸스 및 은행차관 도입의 단계적인 축소를 결정(14)	- IDB, 라틴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대출금리율 8.35%에서 8%로 인하(7) - ADB, 대출금리율 8.7%에서 8.3%로 인하(29)
8월 제4차 직제분과규정 개정(17)	- 재무부, 외환관리규정 전면 개정(3) - 경제각료회의,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 의결(26) - 상공부, 종합상사 지정요건을 대폭 개정, 197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27)	- ASEAN, ASEAN 5개국과 일본 · 호주 · 뉴질랜드가 참가한 가운데 확대 수뇌회의 개최(6) - 선진 14개국 재무장관 회의, 86억SDR 규모의 IMF 신용자제도에 관하여 협의(6)
9월 - 제20차 업무방법서 개정(1) - Moore 미국수출입은행 총재 내방(15) - 구매자신용 공여에 국별신용한도제를 적용(15)	- 재무부, IMF에 대한 출자금을 현재의 8,000만 SDR에서 1억 6,000만SDR로 증액하기로 결정(7) - 경제각료회의, 내년도 수출보험 인수액을 1,375억원으로 확정(19)	- 말레이시아, 수출축진을 위해 수출신용보험회사 설립(6) - 미국 OPIC, 개도국에 대한 투자위험으로부터 자국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위험도 부모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14) - IMF 및 IBRD, 워싱턴에서 연차총회 개최(26)
10월 정부채자 100억원 납입(5)	- 한국은행, 수출지원금융 융자단가금 1달러당 40원씩 인하(10) - 재무부, 일반대출 전면억제, 당좌대원 및 수출금융 감축 등 금융긴축 강화(13)	미국 FRB, 공정한인율을 5.75%에서 6%로 인상(25)
11월 - 직장예비군 중대로 증편(10) - 농촌 부락(경기도 가평군 사기막마을)과 자매결연(11)	- 한국은행, 상업어음 재할인율을 우대 80%, 일반 60%로 환원(7) - 상공부, 자동차공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부품단지 조성 및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전략산업화방안 마련(24)	- FAO, 로마에서 세계식량회의 개막(1) - EC 위원회, EC의 경제 및 통화동맹 재추진을 위한 5개년 행동계획 발표(17)

輸 銀

국 내

국 외

12월

- 제2차 수은법 개정(19)
- 제3차 정관 개정 및 제21차 업무방법서 개정(29)
- 정부출자 100억원 납입(31)

- 재무부, 수출선수금에 대한 국내은행의 지급보증 규제 및 국내기업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선수금 영수증 전면 금지(14)
- 재무부, 해외건설용역 수입외화 및 수출선수금에 대한 외화예치제 폐지(26)
- 金通委, 수출금융 융자비용을 달러당 20원씩 인상(29)

- 세계 주요 섬유무역국, 1977년 말로 만료되는 다자간섬유협정(MFA)을 1978년 1월 1일부터 4년간 연장하기로 합의(14)
- 서독연방은행, 공정할인율을 3.5%에서 3%로 인하(15)

1978

1월

- 정부, GNP 성장률 10~11%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78년도 경제시책운용기본방침 발표(21)
- 경제기획원, 유류가격 평균 3.67% 인상(28)

- 세계은행, 대출금리를 7.9%에서 7.45%로 인하(23)
- GATT, 도교라운드의 최종협상을 위한 회담 개최(23)

2월

- 제5차 직제분과규정 개정(28)

- 재무부, 일반무역상사의 거주자외화계정 개설 허용(13)
- 경제각료회의,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3개 안건 의결(23)
- 경제각료회의,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안건 의결(27)

- EC, 1974년에 시효가 만료된 대중국 개발쌍무협정을 대체할 5개년 무역협정에 가조인(3)
- 일본·중국, 북경에서 1978~1985년간의 장기무역협정에 조인(16)

3월

-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 1978년도 해외투자 및 연불수출지원강화 종합대책 의결(9)
- 재무부, 엔화·스위스 프랑화 등 4개국 통화를 영수통화로 지정하고 모든 통화를 지급통화로 확대(27)

- UNCTAD,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개도국 채무탕감문제 협의 결렬(10)
- IMF, 회원국의 크레딧 포지션에 대한 보상비율을 3.5%에서 3.75%로 인상(23)
- 日·EC 회의, 일본의 국제수지 흑자 축소 및 수입증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24)

輸 銀

국 내

국 외

4월

- 정부, 동력자원대책위원회 구성(18)
- 재무부, 외화대출금리를 최고 0.5%까지 인하하고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연장(21)
- 상공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27)

- ADB, 대출금리를 7.65%에서 7.7%로 인상(6)
- IEA, 에너지 개발 및 보존정책에 관한 회담 개최(12)
- OPEC, 대체에너지 개발촉진과 석유수입 감소 보상책으로 유가인상에 합의(27)

5월

- 수은내국신용장 취급규정 제정(16)
- 벨기에 OND와 공동보험협정 체결(30)

- 재무부, 연불수출업자가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대해서도 수출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9)
- 재무부, 6월부터 중단기 연불수출에 따른 포괄보험 실시 예정(12)
- 한국은행, 수출선수금 전환자금 융자조건 강화(22)
- 상공부, 플랜트수출촉진법의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플랜트 및 연불수출 촉진대책 마련(30)

- 미국 정부, 국제개발조정처 설립(1)
- OPEC, 중장기 석유가격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공식 석유장관 회담 개최(6)
- 미국 FRB, 공정할인율을 6.5%에서 7%로 인상(11)

6월

- 뉴욕 및 런던사무소 개소(1)
- 중단기 연불수출에 따른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 실시(1)
- Berne Union 투자보험위원회에 가입(2)

- 金通委,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인상(12)
- 한국은행, 주요원자재수입금융금리를 13%에서 15%로 인상(14)
- 정부, 비동맹 개도국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및 중화학공업 제품의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개발기금을 발족시킨다는 방침을 발표(30)

- 제6차 ASEAN 각료회의, 특혜관세협정 대상 품목 확대(6)
- 유럽투자은행(EIB) 이사회, 자본금을 70억 8,700만EUA로 배증할 것을 결의(19)
- 일부 OPEC 회원국, 1979년 유가인상을 위한 산유관리제 실시에 합의(26)

7월

- 재무부, 일반물품의 현금수입 담보금리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환관리규정 개정(3)
- 재무부, 수출선수금 전환자금 융자기간의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지원금융 확대책 마련(22)

- EC 정상회담, 유럽통화제도 창설 및 주요 경제 정책에 합의(7)
- 미국 FRB, 10일자로 12개 연방은행의 공정할인율을 7.25%로 통일(7)
- 美·日·EC 등 주요 선진국, 1980년대 세계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쿄라운드 공동선언문 기초안에 합의(13)

8월

- 제6차 직제분과규정 개정(14)
- 로스엔젤레스사무소 개소(28)

- 동력자원부, 해외자원의 개발수입 촉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법안 확정(23)

- 미국수출입은행, 기계, 공구 등 미국 상품의 해외판매 촉진을 위해 중기수출진흥제도 개정(8)

輸 銀

국 내

국 외

9월

- 홍콩사무소 개소(1)
- 해외 건설공사의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방안 제정(12)

- 재무부, 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사채수요의 개발을 위해 보증사채금리의 상한 철폐 등 사채 발행조건 자율화(1)
- 재무부, 관세제도 개정안 발표(6)
- 한·스웨덴 상무장관, 무역장벽 제거에 합의(23)

- ESCAP, 역내 무역촉진 원칙에 합의하고 폐막(23)

- 프랑스·서독 정상회담, 새로운 유럽통화제도의 환율결정은 상·하한범위내 변동방식을 지지하기로 합의(15)
- G-24, 선진국의 경제성장 촉진과 대개도국 무역규제 완화 촉구(23)

10월

- 한국외환은행 출자 100억원 납입(2)
- 폴란드 수출의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방안 제정(26)
- 정부출자 50억원 납입(30)

- 한·필리핀 경제협력위원회, 한국과 ASEAN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6)
- 한·네덜란드 외무장관,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25)
- 한·오스트리아 경제협력위원회, 기술·투자정보센터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30)

- 미국 FRB, 11개 연방은행의 공정한인율을 8%에서 8.5%로 인상(13)
- 중국·프랑스,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21)

11월

- 한국외환은행 출자 100억원 납입(2)

- 한·자메이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3)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양국간 교역증대 및 자원 합작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6)
- 경제기획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의무율 하향조정(15)
- 한·덴마크 상공장관, 조선공업 분야의 협력 강화 등 12개항의 공동성명 발표(29)

- UNCTAD, 주요 상품의 수출안정을 위한 60억 달러의 공동기금 설치에 관한 회의 재개(10)
- 유고 재무성, 1979년부터 수출금융과 해외투자자 지원을 위한 유고수출신용은행의 업무개시 발표(13)
- 일본·ASEAN 경제협의회,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19)

12월

- 한국외환은행 출자 100억원 납입(1)
- 제4차 수출보험법 개정(5)
- 2억달러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7)

- 재무부, 외환관리규정 개정(8)
- 재무부, 국내 중장기 외화대출금리와 해외건설 용역금융금리를 인하(14)

- IMF, 1979년 1/4분기 중의 SDR 수수료율을 4%에서 6%로, 금리는 4%에서 5.4%로 각각 인상(28)

輸 銀

국 내

국 외

1979

1월

• 제22차 업무방법서 개정(12)

• 한국은행, 수출지원금융 및 주요원자재수입금융의 재할인율을 70%에서 80%로 인상(12)

• 재무부, 통화신용의 안정기조 유지,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등 1979년도 재무시책 발표(23)

• IEA, 이란의 석유공급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동경에서 국제회의 개최(20)

2월

• 칠레 Banco Israelita de Chile 앞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6)

• 자메이카 중앙은행 앞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9)

• 金通委, 중·단기 연불자금 지원대상을 종합무역상사에서 모든 수출업체로 확대(5)

• 한국은행, 내국신용장 취급규정 일부 개정(22)

• 재무부, 외국환관리규정 일부 개정(24)

• ADB, 대출금리율 7.7%에서 7.4%로 인하(9)
• 베네수엘라 정부, 자국산 연료용 석유가격을 유증별로 배럴당 2.10~2.51달러 인상한다고 발표(26)

3월

• 정부출자 6억 5,000만원 납입(21)

• 상공부, 중소수출산업시설자금 지원요령 일부 개정(5)

• OPEC 회장, 석유의 전략무기화급 선언(4)
• 스페인, OECD 수출신용협정에서 탈퇴(7)
• UNCTAD,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품가격 안정화 공동기금 설치에 합의(20)
• OPEC, 석유가격 9.05% 인상(27)

4월

• 제7차 직제분과규정 개정(27)

• 경제기획원,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발표(7)
• 金通委,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 수출금융 융자 취급세칙 및 내국신용장 취급규정 개정(19)• 일본은행, 4월 17일부터 공정한인율은 3.5%에서 4.25%로 인상(16)
• 세계은행, 대출금리율 7%에서 7.9%로 인상(26)
• 프랑스 정부, 소련과 장기 경제협력조약 체결(28)

5월

• 카메룬 외무장관 내방(4)

• 양윤세 제2대 은행장 취임(14)

• 제23차 업무방법서 개정(15)

• 국무회의, 해외자원개발 정부투자기관 지정(14)
• 투자사업조정위원회, 중화학투자사업 조정(25)• G-10 재무장관 회담, 1980년 10월로 종료되는 일반차입협정(GAB)의 5년간 연장에 합의(15)
• 그리스·EC, 그리스의 EC 가입에 관한 협정에 조인(28)

6월

• 경제기획원,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의무 해제 및 완화(4)

• EC·ACP국가, 새로운 5개년 무역 및 원조협정에 합의(27)

輸 銀	국 내	국 외
• 동경사무소 개소(19) • 아비잔사무소 개소(20)		• IMF, 7월 1일부터 SDR금리를 6.5%에서 6.75%로 인상하기로 발표(28)
7월 • 예비군 정기감사 결과 우수부대 표창 수상(11) • 제1차 수은내국신용장 취급규정 개정(13)	• 수출금융 용자비용 인상(2) • 상공부, 수출입 기법공고를 상공부로 일원화(2) • 재무부, 외환관리규정 개정(31)	•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 유가를 배럴당 17.10달러에서 22.60달러로 32.2% 인상(5) • 미국 FRB, 공정할인율을 9.5%에서 10%로 인상(20)
8월 • 정부출자 13억 5,000만원 납입(29) • 제24차 업무방법서 개정(31)	• 재무부, 예치외화 인출기준 완화(21)	• IMF, 보상금융의 인출한도를 할당액의 100%로 확대(7) • ADB, 대출금리를 7.4%에서 7.6%로 인상(16)
9월 • 연불수출 지원방식을 구매자신용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기로 결정(15)	• 상공부, 수출용 원자재 수입제한 대폭 완화(4) • 金通委, 금융기관 여신금리의 한국은행 재할인율 연동제 채택(6) • 한·미 무역협상 개최(19) •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자원개발소위원회 설치, 호주의 대한국투자 증진 및 한국의 대호주 기술인력 진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26)	• 태국 정부, 도입외자에 대한 면세조치를 1980년 9월까지 연장(18) • 미국 FRB, 공정할인율을 10.5%에서 11.0%로 인상(19) • IMF, 10월 1일부터 SDR금리 및 보상률을 6.75%와 6.075%에서 각각 7.75%와 6.975%로 인상(28)
10월 • 기니 경제사절단 내방(2) • 제8차 적제분과규정 개정(11) • 코도크 AfDB부총재 내방(31)	• 경제기획원, 외국인투자 최저한도액을 2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6) • 재무부, 해외재보험 한도를 1,2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확대(12) • 상공부, 수출보험요율 인하 및 재할인 실시(19)	• IMF/IBRD, 베오그라드에서 제34차 합동 연차총회를 개최(2) • 미국 FRB, 공정할인율을 11%에서 12%로 인상(6) • EC, ACP제국과 제2차 '로메협정' 체결(31)
11월 • 제25차 업무방법서 개정(10) • 말레이시아 통상사절단 내방(15)	• 한·미 경제정책협의회 개막(10) • 金通委, 외화예금 최저 지급준비율 인하(15)	• 일본 정부, 공정할인율을 5.25%에서 6.25%로 인상(1) • 서독연방은행, 공정할인율을 5%에서 6%로 인상(11) • 이란 정부, 대미국 원유수출 금지(12)

輸 銀

국 내

국 외

12월

- 가나 교통부장관 일행 내방(5)
- 정부출자 25억원 납입(18)

- 金通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의결(28)

- IMF, 회원국 정부 및 중앙은행간 스왑거래에 SDR 사용 승인, 회원국정부 및 중앙은행의 SDR 선물거래 허용(1)

1980

1월

- 이태호 제3대 은행장 취임(8)
- 제26차 업무방법서 개정(18)
- 태국 Thai Farmers Bank 앞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28)

- 정부, 환율인상(달러당 484원 → 580원, 19.8%) 및 금리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경제대책 발표(12)
- 금융기관 대표자회의, 외화연불금리율 22%에서 28%로 인상(18)

- ASEAN 재정위원회, ASEAN수출입은행 설립 결정(23)
- 미국 의회, 중국을 최혜국대우 국가로 승인(24)
- 세계은행, 개도국에 대한 신규 대출금리를 최고 8.25%로 인상(31)

2월

- 협조융자 취급규정 제정(1)

- 재무부, 계획조신용 외화대출규모를 전년의 6,300만달러에서 4,000만달러로 축소하고 부족자금은 전대차관으로 충당하기로 결정(15)
- 한국은행, 복수통화 바스켓에 의한 환율유동제 실시(27)

- 일본은행, 공정환인율을 6.25%에서 7.25%로 인상(19)
- ADB, 대출금리를 7.6%에서 8.1%로 인상(27)
- 서독연방은행, 공정환인율을 6%에서 7%로 인상(28)

3월

- 제9차 직제분과규정 개정(15)

- 국무회의, GATT 제내비의정서 가입안 의결(11)
- 상공부, 11개 중소기업공단 조성계획 발표(29)

- EC, ASEAN과의 5개년 경제협정 체결(7)
- IMF, 1980년 2/4분기 적용금리를 인상(28)

4월

-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모범 예비군부대 표창 수상(12)

- 金通委, 원리금상환용 특별외화대출 취급규정 제정 및 한국은행 외화여신업무아울 일부 개정(3)
- 한국은행, 내국신용장 취급규정 일부 개정(16)
- 金通委, 금융기관 수신업무 최고금리 일부 개정(17)

- 이란 · 이라크, 상호 선전포고(16)
- 중국, IMF에 가입(대만 탈퇴)(17)
- 서독연방은행, 공정환인율을 7%에서 7.5%로 인상(30)

輸 銀	국 내	국 외
5월	• 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정식 가입하기 위해 이 은행에 2,400만달러를 출자하기로 결정(1) • 금융단,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 일부 개정(9)	• OECD, 수출금융에 대한 금리를 0.25~0.75% 포인트 인상(14) • 중국, IBRD에 정식 가입(15) • ADB, 제13차 연차총회 개최(30)
6월	• 대만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앞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2) • Moore 미국수출입은행 총재 내방(4) • 경제기획원, 경제종합대책 발표(5) • 재무부, 1980년도 연불수출 지원자금을 지난해 보다 730억원이 증액된 3,58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16) • 상공부, 수출보증보험과 중장기연불수출보험에 대한 포괄보험제 도입(25)	• 미국 FRB, 공정합인율을 12%에서 11%로 인하(12) • EC, 베네치아에서 정상회담 개최(12) • COMECON 수상회의, 경제계획 협조체제 강화 및 상호 무역증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19)
7월	• 제27차 업무방법서 개정(10) • 선수금관리요령 제정(28) • 포항종합제철, 국내 최초로 해외광산개발(미국 타노마 탄광)에 착수(9) • 金通委, 외화대출의 협조융자대상 확대(16) • 金通委,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이 정하는 산업설비 수출의 주주자에 대해서도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수출금융 융자대상 확대(16)	• IMF, 1980년 3/4분기 적용 SDR금리를 인하(1) • ASEAN 은행가협회, ASEAN금융회사(AFC) 설립 합의(7)
8월	• 스웨덴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으로부터의 1,810만달러 규모의 전대차관 도입 계약 체결(20) • 정부출자 42억 5,000만원 납입(25) •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 자동차·발전설비·건설중장비 등의 생산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중화학투자의 조정을 결정(20) • 정부, 수출입절차 간소화(30)	• ADB, 대출금리를 8.1%에서 9%로 인상하는 한편, 국민회원국에 대한 양허대출을 재개(1) • 세계은행, 외환변동에 따른 차입금의 위험부담을 균등화하기 위해 통화결제 도입(7) • 라틴아메리카 11개국,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 해체(13)
9월	• 대만수출입은행장 일행 내방(5) • 직장정화위원회 설치(5) • 덴마크 Den Danske Bank로부터의 300만달러 규모의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30) • 재무부, 정책금리 및 비금융기관금리 인하(18) • 경제기획원,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발표(25) • 상공부, 플랜트 및 연불수출 지원자금 규모를 1980년 3,580억원에서 1981년 6,000억원으로 확대(27)	• 미국 상원,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상사 설립법안 승인(3) • 이란·이라크, 양국간 전면전 발발(22) • 미국 FRB, 공정합인율을 10%에서 11%로 인상(25)

輸 銀

국 내

국 외

10월

• 한국은행 출자 300억원 납입(16)

• 상공부, 제2차 중화학공업투자 조정방안 발표(7)
• 한국은행, 선물환제도 확대 실시(15)
• 국무회의, 수출용 원자재 비축한도제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무역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8)

• IMF/IBRD, 제35차 연례 합동총회 폐막(3)
• 자메이카 정부, 외채원금 상환을 연기하기로 차
관공여단과 합의(10)
•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 UAE, 원유증산에
합의(15)

11월

• 필리핀 경제사절단 내방(11)
• 우수 민방위대 표창 수상(17)
• 제10차 직제분과규정 개정(18)

• 정부, 종합경기부양대책 발표(8)
• 상공부, 1986년까지 건조능력을 650만톤 규모
로 확대하는 조선공업육성방안 발표(14)
• 정부, 유류제품 가격 및 전기요금 인상(19)

• 일본은행, 공정환인율을 7.25%에서 7.15%로
인하
• EC, 23개 공업국회담에 제철합 수출신용협정
을 개정하기 위한 EC공동안 채택(17)

12월

• 노르웨이 Eksport-finans로부터의 4,100만달
러 규모의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15)

• 한국은행, 스왑대상 통화에 서독 마르크화금 추
가(11)
• 재무부, 1981년도 중장기 외화자금 융자취급
지침 발표(30)

• OPEC 총회, 기준유가의 상한을 배럴당 36달
러 및 41달러로 이원화(10)
• 영국수출신용보증국, 수출신용보험에 대한 보
험요율 인상(22)

1981

1월

• 중장기연불수출보험 포괄보험 실시(1)
• 정부출자 7억 5,000만원 납입(16)
• 연불수출지원자금 규모를 3,580억원에서
5,050억원으로 확대(20)
• 이집트 Cairo Far East Bank 앞 전대자금 공
여협정 체결(22)

• 상공부, 종합상사 지정요건을 완화(8)
• 재무부, 증권시장 자유화 추진계획 발표(14)
• 동력자원부,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해역 東자바
광구 공동개발 합의(28)

• 미국 정부, 이란과 인질석방협정 체결(19)
• 일본 각료회의, 대이란 경제제재조치 해제 결
정(26)

2월

• 제28차 업무방법서 개정(6)
• 스웨덴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으
로부터의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6)
• 제11차 직제분과규정 개정(9)

• 한국은행, 종래 외환시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하던 선물환시세를 은행법로 결정하여 고시하도
록 변경(26)

• 미국 대외무역정책위원회, 수출축진을 위한 수
출무역상사 설립안 승인(12)
• EC 재무장관 위원회, 석유신용(oil facility) 증액
및 산용공여시 회원국의 만장일치제 채택(16)

輸 銀	국 내	국 외
3월 —————		
• 한국은행 출자 300억원 납입(21) • 제5차 수출보험법 개정(27)	• 국무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27)	• 미국 행정부, 칠레에 대한 공공차관 금지조치 해제(10)
4월 —————		
• 전석두 감사, 경제자원협력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 및 캐나다 방문차 출국(19) • 정부출자 110억원 납입(24)	• 한국은행, 적격 중소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은 여신규제 대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결정(25)	• ADB, 대출금리를 9%에서 9.25%로 인상(3) • 런던, 석유 및 가스 선물시장인 국제석유거래소(IPE) 개정(6) • EC, 소련에 대한 부분적 식량금수조치 전면 해제(29)
5월 —————		
• 제29차 업무방법서 개정(19) • 한국은행 출자 200억원 납입(23) • 정부출자 40억원 납입(30)	• 정부, 연불수출자금 지원 확대(28)	• 캐나다 정부, 소련과 5년간의 곡물판매협정 체결(26) • 홍콩, 1979년 8월 이후 중지해온 외국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재개(27)
6월 —————		
• UBAF 등 40개 국제금융기관과 2억달러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계약 및 Wells Fargo 은행 등과 2억달러 규모의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1) • 이태호 은행장, Berne Union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피선(9)	• 상공부, 자동차부품 공장의 생산성 향상대책 발표(9)	• 미국 재무성,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보유의 이란 자산을 6월 19일까지 뉴욕 연방은행으로 이 전하도록 명령(3) • ASEAN금융공사, 싱가포르에 정식 발족(19)
7월 —————		
• '한국수출입은행 5년사' 발간(1) • 정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16)	• 한국은행, 기업체 종합평가표 전면 개편(4) • 金通委, 수출금융지원 대폭 강화(17) • 재무부, 외국환관리제도 개선(21)	• ASEAN, 역내 투자가 및 사업가의 투자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기구(One-Stop Government Agency)의 설립 제의(27)

輸 銀	국 내	국 외
8월 - 수은지원 연불수출거래에 대한 정상외결제 허가업무를 수은이 전담 취급하도록 외국환관리 규정을 개정(1) - 정상외결제 허가업무 취급에 관한 방침 결정(20) - 수은 이차보전금 지급규정 제정(29)	- 한국은행, 해외투자허가 및 사후관리취급세칙 개정(1) - 상공부, 외국인투자 우선 유치분야 45개 품목 선정(18) - 경제기획원,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발표(21) - 한국은행, 해외투자관리업무 운용요강 확정(29)	베네수엘라 정부, 총 600억달러 규모의 제6차 국가개발5개년계획(1981~1985) 발표(28)
9월 - 산티아고사무소 개소(1) - 칠레, Banco de Chile 앞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22) - 수은내국신용장 취급규정 개정(25)	- 재무부, 관세감면 대상품목 조정(1) - 金通委, 수출금융규정 일부 개정(17) - 한국은행, 전략산업 지원대상 확정(28)	- 세계은행, 9월 18일부터 대출금리를 10.6%에서 11.6%로 인상(17) - IMF/IBRD 합동개발위, 1982년 초까지 대개도국 민간투자에 대한 다자간 부분보증(Multilateral Partial Guarantee)제도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결정하는 한편, 협조융자방식의 확대 필요성에 합의(28)
10월 - 제12차 직제분과규정 개정(13) - 프랑스 COFACE와 공동보험협정 체결(21)	- 상공부, 수출보험 인수한도액 증액(8) - 상공부, 조선부문 장기수출계획 발표(13) - 상공부,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 확정(31)	- OECD, 11월 16일부터 모든 수출대상국에 적용되는 수출신용금리를 9.25%로 인상(21) - 미국 FRB, 공정할인율을 14%에서 13%로 인하(30)
11월 - 수출자금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기준 외자재의 존율 변경(16) - 제30차 업무방법서 개정(17) - 직접대출 및 전대자금 기본운영규정 개정(17) - 협조융자 취급규정 개정(26)	- 상공부, 수출어음보험 상사법 임의포괄보험제 도입 실시(12) - 재무부, 수출입은행 대출기준금리 인상 및 제2금융권금리 조정(17)	영국, 북해산 유가를 배럴당 36.50달러로 인상하여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6)
12월 직접대출 취급규정 개정(29)	정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8)	- 미국 FRB, 공정할인율 인하(4) - 일본은행, 공정할인율 인하(10)

輸 銀

국 내

국 외

1982

1월

- 본점 신축을 위한 건축추진반 구성(5)
- 수출자금의 품목별 용자승인·집행한도 설정(20)

- 金通委, 민간신용 한도제 폐지(7)
- 재무부, 연지급수입대상 품목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11)

- IMF, SDR금리 인하(1)
- 미국 FRB, 신규 용자약정액에 1.5%의 용자개시수수료 부과 결정(5)

2월

- 수출선택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하여 국산기자재 사용거래에 대한 우선지원지침 제정(12)
- 수출대금금융 보험종목을 신설(16)
- 제31차 업무방법서 개정(18)

- GCC, OPEC내에서의 공동행동 및 유가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석유펜책에 합의(1)
- 아라비아만 라이트 현물유가, 1979년 이란혁명 이래 처음으로 30달러 이하로 하락(16)

3월

- Bank Negara Indonesia 등 2개 외국 금융기관과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9)
- BTC(Singapore)등 36개 외국 금융기관과 3억달러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12)
- 프랑스 Société Générale로부터의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18)
- 수은내국신용장 취급규정 개정(25)

- 한국은행, 차관원리금 상환용 외화대출 확대(18)

- ADB, 대출금리를 10.1%에서 11%로 인상(17)
- OPEC, 비엔나 임시총회에서 기준유가의 동결에 합의(19)

4월

- 위임전결규정 및 사무인계규정 개정(20)
- 정부출자 50억원 납입(22)

- 금융단, 외국환수수료 인하 및 환가료 징수기간 단축(23)

- 영국 정부, 아르헨티나에 대한 금수조치 발표(14)
- 영국, 북해유전의 원유매장량을 16.2억톤으로 추정 발표(29)

5월

- AfDB와의 협조용자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7)
- 노르웨이의 Eksport-finans로부터의 2억노르웨이크로네 상당의 미국 달러화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11)

- 상공부, 전자공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수출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전략육성품목 선정(15)
- 경제기획원, 경제종합대책 발표(18)

- 헝가리, 동구권에서는 루마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IMF에 가입(6)
- OECD, 파리에서 각료이사회 개최(16)
- IMF/IBRD, 헬싱키에서 IMF 잠정위원회 및 IBRD 개발위원회 개최(12)

輸 銀	국 내	국 외
• 덴마크의 Den Danske Bank로부터의 1,000 만달러 규모의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14) • 국외사무소 업무요강 개정(19)		• OPEC, 키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준유가의 동결 및 산유량 상한제의 계속 유지에 합의(20)
6월 • 정부출자 35억원 납입(7) • 창립기념 연불수출지원제도 설명회 개최(23) • 국외사무소 개설 편람 발간(30)	• 경제기획원, 경제활성화대책 발표(28)	• G7, 프랑스의 베르사이유에서 경제정상회담 개최(4)
7월 • 수출보험 사무처리규정 및 국외사무소 예산경 리요강 개정(8) • 산업설비 수출 관련 허가업무 개시(26)	• 재무부, 국민투자자금금리를 11.0~14.5%에 서 10% 수준으로 인하(10) • 金通委, 외화대출 관련규정 정비(15) • 金通委, 수출금융규정 및 수출금융 융자취급세 칙 개정,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정(22)	•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 개정(23) • 미국 FRB, 공정한인율을 11.5%에서 11.0% 로 인하(30)
8월 • 선수금환급보증 등의 업무 취급지침 제정(6) • 국별신용도 평가업무에 관한 지침 제정(7)		• 미국, EC와의 철강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고 발표(6) • 77그룹, 마닐라에서 개막된 조정위원회에서 대선진국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해 개도국 상 호간에 호혜무역제도(Trade Preference System)를 채택하기로 합의(25)
9월 • 국별 여신한도 관리 및 운용기준 제정(4)	• 포항종합제철, 미국 타노마 탄광 채탄시설 준 공(8)	• 24개 개도국 그룹(G-24), 토론토에서 회합 을 갖고 세계적인 경기회복 정책의 채택, 선진 국의 보호무역 장벽의 제거 및 IMF 쿼터 배증 촉구(3) • IMF/IBRD, 토론토에서 연차총회 개최(6)
10월 • 코데코에너지 개발사업 관련 자금관리 주재원 파견(15) • 페루 Corporation Financiera de Desarrollo S.A. 앞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19)	• 재무부,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을 427개에서 521개로 확대(8) • 상공부, 1983년도 수출보험계약 한도액을 총 3 조 2,054억원으로 확정(16)	• IMF, SDR금리 인하(4) • GCC, 산유국은 유가인하를 즉시 중단하고 유 가의 폭락을 막기 위하여는 모든 산유국이 공동 의 노력을 하여야 함 것이라고 경고(15)

輸 銀	국 내	국 외
• 정부출자 35억원 납입(28)	• 정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인도네시아 공동성명 발표(19)	
11월 • 자카르타사무소 개소(1) • 코스타리카 통상사절단 내방(17)	• 현대 미포 수리조선소 완공(연간 400척 수리규모)(4) • 한국은행, 수출금융 융자단가 인상(18) • 한·나이지리아 합작은행 설립협정 체결(19)	• 일본 대장성, 수출입은행·일본개발은행 등 準 정부계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정부보증부 외채발행의 한도액을 1983년부터 3,000억엔으로 인상(5) • 일본 통산성, 수출보험요율을 1983년 4월부터 인상(19)
12월 • LTCB Asia Ltd. 외 1개 외국 금융기관과 9,9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6) • International Westminster Bank로부터 터의 2,000만달러 규모의 전대차관 도입계약 체결(15) • 본점 신축을 위한 기공식 거행(17) • 노동조합 결성(23)	• 한·EC 섬유협상 타결(15) • 연구개발 및 도입기술의 기업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사업목표로 하는 벤처캐피탈사인 한국개발투자 발족(21)	• EC, 코펜하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역내 무역장벽의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4) • 제66차 OPEC 정기총회, OPEC 전체의 1일 산유량 상한을 1,850만배럴로 확대(19)
1983		
1월 • 수출자금대출 등의 상환기간과 채무보증기간에 대한 예외취급 범위 확대 및 플랜트 수출 지원 자금 중 일부에 대한 금리 인하(6) • 1983년도 선별지원지침 제정(17) • 박성상 제4대 은행장 취임(27)	• 재무부, 장기 관세감면 대상품목 조정(12) • 동력자원부, 에너지 절약 등을 내용으로 한 1983년도 주요 업무계획 확정(27)	• 국제상업은행단, 차입국에 대한 컨트리 리스크 정보제공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설립에 합의(11) • 에콰도르 정부, 해외 채권은행단과 채무조정안에 합의(12) • IMF 10개국(G-10) 재무장관 회의, 일반차입협정(GAB)에 따른 자금공여 약정한도를 64억 SDR에서 170억SDR로 증액하는 데 합의(18)
2월 • 공증 및 영사확인 제도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16)	• 동력자원부, 유류가격 조정(6) • 건설부, 부동산투기 억제 종합대책 확정(16)	• IDB 총회, 150억달러 규모의 제6차 재원보충계획(1983~1986)에 잠정 합의(4)

輸 銀	국 내	국 외
• 수출계약서상의 결제통화를 현행 4개국 통화에서 시장환율이 고시되는 20개국 통화로 확대(18) 3월 • 제3차 업무방법서 개정(9) • 중소기업의 대개도국 진출시 융자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9) • LTCB Asia Ltd. 외 6개 외국 금융기관과 3억 4,4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14)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사업 금융지원제도 설명회 개최(16) 4월 • 선수금관리요령 개정(11) 5월 • 직접대출 취급규정 개정 및 컨테이너에 대한 시한부 지원지침 확정(3) • 직접대출 기본운영규정 개정(10) • 한국데이터통신의 DNS회원가입(26) 6월 • 선박건조자금 집행기준 개정 및 건설중정비 수출 지원규정 제정(1) • 제도개선 및 민원청취를 위한 업계간담회 개최(9) • Chemical Asia Ltd. 등 46개 외국 금융기관과 3억 달러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14) • 국별 여신한도의 상향 조정과 GNP 규모별 여신한도 차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25)	• 한국은행, 재할인율 인하와 유동성 조절수단의 금리체계 조정 및 외화대출규정 제정(24) 한국은행, 수출지원금융 융자단가 인상(11) 상공부, 조선공업 진흥 기본계획 확정(16) 한국은행, 재할인율 및 대출비율 일부 인하(1) 상공부, 수출기준가격제 전면 폐지(10) 정부, 유류가격 및 전력요금 인하(18) 재무부, 해외건설업체의 국산장비 구입에 수출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2) 상공부,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제한 품목을 1,973개에서 1,600개로 축소(2) 재무부, 1983년 하반기 긴급 및 할당관세 적용 대상품목 확정(19)	• 민간상업은행단, 멕시코와 1983년 중에 만기 도래하는 외채 200억달러의 채무조정 협상에 잠정적 합의에 도달(9) • 일본 정부, 미국과 EC에 대한 수출자유규제 결정(12) • OPEC 8개국, 런던에서 유가 및 산유량 쿼터 조정문제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3) • 영국 금융계, EC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유로수표제도(Eurocheque Scheme)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9) • IMF, 1982년 2/4분기중 SDR금리를 전분기에 비해 0.05% 포인트 인상된 8.52%로 상향 조정(4) • AfDB, 미국의 정회원 가입을 발표(6) • 미국 하원, 이지 및 배상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세법안의 폐지를 의결(17) • ADB, 대출금리를 11%에서 10.5%로 인하(13) • 일본개발은행, 수입기반 정비를 위한 리스융자 제도 및 산업협력·국제교류 융자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24) • 일본수출입은행, 에너지자원 구입에만 적용시켜 오던 수입융자제도를 대형 기계설비나 컴퓨터 등의 수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27)

輸 銀

국 내

국 외

7월

- LTCB(Tokyo) 등 17개 외국 금융기관과 100억 엔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5)
- 공증 및 영사확인제도 운용지침 개정(21)
- 연불어음 및 L/G 분할취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25)

- 재무부, 기업의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 기능 확충방안 발표(18)

- 일본 대장성, 엔표시외채 발행기준 완화(1)
- 미국 행정부, 일본의 농산물 수입규제를 GATT에 제소(1)

8월

- 양도담보 취득지침 제정(31)

- 재무부, 외채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외자 도입 억제책 발표(5)
- 재무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확대 지원 발표(12)

- 미국 FRB,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증권중개 업무의 허용 및 비은행 자회사를 통한 증권신용 대출업무의 허용을 결정(10)
- 일본 통산성,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대외경제종합대책 발표(13)

9월

- 신용조사요강 개정(8)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산하 중소부품 생산업체 대표와 간담회(12)
- Lloyds Bank International Ltd. 외 4개 외국 금융기관과 1억 7,5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13)
- 부문별·직무별 순환근무제 실시 강화를 위한 직원임용규정 개정(19)

- 金通委, 수출상품의 계절성을 반영한 융자한도 제 신설(1)
- 금융단, 내국신용장 취급수수료율을 0.16%에서 0.11%로 인하(30)

- 일본 대장성, 적자국채 상환을 위하여 1985년부터 차환채를 발행하기로 결정(18)
- 베네수엘라 정부, 민간부문 채무의 원리금 상환 시 소요외환을 특혜한출에 의거하여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26)

10월

- 수출신용정보센터 설립(1)
- 직제분과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개정(7)
- 정부출자 30억원 납입(17)
- Draper 미국수출입은행 총재 내방(31)

- 상공부, 1984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확정(4)
- 한국은행,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한국은행 일반자금대출 A1한도 지원비율 상향조정(7)
- 재무부, 관세환금특례법 시행규칙 개정(14)

- OECD,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 개정(13)
- 미국 수출입은행, 신규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중간 및 저소득국에 대한 수출 신용금리 인하(17)

11월

- Chase Manhattan Asia Ltd. 외 7개 외국 금융기관과 2억 2,3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16)

- 金通委, 수출지원금융 융자단가 일부 인상(3)
- 재무부, 증시를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시가발행제 실시(15)

- 멕시코 정부, 민간기업들이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 주식매각 형식으로 외채를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10)

輸 銀

국 내

국 외

- 중소기업에 대한 수은 자금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23)
- 100억엔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30)

12월

- 플랜트 수출자금 집행기준 개정(1)
- 충남 공주군 북계1리 마을과 자매결연(13)
- 스위스 Novinform사와 신용조사 제휴(15)
- Word Processor System 도입(17)

- 정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8)
- 金通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결정과 원유 및 원자재 수입자금 융자기간 단축(15)
- 재무부, 총 9,000억원의 1984년도 연분수출금융 지원규모 확정(21)

- 브라질 정부, 파리클럽과 1984년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38억달러 규모의 공적차관의 채무재조정에 합의(23)

- 일본 대장성, 유로엔채의 발행규제를 완화(12)
- 파리클럽, 세네갈·라이베리아 및 자이르의 공적채무의 재조정에 합의(22)
- 일본 대장성, ECU의 국내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29)

1984

1월

- 선법지원지침 제정(4)
- 50억엔 규모의 인화채권 발행(30)

- 금융기관 대표자회의, 해외건설용역자금 종합관리협정 개정(10)

- IMF 상무이사회, IMF 자원 인출한도를 축소 조정(9)
-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 서방 채권은행에의 채무부담 경감조치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키토선언 발표(14)

2월

- 담보 및 보증제도 개선(7)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취급규정 제정(14)
-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대출 취급규정 개정(24)
- 제15차 직제분과규정 개정(29)

- IBRD, 최초로 2억 5,000만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권을 유로시장에서 발행(7)
- EC 및 ACP 64개국, 새로운 5개년 공동개발계획안에 합의(10)

3월

- 표준 여신한도 설정협정서 개정(8)
- 컨테이너에 대한 전대자금 지원방침 결정(9)
- 제34차 업무방법서 개정(22)

- 금융기관 대표회의, 외국환수수료 인상(2)
- 동력지원부, 일부 유류가격 조정(7)

- 미국 상원, 수출인가제도를 더욱 강화시킨 새로운 수출규제법안을 통과(2)
- 일본 대장성, 외국환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21)

輸 銀

국 내

국 외

- 전대자금 여신한도 설정협정서상의 기준 전대
이율 및 연불이율에 대한 방침 결정(28)

4월

- 수출계약서상 결제통화의 확대(6)
- 해외건설협회와 업무협약 체결(18)
- 제16차 직제분과규정 개정(27)

- 정부,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시행령 개정(10)
- 재무부, 금융자유화 및 금융기관 영업환경 개선
대책 발표(20)

- IMF, SDR 추가배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잠
정위원회 개최(12)
- 일본 대장성, 단계별 금융자유화지침 확정(14)
- ADB, 제17차 연차총회 개최(25)

5월

- OECD, 파리에서 연례 각료회담 개최(17)
- 선진 10개국(G-10), 재무장관 회의 개최(19)

6월

-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
도설명회 개최(26)
- 중소기업에 대한 수은 자금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29)

- 金通委, 외화대출규정 일부 개정(7)

- G7, 제10차 경제정상회담 개최(7)
- ADB, 대출금리를 10.50%에서 9.89%로 인
하(2)

7월

- 수출어음보험약관 개정(12)
- 3억달러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13)
- 외국환업무와 관계된 대고객수수료 책정(25)
- 수은내국신용장 취급수수료 징수방법 제정(25)

- 한국은행, 내국신용장 취급규정 일부 개정(5)
- 건설부, 해외건설진흥 종합대책 발표(19)
- 금융단, 금융단협정 일괄 폐지(20)
- 한국은행, 외국환예매율 및 수수료에 관한 세칙
제정(21)

- 세계은행, 대출금리를 10.08%에서 9.89%로
인하(2)
- OECD, 공적수출신용의 최저금리를 각각
1.2%포인트 인하(9)

8월

- 컴퓨터 시스템 도입(24)

- 金通委, 외화대출규정 일부 개정(2)
- 재무부, 기업회계기준 개정(31)

- UN 산업개발기구, 개도국 경제성장 촉진방향
모색을 의제로 제4차 회의 개최(2)
- 77그룹, 개발도상국은행(South Bank) 설립문
제를 토의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29)

9월

- 산업설비 수출에 따른 반출확인 및 수입승인규
정 개정(24)

- IMF/IBRD, 워싱턴에서 제39차 연차총회
개최(24)

輸 銀	국 내	국 외
수출보험요율 변경(28)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26) - 중국 정부, 홍콩 반환협정에 영국 정부와 가조인(26)
10월 1984년도 Berne Union 운영위원회 서울에서 개최(15) - 미국 상공회의소장 일행 내방(30)	- 상공부, 중소 수출업체 집중육성계획 발표(26) - 상공부, 수출경쟁질서 확립방안 발표(27)	- 서독 정부, 외국인의 서독내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세 폐지(3) - ACP제국, 제3차 '로메협정'을 위한 회담 개시(9)
11월 - 제35차 업무방법서 개정(5) -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직접대출 기본운영규정 개정(5) - 대출금리 체계를 기준금리와 대출실행이율로 구분(5) 5,000만달러 규모의 FRN 발행(21)	- 金通委 및 한국은행, 은행 여수신 최고금리 일부 조정 및 곱금리상한 철폐(3) - 한국은행, 내국신용장 취급규정 개정(7)	- GATT 회의, 중국의 GATT 옵저버 자격 인정(6) - 홍콩 상품거래소, 선물거래를 1985년 1/4분기 중 개시할 계획임을 발표(10) - EC, 수출선박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한을 1986년까지 연장(23) - GATT, 제네바에서 연례총회 개최(26)
12월 - 연불어음 양도방법 개정(5) - 외화표시지급보증요율 및 연체대출금리율 책정(11) - 수출보험 인수규정 개정(27) - 수출보험 사고보상규정 개정(27)	- 상공부, 수출선박의 국산화율 제고계획 발표(21) - 재무부, 20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기준 마련(28)	- 세계은행, 10억달러 규모의 아프리카기금 설립 계획 발표(4) - 일본 정부, 자본시장 개방계획 발표(24) - OPEC, 제72차 총회 개최(29)
1985		
1월 - Chase Manhattan Asia Ltd.로부터의 1억달러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18) - 유류산업설비의 수출지원지침 제정(22) -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지침 제정(22)	재무부, 보험대출금리 조정(21)	- 세계은행, 1985년 상반기 중 대개도국 차관자금의 적용금리를 9.29%로 인하(4) - OECD, 최저 수출신용금리를 0.7~1.35% 포인트 인하하여 1월 15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11)

輸 銀	국 내	국 외
• 부산, 마산, 이리, 구미 지역 순회 수출보험 제도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29)		
2월 • 제17차 직제분과규정 개정(6) • 아이티 중앙은행과 전자자금 공여협정 체결(18)	• 金通委, 외화여수산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7) • 한국은행, 외국환관리업무 취급총칙 개정(22)	• 한국 등 10개 개도국, 국제섬유기구(ITCB) 창설(8)
3월 • Chemical Asia Ltd. 외 2개 외국 금융기관과 1억 2,6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 매각계약 체결(7)	• 재무부, 외환관리규정 개정(4) • 상공부,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을 확대 지정(5) • 한국은행, 용자규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산업설비금융 취급규정 개정(15)	• EC, 공적 ECU금리 인상 및 달러화의 중앙은행 간 스왑거래 허용 등에 합의(12) • 일본 대장성, 비거주자에 대한 유로엔 증장기대출을 허용(23) • GATT,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완화를 위한 15개항의 권고사항 발표(27)
4월 • 선수금관리요령 개정(8) • 대출승인절차규정 개정(19)	• 상공부, 수출동향 감시 및 사전예고제 실시방안 발표(1)	• 일본수출입은행, 원제품 수입자금금리를 7.2~7.5%에서 7.1%로 인하하고 통신기기 등 무역마찰 쟁점품목에 대해서는 6.8%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 • 파리를립, 폴란드·에콰도르·코스타리카·모리타니아가 요청한 채무재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리에서 회동(22)
5월 •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15) • 제18차 직제분과규정 개정(21)	• 金通委, 수출금융 달러당 용자금액 인상(2) • 한국은행, 내국신용장 취급규정 일부 개정(2) • 상공부, 235개 품목을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추가 지정(28)	• 일본 대장성, 은행에 대해 종합적인 금융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16) • 싱가포르 정부, 아시안 달러시장을 육성·강화하기 위한 우대조치 발표(16) • EC·중국, 5개년 경제협력협정에 조인(21)
6월 • 대출표시통화의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1)	• 한국은행, 용자규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수출산업설비금융 취급규정 일부 개정(14)	• 일본 정부, 일본개발은행의 수입체제정비용자조건을 1986년부터 개정하기로 결정(3)

연 표

輪 銀	국 내	국 외
• DG Bank 외 7개 외국 금융기관과 1억마르크 규모의 마르크화 채권 발행계약 체결(18) • 제36차 업무방법서 개정(26) •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직접대출 기본운 영규정 개정(26) •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지원제도 설명회 개최(28)		• IMF, 곡물수입자금 대여사업을 1989년 5월까지 연장(10) • 선진 10개국(G-10) 재무장관 회의,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21) • 미국 상·하원 합동위원회, 수출관리법안에 합의(28)
7월 • 정부출자 100억원 납입(20) • 대출취급규정 개정(26)	• 金通委, 외화여수산업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4) • 金通委, 수출금융 융자금액 인상 및 융자대상 확대(13)	• 중남미 14개국, IDB의 자회사인 미주투자회사(ICC)의 설립협정에 조인(9) • 77그룹 각료회의, 섬유·열대산품 및 농산품에 대한 관세장벽 제거에 합의(26)
8월 • 서독 KfW로부터의 2억마르크 규모의 전대차 관 도입계약 체결(16) • 대만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앞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19) • S.B.India Hong Kong Finance Ltd. 외 3개 외국 금융기관과 1억 1,300만달러의 연봉어음 매각계약 체결(28) • 본점 신축행사 준공(31)	• 재무부 증권관리위원회, 제2금융관금리 조정(7) • 상공부, 수출절차 간소화방안 발표(20) • 한국은행, 수출금융 융자취급세칙 일부 개정(30)	• EC, 16개 품목의 철강제품 대미국수출 쿼터를 1985년 중 47만 5,000純톤 이내로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1) • 페루 정부, 경제부흥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일련의 경제조치발표(1) • 일본 대장성, 일본이 가맹한 국제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제외안, 도쿄에서 발행되는 외화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20% 원천과세하기로 결정(12)
9월 • 제19차 직제분과규정 개정(10) • 국별경제요람 발간(16)	• 金通委, 외화여수산업부에 관한 규정 개정(5) • 경제기획원, 외채절감노력 강화방안 발표(6) • 한국은행, 수출산업설비금융 취급규정 일부 개정(13)	• 세계은행 상무이사회,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설립계획 승인(12) • 유럽통화단위의 결제제도 확립을 위한 ECU 은행협회(ECU Banking Association) 창설(17)

輸 銀

국 내

국 외

10월

- Draper 미국수출입은행 총재 일행 내방(10)
- 자메이카 수상 내방(12)
- 광주, 대구, 인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설명회 개최(23)

- 한국은행, 수출산업설비금융 취급규정 개정(8)
- 재무부, 외국인투자 인가지침 개정(12)
- 金通委, 포괄수출금융제도의 도입 및 수출금융관련 제반 규정의 정비(17)
-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 제정(29)

- 프랑스 재무성, 수출어음 기간제한 폐지(8)
- 미국 하원, 섬유류규제법안(젠킨스법안) 통과(10)
- IBRD/IMF, MIGA 설립을 위한 서울협약을 채택한 다음 제40차 연차총회 폐막(11)

11월

- 멕시코의 Banco National de Mexico 앞 전 대자금 공여협정 체결(5)
- 제20차 직제분과규정 개정(15)
- Chase Manhattan Asia Ltd. 외 26개 외국 금융기관과 1억달러 규모의 FRN 발행계약 체결(29)
- Chase Manhattan Asia Ltd. 외 3개 외국 금융기관과 9,000만달러 규모의 연불어음 매각 계약 체결(29)

- 해운항만청, 제10차 계획조선사업계획 확정(1)
- 재무부 증권관리위원회, 국내 기업의 주식관련 해외증권 발행 허용(12)

- 유럽자유무역연맹(EFTA), 핀란드의 정회원국 가입을 승인(4)
- 미국 상원, 섬유류수입 규제법안(더몬드수정안)을 통과(13)

12월

- Swiss Bank Corporation 외 15개 외국 금융기관과 5,000만스위스프랑 규모의 스위스프랑 화채권 발행계약 체결(20)
-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실시요령 개정(30)
-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30)
- 제38차 업무방법서 개정(30)

- 한국증권거래소, 채권매매제도 개편(17)
- 한국은행, 수출지원금융 사후관리에 관한 잠정 특례 개정(26)

- 방글라데시·인도·파키스탄 등 7개국 정상, 남아시아 지역협력의회(SAARC)를 정식으로 창설(7)
- 47개 개도국, 인도 뉴델리에서 新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13)
- IMF, 바스켓 구성통화의 통화단위수 조정(31)

1986

1월

- 이종통화대출취급 세부지침 제정(11)

- 동력자원부, 1986년도 에너지수급계획 발표(11)

- 스페인과 포르투갈, EC에 정식 가입(1)

輸 銀	국 내	국 외
• 류돈우 제5대 은행장 취임(13) • 수은 최초로 5,000만스위스프랑 규모의 스위스프랑화채권 발행(20)		• OECD, 공적수출신용에 적용되는 최저금리를 1.0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9) • GATT, 新라운드 협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제네바에서 개최(27)
2월 •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 대출취급규정 개정(6) • 수리남 중앙은행과 전대자금 공여협정 체결(6) • 인도전금융의 원화표시대출 취급기준(대상거래) 변경(17) • 예산운용요강 개정(28)	• 재무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설치(10) • 한국은행, 수출산업설비금융 취급규정 개정(28)	• 서독연방은행, 일련의 금융개방화 조치를 서독자본시장 소위원회에 제안(13)
3월 • 제4차 정관 개정(7) • 인도전금융의 원화표시대출에 따른 수은내국신용장 취급시행기준 제정(14) • 부산출장소를 부산지점으로 승격(18) • 수은내국신용장 취급규정 개정(18)	• 金通委,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및 대출금리 자유화(6) • 한국은행, 수출산업설비금융 취급절차 제정(7) • 재무부, 외국환관리규정 개정(15)	• 일본은행, 공정할인을 인하(7) • 미국 FRB, 공정할인을 인하(7) • 일본수출입은행, 달러표시 수출금융제도 도입 결정(18)
4월 • 해외투자정보지원센터 설치(1) • 회계규정 일부 개정(3) • 대이라크 수출어음보험 인수방침 수립(18)	• 재무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충방안 발표(3)	• 유럽통화제도(EMS), 제9차 통화조정 실시(6) • 일본수출입은행, 제품수입금융 특별금리를 현행 연 5.95%에서 5.70%로 인하(25)
5월 • 제21차 직제분과규정 개정(1) • 100만달러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계약 체결(29)	• 정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12) • 金通委, 중소기업의 시설재 수입을 위한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80%에서 100%로 인상(15) • 한국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자금으로 연이율 3%의 A2자금 6,844억원을 지원(30)	• 일본 대장성, 소액예금금리 자유화방침 확정(21)
6월 • 직무분석 실시(9)	•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금융결제관리원 발족(2)	• 일본 운수성, 조선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조선업계 축소 정비 방침 발표(21)

輸 銀	국 내	국 외
7월 • '한국수출입은행 10년사' 발간(1) • 제39차 업무방법서 개정(23) • 외화표시대출통화의 운용에 관한 지침 변경(23) • 해외투자사업 사후관리지침 제정(28)	• 상공부, 공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제정·공포(28) • 한국은행, 전신환매매율을 韓銀집중기준율 $\pm 0.25\%$에서 $\pm 0.45\%$로 조정(10) • 정부, 미국 통상법 301조와 관련된 韓·美 통상협상 일괄타결내용 발표(21)	• 일본수출입은행, 수입금융 확대 및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적극 지원 방침 확정(28) • GATT, 다자간 무역협상 준비위원회 개최(8) • 일본 대장성, 예금금리 자유화조치안 발표(9) • 미국 하원, 미국수출입은행의 영업활동 제한을 1988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이 기간 중 18억달러의 수출지원금융 공여를 허용(15)
8월	• 상공부, 한·미 섬유협상 타결내용 발표(5) • 재무부, 상업차관 도입 억제방침 마련과 도입기준 강화(7) • 金通委, 무역금융규정 개정으로 포괄금융 수혜대상 중소기업체 및 융자한도 확대(11)	• GATT 회원국들, 다자간 섬유협정의 5년간 연장에 합의(1) • 한·EC 섬유협정 타결(8) • 일본 통상성, 무역구조 전환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법 개정 결정(13)
9월 •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연구반 설치(12)	• 金通委, 무역금융개정으로 포괄금융 수혜대상 중소기업체 및 융자확대 한도(11) • 정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확정 발표(16) • 상공부, 서울국제무역박람회 개최(19)	• 일본 정부, 총 사업규모 3조 6,360억엔의 종합경제대책 발표(19)
10월	• 정부, 제2차분 산업기술향상 및 구조조정자금 운용지침 확정(15) • 金通委,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달러당 융자금액 인하 및 융자기간의 지역별 차별화 (30)	• 일본수출입은행, 해외합작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실시 결정(3) • 중국 정부, 외국 기업의 대중국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기업투자촉진규정 발표(11) • 국제결제은행, EMS의 강화방안 발표(23)
11월 • 선박수출계약서 및 어음매각계약서의 국·영문본 발간(12)	• 상공부, 대일 무역역조 개선계획(1987~1991) 수립(10)	• 일본, 미국과 대미국 섬유류 수출규모협정 체결(14)
12월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2)	• 대외무역법 제정(30)	• 일본 대장성, 동경 외화금융시장 개설(1)

輸 銀

국 내

국 외

- 경협기금 설립준비위 발족(26)
- 제3차 수은법 개정(31)

-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 기록(31)

- 미국 행정부, 농산물교역협상 실패에 따른 대 EC 관세보복조치 발표(30)

1987

1월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시 이사회 예외취급 기준 거래대상규정 상향 조정(27)
- 제40차 업무방법서 개정(30)
- 여유자금운용요강 제정(30)

- 상공부, 기계류 상품 및 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 발표(5)
- 金通委, 무역금융 달러당 융자단가 인하(12)
- 정부,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수정(15)
- 재무부, 코리아유럽펀드 설립인가(7)

- EC 재무장관 회의, 제11차 EMS환율 조정협약(12)
- 아프리카 산유국연합(APPA) 정식 발족(26)

2월

- 해외투자자금대출 및 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대출의 실행이율을 각각 1% 포인트씩 인하(1)

- 재무부, 해외투자상담센터 설치(3)
- 金通委,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하(12)

- 브라질 정부, 대외국 민간은행 채무 680억달러에 대한 이자지급 연기 발표(20)

3월

- 제2차 수은법 시행령 개정(9)
- 경협기금부 신설준비위원회 설치(14)

- 상공부, 주요 원자재 공급원활화 대책 발표(9)
- 코리아유럽펀드 설립(12)
- 한국은행, 차관 조기상환지원용 특별예탁실시(21)
- 경제기획원, 해외투자촉진방안 발표(25)

- 일본 대장성, 일본 국내에서의 미국 상업은행 증권자회사 설립 허용을 결정(11)

4월

- 예산운용요강 일부 개정(29)

- 재무부, 외국인투자자유업종 확대(6)
- 金通委,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달러당 융자단가 인하 및 수출산업설비금융 지원 축소(20)

- 미국 무역대표부, 일반특혜관세(GSP) 적용대상 조정(2)

5월

- 제5차 정관 개정(2)
-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심포지엄 개최(20)
- 수출거래에 대한 기술검토요강 개정(26)
- 수은내국신용장 수혜자에 대한 직접대출 실시 결정(27)

- 재무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방안 수립(11)
- 경제기획원, 공기업 민영화 대상기관 선정(14)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C와의 수출입절차 간소화를 규정한 협정에 조인(20)
- 일본 외무성, 채무개도국에 대한 향후 3년간 200억달러 규모의 자금공여 확대 발표(22)

輸 銀	국 내	국 외
6월 - 경협기금 업무개시(1) - 제22차 직제분과규정 개정(1) - Berne Union 연차총회 주최(8~13) - 황창기 제6대 은행장 취임(26)	金通委, 무역금융의 달러당 융자단가 인하(1)	일본 대장성, 일본 금융시장의 자유화·국제화 방안 발표(4)
7월 - 경협기금 업무 취급규정 제정(10) - 수출보증보험약관 개정(16)	- 재무부,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정(16) - 상공부, 기계류 상품 및 소재 국산화정책에 따른 품목별 개발계획 수립(23)	미국 상·하원, 은행법 개정안 의결(1)
8월 예산운용요강 개정(8)	- 金通委, 무역금융의 달러당 융자단가 인하(6) - 재무부, 해외투자 허가절차의 완화 및 해외부동산개발사업에의 지원 확대(27)	일본 통산성,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수입 및 해외투자 보험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11)
9월 경협기금 업무 관련 최초의 출장 ; 지원 적정에 상 4개국 6개 사업에 대한 정부실무조사단 파견에 참가(19)	재무부, 금융선물환제도 개선(7)	
10월 '국별투자환경' 단행본 발간(15) - 연수규정 제정(16)	- 재무부,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실시 및 관세율 인하(14) - 金通委, 무역금융의 달러당 융자단가 인하(29)	뉴욕 증시의 주가폭락으로 연쇄적인 주가파동 발생(19)
11월 - 제42차 업무방법서 개정(12) - 플랜트 수출자금 집행기준 개정(13) - 제6차 정관 개정(17) - 이종통화대출 세부지침 개정(26)	- 재무부, 중소기업 대출의무조항 신설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준칙 개정(20) - 재무부, 외환관리 자유화 확대 및 해외투자 활성화 최방안 발표(23)	- 미국·유럽 주요국, 주가폭락에 대응하여 주요 국제금융 협조인하조치 단행(4) - 포르투갈, EMS의 1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10)
12월 - 광주출장소 개소(1) - 외국은행과의 환거래계약에 관한 요강 개정(15)	정부, 현행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개편(4)	G7, 선진국간의 경제정책 협조의 지속을 다짐하는 공동성명 발표(23)

輸 銀

국 내

국 외

- 국외사무소 업무요강 개정(28)
- 중장기 업무발전계획 수립(30)

- 무역금융의 달러당 용자단가 인하(29)

1988

1월

- 홍콩 현지법인 설립준비위 설치(9)
- 수은 자금 우선지원지침 개정(18)
- 1984년에 도입한 50억엔 규모의 엔화채권 조기 상환(30)

- 재무부, 콜시장 전면 개편(26)
- 재무부,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안 수립(27)

- 대만 정부,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무역5개년계획(1988~1992) 발표(11)
- 미국 무역대표부,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GSP 졸업 확정 발표(29)

2월

- 제23차 직제분과규정 개정(22)

- 재무부, 중소기업 등 주식의 장외거래 활성화방안 확정(2)
- 재무부,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자원 폐지(6)

-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 금융제도 개편에 관한 보고서 제출(10)

3월

- 수출보험조사부 신설(1)
- 제43차 업무방법서 개정(5)
- 수입자금대출 승인절차규정 및 지원지침 제정(22)
- 수출보험제도 설명회 개최(26)

- 재무부, 계열기업군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 강화(17)
- 재무부, 외환관리 자유화방안 수립·발표(3.25. 시행)(19)

- 미국 상원, 은행의 증권업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근대화법안 의결(27)

4월

- '주간수은뉴스'를 '주간해외투자정보'로 개편(4)
- 대출취급규정 개정(8)
- 해외투자상담실 설치(11)
- 기업체 신용평가기준 제정(13)

- 상공부, 대외무역관리법규 개정(4)
- 경제기획원, 제8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정지침 발표(11)

- 중국, 회사법 제정(13)
- 미국 의회, 종합무역법안 의결(27)

5월

-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 통할규정 제정 및 자금운용 업무 통할지침 수립(17)

- 재무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확정(11)

- 일본, 신경제 5개년계획 발표(23)

輸 銀	국 내	국 외
• 수입자금대출 승인절차규정 및 수입자금지원지침 개정(27) • 황창기 은행장, Berne Union 연차총회 참가(30~6. 4)	• 상공부, 수출절차 간소화(14)	
6월	• EIC(수출신용보험위원회) 워크샵 참가(7~9) • 재무부, 코리아유럽펀드 증자 승인(8) • 재무부, 관세징수유예제도 완전 폐지(10. 1 시행)(27) •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회사채 지급보증한도 확대(28) • 재무부, 외국환관리규정 일부 개정(30)	• EC 재무장관 회의, 역내 자본이동 자유화에 합의(13)
7월	• 대출실행이율 변경(15) • 해외 부동산투자 전면 허용(5) • 경제기획원,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수정계획 확정(30)	• 국제결제은행,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국제통일기준 합의(1)
8월	• 홍콩 현지법인(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개점(1) • 경제기획원, 최초의 정부간 협정 체결 ; 인도네시아 파당市 도로건설 프로젝트(10) • 해외투자정보센터 발족(15) • 재무부, 금리자유화 추진 실행계획 수립(29)	• 미국, 새로운 중합무역법 발효(23) • 일·중 투자보장협정 체결(26) • IMF, 확대금융보상제도의 신설 승인(29)
9월	• 용자기간 예외취급규정 폐지(16) • 신용보증서 담보부대출 취급처리지침 제정(16) • 제44차 업무방법서 개정(21) • 대출승인절차규정 개정(22) • 재할인금리 인상(2) • 재무부, 국민투자기금개편(안) 및 1989년도 조달 및 운용계획(안) 확정(9) • 경제기획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계획 수립(28)	• 미국 정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법안에 서명(28)
10월	• 영남지역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13~14) • 경제기획원, 대북한 경제개방조치 발표(8) • 재무부,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역업 전면 개방(15) • 재무부, 외환관리제도 개선(21)	• EC 위원회, 생명공학·지적소유권 보호지침안 채택(6) • 미국 재무부, 한국과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24)

연 표

輸 銀

국 내

국 외

11월

- 해외투자 상담실적 1,000건 돌파(11)
- 해외투자연구소 설립(15)
- 中·蘇·東歐圈 해외투자 세미나 개최(24)

- 재무부, 단기금융시장 발전방향 마련(2)
- 재무부, 국제투자신탁회사 설립방안 확정(24)
- 한국, IMF 제8조국에 가입(29)

- OPEC, 제84차 정기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산유량 상한 및 공식 판매가격 등에 관한 생산협정에 합의(28)

12월

- 제3차 수은법 시행령 개정(31)

- 재무부,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 수립(1)
- 재무부, 금리자유화 및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 개편계획 수립(1)
- 상공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31)

1989

1월

- 선수금관리요령 개정(6)
- 선박건조자금 집행기준 개정(9)
- 플랜트 수출자금 집행기준 개정(9)
- 종합평정규정 개정(31)

- 정부, 남북한간 첫 구상무역 승인(30)

- 브라질 정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물가와 임금을 무기한 동결하고 현행 크루제이도貨에 대해 17% 평가절하 단행(15)

2월

- 수출보험 신용조사규정 개정(1)
- 해외투자자금 지원지침 제정(10)
- 위임전결규정 개정(27)
- 100만달러 이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운영위 의결절차 폐지(28)

- 한국은행, 금융기관 신설 허용방안 발표(1)

- 일본 통산성, 대개도국 경제발전과 누적채무 문제 해결의 지원을 위해 4월부터 대개도국 무역보험을 재개하기로 결정(6)
- 알제리·리비아·모로코·튀니지·모리타니 등 북아프리카 5개국, 마그레브 동맹(Magreb Union)의 출범을 공식 선언(17)

3월

-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조약정 체결(7)
- 제7차 정관 변경(13)
- 해외투자 허가 및 신고수리업무 취급지침 제정(22)

- 상공부,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 개정 고시(23)
- 상공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5)

- 대만 중앙은행, 미국의 대만달러貨 절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 자유화조치 발표(27)

輸 銀	국 내	국 외
• 헝가리 Investcenter/Tradeinform과 투자정보교환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23)		
4월 • 제45차 업무방법서 개정(3) • 해외투자자금 지원대상 사업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원범위 확대(3) • 과도기 중소기업 앞 대출이율 적용기준 설정(28) • 대출승인절차규정 개정(28)	• 재무부,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 발족(11) • 한국은행,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개정(20)	• GATT, 제네바 UR 회의에서 농업보호·지적 소유권 보호·섬유무역·긴급수입제한조치 등 4대 현안사항 타결(8)
5월 • 전대자금대출 기본운영규정 및 직접대출 취급 규정 개정(1) • 해외 현지법인 자금운용 업무 통합지침 개정(18) •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에 대한 경험 기금차관 공여계약 체결(29)	• 한국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재할인지원 확대(25) • 재무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폐지(29)	• 미국 무역대표부, 종합무역법 제30조에 따라 일본, 인도, 브라질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발표(25)
6월 • 국별신용도 평가 및 여신한도 관리규정 개정(2) • 북방 제국과의 경제교류 촉진기관인 국제민간 경제협의회(IPECK)에 가입(15) • 경험자금 지원대상 사업의 사전구매 및 소금금 융 지원지침 제정(22) • 국별신용도 평가 및 여신한도 설정방법 개정(27)	• 金通委, 외화여신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1) • 상공부, 3개년 수입자유화계획(1989~1991) 확정(2) • 정부, 외환시장 육성방안 발표(28)	• 미국 조선업협회(SCA), 한국·서독·일본·노르웨이 4개국의 조선분야에 대해 USTR에 불공정무역 제소(8)
7월 • 해외투자자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별심사에 관한 기준 제정(15) • 수출보험약관 및 수출보험 사무처리규정 개정(27) • 인도전금융 채권보전을 위한 양도담보물건 공시방안 수립·시행(31)	• 한국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무역어음의 인수·할인 및 매출업무 취급 허용(20) • 한국은행, 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 발족(27)	• 대만 의회, 대출금리의 자유화 및 민간은행의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하는 新은행법 가결(11)

輸 銀

국 내

국 외

8월

- 대출취급규정 개정(1)
- 여신관계약정서 운용지침 제정(14)
-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제도 도입(16)

- 한국은행, 무역금융규정 일부 개정(3)
- 한국은행,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한도제 보완(4)
- 상공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205개에서 237개로 확대(30)

- 일본 정부, ODA를 종래의 프로젝트 차관 위주에서 프로그램 차관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22)

9월

- 수은내국신용장 및 외국환업무 관련 약정서식 정비(5)
- 해외투자 신고수리 업무 취급 개시(15)
- 인도네시아 파당市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경험기금차관 공여계약 체결(19)

- 정부, 단계별 환율제도 개편계획 발표(1)
- 정부, 외환은행의 대고객환율 자율화 및 외환시장 활성화조치 시행(20)

- 미국·일본·EC 등 24개국, 폴란드와 헝가리의 민주화 개혁을 위한 후원국 회의에서 1990년에 3억달러 이상의 신규 원조금을 제공하기로 합의(26)

10월

- 수출입금융채권규정 제정(20)

- 한국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평균 달러당 융자단가를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28)

- 서유럽 주요국 중앙은행들, 재할인율 등 주요 공금리를 일제히 인상(5)

11월

- 수출입금융채권규정 시행요강 제정(9)
- 대출취급규정 개정(17)

- 재무부,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거래 운용지침 개정(23)

-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대표들, 호주의 캔버라에서 제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회의)의 개최 및 이의 정례화에 합의(6)

12월

- 파리사무소 개소(1)
- 제8차 정관 개정(16)
- 경험기금 관리운용규정 개정(26)
- 선박건조자금 집행기준 개정(30)

- 재무부, 자동인가대상 외국인투자 금액 상향 조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축소 조정(27)

- 미국, 국별쿼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강무역 자유화계획 시행법 확정 발표(12)

1990

1월

- 해외투융자자금대출 관련양식 개정(23)

- 한국은행, 대기업 여신관리제도 개편(13)
- 재무부, 외환관리규정 일부 개정(30)

- 일본 외무성,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이후 중단된 대미 경제협력 및 엔차관 공여를 1990년부터 재개하기로 중국과 합의(19)

輸 銀

국 내

국 외

2월

- 기계류 등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취급지침 제정(2)
- 직제분과규정 개정(21)
- 신용대출 취급지침 제정(28)
- 외국인 대고객매매율 결정지침 일부 변경(28)

- 재무부, 외환집중제 개선방안 발표(5)
- 한국은행, 노사분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준 제정(28)

- 소련 공산당,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기능적으로 결합한 경제체제로의 이행과 정치민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강령 채택(7)

3월

- 홍콩 현지법인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21)
- 경협기금 지원업무 취급규정 개정(23)
- 홍재형 제7대 은행장 취임(28)

- 시장평균환율제도 시행(2)

- 서독연방은행, EMS하의 유럽환율조정장치(ERM) 가입을 유보할 것이라고 발표(28)

4월

- 수출보험 활성화 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10)

- 경제기획원,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4)

- 일본 대장성, 향후 3년 이내에 예금금리완전 자유화하기 위한 단계적 예금금리 자유화 일정 발표(17)

5월

- 1억 500만 ECU의 외화채권 발행계약 체결(11)
- 선수금관리요강 폐지(17)
- 수입자금 지원지침 개정 ; 수입신용장 개설 및 신용취급 근거 신설(25)
- 전국종합신용평가(주)에 2억원 출자(30)

- 경제기획원,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8)
- 증권시장안정기금 발족(4)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회원국들, 동유럽의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同 은행의 설립협상을 완료하고 설립협정문에 조인(29)

6월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급시 대출취급 근거 신설(7)
- 수출목적물 인도지연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승인기준 제정(12)
- 외국환업무 관련수수료 취급요강 제정(19)
- 수출보험 인수규정 개정(26)

- 한국은행, 상업어음 할인 및 재할인 취급세칙 개정(12)

- COCOM,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수출규제의 대폭 완화에 합의(6)
- EFTA, EC와의 경제적 통합체인 EES의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 채택(14)
- 싱가포르 국제금융거래소, 아시아에서 최초로 油價先物 취급 개시(21)

7월

- 전대자금 국별 여신한도 폐지(15)
- 전대자금 차주별 여신한도 폐지(16)

- 한국은행, 무역금융제도 일부 개편(5)

- 미국 상원, 섬유제품 수입규제법안 가결(17)

輸 銀

국 내

국 외

- 제46차 업무방법서 개정(16)
- 예산운용요강 일부 개정(30)

8월

- 수입자금 이자징수방법 변경(8)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수출보험 인수 전면 중단(16)
- 해투자금 대출심사 청구서류 간소화방안 수립(16)
- 홍콩 현지법인 자본금 500만달러 증자(30)

- 재무부, 관세제도 개편방안 발표(6)
- 한국은행, 1990년도 주요 시설회 수입자금 및 해외투자자금 특수외화대출제도 개선(28)

- 일본 외무성, 체코·불가리아·동독·유고 등 동구 4개국에 대해 총 2,500만달러의 경제협력차관 제공 결정(5)

9월

- 외국환업무 관련수수료 취급요강 개정(19)
- 기계류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내국신용장 개설 수수료 인하(19)
- 선수금환급보증 취급시 대체료 인하(19)
- 1억달러 규모의 FRN 발행(21)

- 경제기획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발표(4)
- 통영원, 남북한 교역대상품품 반출입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25)

10월

- 업무전산화 중장기 계획 수립(22)
- 수출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수출보험간담회 개최(23)

- 한·소 국교수립(1)
- 한국, OECD 조선부회 정회원국 가입(17)
- 경제기획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 발표(26)
- 재무부, 특별외화대출제 폐지(27)

- 동·서독 통일(3)
- 미국 상원, 대미국 금융시장 미개방국가에 대해 미국에서의 금융업활동을 제한하는 금융서비스 공정거래법안 가결(3)

11월

- 해외투자자금 지원지침 개정(17)
- 해외투자자금 대출심사기준 제정(23)

- 한·헝가리, 쌍무 관세인하 최종 합의(17)
- 한·소련,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23)

- EC 농업장관 및 무역장관들, UR 농산물협상에 제출할 농업보조금 삭감안 최종 확정(13)

12월

- 런던 현지법인 설립내인가 취득(11)
- 소련대외경제은행과 기본협정 체결(14)
- 한국은행과의 외화자금 예치거래약정 체결 및 외화예치금 운용지침 수립(29)
- 남북협력기금법 제정(31)

- 한국은행, 외화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세칙 개정(17)

- GATT, 우부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위한 최종 각료회의 개최(3)

輸 銀

국 내

국 외

1991

1월

- 제27차 직제분과규정 개정(25)
- 위임전결규정 개정(25)

- 재무부, 외자도입법 개정(14)
- 정부, 외화대출제도 개편(1)

- EC, 가격지지 축소와 소득보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EC 공동농업정책 개혁안 마련(17)
- 대만,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계획을 최초로 공식 승인(28)

2월

- 해외투자자금 융자비용 인하(5)
- 제9차 정관 개정(13)
- 인도네시아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차관공여계약의 차관한도 수정(28)

- 정부, 외자도입법 개정(12)
- 정부, 수출입 공고 개정(13)

- 미국, 은행산업 규제완화 및 예금보험제도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제도 개혁안 발표(5)
- 독일, 舊동독지역에 대한 10개항의 경제지원대책 발표(15)

3월

- 소련대외경제은행과 원료 및 소비재차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1)
- 국내 최초 역이중통화표시채권 발행(8)
- 남북기금부 설립(22)
- 수은 장기발전방안 수립(31)

-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SWIFT에 가입(13)
- 정부,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확정(14)
- 정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정(3)
- 정부, 여신관리 개편안 확정(28)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파라과이 4개국, 공동시장 창설을 위한 '아순시온 조약' 체결(26)

4월

- 유로시장에서 1억 2,000만달러의 신디케이트론 도입(12)
- 여신관련약정서 개정(13)
- 소련대외경제은행과 8억달러 규모의 전대차관 공여협정 체결(16)
- 모스크바사무소 개소(22)

- 한국은행, 여신관리제도 개편(6. 1. 시행)(4)
- 정부, 남북분단 후 첫 남북간 직교역 승인(10)

5월

- 수은 최초로 2억달러 규모의 양키본드 발행(1)
- 일본에서 400억엔 규모의 제2차 사무라이 본드 발행(20)
- 대소련 원료 및 소비재차관 취급지침 제정(24)

- 재무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제도 개선(2)
- 상공부, 수입선다변화품목 조정(13)
- 경제기획원, 한 · OECD 협력증진방안 발표(21)
- 재무부,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 마련(27)

- 미국, 종합무역법의 일괄심의를위한(Fast Track Authority) 2년 연장(24)

輪 銀

국 내

국 외

6월

- 이광수 제8대 은행장 취임(5)
- 제47차 업무방법서 개정(10)
- 부산지점의 수입신용장 취급업무 개시(13)
- 100억엔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28)

- 재무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대책 발표(13)
- 재무부,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한 1단계조치 발표(27)

- 미국·캐나다·멕시코, 토론토에서 NAFTA 창설을 위한 제1차 각료회의 개최(12)
- 일본 대장성, 은행창구 指導를 3/4분기부터 폐지(26)
- COMECON, 제46차 부다페스트 회의에서 해체됨(29)

7월

- 수출자금대출 연봉기간 설정기준 제정(2)
- NatWest은행 앞 4,100만달러 규모의 보유 연 붙어음 매각(13)
- 유료시장에서 1억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도입(16)
- 미국 SEC에 10억달러 규모의 채권 일괄등록 완료(26)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국제화부문 계획 발표(1)
- 외환시장 활성화 1단계 조치(1)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금융부문 계획 발표(4)
- 한국은행,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및 세칙 개정(4)

- ASEAN,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을 ASEAN의 7번째 협상대상국(dialogue partner)으로 발표(18)
- 콜롬비아·멕시코·베네수엘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18)

8월

- 직제분과규정 개정(1)
- 7억달러 이내의 U.S. MTN 발행 프로그램 설정(7)
- 위임전결규정 개정(30)

-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24)
- 한국은행, 주력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제정(28)
- 재무부, 은행의 1일 환율변동폭을 $\pm 0.6\%$ 로 확대하는 등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외환관리제도 개선(31)

- EC, 구소련이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4억ECU 규모의 기술원조를 제공하기로 구소련측과 합의(2)

9월

- 직접대출 및 전대자금대출 기본운영규정 개정(3)
- 직접대출 및 전대자금대출 취급규정 개정(20)

- 남·북한, UN에 동시 가입(17)
- 상공부, 국제수지 개선과 기계류 국산화 촉진대책 발표(19)
- 증권관리위원회,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정(30)

- 미국, 발트 3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자격부여, UN가입 지지 등 발트 지원책 발표(11)
- 대만 정부,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24)

10월

- 대소련 소비재차관 제공 관련 지급보증서에 대한 소련 총리의 보장각서 징구 및 소비재차관 개발 융자승인 개시(28)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의 수신 및 외국환거래표준약관 개선안 확정(18)

- 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 동아시아 경제력 협회의 결성 등 역내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8)
- EC와 EFTA, 1992년 말까지 두 시장을 통합한 유럽경제지역(EEA) 창설에 합의(22)

輸 銀

국 내

국 외

11월

- 제30차 직제분과규정 개정(1)
-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 특약 및 협약의 개정(1)
- 해외투자자금 심사기준 개정(18)
- 최초의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 발행(28)

- 정부,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발표(11)
- 정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확정 발표(12)
- 재무부, 제1단계 금리자유화조치 시행(21)
- 한국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달러당 융자단가 인상 (21)

- 독일, 1993년 1월부터 채권·은행예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제도 도입(12)

12월

- 수출보험요율 변경(1)
- 대소련 소비재차관 자금집행 개시(2)
- 연수원 증축공사 기공식(2)
- 자카르타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 체결(5)
- 회계규정 일부 개정(31)

- 재무부, 외화반출입제도 개정(18)
- 한국은행, 무역금융 융자대상 비계열 대기업의 범위 확대(19)
- 재무부, 물시장 운용방안 발표(25)

- 중남미 Rio Group 13개국, 제5차 정상회담에서 오는 2000년까지 역내 경제통합 완료 등을 골자로 하는 '카르타헤나 선언' 채택(3)
- 미국, 국민소득계정의 중심지표를 GNP에서 GDP로 변경하고 기준년도를 1982년에서 1987년으로 변경(4)
- 소비에트연방 해체 선언(8)
- EC 회원국들, 마스트리히트에서 재무장관 회담을 갖고 유럽동맹조약의 체결에 합의(10)

1992

1월

- 특수지역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방침 수립(3)
- 여신관련 제반 규정 정비(21)

- 한국은행,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상향 조정(9)
- 정부,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 확정(25)

- EU 공식 출범(1)
- 우크라이나, 수출입은행 신설(16)
- 미국 상무부, 1991년 중 실질GDP성장률이 -0.77%로 1982년 2.2% 이래 9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29)

2월

- 공직의식 고취 특별교육 실시(21)

- 한국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제조업대출 지도비율 상향 조정(1)
-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여신금지부문 확대(20)

- 영국, 1991년 중 GDP성장률이 -2.5%로 1981년 -1.1%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21)

3월

- 선수금환급보증 취급대상 확대(3)

- 재무부, 외국인투자 환산화방안 수립(3)

-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공정거래법안 가결(4)

輸 銀	국 내	국 외
• 일본 자본시장에서 100억엔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12) • 제31차 직제분과규정 개정(31)	• 재무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5) • 정부, 금융개방 1단계계획 확정(27)	
4월 • 루마니아에 대한 최초의 전대자금 공여(21) • 베트남 투자세미나 개최(31)	• 재무부, 1단계 금융자유화 및 개방시행계획 발표(2) • 한국은행, 은행의 CD 발행한도 확대(24)	• 독일 의회, 이자소득에 대한 25% 원천과세법안 승인(8)
5월 • 일본수출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4) • 회계규정 개정(19) • 러시아연방 정부와 보증채무 승계 및 경험 제가에 관한 원칙에 합의(22)	• 정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 활성화방안 확정(1) • 한국은행, 중소 제조업체간 거래상업어음 재할인기간 연장(21)	• EC 농업장관회의, 역내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 합의(21)
6월 • 자카르타 현지법인(수은안니금융) 개점(1) • ALM 위원회 구성(17) • 대구지점 개점(30) • 제10차 정관 개정(30)	• 재무부, 제2단계 금융자유화 및 개방계획 확정(29) • 재무부,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간소화방안 확정(29)	• 일본 의회,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금융기관간 상호 업무진출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제도 개혁 관련법안 가결(19)
7월 • 수출보험공사 독립(1) • 제1차 ALM 위원회 개최(2) • 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7) • 런던 현지법인(수은영국은행) 개점(15)	• 재무부, 보험시장 개방현안에 대한 자유화방안 수립(1) • 은행의 1일 환율변동폭 확대(1) • 경제기획원, 경제행정규제완화 종합대책 확정(16) • 정부,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정(30)	• 대만 의회, 중국 본토와의 인적교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국 교류 관련법안 가결(16) • EC 재무장관들, EC 회원국간 세제통합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하한율 15%로 합의(27)
8월 • 제32차 직제분과규정 개정(21) • 경영혁신추진본부 구성(22)	• 재무부, 증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24) • 재무부,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 확정(28) • 재무부, 해외직접투자 지침 마련(28)	• 미국·캐나다·멕시코, 워싱턴에서 3국 통상대표 회담을 개최하고 NAFTA 체결을 위한 기본 내용에 합의(12) • 미국수출입은행, 러시아에 1억 200만달러 규모의 차관보증 제공(28)

輸 銀

국 내

국 외

9월

- 멕시코시티사무소 개소(15)
- 약정수수료 징수유예기간 설정(15)

- 정부, 자본시장 발전 5차년계획 추진을 발표(22)

- 미국·멕시코, 이종과세 및 탈세방지 협정체결(18)
- 영국 정부, 유럽 외환시장의 혼란 가중으로 EMS내 ERM(유럽환율조정장치) 일시 이탈 발표(21)

10월

- 위임전결규정 개정(16)

- 수출신용보증제도 도입(14)
- 한국은행, 외화여수산업무에 관한 규정 및 세칙 개정(15)
- 재무부, 설비자금 공급 원활화대책 발표(20)
- 재무부, 외국인투자제에 관한 규정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개정(28)

- 중국, GATT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서 제출(21)

11월

- 호치민시티사무소 개소(9)
- 대소련 소비재차관 기승인분 4억 7,300만달러에 대한 자금집행 완료(9)
- 한국외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24)
- 대소련 소비재차관의 대출조건 변경승인(30)

- 재무부, 금융채 발행금리 인하(6)
- 국회, 외자도입법 개정(11)

- 중국,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자유화 계획 발표(22)

12월

- 제11차 정관 개정(4)
- 회계규정 개정(22)

- 재무부,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23)
- 재무부, 외국인투자절차를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26)

- ASEAN, 공동특혜관세 실시방안을 확정하고 199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11)
- 중국, 대북한 무역거래시 硬貨決濟 요구방침 발표(22)

1993

1월

-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변동금리부 방식 도입(13)
- 주요 자원 및 원자재의 원화수입자금 대출금리 1% 포인트 인하(26)

- 한국은행, 외자대출 용자대상을 모든 제조업 시설로 확대하고 연간한도제 철폐(8)
- 상공부, 3단계 유통시장 개방안 발표(1993. 7. 시행)(19)

- 인도·태국·말레이시아, 3각 경제협약 체결(19)
- 일본,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공동채권 매입회사 발족(27)

輸 銀	국 내	국 외
2월 • 북경사무소 개소(1) • 한국외환은행, 일본장기신용은행 등 국내외 4개 은행과 공동으로 중국농업은행에 대한 1,900만달러의 협조융자계약 체결(3)	• 한국은행,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개정(8)	• 일본, 1992년 중 무역수지 흑자가 1,176억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초로 1,000억달러를 돌파하였다고 발표(5)
3월 • 폴란드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5,000만달러 규모의 경협기금차관 공여 결정(3) • 제4차 수은법 시행령 개정(6) • 필리핀개발은행(DBP)에 500만달러 규모의 전대차관 제공 결정(11) • 범무정보시스템 개발(15)	• 한국은행, 중소기업 외화대출 지원을 위한 특별창구 개설(31) • 재무부, 기업의 외화표시증권 발행규제 완화, 해외증권투자 범위 확대 등 외국환관리규정 개정(31) • 정부, 신경제 100일계획 수립(22)	• EC와 EFTA, 스위스를 제외한 EEA를 창설하는 수정조약에 서명(18) • 독일연방은행, 재할인율을 8.0%에서 7.5%로 인하(19)
4월 • 김영빈 제9대 은행장 취임(1) • 연불수출금융 여신한도의 폐지 및 새로운 국별 여신관리제도 시행(1)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협조융자 기본협정 체결(26)	• 한국은행,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부동산담보 취득제한 완화 등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개정(1) • 재무부, 수익률 즉시공시체제 구축 및 달러제 도입 등 공채시장 발전방안 발표(8)	• 일본, 대장성, 공공투자 확대 및 민간설비투자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총 13조 2,000억엔의 긴급 종합경제대책 발표(13) • 미국수출입은행, 러시아 석유산업에 20억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15)
5월 • 2억달러 규모의 양키본드 발행(19) • 창원용자상담소 개소(25) • 파키스탄 정부와 1,000만달러 규모의 경협기금차관 공여계약 체결(25)	• 재무부, 금융기관의 공공기금 운용지침 폐지(1) • 재무부,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부문 개혁안 발표(26) •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BEC) 서울총회 개최(24)	• 미국, 발행국채의 만기구조를 단기화하는 국채 만기구조 개편계획 발표(5)
6월 • 경협기금 지원 심의대상 사업을 현행 1,0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달러 이상으로 조정(3) •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금리 4% 포인트 인하(17) • 수입자금 대출표시통화를 원화에서 외화로 변경(17)	• 정부,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시책의 기본방향 확정(11) • 재무부,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 발표(22) • 재무부, 제3단계 금융자유화 및 시장개방안 발표(30)	• 중국, 외환조절시장의 가격상한선 폐지(1)

輸 銀	국 내	국 외
7월 부산, 대구, 광주, 창원 소재 지점 및 출장소에 해외투자상담센터 설치(1)	- 상공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 - 정부, 신경제 5개년계획 확정 발표(2)	- G7 정상회담, 일본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 개선 촉구를 골자로 한 경제선언 발표(9) - 러시아중앙은행, 1993년 이전에 발행된 루블貨 지폐의 통용을 전면 중단한다는 화폐개혁 조치를 전격 발표(24)
8월 20개 개도국의 연수단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설명회 개최(27)	금융실명제 실시(12)	- EU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 유럽환율조정장치(ERM)내 통화들의 환율변동폭 확대에 합의(1) - 러시아중앙은행, 루블貨 평가절하 등 제2의 통화개혁 조치 발표(5) - 미·캐나다·멕시코, NAFTA 보완협정 타결(14)
9월 - 中美경제통합은행(CABEI)에 5,000만달러 규모의 전대자금 공여 결정(17) - 역외금융 업무 취급 개시(20) - 상파울루사무소 개소(24) - 브라질 BFB은행과 1,000만달러 규모의 전대자금 공여계약 체결(25)	- 정부, 금융실명제 후속조치 발표(24) - 재무부, 외국환관리규정 개정(28) - 상공자원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발표(28)	이스라엘·PLO, 평화협정에 서명(13)
10월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업무협약 체결(26)	- 상공자원부, 30대 그룹의 업종전문화 시책 발표(27) - 재무부,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발표(28)	- ASEAN 경제각료회의, ASEAN자유무역지대(AFTA)의 창설을 위해 1995년부터 관세인하에 합의(8) - 일본, 러시아에 2억달러 규모의 수출신용자금 지원 결정(8) - 일본, 경상수지 흑자환류차원에서 주요 선진국에 대한 일본수출입은행의 장기자금 지원 결정(10)
11월 - 터키와 몽골에 대한 각각 1,500만달러와 520만달러 규모의 경험기금차관 공여계약 체결(6) - 전대자금 기본운영규정 개정(30)	정부,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세부 시행방안 확정(25)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1) - GATT, UR 협상의 분야별 합의문을 취합한 최종의정서를 승인(15)

輸 銀	국 내	국 외
12월 • 중국은행(Bank of China)에 5,000만달러 규모의 전대자금 공여 결정(4) • 방글라데시 정부와 1,400만달러 규모의 경험 기금차관 공여계약 체결(10) • 중국공상은행(ICBC)과 1,000만달러 규모의 전대자금 공여계약 체결(23)	• 재무부, 해외직접투자 엄중제한 완화(7) • 韓·美 금융분야 협상 합의(13) • 은행감독원, 11~30대 그룹에 대한 주거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도 폐지(27)	• EU 12개국 및 EFTA 6개국(스위스 제외), 역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유럽경제지역(EEA) 협정 비준(22) • UR 협상 타결(5) • 일본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대상 대리대부제 신설 결정(9)
1994		
1월 • 해외 건설공사업체당 지원한도 1억달러로 확대(1) • 전대자금 차주별 여신한도 폐지(1)	• 은행·증권·보험감독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에 관한 특별기준 제정(14) • 재무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해외차입 제한 완화(15) • 외환·금융부문 무역업무자동화(EDI)방식 개시(25) • 재무부, 현자금용에 대한 한도제한 폐지(28)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공식 출범(1) • 유럽통화기구(EMI),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반쪽, 프랑크푸르트에서 창립총회 개최(11)
2월 • 위성탐사무소 개소(1) • 중소기업 신용대출제도 도입(15) •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한 수산물 부품 제작자금 융자제도 신설(18) • 제12차 정관 개정(28)	• 재무부, 해외직접투자 확대금 위한 통첩 시행(28)	• WTO, 남북한 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3)
3월 • 수은내국신용장 취급규정 개정(1) • 중소기업 앞 금융기관 지급보증부 대출절차 간소화(21)	• 정부, OECD 가입 추진일정 발표(15)	•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정식 발효(21)

輸 銀	국 내	국 외
- 표준융자협정서 내용 간소화(24) - 신용대출 취급규정 제정(29)		서방 국가들, COCOM 해체에 대처할 국제기구를 10월까지 창설하기로 합의(30)
4월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직접대출제도 도입(1) - 창원융자상당소, 창원출장소로 승격(2) -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기본운영규정 제정(4) - 제49차 업무방법서 개정(4)	증권예탁원 개원(25)	- 중국 정부, 정책금융 전담기관으로 국가개발은행(The State Development Bank)을 신설(13) - UR 무역협상위원회 각료회의, UR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담은 최종의정서에 서명(15) - 중국 정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수출입은행을 신설(27)
5월 - 여신종합시스템 가동(1) -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외화대출 취급 개시(10) - 아르헨티나 국영투자은행과 업무협약 체결(16) -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대출요강 개정(28)	- 정부, 1995~1997년간 총 5조 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동화설비자금 지원을 결정(13) - 한국증권업협회, 해외증권 발행물량을 기업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배정(20)	일본 통상성, 수출입거래법 등 9개 법률 개폐(18)
6월 - 전대자금 표준계약서 개정(9) - 북한 경제·투자정보 조사반 발족(20)	-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업무를 개별 외국환은행으로 이관(2)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 확정(10)	일본, 무역보험액 인수한도 인상(20)
7월 - PC통신을 이용한 해외투자정보시스템(OIIS) 서비스 제공 개시(1) - 보증승인절차 간소화(5)	정부, 제3단계 금리자유화 부분적 조기 시행(18)	- OECD 조선헌상, 피해가격제 도입 결정(19) 20여개 중미국가 및 카리브해 연안국가들, 자유무역연합 창설에 합의(24)
8월 2억달러 규모의 FRN 드래곤본드 발행(30) - 근거리 통신망인 핸드오피스 2.0 도입(30)	- 재무부, 1994년도 세제개편안 및 관련 12개 세법 개정안 마련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 공시요구제도 도입(18)	- 러시아, 경험차관을 자국산 무기와 현물로 상환하기로 결정(3) - 일본 경제기획청, 개도국 경제원조지침 확정(29)

韓 銀

국 내

국 외

9월

- 뉴델리사무소 개소(1)
- 자금종합시스템 가동(1)
- 1억달러 규모의 은행차관 도입(9)

- 정부, 대북투자보증금을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1)
- 은행법 개정안 발표(9)

- EU 위원회, 한국산 주요 공산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의 공여를 1997년부터 중단하기로 확정(7)

10월

- 문헌상 제10대 은행장 취임(4)
-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승인 업무 개시(19)
- 수입자금 운영계획 변경(28)

- 재무부,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발표(12)

- 일본 정부,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국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10년에 걸쳐 추진될 6조 3,000억달러 규모의 공공개발계획을 승인(7)

11월

- '북한투자자이드' 발간작업반 발족(12)

- 경제기획원, 정보확충진기본법 제정(26)
- 제3단계금리자유화 내용 확정(24)

-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르 선언' 채택(15)
- EU·남미, 2001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26)

12월

- 제5차 수은법 시행령 개정(23)
- 남북경제협력실무 안내 책자 발간(31)

-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금융결제망(BOKWIRE) 정식 가동(15)

- 북미·중남미 34개국, 2005년까지 범미자유무역지대 급 창설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11)
- OECD 조선협상 완전 타결(18)
- 韓·美·日·EU·北歐 3국, 다자간 조선협정에 서명(21)

1995

1월

-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의 연간 소요물량(6개원분) 한도 폐지(12)
- 국별신용도평가규정 개정(27)

- 재무부, 외환제도개혁 시행계획 확정(1)

- WTO체제 공식 출범(1)

2월

- 전대자금 환성화방안 수립(13)

- 중앙은행 제도개편·금융감독기관통합안 발표(20)
- 금융분야 규제완화안 발표(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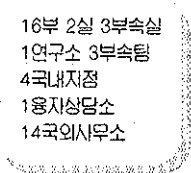
- 미국 FRB, 금리인상 단행(2)
- EU, 터키의 EU관세동맹 가입에 합의(7)

연 표

輸 銀	국 내	국 외
3월 - 여신규정 개정(7) - 해외투자자금의 신용도범 대출금액 한도 폐지(7) - 중소기업에 대한 약정수수료 면제(7)	- IBRD 차관 졸업(3) - 재정경제원, 외자도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4. 1 시행)(9) - 정부, OECD 가입신청서 제출(29)	- 일본, 미얀마에 ODA 제공을 재개하기로 결정(8) - 일본 정부,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을 1999년 중에 통합하기로 결정(14)
4월 - 국외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모법직원 초청 연수(24~5.24) - 농업자원수입자금 지원 재개(27)	통상산업부,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선진기술기업 지원제도 개선(15)	- 미국 무역대표부, 일본 등 41개국을 불공정무역국으로 발표(1) - 미국, 반독점금지법의 국제적 시행을 위한 최종 지침 발표(8)
5월 - 중장기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19~20) - 베트남 금융인 초청연수 실시(22~31)	- 재정경제원,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원화표시채권 발행 허용(1) - 은행감독원, 금융전업기업가제도 및 금융기관 자회사 출자 자율화의 세부 시행방안 마련(4) - 한국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13)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SAARC), 연말까지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APTA)의 정식 발족을 골자로 한 '뉴델리 선언'을 채택(6)
6월 20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 발행(1) - 광주출장소 및 창원출장소, 광주지점 및 창원지점으로 승격(2) -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정보제공 프로그램인 Creto p-Service에 가입(12) - 제13차 정관 개정(14) - 전대자금 여신운용지침 개정(16)	-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1) - 재정경제원,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제정(6. 28 시행)(26) - 무역금융제도 개선(28)	미국, 자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접근 제한을 경고(26)
7월 - 오픈오피스 행사개최(1) -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 지원제도 시행(5) - 인천융자상담소 개소(7) - 대러시아 소비재차관과 관련하여 소련대외경제은행과 은행간 협정 체결(10) - 중국은행과 경험차관 공여계약 체결(26)	- 재정경제원, 은행분야 등 2차 규제완화방안 발표(10) - 중소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세부대책 발표(16) - 제3단계 금리자유화 추진방안 발표(20)	- EU·APC그룹, 무역·원조협정 개정(1) - IMF, 대멕시코 재정지원계획 발표(1) - 베트남, ASEAN에 정식 가입(28)

輸 銀	국 내	국 외
8월 •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신용대출제도(평점 70점 이상) 도입(4) • 직제분과규정 개정(25) • 분야별 전문가제도 도입(28) • 수리남 중앙은행과 리스케줄링 협정 체결(28) • 위임전결규정 개정(31)	•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중소기업자 지원방안 수립계획 발표(10) • 재정경제원, 증권산업 개편방안 발표(12)	• 일본수출입은행, 베트남과의 합작 프로젝트 4건에 대한 용자방침 발표(12) • 일본수출입은행, 필리핀 전화정비 사업에 약 90억엔을 용자하기로 결정(20)
9월 • 싱가포르 현지법인(수은싱가포르 종합금융 회사) 개정(1) • 대북 쌀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1차 집행(4) • 관리자 정보시스템 가동(5) • 국제은행간 금융정보통신망(SWIFT) 개통(27)	• 금융소득과세 등 세법 개정안 마련(1)	• 일본수출입은행, 미국 Ford社에 대일수출용 자동차 개발자금 용자(6) • 일본수출입은행, 카자흐스탄에 162억엔 용자(8) • 일본수출입은행, 대남아프리카 수출금융 첫 승인(21)
10월 • 캐나다수출개발공사와 업무협정 체결(5) • 대베트남 경협차관 공여계약 체결(6) • 전북·인천지역 중소기업 해외투자설명회 개최(20, 24) • 중국·베트남 등 9개 개도국의 공공차관도입 실무담당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24~31)	• 재정경제원,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건실화 방안 마련(9) • 재정경제원, 자본시장 자유화방안 발표(11) • 재정경제원, 투자신탁업 및 투자자문업 개방계획 발표(12)	
11월 • 법규부내에 국제계약상담실 설치(1) •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세미나 개최(3) • AfDB와 차관구매사업 세미나 개최(8)	• 한국은행, 금융규제 완화 추진계획 발표(16)	• 중국, 제9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 확정(20) • EU, '대서양 무역공동체' 방안 마련(22) •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혜택 폐지 방침 발표(23)
12월 • 대북 쌀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제2차 집행(21) • 전대자금 표준융자협정서 개정(28)	• 재정경제원, 외환제도개혁 수정안 발표(1) • 은행감독원, 파생금융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제정(19)	• 인도네시아·필리핀, 필리핀수출입은행 공동설립(16) • ASEAN, 2003년까지 공산품 수입관세 전면 철폐 결정(16)

2. 조직도



3. 조지프 하우이

[illegible]

銀行長		専務理事		監事		理事	
-----	---	------	---	----	---	----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宋仁相	5.12																				
梁潤世				5.14	12.13																
李泰浩	6.1	5.12																			
朴聖相							1.27	1.6													
柳得佑										1.12											
黃昌基										1.13	6.25										
洪在鎔												6.26									
李光壽															3.27						
金煥彬															3.28	6.4					
文憲相																6.5		3.31			
金建			5.1	1.18	7.20													4.1	10.1		
河國煥					8.1	9.18															
成旭基					8.20	9.19									2.24						
李學成											4.11	5.12	2.25					5.19			
權承雨																6.20	5.20			5.19	
李善浩	6.1	5.1														5.8					5.20
朴鼎在																					
金埴燮					1.8	7.19															
金石斗		2.3			2.20	8.19															
宋茂燮																					
朴京東								10.2	10.1												
張炫圭					6.30			10.2	4.10												
朴昌采																5.12					
元裕敏	6.1	7.19																5.24			
崔錫俊		5.12						5.11													
鄭勳泳				6.7						5.7											
朴炳植					7.7	6.20					8.19										
鮮于潤					8.20							8.13									
李錫桓						8.13															
李定寧										5.8						5.7					
李僂九										10.2											
金澤										8.20							8.19				
朴春義											8.14							5.19			
蔡弘權															10.2			5.19			
鄭炳武															2.25						
張重元																	8.20		8.19		
田宗培																		5.20		5.19	
金性鐸																	5.20			5.19	
崔成龍																					8.20
姜林二																				6.20	6.20
鄭文顯																				5.20	5.20

5. 역대 운영위원

所 屬	職 位	姓 名	就任年月日	退任年月日
經 濟 企 劃 院	企 劃 次 官 補	徐 錫 俊	1976. 7. 1	1978. 2. 12
	企 劃 次 官 補	姜 慶 植	1978. 2. 13	1982. 1. 24
	企 劃 次 官 補	河 東 善	1982. 1. 25	1983. 1. 28
	次 官 補	鄭 永 儀	1983. 1. 29	1983. 8. 28
	次 官 補	陳 稔	1983. 8. 29	1988. 3. 25
	次 官 補	朴 有 光	1988. 3. 26	1989. 11. 28
	次 官 補	金 仁 浩	1989. 11. 29	1990. 5. 16
	次 官 補	康 泰 均	1990. 5. 17	1995. 2. 1
財 政 經 濟 院	第 2 次 官 補	申 明 浩	1995. 2. 2	1996. 3. 13
	第 2 次 官 補	嚴 洛 鎔	1996. 3. 14	현운영위원
外 務 部	經 濟 次 官 補	崔 浩 中	1977. 12. 19	1978. 6. 6
	經 濟 次 官 補	申 東 元	1978. 6. 7	1980. 12. 19
	第 2 次 官 補	李 昌 洙	1980. 12. 20	1982. 12. 27
	第 2 次 官 補	朱 炳 國	1982. 12. 28	1983. 11. 9
	第 2 次 官 補	申 貞 燮	1983. 11. 10	1984. 6. 6
	第 2 次 官 補	尹 億 燮	1984. 6. 7	1985. 5. 19
	第 2 次 官 補	柳 宗 夏	1985. 5. 20	1987. 2. 9
	第 2 次 官 補	洪 淳 暎	1987. 2. 10	1990. 5. 9
	第 2 次 官 補	李 祺 周	1990. 5. 10	1992. 2. 11
	第 2 次 官 補	許 陞	1992. 2. 12	1993. 3. 16
	第 2 次 官 補	宣 峻 英	1993. 3. 17	1996. 1. 14
	第 2 次 官 補	崔 大 和	1996. 1. 15	현운영위원
財 務 部	財 政 次 官 補	高 炳 佑	1976. 7. 1	1977. 9. 25
	財 政 次 官 補	李 龍 萬	1977. 9. 26	1978. 6. 23

所 屬	職 位	姓 名	就 任 年 月 日	退 任 年 月 日
財 務 部	國 際 金 融 次 官 補	鄭 寅 用	1978. 6. 24	1980. 9. 19
	國 際 金 融 次 官 補	朱 炳 國	1980. 9. 20	1982. 1. 14
	企 劃 管 理 室 長	朱 炳 國	1982. 1. 15	1982. 12. 27
	企 劃 管 理 室 長	權 泰 元	1982. 12. 28	1984. 9. 4
	第 1 次 官 補	李 炯 九	1984. 9. 5	1986. 1. 27
	第 1 次 官 補	李 同 浩	1986. 1. 28	1987. 4. 20
	企 劃 管 理 室	洪 在 馨	1987. 4. 21	1988. 4. 10
	第 1 次 官 補	洪 在 馨	1988. 4. 11	1989. 1. 24
	企 劃 管 理 室 長	李 勇 成	1989. 1. 25	1991. 4. 1
	企 劃 管 理 室 長	李 桓 均	1991. 4. 2	1992. 2. 17
	第 2 次 官 補	李 桓 均	1992. 2. 18	1992. 12. 16
	第 2 次 官 補	朴 鍾 爽	1992. 12. 17	1993. 4. 1
	第 2 次 官 補	林 昌 烈	1993. 4. 2	1994. 5. 30
	第 2 次 官 補	申 明 浩	1994. 5. 31	1995. 2. 1
商 工 部	商 易 次 官 補	朴 弼 秀	1976. 7. 1	1980. 9. 4
	商 易 次 官 補	金 善 吉	1980. 9. 5	1980. 10. 1
	商 易 次 官 補	洪 性 佐	1980. 10. 2	1982. 12. 23
	第 1 次 官 補	車 秀 明	1982. 12. 24	1984. 2. 2
	第 1 次 官 補	金 喆 壽	1984. 2. 3	1990. 4. 15
	第 1 次 官 補	辛 國 煥	1990. 4. 16	1991. 1. 18
	第 1 次 官 補	柳 得 煥	1991. 1. 19	1992. 12. 1
	第 1 次 官 補	蔡 載 憶	1992. 12. 2	1993. 3. 30
	第 1 次 官 補	朴 雲 緒	1993. 3. 31	1994. 2. 27
	第 1 次 官 補	張 石 煥	1994. 2. 28	1994. 12. 27
	通 商 貿 易 室 長	韓 惠 洙	1994. 12. 28	현운영위원
通 商 產 業 部				

所 屬	職 位	姓 名	就 任 年 月 日	退 任 年 月 日
韓 國 銀 行	理 事	金 建	1976. 7. 1	1977. 3. 15
	理 事	秋 仁 錫	1977. 3. 16	1978. 7. 30
	理 事	鄭 英 謀	1978. 7. 31	1980. 8. 25
	理 事	高 光 直	1980. 8. 26	1981. 8. 26
	理 事	田 永 秀	1981. 8. 27	1982. 7. 8
	理 事	張 炫 圭	1982. 7. 9	1983. 8. 23
	理 事	李 昶 洙	1983. 8. 24	1984. 10. 24
	理 事	李 尙 鎬	1984. 10. 25	1987. 7. 13
	理 事	趙 京 鎬	1987. 7. 14	1987. 8. 19
	理 事	李 昶 洙	1987. 8. 20	1988. 3. 27
	理 事	李 昌 圭	1988. 3. 28	1989. 3. 26
	理 事	趙 京 鎬	1989. 3. 27	1989. 7. 19
	理 事	柳 時 烈	1989. 7. 20	1990. 5. 16
	理 事	李 昌 圭	1990. 5. 17	1992. 9. 3
	理 事	許 翰 道	1992. 9. 4	1993. 3. 3
	理 事	崔 然 宗	1993. 3. 4	1993. 5. 5
	理 事	李 景 載	1993. 5. 6	1994. 9. 15
	理 事	沈 勳	1994. 9. 16	현운영위원
韓 國 外 換 銀 行	專 務 理 事	洪 完 模	1976. 7. 1	1977. 4. 7
	專 務 理 事	李 弼 善	1977. 4. 8	1979. 10. 23
	專 務 理 事	鄭 憲 俊	1979. 10. 24	1980. 8. 28
	理 事	金 環 暎	1980. 8. 29	1981. 10. 6
	理 事	全 斗 杓	1981. 10. 7	1982. 8. 19
	理 事	趙 澤 英	1982. 8. 20	1984. 1. 3
	理 事	洪 熹 欽	1984. 1. 4	1985. 2. 14

所 屬	職 位	姓 名	就 任 年 月 日	退 任 年 月 日
韓 國 外 換 銀 行	理 事	崔 昇 洛	1985. 2. 15	1987. 8. 19
	理 事	李 根 浩	1987. 8. 20	1988. 3. 20
	理 事	金 載 鉉	1988. 3. 21	1988. 12. 27
	理 事	吳 世 柱	1988. 12. 28	1989. 3. 31
	理 事	金 鐘 一	1989. 4. 1	1991. 9. 4
	理 事	李 璋 雨	1991. 9. 5	1993. 3. 11
	理 事	趙 成 鎮	1993. 3. 12	1995. 3. 23
	理 事	劉 永 高	1995. 3. 24	1996. 3. 3
	理 事	李 甲 鉉	1996. 3. 4	현 운영 위원
韓 國 貿 易 協 會	副 會 長	吳 範 植	1976. 7. 1	1978. 2. 20
	副 會 長	李 致 寧	1978. 2. 21	1979. 3. 4
	副 會 長	金 禹 根	1979. 3. 5	1981. 9. 25
	副 會 長	桂 鳳 赫	1981. 9. 26	1984. 6. 5
	副 會 長	李 宣 基	1984. 10. 11	1988. 11. 28
	副 會 長	盧 鎮 植	1988. 11. 29	1991. 3. 7
	副 會 長	洪 性 佐	1991. 3. 8	1994. 2. 14
	副 會 長	金 殷 湘	1994. 2. 15	1996. 4. 9
	副 會 長	柳 得 煥	1996. 4. 10	현 운영 위원
動 力 資 源 部	(參 觀 委 員)			
	企 劃 管 理 室 長	李 鳳 瑞	1978. 7. 26	1981. 1. 7
	資 源 政 策 室 長	許 南 薰	1981. 1. 8	1983. 11. 7
	資 源 政 策 室 長	崔 震 碩	1983. 11. 29	1987. 3. 17

6. 역대 법률·세무·경영고문 및 자문위원

職 名	姓 名	委嘱年月日
法 律 顧 問	金 永 珪	1976. 8. 1
	申 雄 湜	1977. 11. 1
	李 泰 熙	1978. 5. 10
	朴 商 祺	1980. 3. 3
	鄭 聖 哲	1980. 12. 1
	曠 錫 植	1981. 5. 6
	金 平 祐	1983. 4. 1
	朴 慶 宰	1983. 12. 1
	辛 永 茂	1985. 4. 1
	鄭 庚 澈	1986. 2. 1
	金 錫 輝	1986. 4. 1
	이 동 호	1986. 4. 14
	운 일 영	1986. 5. 9
	金 仁 燮	1988. 2. 1
	金 泰 祚	1988. 4. 1
	이 원 구	1989. 9. 11
	金 昌 俊	1990. 4. 1
	閔 丙 國	1990. 7. 1
	姜 容 求	1993. 2. 10
	金 贊 鎭	1994. 4. 1
	河 鍾 瑄	1995. 4. 1
稅 務 顧 問	崔 興 淑	1976. 9. 1
	朴 完 奎	1980. 1. 1
	金 松 鶴	1982. 4. 14
	金 學 成	1984. 2. 1
	裴 元 用	1991. 4. 1
	朱 興 烈	1994. 4. 1

職 名	姓 名	委嘱年月日
經 營 顧 問	徐 相 詰	1977. 3. 1
	韓 昇 洙	1979. 2. 1
	李 泰 浩	1983. 3. 1
	朴 宇 熙	1985. 9. 21
	朴 椿 浩	1987. 1. 10
	鮮 宇 潤	1988. 2. 1
	金 植 鉉	1990. 2. 1
	閔 相 基	1991. 4. 1
	李 鍾 桓	1991. 5. 15
	張 炫 圭	1992. 7. 1
諮 問 委 員	金 秉 柱	1996. 2. 1
	鄭 楊 泳	1996. 2. 1
	魚 允 大	1996. 2. 1
	閔 相 基	1996. 2. 1
	裴 鶴 吉	1996. 2. 1
	李 德 勳	1996. 2. 1

7. 역대 부(실·지점·사무소)장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綜合企劃部		
企劃調查部長	全石斗	1976. 7. 1
業務部長	李鍾桓	1977. 2. 15
	陳重元	1979. 3. 1
企劃部長	陳重元	1979. 4. 27
	鄭炳武	1982. 3. 9
	金東均	1983. 6. 1
	陳重元	1985. 5. 8
	具滋協	1988. 11. 15
	尹基鶴	1991. 8. 5
綜合企劃部長	尹基鶴	1992. 4. 1
	李圭	1993. 8. 7
經營總括部長	李圭	1994. 2. 25
綜合企劃部長	李圭	1995. 8. 31
	邢大宇	1996. 2. 1
弘報室		
弘報室長	金振浩	1992. 8. 22
	金太喜	1994. 8. 24
	金正準	1995. 3. 3
任員附屬室(廢止)		
任員附屬室長	李鍾桓	1979. 11. 8
	朴春義	1979. 11. 28
	蔡弘植	1981. 8. 13
文書部(廢止)		
文書部長	蔡弘植	1982. 3. 9
	朴春義	1984. 10. 12
秘書室		
任員附屬室長	趙昌鎬	1986. 5. 1
	尹基鶴	1988. 11. 16
	金東觀	1991. 2. 1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秘書室長		
	金東觀	1991. 8. 5
	趙商均	1993. 5. 24
	金太喜	1995. 3. 3
經營戰略部		
經營企劃室長	趙允熙	1994. 2. 25
經營戰略部長	朴台東	1995. 3. 3
總務部		
總務部長	崔鍾岳	1976. 7. 1
	金然河	1977. 5. 12
	金澤	1979. 3. 1
	李鍾桓	1979. 6. 5
	金東均	1980. 12. 1
	金澤	1983. 6. 1
	李鍾桓	1984. 10. 12
	朴炳奎	1985. 5. 8
庶務部長	具滋協	1985. 9. 10
	文龍達	1986. 5. 1
	柳奉錫	1988. 4. 19
	尹晶弼	1989. 10. 17
	朴觀緒	1991. 2. 1
	趙鎮煥	1991. 8. 5
	陳鎬俊	1992. 8. 22
	崔鍾洛	1993. 2. 20
	殷順基	1995. 3. 3
總務部長	殷順基	1996. 2. 1
行舍建築推進班(廢止)		
行舍建築推進班長	具滋協	1983. 6. 1
人事部		
人事部長	朴炳奎	1985. 9. 10
	蔡弘植	1987. 1. 9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人 事 部 長	孔 道 植	1988. 11. 15
	金 性 鏞	1990. 3. 14
	黃 昌 益	1992. 2. 22
	鄭 文 謨	1993. 8. 2
	金 洪 埈	1995. 8. 31
研修院		
研 修 院 長	朴 鎮 喆	1993. 2. 20
	文 龍 達	1994. 8. 24
	權 鎮 錫	1995. 8. 31
資金部		
資 金 部 長	鮮于 潤	1979. 4. 11
	田 宗 培	1981. 8. 13
	蔡 弘 植	1984. 10. 12
	鄭 炳 武	1987. 1. 9
	姜 承 求	1988. 11. 15
	金 洪 埈	1989. 10. 17
	尹 晶 弼	1991. 2. 1
	柳 奉 錫	1992. 2. 22
	金 鍾 三	1993. 2. 20
	柳 熙 麟	1995. 3. 3
國際金融部		
國 際 金 融 部 長	金 洪 埈	1991. 2. 1
	姜 承 求	1992. 8. 22
	趙 商 均	1995. 3. 3
國際金融部附屬 域外金融目		
域 外 金 融 目 長	洪 性 郁	1995. 8. 31
	黃 善 益	1996. 2. 1
與信開發部		
與 信 總 括 部 長	田 宗 培	1990. 3. 14
與 信 企 劃 部 長	田 宗 培	1991. 11. 1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與 信 企 劃 部 長	姜 秣 二	1993. 5. 29
與 信 開 發 室 長	李 亨 基	1995. 3. 3
與 信 開 發 部 長	李 亨 基	1996. 2. 1
與信開發部附屬 中小企業支援目		
中 小 企 業 支 援 目 長	柳 玟 夏	1995. 3. 3
	丁 泰 植	1996. 2. 1
業務部(廢止)		
業 務 部 長	李 鴻 俊	1976. 7. 1
審 查 部 長	李 鴻 俊	1977. 2. 15
	崔 鍾 岳	1977. 5. 12
審 查 1 部 長	崔 鍾 岳	1978. 9. 1
	金 澤	1979. 6. 5
	李 善 浩	1983. 6. 1
	田 宗 培	1986. 5. 1
	鄭 東 豪	1986. 9. 1
	朴 春 義	1987. 9. 1
	田 宗 培	1988. 11. 15
	鄭 炳 武	1990. 3. 14
審查2部(廢止)		
審 查 2 部 長	金 澤	1978. 9. 1
	成 旭 基	1979. 3. 1
	李 鍾 桓	1980. 12. 1
	李 善 浩	1981. 8. 13
	朴 炳 奎	1983. 6. 1
	鄭 東 豪	1984. 1. 20
	申 甲 澈	1985. 5. 8
	孔 道 植	1987. 1. 9
	鄭 炳 武	1988. 11. 15
	黃 昌 益	1990. 3. 14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金融部(廢止)		
金 融 部 長	金 澤	1977. 2. 15
	曹 永 采	1978. 9. 1
	黃 在 元	1980. 12. 1
	柳 奉 錫	1982. 11. 1
	鄭 東 豪	1985. 5. 8
金 融 1 部 長	鄭 東 豪	1986. 5. 1
	朴 春 義	1986. 9. 1
	玉 正 煥	1987. 9. 1
	崔 成 龍	1990. 3. 14
金融 2 部(廢止)		
金 融 2 部 長	朴 春 義	1986. 5. 1
	姜 秣 二	1986. 9. 1
	柳 奉 錫	1989. 10. 17
船舶金融部		
船 舶 金 融 部 長	鄭 炳 武	1991. 2. 1
	朴 炳 奎	1991. 8. 5
	李 光 寅	1993. 2. 20
	崔 成 龍	1994. 8. 24
產業設備金融部		
產 業 設 備 金 融 部 長	黃 昌 益	1991. 2. 1
	金 性 鏞	1992. 2. 22
產 業 設 備 金 融 1 部 長	姜 秣 二	1994. 2. 25
產 業 設 備 金 融 部 長	姜 秣 二	1995. 8. 31
	黃 昌 益	1996. 5. 20
轉貸金融室		
轉 貸 金 融 室 長	金 成 圭	1992. 8. 22
	高 在 和	1994. 2. 25
	黃 政 吉	1994. 8. 24
	柳 玟 夏	1996. 2. 1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一般機械金融部		
產 業 設 備 金 融 2 部 長	沈 成 周	1994. 2. 25
一 般 機 械 金 融 部 長	沈 成 周	1995. 8. 31
海外投資金融部		
海 外 投 資 金 融 部 長	柳 奉 錫	1991. 2. 1
	成 建 煥	1992. 2. 22
	陳 鎬 俊	1993. 2. 20
	金 洪 埈	1993. 8. 2
	金 性 鏞	1994. 2. 25
海 外 投 資 金 融 1 部 長	金 性 鏞	1995. 3. 3
海 外 投 資 金 融 部 長	鄭 文 謨	1995. 8. 31
	金 秉 柱	1996. 5. 20
海外投資金融2部(廢止)		
海 外 投 資 金 融 2 部 長	金 洪 埈	1994. 2. 25
輸入金融部		
輸 入 金 融 部 長	崔 成 龍	1991. 2. 1
	具 滋 協	1991. 8. 5
	李 亨 基	1992. 8. 22
	朴 在 鐵	1994. 8. 24
輸出保險部(廢止)		
輸 出 保 險 部 長	黃 相 信	1977. 1. 1
輸 出 保 險 1 部 長	黃 相 信	1981. 3. 1
	玉 正 煥	1984. 10. 12
	申 甲 澈	1987. 9. 1
輸出保險2部(廢止)		
輸 出 保 險 2 部 長	申 甲 澈	1981. 3. 1
	鄭 東 豪	1983. 6. 1
	玉 正 煥	1983. 9. 9
	申 甲 澈	1984. 12. 1
	孔 道 植	1985. 5. 8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輸 出 保 險 2 部 長	申 甲 澈	1987. 1. 9
	崔 成 龍	1987. 9. 1
	玉 正 煥	1990. 3. 14
輸出保險總括部(廢止)		
輸出保險總括部長	申 甲 澈	1991. 2. 1
輸出保險引受部(廢止)		
輸出保險引受部長	玉 正 煥	1991. 2. 1
輸出保險補償部(廢止)		
輸出保險補償部長	金 殷 壽	1991. 2. 1
輸出保險調查部(廢止)		
輸出保險調查部長	金 性 鏞	1988. 3. 1
	金 殷 壽	1990. 3. 14
	裴 貞 富	1991. 2. 1
	朴 觀 緒	1991. 8. 5
	裴 貞 富	1992. 2. 22
法規部		
法 規 室 長	鄭 炳 武	1978. 3. 1
	金 然 河	1979. 3. 1
	曹 永 采	1980. 12. 1
	金 然 河	1981. 8. 13
	鄭 炳 武	1986. 5. 1
	崔 成 龍	1987. 1. 9
	姜 承 求	1987. 9. 1
	趙 昌 鎬	1988. 11. 15
	朴 炳 奎	1989. 10. 17
	鄭 炳 武	1991. 8. 5
法 規 部 長	鄭 炳 武	1991. 11. 1
	朴 在 鐵	1992. 8. 22
	高 在 和	1994. 8. 24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業務改善室(廢止)		
業 務 改 善 室 長	高 永 鎬	1977. 9. 17
	鄭 炳 武	1979. 3. 1
	鄭 東 豪	1979. 6. 5
	金 然 河	1980. 12. 1
	柳 奉 錫	1981. 8. 13
	朴 炳 奎	1982. 11. 1
	文 龍 達	1983. 6. 1
	姜 株 二	1986. 5. 1
	姜 承 求	1986. 9. 1
	金 洪 埤	1987. 9. 1
	朴 觀 緒	1988. 11. 15
	李 亨 基	1989. 10. 17
情報管理部		
電 算 室 長	全 大 植	1990. 3. 14
	全 大 植	1991. 8. 5
情 報 管 理 部 長	金 寬 永	1991. 11. 1
	陳 鎬 俊	1994. 8. 24
	金 鍾 三	1995. 3. 3
安全管理部		
安 全 管 理 室 長	韓 永 洙	1980. 4. 1
	趙 鎮 煥	1985. 4. 1
	曹 致 煥	1990. 10. 17
安 全 管 理 部 長	曹 致 煥	1992. 8. 22
監査室		
首 席 檢 査 役	曹 永 采	1976. 7. 1
	黃 在 元	1978. 9. 1
監 査 室 長	黃 在 元	1979. 11. 7
	鄭 炳 武	1980. 12. 1
	曹 永 采	1982. 3. 9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監 査 室 長	鄭 東 豪	1983. 9. 9
	孔 道 植	1984. 1. 20
	金 東 均	1985. 5. 8
	吳 金 宰	1985. 11. 23
	趙 昌 鎬	1989. 10. 17
	文 龍 達	1991. 8. 5
	朴 公 秀	1992. 8. 22
	黃 政 吉	1996. 2. 1
經協基金部		
經濟協力基金部長	鄭 文 謨	1987. 6. 1
	鄭 東 豪	1990. 8. 18
經濟協力基金1部長	鄭 東 豪	1991. 2. 1
經 協 基 金 1 部 長	鄭 東 豪	1991. 11. 1
	李 光 寅	1992. 2. 22
	黃 政 吉	1993. 2. 20
	金 康 彥	1994. 8. 24
	金 振 浩	1995. 3. 3
經 協 基 金 部 長		
經濟協力基金2部(廢止)		
經濟協力基金2部長	李 光 寅	1991. 2. 1
經 協 基 金 2 部 長	李 光 寅	1991. 11. 1
	趙 昌 鎬	1992. 2. 22
	文 龍 達	1993. 9. 13
	金 振 浩	1994. 8. 24
南北基金部		
南北協力基金部長	陳 鎬 俊	1991. 2. 1
南 北 基 金 部 長	陳 鎬 俊	1991. 11. 1
	金 鍾 三	1992. 2. 22
	成 建 煥	1993. 2. 20
	柳 熙 叢	1993. 8. 2
	吉 炳 繼	1994. 2. 25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南 北 基 金 部 長	鄭 成 昌	1995. 9. 30
海外投資研究所		
海外投資研究所長	李 善 浩	1988. 11. 15
	陳 重 元	1991. 5. 10
	權 一 雄	1995. 3. 3
	吉 炳 繼	1995. 8. 31
海外投資調查部(廢止)		
海外投資調查部長	成 旭 基	1978. 4. 4
	李 鍾 桓	1979. 3. 1
	李 儼 九	1979. 6. 23
	田 宗 培	1984. 10. 12
	李 善 浩	1986. 5. 1
海 外 調 查 部 長	李 善 浩	1989. 3. 6
	姜 承 求	1990. 3. 14
	金 洪 埈	1992. 8. 22
	高 在 和	1993. 8. 7
國別調查部(廢止)		
國 別 調 查 部 長	殷 順 基	1989. 3. 6
	金 康 彥	1990. 8. 18
	黃 政 吉	1991. 8. 5
	金 秉 柱	1992. 8. 22
海外投資情報目(廢止)	權 一 雄	1993. 8. 2
	金 洪 埈	1988. 11. 15
	姜 承 求	1989. 10. 17
海外投資情報센터 室長	李 亨 基	1990. 3. 14
	李 圭	1992. 8. 22
	趙 商 均	1993. 2. 20
	邢 大 宇	1993. 8. 2
	章 榮 孝	1994. 2. 25
海外投資情報센터 部長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海外投資情報센터 部長	殷 順 基	1994. 8. 24
海外投資情報팀장	趙 德 相	1995. 3. 3
	李 相 憲	1995. 8. 31
釜山支店		
事 務 所 長	權 寧 詰	1977. 1. 1
出 張 所 長	權 寧 詰	1977. 11. 22
	李 成 浩	1978. 3. 1
	鄭 炳 武	1979. 6. 5
	蔡 弘 植	1980. 12. 1
	文 龍 達	1981. 8. 13
	申 甲 澈	1983. 6. 1
	孔 道 植	1983. 9. 9
	朴 炳 奎	1984. 1. 20
	吳 金 宰	1985. 5. 8
	崔 成 龍	1985. 11. 23
支 店 長	崔 成 龍	1986. 3. 18
	金 性 鏞	1987. 1. 9
	尹 晶 弼	1987. 9. 1
	朴 觀 緒	1989. 10. 17
	成 建 煥	1990. 8. 18
	吳 金 宰	1992. 2. 22
	邢 大 宇	1994. 2. 25
	金 康 彥	1995. 8. 31
大邱支店		
開設準備委員長	高 在 和	1992. 3. 2
支 店 長	高 在 和	1992. 6. 30
	沈 成 周	1993. 2. 20
	柳 熙 龍	1994. 2. 25
	具 文 謨	1995. 3. 3
	具 文 基	1995. 8. 31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光州支店		
開設準備委員長	吉 炳 畿	1987. 9. 1
出 張 所 長	吉 炳 畿	1987. 12. 1
	金 寬 永	1990. 3. 14
	崔 鍾 洛	1991. 11. 1
	權 一 雄	1993. 2. 20
	鄭 成 昌	1993. 8. 2
	朴 鎮 詰	1994. 8. 24
支 店 長	朴 鎮 詰	1995. 6. 23
	李 相 憲	1996. 2. 1
昌原支店		
融 資 相 談 所 長	黃 甲 鉉	1993. 6. 9
開設準備委員長	鄭 完 永	1994. 2. 25
出 張 所 長	鄭 完 永	1994. 4. 2
支 店 長	鄭 完 永	1995. 6. 23
	安 昌 洙	1996. 2. 1
仁川融資相談所		
開設準備委員長	洪 炅 錫	1995. 5. 29
融 資 相 談 所 長	洪 炅 錫	1995. 7. 7
平昌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李 善 浩	1977. 10. 19
事 務 所 長	李 善 浩	1978. 6. 1
	李 鍾 桓	1981. 8. 13
	李 價 九	1984. 10. 12
	田 宗 培	1986. 9. 1
	陳 重 元	1988. 11. 15
	崔 成 龍	1991. 5. 16
	李 光 寅	1994. 8. 24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워싱턴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黃 昌 益	1993. 8. 2
事 務 所 長	黃 昌 益	1994. 2. 1
런던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田 宗 培	1977. 8. 20
事 務 所 長	田 宗 培	1978. 6. 1
	朴 春 義	1981. 8. 13
	金 澤	1984. 10. 12
	鄭 東 豪	1987. 9. 1
	鄭 文 謨	1990. 8. 18
	尹 基 鶴	1993. 8. 2
東京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李 鶴 柱	1978. 12. 22
事 務 所 長	李 鶴 柱	1979. 6. 19
	鄭 東 豪	1980. 12. 1
	鄭 炳 武	1983. 6. 1
	具 滋 協	1986. 5. 1
	蔡 弘 植	1988. 11. 15
	孔 道 植	1990. 3. 14
	柳 熙 鎰	1992. 8. 22
	金 秉 柱	1993. 8. 2
파리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姜 秣 二	1989. 4. 21
事 務 所 長	姜 秣 二	1989. 12. 1
	金 康 彦	1991. 5. 16
	金 成 圭	1994. 8. 24
모스크바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吉 炳 畿	1990. 7. 12
事 務 所 長	吉 炳 畿	1991. 4. 19
	吳 允 煥	1994. 2. 25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北京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林 東 一	1992. 2. 22
事 務 所 長	林 東 一	1993. 2. 1
	陳 鎬 俊	1995. 3. 3
자카르타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陳 重 元	1982. 3. 9
事 務 所 長	陳 重 元	1982. 11. 1
	柳 奉 錫	1985. 5. 8
	文 龍 遠	1988. 4. 19
	殷 順 基	1991. 2. 1
	金 寬 永	1994. 8. 24
멕시코시티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尹 晶 弼	1992. 2. 22
事 務 所 長	尹 晶 弼	1992. 9. 15
	章 榮 孝	1994. 8. 24
호치민시티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朴 觀 緒	1992. 2. 22
事 務 所 長	朴 觀 緒	1992. 11. 9
	具 文 謨	1995. 8. 31
아비잔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金 潤 培	1978. 3. 30
開設準備委員長	趙 昌 鎬	1979. 4. 27
事 務 所 長	趙 昌 鎬	1979. 6. 20
	章 榮 孝	1981. 3. 1
	黃 昌 益	1984. 10. 12
	金 東 觀	1987. 9. 1
	邢 大 宇	1990. 8. 18
	李 相 憲	1993. 8. 2
	安 昌 龍	1995. 8. 31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홍콩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金 松 雄	1978. 3. 1
事 務 所 長	金 松 雄	1978. 9. 1
	金 殷 壽	1981. 8. 13
	金 寬 永	1984. 10. 12
	鄭 憲 謨	1987. 9. 1
	文 健 秀	1990. 8. 18
	姜 秣 二	1992. 7. 15
	成 建 煥	1993. 8. 2
사옹파울루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金 東 觀	1993. 2. 20
事 務 所 長	金 東 觀	1993. 9. 24
뉴델리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黃 宗 淵	1994. 2. 25
事 務 所 長	黃 宗 淵	1994. 9. 1
로스앤젤레스事務所(廢止)		
開設準備委員長	申 甲 澈	1977. 11. 11
事 務 所 長	申 甲 澈	1978. 8. 28
	玉 正 煥	1980. 12. 1
	金 性 鏞	1983. 9. 9
	襄 貞 富	1987. 1. 9
	金 松 雄	1990. 3. 14
	李 相 憲	1992. 8. 22
산티아고事務所(廢止)		
開設準備委員長	姜 承 求	1981. 3. 1
事 務 所 長	姜 承 求	1981. 9. 1
	李 秀 笠	1984. 10. 12
	朴 炳 奎	1987. 1. 9
	吳 金 宰	1989. 10. 17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輸銀亞洲金融有限公司		
開設準備委員長	趙 商 均	1988. 2. 1
社 長	鮮 于 潤	1988. 4. 8
	蔡 弘 植	1990. 2. 7
	姜 秣 二	1991. 5. 2
	李 學 成	1993. 5. 27
輸銀印尼金融(株)		
開設準備委員長	殷 順 基	1991. 8. 5
社 長	鄭 東 豪	1991. 12. 13
	金 澤	1993. 5. 27
輸銀英國銀行		
開設準備委員長	鄭 文 謨	1990. 12. 12
社 長	鄭 文 謨	1992. 7. 15
	李 價 九	1992. 8. 7
	姜 承 求	1995. 3. 3
輸銀싱가포르綜合金融會社		
開設準備委員長	趙 允 熙	1995. 3. 3
社 長	趙 允 熙	1995. 9. 1

8. 주요 여신조건의 변경 추이

가. 대출기간

(1) 수출자금대출

(단위 : 년)

구 분	76. 7. 1	77. 1. 1	77. 2. 9	77. 5. 9	79. 5. 15	81. 11. 17	85. 12. 30	89. 4. 3
플랜트	10	→	→	10(7)	→	→	→	10
기계류	10	5	→	5(3)	→	10(7)	→	10
철도차량	10	8	5	5(3)	10(7)	→	→	10
선박	10	8	→	8(5)	→	→	8.5(5)	8.5
승용차(버스포함)	10	3	→	3(2)	→	→	→	3
부품류	-	-	-	3(2)	→	→	→	3
기타	10	5	→	5(3)	→	→	→	5

* 괄호안은 100만달러 이하 거래의 대출기간임

91. 6. 10	92. 1. 21	92. 3. 3	95. 3. 7
10년 이내에서 공적수출 신용에 관한 국제협약 내용, 당해 수출 목적물의 거래규모 및 내용연수 등에 비추어 적절한 기간 이내	· 선박: 8.5 (LNG 운반선: 10) · 재래식(수력, 화력 등) 발전설비: 12 · 핵발전설비: 15 · 항공기(70석 이상 대형여객기): 12 · 기타 품목 ① 수출국가별 - 고소득국: 8.5 - 중저소득국: 10 ② 품목별 - 원료 및 반제품, 소비재, 내구성 소비재, 부품류 i) 5만달러 이상 10만달러 미만: 3 ii) 10만달러 이상 20만달러 미만: 4 iii) 20만달러 이상: 5 - 자본재, 산업설비: 10	좌 등 단, ②품목별 구분 중 원료 및 반제품, 소비재, 내구성 소비재, 부품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i) 15만달러 미만: 3 ii) 15만달러 이상 30만달러 미만: 4 iii) 30만달러 이상: 5	OECD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 선박: 8.5 (LNG 운반선: 10) · 재래식(수력, 화력 등) 발전설비: 12 · 핵발전설비: 15 · 항공기 (70석 이상 대형여객기): 12 · 자본재, 산업설비: 10 · 원료 및 반제품, 소비재, 내구성소비재, 부품류: 10

(2) 기술제공자금대출: 수출자금대출의 경우에 준함

(3) 직접대출(1979년 8월 업무 개시): 수출자금대출의 100만달러 초과 거래의 경우와 동일함

(4) 전대자금대출(1978년 6월 업무 개시)

78. 6	80. 2. 5	81. 11. 17	86. 11. 4	89. 4. 19	91. 9. 3	95. 3. 7
외국금융기관의 협정 또는 합의된 조건에 따름	· 플랜트, 철도차량, 선박: 5(5) · 기계류: 5(3) · 부품류 및 승용차 (버스포함): 3(2) · 기타: 5(3)	→ 5(5) → →	· 플랜트, 철도차량, 기계류: 10(7) · 선박: 8.5(5) · 부품류 및 승용차 (버스포함): 3(2) · 기 타: 5(3)	· 플랜트, 항공기, 기계류, 철도차량, 철강 및 철강 제품: 10 · 선박: 8.5 · 부품류 및 승용차 (버스포함): 3 · 기타: 5	수출자금 대출의 용자기간 준용	OECD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5) 해외투자관련자금대출

76. 7. 1	77. 5. 9	88. 3. 5	91. 6. 10
10	10(7)	10	10 (은행장 인정시 10년 초과 가능)

(6) 수입자금대출

구 분	87. 6. 1
· 중요물자 및 주요자원	2
· 시 설 재	10

나. 대출금리

(1) 수출자금대출

(단위: 연율 %)

76. 7. 1		76. 8. 2		79. 1. 12		
7	선적전금융	생산집하자금(원화)	8	인도전금융	원화소요자금	8
		수입자금(외화)	외화획득용 원자재수입 금융에 적용하는 금리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고시하는 금리		외화소요자금	외환관리 규정에서 정한 기준금리 범위내
	선적후금융	선박	8	인도후금융	선박	8
		선박 이외	8 ~ 9		선박 이외	8~9

80. 1.18			80. 7.10	81. 2. 6	81.11.17
인도전 금융	원화소요자금	8	좌 동		9
	외화소요자금	외환관리규정에서 정한 중장기 외화자금 융자의 기준금리	원자재 연불수입의 경우 차입금리+차입부대 비용 +0.5 적용	· 외환관리규정에서 정한 중장기 외화자금 융자의 기준금리 · 원자재 연불수입의 경우 실질차입금리 + 0.5 적용	· 외환관리규정에서 정한 중장기 외화자금융자의 기준금리 · 원자재 연불수입의 경우 실질차입금리 + 1.0 적용
인도후 금융	선박	8	좌 동		9
	선박 이외	8	좌 동		9

82.12. 1			84.11. 5	85. 8.31	85.12.30	86. 2.15	86.7.15	87.11.12	88. 1.15
인도전 금융	원화소요자금	9	좌 동						9
	외화소요자금	Libor+ 1.5 ~2.0	좌 동					Libor+1.5 이내	좌 동
인도후 금융	선박	9	좌 동		8	좌 동			
	선박 이외	9	9~10	좌 동	9~11.15	8.8~11.2	7.4~9.8	좌 동	8~10.4

88. 7.15			89. 4.28	90. 5.15	90. 7.15	91. 4. 6
인도전 금융	원화소요자금	9	좌 동			
	외화소요자금	Libor+1.5 이내	좌 동	Libor+0.7~1.5	좌 동	Libor+1.0~1.25
인도전 금융	선박	8	- 선박: 8	5	- 선박: 8	- 선박: 8
	선박 이외	· 중저소득국: 8.3~9.65 · 고소득국: 원화표시: 10 외화표시: CIRR+0.2	- 대형항공기(70석 이상) TB금리+1.2~1.75 - 기타 품목 · 중저소득국: 8.3~9.65 · 고소득국: 원화표시: 10 외화표시: CIRR+0.2	좌 동	- 대형항공기 TB금리+1.2~1.75 - 기타품목 · 중저소득국: 9.2~10.55 · 고소득국: 원화표시: 10 외화표시: CIRR+0.2	- 대형항공기 TB금리+1.2~1.75 - 기타품목 · 중저소득국: 9.2~10.55 · 고소득국: CIRR (계약체결전: CIRR+0.2) - 원화표시대출: 10

91. 6.10			92. 2.15	93. 1.8	93. 3.26	93. 9.20	
제작금융	국내소요자금		9	좌 동		9(중소기업 8.5)	좌 동
	국외소요자금		Libor+1.0~1.25	좌 동	Libor+0.75~1.50	좌 동	Libor+0.5~1.5
연불금융	외 화 표 시 대 출	선박	8	좌 동			
		선박, 해발전기, 대형항공기 이외	CIRR (계약체결전: CIRR+0.2)	CIRR · 계약체결전: CIRR+0.2 · 저소득국에 대해 SDR-based Rate 선택적용가능	좌 동		
	원화표시대출		10	좌 동			

94. 3. 1			94.12.23	95. 3. 7	95. 7.21	95.11.10
제작금융	국내소요자금		9(중소기업 8~9)	9	좌 동	우대금리+0~2.5
	국외소요자금		Libor+0.5~1.5	좌 동		· 고정금리: Swap Rate+1.0~1.5 · 변동금리 Libor+0.75~1.50
연불금융	외 화 표 시 대 출	선박	8	좌 동		
		선박, 해발전기, 대형항공기 이외	CIRR · 계약체결전: CIRR+0.2 · 저소득국에 대해 SDR-based Rate 선택적용 가능	좌 동	CIRR · 계약체결전: CIRR+0.2 · 저소득국에 대해 95. 8.31까지 SDR-based Rate 선택적용 가능	좌 동
		원화표시대출	10	좌 동		CIRR (계약체결전 CIRR+0.2)
						패 지

(2) 기술제공자금대출

76. 7. 1	77. 7. 1	80. 1. 18	81. 2. 6	84.11. 5	91. 6. 10
8	7	Libor + 1.96	9	수출자금대출의 플랜트 경우와 동일	수출자금의 선박 및 항공기 이외 품목의 경우와 동일

(3) 직접대출

79. 8	80. 1	81. 7	81.11.17	84.11. 5	85. 8.31	91. 6.10
7~9	· 단독융자 : 9 · 협조융자 : 8.5	8.5	9.5	수출자금대출과 동일	수출자금대출 인도후금융 금리 적용	수출자금대출 연불금융 금리 적용

(4) 전대자금대출

78. 6	80. 1. 1	81.11.17	84.11. 6	85. 8.31	90. 7.24	91. 6.10	94. 3. 1
7~9	9 이상	10 이상	10	수출자금대출 인도후금융 금리 적용	수출자금대출 인도후금융 금리에서 0.5~1.5 차감	수출자금대출 연불금융 금리에서 0.5~1.5 차감	수출자금대출 연불금융 금리 적용

(5) 해외투자관련자금대출

76.7.1	77.2.9	80.1.8	82.12.1	84.11.5	85. 8.31	86. 3. 15	87.2.1	88.3.9	89.3.6
8~9	7	Libor + 1.96~1.99	Libor + 1.5~2.0	· 대기업: Libor+1.5 · 중소기업: 10 · 중요물자 또는 주요자원 확보사업:9	· 대기업:10 · 중소기업:9.5 · 중요물자 또는 주요자원 확보사업: 9	· 대기업:10 · 중소기업:9 · 중요물자 또는 주요자원 확보사업: 9	· 대기업: 9 · 중소기업: 8 · 중요물자 또는 주요자원 확보사업: 8	· 대기업: 8.5 · 중소기업: 7 · 중요물자 또는 주요자원 확보사업: 8	· 대기업: 8.5 · 중소기업: 7

90. 7.24	92. 9.15	93.1.8	93. 9.20	94.4.1	95.3.7
· 대기업: 9 · 중소기업: 8	· 대기업: 8 · 중소기업: 7	· 고정금리 대기업: 8 중소기업: 7 · 변동금리 대기업: Libor+1.00~1.50 중소기업: Libor+0.75~1.25	· 고정금리 대기업: 7.5~8.0 중소기업: 6.5~7.0 · 변동금리 대기업: Libor+0.75~1.50 중소기업: Libor+0.50~1.25	· 고정금리 CIRR~CIRR+1.0 · 변동금리 Libor+0.50~1.50	· 고정금리 CIRR~CIRR+1.0 · 변동금리 Libor+0.50~1.25

(6) 수입자금대출

87.6.1	90. 7.24	91.4.6	91. 5.24	93.1.8
10(융자매광거래: 9)	· 원화표시대출 대기업: 10.5 중소기업: 10 · 외화표시대출: Libor+0.5 · 융자매광거래: 9	· 원화표시대출 대기업: 11 중소기업: 10 · 외화표시대출: Libor+1.0 (시설재의 경우 Libor+0.5) · 융자매광거래: 9	· 원화표시대출 대기업: 11 중소기업: 10 · 외화표시대출: Libor+1.0 (중소기업 Libor+0.5) · 개발수입거래: 9	· 원화표시대출 대기업: 11 중소기업: 10 · 외화표시대출: Libor+1.0~1.5 (중소기업 Libor+0.75~1.25) · 개발수입거래: 9

93. 1.26	93. 3.26	93. 6. 15	93. 9.20
· 원화표시대출 대기업: 10 중소기업: 9 · 외화표시대출: Libor+1.0~1.5 (중소기업 Libor+0.75~1.25) · 개발수입거래: 9	· 원화표시대출 대기업: 9 중소기업: 8.5 · 외화표시대출: Libor+1.0~1.5 (중소기업 Libor+0.75~1.25) · 개발수입거래: 9	· 대기업: Libor+1.0~1.5 중소기업: Libor+0.75~1.25 · 개발수입거래: 9	· 고정금리 외화표시대출 (개발수입거래): 9 · 변동금리 외화표시대출 대기업: Libor+1.00~1.50 중소기업: Libor+0.75~1.25

(7) 주요자원 개발자금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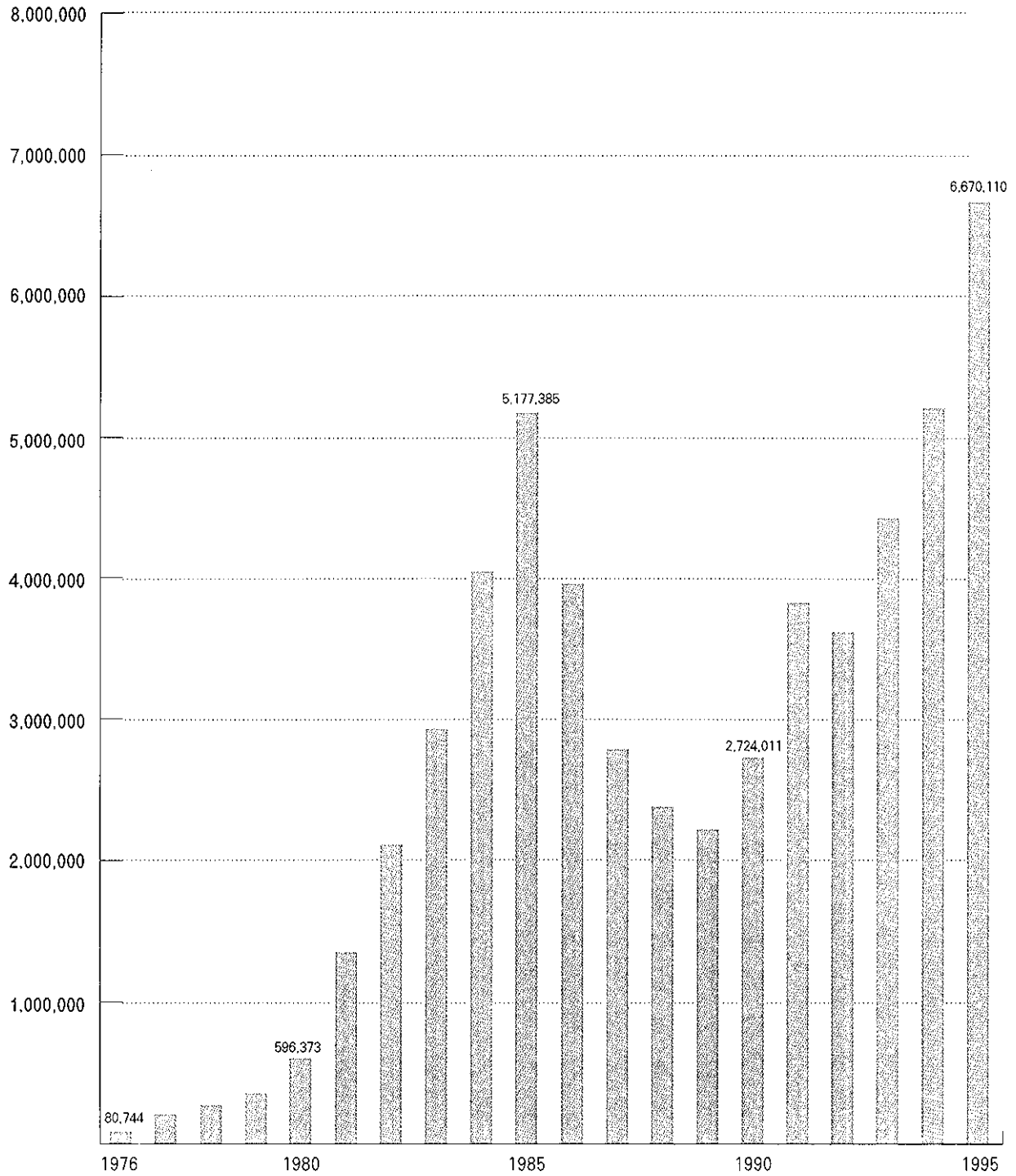
76.7.1	81. 5.19	81.11.17	87. 1.30
운영위 간별 결정	8	9	8

통계

1. 요약 대차대조표
2. 요약 손익계산서
3. 자금별 대출승인 실적
4. 자금별 대출집행 실적
5. 자금별 대출잔액
6. 지역별 대출승인 실적
7. 지역별 대출집행 실적
8. 지역별 대출잔액
9. 재원별 자금조달 실적
10. 수은 지원사업의 품목별
수출계약실적
11. 수은 지원사업의 품목별
수출이행실적
12. 경협기금 요약 대차대조표
13. 경협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14. 경협기금 조성실적
15. 경협기금 지원실적
16. 남북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17. 수출보험기금 조성실적
18. 수출보험 인수·보상 및
회수 실적
19. 수출보험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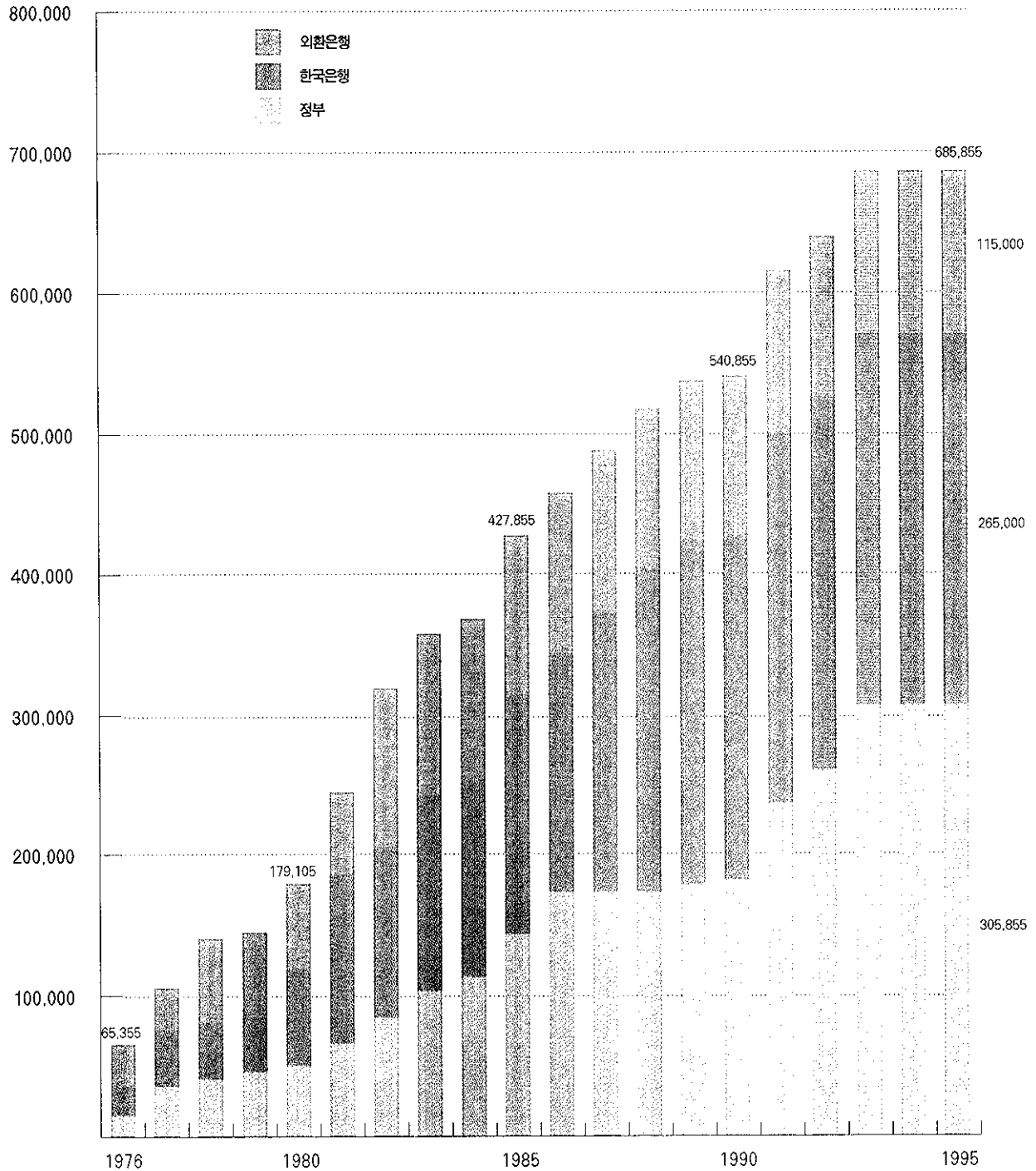
총자산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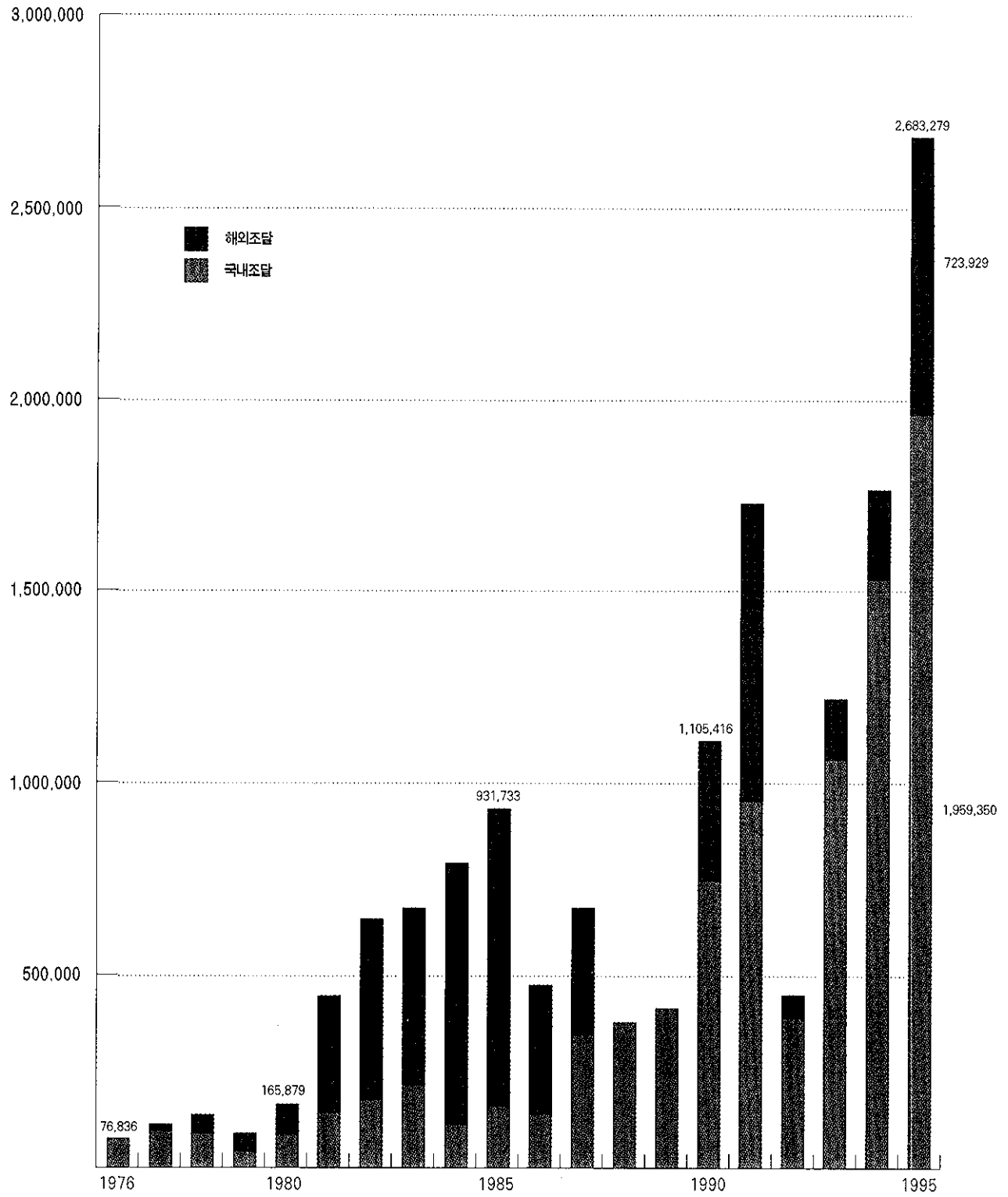
자본금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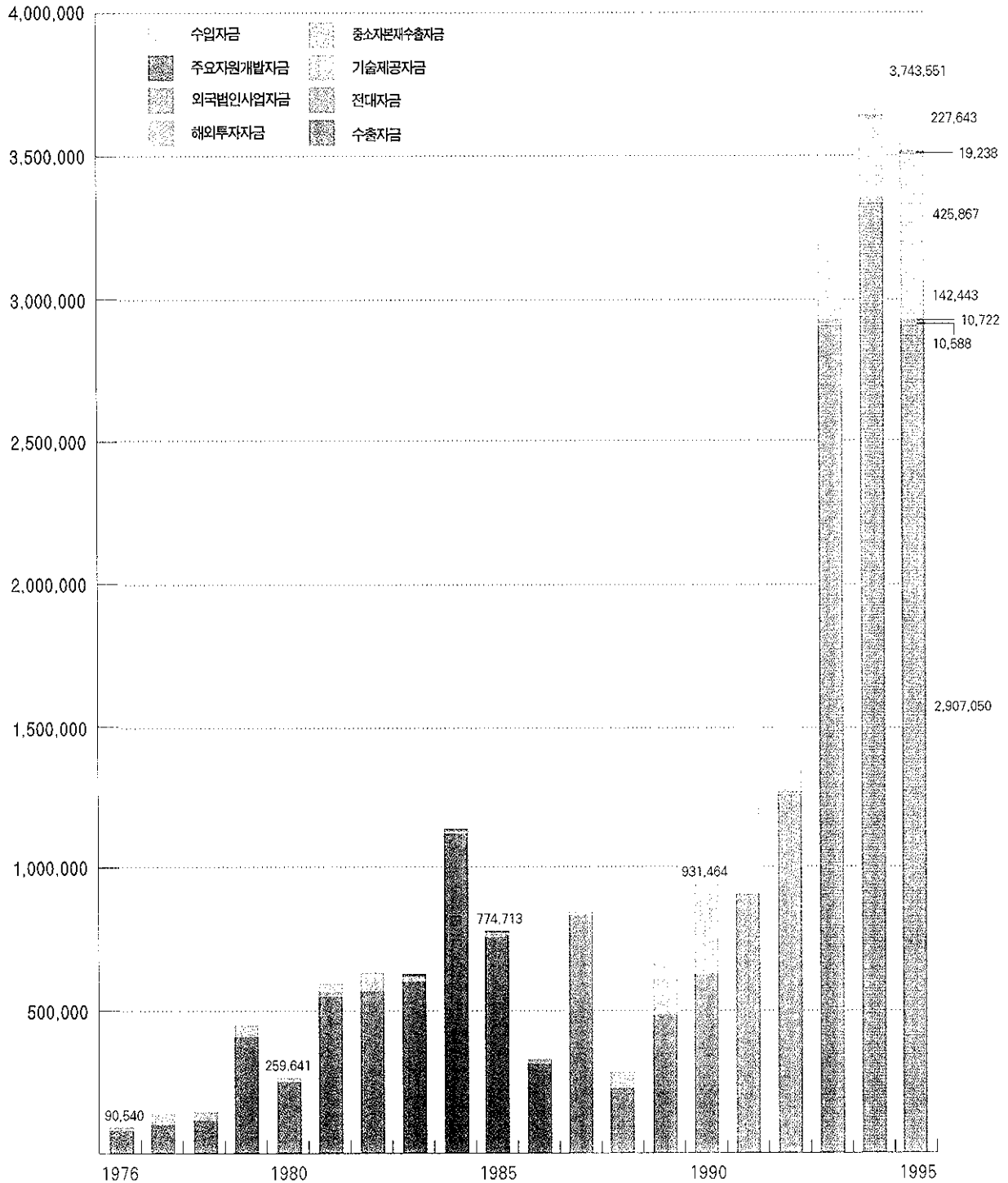
자금조달 실적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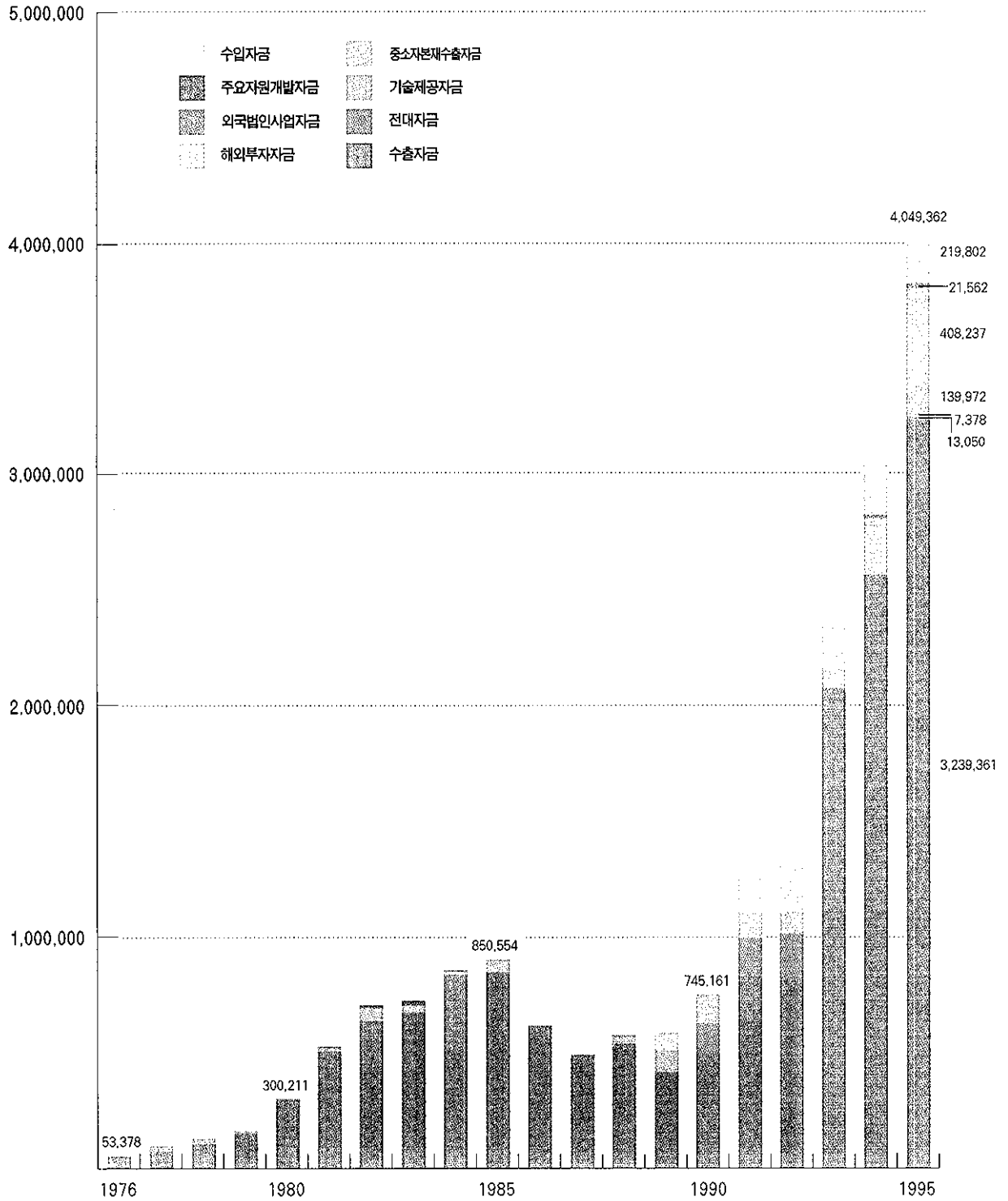
자금별 대출승인 실적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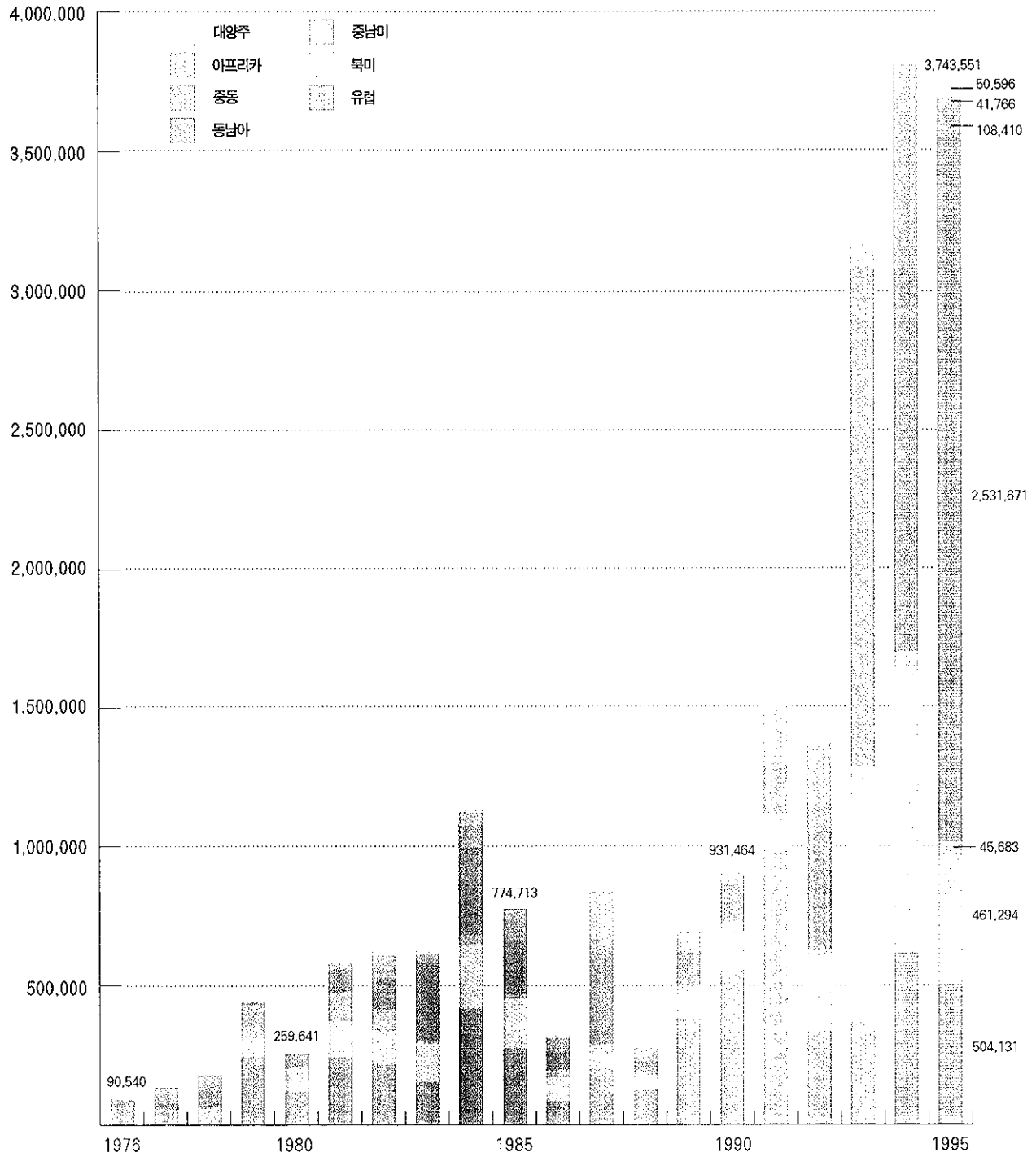
자금별 대출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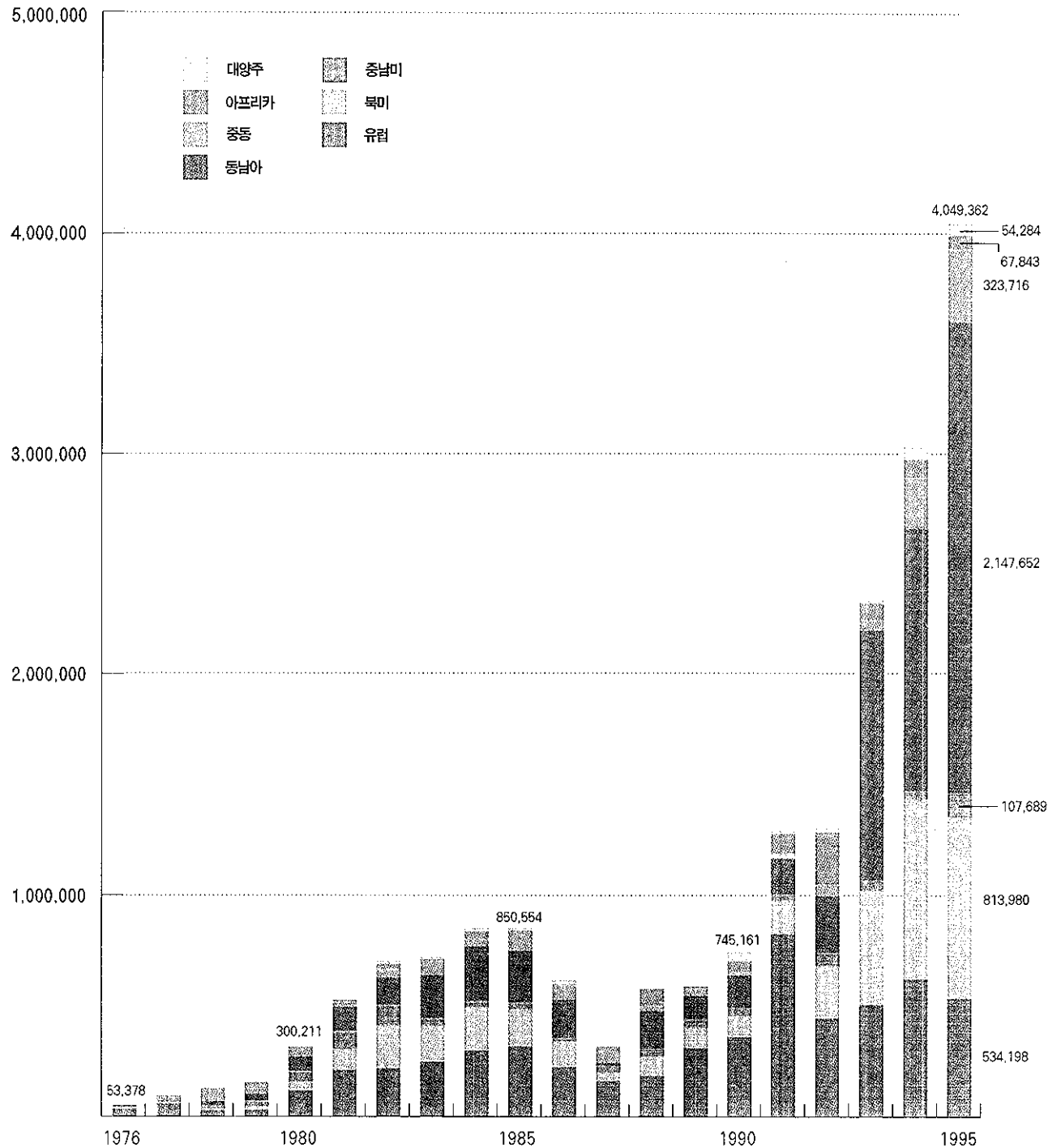
지역별 대출승인 실적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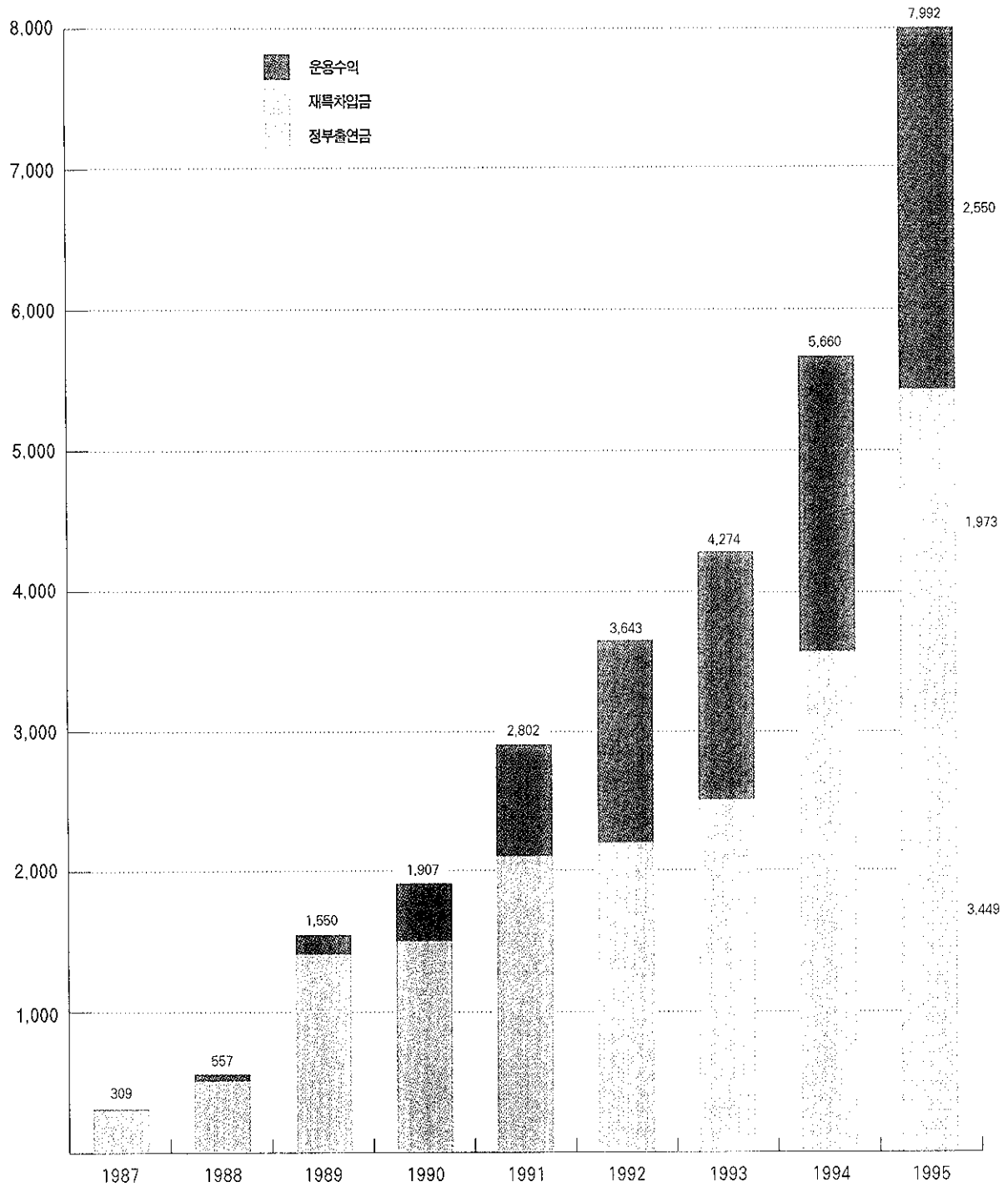
지역별 대출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경협기금 조성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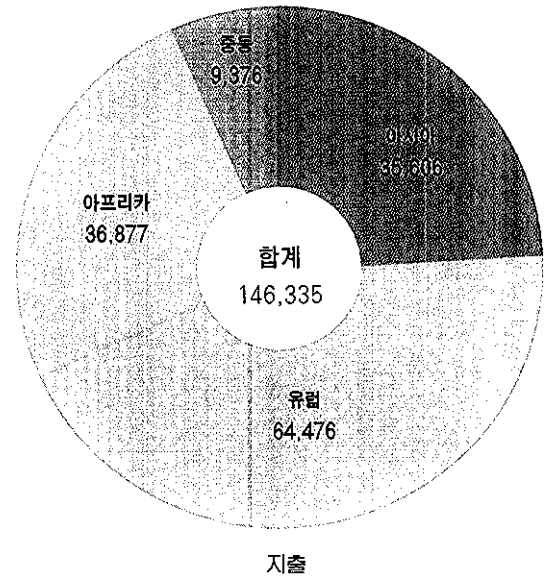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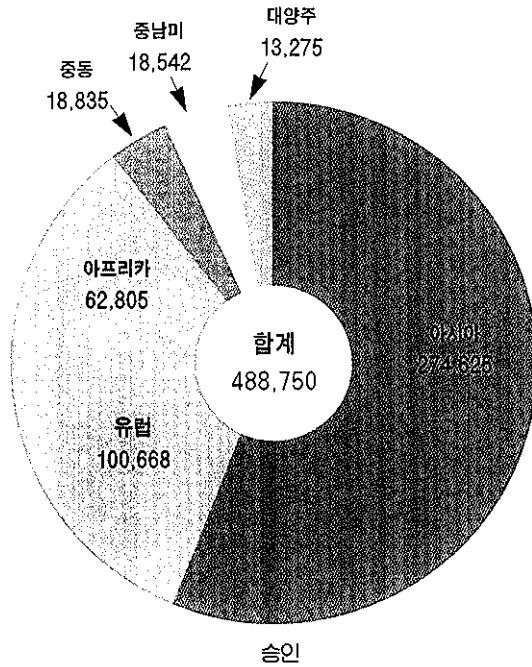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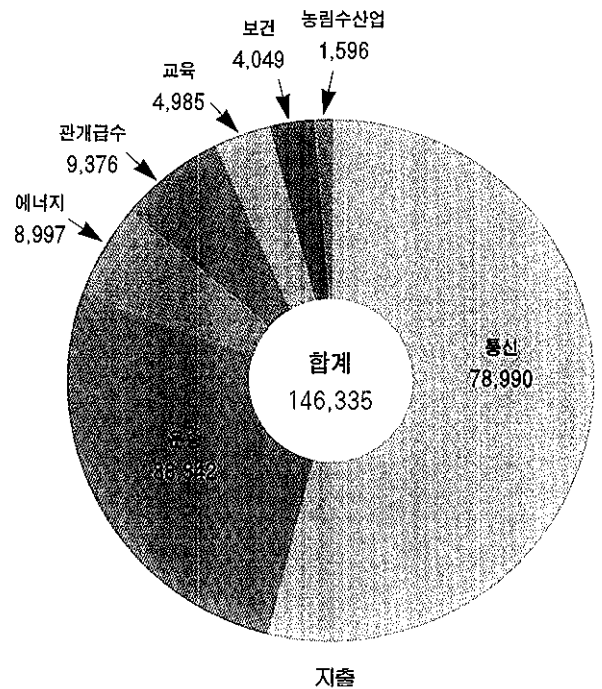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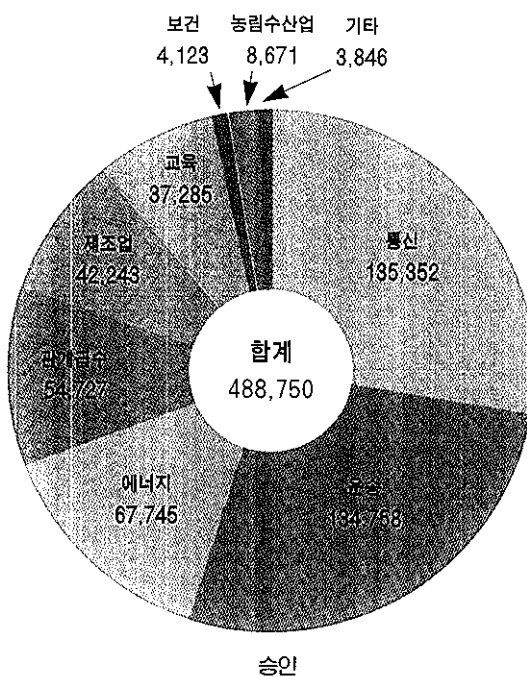
경협기금 지원실적 (1995년 12월 31일 누계)

• 지역별(해외투융자사업 포함)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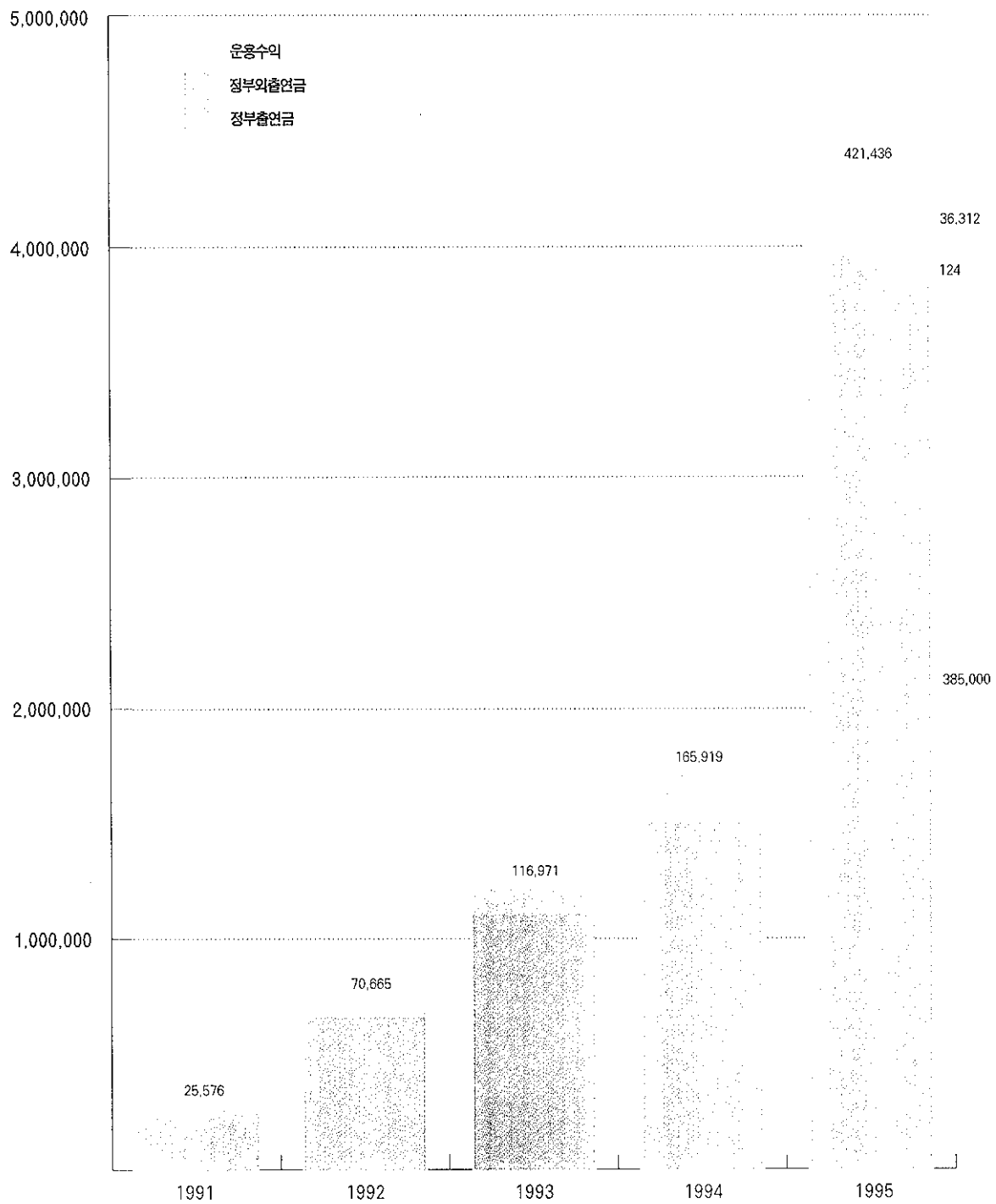


• 업종별(해외투융자사업 포함)



남북기금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1. 요약 대차대조표

	1976	1977	1978	1979
자 산				
현금 및 예치금	903	25,476	23,494	18,132
유가증권	21,945	31,047	46,502	74,600
콜론	-	-	-	-
대출금	56,172	120,641	164,610	225,523
지급승낙대출	-	22,232	29,302	26,699
연불어음매도대출	-	-	-	-
기타자산	1,451	2,172	539	838
업무용고정자산	94	1,994	3,710	5,358
이연자산	179	90	-	-
자산합계	80,744	203,652	268,157	351,150
부 채 및 자 본				
외국환	-	-	-	-
차입금	13,000	60,357	74,116	145,877
콜머니	-	-	-	-
발행금융채권	-	-	-	-
지급승낙	-	22,232	29,302	26,699
연불어음매도	-	-	-	-
연불어음매각대금	-	7,870	6,397	5,677
미지급연불어음매입대금	-	-	-	-
수입보증금	-	259	818	802
기타부채	886	1,324	3,668	5,759
충당금 및 준비금	22	2,512	3,446	4,926
자본금	65,355	105,355	140,355	144,855
적립금	101	1,481	3,743	10,056
당기순이익	1,380	2,262	6,312	6,499
부 채 및 자본합계	80,744	203,652	268,157	351,150

(단위: 백만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5,954	8,318	82,003	11,891	121,871	1,114,872
32,000	70,000	3	340,013	605,531	30,012
-	-	-	-	-	-
511,456	947,602	1,563,828	2,055,194	2,606,944	3,349,861
39,677	311,541	439,309	361,241	407,842	372,312
-	-	-	132,587	271,807	253,138
678	2,195	9,621	13,679	10,134	23,513
6,608	10,043	10,690	8,423	15,721	30,406
-	-	-	-	694	3,271
596,373	1,349,699	2,105,454	2,923,028	4,040,544	5,177,385
439	490	2,056	1,518	12,803	2,539
312,790	588,246	1,007,723	1,395,468	1,624,303	1,941,874
-	-	-	-	-	-
-	-	-	-	57,899	369,933
39,677	311,541	439,309	361,241	407,842	372,312
-	-	-	132,587	271,807	253,138
6,383	138,178	243,380	574,524	1,146,781	1,579,058
-	-	-	915	19,373	18,875
912	3,078	2,074	4,371	2,882	2,203
9,965	16,196	37,279	35,975	63,022	79,113
10,852	10,397	16,992	20,081	26,197	70,911
179,105	244,855	318,855	357,855	367,855	427,855
16,555	36,250	36,718	37,786	38,493	39,780
19,695	468	1,068	707	1,287	19,794
596,373	1,349,699	2,105,454	2,923,028	4,040,544	5,177,385

1-1. 요약 대차대조표

	1986	1987	1988	1989
자 산				
현금 및 예치금	884,718	251,594	144,926	101,091
유가증권	127,815	166,341	205,303	1,384
콜론	-	-	-	-
대출금	2,542,056	2,003,919	1,715,344	1,960,070
지급승낙대충	154,819	204,777	185,036	52,793
연불어음매도대충	180,297	75,401	48,967	34,987
기타자산	30,205	48,920	41,317	31,661
업무용고정자산	31,034	31,360	31,866	32,017
이연자산	2,775	988	152	-
자산합계	3,953,719	2,783,300	2,372,911	2,214,003
부채 및 자본				
외국환	4,380	3,970	325	-
차입금	1,420,730	691,614	703,267	750,065
콜머니	-	-	-	-
발행금융채권	443,350	439,511	339,598	306,231
지급승낙	154,819	204,777	185,036	52,793
연불어음매도	180,297	75,401	48,967	34,987
연불어음매각대금	1,014,815	582,961	283,499	203,853
미지급연불어음매입대금	13,548	755	33	-
수입보증금	1,981	2,725	2,210	2,232
기타부채	79,145	65,338	76,257	75,679
충당금 및 준비금	94,463	112,085	109,336	117,247
자본금	457,855	487,855	517,855	537,855
적립금	59,592	88,322	101,105	103,445
당기순이익	28,744	27,986	5,423	29,616
부채 및 자본합계	3,953,719	2,783,300	2,372,911	2,214,003

(단위: 백만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09,821	205,709	307,853	277,458	207,212	186,271
130,507	216,346	174,790	227,489	209,170	171,549
-	108,500	46,000	29,700	36,446	34,490
2,367,050	2,931,072	2,479,797	3,272,171	4,115,514	5,463,099
21,375	180,106	406,005	335,266	293,527	572,009
18,629	10,051	5,238	715	233	-
42,478	126,909	168,312	257,286	327,406	219,040
31,158	31,760	21,361	22,069	21,899	21,956
2,993	8,322	2,242	819	661	1,696
2,724,011	3,818,775	3,611,598	4,422,973	5,212,068	6,670,110
-	-	1,723	-	4,243	452
1,257,428	1,541,669	1,035,839	1,771,328	2,360,121	3,029,192
-	-	-	-	70,983	145,643
380,858	863,170	906,559	1,008,931	1,159,788	1,544,807
21,375	180,105	406,005	335,266	293,527	572,009
18,629	10,051	5,238	715	233	-
145,944	128,156	63,645	39,748	25,633	18,861
-	-	-	-	-	-
8,017	5,426	10,307	2,788	2,158	1,596
68,300	115,251	121,312	112,964	98,209	102,767
129,094	162,853	161,308	189,625	211,338	242,993
540,855	615,855	640,155	685,855	685,855	685,855
117,490	147,009	189,712	252,133	271,788	295,354
36,021	49,230	69,795	23,620	28,192	30,581
2,724,011	3,818,775	3,611,598	4,422,973	5,212,068	6,670,110

2. 요약 손익계산서

	1976	1977	1978	1979
수익				
대출금이자	2,848	6,476	8,752	14,955
예치금이자	-	84	3,437	1,666
유가증권이자	64	2,240	3,689	4,702
수입잡이자	-	242	2,891	4,499
수입수수료	10	160	288	134
보증료	-	3	14	21
외화환산익	1	1,735	3,547	1,750
선물거래익	-	-	-	-
정부이자보전금	-	-	-	-
유가증권매매익	-	-	-	-
기타수익	-	-	2,415	3,293
수익합계	2,923	10,940	25,033	31,020
비용				
차입금이자	1,085	2,050	4,072	6,944
콜머니이자	-	-	-	-
발행금융채권이자	-	-	-	-
기타지급이자	-	508	5,713	7,683
지급수수료	4	679	1,025	508
외화환산손	-	1,841	2,495	1,563
선물거래손	-	-	-	-
관리업무비	205	886	1,524	2,282
충당금 및 준비금 전입액	13	2,451	3,335	4,793
이연자산상각	90	90	90	-
영업외비용	-	-	-	-
기타비용	46	8	10	16
법인세등	100	164	457	732
비용합계	1,543	8,677	18,721	24,521
당기순이익	1,380	2,263	6,312	6,499

(단위: 백만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26,307	55,368	94,354	120,571	186,104	247,141
1,863	2,076	1,081	754	2,009	57,525
6,815	1,365	1,075	1,463	1,283	426
4,759	4,409	4,431	3,544	13,243	31,391
206	883	2,429	3,167	4,583	4,812
25	454	1,168	863	655	708
22,422	9,703	10,975	19,692	42,138	78,708
-	-	-	-	-	-
-	4,500	17,700	16,200	15,000	18,838
-	-	-	4,819	27,752	15,687
4,516	767	9	78	246	1,012
66,913	79,525	133,222	171,151	293,013	456,248
20,691	47,071	82,666	104,342	141,692	157,722
-	-	-	-	-	-
-	-	-	-	1,769	15,316
10,486	24,153	33,886	50,208	122,786	163,187
237	3,263	3,291	5,886	6,330	5,717
-	-	-	-	4,980	35,667
-	-	-	-	-	-
3,068	4,078	5,153	6,266	7,062	8,588
10,492	349	6,651	3,252	6,233	44,938
-	-	-	-	-	1,810
-	-	-	-	-	-
25	92	291	236	458	187
2,219	51	216	254	416	3,322
47,218	79,057	132,154	170,444	291,726	436,454
19,695	468	1,068	707	1,287	19,794

2-1. 요약 손익계산서

	1986	1987	1988	1989
수익				
대출금이자	269,809	190,172	149,563	141,314
예치금이자	97,939	46,492	14,801	9,813
유가증권이자	1,849	17,199	27,447	7,920
수입잡이자	44,389	62,478	41,969	34,593
수입수수료	4,772	3,525	3,199	2,234
보증료	440	177	182	98
외화환산익	37,162	649	4	20,202
선물거래익	-	-	-	-
정부이자보전금	-	-	-	-
유가증권매매익	-	-	-	-
기타수익	16,230	11,058	6,208	959
수익합계	472,590	331,750	243,373	217,133
비용				
차입금이자	139,416	75,137	56,103	58,235
콜머니이자	-	-	-	-
발행금융채권이자	32,958	32,076	26,672	28,786
기타지급이자	161,906	113,534	73,238	55,191
지급수수료	4,433	694	738	96
외화환산손	41,114	31,794	63,902	12,462
선물거래손	-	-	-	-
관리업무비	9,790	11,070	12,091	13,758
충당금 및 준비금 전입액	39,901	28,587	3,163	8,286
이연자산상각	2,466	2,268	848	152
영업외비용	-	-	-	162
기타비용	304	240	351	437
법인세등	11,558	8,364	844	9,952
비용합계	443,846	303,764	237,950	187,517
당기순이익	28,744	27,986	5,423	29,616

(단위: 백만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71,852	215,407	202,444	186,325	247,509	340,825
5,968	26,170	53,807	26,212	29,682	31,125
2,127	18,269	13,178	9,043	11,238	15,055
27,357	84,608	990	381	158	141
2,784	4,802	5,020	7,555	10,607	11,810
51	68	199	307	316	667
30,899	15,547	16,966	10,950	10,017	7,273
-	-	33,144	45,760	40,860	29,231
-	-	-	-	-	-
-	-	-	-	-	-
767	2,867	10,803	3,384	2,193	5,073
241,805	367,738	336,551	289,917	352,580	441,200
76,580	101,464	77,640	63,764	113,517	174,715
-	-	-	-	4,453	7,831
27,993	50,602	69,459	74,677	76,489	92,389
52,598	78,937	4,730	2,001	1,596	1,331
429	472	286	961	1,511	823
2,432	-	2,567	397	6,500	9,854
-	-	29,886	45,419	44,305	27,408
16,306	20,654	24,838	28,154	33,827	39,268
12,155	34,511	18,903	30,661	24,690	40,609
1,497	3,947	3,723	2,515	536	1,320
3,049	1,000	2,000	3,009	1,614	16
270	1,119	877	1,197	2,471	654
12,475	25,802	31,847	13,542	12,879	14,401
205,784	318,508	266,756	266,297	324,388	410,619
36,021	49,230	69,795	23,620	28,192	30,581

3. 자금별 대출승인 실적

	1976		1977		1978		197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 출 자 금	33	81,810	31	105,561	13	119,792	57	410,343
산 업 설 비	-	-	2	3,345	2	84,182	4	5,348
선 박	24	78,097	25	100,865	5	22,946	47	398,852
기 계 류 · 기 타	9	3,713	4	1,351	6	12,664	6	6,143
전 대 자 금	-	-	-	-	-	-	2	5,808
기 술 제 공 자 금	-	-	4	9,621	4	3,786	-	-
중소자본재수출자금	-	-	-	-	-	-	-	-
해 외 투 자 자 금	2	8,730	3	18,982	3	17,893	7	28,187
자 원 개 발	-	-	1	2,410	-	-	1	25,240
제 조 업	-	-	-	-	-	-	-	-
기 타	2	8,730	2	16,572	3	17,893	6	2,947
외국법인사업자금	-	-	-	-	-	-	-	-
주요자원개발자금	-	-	-	-	-	-	-	-
수 입 자 금	-	-	-	-	-	-	-	-
합 계	35	90,540	38	134,164	20	141,471	66	444,338

(단위: 백만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	252,628	63	552,230	58	570,813	59	603,803	107	1,120,065	54	759,335
8	89,583	9	171,923	6	58,561	6	130,019	10	180,117	12	330,316
18	155,671	36	371,340	44	505,064	50	467,134	95	939,205	40	423,378
8	7,374	18	8,967	8	7,188	3	6,650	2	743	2	5,641
1	5,279	1	2,102	1	2,246	-	-	2	4,137	1	8,012
1	230	-	-	1	1,155	-	-	-	-	-	-
-	-	-	-	-	-	-	-	-	-	-	-
2	1,504	1	9,562	4	47,717	5	14,308	4	7,203	2	2,306
-	-	1	9,562	3	47,455	2	13,810	1	6,461	-	-
-	-	-	-	-	-	-	-	-	-	-	-
2	1,504	-	-	1	262	3	498	3	742	2	2,306
-	-	-	-	-	-	-	-	-	-	-	-
-	-	1	26,982	1	6,174	1	5,836	1	1,987	1	5,060
-	-	-	-	-	-	-	-	-	-	-	-
38	259,641	66	590,876	65	628,105	65	623,947	114	1,133,392	58	774,713

3-1. 자금별 대출승인 실적

	1986		1987		1988		198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 출 자 금	26	314,444	70	835,724	20	225,256	43	481,556
산 업 설 비	6	131,667	5	114,675	2	6,897	2	9,135
선 박	18	180,114	60	710,000	18	218,359	34	460,385
기 계 류 · 기 타	2	2,663	5	11,049	-	-	7	12,036
전 대 자 금	6	6,891	-	-	-	-	-	-
기 술 제 공 자 금	-	-	-	-	-	-	-	-
중소자본재수출자금	-	-	-	-	-	-	-	-
해 외 투 자 자 금	7	2,779	13	4,101	47	39,703	112	128,660
자 원 개 발	-	-	-	-	1	246	3	6,252
제 조 업	-	-	13	4,101	39	29,154	92	70,224
기 타	7	2,779	-	-	7	10,303	17	52,184
외국법인사업자금	-	-	-	-	-	-	-	-
주요자원개발자금	-	-	-	-	-	-	-	-
수 입 자 금	-	-	-	-	22	16,264	50	81,334
합 계	39	324,134	83	839,825	89	281,223	205	691,550

(단위: 백만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	622,548	45	906,224	54	1,157,589	92	2,909,535	91	3,334,862	99	2,907,050
2	7,742	8	82,545	13	193,791	36	1,397,226	39	1,115,178	48	1,462,615
25	590,553	30	790,485	17	574,033	15	297,624	23	549,750	24	473,357
2	24,253	7	33,194	24	389,765	41	1,214,685	29	1,669,934	27	971,078
2	556	14	365,672	11	7,744	18	14,136	14	14,403	20	10,588
-	-	-	-	-	-	-	-	-	-	1	10,722
-	-	-	-	-	-	-	-	-	-	71	142,443
135	146,539	121	93,109	113	77,169	126	78,127	157	274,278	216	425,867
2	10,703	1	1,369	-	-	1	145	1	710	2	2,510
127	123,700	118	90,979	110	73,401	119	74,766	149	268,113	199	407,168
6	12,136	2	761	3	3,768	6	3,216	7	5,455	15	16,189
-	-	-	-	-	-	-	-	11	19,244	11	19,238
-	-	-	-	-	-	-	-	-	-	-	-
89	161,821	79	205,225	60	157,676	59	185,960	146	224,891	225	227,643
255	931,464	259	1,570,230	238	1,400,178	295	3,187,758	419	3,867,678	643	3,743,551

4. 자금별 대출집행 실적

	1976	1977	1978	1979
수출자금	47,312	73,479	105,091	146,198
산업설비	-	130	35,983	50,216
선박	42,913	71,730	58,397	90,468
기계류·기타	4,399	1,619	10,711	5,514
전대자금	-	-	-	964
기술제공자금	-	6,990	6,012	404
중소자본채수출자금	-	-	-	-
해외투자자금	6,066	15,561	16,066	10,985
자원개발	-	2,395	-	678
제조업	-	-	-	-
기타	6,066	13,166	16,066	10,307
외국법인사업자금	-	-	-	-
주요자원개발자금	-	-	-	-
수입자금	-	-	-	-
합계	53,378	96,030	127,169	158,551

(단위: 백만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296,280	504,413	634,486	667,903	831,293	840,124
37,996	44,965	135,340	185,599	89,138	161,340
251,691	455,589	492,652	473,114	741,735	675,138
6,593	3,859	6,494	9,190	420	3,646
1,702	1,627	1,958	602	-	1,747
171	37	611	179	-	-
-	-	-	-	-	-
2,058	11,545	51,334	31,667	14,428	3,624
779	11,534	51,072	31,288	13,680	2,174
-	-	-	-	-	-
1,279	11	262	379	748	1,450
-	-	-	-	-	-
-	6,466	13,260	19,155	4,536	5,059
-	-	-	-	-	-
300,211	524,088	701,649	719,506	850,257	850,554

4-1. 자금별 대출집행 실적

	1986	1987	1988	1989
수 출 자 금	612,850	484,350	533,282	409,631
산 업 설 비	247,541	107,974	94,002	7,242
선 배	362,054	362,793	438,312	400,407
기 계 류 · 기 타	3,255	13,583	968	1,982
전 대 자 금	-	-	1,375	62
기 술 제 공 자 금	-	-	-	-
중소자본재수출자금	-	-	-	-
해 외 투 자 자 금	1,579	5,168	28,546	94,379
자 원 개 발	111	-	246	4,852
제 조 업	-	5,168	19,954	60,068
기 타	1,468	-	8,346	29,459
외국법인사업자금	-	-	-	-
주요자원개발자금	-	-	-	-
수 입 자 금	-	-	12,749	77,496
합 계	614,429	489,518	575,952	581,568

(단위: 백만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484,385	824,857	806,004	2,053,114	2,550,047	3,239,361
8,062	30,388	76,357	887,774	856,719	1,438,750
466,235	771,527	547,692	307,144	412,269	419,346
10,088	22,942	181,955	858,196	1,281,059	1,381,265
556	168,469	201,944	15,179	10,110	13,050
-	-	-	-	-	7,378
-	-	-	-	-	139,972
140,079	99,969	96,696	77,597	242,437	408,237
12,179	2,815	1,734	145	710	1,348
109,020	89,162	82,851	70,241	236,112	391,800
18,880	7,992	12,111	7,211	5,615	15,089
-	-	-	-	16,878	21,562
-	-	-	-	-	-
120,141	197,803	197,894	191,365	214,290	219,802
745,161	1,291,098	1,302,538	2,337,255	3,033,762	4,049,362

5. 자금별 대출잔액

	1976	1977	1978	1979
수 출 자 금	49,583	91,958	116,043	186,458
산 업 설 비	306	366	32,886	56,023
선	40,420	82,191	64,882	114,938
기 계 류 · 기 타	8,857	9,401	18,275	15,497
전 대 자 금	-	-	-	964
기 술 제 공 자 금	-	6,610	10,526	9,250
중소자본재수출자금	-	-	-	-
해 외 투 자 자 금	6,589	22,073	38,041	28,850
자 원 개 발	523	2,841	2,753	3,279
제 조 업	-	-	-	-
기 타	6,066	19,232	35,288	25,571
외국법인사업자금	-	-	-	-
주요자원개발자금	-	-	-	-
수 입 자 금	-	-	-	-
합 계	56,172	120,641	164,610	225,522

(단위: 백만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484,625	904,842	1,460,122	1,901,293	2,440,799	3,168,976
94,933	106,372	198,868	291,676	367,090	514,930
369,954	779,181	1,239,382	1,588,179	2,058,495	2,639,388
19,738	19,289	21,872	21,438	15,214	14,658
3,074	4,610	2,551	2,146	1,675	3,510
10,438	8,363	7,063	5,908	4,452	3,560
-	-	-	-	-	-
13,319	23,322	73,920	105,262	119,339	124,989
4,277	14,986	66,136	98,173	113,269	119,157
-	-	-	-	-	-
9,042	8,336	7,784	7,089	6,070	5,832
-	-	-	-	-	-
-	6,465	20,172	40,585	40,679	48,826
-	-	-	-	-	-
511,456	947,602	1,563,828	2,055,194	2,606,944	3,349,861

5-1. 자금별 대출잔액

	1986	1987	1988	1989
수 출 자 금	2,379,254	1,866,155	1,589,016	1,686,908
산 업 설 비	560,952	407,948	261,123	182,860
선 박	1,805,049	1,436,159	1,317,193	1,494,394
기 계 류 · 기 타	13,253	22,048	10,700	9,654
전 대 자 금	3,147	1,995	2,715	1,688
기 술 제 공 자 금	2,411	-	-	-
중소자본재수출자금	-	-	-	-
해 외 투 자 자 금	109,997	92,314	73,342	156,703
자 원 개 발	104,789	85,077	39,825	35,402
제 조 업	-	7,152	25,171	82,618
기 타	5,199	85	8,346	38,683
외국법인사업자금	-	-	-	-
주요자원개발자금	47,246	43,456	37,522	37,275
수 입 자 금	-	-	12,749	77,496
합 계	2,542,055	2,003,920	1,715,344	1,960,070

(단위: 백만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15,331	2,111,433	1,278,381	1,909,436	2,476,241	3,190,612
120,624	101,776	98,561	884,259	1,311,566	2,098,191
1,781,046	1,982,332	1,057,972	634,699	722,549	598,248
13,661	27,325	121,848	390,478	442,126	494,173
1,355	169,149	376,114	396,185	392,161	388,570
-	-	-	-	-	3,408
-	-	-	-	-	139,972
291,091	377,358	431,293	448,371	565,164	874,332
51,544	50,211	72,328	68,281	18,544	15,402
190,119	269,956	324,750	340,649	493,578	803,644
49,428	57,191	34,215	39,441	53,042	55,286
-	-	-	-	16,878	35,952
39,294	41,729	43,243	44,323	43,259	42,491
119,980	231,403	350,767	462,947	582,415	639,259
2,367,051	2,931,072	2,479,798	3,261,262	4,076,118	5,314,596

6. 지역별 대출승인 실적

	1976		1977		1978		1979		198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 럽	21	68,756	8	46,165	4	18,567	21	241,286	1	4,749
북 미	4	15,335	2	8,481	-	-	7	69,655	8	111,832
중 남 미	-	-	-	-	3	4,049	10	43,352	5	37,403
동 남 아	8	3,342	8	17,680	2	117	21	78,869	16	46,814
중 동	-	-	2	2,128	3	63,652	2	3,128	5	53,178
아 프 리 카	2	3,107	17	59,236	8	55,086	3	3,496	1	1,980
대 양 주	-	-	1	474	-	-	2	4,552	2	3,685
합 계	35	90,540	38	134,164	20	141,471	66	444,338	38	259,641

	1986		1987		1988		1989		199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 럽	10	84,101	28	201,295	14	125,234	31	378,034	33	551,376
북 미	4	84,687	7	56,368	27	53,143	51	82,173	66	131,477
중 남 미	8	24,367	9	29,276	12	7,239	24	36,029	24	45,706
동 남 아	10	63,859	25	378,872	32	40,839	83	115,342	116	133,811
중 동	2	55,116	3	4,469	-	-	3	829	1	6,199
아 프 리 카	4	11,160	9	169,041	1	49,798	6	58,727	2	36,117
대 양 주	1	844	2	504	3	4,970	7	20,416	13	26,778
합 계	39	324,134	83	839,825	89	281,223	205	691,550	255	931,464

(단위: 백만원)

	1981		1982		1983		1984		198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 럽	15	239,546	15	217,964	18	150,587	37	416,301	19	274,521
북 미	10	129,351	16	118,479	11	141,409	14	224,055	6	180,059
중 남 미	17	103,473	8	73,004	1	5,549	2	35,441	2	11,279
동 남 아	19	83,813	15	108,213	25	283,560	38	316,134	22	193,227
중 동	-	-	2	13,156	5	30,925	8	84,653	5	83,985
아 프 리 카	2	23,458	5	77,154	2	974	12	43,593	1	2,474
대 양 주	3	11,235	4	20,135	3	10,943	3	13,215	3	29,168
합 계	66	590,876	65	628,105	65	623,947	114	1,133,392	58	774,713

	1991		1992		1993		1994		199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 럽	38	983,770	30	337,201	38	364,612	50	616,261	48	504,131
북 미	44	106,212	35	271,397	44	880,218	50	1,031,688	108	461,294
중 남 미	29	22,696	18	15,599	20	41,856	28	49,571	23	45,683
동 남 아	132	166,286	130	427,056	179	1,796,632	249	1,380,055	434	2,531,671
중 동	3	28,985	6	114,720	1	7,603	8	550,710	5	108,410
아 프 리 카	4	203,642	12	206,121	1	72,279	10	183,004	3	41,766
대 양 주	9	58,639	7	28,084	12	24,558	24	56,389	22	50,596
합 계	259	1,570,230	238	1,400,178	295	3,187,758	419	3,867,678	643	3,743,551

7. 지역별 대출집행 실적

	1976	1977	1978	1979	1980
유 럽	40,280	62,030	34,640	34,737	119,136
북 미	6,250	9,017	68	14,236	39,483
중 남 미	-	6,344	4,909	2,047	23,566
동 남 아	3,474	9,122	6,551	18,188	68,281
중 동	-	2,065	25,543	35,456	31,845
아 프 리 카	2,820	6,978	55,458	51,099	12,308
대 양 주	554	474	-	2,788	5,592
합 계	53,378	96,030	127,169	158,551	300,211

	1986	1987	1988	1989	1990
유 럽	224,995	162,067	184,721	303,896	361,522
북 미	116,121	38,317	87,763	90,415	93,765
중 남 미	9,817	25,757	28,273	37,236	32,664
동 남 아	178,497	164,024	176,623	106,455	153,803
중 동	61,688	31,728	14,808	850	5,144
아 프 리 카	5,668	62,798	82,670	35,676	54,507
대 양 주	17,643	4,827	1,094	7,040	43,756
합 계	614,429	489,518	575,952	581,568	745,161

(단위: 백만원)

	1981	1982	1983	1984	1985
유 럽	208,291	215,518	248,900	299,087	322,853
북 미	97,259	194,378	164,199	195,228	163,519
중 남 미	78,138	92,502	26,503	19,147	24,971
동 남 아	111,102	124,914	203,426	253,615	239,877
중 동	22,169	38,211	60,183	33,218	80,731
아 프 리 카	1,279	24,461	4,717	35,942	9,712
대 양 주	5,850	11,665	11,578	14,020	8,891
합 계	524,088	701,649	719,506	850,257	850,554

	1991	1992	1993	1994	1995
유 럽	824,762	443,992	507,543	622,121	534,198
북 미	147,391	234,823	511,424	807,074	813,980
중 남 미	28,129	58,569	43,074	38,511	107,689
동 남 아	165,274	261,014	1,135,575	1,192,782	2,147,652
중 동	20,029	44,755	45,764	229,121	323,716
아 프 리 카	91,934	239,576	76,333	86,292	67,843
대 양 주	13,579	19,809	17,542	57,861	54,284
합 계	1,291,098	1,302,538	2,337,255	3,033,762	4,049,362

8. 지역별 대출잔액

	1976	1977	1978	1979	1980
유 럽	36,255	78,231	58,211	61,011	165,038
북 미	6,252	7,600	-	13,886	50,146
중 남 미	1,532	6,494	10,212	10,363	36,092
동 남 아	3,478	10,935	16,782	32,833	101,614
중 동	306	2,301	23,116	24,517	50,273
아 프 리 카	2,852	9,797	51,694	76,664	96,918
대 양 주	5,497	5,283	4,595	6,248	11,375
합 계	56,172	120,641	164,610	225,522	511,456

	1986	1987	1988	1989	1990
유 럽	878,252	563,176	553,417	734,182	949,567
북 미	430,004	334,108	183,149	260,893	283,505
중 남 미	116,929	103,122	94,629	127,699	155,096
동 남 아	835,158	746,833	647,914	632,120	697,413
중 동	142,329	93,227	50,509	27,675	17,108
아 프 리 카	90,071	121,324	155,121	148,122	197,381
대 양 주	49,312	42,130	30,605	29,379	66,981
합 계	2,542,055	2,003,920	1,715,344	1,960,070	2,367,051

(단위: 백만원)

	1981	1982	1983	1984	1985
유 럽	357,199	576,919	733,259	953,537	1,233,315
북 미	138,500	366,237	430,811	604,211	744,433
중 남 미	110,941	179,870	208,715	189,856	181,166
동 남 아	201,760	266,641	454,107	650,818	888,309
중 동	34,908	46,021	101,862	46,836	126,496
아 프 리 카	88,129	99,239	91,947	113,210	118,674
대 양 주	16,165	28,901	34,493	48,476	57,468
합 계	947,602	1,563,828	2,055,194	2,606,944	3,349,861

	1991	1992	1993	1994	1995
유 럽	1,566,814	993,799	1,105,030	1,298,553	1,118,606
북 미	342,754	344,140	433,474	514,449	462,884
중 남 미	129,647	144,457	120,417	100,348	126,843
동 남 아	640,673	668,522	1,409,475	1,695,753	2,983,207
중 동	26,736	41,296	67,423	280,729	465,984
아 프 리 카	154,371	211,339	49,462	85,396	75,183
대 양 주	70,077	76,245	75,981	100,890	81,889
합 계	2,931,072	2,479,798	3,261,262	4,076,118	5,314,596

9. 재원별 자금조달 실적

		1976	1977	1978	1979
국 내 조 달	자본금	65,355	40,000	35,000	4,500
	적립금	1,481	2,263	6,312	6,499
	재특회계 차입	-	-	-	-
	국투기금 차입	10,000	30,000	29,684	30,000
	국내금융기관 차입	-	5,000	15,000	-
	원화 수출입금융채권	-	-	-	-
	한은 보유외화 수탁	-	16,732	85	964
	소 계	76,836	93,995	86,081	41,963
해 외 조 달	은행단 차관	-	-	-	48,400
	외화 수출입금융채권	-	-	-	-
	연불어음 매각	-	19,873	52,189	-
	전대차관	-	-	-	-
	기타	-	-	-	-
	소 계	-	19,873	52,189	48,400
합 계		76,836	113,868	138,270	90,363

		1986	1987	1988	1989
국 내 조 달	자본금	30,000	30,000	30,000	20,000
	적립금	28,762	14,229	1,035	13,907
	재특회계 차입	-	-	-	-
	국투기금 차입	80,000	90,000	75,000	56,315
	국내금융기관 차입	-	-	-	-
	원화 수출입금융채권	-	-	-	-
	한은 보유외화 수탁	-	197,211	266,946	308,986
	소 계	138,762	331,440	372,981	399,208
해 외 조 달	은행단 차관	32,557	158,461	-	-
	외화 수출입금융채권	-	-	-	-
	연불어음 매각	304,082	174,039	-	-
	전대차관	-	-	-	-
	기타	-	-	-	-
	소 계	336,639	332,500	-	-
합 계		475,401	663,949	372,981	399,208

(단위: 백만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34,250	65,750	74,000	39,000	10,000	60,000
19,695	468	1,068	707	1,287	19,794
-	-	-	-	-	-
30,000	75,000	100,000	175,000	100,000	80,000
-	-	-	-	-	-
-	-	-	-	-	-
1,700	1,552	1,852	692	-	1,747
85,645	142,770	176,920	215,399	111,287	161,541
79,188	142,202	312,998	23,069	57,918	15,439
-	-	-	-	41,370	267,060
-	140,801	119,574	429,579	582,969	487,693
1,046	22,415	37,942	8,219	-	-
-	-	-	-	-	-
80,234	305,418	470,514	460,867	682,257	770,192
165,879	448,188	647,434	676,266	793,544	931,733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3,000	75,000	24,300	45,700	-	-
29,705	42,252	62,730	19,642	23,552	28,247
-	100,000	22,500	-	140,000	140,000
40,186	8,599	2,443	-	-	-
-	-	-	-	-	-
-	26,358	23,102	-	-	-
664,808	690,794	244,402	988,843	1,360,768	1,791,103
737,699	943,003	379,477	1,054,185	1,524,320	1,959,350
-	222,747	63,300	-	78,870	-
364,135	449,423	-	161,620	157,740	723,929
-	107,844	-	-	-	-
-	-	-	-	-	-
3,582	-	-	-	-	-
367,717	780,014	63,300	161,620	236,610	723,929
1,105,416	1,723,017	442,777	1,215,805	1,760,930	2,683,279

10. 수은 지원사업의 품목별 수출계약실적

(단위: 천달러)

	산업설비	선박	기계류·기타	합계
1976	-	270,133	8,750	278,883
1977	10,190	295,280	4,935	310,405
1978	297,145	67,070	46,363	410,578
1979	14,644	1,013,337	30,074	1,058,055
1980	223,622	388,288	24,209	636,119
1981	386,047	911,364	28,490	1,325,901
1982	126,846	1,199,909	20,959	1,347,714
1983	302,552	1,090,028	17,374	1,409,954
1984	392,249	2,052,096	6,600	2,450,945
1985	612,043	789,264	19,188	1,420,495
1986	353,289	320,692	12,545	686,526
1987	175,283	1,221,579	31,548	1,428,410
1988	16,967	498,382	-	515,349
1989	25,188	1,069,799	28,513	1,123,500
1990	23,624	1,237,610	49,292	1,310,526
1991	166,405	1,879,866	535,190	2,581,461
1992	376,325	1,161,847	636,630	2,174,802
1993	2,519,280	641,408	2,031,416	5,192,104
1994	1,839,766	1,098,010	2,755,603	5,693,379
1995	2,403,966	968,620	2,067,853	5,467,439

11. 수은 지원사업의 품목별 수출이행실적

(단위: 천달러)

	산업설비	선박	기계류·기타	합계
1976	-	243,012	6,868	249,880
1977	-	149,497	5,015	154,512
1978	15,748	174,969	25,440	216,157
1979	70,150	268,732	23,396	362,278
1980	81,234	302,909	13,394	397,537
1981	60,938	565,650	16,829	643,417
1982	281,520	1,053,448	21,269	1,356,237
1983	671,174	1,005,013	10,002	1,686,189
1984	100,279	1,277,286	13,312	1,390,877
1985	209,016	1,478,884	8,407	1,696,307
1986	299,175	1,196,081	4,088	1,499,344
1987	300,314	549,949	4,545	854,808
1988	413,146	723,172	25,350	1,161,668
1989	28,055	1,092,088	-	1,120,143
1990	123,782	990,703	13,429	1,127,914
1991	10,768	1,417,350	261,496	1,689,614
1992	13,996	1,521,032	362,080	1,897,108
1993	129,129	1,282,687	702,226	2,114,042
1994	1,046,191	528,338	2,012,764	3,587,293
1995	1,146,422	1,118,244	2,537,124	4,801,790

12. 경험기금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예치금	340	2,795	4,549	4,343	5,496	145,902	188,305	223,513	410,102
유가증권	29,757	51,011	144,823	172,608	264,431	178,369	141,781	74,128	109,327
미수수익	769	1,831	4,386	5,477	7,133	14,712	15,756	6,662	9,205
대출금	-	-	1,208	8,266	13,195	25,389	81,636	111,836	145,451
기타자산	-	-	-	-	-	-	-	150,000	123,400
자산합계	30,866	55,367	154,966	190,694	290,255	364,372	427,478	566,139	797,485
유동부채	-	-	66	66	151	166	182	214	327
고정부채(재투자입금)	-	-	40,000	40,000	90,000	100,000	110,000	130,000	197,330
자본금(정부출연금)	30,000	50,000	100,000	110,000	120,000	120,000	139,870	224,870	344,870
이익잉여금	866	5,637	14,900	40,628	80,104	144,206	177,426	211,055	254,958
부채 및 자본합계	30,866	55,637	154,966	190,694	290,255	364,372	427,478	566,139	797,485

13. 경험기금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예치금이자	10	89	443	544	300	8,374	18,735	26,027	32,353
유가증권이자	1,006	4,882	9,890	27,531	43,532	60,780	20,105	9,918	9,388
대출금이자	-	-	-	83	453	679	1,703	2,270	3,790
재투자입금이자	-	-	-	-	-	-	-	2,366	5,13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자	-	-	-	-	-	-	-	-	2,302
수입수수료	-	-	-	-	-	11	40	25	43
수익합계	1,016	4,971	10,333	28,158	44,285	69,844	40,583	41,056	53,010
차입금이자	-	-	440	2,200	3,518	5,223	5,762	6,302	7,809
위탁수수료	150	200	630	230	1,290	519	1,601	1,125	1,298
비용합계	150	200	1,070	2,430	4,808	5,742	7,363	7,427	9,107
당기순이익	866	4,771	9,263	25,728	39,477	64,102	33,220	33,629	43,903

14. 경협기금 조성실적

(단위: 억원)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누계
정부출연금	300	200	500	100	100	-	199	850	1,200	3,449
재투자입금	-	-	400	-	500	100	100	200	673	1,973
운용수익	9	48	93	257	395	641	332	336	439	2,550
합 계	309	248	993	357	995	741	631	1,386	2,312	7,972

15. 경협기금 지원실적

(단위: 억원)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누계
정부지원 방침결정	건수	2	1	1	4	6	7	2	11	12	46
	금액	179	71	42	238	580	754	505	1,029	1,490	4,888
	(백만달러)	23.5	9.8	6.2	33.8	80.0	98.7	64.0	127.7	194.0	637.7
차관공여 계약체결	건수	-	-	2	-	4	3	6	2	11	28
	금액	-	-	179	-	413	236	779	505	1,237	3,349
	(백만달러)	-	-	23.5	-	57.9	32.5	102.0	64.4	157.2	437.5
자금지출		-	-	12	71	49	122	562	302	345	1,463

* 해외투융자사업 포함

16. 남북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1991	1992	1993	1994	1995	누 계
조 성	조 성 (A)	전 기 이 월 금	-	(23,108.7)	(67,376.1)	(113,412.2)	(162,089.8)	-
		정 부 출 연 금	25,000.0	40,000.0	40,000.0	40,000.0	240,000.0	385,000.0
		정 부 외 출 연 금	-	0.1	4.0	-	119.5	123.6
		운 용 수 익	576.4	5,088.6	6,302.1	8,947.6	15,397.5	36,312.2
		계	25,576.4	45,088.7	46,306.1	48,947.6	255,517.0	421,435.8
	사 용 (B)	무 상 지 원	2,217.7	551.4	-	-	182,403.7	185,172.8
		(남북교류지원)	(949.8)	(551.4)	-	-	(182,403.7)	(183,904.9)
		(손 실 보 조)	(1,267.9)	-	-	-	-	(1,267.9)
		운 용 비 용	250.0	270.0	270.0	270.0	200.0	1,260.0
		계	2,467.7	821.4	270.0	270.0	182,603.7	186,432.8
순조성액(A-B)		23,108.7	44,267.3	46,036.1	48,677.6	72,913.3	235,003.0	
운 용	유 상 자 원	자 금 대 출	-	-	-	-	-	-
		원 화 인 수 매 각	-	-	-	-	-	-
		계	-	-	-	-	-	-
	여 유 자 금	재 특 예 처	-	35,000.0	40,000.0	40,000.0	-	115,000.0
		공 공 기 금 예 탁	-	-	-	619.0	40,000.0	40,619.0
		기 타	23,108.7	9,267.3	6,036.1	8,058.6	32,913.3	79,384.0
		계	23,108.7	44,267.3	46,036.1	48,677.6	72,913.3	235,003.0
	합 계		23,108.7	44,267.3	46,036.1	48,677.6	72,913.3	235,003.0

17. 수출보험기금 조성실적

(단위: 백만원)

	정부출연 (A)	기타출연 (B)	이익전입액 (C)	손실보전금 (D)	합계 (A+B+C-D)	총누계
1969~76	1,500	-	789	-	2,289	2,289
1977	2,000	-	(361)	-	1,639	3,928
1978	3,000	-	212	-	3,212	7,140
1979	2,500	-	-	-	2,500	9,640
1980	3,000	-	-	-	3,000	12,640
1981	5,000	-	-	-	5,000	17,640
1982	950	-	-	-	950	18,590
1983	1,000	-	-	-	1,000	19,590
1984	-	-	-	-	-	19,590
1985	1,000	-	-	-	1,000	20,590
1986	1,000	-	-	-	1,000	21,590
1987	1,000	-	-	-	1,000	22,590
1988	2,000	-	-	-	2,000	24,590
1989	17,000	-	-	15,000	2,000	26,590
1990	7,000	-	-	5,000	2,000	28,590
1991	42,900	5,000	-	22,900	25,000	53,590
1992	20,000	-	-	20,000	-	53,590
누계	110,850	5,000	640	62,900	53,590	53,590

18. 수출보험 인수·보상 및 회수 실적

(단위: 백만원)

	인수실적			보상실적 ¹⁾		손해율(%) (B/A)	회수실적 ²⁾
	건수	보험금액	보험료(A)	건수	보험금(B)		
1969~76	6,385	93,187	924	40	402	-	12
1977	2,710	50,184	461	25	486	105.4	37
1978	1,165	66,037	629	40	469	74.7	28
1979	1,202	259,140	745	30	405	54.4	39
1980	1,232	491,382	1,924	23	312	16.2	51
1981	1,527	1,512,441	5,227	17	430	8.2	44
1982	1,548	1,437,758	4,186	21	1,988	47.5	43
1983	1,278	979,810	4,635	33	1,022	22.0	424
1984	1,581	1,252,794	7,853	46	1,151	14.7	69
1985	1,814	1,337,649	11,432	22	902	7.9	11
1986	2,279	1,052,846	9,652	54	5,775	60.4	636
1987	1,896	431,057	4,229	40	1,961	46.4	957
1988	1,944	201,879	2,034	7	1,370	67.3	266
1989	4,003	371,010	1,240	15	1,380	111.3	449
1990	16,249	1,688,799	4,389	17	66,989	1,526.3	326
1991	21,203	1,507,678	5,852	143	43,386	741.4	376
1992	22,396	1,803,558	6,179	385	40,461	654.8	344
누계	90,862	14,537,209	71,501	958	168,889	194.5	4,112

1) 지급연도 기준, 2) 회수연도 기준

19. 수출보험 활용률

(단위: 억달러)

	수 출 액			보 험 인 수 액			활 용 률 (%)	
	상 품 수출액 (A)	건 설 수출액	합 계 (B)	상품수출 관 련 인 수 액 (C)	건 설 및 해외투자 관 련 인 수 액	합 계 (D)	상품수출 활용률 (C/A)	총 수 출 활 용 률 (D/B)
1977	104.7	35.2	139.9	1.02	0.02	1.04	0.97	0.74
1978	127.1	81.5	208.6	1.10	0.26	1.36	0.87	0.65
1979	150.5	63.5	214.0	1.00	4.40	5.40	0.66	2.52
1980	175.0	82.6	257.6	1.00	6.40	7.40	0.57	2.87
1981	209.9	136.8	346.7	1.30	20.30	21.60	0.62	6.23
1982	216.2	133.8	350.0	2.30	16.90	19.20	1.06	5.49
1983	244.5	104.4	348.9	7.60	4.70	12.30	3.11	3.53
1984	292.5	65.0	357.5	9.40	5.80	15.10	3.20	4.24
1985	302.8	46.9	349.7	13.50	1.50	15.00	4.45	4.30
1986	347.2	22.4	369.6	10.40	1.80	12.20	3.00	3.30
1987	472.8	17.1	489.9	3.50	1.90	5.40	0.75	1.11
1988	607.0	16.0	623.0	2.34	0.61	2.95	0.39	0.47
1989	623.8	24.1	647.9	4.59	0.87	5.46	0.74	0.84
1990	650.2	67.7	717.9	21.40	2.20	23.60	3.29	3.29
1991	718.7	30.4	749.1	19.30	1.20	20.50	2.69	2.74
1992	767.8	27.8	795.6	23.40	3.20	26.60	3.00	3.30

한국수출입은행 2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위원회

위원장 전무이사 이선희
간사 해외투자연구소장 길병기
위원 최성룡 강말이 정문모 김홍준 이형기 은순기 황정길
심성주 김종삼 고재화 박재철 이 규 윤희선 조상균
김진호 정성창 김태희 김정준 임동일

집필자

부부장 성기원
차장 이상훈 육근주 김석영 박동수 홍기동 유재익 김홍범
홍성후 이재민 공주식 성기열 임명성 김진경 이영재
김영재 조규환 남기섭 강성철 이해청 김진두 박환우
과장 이기형(한국수출보험공사)

감수자

1급조사역 임동일
부부장 방요원
차장 유재익 이영재 남기섭 차광수
과장 안상술

편집반

1급조사역 임동일
차장 김진두 노승재
과장 안상술
행원 이삼형 탁재호 오경일 문정화

한국수출입은행 20년사

정간위	96-80-3-20 심의필
인쇄일	1996년 6월 24일
발행일	1996년 7월 1일
발행인	문헌상
편집인	길병기
발행처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대표전화 (02)784-1021,7071
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인쇄처	(주)두산동아 (02)866-8800